

발 간 등 록 번 호

76-5390000-000017-10

2016년 의령군 안전관리계획



의 령 군

안전 관리 헌장

안전은 재난, 안전사고, 범죄 등의 각종 위험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근본이다.

모든 국민은 안전할 권리가 있으며,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은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 I. 모든 국민은 가정, 마을, 학교, 직장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 생활을 적극 실천한다.
- I.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안전기본권을 보장하는 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을 위한 투자에 최우선의 노력을 하며,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는 특별히 배려한다.
- I. 자원봉사기관,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사고 예방 및 구조 활동, 안전 관련 연구 등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 I. 유치원, 학교 등 교육 기관은 국민이 바른 안전 의식을 갖도록 교육하고, 특히 어릴 때부터 안전 습관을 들이도록 지도한다.
- I. 기업은 안전제일 경영을 실천하고, 위험 요인을 없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목 차

I. 총괄	1
제1장 계획의 목표	3
제2장 여건 및 전망	5
제3장 추진방향	7
제4장 기관별 역할과 책임	8
제5장 재난·안전관리체계	10
II.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	21
제1장 자연재난 관리대책	23
제1절 풍수해	25
제2절 설해	107
제3절 가뭄	121
제4절 지진	137
제5절 황사	169
제6절 폭염	180
제7절 산사태	190
제8절 녹조	192
제9절 부록	200
제2장 사회재난 관리대책	239
제1절 산불	241
제2절 도로	271

목 차

제3절 폭발·위험물·대형화재	282
제4절 건축물 등 시설물	292
제5절 유독물·수질오염	301
제6절 건설사업장	315
제7절 에너지(전기·가스·석유)	317
제8절 식용수(식수·농업용수)	332
제9절 보건의료서비스	353
제10절 통신전산망(전산·통신)	364
제11절 교통수송대책	376
제12절 환경대책	382
제13절 감염병	393
제14절 전염병(가축)	399
제3장 안전관리대책	405
제1절 보행자	407
제2절 승강기시설	409
제3절 어린이 놀이시설	412
제4절 여름철 물놀이	416
제5절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청소년시설)	419
제6절 자전거 이용	427
제7절 문화체육시설(유원시설·체육시설·공연장)	430
제8절 등산사고	442
제9절 수상레저	447

목 차

제10절 문화재	451
제11절 사이버	455
제12절 식품안전	457
제13절 4대악 대책	461
제14절 축제장 안전대책	464
제15절 대규모사업장 안전사고	476

Ⅲ. 재난대응 업무별 상호협력계획 479

제1절 재난상황관리	481
제2절 긴급 생활안정 지원	483
제3절 재난현장 환경정비	484
제4절 긴급 통신 지원	485
제5절 시설피해의 응급복구	486
제6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487
제7절 재난수습 홍보	488
제8절 재난관리자원 지원	489
제9절 교통대책	490
제10절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491
제11절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503
제12절 사회질서유지	504
제13절 재난지역 수색, 구조·구급	505
제14절 재난대응업무별 훈련계획	506
제15절 재난대응계획 결의서	508

목 차

IV. 재정투자계획	509
제1장 재정투자계획	511
V. 행정사항 및 부록	513
제1장 행정사항	515
제2장 지역안전지수 취약분야 피해저감 목표 총괄표	519
제3장 부록	520



I. 총괄

제1장 계획의 목표

제2장 여건 및 전망

제3장 추진방향

제4장 기관별 역할과 책임

제5장 재난·안전관리 체계

목 표

- 선진 안전문화 정착
- 안전한 주민생활 보장
-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 확립
- 안정적인 국가기반체제 유지

1. 안전의식 제고로 선진 안전문화 정착

- 기관과 사회단체 공동으로 안전문화 운동을 추진 주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와 함께 자발적 참여 및 신고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개인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주민의 개별 역량강화

2. 자치단체중심의 재난관리체계 마련으로 안전한 주민생활 보장

- 지방정부, 주민, 지역기업, 관련 단체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환경을 개선해나가고, 지역의 안전수준을 지속적으로 측정·관리

3.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 확립

○ 예방중심의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 재난안전관리체계를 복구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하여 재해사건예방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 신속·정확한 재난상황보고 체계 정립

- 각종 재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종적·횡적으로 신속하게 전달·보고될 수 있도록 통합적 상황관리시스템 운영

○ 즉각 대응 및 긴급복구체계 확립

- 재난발생 시 신속·정확한 상황보고와 초기대응체계 구축, 긴급구호·구조, 긴급 물자동원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체계 강화로 복구대응체계 확립

4. 안정적인 국가기반체제 유지

-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국가존립에 필수적인 국가기반체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에 신속·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각종 사고, 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내지 방지함으로써 위기 시에도 국가기능을 유지하는 기반 마련

1. 자연재난 환경의 변화

가. 의령군의 기후적 현황

- 의령군은 산간 내륙지방의 기후 성격을 띠고 있어 겨울에는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아 기온의 일교차와 연교차가 크고 강수량이 적은 대륙성기후를 나타내고 여름에는 그와 반대로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해양성기후에 속하며,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의 피해를 많이 받는 지역임

나.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 유형의 다양화 및 대형화

- 폭염·혹한·폭설 등 새로운 재난유형이 등장하고 태풍 등 기존 재난유형의 경우도 그 규모가 대형화되는 추세임

다. 지각변동에 의한 지진과 지진해일 규모 및 피해 증가

- 2004년 남아시아 지진해일로 인류역사상 최대 피해(28만여명 사망)
- 2016년 일본 구마모토 지진해일 등 주변국에서 지진이 빈발하고 우리나라도 지진이 자주 발생하여 지진대책 필요성 증대

2. 사회재난 환경의 변화

가. 각종 시설물의 노후화, 건축물의 고층화·지하화·복합화, 에너지 집약적 산업구조로 대형재난 발생 우려

나. 주5일제 근무와 웰빙 추구 등 생활방식의 변화 등으로 안전수요 증대 및 실질적인 안전교육의 필요성 대두

다. 새로운 재난요소의 증가로 위협에 대한 예측과 대응이 곤란하고, 국지적인 분쟁 등으로 테러 가능성 증가

2. 전 망

가. 환경 변화와 원인의 다양화로 예측과 사전대비 곤란

-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재난정보 공유 및 전달체계 구축 필요성 증가
- 새로운 재난 저감기법의 지속적인 개발 및 현장중심의 자율·신속 대응체제의 강화 필요
- IT기술 활용으로 과학적인 시스템에 의한 재난관리 역량 제고

나. 생활방식 변화에 따른 국민의 안전수요 증대

- 막대한 비용을 유발하는 사후복구보다는 체계적인 사전예방 투자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전환 절실
- 국민 안전의식 및 안전욕구 수준, 재난관리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책분야별 면밀한 수요조사 필요성 대두
- 국민의 존엄가치를 높이는 고품질의 재난관리서비스 창출 필요

다. 국민의 재난행정에 대한 참여욕구 확산

- 민관협력시스템 활성화 및 중앙정부와 지자체, 시민단체 등에 대한 재난관리 리더십 강화 요구
- 민간자율 참여 안전문화운동의 확산을 통한 국민들의 안전의식 생활화·체질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 정책공동체 활성화, 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관협력체제 강화

1. 군민의 안전의식 제고

군민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와 함께 예방 또는 징후감시 단계에서 자발적 감시 및 신고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개인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의 개별 역량강화와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자발적 참여 문화 유도

2. 예방중심의 재난안전관리정책 추진

국가재난안전관리정책 방향을 대응·복구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기반시설 정비, 법제도 보완 등 사전 예방사업의 투자확대를 통해 재난에 따른 피해 규모를 최소화

3. 자치단체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마련

지방정부, 주민, 지역기업, 관련 단체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 안전·안심·안정된 지역을 만들기 위해 환경을 개선해나가고, 지역의 안전수준을 지속적으로 측정·평가하여 지역의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

4. 미래 재난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대형재난 등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 발굴·분석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정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대비·대응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5. 신속·정확한 재난상황보고 체계 정립

각종 재난·안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종적·횡적으로 신속하게 전달·보고될 수 있도록 통합적 재난상황 지휘·통제와 상호 공조체제를 강화

6. 즉각 대응 및 긴급복구체계 확립

재난발생시 신속·정확한 상황보고와 초기대응체제 구축, 긴급구호·구조, 유관기관과의 연계체계 강화 및 긴급 물자동원 등 대응체제 구축과 신속한 수습복구를 통한 피해확산 방지, 재난조사평가를 통한 재발방지대책 수립

1. 재난관리 책임기관(부산·경남)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팩 스
의령교육지원청	의령읍 충익로 62	570-7163	573-3796
농협중앙회 의령군지부	의령읍 충익로 58	573-2191	573-2093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	의령읍 의병로 14길 5	570-6060	573-4454
KT함안지사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21	582-0060	582-0115
한국전력공사 의령지사	의령읍 의병로 181	570-3231	570-3214
낙동강유역 환경청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50번길 5	211-1790	211-1749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26	278-2780	263-6356
한국가스공사 경남지사	김해시 김해대로2596번길 53	330-7730	325-2274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지역본부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80	282-0019	281-0191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남지역본부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215	270-8412	288-0552
한국도로공사 경남지역본부	창원시 동읍 의창대로 1024	250-7263	250-4327
부산지방기상청 창원기상대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순환로 172	245-0365	244-1365
낙동강 홍수통제소	부산시 사하구 낙동남로 156	051)205-6342	051)201-34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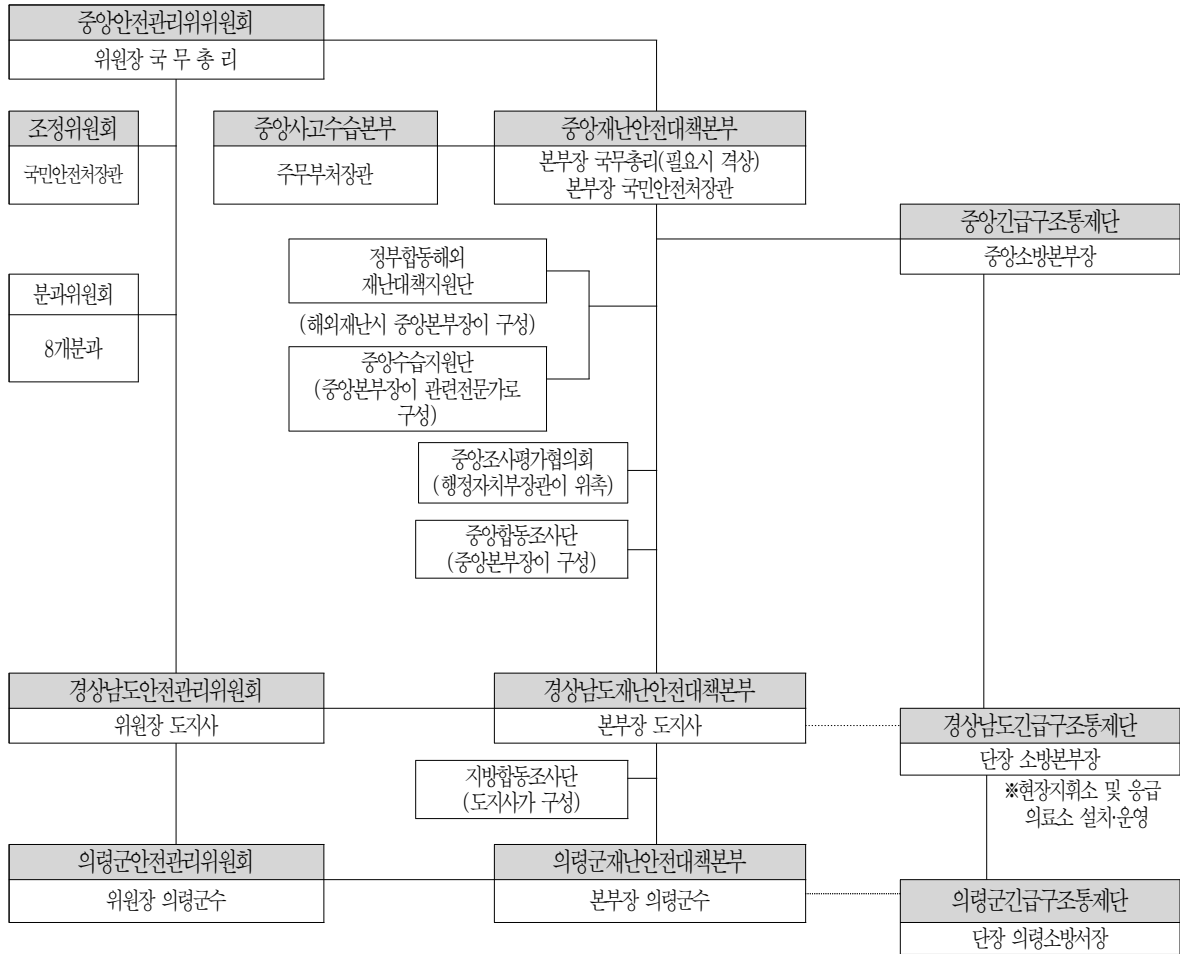
2. 긴급구조·지원기관

기관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긴급구조 기관	의령소방서	52143	의령군 의령읍 남산로 7-12	570-9263	570-9239
	의령119안전센터	52153	의령군 의령읍 구룡로1길 34	570-9313	570-9319
	부림119안전센터	52105	의령군 부림면 대한로 1666	570-9323	570-9329
긴급구조 지원기관	의령경찰서	52140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53	570-0282	573-7500
	5870부대 5대대	52064	함안군 군북면 서포리 80-12	585-1107	583-0120
보건소	의령군 보건소	52151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8길 16	570-4010	570-4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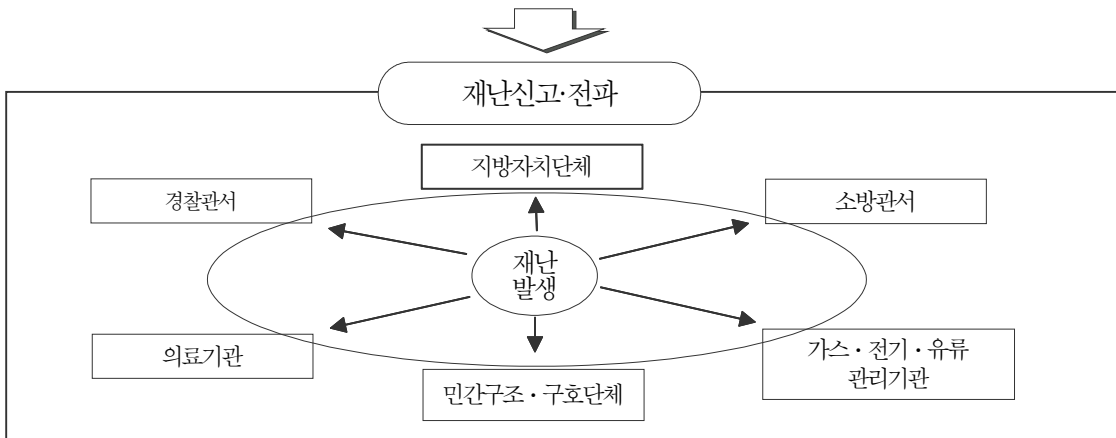
3. 관내 기관 역할 및 책임

부서별	역할 및 책임	전화번호
의령소방서	• 긴급구조·구급대책	570-9262
의령경찰서	• 교통정리 및 치안대책	570-0252 570-0282
육군 제5870부대 제5대대	• 예하부대 복구지원 및 인명구조 등 총지휘 • 군시설 보호 및 복구 • 인명구조 요청시 즉시 지원 - 헬기 등 • 재해복구 군장비 및 인력지원	585-1107
의령교육지원청	• 학교시설 보호 및 복구 • 이재학생 대책 - 공납금 면제 및 지원 • 이재민 수용시설 지원 • 방재교육 - 학생에 대한 방재교육 및 홍보	570-7163
한국전력공사 의령지사	• 전기시설 복구	570-3231
KT함안지사	• 통신시설 • 통신두절 대책	582-0060
부산지방기상청 창원기상대	• 기상통보 및 특보발표	245-0365

1. 재난안전관리체계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2. 의령군 안전관리위원회

가. 구 성

- 1) 위원장 : 군 수
- 2) 위 원 : 13명
- 3) 간 사 : 안전관리담당

나. 기 능

-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 4)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 조정
- 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 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 의령군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위원장	의 령 군	군 수	오영호	당연직
위 원	의 령 경 찰 서	서 장	김성종	"
위 원	의령교육지원청	교 육 장	이학래	"
위 원	의 령 소 방 서	서 장	오경탁	"
위 원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	지 사 장	정철호	"
위 원	농협의령군지부	지 부 장	박종경	"
위 원	의 령 축 협	축 협 장	조재성	"
위 원	의령군산림조합	조 합 장	조충규	"
위 원	한국전력공사 의령지사	지 사 장	진상헌	"
위 원	KT함안지사	지 사 장	김종곤	"
위 원	의령우체국	국 장	옥천규	"
위 원	육군5870부대5대대	대 대 장	김근한	"
위 원	의 령 군	부 군 수	허동식	"
위 원	의 령 군	안전관리과장	오성섭	"
간 사	의 령 군	안전관리담당	윤재환	"

3. 의령군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가. 구 성

1) 위원장 : 부군수

2) 위 원 : 8명

※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장이 당해 직원 중에서 지명한 자

나. 기 능

1) 위원회에 부의될 안건을 사전 검토

2)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정리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도모

※ 의령군안전관리실무위원회 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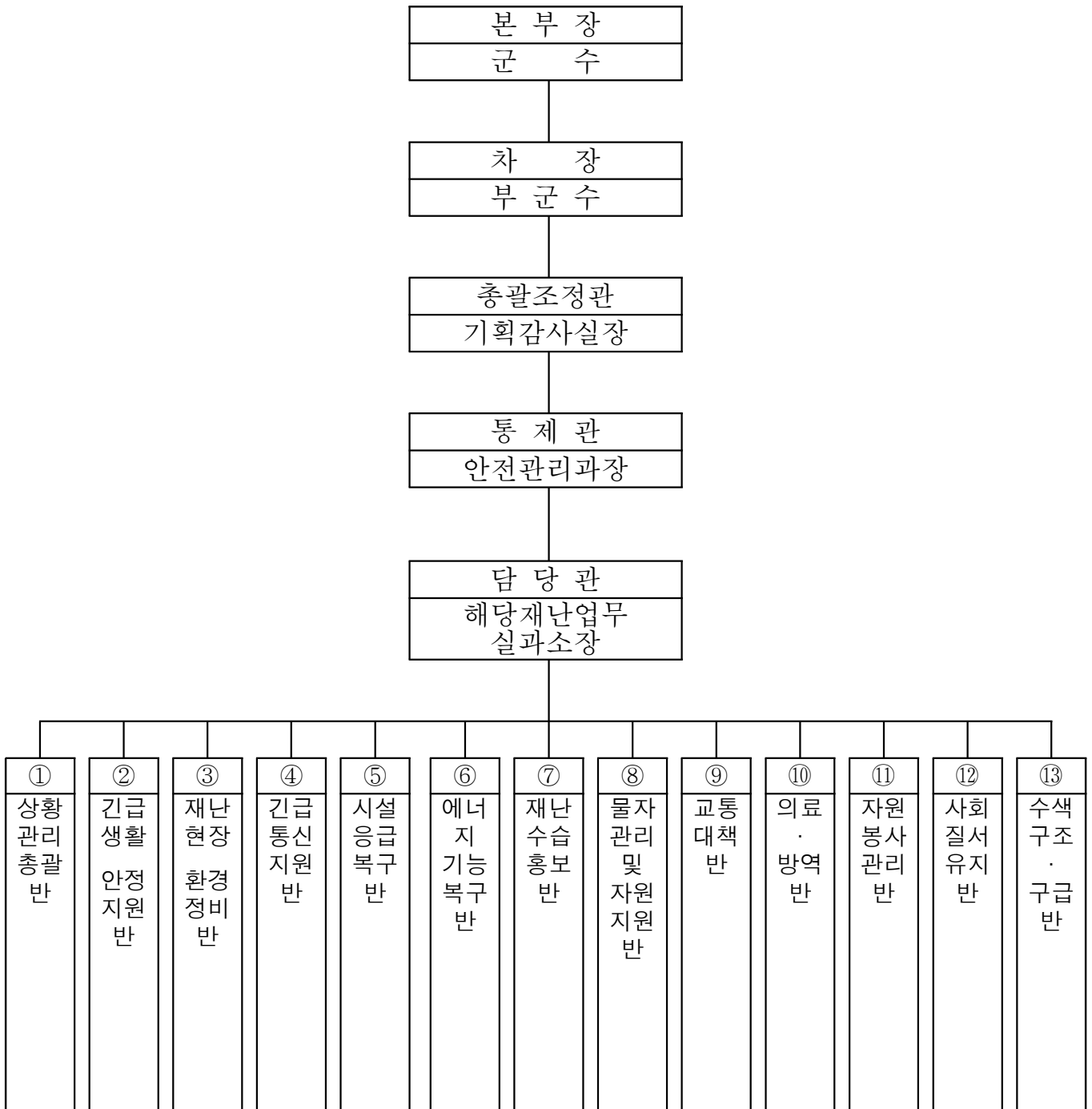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위원장	의 령 군	부 군 수	허동식	
위 원	의 령 경 찰 서	정보보안과장	안술상	
위 원	의 령 소 방 서	현장대응단	강병곤	
위 원	한국전력공사 의령지사	전력공급팀장	신승대	
위 원	KT의령지사	CM팀장	진성원	
위 원	의 령 군	경제교통과장	김철수	
위 원	의 령 군	환경수도과장	강현배	
위 원	의 령 군	건설도시과장	남기주	
위 원	의 령 군	안전관리과장	오성섭	
간 사	의 령 군	안전관리담당	윤재환	

4. 의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가. 설치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의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나. 조 직



○ 13개 협업기능별 기관 및 반별 임무와 역할

구 분	주 요 내 용	관련부서
① 상황관리 총괄	· 다수기관 수행 전반적 재난관리활동 지원·조정	안전관리과
② 긴급생활 안정지원	· 재난발생지역 세제·금융지원, 전기·통신료 감면	주민생활지원실
③ 재난현장 환경정비	·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수거·처리 지원	환경수도과
④ 긴급통신 지원	·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 기관간 정보통신 체계 운영	행정과
⑤ 시설 응급복구	· 피해시설 응급복구	건설도시과 농업정책과 의병문화관광과 환경수도과
⑥ 에너지 기능 복구	· 가스·전기·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 회복 지원	경제교통과
⑦ 재난수습 홍보	· 재난대처 관련 각종 정보 배포·조정	기획감사실
⑧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 방재자원 공동 활용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한 자원 배분	안전관리과 주민생활지원실
⑨ 교통대책	· 교통수단 지원 및 교통소통 대책	경제교통과 건설도시과
⑩ 의료·방역	· 공중보건서비스, 전염병 방역 서비스	보건소 농축산유통과
⑪ 자원봉사 관리	· 재난지역 배정, 자원봉사자 동원, 공공근로 및 기술지원	주민생활지원실
⑫ 사회질서 유지	· 교통통제, 현장통제, 안전관리, 주민대피	기획감사실 의령경찰서
⑬ 수색, 구조·구급	· 인명구조, 응급처치, 응급운송, 사망·실종자 수색	행정과 의령소방서

○ 재난관련 실적별 임무

실·과	항 목	메 뉴 열
기 획 감 사 실	· 주민홍보	· 청내 방송(행정과 협조) 및 언론 홍보
주 민 생 활 지 원 실	· 재해구호체계 확립	· 인명사고시 재해구호기금 지급 등 구호체제 점검 · 의연금품의 모집, 관리, 배분 ·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관리 및 운영
	· 긴급 자원봉사	· 자원 봉사자 긴급 동원태세 확립
행 정 과	· 직원비상근무	· 태풍대비 재해대책 비상근무 발령
	· 인력동원	· 피해발생시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동원 (주민, 경찰, 군, 학생 등)
	· 직원복무상태 확인	· 대규모 피해예상 및 피해발생시 본청 및 읍·면 근무 실태 점검 확인
민 원 봉 사 과	· 주택시설 보호	· 수해상습 저지대, 산사태 우려 지역의 노후주택 점검 관리
	· 공사장 관리	· 대형 건축 공사장의 크레인, 낙하 우려 시설물의 결박 등의 조치
경 제 교 통 과	· 교통 및 에너지 대책	· 가스, 전기, 유류, 교통수송 등 지역내 주요시설을 보호 및 복구 활동 등
환 경 수 도 과	· 쓰레기 처리대책	· 피해발생 즉시 사용토록 쓰레기 임시 적환장 및 매립장을 사전 지정 · 쓰레기 처리를 위한 장비·인력 등 지원 협조 체제 구축
	· 상·하수도 시설 및 침수지역 분뇨처리 대책	· 상·하수도 관로 등 시설물 점검 보강 · 배수지 시설점검 및 관리인 비상근무 · 단수에 대비한 비상급수 계획 · 침수피해 발생시 인접지역의 분뇨처리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및 협조체제 구축

실·과	항 목	메 뉴 열
산 립 녹 지 과	· 산림재해예방	· 산사태 복구지, 산림훼손 복구지, 임도 등의 사전 점검 및 대책 강구 · 산사태 발생 우려지 주민대피 · 양묘장·버섯재배시설 피해예방 대책 추진
건 설 도 시 과	· 수리시설 피해 예방 및 복구 대책	· 저수지, 소류지시설 점검, 정비 및 사전 방류로 홍수량 관리 · 양·배수장 시설 점검 및 관리인 비상근무 조치 (농어촌공사 공조) · 취입보, 용·배수로, 방조제, 배수갑문 등의 시설점검, 정비
	· 수위 및 배수장 관리	· 댐 및 하천 수위 파악 · 주요 배수펌프장 가동 현황 파악
	· 공사장 관리	· 시행 중인 공사장 관리
	· 우회도로 지정	· 상습 침수도로는 우회도로 지정 · 응급 복구용 장비, 물자 등 사전 확보
안 전 관 리 과	· 방재시설 점검 정비	· 침수예상 저지대 등을 지정관리
	· 재난경보 발령	· 재난발생 우려시 경보발령 및 상황유지
	· 공사장 및 하천 관리	· 시행중인 공사장 및 하천 관리
	· 옥외 광고물 관리	· 광고물의 전도, 추락 등 예방관리
농 업 기 술 센 터	· 농작물 피해예방	· 상습침수지 특별관리 · 재해대비 영농 실천사항(병해충 예방, 침수 농작물 관리, 양수장비 동원 등) 대농민 홍보
	· 원예작물 등 하우스 관리	· 풍해 상습지역은 방풍벽 설치 · 하우스의 지주대 보강과 결속 보완
	· 축사, 잠사 피해 예방 및 복구대책	· 낡은 축사 및 사료창고 보수 정비 · 호수에 의한 위험예상 지역의 비상 대피장소, 수송수단 등 사전 확보 · 가축 사전대피 및 방역, 위생관리

○ 유관기관·단체별 임무

구 분	담 당 업 무	비 고
의령경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통제 · 우회조치 등 교통대책 · 질서유지 및 주요시설 보호 등 	
군 부 대 (제5870부대5대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력지원, 장비동원 및 대민 지원업무 현황파악 보고 · 헬기지원 등 수난 구조활동 실시 	
의령교육지원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 수업대책 및 휴교 · 학교시설 긴급점검 및 이재민 수용, 피해시설 현황 파악, 복구 	
한국전기안전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등 사유시설, 공공시설 등 전기안전점검 및 긴급 조치 	
창원기상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상황 등 재난예측·분석관리 및 전파 	
한국전력 의령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 재해대책용 전기지원 및 재해발생 지역의 전기 두절시 대책 	
KT 함안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및 통신고립지역 해소 대책 · 재해 발생지역 통신 두절시 대책 및 재해대책용 통신지원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수지, 양·배수장 등 수리시설 피해 시 대책 	
한국가스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설비 피해현황 파악 · 이재민 수용소 비상가스 설비 · 가스누출 점검 및 응급조치 및 가스안전 홍보 	
한국가스안전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등 사유시설, 공공시설 등 가스안전점검 및 긴급 조치 	
대한적십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십자 구호봉사센터 설치 및 구호 물품 공급 	
재난안전네트워크 13개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 의료구호 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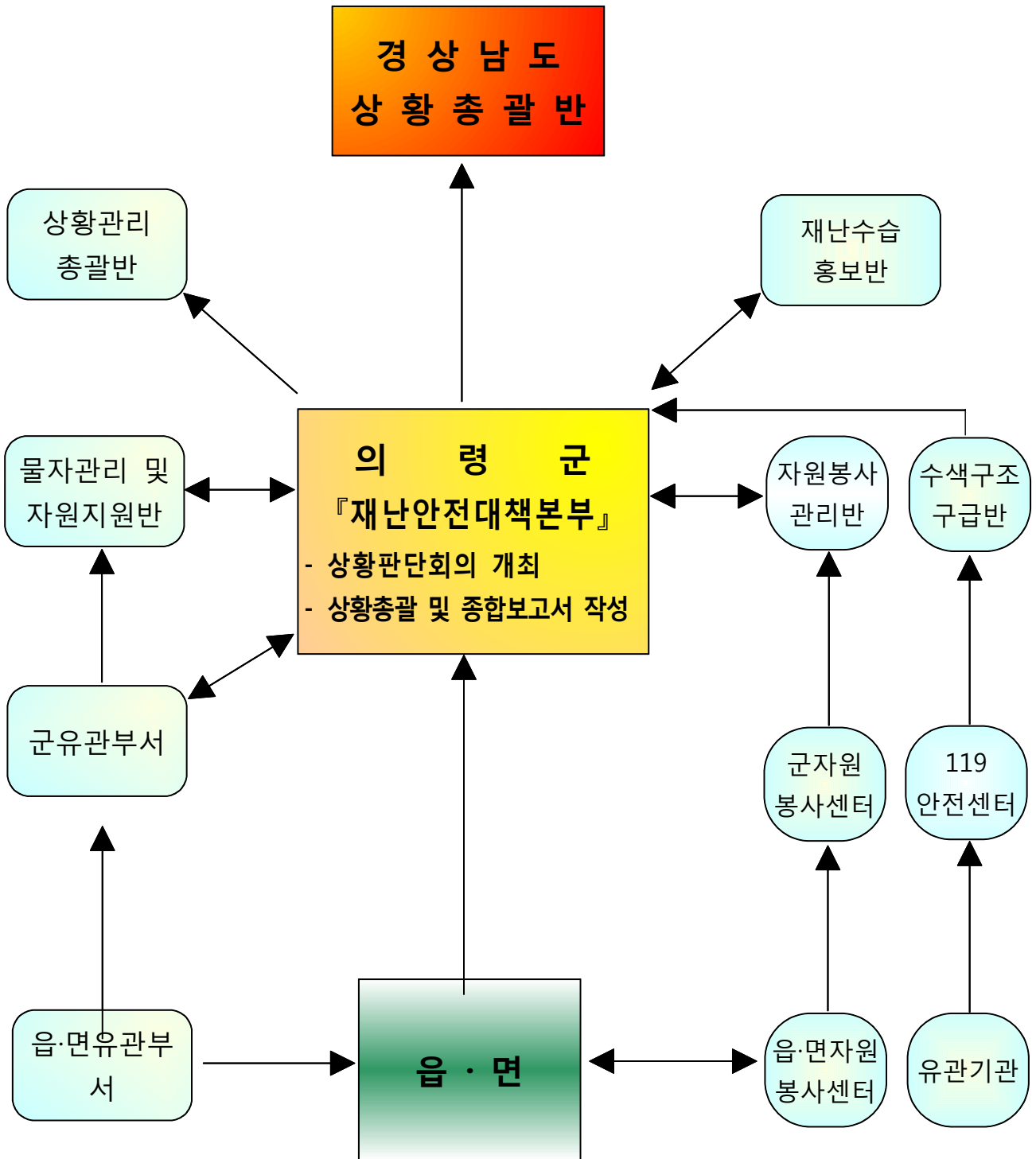
다. 기 능

- 1) 재난대책(예방,대비,대응,복구)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 및 집행
- 2) 재난등급 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비축
- 3) 재난발생시의 응급조치
- 4) 복구사업 실시 및 감독

라. 운영기간

- 1) 자연재난 : 상시
- 2) 인적·국가기반재난·전염병 : 재난발생 시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 재난유형별 재난대책본부 구성

《재해협력 체계 구축도》





Ⅱ.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

제 1 장 자연재난

- 풍수해, 설해, 가뭄, 지진, 황사, 폭염, 산사태, 녹조

제 2 장 사회재난

- 산불, 도로, 폭발·위험물·대형화재
- 건축물 등 시설물, 유독물·수질오염, 건설사업장
- 에너지, 식용수, 보건의료서비스, 통신전산망
- 교통수송, 환경
- 감염병, 가축전염병

제 3 장 안전관리

- 보행자,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 여름철물놀이
- 사회복지시설, 자전거이용, 문화체육시설
- 등산사고, 수상레저, 문화재, 사이버
- 식품안전, 4대악, 축제장, 대규모사업장

제 1 장 자연재난 관리대책

I. 계획의 의의

1. 목 적

최근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로 국지성·계절성 집중호우, 대규모 태풍 등 풍수해로 인하여 자연재난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풍수해에 대한 근원적 예방대책 및 체계적 복구대책을 강구함으로써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2. 재난관리의 여건 및 전망

- 가. 경상남도의 중앙에 위치하며 동서로 자굴산과 국사봉이 솟아 있으며 하천현황은 남강과 낙동강 등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41개소, 소하천 160개소로써 총연장 460km이다.
- 나. 동쪽으로 국가하천인 낙동강과 남강이 인근 시·군과 경계를 이루어 흐르고 있으며, 여타 하천은 북쪽에서 발원하여 낙동강과 남강에서 합류하는 등 자연재해 피해를 많이 받는 지역이다.
- 다. '02년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 피해로 68세대 198명의 이재민과 재산피해 447억원, '03년도 태풍 「매미」의 내습으로 466세대 1,207명의 이재민과 재산피해 1,422억원, '06년도 태풍 「에위니아」 피해로 105세대 243명의 이재민과 207억원, '07년 집중호우 및 태풍 「나리」 피해로 51세대 104명의 이재민과 재산피해 4,410억원 발생
- 라. 따라서 풍수해의 자연적 요인에 대비한 종합적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인적 개발사업에 따른 재난 가중요인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 및 각종개발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재해예방을 고려한 국토종합계획 및 도시계획 수립 등 종합적 재해예방 수립

3. 재난관리 대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가. 기본방향

- 1) 풍수해 예방위주의 투자확충 및 제도개선 추진
 - 가) 자연재해위험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소하천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
 - 나)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우수유출저감시설 등 각종신규제도 기준제정
 - 다) 군민이 편안한 안전 실현을 위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
 - 라) 수계별 하천관리, 치수방재기능 일원화 등 수해예방체계 개선
 - 마) 군민이 자율방재의식 고취를 위한교육, 홍보, 훈련강화, 재난예방 인력 전문화
- 2) 여름철 풍수해 종합대책 추진
 - 가) 중앙·지역긴급지원체계 구축 등 범정부차원 신속한 상황관리체계 구축
 - 나) 방재시설물 등 안전 관리 및 수방자재, 구호물자 비축 및 이재민 수용시설 확보 지정
- 3) 피해조사 선진화 및 복구체계 전면 개선
 - 가) 피해조사의 신속·정확성 제고를 위한 조사장비 현대화
 - 나) 복구계획수립 책임성 강화 운영규정 및 복구비 추가지원방법 개선
 - 다) 복구체계 혁신 종합계획 수립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 4) 수요자 중심의 이재민 구호업무체계 개선
 - 가) 민간구호기관 NDMS 네트워크 구축 및 전산교육 운영
 - 나) 구호세트 시기별·개인별·세대별 세트화 제작기준 개발
- 5) 선진 재난예방교육 시스템 및 민간자율 참여안전문화 활성화
 - 가) 전문 방재교육 참여 신기술 습득
 - 나) 민간모니터위원, 지역 자율방재단 단계적 교육 및 홍보
- 6) 신속한 응급대책의 강화
 - 가) 국가안전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신속한 경보전파, 대피·구호·구조 대책의 체계화 및 사회질서유지

- 나) 신속·정확한 피해규모 파악과 조기 대응을 위한 재난정보의 수집·전달에 필요한 통신수단 강화
- 다) 재난상황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표준대응절차의 수립과 시설별 응급복구체계 확립
- 라) 응급복구체계 확립을 위한 지자체·군·민간 응급복구 협약 체결

7) 항구복구 대책의 확립

- 가) 재난복구사업의 사후평가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과 재난교훈의 전승
- 나) 반복된 재난방지와 쾌적한 환경을 목표로 방재 기반조성
- 다) 복구비 지원의 합리화 및 자체 자율적인 방재집행 강화
- 라) 사유재산에 대하여는 풍수해보험제도 도입·운영

나. 추진전략

- 1) 재난 예방·응급·복구의 단계별 관리체제 구축, 재난예방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대책 확립
- 2) 유관기관 간 연계체계 확립을 통한 효율적 재난대책 추진 및 긴급물자의 공급체계 확립
- 3) 신속한 복구의사결정과 피해재발방지를 위한 개량 복구체계 확립·시행

II. 재난관리대책

1. 예방대책

가. 풍수해 예방대책

- 1) 재난취약시설의 점검·정비 강화

가) 방재시설물

(1) 종류

(가) 소하천 및 하천시설 : 제방, 수문, 배수관, 우수지 및 수위 관측시설 등

(나) 도로 : 교량, 높이 5m이상의 옹벽, 석축 등

(2) 상·하수도시설 : 취수, 배수, 정수시설, 송·배수관로시설, 배수장 및 하수관거 등

(3) 수리시설 :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용수로, 배수로 및 보 등

(4) 사방시설, 댐 시설, 항만 및 어항시설

나) 방재시설의 전수점검 및 정비

(1) 점검개요

(가) 점검대상 : 읍·면 단위로 관할지역내 방재시설 전수 점검

(나) 점 검 자 : 시설물 관리기관과 행정기관 등이 합동으로 점검

(다) 점검시기

- 재해 사전대비기간 중 : 3월부터 5월까지 1회 이상

- 재해기간 중 : 5월부터 10월까지 수시점검

- 기 타 : 11월에서 2월중 1회 이상 점검

(2) 점검방법

(가) 주요 방재시설물에 대한 재해취약시설 점검기준 점검표에 의하여 점검 실시

(나) 각종방재 시설물의 관리 책임자 등과 합동점검 실시

* 평상시는 시설물 관리책임자

(3) 점검결과 조치

(가) 점검결과 위험요인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설물 관리 기관의 예산으로 정비하고, 긴급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은 재해대책 기금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우수기 전까지 보수·보강 등 정비 완료

(나) 우수기 전 정비가 어려운 시설물에 대하여는 비닐피복, 마대쌓기, 가배수로 설치,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재해응급대책을 강구한 후 특별관리

- * 시설물관리기관 책임자와 행정기관의 간부공무원 등은 재해 사전대비 기간과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 기간 중에는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현지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기관과 행정기관 등이 합동으로 점검 실시

다) 시설별 주요 점검사항

(1) 소하천 및 하천시설

- (가) 제방의 누수, 세굴 등 안전도 및 붕괴위험 요인
- (나) 홍수 시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수목·건물·야적 골재 제거 상황 각종 하천 점·사용 시설물 정비 등
- (다) 배수문 본체 및 날개벽 균열·파손부분 확인
- (라) 스펀들, 권양기 및 문비(부식, 도색)상태 점검
- (마) 유수지 퇴적토사 준설 및 수초제거 등

(2) 상·하수도시설

- (가) 관측시설, 안전망, 동력, 비상전원, 배선관계 이상유무 등 확인
- (나) 유수지 퇴적토 준설 및 기계·전기시설 정비
- (다) 관리자 배치, 근무요령, 비상연락체계 등 정비
- (라) 퇴적물 준설, 수초제거, 부속시설물(암거 등) 점검 등

(3) 수리시설

- (가) 수문·여수토·방수로·취수탑, 저수지 등 주요 구조물 균열상태 및 제방 누수부분 점검 등
- (나) 누수 및 파이핑, 기초 세굴부분 점검, 사석 및 피복석 탈락상태 확인 등

(4) 도로·교량 및 산사태 위험지역

- (가) 도로 및 철도시설, 사방시설(산사태 위험지역) 또는 기타 방재 시설물에 대하여는 지역의 재해유형을 감안하여 점검(산사태위험 지역은 산림청 산사태 위험 지 판정기준에 의하여 점검)

* 가로등, 신호등 등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등과 합동으로 종합적으로 점검 정비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특히 가로등, 신호등 등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 책임하에 정비완료

라) 중점관리대상 방재시설 선정관리

(1) 선정대상 시설

- (가) 방재시설 전수 점검결과 재해발생시 시설물 고유의 설치목적에 맞는 기능유지가 미흡할 경우 인명 및 재산피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방재시설을 선정 재해기간 및 연중 중점관리
- (나) 자동 우량 경보시설은 전수관리
- (다) 소하천 및 하천, 상·하수도시설, 수리시설 등 주요 시설에 대하여는 재해취약 시설물 점검 기준에 의한 사전점검 결과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선정 관리
- (라) 도로, 사방시설(산사태 위험지역) 기타 재해 방지기능이 큰 시설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역 설정에 따라 중점관리

(2) 관리방법

- (가) 재해기간 및 연중 수시점검·정비 체계 구축
 - 중요관리대상 방재시설물 관리책임자는 사전대비 점검 후 수시로 점검·정비를 실시하는 등 연중 중점관리
- (나) 시설별 관리책임자 지정
 - 전수관리, 중점관리 대상시설에 대하여는 시설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시설별 관리 카드를 군 방재부서와 시설물관리기관, 시설 현장 등에 작성·비치
 - *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2006년 태풍 “에위니아”와 2007년 태풍 “나리” 및 집중호우 등에 의해 배수장의 침수피해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예비 전원확보 등 특별조치
- (다) 주요 방재시설물 지정현황

구분	계	배수문	배수장	저·소류지	하 천			비고
					국가	지방2급	소하천	
계	433	31	36	163	2	41	160	
군(郡)	362	31	1	127	2	41	160	
한국농어촌공사	71	-	35	36	-	-	-	

2) 대규모 건설공사장 등

가) 점검대상

- (1) 골프장 조성, 택지조성, 기타 50억원 이상 대규모건설 공사장과 소단위 아파트, 연립주택 공사장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일반 공사장도 대규모 건설공사장에 준하여 관리

※ 소단위 아파트, 연립주택 공사장 등 재난 우려가 있는 일반 공사장도 대규모 건설공사장에 준하여 관리

나) 점검방법

(1) 수시점검

- (가) 재해 사전대비 및 재해 기간 중에는 시공회사와 현장 감리원이 합동으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 책임 공무원에게 통보

- (나) 담당과장 등 간부공무원은 재해위험 예측 또는 출장 시 현지 점검

(2) 정기점검

- (가) 관리책임 공무원은 재해 사전대비 기간 및 재해기간 중 월 1회 이상 점검 실시

- (나) 5월중에 행정기관, 사업시행자, 시공사, 감리원 및 관계주민 합동으로 종합점검을 1회 이상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 보완조치

- (3) 상시 대비체제 기간 중에는 재난관리 부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중복점검으로 인한 행정낭비나 군민 불편사항 최소화 도모

(4) 사전조치 할 사항

-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2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실시

- (나) 호우에 대비한 배수처리 기능(유수지, 가배수로 설치 등) 확보

- (다) 하류지역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충분한 침사지 설치

- (라) 공사 중인 골프장은 골프장 관리규정 준수 이행

- (마) 절개지의 비탈면에 토사유출 방지시설 설치

- (바) 피해우려 예상지역 주민에 대한 대피계획 수립 및 대피계획에 포함된 주민들에게 대피장소를 사전통보

- (사) 기타 수방자재 및 장비 사전확보 조치

※ 사전재해영향평가검토 대상사업장은 평가사항 이행여부 확인

(5) 추진일정

- (가) 우기 전 일제 정밀조사 및 현황과약 : 3월중
- (나) 재해 취약요인의 분석 및 대책수립 : 3 ~ 4월중
- (다) 사업장별로 재해 취약요인 보완조치 : 5. 20일 완료
- (라) 보완조치 및 확인 : 5. 30일까지

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계획수립

(1) 지정

- (가) 군수는 노후방재시설 및 재난발생 우려 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 (나) 상습침수, 노후시설, 붕괴 및 고립위험지구 등으로 분류, 위험도 및 피해발생 빈도에 따라 가, 나, 다 등급으로 구분관리
- (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

(2) 관 리

- (가) 재해위험 지구 지정고시 결과를 도지사 경우 소방 방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
- (나) 관리대장을 작성, 주기적인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피해 예상 또는 지정 고시된 지역에 건축행위 등 제한

(3) 정 비

- (가) 1등급 : 관리카드 피해연혁 피해발생횟수 4회 이상 또는 붕괴 등으로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피해 발생우려
- (나) 2등급 : 관리카드 피해연혁 피해발생횟수 2~3회 또는 붕괴·침수 등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 발생우려
- (다) 3등급 : 관리카드 피해연혁 피해발생횟수 1회까지

(4) 재해위험지구 점검, 정비조치 명령권 부여

(5) 재해위험지구의 등급, 기상특보의 종류와 발표기준에 따라 지역별, 시간대별 주민·재산 등의 계획적 대피계획 수립 관리

(6) 우기 중(5월~10월)재해위험지구 관리

- (가) 모든 재해위험지구 관리카드를 재정비하고, 점검결과에 대한

기관 기록관리 의무화

ㄱ 침수구역도 작성, 우회도로 지정, 주민대피장소 지정 등

ㄴ 주기적 점검실시 : 2주 1회 이상

(나) 각 지구별로 공무원, 관련기관, 주민, 복수관리책임자 지정 점검 실시

(다) 통신두절에 대비 비상통신장비 확보(위성전화기 등)

(라) 가 배수로 설치, 비닐덮개 등 응급대책을 강구하고, 이와 병행하여 지구별로 수방자재 확보, 장비투입계획 수립 실시

(7) 비우기(11월~익년 4월)중 관리

(가) 위험요인 해소 및 신규지구 선정여부 등을 위한 일제조사를 실시한 후 매년 10월말까지 재해위험지구 확정

(나)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관리 의무화

(다) 2개월 1회 이상(단, 해빙기의 붕괴위험·위험방재시설은 주 1회 이상)

라) 정비계획 수립

(1) 방재책임자는 매년 다음연도의 정비계획을 12월말까지 수립

(2) 정비계획에 포함될 사항

(가) 재해위험지구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나) 재해위험지구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연도별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재해위험지구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정비계획 수립방법

(가) 정비의 시급성, 인명피해 발생도, 지역여건, 투자,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수립

(나) 재해유형별 정비계획 수립

(다) 연도별 중기 정비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

마) 정비사업 추진

(1)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정비계획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

(2) 대규모 정비사업 지구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되 군 재정여건에 따라 도비를 추가 집중 투자하여 마무리하고 중앙지원 확대방안 강구

(3) 소규모 정비사업 지구는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

바) 가로등 및 교통신호등 일제점검·정비

(1) 점검대상 : 군 내 시설물 전수 점검·정비

(2) 점검시기

(가) 11월부터 4월까지 : 1회 이상

(나) 5월부터 10월까지 : 수시점검

(다) 기타 : 전기사업법 제66조 규정에 의한 법정점검

(3) 점검방법

(가) 저지대 시설의 가로등 점멸기함, 교통신호등 제어함, 안정기 점검구 등을 침수예상높이 이상으로 재정비

(나) 지중관로에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및 유입된 물은 즉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

(다) 가로등 점멸기함 및 교통신호등 제어함, 등주에 접지시설이 미비한 곳은 제3종의 접지시설 설치

(라) 신규로 설치하는 가로등·신호등에 대하여는 분전함 및 안전기함의 높이를 침수예상높이 이상으로 제작 설치

(4) 점검결과 조치

(가) 위험요인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설관리기관 주관하에 우기 전까지 보수·보강토록 조치

(나) 노후 케이블 교체 등 정비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우기 전 정비가 어려운 경우에는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조치 및 특별관리

사) 공공시설의 기능 확보 및 예방활동

(1) 공공시설의 점검, 응급복구대책, 체제정비, 자재 비축

(2) 주요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조작을 위한 표준행동요령 작성 운용

아)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1) 강풍에 의한 건축물의 낙하 물 방지대책을 수립

(2) 건물이나 지하시설 등에 방수문 및 방수 판을 설치, 침수피해예방

자) 국민생활필수시설(Life-Line)의 기능 확보

(1) 상·하수도, 공업용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 국민생활 필수시설의 안전성 확보

※ 계통 다중화, 거점의 분산, 대체시설의 정비 등에 의한 대체성 확보

(2) 국민생활필수시설(Life-Line)의 기능 확보를 위한 복구체제의 정비
기자재의 비축 등 사전준비를 강화

3) 근원적 풍수해 예방을 위한 제도 도입

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1) 목적 : 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개발사업의 수립 및 허가 등을 하기 전에 재해요인을 사전에 정성적으로 검토하여 근원적 재해예방

(2)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3) 내용

(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허가·인가·면허·결정·지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 등을 하기전에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

(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문적 검토를 위해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등 구성·운영

(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재해예방·복구 등 재해경감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재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설립

(4) 사전재해영향평가검토협의 대상

(가)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나) 산업 및 유통단지조성

(다) 에너지 개발

(라) 교통시설의 건설

(마)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바)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사)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아) 그 밖에 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에 필요한 사항

(5) 검토협의 절차

(가) 계획(안) 접수 및 기본요건 검토, 영향성 검토의뢰 및 의견수렴

(나) 의견 종합 및 검토, 협의의견 결정·통보

다) 풍수해저감종합 계획

(1) 목적 : 지역별 재해취약요인 분석 및 각종 정비사업을 체계화
계획수립으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2)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3) 내용

(1) 군수는 저지대 침수대책, 배수펌프장 설치 등 재해예방사업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5년 단위 풍수해저감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2) 도지사는 군 종합계획을 기초로 도 풍수해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

(3)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등에 풍수해저감계획 반영

(4) 재해예방사업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풍수해
저감사업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

* 2016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 시행 예정

4) 우수유출 저감시설 기준 마련

가. 내 용

(1)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우수유출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은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우수유출저감 기법을
개발·보급

(3) 군수는 개발사업 등 공공시설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를 하는 경우에는 우수유출저감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5) 태풍 설계기준의 설정

가) 목적 : 태풍, 강풍 등으로부터 기간산업시설 등 각종 시설물의 안정성 확보

나) 대상시설

- (1)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 (2)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
- (3) 도로법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로
- (4) 석도, 궤도법에 의한 석도시설
- (5)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크레인, 리프트
- (6)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옥외광고물
- (7) 전기사업법 및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송·배전시설

다) 내용

-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태풍 설계기준을 정하는 경우 중앙본부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앙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보완 요구
- (2) 도, 군수는 태풍 설계대상시설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태풍 설계 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 허가
- 라) 전문적 검토를 위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등 구성·운영
- 마) 자치단체별 재해예방사업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중·장기풍수해 저감계획 수립 후 정비사업 추진

6) 홍수 예·경보시설의 개선

가) 인명피해 다발지역의 홍수 예·경보시설 개선

나) 상습침수지역을 중심으로 자동경보시스템 설치 운영

다) 홍수위험지도 제작 활용

7) 외수 및 내수피해 방지사업 추진

가) 외수피해방지를 위한 치수사업 지속 추진

- 하천개수사업 추진으로 2차 피해방지

나) 내수 피해방지를 위한 내수배제사업 추진

(1)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

(2) 관내 노후수리시설 개·보수

다) 농경지 배수개선사업 추진

(1) 농경지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개선사업 시행

라) 배수펌프장 확대 설치

(1) 저지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펌프장 확대 설치

8) 산림피해 예방사업 추진

가) 산사태 피해우려지역에 대한 사방사업 추진

(1) 산지 예방사방, 야계사방, 사방담

나) 산사태 발생 예보제 실시

(1) 산사태 위험지역 지정 특별관리

(2) 기상상황에 따라 산사태 발생 예보제(주의보, 경보) 실시

다) 산지개발에 따른 재난 저감방안 추진

(1) 사업시행에 필요한 최소 면적만 형질 변경허가

(2) 급경사지 등 산사태 위험지내 개간, 주택신축 등 산림형질변경 억제

(3) 벌채입목 방치로 인한 피해방지 대책

라) 수원함양 및 홍수량 감소를 위한 방재형 조림사업 추진

(1) 수원함양이 높은 상수리나무, 자작나무 등 활엽수 위주 식재

(2) 대면적 개발을 지양하고 소구역 조림과 수하식재, 천연 갱신 등으로 복층림 조성

(3) 초본류·관목류 등 하층식생 생육촉진으로 건전한 생태계 유지

마) 기존 임도의 안정성 검토 및 보강

바) 산림부산물 등으로 인한 피해방지대책 강구

9)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정비사업 추진

가) 위험도로 및 노후위험교량 정비

나) 광산시설 폐석유실방지 및 폐광지역 지반안정성 조사·보강

다) 재난취약 전력·가스·석유 및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보강 및 수급지원

라) 산업공단시설 개수 보강 및 방재체제 정비

마) 인명피해 다발지역의 홍수 예·경보시설 개선

10) 하천제방 정비

가) 실시방침

- (1) 법정하천 및 소하천 전 구간의 취약 하천제방 구간을 5년 주기로 계획 정비한다.
 - 전 하천구간의 1/3이상 정비계획을 수립하되 전년도 실적을 상회토록 계획을 수립한다.
- (2) 모든 하천공사는 하천제방 정비차원으로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 (3) 하천법 및 하천내의 유수인용 등 하천수를 사용하는 기업체, 단체에서 정비토록 유도 또는 부담조치 → 정비구간 지정
- (4) 정비는 봄철정비(4.1.~5.31.), 가을철 정비(10.16.~11.15.)로 구분 실시한다.

나) 실시계획

(1) 봄철정비

- (가) 군 자체 세부실시계획 수립 : 3. 25.까지
- (나) 정비대상 조사 및 계획 확정 : 3. 26. ~ 3. 31.
- (다) 정비, 보수실시 : 4. 1. ~ 5. 31.
- (라) 군 자체평가 및 미비점 보완 : 5. 10. ~ 5. 15.
- (마) 지도감독 : 6월중
- (바) 도 평가실시 : 6월중
- (사) 중앙조사 계획 : 6월중

(2) 가을철 정비

- (가) 계획수립 : 10. 9. ~ 10. 15.
- (나) 정비계획 : 10. 16. ~ 11. 15.

다) 실시방법

- (1) 관내 전 하천제방과 수문을 일제 점검하여 정비 및 보수대상과 내용을 파악 확정
- (2) 요 정비 및 보수사항에 대하여 기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
- (3) 하천표지판 및 경고판을 규격에 맞도록 설치 유지
- (4) 수문관리대장 정비는 취·배수문 점검결과 정비실적을 수문카드에 기록

라) 보고 ㄱ 봄 철 : 5. 15.한 보고

ㄴ 가을철 : 11. 15.한 보고

- (1) 하천제방 정비계획 및 실적보고
- (2) 각종 표지판 및 경고판 설치 현황
- (3) 취·배수문 정비결과 보고

나. 국민의 자율방재의식 고취

1) 방재지식 보급 및 홍보강화

- 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재난예방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공감대 형성 및 자발적인 주민참여 도모
- 나) 지역 및 기관별 재난예방에 대한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신뢰성 있는 방재행정 홍보 및 주민참여

2)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운영

가) 목 적

- (1)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정부의 대응 뿐 아니라 민간 자율방재 활동을 통해 사전대비 등 완벽한 재난대응체계 구축
- (2) 재난 사전예방활동 및 응급복구단계의 민간참여 활성화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나) 기본방침

- (1) 지역주민의 자발적 지역 자율방재 단 참여유도
- (2) 재난관련 자원봉사단체(NGO) 적극 활용
- (3) 다양한 인적 계층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다) 기능

- (1) 민간차원의 재난대비, 대응활동 지원
- (2) 지역재난대비 주요 수방시설 사전점검·정비
- (3) 지역 재난 응급복구지원 등

라) 주요업무

- (1) 상시 대비체제 시
 - (가) 유관기관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지역자율방재단원 상시관리

- (나) 재난대비 사전점검·정비 및 방재물자·장비의 확보 비축
- (다) 재난취약지구의 선정·관리 및 대책강구
- (라) 방재단원의 주기적인 교육·훈련 실시 등
- (마) 지역 자율방재단의 적극적인 홍보 및 캠페인 전개

(2) 사전 대비체계 및 비상단계 시

- (가) 경보의 전달 및 주민대피유도, 질서유지를 위한 통제
- (나) 이재민 관리,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 (다)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 (라) 전염병 방재를 위한 방역활동 전개 등 공중보건관리 등

3) 기업의 방재활동 촉진

- 가) 풍수해 발생시 종업원 안전, 고객의 안전, 경제활동의 유지 등을 위하여
재난 시 표준행동지침의 작성, 방재체제의 정비, 방재훈련 실시
- 나) 기업을 지역사회 일원으로 받아들여 방재훈련 참가 유도

다. 풍수해저감을 위한 연구개발 및 정보체계 구축

1) 재난 예·경보 전달체계 확충·운영

- 가) 재해 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운영
- 나) 우기 전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점검·정비
 - (1) 통보대상자 우기 전 일제 점검·정비 및 DB 수정(크로샷 시스템)
 - (2) 통보대상자 DB 확대 구축(크로샷 시스템)
 - (3) 마을앰프시설 보강 및 우기 전 점검·정비(자동음성통보장치)
- 다) 여름철 재해 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

라. 지역별 안전도·재난관리체계

1) 지역별 안전도 평가 실시

- 가) 지역별 재난발생 위험과 피해규모, 피해감소 능력 등 안전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재난계획 수립 등 선진형 방재시스템 구축
- 나) 재난 유형별로 지속적인 안전도평가체계 구축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업무지원 등 정책 환류기능 확보를 통한 지역안전역량 강화
- 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 중·장기 재난저감대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

- 라) 신뢰성 있는 평가지표·매뉴얼 개발 및 지역별 재난저감 책임행정 강화
- 마) 자율방재단 운영 구성·운영

2. 대비대책

가. 응급대응체제 정비

1) 방재담당 공무원

- 가) 직원의 비상소집체계 정비, 정보수집 전달수단 확보
- 나) 응급활동을 위한 표준행동요령을 작성하여 정기적인 훈련 실시 및 자재, 장비의 사용방법 숙지

2) 방재관계기관 상호간의 연계성 확보

- 가) 응급·복구활동을 위한 방재관계기관 상호지원 강화
- 나) 생활필수품·의약품 등의 조달, 대피시설 등의 상호이용 지원체제 정비

3) 방재중추기능의 확보

- 가) 구급·의료 및 응급조치 등을 위한 시설은 정전 시에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정비

나. 방재훈련 실시

1)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가) 훈련목적

- (1) 중앙과 지방 그리고 민간단체 등 국민이 참여하는 총체적인 종합훈련 실시
- (2) 범정부적 재난대응역량을 확대·강화하고 선진형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 (3) 풍수해대책기간(5. 15.~10. 15.)전에 재난관리체계 점검·대비
- (4) 재해발생에 따른 피해상황을 가정한 상황대처와 수습 등에 실제 필요한 도상 훈련을 실시, 자치단체 대처능력 향상 도모
- (5) 재해발생시 지역여건별, 특성별로 유관 기관과 협조체제구축 및 합동 대응능력 향상 등 종합적 대비 태세 확립
- (6) 피해대비, 피해발생, 사후수습의 단계별로 상황대처 및 수습 등 효과적인 훈련실시로 비상시 신속한 대책수립 강구

나) 훈련구분

훈련 구분	훈련추진 내용	훈련시기	비 고
도상훈련	◇ 주관 :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 실시 : 군 재난안전대책본부	3~4월중	
실제훈련	◇ 군 자체 실시(자체훈련계획)	5월중	

다) 훈련내용

- (1)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계획』의 실효성 검증
- (2) 재난관리조직의 재난대비·현장대응·수습절차 숙달
- (3) 유관기관 인적·물적 자원 동원 대응능력 점검

라) 재난관리체제 점검 및 평가

- (1)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정·지휘·통제 기능
- (2)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 (3) 피해조사, 이재민구호, 사상자 처리 등 수습·복구 절차

다. 민간모니터위원 활성화

- 1) 목적 : 재난발생시 지역주민들을 현장 모니터위원으로 활용, 신속하고 생생한 정보수집 등 상황대처 기능 강화
- 2) 기본방향
 - 가) 지역주민 및 자원봉사단체, 운전기사 등 지역실정에 밝고 활동성 있는 자들을 민간모니터위원으로 확대 지정
 - 나) 재난발생에 신속하고 생생한 현장정보수집, 상황대처기능 강화
 - 다) 재난위험시설 등 수시순찰, 이상유무 확인 신고 등
- 3) 확대지정대상
 - 가) 지역거주 이장, 새마을지도자, 자원봉사단체, 운전자, NGO 등 지역실정에 밝고 활동이 용이한 자 중 시군별 확대 위촉·운영
 - (1) 상습침수지역 등 재난위험지구 주민
 - (2) 택시기사, 자원봉사단체 회원
 - (3) 읍·면 단위 이장, 반장 등

4) 모니터위원 역할

가) 상시대비 체제 시

- (1) 평시 재난예찰활동 및 정비, 가두캠페인·전단배부 등 사전예방 활동 및 홍보 캠페인 전개
- (2) 재해취약지구에 대한 제방누수, 슬라이딩, 파이핑 현상 등 육안검사 실시
- (3) 주민들에게 재해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재해대비 교육 등

나)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 시

- (1) 재해 사전대비 예찰활동 실시 위험상황 통보 등
- (2) 기상특보 발효 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대응·복구상황 전파
- (3) 태풍·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상황 전파 및 대응방안 제시
- (4) 재난발생시 재난상황 전파 및 지역주민 동원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활동, 의약품·구호물자의 접수·배분실태 등 복구활동 협조 및 상황 전파
- (5) 의료 및 방역활동 정보, 교통통제 상황 보고 등 정보제공
- (6) 모니터위원들의 감시활동 실시, 부실시공 시 정보제공 등으로 견설시공 유도
- (7) 재난정보수집 중 문제점 등 기타정보제공

5) 보고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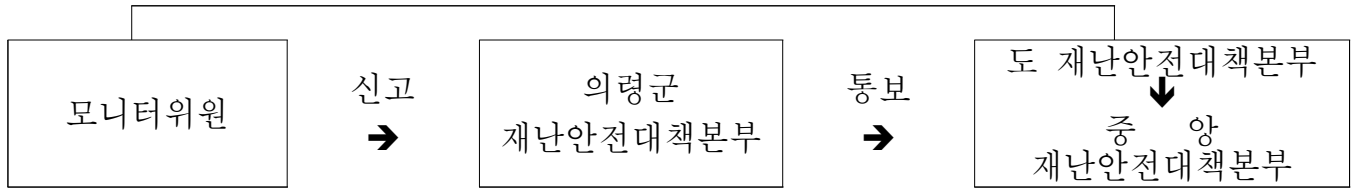
가) 상시대비체제 시 관리

- (1) 비상연락망 변동사항 수시관리(휴대폰, 전화, 주소 등)
- (2) 모니터위원과 지역재난상황실간 상호 연락체계 구축
 - (가) 상황실 및 담당공무원과 모니터위원 간 긴급통화가 가능하도록 상호 휴대폰에 상대방전화 입력 활용
 - (나) 휴대폰을 이용한 기상정보, 사전대비 활동정보, 유익한 생활정보, 기타정보 등 제공

나) 재난사고 발생시 즉시 신고

다)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 시 활용

〈재난상황 발견즉시 신속한 보고 시스템 가동〉



〈민간모니터요원현황〉

읍·면	대의	화정	용덕	지정	낙서	봉수	유곡
성명	황진탁	조균오	김기태	김재권	구용회	차기태	심임섭
전화번호	572-8988	572-4271	574-1104	572-8586	572-7075	572-3077	573-8464
	010-3576-7799	010-3597-4271	010-8552-9508	010-3593-7126	010-3705-7075	010-9536-3077	010-3598-8464

라. 재난정보 수집·전파체계 구축

1) 재난정보의 수집·전파체제 정비

- 가) 기상·수위 등의 상황관측 정보수집·전파체제 및 시설정비
- 나) 야간 및 휴일 등 행정사각시간대 대응체제 확립
- 다) 피해현장 정보수집의 신속화·체계화
- 라) 위성 및 컴퓨터통신, 지역방재무선 등의 통신수단을 통해 민간기업, 보도기관, 주민 등으로부터 다양한 재난관련정보의 수집체제정비

2) 재난정보의 분석·정리

- 가)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전문인재 육성과 전문가 의견 활용
- 나) 지리정보시스템(방재GIS)의 구축으로 방재정보의 DB화, 온라인화, 네트워크 추진

3) 통신수단의 확보

- 가) 정보통신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정전대책, 정보통신시설의 위험분산, 통신로의 다경로화, 통신 케이블·CATV 케이블의 지중화 촉진, 무선을 이용한 자료보관대책
- 나) 비상통신체제의 정비, 유·무선통신 시스템의 종합적 운용 및 응급대책 등 중요통신망의 확보 대책
- 다) 이동통신의 통신폭주 대책 강구, 비상시 운용계획 조정 및 피해상황의 화상전송 무선시스템 구축

4) 인명피해우려지구 대피계획 추진 : 42개 지구

< E-30분 계획 추진현황 >

군	지구명	타 지구 연관		담당자 (전화번호)	비고
		자연재해 위험지구	위험구역 (경계구역)		
의령	정곡면 무곡지구		○	김대윤 (570-2762)	침수위험지역
	가례면 양성지구		○	김수연 (570-2763)	붕괴위험지역

마. 방재물자 확보·비축 및 동원장비 등 지정·관리 <정비요망>

1) 수방자재 확보·비축 실태 점검

가) 비축기준

(1) 종류 : PP포대류(톤백 포함), 묽음 줄, 말목, 덮개류(비닐, 비닐천막)
작업도구 등

※ 수방자재 등 현대화 추진

(2) 비축기준

(가) 최근 10년간 평균사용량을 감안하되,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피해를
예측한 소요량을 조사, 시설별로 일정량의 확보 기준량확보

(나) 긴급용으로 일정량만 보관하고 업체와 상호 연락 보관 물량 확보
및 내구연한 경과 자재에 대한 폐기처분

(다) 재해유형별,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방재물자 선정

(3) 비축장소 : 군·읍·면 창고, 관내 고립예상지역, 수해상습지역 등

나) 점검 및 관리

(1) 보관자재는 내구연한 및 보관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불량자재의
폐기처분 및 부족자재는 우기 전까지 확보

- 수방자재 보관 수량 및 관리자 지정 -

구분	담당자	톤백	PP포대	로프	삽	툽	천막	말목	메	비닐 100m	안전헬스
계		6,315	13,830	106	304	125	46	93	37	40	120
의령읍	김종완 570 - 4373	880	2400	20	60	20	7	0	3	4	20
가례면	강지윤 570 - 4412	500	1150	10	35	15	7	0	3	2	15
칠곡면	김지은 570 - 4454	230	1800	3	0	10	2	0	3	3	3
대의면	노영주 570 - 4494	500	400	6	22	3	0	10	2	7	5
화정면	유준학 570 - 4534	400	840	8	15	10	7	0	0	4	4
용덕면	김슬기 570 - 4574	500	950	5	40	2	2	50	2	5	8
정곡면	이영기 570 - 4613	480	400	4	18	6	2	8	4	3	9
지정면	김민구 570 - 4654	550	1150	2	4	5	3	5	2	2	7
낙서면	남택균 570 - 4694	320	900	5	31	0	3	0	5	2	2
부림면	박성룡 570 - 4772	755	1000	24	26	20	7	20	5	6	28
봉수면	김철하 570 - 4793	400	840	7	38	10	3	0	3	0	6
궁류면	양희원 570 - 4833	400	1500	7	0	12	2	0	2	2	10
유곡면	강병훈 570 - 4873	400	500	5	15	12	1	0	3	0	3

구분	기계톱	신호봉	점멸등	곡괭이	도끼	낫	대빗자루	망치	야광조끼	제설용삽	재난안전선	장화
계	20	147	107	79	60	223	128	53	183	191	255	89
의령읍	2	40	10	15	13	55	20	15	50	50	50	10
가례면	2	11	10	15	5	30	6	5	20	16	12	10
칠곡면	2	2	5	5	5	11	5	0	10	17	19	2
대의면	1	10	8	2	3	3	6	15	20	10	40	10
화정면	1	10	5	1	5	10	10	2	4	10	17	4
용덕면	2	7	5	7	7	9	5	2	10	12	10	10
정곡면	2	6	2	11	2	11	10	0	8	5	17	10
지정면	2	5	4	5	2	20	5	2	5	4	12	11
낙서면	2	0	0	3	3	2	2	2	4	11	15	3
부림면	1	26	30	6	6	34	14	5	16	21	38	13
봉수면	1	10	10	1	2	15	17	2	10	10	5	1
궁류면	1	10	15	4	5	11	13	0	6	15	8	0
유곡면	1	10	3	4	2	12	15	3	20	10	12	5

※ 수방자재 내구연한 : 말목 3년, PP포대 · 묶음줄 5년

(2) 자재의 관리

(가) 자재의 보관상태를 수시 점검, 부패예방

(나) 보관창고 내에 자재수불대장 비치 및 관리책임자 지정 관리

다) 점검시기

(1) 11월부터 4월까지 : 1회 이상

(2) 5월부터 10월까지 : 수시점검

2) 응급복구용 장비 지정 · 관리 실태점검

가) 지정기준

(1) 대상장비 : 도저, 백호우, 페이로더, 덤프트럭, 청소차, 분뇨수거차 등

※ 침수피해 시 쓰레기, 분뇨 등을 처리하기 위한 청소차, 분뇨차를 필히 지정

(2) 지정기준 : 최근 10년간 최대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재해취약시설 및 상습침수지역 등에 대한 피해상황을 예측한 복구장비의 종류, 소요대수를 조사하여 시설별로 일정량을 산정 지정

(가) 산사태, 토사유실 등이 우려되는 도로절개지의 경우

○ 장비종류 : 페이로더 또는 백호우, 덤프트럭 등

○ 소요대수 : 도로규모, 지형 등 현장실정에 따라 산정

(나) 통수단면이 협소하거나 재해에 취약한 교량의 경우

○ 장비종류 : 백호우, 덤프트럭 등

○ 소요대수 : 교량규모, 가도설치 등을 감안 산정

나) 지정관리

(1) 관용장비, 유관기관 및 민간보유 장비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재해발생시 신속하게 동원 가능하도록 조치

(2) 응급복구용 장비의 사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동의서 취득 후 지정 관리

※ 응급복구용 장비에 대해 응급복구 추진실적 등을 고려, 인센티브부여 등 향후 적극 참여 유도

(3) 침수피해 시 동원 가능한 청소차, 집게차, 분뇨차 등 쓰레기 처리 장비 지정 및 확보(인근 시군 및 민간업체와 응원체계 구축)

- (4) 시신운반 차량확보(보건소, 의령병원의 응급차 보유현황 사전 파악)
- (5) 급수운반 차량확보(소방차, 민간보유 급수운반차, 청소차 등 사전파악)
- (6) 지정장비의 동원 우선순위 체계 확립
 - (가) 1단계 : 군 보유 장비
 - (나) 2단계 : 유관기관 보유 장비
 - (다) 3단계 : 군부대 장비
 - (라) 4단계 : 민간장비

다) 점검시기

- (1) 5~10월 : 매월 파악
- (2) 11~익년 5월 : 매분기파악

바. 유발재난 및 2차 재난 방지대책

1) 재난특성에 의한 유발재난 방지대책

- 가) 침수에 따른 전기 감전사고 방지대책 수립
- 나) 방치된 벌채입목, 공사용 자재, 고수부지 차량 등 유수소통 지장물로 인한 교량, 암거, 보 등 하천 내 방재시설물의 피해방지대책

2) 2차 재난 방지대책

- 가) 침수 및 토사재난의 발생·확대방지
 - (1) 침수피해 확대방지를 위한 이동식펌프 보유 및 배수대책
 - (2) 토사재난의 발생, 확대방지를 위한 자재비축과 방지대책 강구 및 대응체제 정비

사. 구조·구급 대책 수립

1) 신속한 정보전달 체계 구축운영

- 가) 지역방송매체 등을 통해 재해특보 및 피해상황에 대한 시간대별 홍보계획 수립 추진
- 나) 위험상황 발생시 민방위 경보발령 전달요강에 의한 민방위경보(재해경보)발령 등 방송, 사이렌, 취명 등에 의한 민방위 경보신호 및 전달체계 정비
- 다) 마을앰프, 사이렌 등 정보전달 장비의 점검·정비

2)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가) 관할구역 내에서 재해발생시 재난안전관리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119구조대 출동태세 구축

나) 119구조대, 군·경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서 조직·운영하고 있는 각종 인명구조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및 합동훈련 실시
※ 지역의 소방서장(119구조대)이 유관기관 및 단체의 구조 활동 현장 총 지휘

다) 상습침수나 고립위험이 있는 지역은 사태발생시 인근의 인명구조대를 즉각 동원, 사태수습에 임할 수 있도록 지역별 분담제 실시

3) 수난구조용 장비·자재 및 수방신호기 등 확보

가) 재해발생시 신속한 구조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관내 유관기관·단체의 보유 장비·자재중 사용이 가능한 것을 사전에 파악 지정

(1) 수난구조장비 : 헬기, 선박, 구명복, 구조망, 구급차, 로프, 무전기 등

(2) 수방신호기 : 사이렌, 메가폰, 앰프 등

4) 교통두절 및 고립예상지역 대책

가) 교통두절 예상지역은 우회도로를 사전에 지정, 주민고립 예방

나) 인명구조 요청 시 헬기 등이 신속하게 동원될 수 있도록 인근 군부대 및 경찰·소방관서와 사전에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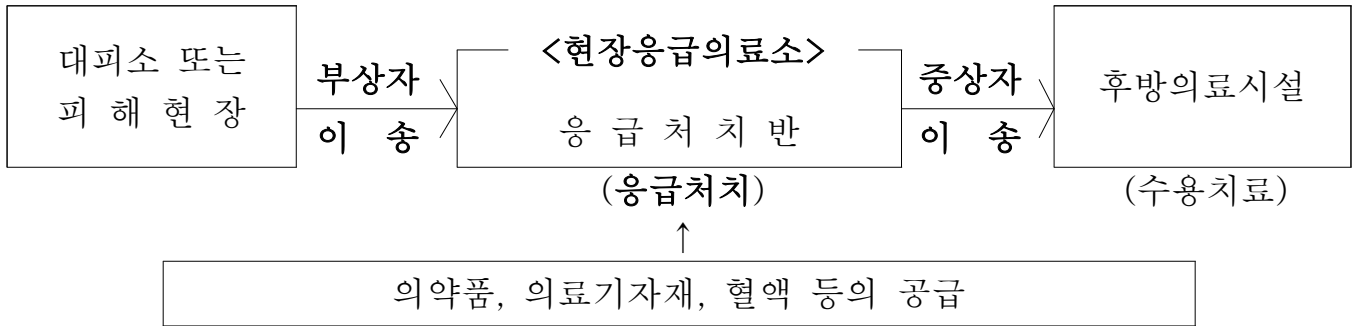
아. 긴급의료 및 긴급수송 대책 수립

1) 긴급의료 대책

가) 초동의료 체제

(1) 재해 시 일차적인 의료구호는 군수가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의료구호 팀을 편성 운영

<재해시 의료구호체계 흐름도>



나) 현장의료구호소의 설치

- (1) 의료구호반은 군수가 설치한 대피장소 또는 재해현장 등에 구호소 설치
- (2) 증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후방의료기관에의 운송순위결정, 수송 곤란자 및 경상자에 대한 의료실시, 조산구호, 사망자의 확인, 사체의 검안 등을 실시
- (3) 현장 의료구호소 등에서 의료구호 중앙 및 도 재해대책 본부장에게 요청 상부기관에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조대 등을 파견 조치

다) 의약품·의료기자재의 비축

- (1) 군 보건소에서는 의료구호 시 사용할 의약품 및 의료기자재 등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현장의료구호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후방 의료기관의 지정 관리

- (1) 현장의료구호소 등에서 후송되어 오는 증상자의 진료를 위하여 대규모 지진발생 시에도 상·하수도, 전기, 가스시설 등 국민생활 필수 시설은 피해가 예상되지 않는 지역에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관리
- (2) 광역후방의료 요청은 현장지휘본부→중앙재해구호본부(보건복지부)의 경로를 통하여 요청
- (3) 보건복지부에서 지정 관리하는 응급의료기관으로 한정하되,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지정 관리

구분	병 원 명	병상수	영안실 수용능력	응급차 보유대수	전화번호	비 고
일반 병원	의령병원	88		1	573-4100	후방의료기관
”	삼성창원병원	710	12		290-6000	광역후방 의료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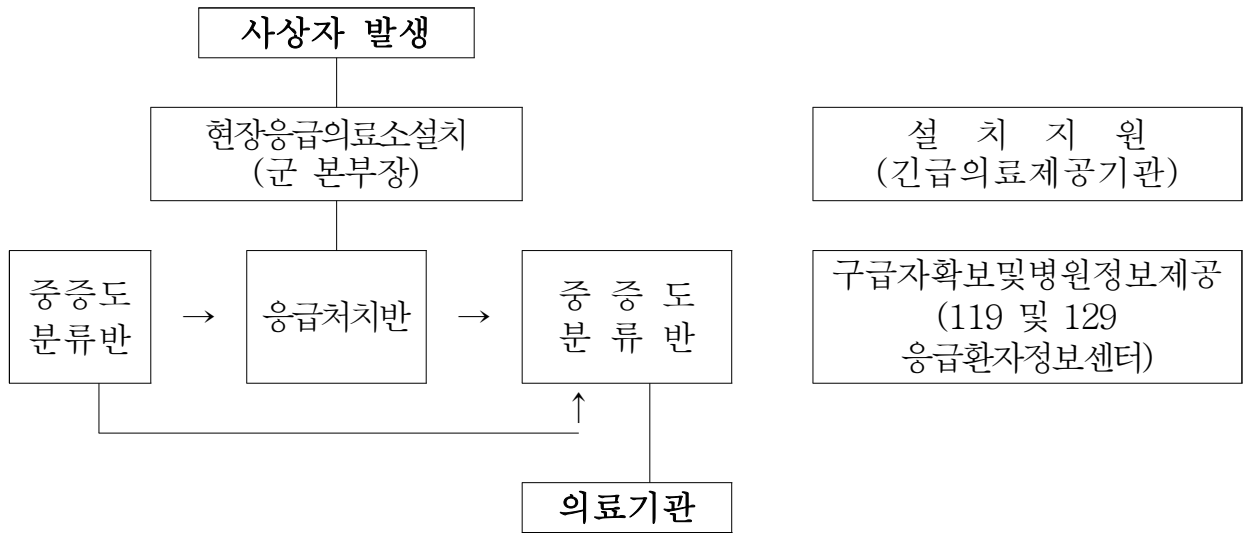
마) 의료시설에 대한 Life-line 관리

- (1) 단수, 정전 등으로 인하여 의료 활동 불가능에 대비 의료시설에 대한 라이프라인 대책 수립 추진
- (2) 응급구호용 의약품, 의료기자재 등 비축, 재난의료시설을 선정하여 재난발생시 구급의료 활동
- (3) 구조기관과 의료기관 상호간 연락체제 정비
- (4) 재난 시 의료관계자의 역할, 치료의 우선순위에 의한 환자의 분배
재난 시 자주 발생하는 질병의 치료대책 수립

2) 긴급수송 대책

- 가) 현장응급의료소의 소장이 119구급대 또는 의료기관구급차 등에 요청, 후방 의료시설까지 운송 조치
- 나) 통신망의 단절로 피해지역 의료기관의 상황파악이 곤란할 경우에 대비 원활한 수송 등을 위한 정보수집

<사상자 처리체계도>



(1) 긴급수송로 및 운송통로 확보

(가) 긴급수송로의 지정(정부합동특별수송대책운영규정)

- 물자 등의 생산 및 보관지에서 피해예상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를 긴급 수송로로 지정

(나) 긴급운송통로의 확보(도로, 항로 등)

- 육·공으로 다중·교통 네트워크 수단 확보
- 교통방송 등을 통하여 긴급수송로 확보
- 긴급수송통로, 도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

(2) 긴급도로 개설

(가) 피해지역내 도로상에 낙하된 간판, 전도된 전주 등 장애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활동, 구호물자의 수송에 장애가 있을 경우 장애물 제거 등 긴급도로 개설 계획수립 조치

(나) 수송차량 등의 확보

- 공공기관 소속차량은 1차 동원 차량으로 지정
- 부족할 경우에 대비 민간소유차량으로 추가 지정 확보
- 정부합동 특별 수송 대책본부 설치운영규정에 따라 조치
- 재난 시 긴급수송활동을 위한 다중화, 대체성을 고려한 수송 시설 및 수송거점 파악·조정, 긴급수송 네트워크 지정을 위한 관계부처 간 사전 협의

- 교통두절 예상지역에 대한 우회도로 사전 지정운영
- 긴급수송 네트워크로 지정된 수송시설 및 수송거점에 대한 재난의 안전성 확보
- 재난발생 후 도로의 장애물제거,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인원, 장비 및 자재 확보

자. 이재민 수용 및 구호물자 지정·관리 등 실태점검

1)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관리 실태점검

가) 지정기준

- (1) 학교, 교회, 마을회관 등 수용이 가능한 건물을 지정하되, 이재민 발생 가능성이 없는 지역은 가급적 지양
- (2) 최근 10년간의 이재민 발생 수 등을 감안하되, 상습침수지역의 피해 상황을 예측한 이재민 발생 가능수를 조사, 인근 지역에 수용시설 지정
 - (가) 하천수계별, 지역별 현실성 있는 대피와 수용을 동시 운영이 가능한 시설지정 운영
 - (나)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시 침수되지 않도록 제방보다 높은 곳을 선정하여 지정
 - (다)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시 전기(자가발전), 수도, 도로 등 지역 여건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정
- (3) 지정 시 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사전협의를 철저히 하고 동의서에 사용조건 등을 명확히 명시하여 분쟁소지 사전예방
 - (가) 수용시설의 규모에 따라 이재민 대피 및 수용 가능계획 수립
 - (나) 집중호우 및 저수지 붕괴 등에 대비한 등급별 침수예상지역 대피 계획서 작성 보급
 - (다) 기상상황에 따른 단계별 대피계획 및 대응요령 숙지

나) 사전조치 할 사항

- (1) 이재민 발생시 수용 이재민 현지급식을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또는 지사 및 새마을 부녀회 등 사전 협의
- (2) 이재민 발생시 즉시 수용 가능하도록 우기 전 관리상태 점검
- (3) 대피시설 또는 읍·면동별 응급구호품과 장비 상비(구호세트, 고무보트 등) 및 단전, 단수에 대비한 최소시설 확충
- (4) 주민들이 대피장소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반상회 등을 통하여 홍보

다) 점검시기

- (1) 5월부터 10월까지 : 수시점검
- (2) 11월부터 4월까지 : 1회 이상

라) 침수지역 분뇨 및 쓰레기 처리대책

- (1) 분뇨 : 침수피해 발생시 인접 지역의 분뇨처리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
- (2) 쓰레기
 - (가) 재해 우려지역은 피해발생 즉시 사용토록 읍·면동당 1~2개소 이상 임시 쓰레기 적치장 지정 확보
 - (나) 수해지역 수거 쓰레기는 규격봉투 없이 매립장에 반입, 처리될 수 있도록 환경수도과는 대의 쓰레기 매립장과 사전 협의

2) 구호물자 확보·비축 실태점검

가) 비축기준

- (1) 대상물자 : 구호 세트, 양곡, 라면류, 의류, 모포·침구, 천막, 취사도구, 생필품 등
- (2) 비축기준 : 최근 10년간 최대 사용량을 감안하되, 주택파손 및 침수 피해를 고려하여 세트화 구호물품을 비축하여 소규모 재해 시는 군 비축물자를 우선 사용하고, 추가필요 시 광역창고에서 일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
- (3) 보관장소 : 군, 읍·면 창고 및 관내 수해 상습지 인근 마을회관 등
- (4) 재해구호물자의 종류 및 확보기준
 - (가) 일시구호세트(1명 기준)

구 분	다목적 보온덮개	치 약	칫솔	비 누	수 건	화장지
규 격	213cm×132cm	20g	일회용	35g	30cm×45cm	50매
수 량	1장	1개	1개	1개	1장	1개

※ 개별구호물품 : 1인당 생수(1.0ℓ) 1병

(나) 응급구호세트(기본용 + 개인용)

- 기본용 : 1세대 2명 기준

구분	이불	담요	침솔	치약	세면비누	수건	화장지
규격	200cm×170cm 1.3kg	200cm×150cm 320g/m ²	일회용	175g	100g	80cm×40cm	50m
수량	1장	1장	2개	1개	2개	2장	2개

구분	베개	빨랫줄, 집게	손수건	반진고리	볼펜	메모지
규격	PVC 38cm× 28cm×10cm	PP 5M, 8개	80mm×60mm×10mm	실, 골무, 가위, 바늘, 실, 퀘기	0.7mm 유성	10cm×48cm 30매
수량	2개	1조	1조	1개	1개	1개

※ 개별구호물품 : 1세대 당 생수(1.0ℓ) 2병

- 개인용 : 남·여 각 1명 기준(의류 크기에 따라 대·중·소로 구분)

구분	남				여			
	간소복	속내의	면도기	양말	간소복	속내의	생리대	양말
규격	폴리	면	1회용	면	폴리	면	일반슬림	면
수량	1벌	1벌	1개	1켤레	1벌	1벌	1조	1켤레

※ 의류(간소복·속내의) 크기에 따라 대(남 105, 여 100)·중(남 100, 여 95)

·소(남 95, 여 90)로 구분하고, 대·중·소 구성비율은 3:5:2로 함

(다) 재가구호세트(1세대 4명 기준)

구분	가스렌지	코펠	수저	세탁비누	세탁세제	주방세제	고무장갑	수세미	면장갑
규격	휴대용	4인용	sts	250g	1kg	1kg	고급형	부직포	반코팅
수량	1개	1세트	4벌	1개	1개	1통	1켤레	2개	1켤레

※ 개별구호물품 : 1세대 당 쌀(10kg) 1포, 부식류(고추장, 간장, 된장세트)

1세트, 부탄가스 4개, 살균·표백제 1개

(라) 그 밖의 개별구호물품 : 즉석식품, 분유세트(분유, 젓병),

기저귀, 모기약 등

(마) 재해구호물자 확보기준

구 분	계	일시구호	응급구호	재가구호
비축기준	245	50	130	65

(바) 구호물품 중 부탄가스, 생수 또는 분유 등 위험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품목은 재해발생 이전에 구매처를 확보하여 재해발생시 즉시 조달될 수 있도록 준비체계를 갖출 것

(사) 위 품목 중 일부 품목은 구호기관이 최근에 발생한 재해 규모 및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비하지 아니할 수 있음

나) 확보·관리

- (1)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물자 수불대장 작성 비치
- (2) 부족물자는 위기 전까지 전량 확보하고 변질우려가 있는 양곡류나 내구연한이 짧은 의류 등은 현금으로 확보, 유사시 즉시 구입 사용
- (3) 부패·변질 방지를 위하여 보관상태 수시점검
- (4) 위험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품목은 사전에 구매선을 확보하여 재해발생시 즉시 조달될 수 있도록 준비체제를 갖출 것(부탄가스, 생수, 우유, 김치 등)
- (5) 지역특성, 재해유형에 맞는 구호세트 확보 조치
 - ※ 구호물자 세트화 제작물품의 보급화(광역창고 등)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재민 구호

다) 점검시기

- (1) 3월부터 4월까지 : 1회 이상
- (2) 5월부터 10월까지 : 수시점검

차. 방역물자 및 침수방지용 장비 확보·비축 실태점검

1) 방역물자 확보·비축 실태점검

가) 비축기준

- (1) 대상물자 : 살충제, 살균제, 우물소독약 등
- (2) 비축기준 : 국립보건원의 전염병관리사업 지침에 의거 비축 관리

(3) 보관장소 : 일반 방역약품과 같이 보건소에 비축 관리

나) 확보·관리

- (1) 최소한의 비축 관리량을 상시 유지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 정기적으로 보관상태 점검
- (2) 유효기간이 있는 소독약품은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그 기간 내에 일반 소독용으로 대체 사용하여 변질방지

다) 점검시기

- (1) 1월부터 4월까지 : 1회 이상
- (2) 5월부터 10월까지 : 수시점검

2) 침수방지용 장비 확보·관리 실태점검

가) 확보기준

- (1) 종류 : 양수기, 수중펌프, 호스, 차수판, 비상발전기, 전선 등
※ 대형 양·배수 장비 등 확보
- (2) 확보기준 : 침수피해상황 및 상습침수지역 등을 감안하여 실제로 침수되었던 과거 사례를 조사하여 적정한 소요량 확보
- (3) 보관장소 : 군·읍·면사무소 창고, 관내 수해상습지역 등

나) 점검 및 관리

- (1) 보관 장비는 우기 전에 시험 가동하여 재해발생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정비
- (2) 보관관리는 읍·면사무소 및 상습침수지역 주민에게 위탁관리로 구분하여 관리
- (3) 보관창고 내 장비는 관리카드 비치 및 관리책임자 지정 관리
- (4) 위탁관리 장비는 개별 관리카드를 비치하여 주민 전출·입시장비를 회수하여 분실, 고장 등 이상 유무를 확인 관리
- (5) 재해발생시 주민 스스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양수기사용요령” 등과 같이 장비별 리플릿을 제작 배포 등 교육·홍보 실시

다) 점검시기

- (1) 1월부터 4월까지 : 1회 이상
- (2) 5월부터 10월까지 : 수시점검

카. 민·관·군 공동 대응체계 구축

1) 목적

- 가) 재난예방 물자·자재 비축 등에 대한 각 기관의 명확한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확립
- 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인적·물적 동원체계 구축으로 재난발생 시 신속한 지원 및 현장대응 능력제고

2) 근거

- 가) 재난발생시 지역본부장이 취하여야 할 응급조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7조)

- (1) 경보의 발령 또는 전달이나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 (2) 진화·수방·지진방재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
- (3)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법, 그 밖의 질서의 유지
- (4) 긴급수송 및 구조수단의 확보
- (5) 급수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
- (6) 현장 지휘통신체계의 확보

- 나) 지역본부장은 응급조치를 위하여 관할구역안의 군부대 및 행정기관의 장에게 응원요청 가능(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4조)

- 다) 지역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방위대 동원,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제5870부대에 물적·인적 자원 동원요청 가능(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9조)

3) 협조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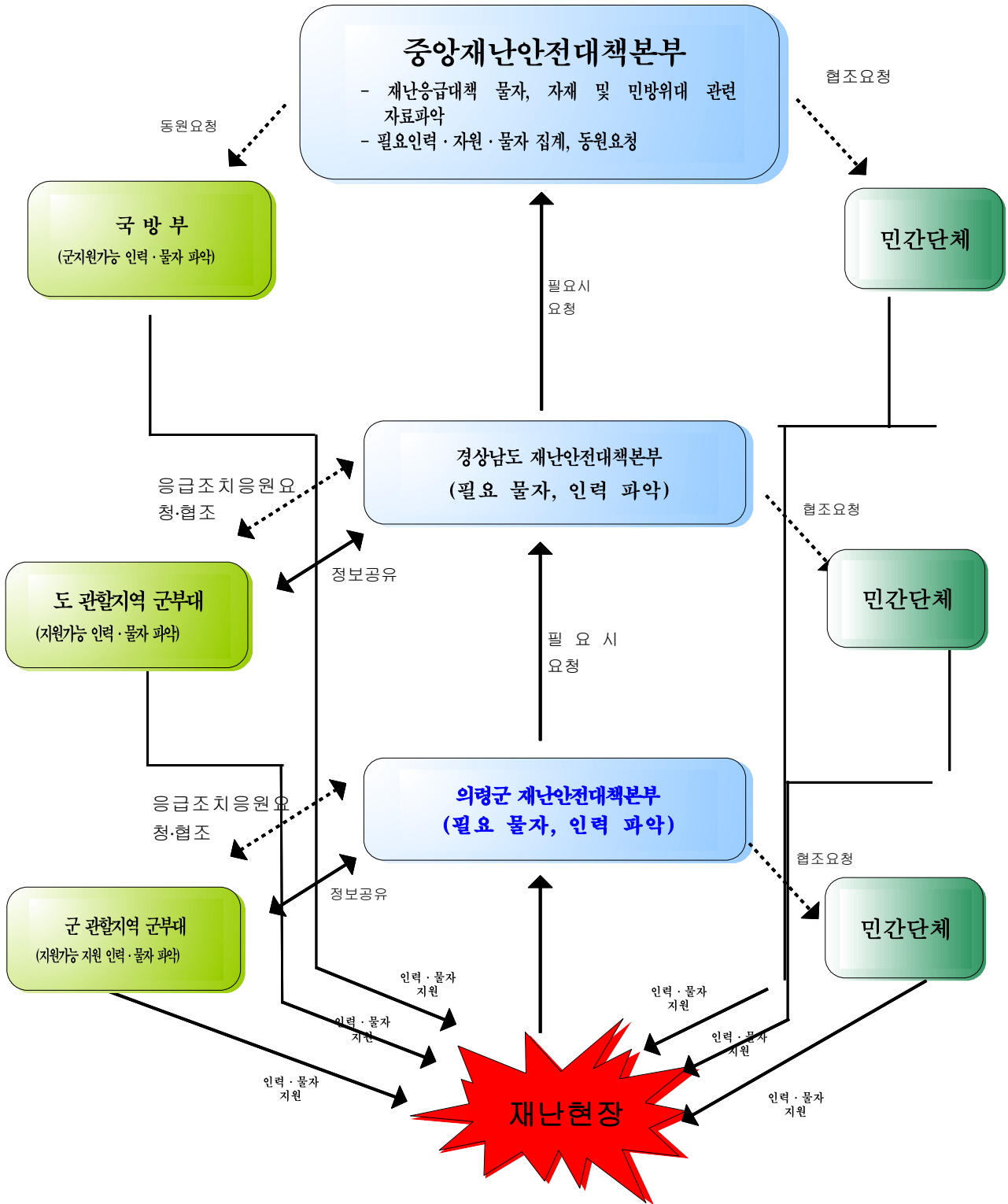
- 가) 소방방재청, 도

- (1) 재해 응급물자에 대한 파악 및 정보공유
- (2) 국방부와 응급조치 응원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

- 나) 국방부

- (1) 군부대 인적·물적 자원파악 및 정보공유
- (2) 중앙·지역본부장의 응급조치 응원요청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 (가) 도로·항만 등 공공시설 재해복구를 위한 인적·물적 등
(지역본부장, 중앙본부장)
 - (나) 강제대피, 통행제한, 대피명령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적자원 파견
(지역본부장) ⇒ 재난사태 선포 시는 중앙본부장 가능
 - (다) 재난지역의 질서유지를 위한 군부대 동원 등

《 협력 체계 구축도 》



3. 대응대책

가. 재난발생 직전의 대책

1)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 근무체제 확립

가) 근무체제 : 5단계(평상시, 사전대비, 비상단계 I·II·III)로 편성·운영

(1) 평상시 :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2) 사전대비체제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태풍 내습 예상, 호우·대설 예비특보, 한파·강풍·폭염 예비특보 및 주의보 및 경보발령으로 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3) 비상단계 I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태풍 예비특보, 호우·대설 주의보발령 및 한파·강풍·폭염 경보로 피해가 발생한 상황으로 전국 또는 지역적인 재난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중앙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를 비상근무 I 체제로 전환하는 단계 또는 지역본부장이 인정하는 이에 준하는 단계

(4) 비상단계 II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태풍 주의보, 호우·대설 경보발령으로 전국 또는 지역적인 재난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중앙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를 비상근무 II 체제로 전환하는 단계 또는 지역본부장이 인정하는 이에 준하는 단계

(5) 비상단계 III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태풍 경보발령 및 호우·대설 경보로 피해가 발생한 상황으로 전국 또는 지역적인 재난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중앙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를 비상근무 III 체제로 전환하는 단계 또는 지역본부장이 인정하는 이에 준하는 단계

〈 기상상황에 따른 근무요령 〉

구 분	기 상 상 황	근 무 요 령
평상시 체제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 담당실과 상황유지
사전 대비 체제	태풍 내습예상 시, 호우·대설 예비특보, 한파·강풍·폭염 예비특보 및 주의보 및 경보가 발표되어 재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본부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 본부요원 3명 2개조로 격일제 교대근무 · 비상 단계로의 전환 준비
비상단계 I	태풍 예비특보, 호우·대설 주의보, 한파·강풍·폭염 경보로 피해발생 시 또는 본부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 한 경우	· 재해대책본부 설치(필요시) -합동근무(유관기관포함) · 본부요원 3개조로 교대근무 · 전 공무원 비상근무 명령하달(발동)
비상단계 II	태풍 주의보, 호우·대설 경보	· 재해대책본부 설치 -합동근무(유관기관포함) · 본부요원 3개조로 교대근무 · 전 공무원 비상근무 명령하달(발동)
비상단계 III	태풍 경보, 호우·대설 경보로 피해 발생 시	· 재해대책본부 설치 -합동근무(유관기관포함) · 본부요원 3개조로 교대근무 · 전 공무원 비상근무 명령하달(발동)

(3) 재해대비 비상근무 인원계획

구 분	기 상 조 건	근 무 인 원		근 무 요 령
		본청,사업소	읍·면	
평상시 체제	기상특보 없음	· 재난부서(20시)→ 2명 · 야간당직근무→ 3명 · 상황에 따라 인원 증감	· 담당자 1명 (근무시간 내) · 상황에 따라 인원 증감	· 기상상황 점검 · 재해취약시설 점검
사전대비체제	태풍 내습 예상 시, 호우대설 예비특보, 한파·강풍·폭염 예비특보, 한파·강풍·폭염 예비특보 및 주의보 및 경보	· 재난부서(20시)→ 3명 · 야간당직근무→ 3명 · 상황에 따라 인원 증감	· 담당자 1명 (근무시간 내) · 상황에 따라 인원 증감	· 기상상황 점검 · 재해취약시설 점검 · 비상체제로 전환준비
비상단계 I	태풍 예비특보, 호우·대설 주의보, 한파·강풍·폭염 경보로 피해발생 시	· 근무인원: 과별 직원 1/3교대근무 · 상황에 따라 인원 증감	· 직원 1/3 교대근무 · 상황에 따라 인원 증감	· 재해대책본부설치(필요시) : 합동근무(유관기관포함) · 13개 협업기능 실무반 최대 18명 교대 근무
비상단계 II	태풍 주의보, 호우·대설 경보	· 근무인원: 과별 직원 1/2교대근무 · 상황에 따라 인원 증감	· 직원 1/2 교대근무 · 상황에 따라 인원 증감	· 재해대책본부설치 : 합동근무(유관기관포함) · 13개 협업기능 실무반 최대 19명 교대 근무
비상단계 III	태풍 경보, 호우·대설 경보로 피해 발생시	· 근무인원: 과별 직원 1/2교대근무 · 상황에 따라 인원 증감	· 직원 1/2 교대근무 · 상황에 따라 인원 증감	· 재해대책본부설치 : 합동근무(유관기관포함) · 13개 협업기능 실무반 최대 20명 교대 근무

- (4) 주민에 대한 재난 예·경보 신속 전파
 - (가) 언론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 강화
 - (나) 매스컴을 통한 대국민 행동요령 홍보
 - (다) 방재홈페이지를 통한 기상정보 사항 전달
 - (라) 상습침수지역은 자동음성통보 시스템을 통한 앰프방송 실시
 - (마) 방재관련 유관기관과의 홍보 협조 강화

(5) 읍·면에서는 군 재해대책본부에 준하여 편성 운영

(6) 홍수예보 : 낙동강 홍수 통제소장이 발행

나) 실무반 편성 : 비상단계 시

(1) 실무반은 재난상황관리, 긴급생활안정지원, 긴급 통신지원, 시설 응급 복구, 에너지 기능복구, 재난자원 지원, 교통대책, 의료 및 방역서비스, 재난현장 환경정비, 자원봉사 관리, 사회질서 유지, 수색·구조·구급, 재난수습홍보 13개 반으로 편성하되, 군 재해관련 실·과·소 공무원과 유관기관에서 파견된 인원으로 구성

- (가) 재난상황관리 : 안전관리과 직원으로 구성
- (나) 긴급생활안정지원 : 주민생활지원실 직원으로 구성
- (다) 긴급 통신지원 : 행정과 직원으로 구성
- (라) 시설응급복구 : 관련실과 직원으로 구성
- (마) 에너지 기능복구 : 경제교통과 직원으로 구성
- (바) 재난자원 지원 : 주민생활지원실, 안전관리과 직원으로 구성
- (사) 교통대책 : 경제교통과, 건설도시과 직원으로 구성
- (아) 의료 및 방역서비스 : 보건소 직원으로 구성
- (자) 재난현장 환경정비 : 환경수도과 직원으로 구성
- (차) 자원봉사 관리 : 주민생활지원실 직원으로 구성
- (카) 사회질서 유지 : 기획감사실 직원으로 구성
- (타) 수색·구조·구급 : 행정과 직원으로 구성
- (파) 재난수습홍보 : 기획감사실 직원으로 구성

다) 실무반 준수사항

- (1)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자긍심을 갖고 상황관리 임무 수행
- (2) 근무자는 근무시간동안 상황실에 정위치 근무(자리이탈 시에는 실무반의 장에게 보고)
- (3) 실무반원으로서 실무반의 장 지시 및 자료요구에 성실히 수행
- (4) 중식 및 석식은 실무반별 2교대 식사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용

라) 상황파악 및 보고체계

- (1) 시설응급복구반, 긴급생활안전지원반
 - (가)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위주로 실과별 소관부서를(도로 유실 : 건설도시과, 이재민발생 : 주민생활지원실, 농작물피해 : 농업기술센터) 최대한 활용, 상황파악
 - (2) 자원봉사관리반
 - (가) 군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여러 민간단체 유기적인 협조하에 자원봉사자 정보 수집 및 전달
 - (나) 군 자원봉사센터(주민생활지원실)는 자원봉사 지역·필요인원 및 애로사항 파악
 - (3) 수색·구조·구급반
 - (가) 소방기관과 긴밀한 협조 하에 구조구급상황 파악 및 자료 제출
 - (4) 상황관리반
 - (가) 주요인사 방문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 (5) 재난수습 홍보
 - (가) 보도지원 및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 전파
 - (6) 상황관리반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실무반의 장에게 협조요청
- ※ 전화사용은 최대한 자제(국가안전관리시스템 입력 및 자료집계가 불일치 할 경우 사용)

마) 평상시체제의 실무반 편성기준

(1) 조직 및 임무

구 분	담 당 업 무
반 장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 업무 총괄(복구지원담당)
재난정보 관리팀 (1인)	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에 대한 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및 총괄조정 2. 기상상황 등 재난진행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3. 재난정보 수집·분석 4. 재난 대응·응급복구 상황에 관한 자료수집·관리 5. 기타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상황분석 판단팀 (1인)	1.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2. 재난의 예측 및 분석관리 3. 재난피해정보의 수집·분석 및 전파 4. 국내 언론보도 등 재난정보 수집·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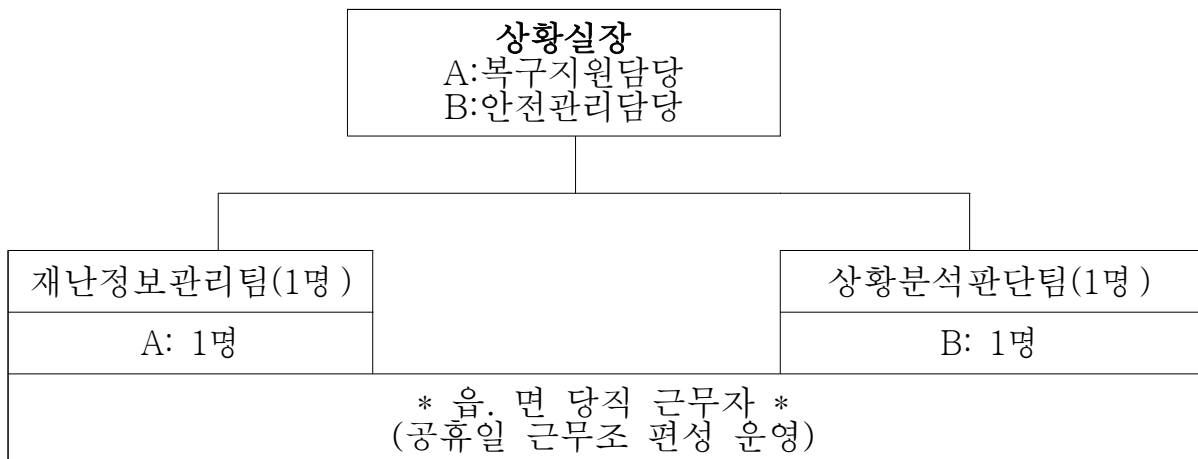
(2) 근무방법

(가) 재난정보관리팀 및 상황분석판단 : 24시간 2교대 근무 원칙

(나) 화재·구조·구급업무의 지휘·통제·상황관리팀은 별도 운영

(다) 본 실무반 편성은 재난종합상황실 인력 확보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

(3) 평상시체제 재난안전상황실 조직도



바) 사전대비체제의 실무반 편성기준

(1) 조직 및 임무

구 분	담 당 업 무
반 장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 업무 총괄(복구지원담당)
재난정보 관리팀 (2인)	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에 대한 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및 총괄조정 2. 기상상황 등 재난진행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3. 재난정보 수집·분석 4. 재난 대응·응급복구 상황에 관한 자료수집·관리 5. 기타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상황분석 판단팀 (1인)	1.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2. 재난의 예측 및 분석관리 3. 재난피해정보의 수집·분석 및 전파 4. 국내 언론보도 등 재난정보 수집·분석

(2) 근무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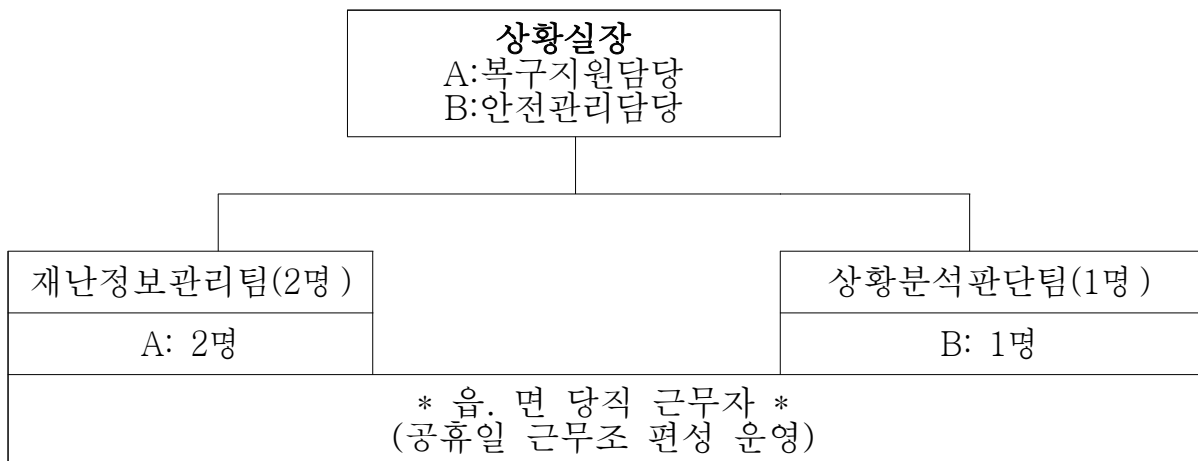
(가) 재난정보관리팀 및 상황분석판단 : 24시간 2교대 근무 원칙

(나) 화재·구조·구급업무의 지휘·통제·상황관리팀은 별도 운영

(다) 본 실무반 편성은 재난종합상황실 인력 확보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

(라) 비상단계 준비 및

(3) 평상시체제 재난안전상황실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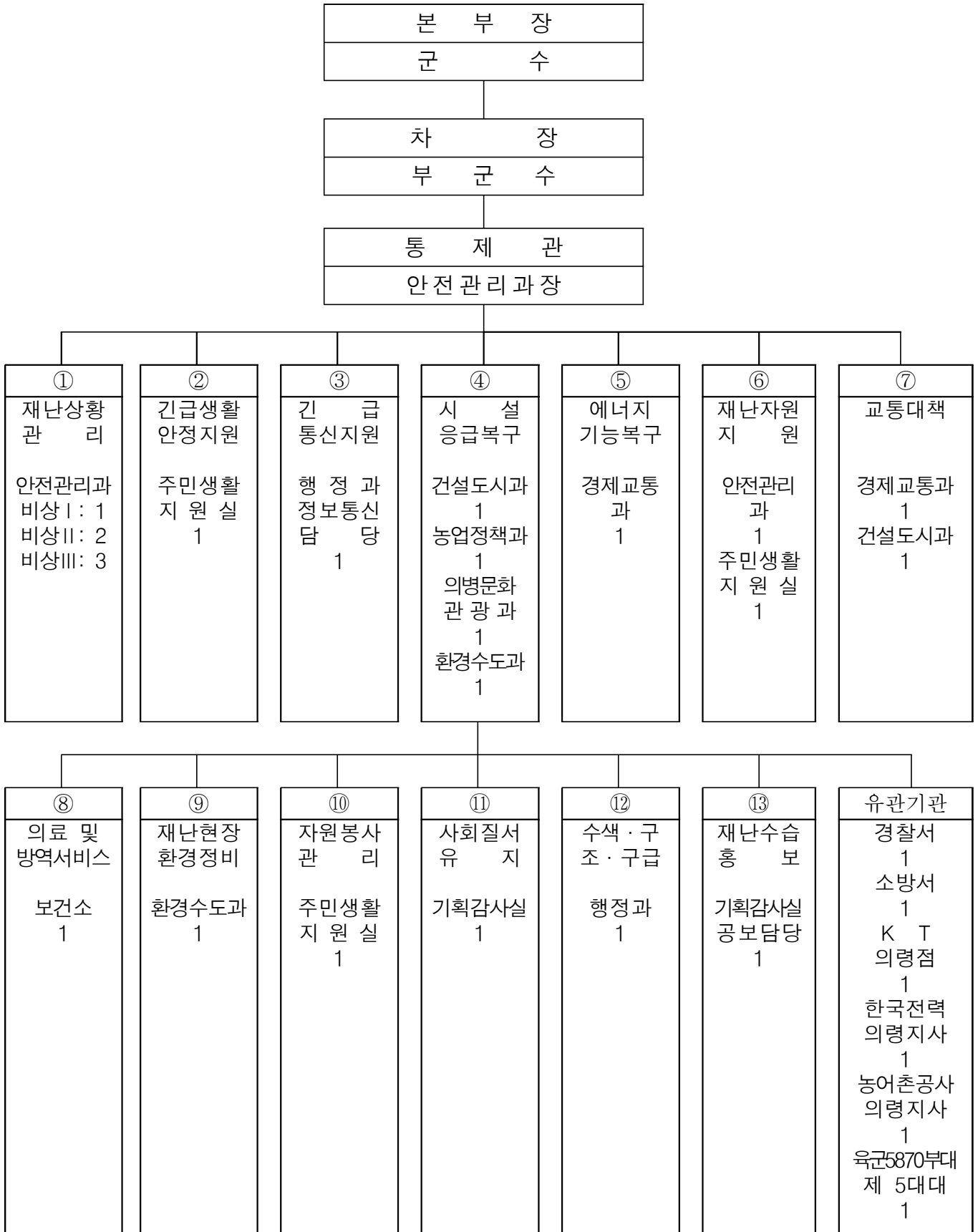
사) 비상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

(1) 조직 및 임무

구 분	담 당 업 무
통 제 관	본부장차장 및 총괄조정관 보좌, 비상상황 I 에서 상황업무 총괄
① 재 난 상황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주요인사 종합상황실 방문시 보고서 작성 3.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상황 등 파악 4. 기상상황 등 재난의 예측분석관리 및 전파 5. 기상 및 수습대처관련 특별지시사항 6. 피해정보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 수집·분석 7. 긴급상황 관리(즉보사항 처리 : 인명구조, 인명피해, 교통두절상황 등) 8. 재난진행상황 파악·전달·처리 및 사전예방조치 9. 상황관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10.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관련 장비운영 11.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12.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13. 각종 여론·정보수집, 민원처리 등 14.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15. 현장상황지원관 파견·관리 및 중앙수습지원단 운영 지원
② 긴급생활 안정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난구호활동본부 및 구호지원반 설치·운영·지도 2. 이재민수용시설 지정, 구호센터 설치·운영 3. 사망·실종자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③ 긴 급 통신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신두절지역 이동용 통신시설 등 응급복구 지원 2.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 기관간 정보통신체계 운영 지원
④ 시 설 응급복구	<p>※공통사항</p> <p>- 기상특보에 따른 해당 시설물 별 상황관리체계유지 및 피해 지역 시설물조사, 사회공공시설 응급복구 등 지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용 배수시설, 저수지, 경작로 등 농업시설 복구지원 2.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사유시설 복구지원 3. 축산관련 시설 응급복구지원 4. 상·하수도 시설 및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 간이상수도, 오수 처리시설 등 복구지원 5. 산사태 및 사방댐 등 공공시설 응급복구지원 6. 공공건축물 및 주택 등 피해시설 응급복구 지원 7. 관광시설, 문화재 등 응급복구 지원 8. 도로, 교량 등 사회공공시설 응급복구 지원 9. 하천 시설물 응급복구지원

구 분	담 당 업 무
⑤ 에너지 기능복구	1. 가스·전기·유통 등 피해시설 기능 회복 지원 2. 에너지 공급시설 피해상황 파악
⑥ 재난자원 지 원	1. 방재자원 공동 활용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한 자원배분 2. 긴급 구매물품 조달 협조 3.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동원, 장비·인력 부족 파악 4. 응급 복구 동원 장비·인력 등 투입 5. 군 인력·장비 지원 요청
⑦ 교통대책	1. 재난 지역 교통수단 제공 2. 피해도로, 교량 긴급복구, 우회도로 지정 3. 제설장비 지원 및 제설작업 실시
⑧ 의료 및 방역서비스	1. 방역물자 및 의약품 비축량 점검 2. 재난발생지역 의료서비스 지원
⑨ 재난현장 환경정비	1.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 운영 2. 재난발생지역 환경 신속 정비 3. 주민에게 분리배출 방법 및 장소 안내 홍보
⑩ 자원봉사 관 리	1. 자원봉사자 동원 및 배정, 기술인력 지원 등 2. 응급복구 대민지원활동 추진 3. 민간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파악 및 관리 4. 자원봉사자 안전관리
⑪ 사회질서 유 지	1. 주민대피 등 재난지역사회질서 유지 2. 경찰서와 업무연계 및 상황전파 3. 재난지역 주민긴급대피 지원 4. 사상자 신원 등 현황 파악 5. 피해발생 및 우려 지역의 출입통제 실시
⑫ 수색·구조·구급	1. 수색·구조·구급 지원 2. 소방서 상황전파 및 업무연계 3. 저지대 침수지역 배수활동 지원
⑬ 재난수습 홍 보	1. 재난 대처·수습과 관련한 각종 정보 배포·조정 2. 재난현장 취재지원 등 3. 대국민 행동요령 및 주의사항 등 홍보 4. 언론브리핑 및 정부합동 담화문 발표

(2)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 재난안전상황실 조직도



아) 실과별 임무분담

실과별	소관사항
기획감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정도에 따라 재해대책반 구성 운영 · 예산의 집행계획 수립 · 재해피해 긴급 복구 시 부족재원 전용 및 예비비 사용 검토 · 재해복구에 따른 추경예산 편성조치 · 대군민 행동요령 홍보 · 각종 담화문 발표 시 홍보 · 경찰서와 업무 연계와 협조체제 유지
주민생활지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호 비축물자 점검정비 (소요량 파악 및 충당) · 이재민 구호대책 및 구호단체 구호금품 점검 · 구호양곡 관리 및 사용검토 · 구호사업비 소요판단 및 조치 · 여관 등 다수인 사용 대피계획 등의 조치 (협조) · 여성단체 봉사활동 전개(미아대책, 의료구호, 수용소 급식구호 등 근로봉사) · 장애인, 노인, 아동 대피계획 수립 · 복지회관, 경로당 등에 대피계획 수립
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대책 상황발생시 공무원 복무 단속 · 제반통신망 점검정비(T.T, FAX, 행정자동 등) · 비상 통신연락망 점검 정비 · 재해대책에 따른 공무원 긴급출원 및 배치검토 · 공무원 복무단속 · 위험지구 주변 주민여론 수집 및 인력배치 검토 · 이재민 구호 협조 · 정보의 신속한 전파와 대주민 계몽, 홍보 · 상황 악화와 대형피해 예방 및 사태수습대책 · 시설물 피해복구계획 수립 · 주요시설에 대한 피해복구계획(협조) · 관용차량의 운영계획 · 민심동향 및 미담사례 등 확인 · 민방위대 임무고지 및 동원체계 확립 · 민방위 시설 장비점검
재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피해 농가 지방세 감면조치 대책 · 조달물자(물품)의 수급대책 · 재해대책 비 예산의 집행 · 국·공유재산 점검 등 관리 및 복구
의병문화관광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장, 공연장 등 다수인이 사용하는 집단 시설물의 인명피해대책 · 문화재 등 시설물 피해복구계획수립 · 관광개발 사업지구 점검 정비
민원봉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물의 오염방지 관리
경제교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 및 농공단지의 재해 긴급복구용 장비, 자재확보 · 주요 공장시설에 대한 재해 사전예방 홍보 · 근로자 노임체불 일소 및 이재민 고용확대 · 피해시설물 계획 수립 · 재해 시 수송동원계획 검토 · 재해 시 지역의 교통통제 등 종합계획 수립 - 유관기관 협조

실 과 별	소 관 사 항
환경수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 시 폐기물 처리대책 · 집단수용시설 등 쓰레기 처리대책(기동반, 방역반 설치운영 검토) · 피해시설물 복구계획 수립 · 유해 화학물질 및 폐수 배출업소 지도, 단속 · 상수도 및 식수관리 · 상·하수도 등 시설물 피해 시 비상급수대책 · 상수도 시설 등 기타 식수원 수질관리 · 간이상수도 시설 등 피해복구 계획수립 · 하수도시설 점검 정비
산림녹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사태 발생에 대비한 주변 대피소 지정 · 산림시설 피해복구 계획수립 (사방 및 조림, 양묘, 임도시설)
건설도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구조물의 설계 및 시공 · 주요 도로 교량 시설물의 점검 정비 · 피해도로 교량의 긴급복구, 우회도로 지정 등 교통소통대책 -교통행정담당과 협조체제 유지 · 시공중인 주요구조물의 안전검토 및 대책 · 긴급복구 중기동원 및 건설업체 관리 · 저수지 붕괴 등에 의한 하류지역 인명대피계획 (점검 순찰강화, 신호, 대피소지정) · 피해 시설물 복구계획 수립 · 소규모 시설물 등 점검 · 소규모 시설물 등 피해복구 계획 수립 · 주요도시계획 시설물의 점검정비
안전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상황 관리 및 자연재난업무 총괄 · 주요 방재시설물의 점검 정비계획 수립 · 피해시설물 복구계획(총괄) · 재해대책 상황실 설치운영 · 수난구조 사항 계획수립 · 하천시설물 점검 정비 · 가로등 누전 방지 및 긴급 복구 · 주택 시설 긴급 복구
보 건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물자 및 의약품 비축량 점검정비 · 예비 의료기관 지정 및 동원 의료기관 기능강화 · 대민 간이(이동) 진료 반(소) 설치운영 · 이재민 수용소에 대한 방역 실시 · 전염병 예방대책 - 방역기동반 편성활동 · 전염병 환자대책 · 식수 및 음식물의 오염방지 · 부상자 및 사망자 파악과 후속조치

실 과 별	소 관 사 항
농업기술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작물 등의 피해복구 계획수립 · 비닐하우스 피해예방대책 수립 · 농산물 유통체계 확립 및 원활한 공급 조치 · 재해 시 양곡수급계획 (양곡 배급제 실시 등) · 양곡 보관창고 점검 및 보호대책 · 비상시 양곡 유통체제 확립 · 축산물 유통, 공급 방안 강구 · 사료 공급 대책 · 가축 전염병 예방 · 피해 시설물 복구계획 ·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피해예방대책 수립
시설관리사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회관 및 체육센터 피해 예방 · 시설물의 점검 정비 계획수립 · 피해 시설물 복구계획

자) 유관기관 임무 및 연락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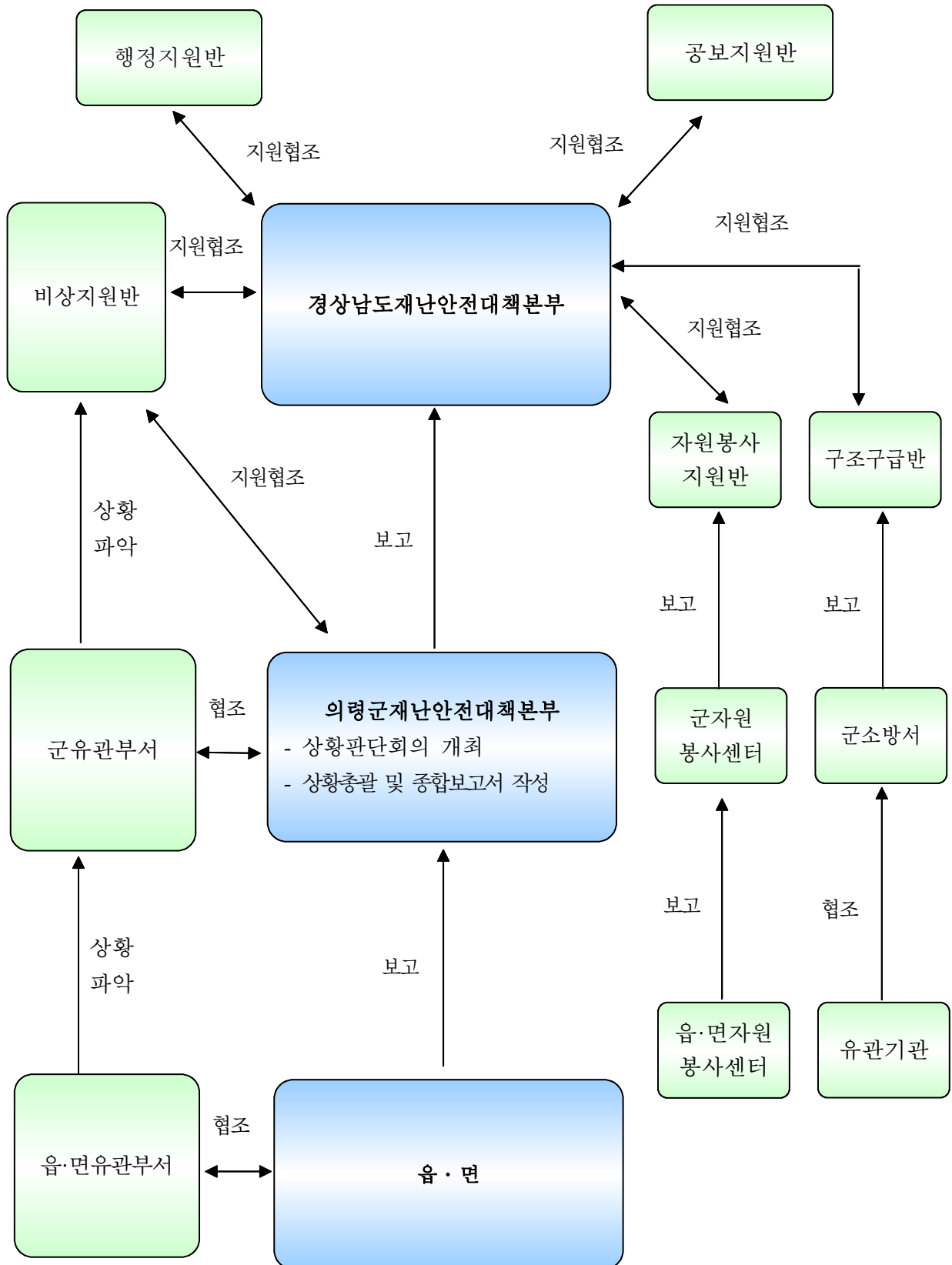
부 서 별	소 관 사 항
의령경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신고 및 인명구조 지원 · 재해위험 및 피해 지역 교통통제, 치안유지 · 주민대피 지원 · 재해지역 정보 수립
5870부대 5대대 15중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시설 보호 및 복구 · 인명구조 요청 시 즉시 지원 - 헬기 등 · 재해복구 군 장비 및 인력지원
의령교육지원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시설 보호 및 복구 · 이재민 수용시설 지원 · 이재 학생 대책 - 공납금 면제 및 지원 · 방재교육 - 학생에 대한 방재교육 및 홍보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수리시설물 보호 및 순찰강화(배수장 등) · 농경지 및 농작물 보호와 관리
농협중앙회 의령군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곡 보관 창고 관리 · 농작물 방재용 농약확보 및 공급
한국전력의령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시설 응급복구 · 전기안전 관리홍보 · 각종 양·배수장 전기안전 점검
KT함안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시설 · 통신두절 대책



차) 읍·면 재난안전대책 통신망

구분	행정전화	일반전화	FAX	위성 전화
의령	4370	570-4370	570-4209	
가례	4410	570-4410	570-4219	
칠곡	4450	570-4450	570-4229	
대의	4490	570-4490	570-4239	
화정	4530	570-4530	570-4249	
용덕	4570	570-4570	570-4259	
정곡	4610	570-4610	570-4269	
지정	4650	570-4650	570-4279	010-033-7994
낙서	4690	570-4690	570-4289	010-033-7995
부림	4770	570-4770	570-4299	
봉수	4790	570-4790	570-4309	
궁류	4830	570-4830	570-4319	010-033-7996
유곡	4870	570-4870	570-4329	

〈상황실 운영 체계도〉



2) 상황판단회의 개최

- 가) 근거 : 의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제8조
- 나) 목적 :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함
- 다) 구성 : 안전관리과장,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실·과의 실·과장, 관계기관의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자(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의 자문)

라) 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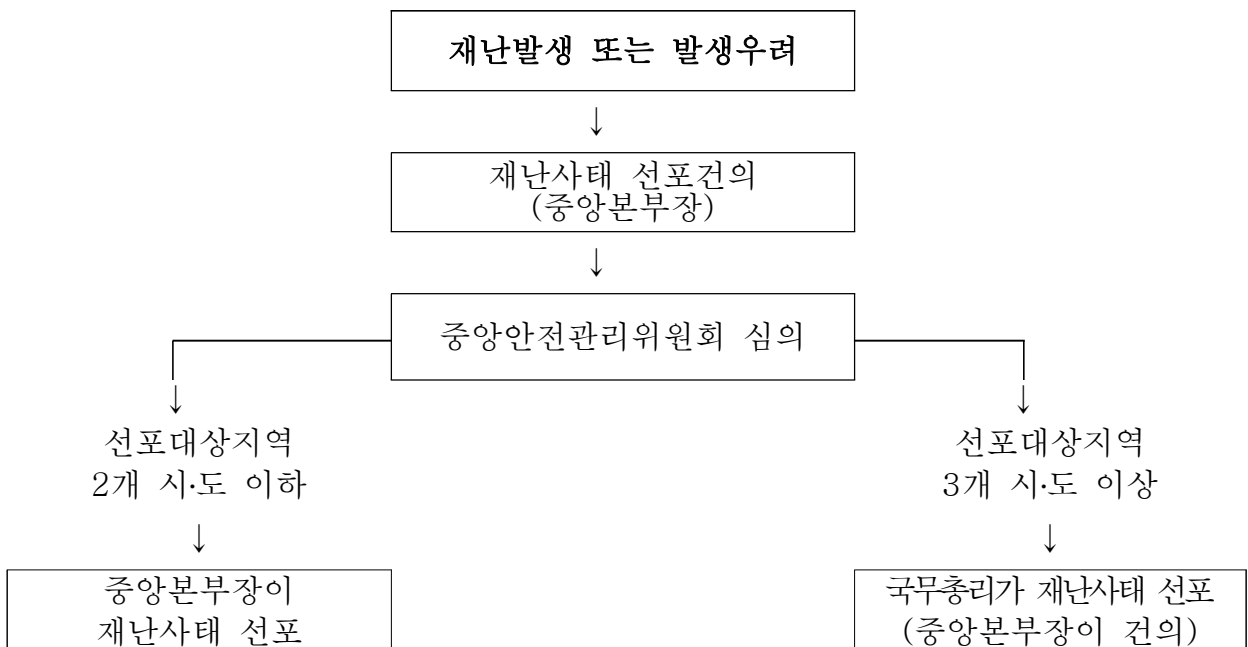
- (1) 재난상황의 진행단계별 대처계획 협의
- (2) 실무반의 운영 및 파견근무자 소집대상범위 결정 등

3) 재난사태선포 검토

가) 도입배경 및 법적근거

- (1)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대피명령·응원 등의 응급조치와 공무원 비상소집 등 재난대비 및 대응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
- (2)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나) 재난사태 선포절차



다) 선포기준(안)

- (1) 태풍내습 시

- (가) 최대풍속 30m/s 이상, 중심기압 975hpa 이하인 태풍이 우리나라에 상륙하여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나) 태풍 전면에 수렴대가 형성되어 많은 비가 내린 후 태풍이 내습하여 강풍과 국지성 집중호우가 우려되는 경우
- (다) 태풍이 우리나라에 인접하여 서해상을 통과하면서 우리나라가 태풍의 위험반원에 드는 경우

(2) 집중호우 시

- (가) 전국 일원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어 일강우량 2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나) 중국 또는 서해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우리나라에 정체하면서 집중호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우리나라에 따뜻한 공기층이 형성된 상태에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수렴대가 형성되어 국지성 집중호우가 우려되는 경우
- (라) 저기압이 장마전선을 타고 이동하면서 활성화되어 심각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라) 향후 제도보완 계획

- (1) 국가 차원의 재난사태 선포보다는 외국(미국)과 마찬가지로 광역 시·도 차원에서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 검토

4) 읍·면 및 유관기관의 대응대책에 대한 지원

가) 풍수해 대응 활동체제의 확립

- (1) 비상근무체제에 따라 직원의 비상소집, 재난대책본부 설치 운영, 각종 재난정보수집과 연락체계 확립 등 대응 조치

나) 주민에 대한 재난 예·경보 신속 전파

- (1) 언론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 강화
- (2) 방재관련 유관기관과의 홍보협조 강화 등

다) 기상상황 및 재난상황의 전달

- (1) 상황전달
- (2) 주민의 대피
- (3) 재난사전조치 활동
- (4) 학생보호대책

나. 재난발생 직후

1) CP형 비상지원본부 운영 지원 및 상황 공동관리제 운영

가) 재난현장 비상지원본부(CP) 설치·운영 지원

(1) 통합지휘 : 지역본부장

(가) 현장지휘총괄 : 재난관리책임기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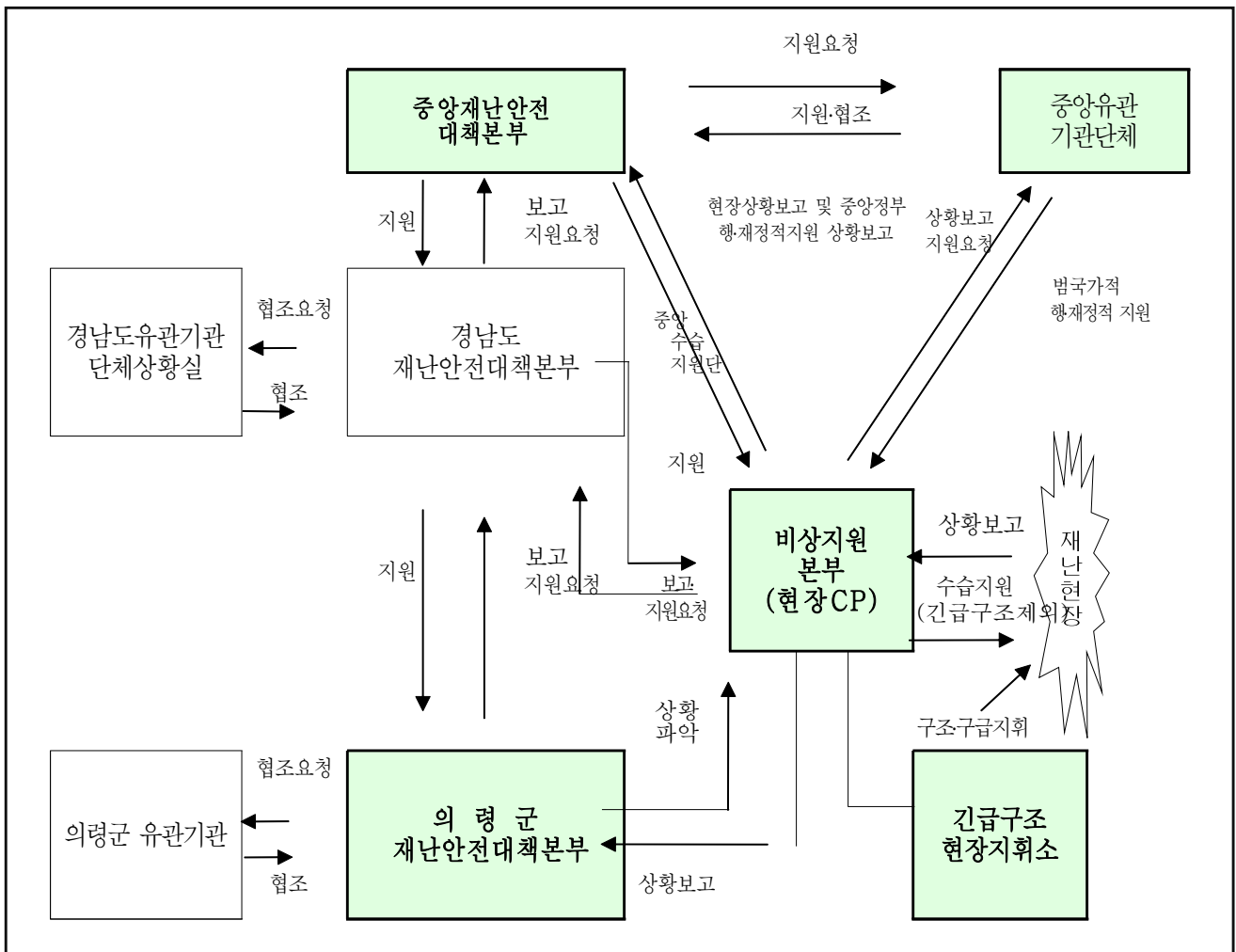
※ 긴급구조관련 현장지휘는 긴급구조 통제단장이 수행

나) 중앙과 지방간 상황 『공동관리제』 운영

(1) 파급효과가 큰 재난발생 예견 시, 중앙대책본부 요원 사전 파견

(2) 현장 CP 지도, 재난현장 상황파악 및 지도관리기능 수행

<재난발생시 상황관리 체계도>



2) 구조·구급 활동 지원

가) 인명구조를 위한 현장지휘소 설치 운영 지원

- (1) 고립자 구조,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이송
- (2) 현장접근 통제, 현장주변의 교통정리, 기타 효율적인 긴급 구조
- (3) 군부대의 구조·구급활동 지원

3) 피해상황 파악·전파

가) 인명피해, 이재민발생, 주택·농작물 침수피해, 가축폐사 등 피해현황 파악 및 전파

다. 응급구호 및 복구활동 전개

1) 수재민 응급구호활동 실시

- 가) 사망·실종자 유가족에 대한 장례위로금 지원
- 나) 이재민에 대한 응급구호비용 지원

2) 방역 및 방제활동 파악

- 가) 수인성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파악
 - (1) 장티푸스 등 예방접종
 - (2) 침수가옥 등 방역소독

나) 침수농경지 농작물 병충해 방제활동

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폐사가축 매몰 및 방역

3) 주요시설 응급복구 실시

- 가) 도로·하천·교량 등 생활기반 공공시설의 조기 응급복구를 위한 재해대책 예비비 긴급지원
- 나) 파손된 공공시설에 대한 민관군 공동대응 복구

라. 자원봉사활동 지원

1) 『재난극복 자원봉사 총연합』을 통한 재난지역 민간자원봉사활동 활성화

가) 협약체결일 : 2004. 9. 24.

나) 가입단체(7): 대한적십자사, 새마을운동중앙회, 전국재해구호협회, 재해극복 범시민연합, 한국구조연합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자원봉사센터협의회

마. 군 및 유관기관의 대응대책

1) 재난정보 수집·연락 및 통신수단 확보

가) 피해상황 조기파악 활동

- (1) 재난발생 후 인명피해 및 국민생활 필수시설 등 피해상황에 관한 재난정보 수집, 관계기관에 보고 및 전파
- (2) 대규모 재난으로 교통두절시 항공기지원으로 피해상황 파악

나) 응급조치 활동정보 교환

- (1)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 활동사항을 관계기관에 보고하고 유관기관과 정보교환

다) 통신수단의 확보

- (1) 재난발생시 중요 통신수단을 우선적으로 확보 조치

2) 유발재난 및 2차 피해 방지 활동

가) 침수피해의 확대방지

- (1) 침수피해지역의 배수실시와 제방붕괴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 확대방지
- (2) 침수피해의 확대를 막기 위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실시

나) 토사재난의 확대방지

- (1) 토사재난 위험장소를 점검,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나 주민에게 알리고 대피 및 응급조치
- (2) 토사재난 발생시 신속히 피해상황과 피해의 확대가능성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불안정토사의 제거, 가설방호울타리의 설치 등 응급조치

3) 구조·구급 활동

가) 구호·구급체제의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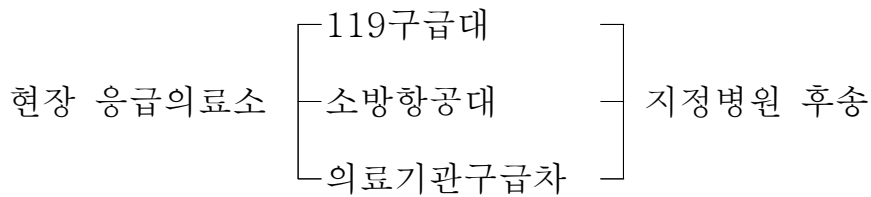
- (1) 구조체제 정비 : 군수 또는 통제관은 지진 및 재해 발생시 신속한 인명구조, 환자수송 등을 위하여 지진발생지역에 현장지휘본부(소) 설치운영

(2) 구조·구급대 정비 및 보강

※ 현장 응급 의료소 역할

- (가) 응급조치가 완료된 부상자의 병원후송을 위하여 119구급대와 항공대, 의료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 (나) 구조·구급대 정비 및 보강

※ 후송체제도



나) 자원봉사자 대책

- (1) 자원봉사자의 모집·등록·훈련·과견을 위한 센터의 설립 추진
 - (가) 다양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 양성
- (2)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방재훈련 실시
 - (가)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위치 배정
 - (나) 행정과의 역할 분담
- (3) 재해자원봉사자의 모집·훈련, 과견 등의 제도화(종류: 의료, 건축, 소방 등)

다) 피해자 신상관리

- (1) 지진에 의한 정신적인 상처나 피난소에서의 장기화 등에 의한 정신적 피로에 대한 치유계획 수립
- (2) 인명구조를 위한 현장지휘소 설치 운영
 - (가) 고립자 구조,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이송
 - (나) 현장접근 통제, 현장주변의 교통정리, 기타 효율적인 긴급 구조
 - (다) 군부대의 구조·구급활동 지원
- (3) 고립지역 구조대책
 - (가) 고립예상지역 주민에 대해 군·경찰, 소방서, 마을이장 등 구조관련기관의 연락처 및 신고요령 안내 홍보

- (나) 주민대피 요령과 대피시설이 포함된 안내홍보
- (4) 주민 및 자원봉사자 등의 역할
 - (가) 이장 및 지역자율 방재단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피해자의 구조·구급 활동을 하고 구조·구급활동을 실시하는 각 기관에 협력

4) 의료 활동

가)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운영

- (1) 의료 구호반은 대피장소 및 재난현장에 구호소 설치
- (2) 중상자 응급처치, 후방의료기관으로 운송순위 결정, 수송 곤란자 및 경상자 의료조치, 조산구호, 사망자 확인 사체 검안
- (3) 응급조치가 완료된 부상자의 병원 후송을 위하여 119, 경찰, 의료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 (4) 의료구호 요청 시 구조대 파견조치

나) 의약품, 의료 기자재의 확보

- (1) 사용할 의약품, 의료기자재 등은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

5) 교통 및 통신두절지역에 대한 긴급연락체계 구축

가) 교통두절지역에 대한 연락체계

- (1) 재난발생시 긴급조치를 위한 비상 및 예비통신대책 수립

나) 통신두절지역에 대한 연락체계

- (1) 위성통신, 무선통신 등 긴급통신수단의 확보
- (2) 교환시설, 전송시설, 무선시설 등 이동용 긴급복구장비의 확보

6) 교통두절지역의 소통대책

- 가) 도로침수, 낙석, 토사유실, 교통두절지역에 대한 긴급 응급복구 조치
- 나) 도로관련기관과 협조체제 유지 및 대규모 재난발생시 군부대 지원요청
- 다) 사전에 지정된 우회도로를 활용하여 차량흐름 유도

7) 이재민 대피·수용 및 구호

가) 대피유도

- (1) 재난발생시 인명의 안전을 첫째로 지역주민 대피유도
- (2) 대피장소, 대피로, 침수구역, 토사재난위험장소 등의 소재, 재난의 개요, 기타 대피에 관한 정보의 제공

나) 이재민 수용시설

- (1) 이재민의 주거지역과 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용장소 지정
- (2) 수용시설별 평면도 및 안내도 작성 배포
- (3) 시설별 수용대상자 인적사항 작성·비치

다) 대피장소의 운영관리

- (1) 지방자치단체는 각 대피장소에 정보의 전달, 식료품, 청소 등에 관해 대피자, 주민, 자원봉사자 등의 협력체제 구축
- (2) 대피장소의 생활환경 향상과 대피가 장기화 될 경우 사생활 확보 대책 강구
- (3) 노약자, 장애인 등 재난 취약자에 대한 대책마련

라) 응급복구용 장비 동원

- (1) 1차 동원장비로 지정된 군 및 공공기관 소속장비 동원
- (2) 1차 동원장비가 부족할 경우 민간소유 장비 추가 동원

8) 비상급수 및 생필품 보급

가) 비상급수

- (1) 대상지역 : 정전으로 정수장 가동이 정지된 지역, 송·배수관 파손으로 단수된 지역, 이재민공동수용시설 등
- (2) 재난으로 인한 단수지역 및 이재민 공동수용시설에 응급 급수조 설치 운용
- (3) 개인정호, 비상급수시설, 담수된 배수지 활용
- (4) 인근정수장 또는 지역으로부터 운반급수
- (5) 생수생산업체로부터 지원 공급
- (6) 민방위기본법제14조 및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지하양수시설 등 비상급수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토록 조치

(7) 비상급수시설 확보

구 분	일 반 건 축 물	공 동 주 택
설치대상	연면적 5,000㎡ 이상	20세대 이상
설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시설 : 1일100톤/ 개소 - 비지정시설 : 10㎡마다 1일 양수량 : 0.4톤 이상 20톤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시설 : 1일100톤/개소 - 비지정시설 : 1일 양수량 세대 당 : 0.2톤 이상

(8) 수도법 제26조(긴급급수지원)의 규정에 따라 천재지변, 기타 비상시에 비상급수토록 지시

<급수목표량 기준>

- 재해발생에서 3일까지 1인 1일 4ℓ(음료수)
- 20일까지 : 1인1일 100ℓ(문화적 최소수준 용수공급)
- 28일까지 : 1인 1일 250ℓ(정상적 급수)

< 급 수 대 책 >

- 단기대책
 - 개인정호, 비상급수시설, 담수된 배수지 등을 활용
 - 비상 양수장 및 인근 지역으로부터 운반 급수
 - 수영장을 저수탱크로 전환 사용
 - 지하수개발, 관로의 응급복구
 - 간이상수도의 정비 및 개량
 -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비상급수시설의 관리 철저
 - 생수 공급업체를 파악하여 식수공급 명령
- 장기대책
 - 현행 평균 3시간분의 배수지 용량을 8-12시간 분으로 확충

나) 생필품공급

- (1) 생필품 중 필수품목만을 포장 피해발생 즉시 이재민에게 공급
- (2) 기 확보된 생필품의 긴급 수송체제 확립
- (3) 생필품 확보곤란 및 물가의 폭등 등으로 공급 곤란에 대비하여 피해발생 즉시 유통체제 점검

9) 식료 및 생필품 공급계획

가) 식료비축계획의 수립

- 나) 군수는 수송로가 개설되어 식료·생필품의 수송가능 시까지 피해자에게 3일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식료·생필품 비축
- 다) 식료 등 긴급물자의 수송시스템의 확립
- 라) 이재민 수용생활의 장기화에 따른 필요물자의 추가 확보

10)시설물 응급복구

가)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 확보

- (1) 수해지역의 응급조치 등에 필요한 노동력이 필요할 경우 군수는 전문 인력과 기타인력을 구분하여 관련기관(인근부대)에 지원 요청

나) 피해주택에 대한 응급조치

- (1) 피해주택 이재민을 수용할 임시주택 건설예정지 및 시설자재를 사전에 확보관리
- (2) 침수지역 등의 주택 등에 대한 건물의 안전성을 검토
- (3) 가설건물 또는 반과주택 수리용 자재는 생산업체와 유기적인 협조로 필요시 구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수선이 가능한 주택은 응급수리 사용토록 함
- (4) 주택수리비는 중앙 또는 시군에서 일부 우선지원 등

다) 국민생활 필수시설(Life-Line)

- (1) 상수도 피해시설의 신속한 복구
 - 피해시설의 신속한 복구

(2) 하수도 시설

- 하수도 관리책임자는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군 복구반을 편성 운영 등

(3) 전기시설

- 전력 확보의 우선순위 결정 공급 및 긴급 복구방안 강구

(4) 가스시설

- 가스시설의 관리책임자는 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본사 및 사업소 등에 긴급 복구반 편성 운영

(5) 통신시설

- 통신두절로 재해응급 활동을 저해함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바, 이의 방지를 위하여 각 통신 책임자는 본사 또는 산화기관 등에 긴급 복구반 편성 운영

라) 공공시설 복구

(1) 도로·교량

- (가) 각 도로 관리자는 소관 도로·교량의 피해사항을 신속히 파악,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교통규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우회 도로를 선정 통행자의 안전대책 강구 등

(2) 하천 및 내수 배제시설

- (가) 재해발생시 제방·호안 등의 하천시설이 파손·붕괴될 경우 피해시설의 응급조치를 위하여 지역자율방재조직을 활용하여 공사장 또는 위험한 시설 순찰 강화 등

(3) 사망·산사태 및 급경사지 붕괴방지시설 등

- (가) 사망·산사태 및 급경사지 붕괴방지시설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설관리책임자는 피해사항을 신속히 파악 적절한 조치 등

(4) 철도시설

- (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송수단의 확보를 위한 조치계획 수립 시행 등

(5) 사회공공시설

- (가) 병원,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 사회공공시설 관리자는 인명의 안전 확보와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조치계획 수립 시행 등

11) 군부대 지원요청

가) 피해발생시 동원요청

(1) 군 장비동원

(가) 동원시기, 동원지역, 동원대상, 동원사유를 명시하여 요청

(나) 고립지역 인력구조지원

○ 재난으로 인하여 인명구조에 필요한 경우 (중앙→국방부, 도 → 관할 군부대) 병력 및 장비 지원요청

○ 생필품 운송지원

(다) 도로두절로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의 헬기, 고무보트 등 요청

○ 군 시설 이용 지원

(라) 이재민 발생시 작전 및 보안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육장, 공막사 등 수용시설로 지정 지원

○ 용수공급 등 응급복구지원

(마) 관정개발, 용수공급 지원 요청

○ 이재민수용시설 장비지원

(바) 이재민 급식, 세탁 등을 위한 급식차, 세탁차, 급수차 등 지원

(2) 군 병력동원

(가) 동원시기, 동원지역, 동원대상, 동원사유를 명시하여 요청

(나) 이재민 의료구호지원

○ 관할지역내 지역 군부대의 의료구호반 파견 요청

(다) 방역지원

○ 보건소장은 피해상황에 따라 군부대 방역관련 지원요청

나) 복구에 필요한 동원

(1) 군 장비·병력동원

(가) 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군 연락장교를 파견 방재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 강화

(나) 공공시설 응급복구 및 사유시설(비닐하우스·벼 세우기, 비닐 하우스 제설작업, 낙과 및 유실수 보호 등)에 필요한 병력 지원 요청 (군 ⇒ 군부대)

(2) 예비군 등 동원

- (가) 훈련여건, 지역실정을 고려 재난복구에 예비군이 복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동원요청

다) 기타사항

- (1) 재난발생지역 장병 특별 구호휴가조치 요청
- (2) 재난발생지역 예비군 교육·훈련 등 연기 조치
 - (가) 훈련 불가능지역은 훈련연기 또는 일정 조정
 - (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피해 예비군에 대한 예비군 훈련 면제 조치

12) 청소 및 방역

가) 쓰레기, 분뇨처리 등 청소

- (1) 침수피해 등으로 발생한 대량의 폐기물은 임시적환장을 지정하고, 매립장 관리기관 등과 협의 신속 매립조치
- (2) 쓰레기 및 분뇨처리를 위한 차량 등 장비 확보

나) 침수지역 및 공동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전염병 등의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실시

다) 물자 및 장비의 부족에 대비 인접 시·군간 응원체제구축

라) 계곡, 하천, 도로, 마을주변 산림부산물 등 신속 수거 조치

마) 청소대책

(1) 쓰레기 처리

- (가) 군수는 지진발생시 건물의 도괴, 화재 등으로 발생한 대량의 폐기물을 신속히 처리
- (나) 대규모 피해발생에 대비 인접 시·군과 응원협조체제 구축

(2) 분뇨처리

- (가) 이재민 수용소 등 집단수용시설에 대한 분뇨처리는 가설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처리

(3) 지장물의 제거

- (가) 건물과 도로 등 사회간접시설의 파괴로 발생한 장애물의 정리는 군수 주관으로 우선 처리하고 국가에서 처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

바) 방역대책

- (1) 군수는 지진발생지역 및 집단수용소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의 예방을 위해 방역반을 편성 운영
- (2) 물자 및 장비의 부족에 대비 인접 시·군간 응원체제 구축

13) 사회질서 유지 및 물가안정

- 가) 피해지역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과 자주방범조직 등에 의한 순찰을 강화하고 안전 확보에 노력
- 나) 생필품의 물가폭등과 매점매석이 발생치 않도록 물가의 안정 및 공급대책 강구

14) 자원봉사활동

- 가) 피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자 수요 파악, 자원봉사의 접수·조정 등
- 나) 대한적십자사 및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모집한 의연금품을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지원

바. 유관기관 이행사항

1) 의령교육지원청

(가) 학교보호 시설

- (1) 의령교육지원청은 위험시설의 개보수 등 각급 재해대책비 예산을 확보하여 해당 학교에 조기 배정한다.
- (2) 재해에 대비하여 사전 조치할 사항은 우기 전 5월말까지 완료토록 한다.
- (3) 중요시설물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불안전 개소 및 수해피해 상습지의 현황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사전 예방을 취한다.
- (4) 시설물의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재해 상황을 기록·보존토록하여 재해 발생 방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 (5) 제설장비, 위험지구 표식, 적사장 설치 등 설해방지대책은 제설기 전인 10월말까지 완료한다.

(나) 이재민 학생 대책

- (1) 학교 자체의 피해로 인하여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특별 교실, 관리실, 강당, 체육관 등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에 따라 2부제 수업을 실시한다.

(2) 이재민에 대한 간접지원(수업료 면제 등)을 감안하여 지역 내 재해 발생시는 수해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한다.

(3) 이재민 수용대책

(가) 학교시설이 이재민 수용에 활용될 경우 시설물의 활용에 적극 협조토록 하고 이에 따른 화기단속과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나) 침수 및 이재민을 수용했던 시설물에 대한 사후 방역대책을 수립 실시한다.

(4) 기타

(가)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방재교육 강화에 학부모를 통한 대민 홍보 전개로 방재의식을 고취한다.

2) KT 함안지사

가) 통신시설 보호

(1) 통신시설의 신·증설 시는 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 시공한다.

(2) 재해대상 시설은 년차별로 보강한다.

(3) 침수 예방시설은 이전 또는 개축한다.

(4) 가공선로의 지하화를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5) 저습지 케이블의 경도를 변경하여 시설한다.

(6) 누설방지를 위해 보안기를 설치한다.

(7) 유·무선 통신시설 두절시는 비상 장비를 활용하여 필요회선을 지원한다.

(8) 통신두절시 긴급 순위에 의하여 긴급 회선을 구성한다.

(9) 각급 통신시설 운영기관은 긴급복구대를 편성 운영하여 유사시에 대처한다.

나) 기타

(1) 각급 통신시설 운영기관은 시 재해대책본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재해예방 대책을 위한 통신지원 요청이 있을시 적극 협조한다.

3) 한국전력공사 의령지사

가) 전력시설 보호

- (1) 재해발생시 긴급동원 할 수 있도록 방호대를 편성 운영하며 비상 훈련을 강화한다.
- (2)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시 각 사무장은 안전관리처 및 관계부서에 즉시 보고하고 관할 시 및 읍·면·동에 통보하여 재해 보고 체제를 확립한다.
- (3) 각 사무소별로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하여 사전에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불량개소에 대하여는 우기 전에 개·보수를 실시한다.
- (4) 각 사업장별로 우기 전에 수방자재를 확보 정비하여 재해 시 긴급 복구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에 배치한다.
- (5) 2016년도 방재사업을 조기 착공하여 가급적 우기전인 5월말까지 완료하여 사업효과를 거양한다.
- (6) 설해예방을 위하여 제설장비 위험지구표지판, 염화칼슘, 적사장, 강수량 측정기를 확보한다.
- (7) 산간에 위치한 변전소는 재해에 대비 산사태, 축대 등 위험 개소의 사전점검과 인명 및 시설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 (8) 각 사업소내의 주요 배수구는 연 2회 이상 일제 점검을 실시 불량 개소는 우기 전에 보수 정비한다.
- (9) 건설공사장의 각종 가설물은 재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공사계획 수립 시 방재대책을 강구한다.

4) 육군 제5870부대 제5대대 15중대

가) 군 대민지원

- (1) 재해로 인하여 군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읍·면으로부터 인명구조 요청이 있을시 즉시 지원한다.
- (2) 재해복구 등으로 인하여 군 장비 및 인력지원 요청이 있을시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나) 군 시설보호

- (1) 재해로부터 군 시설, 장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의 관리

- 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불량시설을 정비한다.
- (2) 고립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사전 물자 비축 및 적절한 보급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 (3)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의 부대는 부대장 판단 하에 부대이동 등 제반 대책을 수립 실시한다.
- (4) 군 시설, 장비, 물자의 피해발생시 최단 시간 내에 자체 복구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5) 소 방 서

- 가) 재해로 인하여 군 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인력지원 요청이 있을 시 적극 뒷받침하여 지원 활동을 강화한다.
- 나) 지역단위로 의용소방대 등 재해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으로 기능발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4. 복구대책

가. 기본방침 및 추진방침

1) 기본방침

- 가) 주변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적 복구사업 수립 시행
- 나) 민생관련 시설의 조기복구를 통한 주민생활안정 도모
- 다) 현지여건에 적합한 공법 선정 시행으로 피해재발 방지
- 라) 사유재산피해에 대한 『선지원 후 정산』 복구지원체제 정착

2) 추진방침

- 가) 피해시설별 특성을 고려 완공목표설정 추진
- 나) 복구계획 확정 즉시 용역발주 및 현지여건을 고려한 설계 등 조기 착공
- 다) 개량복구 사업지구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종합적인 사업계획 수립

으로 피해재발 방지

- 라) 시설별 세부복구추진지침에 의거 신속·정확한 복구비 집행
- 마)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설계·용지보상 등 각종 지원단 구성 운영
- 바) 통합감리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복구공사 부실방지
- 사) 복구사업 집행의 투명성·정확성을 강화할 수 있는 행정지도·점검 강화

나. 복구의 종류

1) 응급복구

- 가)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해위험시설의 피해확대 방지 및 기능회복을 위하여 복구 및 시설하는 것을 말함.

2) 항구복구

- 가) 원상복구 : 재해가 발생하여 기존의 시설이 파손되었을 경우 동 시설을 기존 시설과 유사하게 복구하는 것을 말함.
- 나) 개량복구 : 재해가 발생하여 기존의 시설의 파손되었을 경우 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동 시설의 기능을 크게 개선하여 복구하는 것을 말함.

(1) 개량복구 대상

- (가) 법령에 의한 각종 사업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로써 재해가 재발될 개연성이 높은 지구
- (2) 하천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 또는 소하천 정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수립된 교량·보 또는 배수문 등의 시설로써 재해가 재발될 개연성이 높은 지구
- (3)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구로써 재해가 재발될 개연성이 높은 지구
- (4) 배수펌프장·저·소류지 시설로써 재해가 재발될 개연성이 높은 지구
- (5) 기타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 등 재해의 재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다. 피해조사

1) 우심 시·군·구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가) 대 상 : 경미한 피해

- (1) 보통세 등 연평균액이 100억원 미만인 시·군·구 : 14억원 미만
- (2) 보통세 등 연평균액이 100억원 이상 350억원 미만인 시·군·구 : 20억원 미만
- (3) 보통세 등 연평균액이 350억원 이상 600억원 미만인 시·군·구 : 26억원 미만
- (4) 보통세 등 연평균액이 600억원 이상 850억원 미만인 시·군·구 : 32억원 미만
- (5) 보통세 등 연평균액이 850억원 이상인 시·군·구 : 38억원 미만

나) 조사 기관 : 시·도

다) 시 기 : 최종 피해보고 7일후

라) 조사방법

· 조사반 편성 : 피해 상황에 따라 관련부서 직원 차출	
· 기 간 : 1주일 이내	
· 조 사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원인 □ 피해액 확인 □ 재해대장 및 복구조서 작성
· 조 사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조사 □ 재해대장 및 복구조서 검토
· 보고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복명서 □ 피해원인 분석 □ 피해 및 복구계획서 □ 재해대장 등

↓ 보 고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2) 우심 시·군이 발생한 경우(의령군 20억 이상)

가) 대상 : 우심 시·군이 발생하더라도 1개 시·도에 국한되거나 중앙합동

조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조사기관, 시기 및 조사방법은 우심 시·군이 없을 경우와 동일

3) 중앙합동조사단 편성·운영

가) 대상 : 타 시·도나 시·군·구에 우심지역이 발생하여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장이 중앙합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나) 편성 : 관계 부처 공무원으로 구성·운영(관계부처 합동)

다) 직무범위

(1) 피해조사 및 피해원인분석

(2) 재난복구계획(안)의 작성

(3) 시기 : 최종 피해보고 7일후

(4) 조사방법

- 조사반 편성 : 피해내용에 따라 해당부처 4~6급직원 차출
- 기 간 : 1주일 이내(피해정도에 따라 기간조정)
- 조 사 내 용
 - ┌ 피해원인
 - ├ 피해액 확인
 - └ 복구조서 작성
- 조 사 방 법
 - ┌ 현지조사
 - └ 도 복구조서 검토
- 보고서 내용
 - ┌ 조사 복명서
 - ├ 피해원인 분석
 - ├ 피해 및 복구계획서
 - ├ 재해대장
 - ├ 건의사항
 - └ 기타 참고자료

↓ 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라. 재난복구비용의 중앙지원 대상 및 기준

1) 일반피해지역(의령군 20억 이상)

가) 자치구 및 시군 단위로 동일한 재해기간에 발생한 피해액(농작물 및 동산의 피해액 제외)이 다음 기준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1) 보통세 등 연평균액이 100억원 미만인 시·군·구 : 14억원 이상
- (2) 보통세 등 연평균액이 100억원 이상 350억원 미만인 시·군·구 : 20억원 이상
- (3) 보통세 등 연평균액이 350억원 이상 600억원 미만인 시·군·구 : 26억원 이상
- (4) 보통세 등 연평균액이 600억원 이상 850억원 미만인 시·군·구 : 32억원 이상
- (5) 보통세 등 연평균액이 850억원 이상인 시·군·구 38억원 이상

나)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에 미달하더라도 국고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복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1) 이재민구호를 위한 지원, 주택복구, 수산물 증식 및 양식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그밖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된 지원 사항
- (2)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걸쳐 공공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써 중앙본부장이 그 복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가뭄지역의 각종 용수공급 등 가뭄대책 비용 국고지원은 지방 상수도를 격일제 이상으로 제한급수 하는 지역에 대하여 중앙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특별재난지역

가) 지원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동법시행령 제69조

나) 특별재난지역 지정기준(의령군 50억이상)

선정범위	선정기준
최근 3년간의 보통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평균액이 100억원 미만인 시·군·구	총 재산피해액(농작물·동산 및 공장의 피해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35억원 이상인 경우
최근 3년간의 보통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평균액이 100억원 이상 350억원 미만인 시·군·구	총 재산피해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근 3년간의 보통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평균액이 350억원 이상 600억원 미만인 시·군·구	총 재산피해액이 65억원 이상인 경우
최근 3년간의 보통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평균액이 600억원 이상 850억원 미만인 시·군·구	총 재산피해액이 80억원 이상인 경우
최근 3년간의 보통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평균액이 850억원 이상인 시·군·구	총 재산피해액이 95억원 이상인 경우

※ 농작물, 동산, 공장피해액은 제외

다) 국고의 추가지원 기준 (국고전환액)

지원기준	구분	국고의 추가지원액
시·군·구의 최근 3년간 보통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평균액이	100억원 미만	(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3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100억원 이상 ~ 350억원 미만	(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50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350억원 이상 ~ 600억원 미만	(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6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600억원 이상 ~ 850억원 미만	(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80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850억원 이상	(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9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마.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 과거 선포 현황 >

- 제15호 태풍 「루사」 내습(2002.8.30.~9.1.)으로 피해가 발생한 16개 시도, 203개 시·군·구, 1,917개 읍·면·동 일원(전국일원)
 - 2002.8.4.~8.11. 호우피해지역중 자연재해대책법 부칙 제2항에 의하여 김해시 한림면, 함안군 범수면, 합천군 청덕면 일원
- 제14호 태풍 「매미」 내습(2003.9.12.~9.13.)으로 피해가 발생한 14개 시도, 156개 시·군·구, 1,657개 읍·면·동 일원(전국일원)
- 2004. 3. 4.~3. 5.기간 중 폭설피해가 발생한 10개 시도, 82개 시·군·구, 647개 읍·면·동
- 2005.12.3.~12.24. 대설 및 풍랑·강풍피해가 발생한 8개 시도 57개 시·군·구
- 제3호 태풍 「에위니아」 내습(2006.7.9~7.29)으로 피해가 발생한 7개 시도 39개 시·군·구

- 1)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동법시행령 제69조
- 2) 선포기준
 - 가) 자연재난으로써 해당 시·군·구별 보통세 등 연평균액 구분에 따른 재산피해액에 따라 차등 적용
- 3) 선포절차
 - 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대통령에게 건의

바. 재난복구비용의 산정

- 1) 재난복구비용의 산정기준은 원상복구(기존시설과 유사하게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지구·지역 또는 시설에 대하여는 개량복구(기존시설의 기능을 개선하여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할 수 있다.
 - 가) 법령에 의한 각종 사업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로써 재난이 재발될 개연성이 높은 지구
 - 나) 하천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 또는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수립된 교량·보 또는 배수문 등의 시설로써 재난이 재발될 개연성이 높은 시설
 - 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구로써 재난이 재발될 개연성이 높은 지구

라) 배수펌프장·저수지 또는 방조제 시설로써 재난이 재발될 개연성이 높은 시설

마) 기타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 등 재난의 재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사. 복구비 지원절차

1) 복구계획(안) 작성

가) 피해합동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사업별, 지역별에 따라 국고, 지방비, 용자, 자부담 등으로 재원을 구분하여 복구계획(안)을 작성

2) 복구계획(안) 심의 확정

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

(1) 복구계획(안)을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 협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상정 심의 확정

나) 확정시달

(1) 본부회의에서 심의 확정된 내용을 기획예산처장관과 관계부처 및 도에 통보

3) 재난복구비 예산요구 및 조치

가) 재난복구계획 확정 통보 즉시 관계부처는 소관사업에 대한 재해복구비 예산지출요구서(예산조치 계획, 예산편성내역)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

나) 관계부처 기정예산에서 조치하는 예산과 재해의연금은 소관부처별로 즉시 예산내시 및 재배정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보

다) 지방 예산조치

(1) 의령군수는 재해복구계획 확정통보 즉시 지방예산을 편성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제3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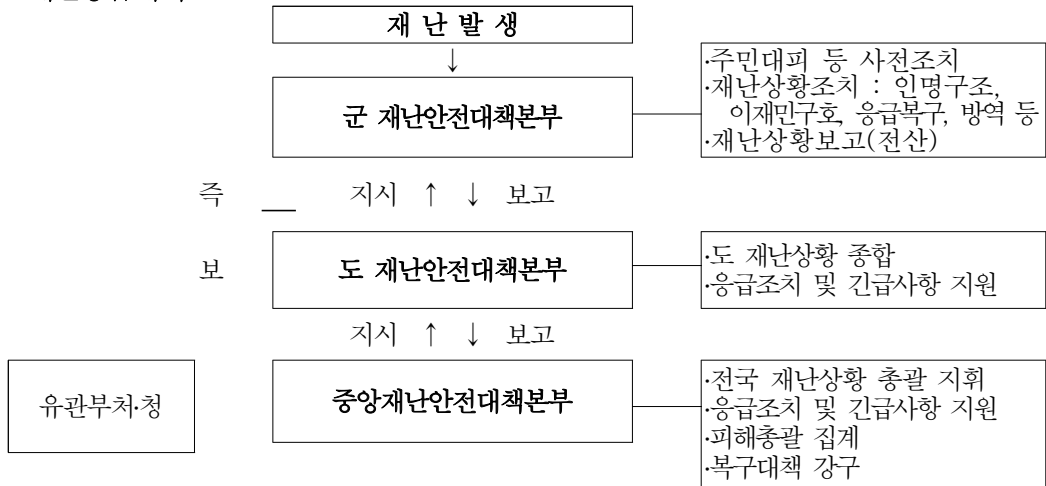
4) 재해복구비 예산내시 및 재배정

가) 기획예산처에서는 재해복구비 예산지출에 대하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득하여 각 부처별로 예산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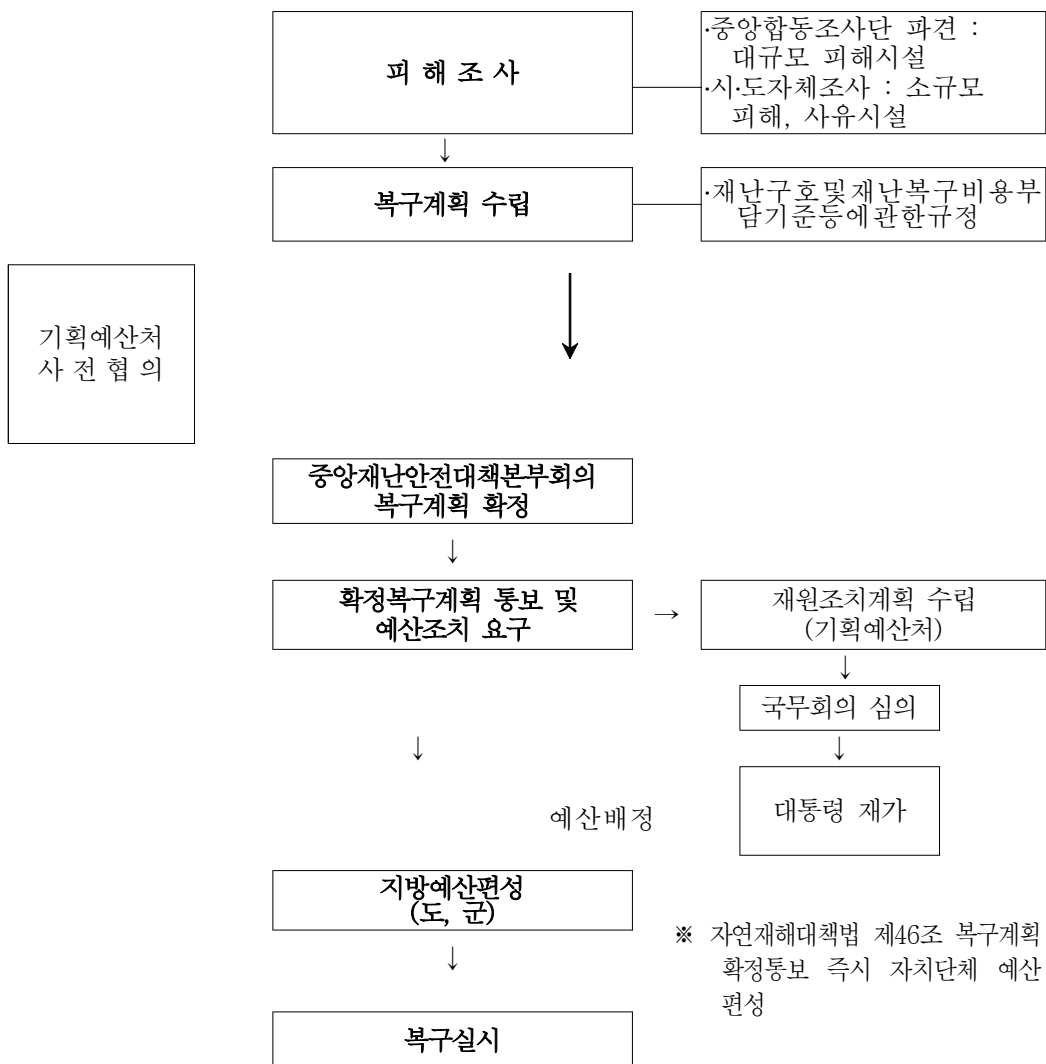
나) 각 부처는 예산 배정서에 따라 시행청 별로 예산내시 및 재배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보한다.

〈재해복구 흐름도〉

〈 재난응급대책 〉



〈 재난복구 〉



아. 과학적 피해원인조사 및 복구사업의 투명성·효율성 강화

1) 피해조사체계 개선

가) 피해규모를 감안한 조사기간 차등적용

(1) 수해발생 규모에 따라 피해조사기간 탄력적용 규정마련

나) 피해조사장비 현대화

(1) 피해조사의 신속·정확성 제고를 위한 조사장비 현대화

2) 복구지원체계 개선

가) 복구계획수립 허위·과장보고 방지대책 강구

(1) 복구계획수립 책임성 강화를 위한 운영규정 강화

(2) 중앙·자치단체 복구계획수립 담당자 교육실시

나) 자율적 재해예방 노력 유도를 위한 복구비 지원대상 상향조정

(1) 우심 및 비우심 시군 공공시설 국고지원 대상사업 상향조정

다) 복구비 국고추가지원방법 개선

(1) 지방비 국고추가지원 산정방법을 인구수, 재정력, 재해예방사업 투자 정도 등을 고려한 지수개발 활용

(2) 현행 3단계 지원기준을 세분화하여 국고 차등지원 방안 마련

3) 복구사업 정산·집행 등 사후관리기능 강화

가) 수해복구예산의 총괄집행·정산제 도입

(1) 현행 시설별·부처별·지구별 집행·정산제도를 사업비가 부족한 타 지구에 활용토록 제도화

나) 수해복구사업 경제성 평가 등 사후분석기능 강화

(1) 복구사업 완료 후 경제성 등을 분석·평가토록 제도화

(2) 분석평가 결과는 재해경감대책 반영 등 정책 환류기능 강화

자. 풍수해보험제도의 도입·시행

1) 홍수, 태풍, 설해 등 자연재난 피해시설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의 실시, 국가예산 운영의 안전성 제고, 주민의 자발적 방재의식 고취 등을 위한 보험제도 도입·시행

2) 관계법령(풍수해보험법 등) 제정으로 제도시행 기틀 마련

가) 보험사업의 운영을 위한 사업운영주체, 보험가입·피해평가방식 등을 법률에 명시

나) 보험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보험가입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지원, 국가보험제도의 운영 등을 명시

※ 2007년부터 풍수해 보험 시범사업 실시(주택,축사,온실:비닐하우스포함)

재난복구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

1.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지원

구 분	부 담 액	부 담 륜	비 고
가. 사망실종, 부상자 위로			
(1) 위로금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 100퍼센트	· 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애등급 7급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며, 부상자에 대한 위로금은 사망·실종자의 50퍼센트로 한다.
나. 이재민 구호 및 생계지원			
(1) 응급구호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 100퍼센트	· 주택이 반파 이상 피해를 입은 자에 한하여 최초 7일간 구호를 원칙으로 한다.
(2) 장기구호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 100퍼센트	· 주택이 전파 또는 유실된 자에 대하여는 2월간, 반파된 자에 대하여는 1월간 구호를 한다.
(3) 생계지원	·양곡 5가마에 해당하는 가액	·지원 100퍼센트	· 양곡은 80킬로그램들이 정부양곡 방출가격(농림부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예상수확량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4) 고등학생 학자금 (수업료)면제	· 6월분	·지원 100퍼센트	· 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학자금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여 공고하는 금액으로 한다.

(1) 나목의 생계지원과 학자금 면제 대상범위는 농작물, 산림작물, 염 생산시설, 농림시설, 축산물 증식시설 및 가축, 어선, 어망·어구, 수산물 증식·양식시설, 수산생물이 50퍼센트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어가·임가·염 생산가에 한한다.

(2) 주택의 반파라 함은 기둥·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주택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3) 주택의 전파라 함은 기둥·벽체·지붕 등의 주요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개축하지 아니하고는 주택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구	분	부	담	액	부	담	률	비	고
가.	주택복구								
(1)	주택파손유실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지원 30퍼센트 · 용자(국민주택기금) 60퍼센트 · 자부담 10퍼센트					· 주택복구 및 보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파손·유실에 대한 복구는 피해규모에 관계없이 50제곱미터 주택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빈집(의식주에 필요한 가재도구와 각종 집기 등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살고 있지 아니하는 집을 말한다)을 제외한다. 2. 반파주택 또는 침수주택의 이축·개축희망자는 전파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 3. 피해가 발생한 시·군·구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험지구와 「건축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에 대하여는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지대로 이축하거나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개축하는 때에는 전파주택의 용자비율에 따라 용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4. 동일 부지내 1인 소유의 주거용 건물이 2동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주거용 건물 1동에 대하여 지원한다. 5.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2)	주택침수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지원 100퍼센트					·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용 방의 방바닥 이상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3)	세입자 보조	·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금액	· 지원 100퍼센트					· 세대당 입주보증금 또는 6월간 임대료	
(4)	마을기반 조성	· 기반조성 공사비	· 국고 50퍼센트 · 지방비 50퍼센트					· 마을기반 조성 사업비는 10동 이상의 주택을 집단이 주시키는 경우에 지원한다.	
나.	농경지(염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복구								
(1)	농경지 유실·매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금액	· 지원 60퍼센트 · 용자 30퍼센트 · 자부담 10퍼센트					· 재난으로 농경지의 유실 또는 매몰, 유류의 유입으로 인한 토양오염 피해와 해수의 침수로 염해를 입은 때에는 피해지구의 1지구당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농가당 16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지원한다. 이 경우 유실·매몰은 평균심도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2)	농경지 매입	· 매입가격	· 국고 50퍼센트 · 지방비 50퍼센트					· 농경지를 복구하는 것이 비경제적이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구 분	부 담 액	부 담 륜	비 고
<p>다. 공공시설의 복구</p> <p>(1) 국가관리시설(국도, 철도, 국가하천, 방조제, 지정항 및 공업항, 항공시설, 제1종 및 제3종 어항, 공업용수 시설, 통신시설, 어업 무선국시설, 국립학교 시설, 국가공공건물, 등대, 해운시설, 군사시설, 국가지정문화재, 국립양식장, 국가관리 광역상수도시설, 국가관리 폐수 및 폐기물 처리시설, 전파관리시설 및 연구시설, 국유림, 국유선박 등)</p> <p>소하천, 국립학교시설, 지방자치단체의 항만 시설, 제2종 어항, 도시개발시설, 지방자치단체의 통신시설 및 건물, 독립양어장, 지방자치단체의 철도 및 소규모 어항, 지방지정문화재, 지방자치단체의 방조제 및 수리시설, 지방자치단체 관리 상하수도시설, 폐수 및 폐기물 처리시설, 지방자치단체 소유림, 지방자치단체 소유선박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구소요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 100퍼센트(다만,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가지정 문화재는 국고 70퍼센트, 지방비 30퍼센트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소의 피해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복구소요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지원한다. · 자체설계 및 감독인력이 부족할 경우 설계 및 감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p>(2) 지방공공시설(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지방 1급하천, 지방 2급하천,</p> <p>(3) 그 밖의 공공시설</p> <p>① 지방자치단체 관리 소규모시설, 특별시광역시 구역안 도로시도</p> <p>② 농업기반공사수리시설</p> <p>③ 사유림</p> <p>④ 수산시설(수산물유통체조시설 및 공동창고)</p> <p>⑤ 사립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구소요액 · 복구소요액 · 복구소요액 · 복구소요액 · 복구소요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 50퍼센트 · 지방비 50퍼센트 · 지방비 100퍼센트 · 국고 70퍼센트 · 지방비 30퍼센트 · 국고 50퍼센트 · 지방비 50퍼센트 · 국고 50퍼센트 · 용자 50퍼센트 · 지방비 50퍼센트 · 자부담 50퍼센트 	

- (1) 각 시설의 반파시 지원기준은 전파지원기준의 50퍼센트로 한다.
- (2) 각 시설의 반파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중앙본부장에게 통보한다.
- (3) 제4조제1항제2호의 재난복구사업 중 가목 내지 바목의 복구에 대한 부담액 산출단가와 가격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본부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가격으로 한다.
- (4) 지원은 국고 70퍼센트, 지방비 30퍼센트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마) 그 밖의 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구 분	부 담 액	부 담 륜	비 고
가. 가뭄대책	· 수확보 및 공급을 위한 소요사업비와 양수 및 급수장비 구입비	· 국고 50퍼센트 · 지방비 50퍼센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도록 이미 계획된 사업비를 제외한다.
나. 손실보상금(법 제64조제1항)	· 손실보상 결정금액	· 국고 50퍼센트 · 지방비 50퍼센트	
다. 특별재난지역의 응급복구(법 제61조)	· 자재대 및 장비비	· 국고 50퍼센트 · 지방비 50퍼센트	· 응급복구에 실제로 소요된 자재대 및 장비비 중 중앙본부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대 및 장비비를 지원한다.
라. 쓰레기 등의 처리 비용	· 소요금액	· 국고 100퍼센트	
마. 농림시설·농작물 및 산림작물 복구			
(1) 농림시설 파손·유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금액	· 지원 35퍼센트 · 용자 55퍼센트 · 자부담 10퍼센트	· 농림시설은 농업(원예 및 인삼경작을 포함한다)을 위한 비닐하우스 등의 재배시설과 산림부산물 재배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농작물 및 산림작물 복구			
① 대파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금액	· 지원 50퍼센트 · 용자 30퍼센트 · 자부담 20퍼센트	· 농경지의 유실·매몰 및 침수와 가뭄피해로 대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원한다. · 인삼·화훼·과수·조경수·분재·야생화 및 버섯의 경우에는 유실·매몰 및 침수피해시에 한하여 각각 묘삼대·종묘대·묘목대 및 종균대를 지원한다.

구	분	부 담 액	부 담 륜	비 고
②	농약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금액	· 지원 100퍼센트	· 농작물의 침관수와 풍수해에 의한 농작물의 쓰러짐, 과수낙과, 가뭄피해로 인하여 농약살포가 필요한 경우에 지원한다.
라.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1)	축사파손·유실	·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지원 35퍼센트 · 융자 55퍼센트 · 자부담 10퍼센트	
(2)	초지유실·매몰	·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융자 70퍼센트 · 자부담 30퍼센트	
(3)	잠실파손·유실	·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지원 35퍼센트 · 융자 55퍼센트 · 자부담 10퍼센트	
(4)	가축입식	·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지원 50퍼센트 · 융자 30퍼센트 · 자부담 20퍼센트	· 가축입식비는 새끼가축 가격을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농림부장관이 정한 육성가축기준 이상의 가축이 피해를 입어 입식한 경우에는 육성가축 가격을 지원할 수 있다.
(5)	누에유실·폐사	·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지원 50퍼센트 · 융자 30퍼센트 · 자부담 20퍼센트	
마.	어선과 어망·어구의 복구			
(1)	어선의 파손·유실	·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지원 35퍼센트 · 융자 55퍼센트 · 자부담 10퍼센트	· 40톤 미만의 어선을 대상으로 하되, 보험가입 어선을 제외하고, 수산업협동조합의 선체공제에 가입된 어선을 포함한다.

구	분	부 담 액	부 담 륜	비 고
(2) 어망·어구의 파손·유실		·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지원 35퍼센트 · 용자 55퍼센트 · 자부담 10퍼센트	· 어망·어구의 지원대상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한다.
바. 수산물 증식·양식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1) 수산물 증식·양식시설의 파손·유실		·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지원 35퍼센트 · 용자 55퍼센트 · 자부담 10퍼센트	
(2) 수산생물 등의 입식		·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지원 50퍼센트 · 용자 30퍼센트 · 자부담 20퍼센트	· 수산생물의 입식비 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류의 입식비는 치어의 가격을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한 성어 이상의 어류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확정한 성어의 2분의 1 크기의 어류가격을 지원할 수 있다. 2. 패류와 해조류 등의 입식비는 종묘대금을 지원한다.

제2절 설해대책

I. 예방대책

〈 기본 방향 〉

- 설해대책기간 : 2016. 12. 1.~2017. 3. 15.
- 인명중시 방재정책 추진 ⇒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도로별 신속한 제설작업 ⇒ 원활한 교통소통
- 현장 행정지도 강화 ⇒ 자율적 방재체제로 전환유도

1. 도로 제설대책

가. 시설별, 지역별, 기관별 제설, 제빙 등에 관한 종합대책수립·추진

나. 제설장비의 확보 및 사전 점검·정비 철저

덤프트럭, 모래(염화칼슘)살포기, 제설삽날(덤프트럭용), 염화칼슘 용액살포기, 그레이더, 로우더, 굴삭기, 카고트럭 등

다. 설해예방을 위한 조직정비, 인원확보

도로 보수원, 미화원, 직원 등

라. 제설자재의 확보·비축 및 적사함 설치 관리

1) 염화칼슘, 모래주머니, 모래 등 제설자재 확보

2) 교량 또는 노건이 협소하여 적사함 설치가 곤란한 어려운 지점은 염화칼슘, 모래주머니 등 현장비축

3) 적사함은 응달부분, 고갯길, 곡선부분, 터널 입·출구 등 제설취약지점에 설치하고 염화칼슘, 모래, 삽 비치

2. 농립시설 피해경감대책(비닐하우스)

가. 단기대책

1) 폭설시 비닐하우스시설의 눈 쓸어내리기 등 사전대비 철저

2) 농림부 발행 표준규격시설이 아닌 경우는 지원복구 대상에서 제외

3) 비닐하우스 설치기준 및 행정지도 강화

가) 신규로 설치하는 하우스는 「표준설계서」 규격을 준수토록 지도

나) 비닐하우스 설치요령, 재료구입방법, 재해예방관리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강화

나. 장기대책

1) 비닐하우스시설 설치기준 강화

가) 재래식하우스에서 농가보급형 비닐하우스 설치로 개량권장

나) 300평 이상 비닐하우스시설은 읍·면 신고제 실시

다) 이동형 비닐하우스 시설에 대한 표준도 개발보급

라) 미신고 또는 무허가 시설물에 대하여 피해발생시 복구비 지원 제한

마) 간이축사 용도의 비닐하우스 설치 억제

2) 첨단기술농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3. 대국민 홍보강화

1) 겨울철 재해대비 국민행동요령과 설해대책 협조사항을 각 언론, 반상회, 스티커 등 모든 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홍보 실시

2) 홍보기간 : 2016. 11월 ~ 2017. 3월

3) 홍보내용

가) 설해발생시 대국민 행동요령

나) 설해상황 및 교통정보사항

다) 적설대비 차량 안전장구 휴대운행

라) 내 집,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우기

4) 홍보매체 : 유선방송, 신문,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마을앰프 및 가두방송, 반상회 회보, 공문서 하단에 표어 게재, 광고전광판

5) 홍보방법

(가) 지역별 설해대책 사전조치사항을 리플릿 제작 배포

(나) 유선방송을 최대한 활용

(다) 가두방송 및 마을앰프 이용

(라) 기타 자체실정에 맞게 수립한 홍보계획을 능동적으로 홍보 실시

(마) 반상회 회보에 설해대비 협조사항 게재

4. 유관기관 중점조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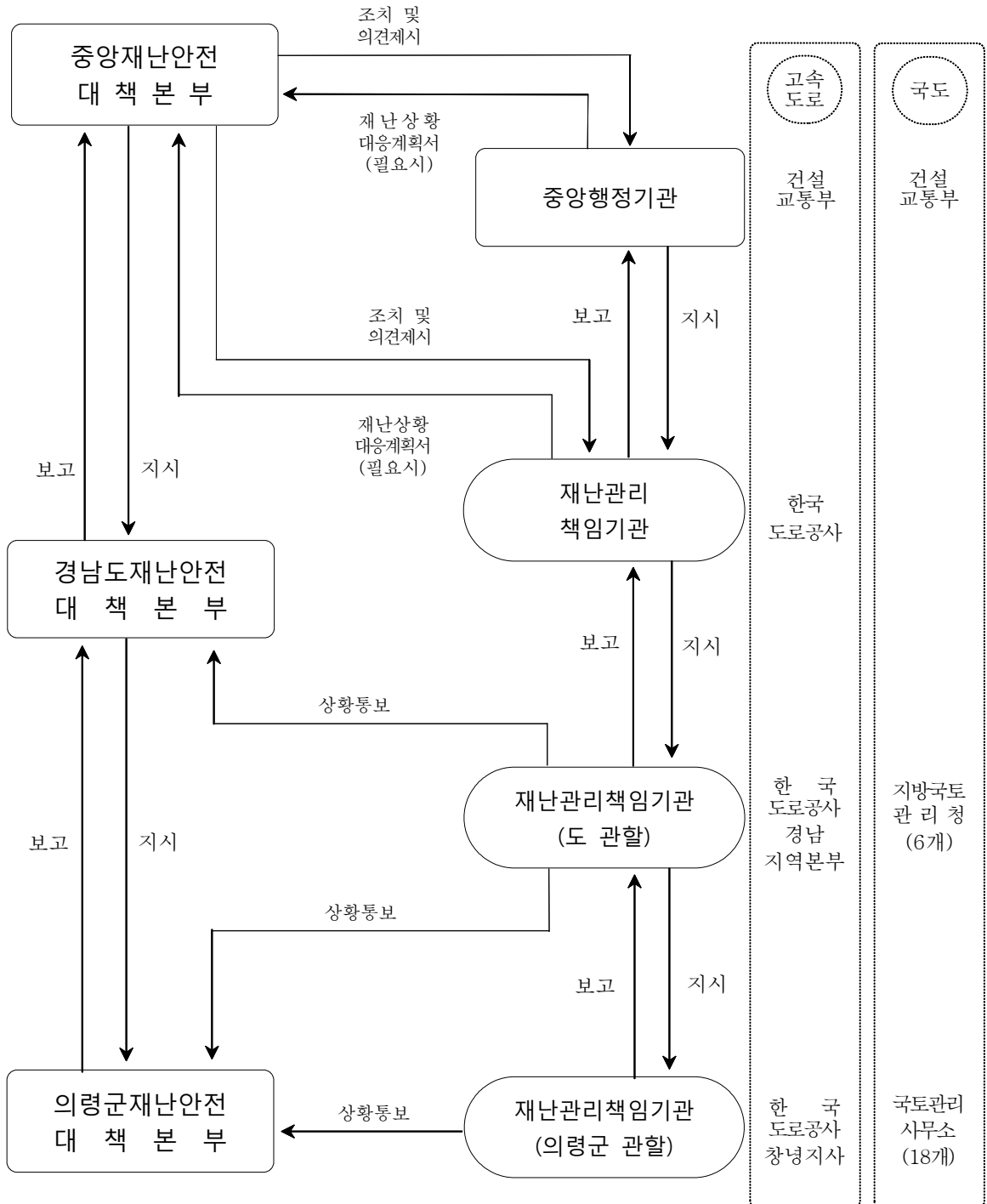
가. 인명피해 경감대책

제5870부대 5대대 제15중대 - 유사시 병력, 장비지원

나. 설해대책

- 1) 제5870부대 5대대 제15중대
 - 가) 제설장비, 인력 지원체제 확립
 - 나) 군부대 주변도로 제설 실시
- 2)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도 도로관리사업소
 - 가) 의령군재난안전대책본부와 유기적인 지원 협조
 - 나) 국도, 지방도구간에 대한 책임제설 실시
- 3) 의령경찰서
 - 가) 기상상황별 교통안전대책 수립 시행
 - 나) 교통취약지역 기동순찰반 운영
⇒ 교통통제 및 교통흐름 조정
- 4) 창원기상대 : 강설 확률 예측정보 신속 전파

상황보고 체계도



5. 교통두절 예상지구 지정내역

노선명	위치		두절 예상 구간	두절 연장 (km)	우회도로	비고
	읍·면	리				
계			13	17.3		
국도20호선	대의	다사	대의 다사~칠곡 산북	1.2	국도33호선 진주시 경유	
국도20호	정곡	죽전	정곡 죽전~용덕 정동	2.0	국도79호선 함안군 가야읍 경유	
국도20호	정곡	오방	정곡 오방~유곡 세간	1.0	지방도1011호선 유곡면 신촌리 경유	
지방도1013호	칠곡	도산	칠곡 도산~화정 가수	1.2	지방도1037호선 의령읍~화정방향 경유	
지방도1013호	화정	덕교	화정 덕교	1.0	지방도1037호선 의령읍~화정방향 경유	
지방도1040호	의령	정암	의령 정암	0.3	군도11호선 구룡공단 경유	
지방도1041호	유곡	세간	유곡 세간~지정 태부	1.0	지방도1008호선 함안군 남지읍 경유	
지방도1011호	정곡	중교	정곡 중교~유곡 신촌	2.0	국도20호선 유곡면 세간리 경유	
지방도1041호	유곡	마두	유곡 마두	0.6	국도20호선 유곡면 세간리 경유	
지방도1011호	봉수	신현	봉수 신현	2.0	국지도60호선 부림면 신반리 경유	
국지도60호	봉수	삼가	봉수 삼가	2.0	지방도1011호선 합천군대양면 경유	
지방도1041호	지정	마산	지정 마산	1.0	지방도1041호선 함안군 대산면 경유	
군도5호	낙서	전화	낙서 전화	2.0	국도20호선 합천군 청덕면 경유	

II. 대비대책

1. 도로 제설대책 일반사항

- 가. 제설 작업요원의 제설취약구간현장 적정 배치
공무원, 도로관리원, 민간인 등 기타 제설요원
- 나. 도로교통량에 따른 제설작업 우선순위 선정 및 집중 제설관리
 - 가) 국도 및 시가지 대로와 1일 교통량이 500대 이상인 도로로써 시·군간 연결도로
 - 나) 지방도 및 군도로써 읍·면간 연결도로
 - 다) 농어촌도로 등 기타 도로로써 마을간 연결도로

2. 일반국도, 지방도 등 제설대책

- 가. 중점관리대상
교통두절 예상지구 13지구 (국도 3, 지방도 9, 군도 1)
- 나. 교통량 및 지역여건 등 중요도에 따른 제설우선 순위 설정운영
 - 1) 첫째 : 국도 및 대로와 1일 교통량이 500대 이상인 도로로써 시·군간 연결도로
 - 2) 둘째 : 지방도 및 군 도로로써 읍·면간 연결도로
 - 3) 셋째 : 농어촌도로 등 기타 도로로써 마을간 연결도로
- 다. 폭설, 결빙 등으로 인한 교통두절 예상구간 특별관리 및 취약구간 집중관리
 - 1) 고지대 급커브 및 경사도로로써 폭설시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는 취약구간 집중관리
 - 2) 우회도로 사전지정 및 제설인원, 장비, 자재 등 사전확보
⇒ 적사장 설치 : 108개소(91m³)
- 라. 도로 신설 및 확장개통구간의 제설대책 강구
- 마. 상황별 교통통제 실시 : 고속도로 통제기준에 준하여 실시
- 바. 폭설시 농·축·수산물 수송지연에 따른 물가폭등 현상 방지를 위한 간선 및 지선 수송도로 제설방안 구축
- 사. 유관기관 제설 공조체제 구축
의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 ⇔ 군부대 등
- 아. 도로등급별 제설담당 기관(도로관리청의 책임제설 원칙)
국도, 지방도 및 군도 : 도 및 군, 읍·면사무소

3. 제설장비 민간보유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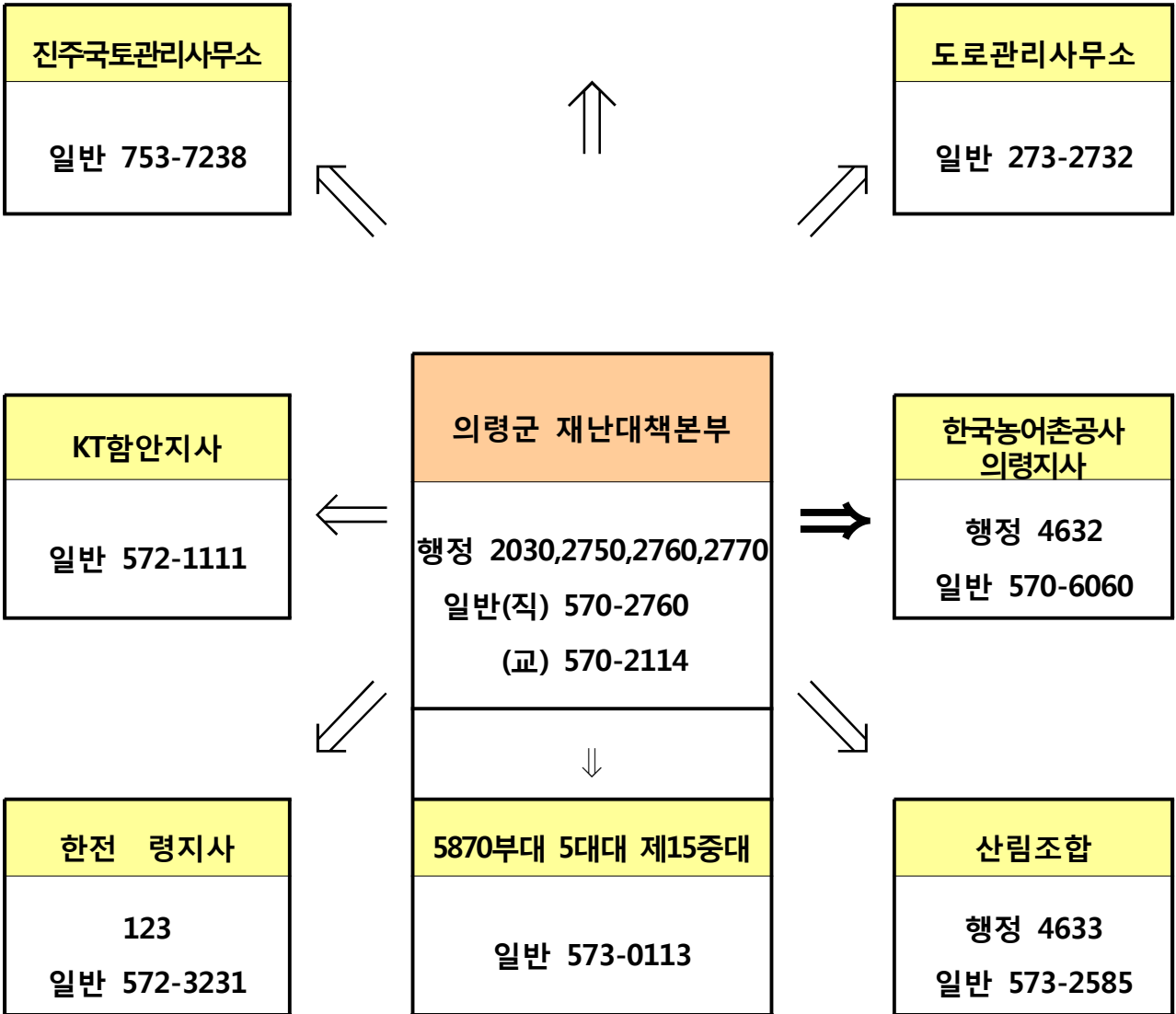
작업구간	노선명	담당 공무원	민간인 참여자		
			주소	성명	전화번호
계				25	
대의 마쌍	국 도 33 호	산업담당	대의 다사 277	김상석	572-8114
대의 다사	국 도 20 호	산업담당	대의 마쌍 330	김정수	572-9933
화정 가수	지방도1013호	산업담당	화정 가수 214-1	김정구	572-4498
화정 화양	지방도1037호	산업담당	화정 화양 286	이우갑	572-1862
용덕 진등	국 도 20 호	산업담당	용덕 운곡 106-6	이용배	573-4031
정곡 진등	국 도 20 호	산업담당	정곡 죽전 1127	박 목	572-4809
정곡 오방	국 도 20 호	산업담당	정곡 오방 329	이종식	572-4790
지정 태부	지방도1041호	산업담당	지정 봉곡 1050	이종표	572-9806
지정 성산	군 도 8 호	산업담당	지정 두곡 640	이진호	574-1689
지정 마산	지방도1041호	산업경당	지정 백야 460-1	김진배	572-0080
낙서 오소	군 도 5 호	산업담당	낙서 전화 239	구석희	572-7191
낙서 정곡	군 도 5 호	산업담당	낙서 울산 359	최동두	572-7277
부림 흥두	국 도 20 호	지역개발담당	부림 막곡 186	이현두	572-9766
부림 오소	군 도 5 호	지역개발담당	부림 대곡 207	전용환	572-7332
봉수 나부	국지도 60 호	산업담당	봉수 서암 1176	장용석	572-3125
봉수 서득	국지도 60 호	산업담당	봉수 삼가 144	최판규	572-6516
봉수 다현	지방도1011호	산업담당	봉수 청계 172	김충길	572-3146
궁류 다현	지방도1011호	산업담당	궁류 다현 511-2	전용필	572-8121
궁류 압곡	지방도1011호	산업담당	궁류 압곡 504	이상조	572-8312
궁류 압곡	지방도1011호	산업담당	궁류 토곡 491-1	박윤돌	572-7855
유곡 신촌	지방도1011호	산업담당	유곡 송산 1564	김주열	572-8812
유곡 세간	지방도1041호	산업담당	유곡 세간 798	이상동	574-5986
유곡 세간	지방도1041호	산업담당	유곡 세간 775	이종업	574-5968
유곡 마두	지방도1041호	산업담당	유곡 송산 801	박용주	572-8572
유곡 마두	지방도1041호	산업담당	유곡 덕천 235	강균일	573-8416

4. 노선별 교통두절 예상지구 빙 방사 설치현황

도로 등급	도로명	위치	예상연장 (Km)	적사장		위험표 지 판 (개소)	우회 도로 지정 여부	비고
				개소	m ³			
계	15개소			108	91	13		
국 도	4개소		4.5	35	28	6		
	산청 ~ 포항 (국도20)	대의면 다사리	1.2	10	8	2	지정	
	산청 ~ 포항 (국도20)	용덕면 정동리	2.0	15	12	2	지정	
	산청 ~ 포항 (국도20)	정곡면 오방리	1.0	6	5	2	지정	
	통영~칠곡 (국도79호선)	의령읍 정암리	0.3	4	3		지정	
지방도	10개소		12.3	69	60	7		
	가야~대양 (지방도1011)	정곡면 중교리	2.0	7	6	1	지정	
	가야~대양 (지방도1011)	궁류면 압곡리	0.5	5	5	1	지정	
	가야~대양 (지방도1011)	봉수면 신현리	2.0	11	10	1	지정	
	초전~가례 (지방도1013)	칠곡면 도산리	1.2	7	6		지정	
	초전~가례 (지방도1013)	화정면 덕교리	1.0	8	5	1	지정	
	칠원~가회 (지방도1041)	지정면 태부리	1.0	7	5	1	지정	
	칠원~가회 (지방도1041)	유곡면 덕천리	0.5	6	3		지정	
	칠원~가회 (지방도1041)	유곡면 송산리	0.6	6	3		지정	
	칠원~가회 (지방도1041)	지정면 마산리	1.0	6	5	1	지정	
	목포~양산 (국지도60)	봉수면 삼가리	2.0	6	12	1	지정	
군 도	부림~낙서 (군도5)	낙서면 전화리	2.0	4	3		지정	

<유관기관 연락 및 협조 체계도>

도재해대책본부	교육지원청	경찰서	농협
행정 6352 일반 211-6352	일반 570-7163	일반 572-0112	일반 573-2191~5



Ⅲ. 대응대책

1. 신속한 상황관리

가. 근무체제 : 연중무휴 24시간 상황유지 체제구축

- 1) 평상시 : 평시상황 유지
- 2) 강설시 : 적설량에 따라 1, 2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안전대책상황실 비상근무 실시

구분	내용	근무형태	비고
대설주의보	- 24시간 내 신 적설 5cm 이상 예상 ※ 지역구분 없음	사전대비 체제가동	
대설경보	- 24시간 내 신 적설 20cm 이상 예상 단, 산지는 30cm	비상근무 체제유지	

나. 보고체제

- 1)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읍·면장은 군수에게, 군수는 도지사에게, 도지사는 소방방재청장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
- 2) 재난관련책임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군수에게 보고
예) 도로의 경우 보고체계
국도, 지방도 및 군도
- 도, 의령군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

다. 보고단계

- 1) 최초보고 : 인명피해 등 주요재난 발생시 지체 없이 서면·모사전송·전화 중 가장 빠른 방법으로 보고
- 2) 중간보고 : 전산시스템 등에 의하여 재난수습기간 중 수시로 보고
- 3) 최종보고 : 재난의 수습이 종료되거나 소멸 후 종합보고

라. 중점추진사항(기상특보 발표 시)

- 1) 대설주의보 및 경보가 발표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관기관과 각 도→군→읍·면에 이를 전파하고 설해대비 비상근무태세 확립 지시
- 2) 설해대책상황실 운영을 강화하여 기상상태를 수시 확인전파 할 수 있도록 하고 군·경·예비군 등 유관기관과 상호지원 협조체제 유지

- 3) 유관기관 상호간에 비상연락망 등을 재점검, 보완하여 긴급사태 발생시 상호 유기적으로 적시에 대처토록 하며, 주민신고 망 확립
- 4) 군(郡)→읍·면에 설해예방수습요령(제설작업, 대피 등) 시달
- 5) 교통두절지구의 제설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인원을 대기 또는 동원
- 6) 염화칼슘, 모래 등의 비축자재 필요시 살포
- 7) 민방위대에 비상대기령을 시달하거나 필요시 동원
- 8) 제반차량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시키고 운행 통제
- 9) 등산·야영 및 관광객 등을 하산조치 시키고 입산 통제
- 10) 교통두절예상 도로는 우회도로 지정 또는 응급조치(제설, 염화칼슘 및 모래살포 등) 강구
- 11) 고립예상지역 주민 대피 유도
- 12) 이재민에게 비축·구호물자 지급
- 13) 피해상황을 계속적으로 파악하고 즉시 응급복구
- 14) 도로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지구에는 즉시 표지판을 설치
- 15)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 농작물시설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할 것을 농민에게 홍보
- 16) 눈사태 예상지역, 계곡지역 등 주민 안전지대로 대피
- 17) 지역단위 자율방재체제를 확립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제설작업을 실시토록 권장

2. 기상특보별 조치사항 및 국민행동요령

가. 대설주의보 : 24시간 신 적설 5cm이상 예상될 때

- 1) 행정관서(방재기관) 조치사항
 - 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 기상특보 전파
 - 나) 재해대책요원 비상근무
 - 다) 해당지역 방송국에 대설주의보 보도
 - 라) 도로 순찰강화
 - 마) 신속한 초동 제설 실시
 - 바) 고립지역 구호물자 확보
 - 사) 농산물 수송로 우선 제설실시

- 아) 염화칼슘, 모래 등 사용 후 즉시보충
- 자) 강설량 및 제설작업 현황보고
- 차) 교통통제 및 두절지구 현황보고
- 카)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눈 쓸어내리기 등 보호조치 강화
- 타) 교통두절지역 긴급소통을 위한 우회도로 유도
- 파) 등산객·야영객 등의 하산 조치
- 하) 월동장구 미 부착차량 통제 실시

2) 국민행동 요령

도시지역	일반지역
① 등산객, 관광객의 조속하산 및 귀가 ② 각종 차량의 감속 운행 (안전장구 부착) ③ 노후가옥 안전점검 ④ 노약자 및 어린이 외출 금지 ⑤ 각종 공사장의 안전조치 ⑥ 라디오, TV 등 기상예보 청취 ⑦ 대중교통수단 이용	①~⑦은 도시지역과 동일 ⑧ 가옥주변 적설 제거 ⑨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 시설에 대한 보호 조치

나. 대설경보 : 24시간 신적설이 20~30cm이상 예상 시

- 1) 일반지역 : 20cm이상 예상될 때
- 2) 산지지역 : 30cm이상 예상될 때

3. 강설시 설해대책

가. 공통사항

- 1) 도로등급별 제설작업 우선순위 선정 및 집중 제설관리
 - 가) 일반국도, 지방도 및 시·군도
 - (1) 국도 및 대로와 시·군간 연결도로
 - (2) 지방도 및 군도로써 읍·면 간 연결도로
 - (3) 농어촌도로등 기타도로로써 마을간 연결도로
- 2) 폭설, 결빙으로 교통두절 예상지구 및 우회도로 사전 지정
 - 제설인력, 장비, 자재 등 사전 확보

4. 시가지 진입도로 제설대책

가. 조치사항

- 1) 시가지 진입도로 고개 등은 중점 집중관리
- 2) 강설 전 또는 시작단계부터 염화칼슘 살포 등 초동단계에서부터 교통 대책을 강구 사전 제설작업
- 3) 폭설시 출퇴근차량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진출입도로 등 제설취약 구간에 대하여 우선 제설실시
- 4) 도로경계구간의 동시 소통을 위하여 도로경계 인접자치단체 및 제설 기관간의 광역제설 작업 실시
- 5) 교통소통 취약개소 기동 순찰 반 운영 및 교통통제 입간판 설치
- 6) 야간강설 예보 시 사전조치
 - 가) 제설 필수요원 교통취약지점 인근 대기
 - 나) 제설차 배치 및 염화칼슘 등 현장비치
 - 다) 교통방송 등 방송매체를 적극 활용 홍보강화
- 7) 대설주의보, 경보발령 시 대중교통 대책
 - 가) 개인택시 부제 해제
 - 나) 자가용 이용억제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계도(유선방송 등)
 - 다) 교통통제 및 흐름 조정(의령경찰서)

5. 일반국도 기타도로 등 제설대책

가. 조치사항

- 1) 폭설, 결빙 등으로 인한 교통두절 예상구간 특별관리 및 취약구간 집중관리
 - 가) 급커브 및 급경사 교통두절 예상구간 특별관리
 - 나) 고지대 급커브 및 경사도로로써 폭설시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는 취약 구간을 자체 지정하여 집중관리
 - 우회도로 사전지정 및 제설인원, 장비 자재 등 사전확보
- 2) 상황별 교통통제 실시(전면 또는 부분통제)
강설 초기단계부터 교통제한을 실시하고, 적설량 10cm이상 또는 교통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현지상황에 따라 경찰관서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통제실시

- 3) 교통량 및 지역 여건 등 중요도에 따른 제설우선 순위
 - 가) 국도 및 대로 등 시·군간 연결도로
 - 나) 지방도 및 군도로써 읍·면 간 연결도로
 - 다) 농어촌도로등 기타도로로써 마을간 연결도로
- 4) 폭설시 농·축산물 수송지연에 따른 물가폭등 현상 방지를 위한 간선 및 지선 수송도로 제설방안 구축
- 5) 군 및 유관기관 제설 공조체제 구축
의령군 ⇔ 군부대 등 유관기관

IV. 복구대책

1. 복구비 지원

- 가.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 나.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
풍수해 지원기준과 동일

2. 설해취약시설 피해방지대책 강구

- 가. 설해에 취약한 비닐하우스, 축사 등 각종 시설물의 표준설계 및 개량 모델 개발 보급과 설치유도
 - 1) 설해대책에 관한 방재기술개발 연구 등
 - 2) 농업 설해 대책 홍보
 - 가) 비닐하우스 피해경감대책 수립추진
 - 나) 특작시설에 대한 농가보급형 표준설계 보급설치 유도
 - 다) 농민홍보 및 지도감독, 계몽교육실시

I. 계획의 의의

1. 목적

가뭄에 대비 기상분석, 가뭄 상습지 관리, 양수장비 확보, 수리시설 점검·정비 등 용수대책을 사전에 강구함으로써 영농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2. 재난관리의 여건 및 전망

가. 기본방향

- 1) 우리나라는 1906년 기상관측 이래 지금까지 강우주기 분석결과 연강수량 1,000mm 이하의 가뭄은 56년 주기로 나타남
- 2)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최근에는 홍수, 태풍뿐 아니라 가뭄의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등 재난유형이 다양화 및 대형화
- 3) 따라서 영농기 이전 농업용수의 개발을 위한 사전조사 실시 및 농업용수의 개발 시 환경과피 등을 고려한 농업용수대책 강구

나. 우리나라 가뭄의 특성과 피해

1) 우리나라 가뭄의 특성

가) 우리 한반도는 몬순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6월 하순부터 9월까지의 우기를 맞이하여 장마철이 되나, 이 장마전선이 늦게 도달하는 기압배치가 될 때에 주로 가뭄이 온다.

나) 우리나라의 과거 가뭄기록에 의하면, 1939년도의 기록적인 한발은 해양성 열대기단(보통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함)의 지나친 발달에 의한 것이고, 1949년도 중부 이북 지방의 기록적인 한발은 해양성 한대기단(보통 오호츠크해 고기압이라고 함)의 지나친 발달에 의한 것이며, 1982년도의 기록적인 한발은 초기에는 해양성 한대기단의 지나친 발달에 의해서였고, 후기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지나친 발달에 의해서였다.

2) 가뭄의 피해

가) 한발로 인한 심각한 피해는 농업에 미치는 재해라고 할 수 있다. 벼농사기간 중(6·7·8월)에 내리는 평균 강수량은 연평균 강수량의 약 55% 정도, 즉 600~700mm 정도이나 그 양이 1/2 이하가 되면 벼농사는 한발에 의한 한해를 받는다. 최근 댐이나 저수지 등 관개시설이 많이 정비되어 피해면적은 감소되고 있으나, 기상재해 중에서는 풍수해 다음으로 피해액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한발은 벼뿐만 아니라 전작물과 과수 등에도 피해를 입히며, 또한 여름철뿐만 아니라 동해안 남부 지방에서는 겨울철에도 한발이 발생한다.

나) 한발은 비가 내리지 않는 날이 약 20일 이상 계속되면 발생되기 시작하나 10~20일 마다 20~30mm 정도의 비가 내리면, 가령 그 총량이 월평균 강수량의 1/2 이하일지라도 한발이 되지 않는다. 벼농사의 경우 한발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5~6월의 강수량에 의해서 대체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 즉 5~6월의 강수량이 충분하면 7~8월의 강수량이 다소 적어도 한발의 염려는 없으나 적으면 한발의 위험성이 있다.

다) 가뭄의 피해는 일반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작물의 피해를 가리키지만, 상수도나 공업용수의 부족, 발전능력의 저하 등에 의한 생활상수도나 공업용수의 부족 등에 의한 생활상·산업상의 불이익도 넓은 뜻의 한해에 포함된다.

다. 가뭄실태 및 용수전망

1) 내년 3 ~ 4월 이후는 평년 수준의 강우가 예상되므로

가) 겨울철 농작물 생육 및 봄철 영농에도 지장이 없도록 예방 강화

나) 농업용 저수지 말단 부 및 천수답 등 일부지역에서는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음

2) 강우량이 줄어들 경우 도서지역의 상습제한 급수 지역을 비롯하여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부족지역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의 기상상황과 국지적인 가뭄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대비가 필요함.

마. 의령의 저수지 및 관정, 양수장비 보유현황

1) 저수지·관정 보유현황(2015년 12월)

구분	저수지			관정				비고
	저수지수 (개소)	유효 저수량 (천m ³)	수혜면적 (ha)	농업용(개소)			생활용 (개소)	
				계	대형	소형		
의령	163	11,705	2,482	240	230	10	33	

2) 양수장비 보유현황(2015년 12월)

구분	양수기(대)				비고
	합계	엔진형	탑제형	모터형	
의령	148	59	44	45	

3. 재난관리대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가. 기본방향

- 1) 물 절약 프로그램의 개발 및 연구
- 2) 지하수 기초조사 확충 및 D/B 구축
- 3) 가뭄 발생시기 예측과 가뭄 발령기준 등 개발
- 4) 기존 수자원시설의 효율적 활용

나. 추진전략

- 1) 지하수 조사자 D/B화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2) 용수공급 능력이 부족한 수리시설 확충 및 보강
- 3)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의 신설·확장 등 용수개발

Ⅱ. 재난관리대책

1. 예방대책

가. 가뭄예방대책 기본추진사항

1) 공 통

가) 가뭄발생시기 예측과 가뭄 발령기준을 정량화 할 수 있는 기술개발 및 연구 촉진

나) 물 절약 프로그램의 개발 및 연구

다) 시설물별 용수관리시스템 개발·운영

라) 가뭄의 평가와 예측 모형, 이수 및 절수관리 지침 등 마련

2) 부서별

가) 농업용수대책 추진

(1) 영농기 이전 농업용수의 개발을 위한 사전조사의 실시, 농업용수의 개발 시 환경파괴 등을 고려

(2) 수리시설, 양수장비 정비점검 및 부족한 장비의 사전보충 실시

(3) 논물 가두기, 간이 보 설치 등 용수확보대책의 사전점검 및 준비

(4) 용수 부족지역은 농작물을 선별 파종하는 등 피해예방대책 강구

나) 지하수개발 및 사후관리 강화

(1) 개발된 지하수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준공신고제 도입 운영

(2) 지하수 기초조사 확충 및 D/B 구축

(가) 필요시 즉시 개발이 가능하도록 기초조사 실시

(나) 조사 자료를 D/B화하여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3) 지하수 감시망 구축을 위한 관측소 설치

(가) 기 개발된 관정활용 보조 관측망 설치 운영

다) 상습가뭄지역해소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추진

(1) 빗물이용시설 조사 및 효율적 빗물관리 방안 강구

- 각종 연구기관과 행정기관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2) 기존 수자원시설의 효율적 활용

- 기존 지역상수도 시설의 유지관리

- (3) 다양한 수자원 확보
 - 지하수의 효율적 개발·이용 등 다양한 수자원 확보방안 추진
- (4) 농업용 댐 건설
 - 상습가뭄지역 용수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용 댐의 건설 추진
- (5) 지방상수도 신설·확장
- (6) 용수공급 능력이 부족한 수리시설 확충 보강
- (7) 수리시설이 없는 지역의 용수원 개발
- (8) 상습가뭄지역을 조사하여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의 신설·확장 등의 용수개발 추진

라) 물 절약 대책추진

- (1) 물 다량사용업소, 유치원 및 초·중·고 등에 절수교육 실시 및 절수기 설치 유도
- (2)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및 물 다량 사용업소에 절수기 설치 의무화

마)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추진

- (1) 상수원 상류지역을 중심으로 갈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강화
- (2) 수계별 환경오염 우려 업소 중점 단속

2. 대비대책

가. 가뭄대책에 관한 연구개발 및 조사 활성화

- 1)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가뭄방재를 위한 조사·연구개발
- 2) 가뭄대책에 관한 기초자료 집적, 연구시설 확충 등

나. 가뭄발생 예상지역 관리

- 1) 한해 장비 점검·정비
 - 가) 자체보유중인 장비에 대해 월1회 이상 점검·정비 실시
 - 나) 양수장비 보유량이 정수에 미달될 경우 즉시 확보 보충
- 2) 기상분석 및 생육상황 관찰

- 가) 기상전망, 지역별 강수상황 및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 파악
- 나) 논·밭 토양 수분함량 및 농작물 생육상황 조사
- 다) 평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기상청을 통한 기상상황 파악
- 라) 수리시설·양수장비, 용·배수로를 사전 점검하고 용수확보에 주력
- 마) 수리불안전답 등 농업용수 부족지를 파악하여 논물가두기 추진
- 바) 가뭄대비 농작물관리 및 재배요령 홍보·지도
 - (1) 예비 못자리 설치 및 가뭄 상습지 내만식성 품종 재배
 - (2) 퇴비, 볏짚 등 유기물 피복으로 토양수분 증발 억제 지도
 - (3) 용수확보 불가능지역은 건답직파 등 작부체계 개선 지도
- 사) 저수지 물넘이 뜯우기, 간이물막이 등 농업용수 최대 확보 및 물 관리 철저
- 아) 항구적인 농업용수대책 추진
 - 논·밭 용수개발 및 기존시설보강, 지하수 개발 등 지속추진

3) 가뭄 우려 단계의 조치사항

- 가) 지역별 강수상황 및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 파악
- 나) 논·밭 토양 수분함량 및 농작물 생육상황 조사
- 다) 농업용수 부족과 농작물 생육부진 및 부분적인 피해발생
- 라) 의령군에 가뭄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 기관 간 협조체제 유지
- 마) 가뭄지역 농업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조적인 가뭄극복 운동 전개
 - 가뭄대책 추진을 위한 유류대 전기료 등 지방비 지원 등
- 바) 모내기 지연에 따른 못자리 모 노화방지 및 절수형 영농추진
 - 수로, 논두렁 등을 정비하고 비닐 깔기 등으로 물 손실 방지
- 사) 관정, 송수호스 등 양수 장비를 이용하여 농작물 급수대책 추진
- 아) 암반관정, 간이용수원 개발 등 긴급용수 개발 계획 수립 추진
 - 공사 중인 지구의 조기 부분급수면적 최대한 확보 및 관정 등 용수원 개발 지원
- 자) 양수장비 배치 망 구성 및 인력지원 계획 수립
- 차) 가뭄지역은 논·밭 구분 없이 초동단계부처 급수 대책

4) 가뭄 확산 단계의 조치사항

- 가) 논·밭 건조지역이 늘어나고 농작물의 시들음 현상 확산
 건조 : 토양 수분함량 40%미만
- 나) 농작물의 파종 및 발아, 정식지연 지역이 확산되고 고사 등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
- 다) 의령군의 가뭄대책 상황실을 확대 운영하여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
- 라) 가뭄극복을 위한 총동원 지원체제로 전환
- 마) 관정, 양수기, 송수호스 등 양수 장비를 총동원하여 농작물 급수대책 추진
- 바) 가뭄대책 추진을 위한 인력 및 장비 등 총력 지원
 - (1) 유관기관에 인력·장비지원 및 일손 돕기 추진
 - (2) 농기공 및 지정업체 보유 장비 총동원 지원
- 사) 늦모내기 논 병해충 방제 및 비배관리 중점 지도
- 아) 모내기가 불가능한 논은 대파 지원
- 자) 농진청, 농기공 기술지원단 현지파견 및 인근 군부대 장비인력 지원
 - (1) 영농·양수장비, 수리시설 기술지원단 현지 지원
 - (2) 군부대 인력 및 중장비 가뭄지역 현지 지원
- 차) 양수기, 송수호스 등 양수 장비를 가뭄지역에 전수배 조치하여 다단 급수, 양수저류 등 적극 추진
- 카) 간이용수원, 관정 등 용수원 개발 확대 지원
- 타) 가뭄극복을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홍보활동 강화
 범국민적인 가뭄대책추진 협조 등

5) 가뭄발생예상지역 관리

- 관정 및 한해 장비 점검·정비
 - (1) 농업용 관정의 이용실태 관리
 - (2) 자체보유중인 장비에 대해 월1회 이상 점검·정비 실시
 - (3) 양수장비 보유량이 정수에 미달될 경우 즉시 확보 보충

3. 대응대책

가. 가뭄발생 직전의 대책

1) 가뭄 대응 활동체제의 확립

가) 비상근무체제에 따라 직원의 비상소집, 재난대책본부 설치 운영, 각종 재난정보수집과 연락체계 확립 등 대응조치

나) 재난관리책임기관, 공공기관 등과 상호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

2) 주민에 대한 재난 예·경보 신속 전파

가) 언론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 강화

(1) 기상특보, 재난 예·경보의 신속한 보도

(2) 유선방송 등 방송매체를 활용한 재난경보 전파체계 확립

(3) 문자전광판 방송실시

나) 방재관련 유관기관과의 홍보협조 강화

3) 기상상황 및 재난상황의 전달

가) 상황전달

- 기상특보 등의 기상상황과 재난상황 등 관련정보를 언론매체를 통하여 국민에게 신속히 전달

나. 재난발생 직후 신속한 상황관리체계 확립

1) 관내 2개 읍·면 이상에 가뭄발생시 의령군재난안전대책본부에 가뭄상황실 설치 운영

2) 가뭄상황실 운영은 각 소관기관별로 특성에 맞게 설치 운영하되 의령군재난안전대책본부가 총괄기능 수행

의령군 가뭄상황관리는 의령군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총괄 추진하고, 지역성과 가뭄상황에 따라 가뭄대책업무 체계를 조정하여 추진

다. 단계별 제한급수대책 수립

1) 지역실정에 따라 1단계(10~30% 감량공급)4단계(급수 중단)로 구분단계별 추진대책 수립 실시

구 분		기 준	내 용
1단계	1-1단계	10% 감량 공급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지대 및 급수불량지역 운반급수 방송·캠페인 등을 통한 절수 홍보 상수도 수질관리 강화(정수장 소독, 급수전 검사)
	1-2단계	10~30% 감량 공급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상급수대책상황실’ 운영 물 다량사용업소의 영업시간 단축 상수도 수질관리 강화(정수장 소독, 급수전 검사) 공공건물, 대형빌딩에서의 절수 확대 공업용수 절약사용 및 재활용 확대 각 가정에서의 절수 적극 유도 식수용 지하수 개발 격일제 또는 3일제로 제한급수 실시 수영장, 세차장 등 영업시간 단축 또는 임시휴업 농업용수원지(저수지, 지하수)활용조치
2단계	2단계	30~50% 감량 공급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근 지자체간 긴급 급수지원 물 다량 사용업소 자율 휴무실시 식수용 관정개발 확대 민방위 비상관정 이용 수돗물 다량사용 공장 조업 단축 군부대 인력·장비 지원 비상급수
3단계	3-1단계	50~60% 감량 공급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정에 따라 3~5일제 급수 산업용수 공급 감축·중단 개인 및 민방위 관정, 전용상수도 공동이용 확대
	3-2단계	60% 이상 감량 공급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소한의 생활용수만 공급 수돗물 다량사용업소 격일제 영업
4단계	4단계	급수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먹는 샘물 공급 최소한의 식수배급제 실시 개인관정 공동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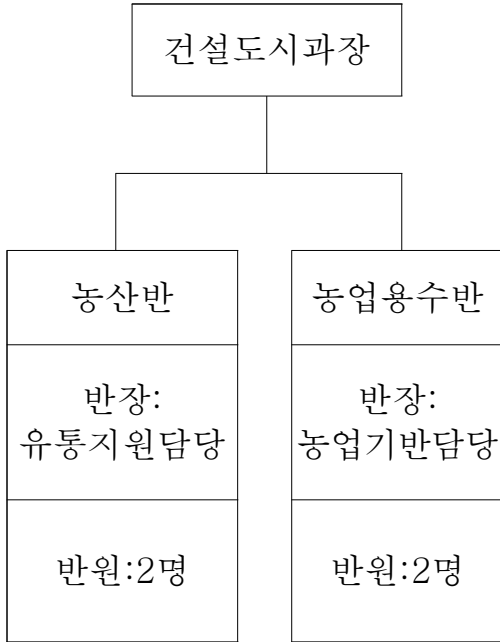
라. 가뭄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구축

1) 가뭄단계(정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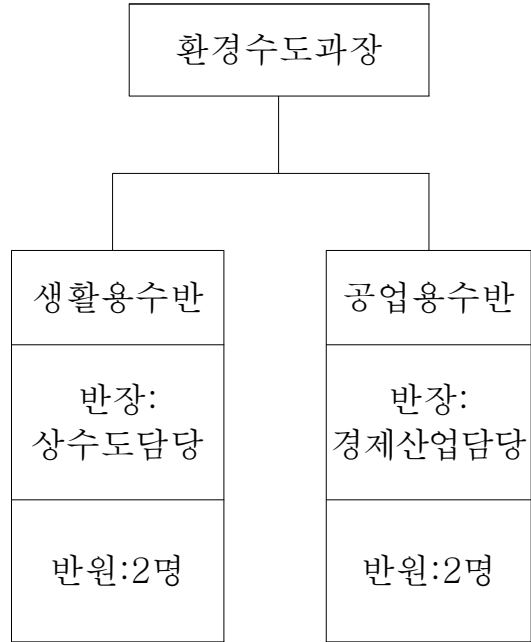
가) 가뭄 우려 시 상황관리는 관련 실·과별로 업무를 추진하고, 필요시 관련 실·과가 가뭄관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 체제 구축

나) 의령군

<농업용수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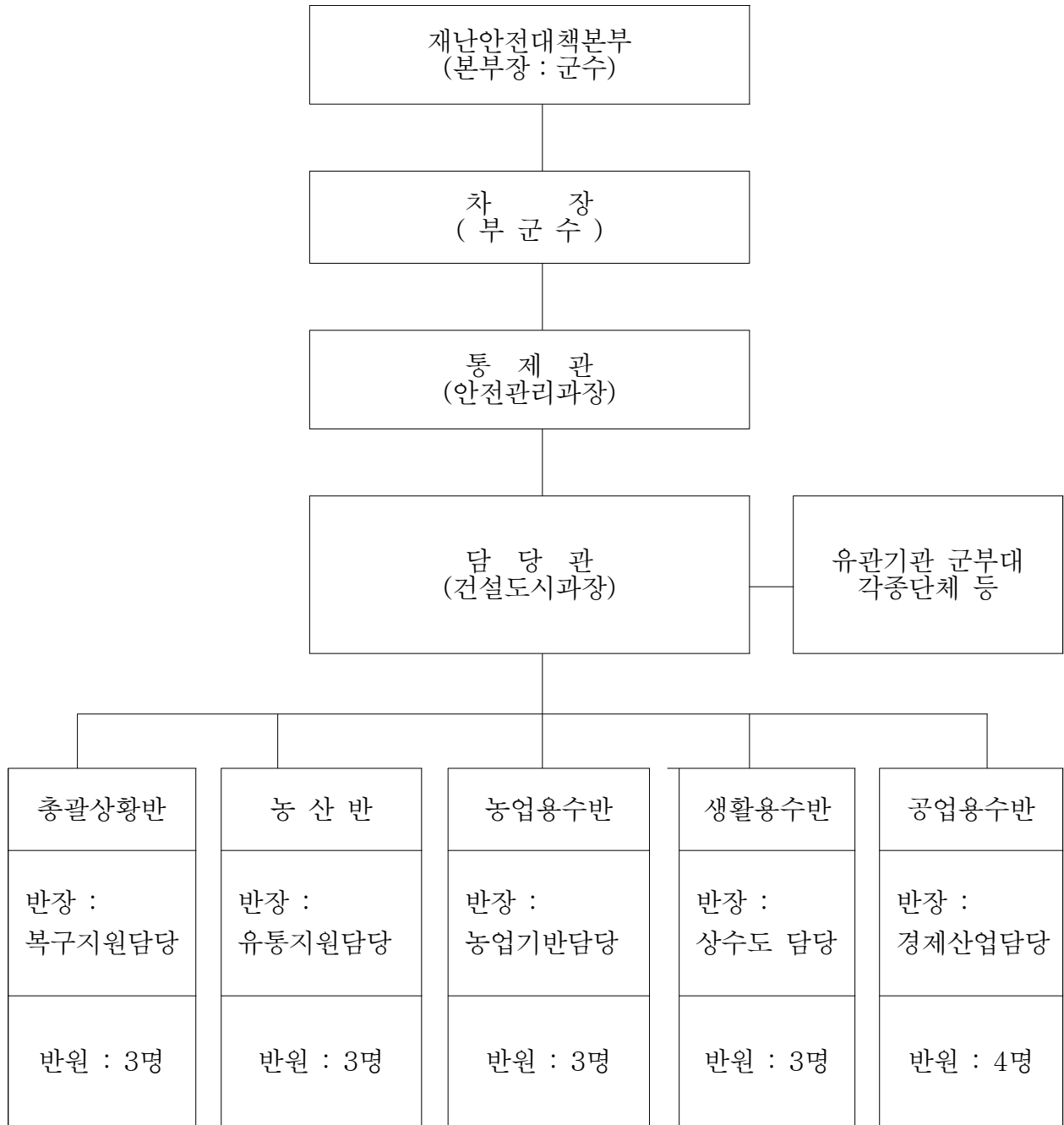
<생활·공업용수분야>



2) 가뭄 시작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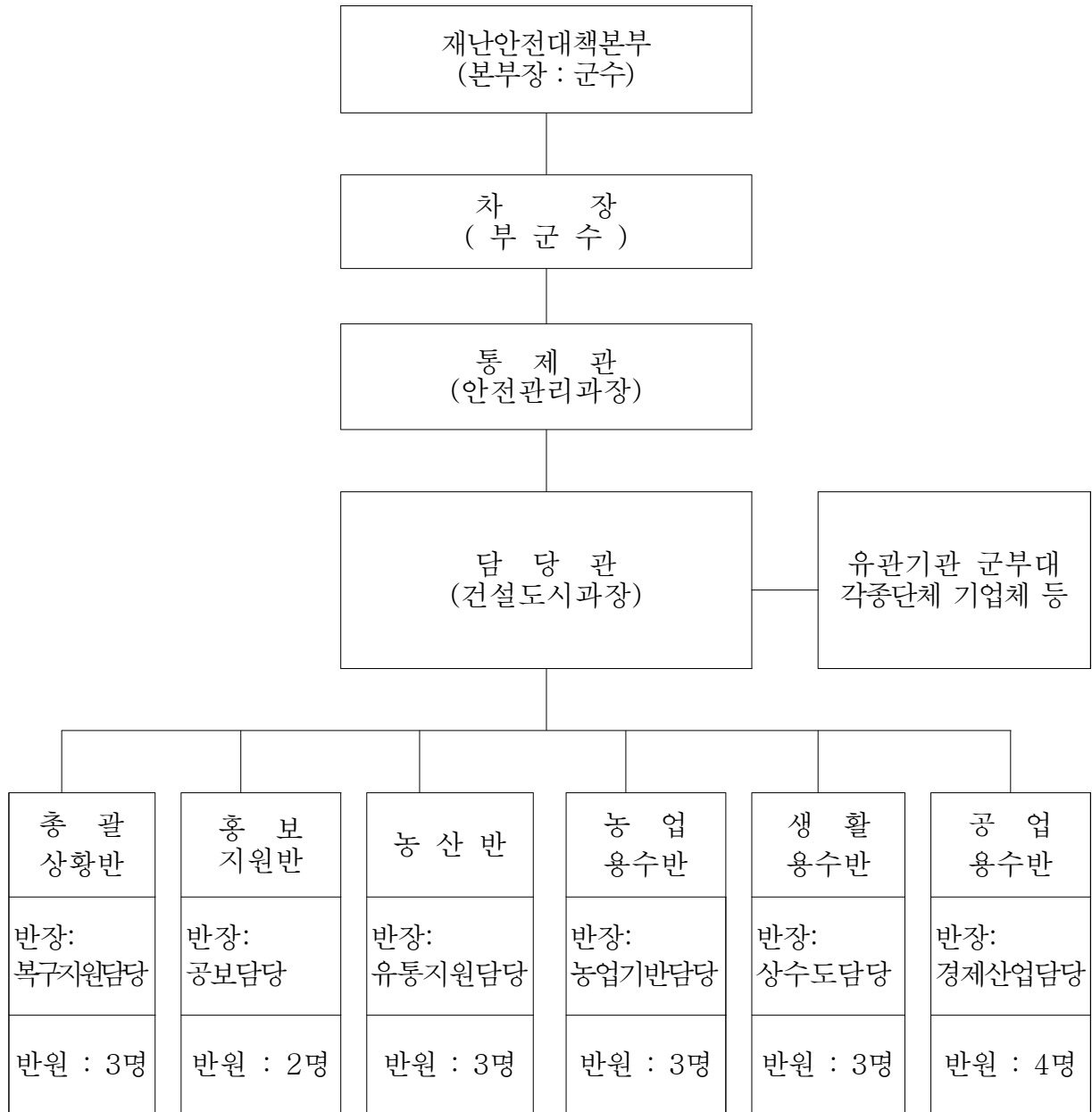
가) 가뭄현상이 2개 읍·면 또는 2개 분야 이상 가뭄이 나타나고 가뭄지속이 예상될 때 가뭄대책 업무를 의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관장 하되, 업무비중이 높은 실·과에서 총괄 상황관리하고, 관련 실·과별 상황관리

나) 지역관내 유관기관(농협, 한국농어촌공사, 한전 등) 및 군부대, 각종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추진



3) 가뭄확산 단계

- 가) 가뭄현상이 5개 읍·면 이상 나타나거나 장기 기상전망에 가뭄지속이 예상될 때 가뭄대책업무를 의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총괄하고, 관련 실·과별 상황관리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 합동 근무실시
- 나) 지역관내 유관기관(농협, 한국농어촌공사, 한전 등) 및 군부대, 각종단체, 기업체 등과 가뭄극복 총력지원 체제 구축·추진



마. 긴급식수원 확보 및 생활용수 공급

1) 긴급식수원 확보 및 생활용수 공급

- 가) 유희우물 또는 농업용 관정 등 기존시설 최대 활용
- 나) 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비상급수시설, 인근 정수장, 간이 상수도, 전용상수도 등 활용.
- 다) 농업·공업·발전용수 등 다른 수리시설 일시 전용
- 라)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비상급수를 위한 시설장비 및 인력 확보 (119안전센터, 군부대 등)
- 마) 먹는 샘물업체의 협조를 받아 먹는 샘물 공급

2) 범 국민적 절수운동전개 등 대 국민 홍보

가) 방송매체를 통한 절수운동 전개

유선방송을 통한 자막방송 및 홍보

나) 가뭄극복 3대 운동의 전개 → 저수, 절수, 용수개발

다) 범 국민 생활용수 10% 절수운동 강화

라) 기존 건물의 수세식 변기물통에 벽돌 및 물주머니 넣기, 수도꼭지에 절수디스크 달기운동 등

3) 가뭄발생지역 긴급 용수원개발 추진

가) 가뭄발생지역 또는 물 부족 예상지역에 용수 공급을 위하여 지하수, 간이용수원 등을 개발하고 물 부족지역에 대한 급수를 위하여 양수공급 실시

나) 주요사업내용

(1) 지하수 개발 : 암반관정 개발, 소형관정 개발, 집수정 개발 등

(2) 간이 용수원 개발 : 하상굴착, 포강, 이동식 양수시설 등

(3) 양수급수 : 양수 장비를 동원한 용수공급 및 다단양수

다) 사업비 재원 : 국고 및 지방비

라) 유희우물 또는 농업용 관정 등 기존시설 최대 활용

마) 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비상급수시설, 인근 정수장, 간이 상수도, 전용상수도 등 활용

바) 농업·공업·발전용수 등 다른 수리시설 일시 전용

사)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및 비상급수를 위한 시설장비 및 인력 확보
(군, 의령소방서 등)

아) 먹는 샘물업체와 협조, 긴급식수 공급

바. 실과, 유관기관별 가뭄극복 추진 대책

1) 기획감사실 소관

가) 용수원 개발을 위한 특별지원금 지원

나) 가뭄극복 추진 상황 홍보 및 언론보도 추진

- 2) 행정과 소관
 - 가) 가뭄극복을 위한 임시 반상회 개최
 - 나) 공무원 재해구호 특별휴가 실시
 - 다) 불요불급한 정부행사 자제
- 3) 재무과 소관
 - 가) 가뭄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부담 완화 조치
- 4) 경제교통과 소관
 - 가) 공업용수를 농업용수로 공급 추진
 - 나) 가뭄대책 양수시설에 대한 전기공사 긴급가설 지원
 - 다) 수요가 집중되는 양수기 생산관리로 차질 없는 공급
 - 라) 산업단지 내 절수운동 및 용수수요 분산유도
- 5) 환경수도과 소관
 - 가) 생활용수 공급 특별대책 추진
 - 나)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강구
 - 다) 하·폐수 처리수를 농업용수로 재활용
- 6) 건설도시과 소관
 - 가) 물 빠진 저수지 준설사업 추진
 - 나) 지하수 조사용 관정 및 국가지하수 관정을 이용한 용수공급
 - 다) 관정개발 실패공 원상복구 추진
 - 라) 하상굴착, 포강 등 간이용수원 개발 원상 복구
 - 마) 가뭄지역 인력·장비 지원
 - 바) 하상굴착, 간이용수원 개발 등 긴급 용수개발비 지원
 - 사) 농업용수 공급에 필요한 전기시설 조속설치 협조요청(한전)
 - 아) 영농단계별 가뭄대책 추진
- 7) 안전관리과 소관
 - 가)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업관련단체 가뭄대책 상황실 설치·운영
 - 나) 가뭄지역 민방위 훈련 제외, 교육연기
- 8) 농업기술센터 소관
 - 가) 가뭄대비 예비 못자리 추가설치 및 육묘관리 강화
 - 나) 토양 수분조사 실시
 - 다) 월동작물 등 작물생육 조사 실시

9) 제5870부대 5대대 제15중대 소관

가) 가뭄극복을 위한 병력 및 장비 총동원 지원

기본임무수행과 작전에 투입되는 인원 및 장비를 제외한 전 역량 집중 지원 “농촌일손돕기운동”을 “가뭄극복 일손돕기운동”으로 전환

나) 시추기 및 인력을 지원 용수원 개발 추진

다) 급수·제독차 및 청수선을 지원하여 급수난 지역 운반급수 지원

라) 군 보유 장비인 굴삭기, 도저 등을 투입, 간이용수원 개발 및 저수지 준설 지원

마) 가뭄해갈시 하상굴착, 물웅덩이 등의 원상복구지원

4. 복구대책

가. 피해농작물에 대한 복구비 지원

1) 중앙지원

농업재해대책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시·군·구당 농작물 피해면적이 50ha이상 시 지원

2) 자치단체 지원

중앙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가뭄피해에 대하여 지원

나. 가뭄대책 장비 구입비 등의 지원

1) 유류대 및 전기료

가뭄 예방용 용수확보를 위하여 사용한 유류 및 전기료 지원

2) 장비구입비

가뭄 대책용 양수기 및 양수용 발동기 구입비 지원

3) 시설비 지원

양수용 펌프 및 관정설치비 지원

다. 가뭄피해 농가의 생계안정과 경영유지를 위한 지원

1) 지원대상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별표1에 정한 대상자

2) 지원항목

이재민 구호, 중·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영농자금의 상환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정부양곡 지급 등

라. 중·장기 가뭄종합대책 추진

1) 건설도시과

가) 기존 수자원시설의 효율적 활용

가뭄 등 비상시에도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하도록 광역 상수도의 연계운영 등 권역별 광역급수체계 구축

나) 저·소류지 확충

장래 물 부족에 대비한 새로운 수자원 확보를 위하여 저·소류지 건설을 단계적으로 추진

다) 다양한 수자원 확보

지하수의 효율적 개발 수자원 확보방안 추진

라) 제4차 농촌용수 10개년 계획(2012~2021) 추진

(1) 대 중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을 완공위주로 집중지원

(2) 소규모 개발 등 지역특성에 맞는 수자원확보 대책 신규추진

(3) 대단위 종합개발사업의 부분준공 위주로 지원

(4) 기존저수지 준설 및 터 쌓기로 저수능력 보강

(5) 지하수의 체계적 개발 및 보전·관리체계 확립

(6) 밭·농촌 생활용수 개발용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7) 농촌용수 목적의 수계연결 및 여유 수자원 활용확대

(8)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의 효율적 추진

(9) 물 관리 정보화·자동화 체계구축

(10) 용수공급이 어려운 산간계곡 논의 밭 전환

(11) 가뭄대책 집중관리 지정·관리 ⇒ 관정, 다단양수, 양수장 등 사업추진

마) 작은 가뭄에도 영농에 지장이 되는 상습가뭄지역을 우량 농지로 전환
(농업진흥지역)

2) 환경수도과

가) 지방상수도 사업 지속 추진

나) 식수 및 공용 댐의 지속적인 관리 추진

다) 농촌지역 상수도 시설확충

라)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로 재활용 추진

마) 물 절약 대책 추진

(1) 물 절약 홍보 강화

(2) 물 다량 사용업소 및 학교에 절수기 설치

I. 지진예방대책

1. 기본추진사항

가. 지진재난 경감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건축물, 토목시설물, 학교시설, 국민생활 필수시설(Life-Line), 방재관련시설 등 내진성 확보대책 강구

나. 내진설계기준 강화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

1)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한 내진대책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

2) 기존시설물에 대한 내진대책

가) 기존시설물에 대한 내진실태조사 및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연차별 정비계획 수립 추진

나) 내진설계기준 적용실태 지도·감독 강화

다) 인·허가 및 공사발주 전 내진설계 기준 적용여부 확인 및 행정지도

라) 교육기관을 통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마) 건축물의 낙하물 대책 및 벽돌담 등의 안전성 확보

바) 반상회, 정기간행물 등을 이용한 주민홍보 강화

2. 부서 및 기관별 추진사항

가. 도시의 공간 확보 및 기능분산

1) 지진 취약 지역에 대한 도시 공간 확보

가) 지진취약지역 도시에 공원, 녹지 등 열린 공간 확보

나) 지진발생시 대피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이용계획과 도시계획 수립 시 반영

2)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분산배치

가) 지진발생으로 도로·철도 등이 동시에 파괴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신설하는 도시 등에는 사전에 도시기반시설 분산 배치

나) 도시계획 등 각종 시설계획 수립시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

3) 도시 방재성의 향상

가) 도시방재 구조화대책 등 추진 및 기능분산

나) 건축물이나 공공시설의 내진·불연화, 녹지대의 계획적 확보로 지진에 강한 도시구조의 형성

다) 고층빌딩, 지하도로 및 터미널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도시시설 등의 지진발생시 안전대책 및 응급체제 정비

나. 위험시설물의 점검·정비

- 1) 지진발생시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 가) 산사태, 산지재난, 토석류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
 - 나)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시설 등 국민생활 필수시설
 - 다) 도로, 하천, 철도 등 사회 간접자본시설
 - 라) 화약류 저장소, 취급업소 등 폭발이 예상되는 시설
 - 마) 터미널, 체육관,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등

다. 화재예방시설물 등의 점검·정비 및 혼란방지

- 1) 화재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한 비축기지별, 유형별로 진압계획 수립 추진
 - 가) 가스누출 시 자동 차단장치 설치 확대 등 도시가스 누출방지대책 수립
 - 나) 터미널, 극장, 역,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혼란방지대책 수립

라. 화재의 확대 방지

- 1) 초기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 활동체제 정비
의령소방서장 주관 하에 인접 소방기관과 응원체제 확립
- 2) 정보·통신체제의 정비 강화
유무선 통신용 119전화 회선 확대
- 3) 새로운 소화체제 정비
공중살포를 위한 화재진압장비 확보

마. 긴급수송의 대책 확보

- 1) 긴급수송활동을 위한 수송시설 및 수송거점 지정
- 2) 긴급수송로로 지정된 수송시설, 수송거점 및 도로교통 관련시설의 내진성 확보와 도로관리체제 정비

바. 생활필수품 등의 공급체제 정비

- 1) 물자의 성격에 따라서 집중 비축 또는 대피장소의 위치를 감안한 분산 비축 등의 체제 정비
- 2) 식료품, 물, 의약품 등 생활필수품 및 통신기기 등의 물자 비축 또는 조달체제 정비

사. 지진재난 위기대응 표준행동요령 작성·활용

- 1) 관련 실과·기관별로 지진재난에 대한 위기관리 목표와 방향, 의사결정체계, 위기경보체계 등에 대한 책임과 역할 규정
- 2) 관련 실과 및 기관은 지진재난 관련 책임과 역할에 따라 단계별(예방·대비·대응·복구)로 적용할 세부절차와 제반 조치사항을 규정한 표준행동요령 작성 활용

아. 지진방재기술 연구 활성화

- 1) 통신시설의 내진성능 강화, 정전대책, 통신시설의 위험분산, 통신로의 다중화, 지중화의 촉진, 무선을 활용한 대책, 디지털화 촉진 등 통신수단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연구
- 2) 지진동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내진설계, 구조물의 내진보강 등 공학적 분야, 재난발생시의 인간행동이나 정보전달 등 사회학적 분야에 관한 연구 추진

3. 국민의 자율방재의식 고취

가. 방재지식 보급

- 1) 리플릿, 포스터, 비디오테이프 및 언론기관을 활용하여 다음 중점사항에 대하여 주민 및 학교, 각급기관에 보급한다.

가) 평상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

- (1) 식품, 음료수의 비축
- (2) 비상시 반출할 물품의 비축
- (3) 가구 등 전도방지대책
- (4) 비상 위험지구의 확인
- (5) 피난방법, 피난장소 등의 확인

나) 지진 발생시의 주의하여야 할 사항

- (1) 다양한 조건하에서의 개인별 행동
- (2) 피난장소에서의 행동요령

다) 주민에 대한 교육

- (1) 지진에 대한 기초지식
- (2) 지진 발생시의 행동지침 등 응급대책
- (3) 재해 위험지구에 대한 지식
- (4) 피난지, 피난로, 그 외 피난대책에 관한 지식
- (5) 주택의 내진, 화재예방, 비상시 반출물품의 비축 등 평상시 준비사항
- (6) 고령자, 장애인, 영유아등 피해 약자를 배려한 지원체제
- (7) 방재 정보에 대한 습득 방법 등에 대하여 주지
- (8) 교육효과가 높은 지진체험 등에 대하여도 도입을 검토한다.

라)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

- (1) 지진에 관한 기초지식
- (2) 지진이 발생하였을 시 직원들의 구체적인 행동
(동원체제, 임무분담, 정보 전달체계)

- (3) 지진대책의 과제 및 그 외 필요한 사항

마) 기업에 대한 교육

- (1)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 KT 등 각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지진 발생시 행동요령 및 응급대책 등
- (2) 그 외 일반기업들은 지진 발생시 행동 메뉴얼, 지역주민과의 연대

나. 지진대비 훈련

1) 기본방침

가) 일반적인 방재응급대책 훈련

- (1) 지진 발생에 대비한 관계 기관의 인원 및 자재 확보 및 조작 훈련
- (2) 소방, 경찰, 군 등 방재 기관 상호 연대, 지원 및 동시다발적 화재의 소화, 연소방지, 부상자 구출, 구호, 의료기관에의 수송 등
- (3) 피난소의 설치 및 운영, 급식 및 급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훈련

나) 정보수집 및 전달

- (1) 방재 관계기관, 주민 상호간의 적절한 재난관련 정보 수집, 전달
- (2) 통신시설의 기능 중단에 대비한 긴급 전달방법
- (3) 인터넷 등을 활용한 정보 전달 훈련

다) 라이프라인의 확보

- (1) 전기, 가스, 상하수도, 통신 등 라이프라인은 광역적이고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역, 기업 등에 있어서 대체수단을 확보하고 관련기기를 점검, 사용 방법 등을 숙지한다.
- (2) 라이프라인 시설의 상호 지원을 포함한 응급복구 훈련
- (3) 주거, 사무실 등의 전도 파손에 대비하여 응급복구용 자재의 확보

2) 교육방법

가) 민방위대 실무 교육 강사

나) 지역 및 직장 등의 민방위훈련과 병행하여 지진발생을 가정한 훈련 실시

다) 관계부처 주관으로 관련기관별 훈련 실시

다. 지역자율방재조직 구축 지원

- 1) 지역실정에 밝은 원로, 통·리장,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실효성 있는 지역자율방재조직체계 구축

- 지역자율방재조직의 전국단위 네트워크 구축

2) 재난발생시 신속한 민방위대의 동원체제 구축

대한적십자사와 민간봉사단체가 연계, 재난발생시 민간봉사자의 활동이 원활하도록 활동환경 정비

3) 평상시 실시할 사항

가) 지진방재에 관한 지식보급

나) 지역 내 재해위험 지구의 파악 및 위험도 이해

다) 가정 내 방재에 관한 가족간의 의견 도출

라) 각 지역에 있어서의 피난지, 피난로의 확인

마) 석유스토브, 가스기구 등의 화재예방조치 활동

바) 가옥의 보강 및 블록 벽, 담장의 전도방지

사) 가구 등이 넘어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보완조치

아) 식수, 식품, 일용품, 간이 구급의약품 등 생필품의 비축

자) 가장 가까운 의료시설의 위치 확인

4) 지진 발생시 실시할 사항

가) 지진정보의 정확한 파악

나) 식수, 식품, 연료 및 기타 비상반출품의 준비

다) 화재 예방조치 및 초기 소화 실시

라) 부상자의 응급조치 및 경상자 구호

마) 초기의 구출, 구조

바) 적절한 피난

사) 자력에 의한 생활수단 확보

라. 지역자율방재조직의 활동

1) 지진에 관련한 기초적 지식 보급

2) 지진 정보의 수집, 전달

3) 구출 구호 및 노약자 지원

- 4) 재해위험지구의 현황 파악
- 5) 초기 소화 및 화재예방활동
- 6) 피난 유도

마. 국민 방재활동의 기반조성

- 자원봉사자 환경정비
 - 가) 민간봉사 단체의 활동 환경정비
 - 나) 민간봉사자의 활동거점 확보

바. 기업의 방재활동 촉진

- 기업의 방재활동 촉진
 - 재난발생시 행동요령의 작성, 방재체제의 정비, 방재훈련 등을 실시

II. 지진 대비대책

1. 방재담당 공무원

- 가. 직원의 비상소집체계 정비, 정보수집 전달수단 확보
- 나. 응급활동을 위한 표준행동요령을 작성하여 정기적인 훈련 실시 및 자재, 장비의 사용방법 숙지

2. 방재관계기관 상호간의 연계성 확보

- 가. 응급·복구활동을 위한 방재관계기관 상호지원 강화
- 나. 생활필수품·의약품 등의 조달, 대피시설 등의 상호이용 지원체제 정비

3. 방재중추기능의 확보

구급·의료 및 응급조치 등을 위한 시설은 정전 시에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정비

4. 재난 예·경보 및 정보의 수집·연락

가. 정보의 수집·체제의 정비

- 1) 방재기관과 정보 전달 경로의 다중화 및 연락체계 확립
- 2) 항공기, 경비선, 차량 등 다양한 정보 수집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 정비

- 3) 신속·정확한 재난정보의 수집·연락 체계 정비
- 4) 민간기업, 보도기관, 주민 등으로부터의 재난관련정보 등의 수집체계 정비
- 5) 비상용 발전 설비 설치, 연료 확보 및 보급 운반체계 정비
- 6) 방재정보 형식 표준화 및 수집, 전달 시스템의 IT화

나. 정보의 분석정리

- 1) 정보 분석을 위한 인재육성과 전문가 의견 활용
- 2) 종합적인 방재정보를 총괄한 지리정보시스템(방재GIS) 구축 추진
- 3) 정보의 데이터 베이스화, 온라인화, 네트워크화 추진

5. 대피체계 및 대피장소의 정비

가. 대피장소 및 대피로의 지정

- 1) 대피장소는 지진 시에도 안전한 내진설계에 의한 건축물을 원칙으로 한다.
- 2) 지역 내 노약자가 심적으로 가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을 기준한다.
- 3) 대피장소는 노약자, 장애인, 그 밖의 재난취약자 등이 천천히 도보로 이동하여도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위치라야 한다.
⇒ E-30분 주민대피계획의 효율적인 주민대피 방안 강구
- 4) 대피로는 노약자, 장애인, 그 밖의 재난취약자 등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고, 평상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경로라야 한다.

나. 대피체계의 정비

- 1) 대피장소 및 대피로를 사전 지정, 평소부터 주민에게 홍보
- 2) 재난발생시 대피유도에 관한 계획의 사전 작성·훈련
- 3) 노약자, 장애인, 그 밖의 재난취약자 등의 대피유도체계 정비
- 4) 이재민이 피난장소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피난유도 표시판을 설치하며, 피난로 지정 시는 다음사항을 기본으로 한다.
 - 가) 동일 피난장소의 도로는 최소한으로 한다.
 - 나) 피난도로는 교차가 없도록 하고 일방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 다) 피난도로에 접하여 고압가스시설 등 위험물 시설은 없어야 한다.

다. 대피장소의 정비

- 1) 공원, 학교, 공공시설 등을 대상으로 지역의 인구, 지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수와 규모의 대피장소 지정
- 2) 저수조, 우물, 간이화장실, 통신기기, 난방 등 대피장소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정비로 복구기간의 장기화에 대비
- 3) 대피장소 또는 대피생활에 필요한 물자 비축

Ⅲ. 지진 대응대책

1. 재난발생 직전의 대책

가. 지진 대응 활동체제의 확립

- 1) 비상근무체제에 따라 직원의 비상소집, 재난대책본부 설치 운영, 각종 재난정보수집과 연락체계 확립 등 대응조치
재난관리책임기관, 공공기관 등과 상호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

나. 주민에 대한 재난 예·경보 신속 전파

- 1) 언론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 강화
 - 가) 기상특보, 재난 예·경보의 신속한 보도
 - 나) 방송매체를 활용한 재난경보 전파체계 확립
 - 다) 문자(스크롤) 방송 또는 생방송체제로 긴급뉴스 방송 실시
 - 라) 민방위 경보시스템의 활용
- 2) 방재관련 유관기관과의 홍보협조 강화

다. 기상상황 및 재난상황의 전달

- 1) 정보연락체계
 - 헬리콥터, TV 영상전송시스템과 고정감시카메라, 영상전송시스템의 도입 등 다중적 정보통신시스템, 인터넷, 핸드폰 문자 메시지
- 2)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홍보

- 가) TV를 통한 자막 및 24시간 생방송 실시
- 나) 수집된 각종 피해 정보를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제공
- 다) 재난발생 즉시 핸드폰 문자 메시지 송신
- 라) 문자전광판, 마을앰프, 민방위 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 마) 외국인을 위한 정보의 제공

3) 피해상황 등의 조사보고

가) 피해상황보고

읍·면 → 의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 → 경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관련부처 전파)

4) 상호협력

- 가) 대규모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인접 시·도 및 시·군·구간 상호 지원 협력체제 구축
- 나) 재난 규모별 분야별로 지원협력 행동요령을 작성 활용
- 다) 방재훈련을 통한 개인별 역할분담 확립

5) 파견요청

지진재난 발생에 대비 관계기관은 물론 민간단체에도 역할을 분담하고
 즉시 파견요청

2. 재난발생 직후 신속한 상황관리체계 확립

- 가. 재난발생시 지역본부장이 현장의 신속한 상황과악을 위하여 군 CP개념을 도입한 비상지원본부 설치
- 나. 현장상황관리관과 중앙수습지원단을 활용, 재난현장 상황과악, 지도관리 기능을 수행토록 중앙과 지방간 상황 공동관리제 운영

3. 경비·방범 및 교통대책

가. 경비계획

- 1) 대규모 지진발생에 대비, 경비본부 설치 운영
- 2) 관할 경찰서장은 가용 인원을 최대한 동원 현장에 투입하여 피해실태과악, 대피유도, 구조·구난 등 실시
 - 가) 재해발생 및 발생우려지역에 대한 경찰통제선(Police line) 설치
 - 나) 재해현장 출입 인원 통제 및 질서유지
 - 다) 피해주민 대피 유도

나. 방법계획

- 1) 지진피해 지역의 아파트, 주택 및 상가 등에 대한 범죄예방활동 전개
 - 가) 재해현장 주변상가, 주택가 아파트단지 등에 대한 순찰 강화 및 검문검색 철저
 - 나) 인접 경찰서, 방범순찰대, 기동대 등 병력집중지원으로 안전 활동 및 방범활동 강화
 - 다) 미아 및 고아는 지정된 수용시설에 이동하고 인물 사진을 찍어서 수용시설 게시판에 게시하여 연고자 및 보호자가 신속히 확인

다. 교통규제계획

- 1) 관할 경찰서에서는 1·2단계로 구분하여 교통규제지역 설정 운영
 - 가) 1단계 지진발생과 동시에 통제선을 설치 규제
 - 나) 2단계 피해상황에 따라 점차통제선 설치 확대
- 2) 교통통제요령
 - 가) 대규모 지진발생 즉시 통행중인 차량을 도로의 우측에 정차시키고 중앙부분은 긴급수송차량 통행도로 사용
 - 나) 통제선이 설치된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이외에는 통행을 통제하고 일반 차량은 우회통행 조치
 - 다) 구급차량과 긴급수송차량이 경합하게 될 경우 구급차량이 우선함
 - 라) 교통통제, 피해상황과 사회기간 시설의 복구상황 등을 TV 및 라디오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실시로 일반차량의 진입억제 및 우회 조치
 - 마) 병원의 주민, 주차 통제

4. 긴급수송계획

가. 긴급수송로의 지정 운영

물자 등의 생산 및 보관지에서 피해예상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도로를 긴급 수송도로로 지정

나. 긴급 운송통로의 확보(철도, 도로, 항로)

- 1) 복수의 다중교통 네트워크 수단 확보
- 2) 긴급 수송통로, 주요 우회통로를 표시한 지도정보시스템 개발

다. 긴급도로 개설

- 1) 피해지역내 도로상에 낙하된 장애물 제거 등 긴급도로 개설 계획 수립
- 2) 광역 간선도로 네트워크 정비, 대체도로 확보
- 3) 지역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 거점 간 연결도로, 대체도로, 우회도로 확보

라. 수송차량 등의 확보

- 1) 공공기관으로 소속차량은 1차 동원 차량으로 지정
- 2) 부족할 경우에 대비 민간소유 차량으로 추가 지정 확보

마. 긴급 수송을 위한 체제 및 시설의 정비

- 1) 재해발생시 교통 혼잡을 방지하여 주민 피난로 및 긴급 교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교통규제 계획 및 교통 관제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 2) 재해발생시 광역 교통관리체제의 정비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신호기, 교통정보판, 교통관제 센터 등 교통관제 시설에 대한 내진성을 확보한다.
- 3) 긴급통행차량을 사전에 지정하여 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한다.
- 4) 차량 운전자는 긴급차량 이외는 즉시 도로 밖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 발생시 이동은 도보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미리 홍보, 교육을 실시한다.

5. 청소, 방역, 사체 처리

가. 쓰레기처리

- 1) 지진발생시 건물의 붕괴, 화재 등으로 발생한 대량의 폐기물 신속히 처리
- 2) 대규모 피해발생에 대비 인접 시군과 응원 협조체제 구축

나. 분뇨처리

이재민 수용소 등 집단수용 시설에 간이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처리

다. 지장물의 제거

- 1) 장애물 정리는 군수 주관으로 우선 처리
- 2) 유해물질 회수계획 수립
- 3) 주요 간선도로변의 지장물을 우선 제거하여 구호, 응급복구 등을 위한 장비, 자재 운송이 쉽도록 한다.

라. 방역대책

- 1) 지진발생지역 및 집단수용소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의 예방을 위한 방역반 편성 운영
- 2) 물자 및 장비 부족에 대비 인접 시군과 응원체제 구축

마. 실종자 수색처리

- 1) 실종자수색은 긴급구조 통제단 주관으로 실시하되 실종자를 사망 처리할 경우에는 행방불명 상태에 있는 자로서 여러 사정 등을 감안할 때 거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
- 2) 사체운구 시 운구한 사체는 피해지역 인근의 병원에 안치하고 관계기관의 검안절차를 거쳐 유족에게 인계하거나 유족이 없는 경우 화장

6. 2차 재난방지대책

가. 여진과 강우 등으로 인한 수해, 토사붕괴대책

여진과 강우로 인한 수해, 토사붕괴 등에 대비하여 위험지구를 신속히 확인하고 출입금지조치와 함께 임시 배수시설 설치

나. 건축물, 구조물의 붕괴대책

여진에 의한 건축물, 구조물 등의 추가 붕괴에 대비, 시설물의 안전도 검사 및 응급조치

다. 이상고조, 파랑 등의 대책

이상고조, 파랑, 조위의 변화에 의한 침수방지를 위하여 해안보전시설을 점검하고 재난 우려 시 신속한 대피조치

라. 폭발 및 화재방지대책

폭발, 가스누출 및 화재 위험이 있는 시설의 2차 재난방지를 위한 점검 및 응급조치

마. 유해 위험물질의 누출대책

유해 위험물질의 누출이 없도록 시설의 점검, 응급조치 등을 관계 기관 간 긴밀히 협조하여 환경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며 필요시는 즉시 주민 대피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7. 구조·구급 및 의료대책

가. 구조·구급체제의 정비

- 1) 지진발생지역에 현장지휘소 설치 운영
 - 가) 지역 긴급구조 통제단에서는 인명구조 등에 필요한 장비 및 물자 수시 점검 정비
- 2) 구급체제의 정비
- 3) 현장에 구호소 설치·운영
- 4) 인명구조를 위한 경찰, 군용기자재의 확보
- 5) 구조구급대 정비 및 보강

나. 자원봉사자 대책

- 1) 자원봉사자의 모집·등록·훈련·파견을 위한 센터의 설립 추진
- 2) 재난자원봉사자의 모집·훈련, 파견 등의 제도화
(종류 : 의료, 건축, 소방 등)

다. 피해자 관리

정신적 피로에 대한 치유계획 수립

라. 의료, 보건시설의 재해예방대책

- 1) 의료시설의 안전성 확보
 - 가) 의료시설의 내진구조 시설 보강

- 나) 의료시설 직원 및 입원환자에 대한 피난 훈련 실시
- 다) 소화기구, 경보기, 피난용구의 확보 및 위험물의 적정관리방안
- 2) 재해 시 의료체제 전환
 - 가) 다발 외상, 골절, 화상 진료체제 확립
 - 나) 응급의료기자재를 대여, 반출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다) 보건소의 재해대책 기능 강화
 - 라) 의료기관 상호간 긴급 지원, 협력시스템 구축
 - 마) 의료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 바) 의약품의 안정공급 체제 구축

마. 의료구호대책

- 1) 초동의료 체제
 - 시·군·구 단위로 의료구호반을 편성 운영
- 2) 현장의료 구호소의 설치 운영
 - 가) 대피장소 또는 재난현장 등에 구호소 설치
 - 나) 중앙 및 시·도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은 의료구호 요청이 있을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조통제단 등을 파견 조치
- 3) 의약품·의료 기자재의 신속한 확보
- 4) 후방의료기관의 지정 관리
 - 피해가 예상되지 않는 지역에 200병상 이상의 병원을 대상으로 후방의료 기관으로 지정관리

바. 중상자의 운송체제

현장 구호소의 소장이 긴급구조통제단 또는 129응급정보센터 등에 요청하여 후방의료시설까지 운송 조치

사. 의료시설의 Life-Line 대책

단수, 정전 등으로 인하여 의료 활동을 할 수 없는 의료시설에 대한 라이프 라인 대책 수립

8. 이재민 대피·수용 및 구호

가. 대피권고·지시 및 유도

- 1)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대피 권고 또는 지시, 대피장소까지 안전 유도
- 2) 각급학교에서는 담당 교사 중심으로 학생을 대피장소까지 유도

나. 대피장소 및 대피로의 지정·관리

- 1) 대피예상 인원을 판단하여 대규모 지진발생시 피해가 예상되지 않는 장소에 대피장소 지정 관리
- 2) 경남도의 지질도 및 단층도를 확인하고 반드시 단층대를 피하여야 한다.
- 3) 대피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피소별, 개인별 매뉴얼을 작성 활용

다. 대피유도용 통신장비 확보

기존 통신장비인 소형무전기 등을 주민대피 유도용으로 전환 사용

라. 고령자·장애인의 특별관리

장애인과 거동불편 고령자에 대한 수용계획 수립 추진

9. 비상급수 및 생필품 보급

가. 비상급수

1) 음료수의 공급계획

- 가) 대피소로부터 2km이내의 지역에 응급 급수조 또는 정수조를 설치, 응급 급수활동 실시
- 나) 일시적 단수에 대비 통상 식용으로 사용하는 우물에 대한 수질관리
- 다) 대피소 또는 주변지역에 응급 급수용 임시수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와 수조의 사전 확보

2) 비상급수대책

- 가) 민방위기본법제14조 및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게 지하양수시설 등 비상급수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

나) 비상급수시설 확보

구 분	일 반 건 축 물	공 동 주 택
설치대상	연면적 5,000㎡ 이상	20세대 이상
설치기준	- 지정시설1일 100톤/개소 - 비지정시설10㎡마다 1일 양수량 0.4톤 이상 20톤 미만	- 지정시설1일 100톤/개소 - 비지정시설1일 양수량 세대당 0.2톤 이상

다) 수도법제26조(긴급급수지원)의 규정에 따라 천재지변, 기타의 비상시에 시·도지사가 수도사업자에게, 수도사업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비상급수토록 지시

3) 급수목표량 기준

- 가) 지진발생에서 3일까지 1인1일 4ℓ (음료수)
- 나) 10일까지 1인1일 20ℓ (생활용수포함)
- 다) 20일까지 1인1일 100ℓ (문화적 최소수준 용수공급)
- 라) 28일까지 1인1일 250ℓ (정상적 급수)

4) 음용수 및 생활용수 확보

- 가) 개인우물, 비상급수시설, 담수된 배수지 등을 활용
- 나) 수영장을 저수탱크로 전환 사용
- 다) 간이상수도의 정비 및 개량
- 라) 인근 생수 제조업체 및 판매소의 생수 공급방안 수립
- 마) 현행 평균 3시간분의 배수지 용량을 8~12시간 분으로 확충

나. 생필품 공급

1) 식료 및 생필품의 공급계획

- 가) 피해자에게 3일 이상 공급할 식료·생필품 비축
- 나) 식료 등 긴급 물자의 수송시스템의 확립
- 다) 물자의 방출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양곡 보관창고 등의 파악 관리
- 라) 피해주민에 공급할 식품확보가 곤란할 것에 대비하여 유통통제

10. 시설물 응급복구대책

가. 응급복구를 위한 노동자의 확보

- 1) 건축·토목기술자 등 전문 인력은 관내 업체(설계 및 시공) 협조
- 2) 복구 관련 전문가 및 직원들의 근무처 등을 사전 확인
- 3) 기타 인력지원 군부대, 경찰청, 교육지원청에 요청

나. 피해주택에 대한 응급조치

- 1)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하여 건설할 응급임시주택 예정지 사전 지정
- 2) 자재는 생산업체와 유기적인 협조로 필요시 즉시 반입이 가능하도록 조치
- 3) 주민생활 필수시설을 동시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

다. 주민생활 필수시설(Life-Line)

1) 상수도시설

- 가) 수도사업자별로 긴급복구반 편성, 운영(지방상수도 → 함안군)
- 나) 복구 우선시설을 지정하여 지진 피해 시 우선순위에 따라 복구
- 다) 수도시설의 도면관리를 철저히 하여 긴급복구에 대비
- 라) 지진대비 수돗물 공급시스템 개선
 - (1) 주요 송·배수관의 복선화
 - (2) 시설정보의 다원관리
- 마) 상수원 수계별 전환 급수체계 강구
 - 비상 연결 관로 등에 의한 인근지역간 상호급수 지원
- 바) 단기 대체 수원의 확보
 - 간이 정화장치 등의 보급

2) 하수도시설

- 가) 자체별 복구반 편성 운영
- 나) 양수기, 공기압축기, 수중펌프, 콘크리트 브레카 등 응급조치를 위한 장비 비치
- 다) 하수도시설의 복구순서는 하수처리장, 펌프장, 관거 등 중요도에 따라 실시

3) 전기시설

가) 지진발생시 전력 확보의 우선순위 결정

(1) 발전·송, 변전 설비

(가) 운전 중에 발전소와 직결되는 설비

(나) 대도시 공급용 설비 등

(다) 부상자 치료를 위한 병원 또는 유사시설

(라) 이재민 수용시설 등

(2) 긴급 복구방안

(가) 긴급복구는 우선순위에 따라 실시

(나) 긴급복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비상발령과 동시에 본사 및 사업소에 긴급대책본부 설치

(다) 복구용 비축자재는 조달관리

4) 가스시설

가) 가스시설 관리책임자는 본사 및 사업소 등에 긴급복구반 편성 운영

나) 피해시설물의 복구는 제조소, 정압소, 고·중·저압관 순으로 복구 실시

5) 통신시설

가) 통신의 두절로 사회적 혼란방지를 위하여 각 통신책임자는 본사 또는 산하기관 등에 긴급복구반 편성 운영

나) 피해발생 지역에는 임시전화 접수처와 공중전화 등을 설치하고 전기통신설비의 순회점검 실시

다) 통신시설의 복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각 호의 순으로 우선 실시

6) 공공시설

가) 도로·교량

(1) 각 도로관리자는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우회도로 등을 선정하여 통행자의 안전대책 강구

(2) 각 시설의 복구담당기관은 복구에 필요한 각종 자재 사전 확보, 피해상황 발생시에는 복구반을 즉시 현장에 파견 점검 및 복구

(3) 도로·교량시설의 복구순서는 긴급도로를 최우선 개설

나) 하천 및 내수 배제시설

- (1) 피해시설의 응급조치를 위하여 공사장 또는 위험시설 순찰 강화
- (2) 피해시설에 대하여는 기 확보 또는 지정된 자재와 장비를 동원, 즉시 응급조치

다) 항만·어항시설

- (1) 항만 및 어항시설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관계기관 또는 민간단체에서 응급조치
- (2) 피해복구는 시공업체로 지역별 분담제를 실시, 피해발생 즉시 대처가 가능하도록 조치

라) 공항시설

- (1) 공항 내에 있는 인명과 화물에 대한 대피계획 수립
- (2) 사방·산사태방지, 급경사지 붕괴방지시설 등
- (3) 공공의 안전 확보 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시설은 우선 복구 실시

마) 철도시설

- (1) 지진발생시 피해 최소화와 수송수단 확보를 위한 계획수립 시행
- (2) 타 시설에 우선하여 복구 실시

바) 사회공공시설

- (1) 시설별로 환자, 장애인, 학생 등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한 대피 유도반 편성 운영
- (2) 단전, 단수, 통신두절 등에 대비한 자체 조치계획 수립
- (3) 피해시설물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복구업체 사전 지정

11. 교통수송 활동

가. 피해상황, 긴급 및 중요도를 고려한 교통규제, 응급복구, 수송활동 실시

- 1) 인명의 안전, 피해확대방지 및 신속한 응급대책을 고려한 수송활동
- 2) 긴급수송로 확보를 위한 차량 통행금지 등 교통규제
- 3) 도로피해 상황을 파악하여 장애물 제거, 응급복구 실시

나. 긴급수송 관계기관은 연료조달 및 공급체제 정비

12. 군부대 지원요청

- 가. 대규모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군부대 장비의 지원요청
- 나. 군부대는 수색구조, 응급복구지원, 응급의료·구호·방역, 인원 및 물자의 긴급수송, 위험물의 제거 등 지원

13. 상담 및 민원기구의 설치 운영

- 가. 지진관련 정보 제공과 지진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생활정보 등을 전달하기 위한 상담소 설치
- 나. 피해자의 민원처리를 위한 간이민원창구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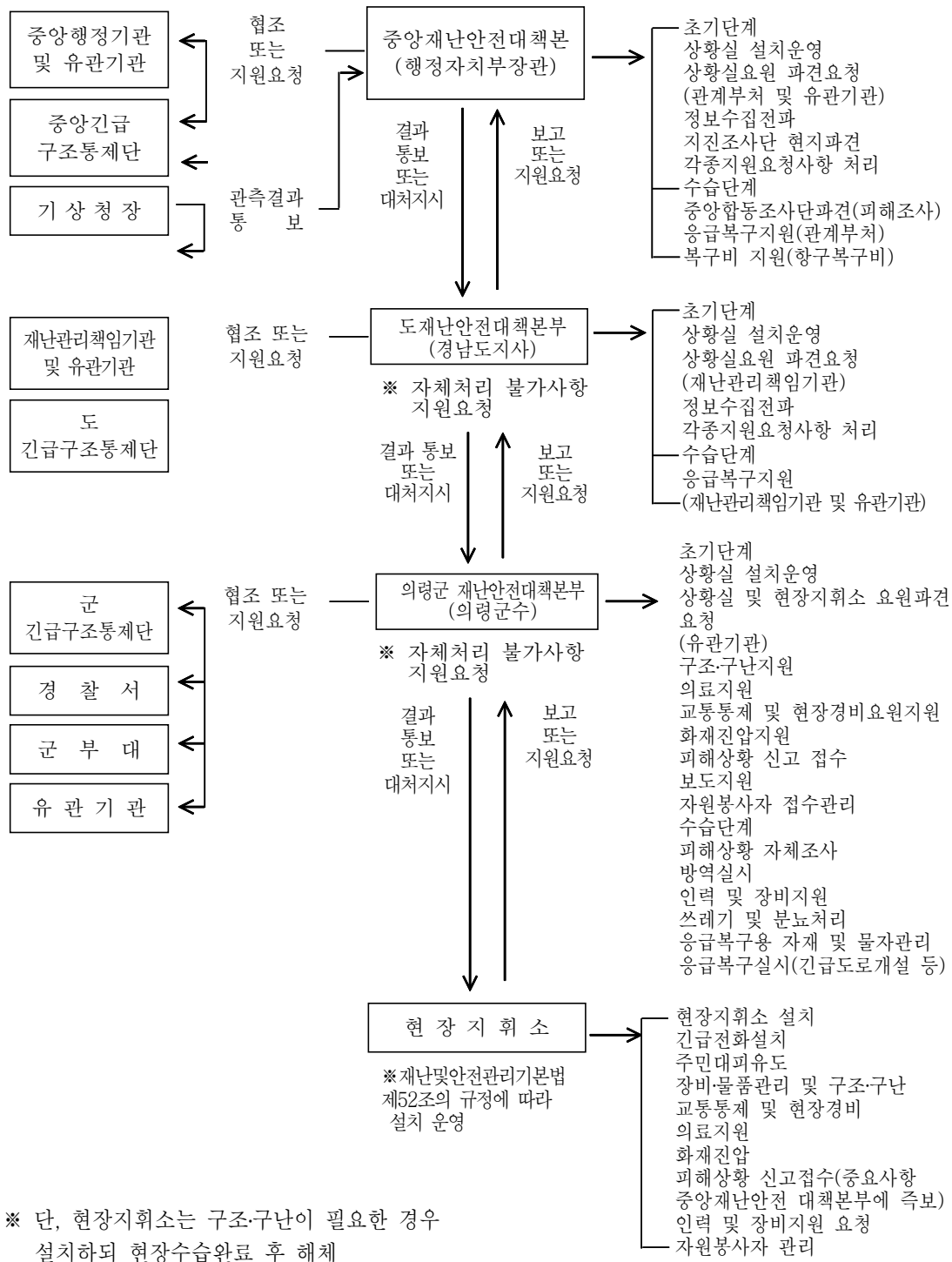
14. 지진 발생 후의 주민 및 기관의 행동

- 가. 강한 지진동이 멈춘 후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조치로서는 부상자에 대한 조치와 화재예방 및 소방작업이다.
 - 1) 우선 자신의 부상 유무를 확인하고 신발과 장갑, 그리고 가능하다면 안전모를 착용한다. 그런 후에 주변에 다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응급처치가 필요한 부상자에게는 응급조치를 한다. 중상자는 더 큰 부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무리하게 옮기지 말아야 하며, 다친 사람은 담요 등으로 덮어 따뜻하게 해준다.
 - 2) 전화는 비상시, 즉 화재의 발생, 중상자의 의료지원 요청 등의 긴급 시에만 사용한다. 지진동이 끝난 직후는 통화량이 폭주하여 과부하가 걸리기 쉽다. 재해기관이 긴급한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전화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 3) 강한 지진에는 여진이 뒤따라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여진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을 미리 생각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구조작업시에도 여진의 발생을 염두에 두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 4) 라디오나 TV의 긴급방송을 틀어 놓고 당국의 지시사항 또는 뉴스를 지속적으로 청취한다. 재해당국에서는 현재상황, 위험지역과 대피장소, 식수원 등 유용한 안내방송을 하게 된다. 그리고 재해당국의 지시와 통제에는 신뢰를 갖고 충실히 따른다.
- 5) 화재는 가스누출과 전기누전에 의해 많이 발생하므로 우선 가스밸브와 주전원 스위치를 내린다. 가스 누출이나 전기누전이 없음이 확인될 때까지 가스를 점화시킬 수 있는 행동, 즉 성냥이나 라이터를 켜는 행위는 절대 하여서는 안 된다.
- 6) 화재가 발생했다면 소방서에 신고하고,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초기 진화에 주력한다. 그러나 안전을 돌보지 않는 무리한 소방작업을 하여서는 안되며, 초기 진화가 불가능한 경우 밖으로 나와 주위사람에게 알린다.
- 7) 건물의 안전상태를 점검한다. 건물에 금이 가거나 파손된 곳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건물 벽이나 바닥에 굵은 금이 생겼다면, 가스배관 및 수도관 등이 손상 받았다고 가정하고 가스, 전기, 수도의 공급 장치를 차단하고 대피한다. 이런 건물은 여진에 의해 붕괴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실외의 안전한 곳에 피난하도록 한다.
- 8) 큰 지진이 발생한 경우는 지진동이 끝난 후라도 다리나 고가도로, 터널 등은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처음 지진에 피해를 입은 건축물은 여진에 의해 붕괴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다리나 고가도로 등은 이용하지 말아야 하며, 여진이 끝난 후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에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이용하도록 한다.
- 9) 다른 곳으로 피난할 경우, 먼 곳에서 오는 가족들이 알 수 있도록 행선지를 적은 쪽지를 집에 붙여 놓는다.

15. 피해수습체계



IV. 지진복구대책

1. 복구 기본방향 결정

가. 피해상황, 지역특성, 관계공공시설관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상복구와 개량복구의 기본방향을 결정

나. 피해지방자치단체가 복구의 주체가 되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복구방안 강구(정부는 이를 지원)

※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 검토

2. 피해조사

가.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합동조사단 편성·운영

나. 피해규모 및 종류에 따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진조사단 편성·운영

1) 건축시설 분과위원회 : 일반주택, 공동주택, 대형빌딩, 문화재, 공공건물 등

2) 교통시설 분과위원회 : 교량, 철도, 고가도로, 터널 등

3) 상·하수도시설 분과위원회 : 취수·정수·송수, 배수시설 등 상수도 분야, 우·오수관로, 종말처리장 등 하수도분야

4) 전기, 가스공급시설 분과위원회 : 전기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가스 공급설비 등

5) 직무범위

가) 지진피해 시설에 대한 안정성 확인과 여진 등에 대비한 응급조치 계획의 수립

나) 중앙합동조사단에 대한 기술지원

다) 기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의뢰한 지진관련 기술검토와 자문

라) 지진재난경감대책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한 자료의 수집

3. 복구비 지원

가.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적용 지원

1) 이재민 구호를 위한 지원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3) 기타 재난대책을 위한 지원

4. 국고의 부담 및 지원

- 가. 재난복구비용 등의 국고부담 및 지원은 동일한 재난기간(기상 특보 및 그 여파로 인한 기간은 포함)에 발생한 피해액(농작물 및 동산피해액제외)이 기준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 보통세 등 연평균액 100억원 이상 350억원 미만 : 20억

5. 재난복구비용의 산정 (비닐, 비닐천막)

가. 재난복구비용의 산정기준은 원상복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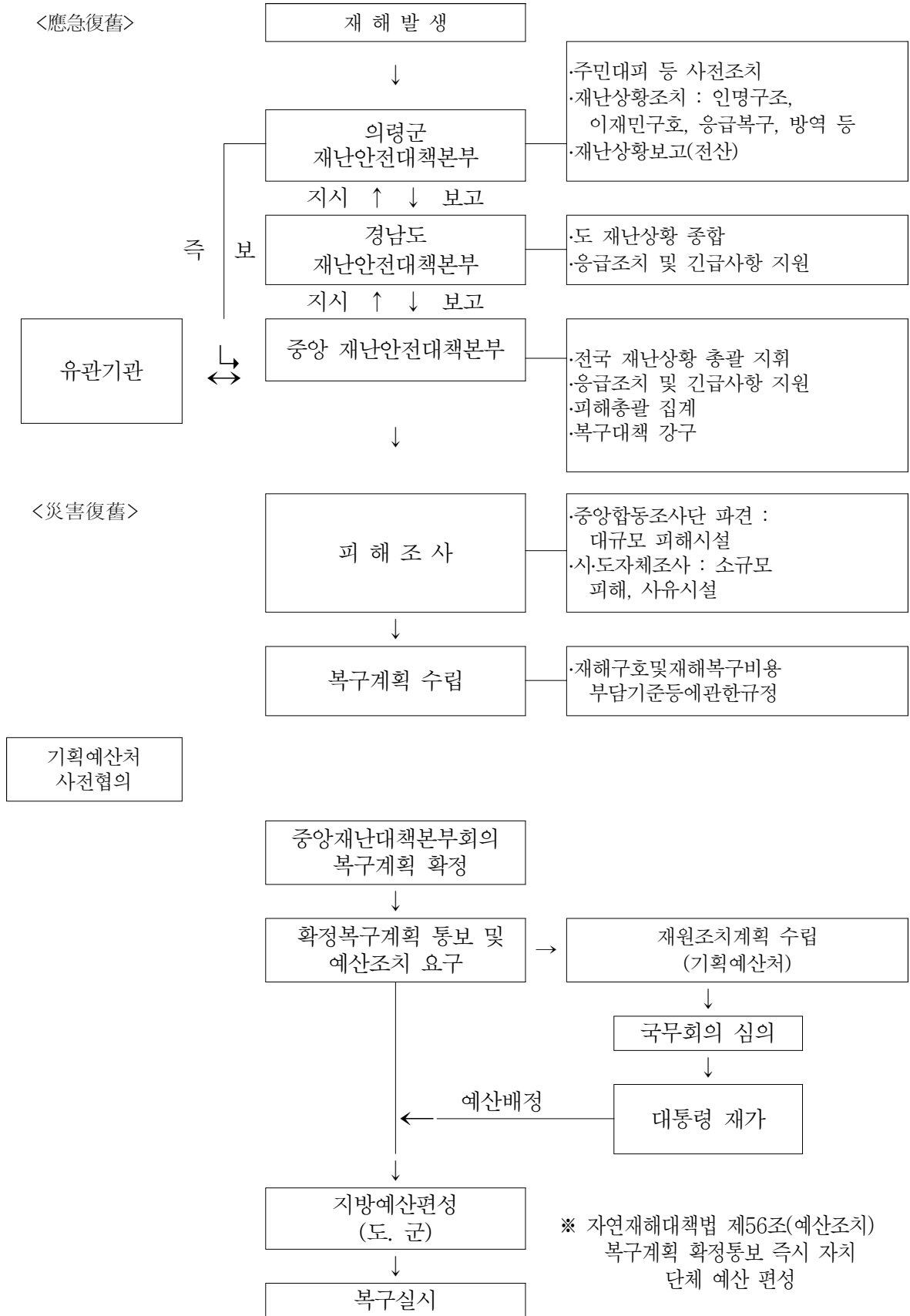
(기존시설과 유사하게 복구하는 것을 말함)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구·지역 또는 시설에 대하여는 개량복구(기존시설의 기능을 개선하여 복구하는 것을 말함)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할 수 있음.

이 경우 국가관리시설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재난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나. 개량복구 대상

- 1) 법령에 의한 각종 사업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로써 재난이 재발될 개연성이 높은 지구
- 2) 하천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 또는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수립된 교량·보 또는 배수문 등의 시설로써 재난이 재발될 개연성이 높은 시설
- 3)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구로써 재난이 재발될 개연성이 높은 지구
- 4) 배수펌프장, 저수지 또는 방조제 시설로써 재난이 재발될 개연성이 높은 시설
- 5) 기타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 등 재난의 재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피해복구조사 및 복구비지원 흐름도》



6. 재난 예·경보 전달체계 구축

가. 자연재난 취약지역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

나. 재난 예·경보 시스템 작동상태 사전 점검

7. 재난정보의 전달·분석체계 구축

가. 재난정보 현장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1) 모니터위원 지정 및 시범운영

2) 상시 현장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나. 재난정보 수집·전파체계 구축

1) E-30분 대피계획 추진

2) 재난정보의 수집·전파체제 정비

가) 기상·해양·수위 등의 상황관측 정보수집·전파체제 및 시설정비

나) 야간 및 휴일 등 행정사각시간대 대응체제 확립

다) 피해현장 정보수집의 신속화·체계화

라) 위성 및 컴퓨터통신, 지역방재무선 등의 통신수단을 통해 민간기업, 보도기관, 주민 등으로부터 다양한 재난관련정보의 수집체제 정비

3) 재난정보의 분석·정리

가)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전문인재 육성과 전문가 의견 활용

나) 지리정보시스템(방재GIS)의 구축으로 방재정보의 DB화, 온라인화, 네트워크 추진

4) 통신수단의 확보

가) 정보통신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정전대책, 정보통신시설의 위험분산, 통신로의 다경로화, 통신 케이블·CATV케이블의 지중화 촉진, 무선을 이용한 자료보관대책

나) 비상통신체제의 정비, 유·무선통신 시스템의 종합적 운용 및 응급대책 등 중요통신망의 확보 대책

다) 이동통신의 통신폭주 대책 강구, 비상시 운용계획 조정 및 피해상황의 화상전송 무선시스템 구축

지진대비 대군민 홍보문안

(방송 및 인터넷 홍보문안)

□ 평소 군민여러분께서는

- 라디오, 손전등, 비상구급함을 준비하고, 준비물이 어디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응급처치방법, 비상 시 행동요령을 알아두도록 합니다.
- 가스, 전기 퓨즈 상자, 수도밸브 위치를 알아두고 가족 모두가 잠그도록 합니다.
- 소방기구(소화기, 소화전)를 비치해 두고, 위험물의 보관상태를 점검하도록 합니다.
- 높은 선반위에 무거운 물건을 놓아두지 않도록 합니다.

□ 지진발생시 군민 여러분께서는,

-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시작 후 15초에서 1분 이내에 진동 후 종료가 되므로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 하도록 합니다.
- 실내일 경우 밖으로 나가지 말고 책상 혹은 테이블 밑으로 피하여 낙하물로 부터 몸을 보호 합니다.
- 지진으로 문이 비뚤어져 열리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 합니다.
- 지진으로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가스나 전기를 이용한 취사행위를 중지 하여 주십시오.
- 고층건물일 경우 창문이나 외벽 가까이 있지 말고 테이블 밑으로 몸을 피하고 엘리베이터를 사용 하지 않도록 합니다.
- 지진으로 서둘러 밖으로 나가면 유리창이나, 간판 등이 떨어지므로 대단히 위험 합니다.
- 운전 중일 때에는 도로변에 차를 세웁니다. 지진이 멈출 때까지 차안에서 기다 리도록 합니다.

○ 방송사 등 재난방송 요청문안 ⇒ 규모 3.0~3.9 지진

제목 : 지진발생에 따른 재난방송 요청

1. 0월 00일 00:00시 00지역에 규모(3.0~3.9)의 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전 지역(00지역 등 일부지역)에서 지진동이 감지되었습니다.

2. 지진발생 사실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고자 하오니 재난방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 송 문 안 -

00월 00일 00:00 00지역에 규모(3.0~3.9)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규모 (3.0~3.9)의 지진은 실내에서만 느낄 수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이 지진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규모의 지진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놀라지 마시고 추가 여진 등에 대비 TV, 라디오의 재난 방송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막표출 문안 -

- 00월 00일 00:00 00지역에 규모(3.0~3.9) 지진 발생
- 이번 지진은 실내에서 느낄 수 있고, 대부분 사람들은 지진을 느끼지 못함
- 추가 여진 등에 대비 TV, 라디오 등의 재난방송 청취

○ 방송사 등 재난방송 요청문안 ⇒ 규모 4.0~4.9 지진

제목 : 지진발생에 따른 재난방송 요청

1. 0월 00일 00:00시 00지역에 규모(4.0~4.9)의 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도 전 지역(00지역 등 일부지역)에서 지진동이 감지되었습니다.

2. 지진발생 사실과 국민행동요령 등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고자 하오니 재난방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 송 문 안 -

○○월 ○○일 ○○:○○ ○○지역에 규모(4.0~4.9)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지진의 진앙지인 00지역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지진동을 느끼며, 약간의 그릇과 창문 등이 깨지고 불안정한 물체가 넘어지는 등의 경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진앙지부터 떨어진 거리와 건물 높이에 따라 느껴지는 지진동은 다르고, 사용 중인 전열기와 가스렌지 등에 의한 화재 발생이 우려됩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는 놀라지 마시고 추가 여진 등에 대비 TV, 라디오의 지진속보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여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책상 밑이나 방석 등으로 몸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 자막표출 문안 -

- ○○월 ○○일 ○○:○○ ○○지역에 규모(4.0~4.9) 지진 발생
- 대부분 사람들이 지진동을 느끼고, 그릇, 창문이 일부 깨지고 경미한 피해발생 예상
- 당황하지 말고, 화재 발생 시 신속히 진화
- 추가 여진 등에 대비 TV, 라디오 등의 재난방송 청취
- 여진 발생 시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책상 밑이나 방석 등으로 몸 보호

○ 방송사 등 재난방송 요청문안 ⇒ 규모 5.0 이상 지진

제목 : 지진발생에 따른 재난방송 요청

1. 0월 00일 00:00시 00지역에 규모(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도 전 지역(00지역 등 일부지역)에서 지진동을 느껴졌으며, 진앙 지 부근에서 건물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 지진재난 상황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고, 여진 발생 시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난방송을 요청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 송 문 안 -

○○월 ○○일 ○○:○○ ○○지역에 규모(5.0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도 전 지역(00지역 등 일부지역)에서 지진동을 느껴졌으며, 진앙지 부근에서 건물 피해가 예상 되는 등 지진재난이 예상됩니다.

좀 더 강력한 여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당황하지 마시고 다음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침착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지진발생시 몸 안전이 최우선임
- 나. 여진발생시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책상 밑이나 방석 등으로 몸을 보호
- 다. 인화성 물건인 성냥, 라이터, 가스레인지, 석유난로 사용 금지
- 라. 가스, 수도 밸브 잠금
- 마. 불이 났을 경우 신속하게 진화
- 사. 운전 중일 때는 차량을 신속하게 우측에 정차
- 아. 변화가에 있을 때에는 머리를 보호하면서 가까운 빌딩 안으로 대피
- 자.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고 TV, 라디오 등 재난방송 청취 및 행정기관 안내에 따라 행동
- 차. 댐, 저수지 붕괴대비 위험지역 주민 안전한 곳으로 대피 등. 끝.

- 자막표출 문안 -

- ○○월 ○○일 ○○:○○ ○○지역에 규모(5.0 이상) 지진 발생
- 진앙 지 부근에서 건물 피해 등 지진재난 발생 예상
- TV, 라디오 등의 재난방송 청취
- 여진 등 지진발생시 행동요령
 - 지진발생시 몸 안전이 최우선
 -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자
 - 책상 밑에 들어가 다리를 꼭 잡거나, 방석 등으로 머리 보호
 - 전열기와 가스레인지 등 사용금지
 - 가스, 수도 밸브를 잠급시다.
 - 불이 났을 경우 신속하게 진화

I. 계획의 의의

1. 목 적

- 가. 최근 중국대륙의 급속한 사막화로 황사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 나. 2002년에는 극심한 황사로 초등학교 등 휴교사태 및 국내 항공기 결항 등 피해 발생
- 다. 황사에 대비 기상분석, 단계별 대처요령 전파, 황사발생의 근원적인 해소방안을 강구하는 등 황사에 대한 종합대책마련으로 피해 최소화

2. 재난관리의 여건 및 전망

가. 기본방향

- 1) 황사 발원지인 중국대륙의 급속한 사막화 진행으로 황사발생빈도 및 강도의 증가로 호흡기 질환발생, 농축산물의 전염병 확산에 따른 국민생활 불편 초래
- 2) 따라서 황사에 대비한 중·장기 대책마련 및 황사 단계별 국민행동요령 숙지 등 황사에 대비한 종합적 예방대책 강구

나. 황사의 발생원인 및 특성

1) 황사의 발원지

- 가) 바람에 의하여 하늘높이 불어 올라간 미세한 모래먼지(1~10 μ m)가 대기 중에 퍼져서 하늘을 덮었다가 서서히 떨어지는 현상 또는 떨어지는 모래 흩으로써 일제 강점기(1910년 이후) 황사라고 지칭함.
- 나)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황사는 중국과 몽골의 경계에 걸친 드넓은 건조지역과 반 건조지역이다.
- 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황하 상류와 중류지역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에 주로 영향을 주었으나, 최근 3년 전부터는 이 지역보다 훨씬 동쪽에 위치한 내몽골고원 부근에서도 황사가 발원하여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2) 황사의 특성

- 가) 황사 속에는 흙과 모래의 주성분인 규소, 철, 칼슘 등 산화물로 되어 있으나, 납, 카드뮴, 알루미늄, 구리 등 중금속과 해충이나 전염성 병원균 등도 포함할 수 있음.
- 나) 황사발생 시 어린이, 노약자 등 호흡기 질환자 20% 이상 급증
- 다) 반도체, 항공기, 축산업 등 산업 전반에 영향

3. 재난관리대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가. 기본방향

- 1) 황사로 인한 피해현황 및 피해발생원인을 조사하고 황사대비 주요시책에 관한 자료를 수립·분석
- 2) 중앙·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연도별 추진대책과 중·장기 대책을 마련
- 3) 황사 발생시 국민들이 준비하고 행동해야 할 수칙을 마련,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황사로 인한 피해 최소화 도모

나. 추진전략

- 1) 황사 예·특보에 따른 단계별 주민행동요령 배포·활용
- 2) 농축산물, 비닐하우스 등 피해예상시설 대비책 강화
- 3) 황사대비 응급의료체계 구축
- 4) 황사피해에 대한 종합적 대응체계 확립

II. 재난관리대책

1. 예방대책

가. 황사예방대책

1) 공 통

가) 황사발생 단계별 주민행동요령 작성·배포

(1) 기상청 발표 황사 예·특보 발령에 따른 단계별 주민행동요령 마련
(우리나라는 2002년 4월 10일부터 기상청에서 황사특보발령 실시)

(2) 홍보물 제작, 다중이용시설 등 비치하여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나) 각 부처별 황사에 대비한 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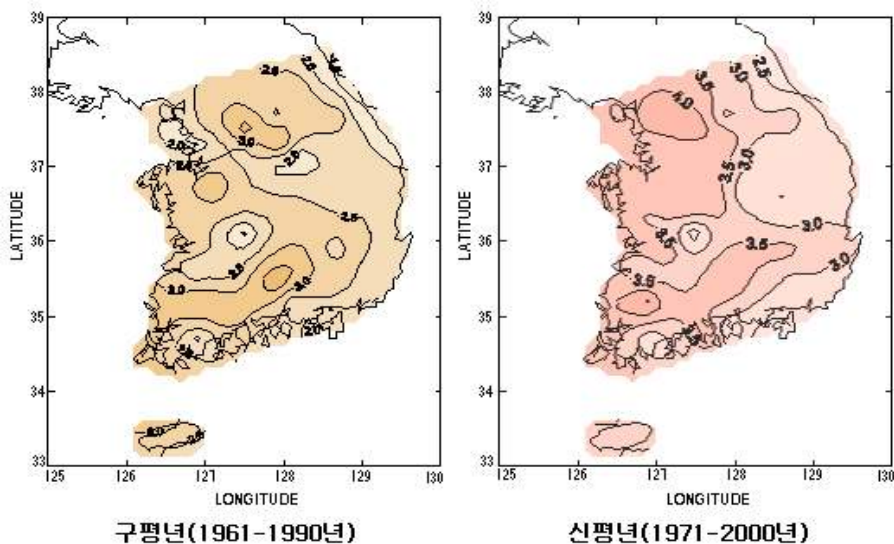
2) 황사의 발생현황

가) 중국의 급속한 사막화(전국토의 17.6%, 169만km²)로 황사발생 증가추세
'80년대 3.9일 → '90년대 7.7일 → '00년 이후 12.4일

나) 상기 표에서와 같이 '01~'02년에는 극심하였으나, '03~'05년에는 다소 약화추세

다) '02년에는 극심한 황사로 초등학교 등 4,373개소 휴교조치와, 국내항공기 164편의 결항사태 발생

라) 평년 황사 관측일수



3) 황사발생 확인 3가지 방법

가) 방송매체를 통한 확인

- TV, 라디오의 일기예보 시·청취

나) 기상청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 확인

- 기상청 <http://www.kma.go.kr>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http://www.nvrqs.go.kr>

다) 전화를 통한 확인

- 기상청 ☎ 02-841-0011, 831-0365, 국번 없이 131
- 부산기상청 ☎ 051-600-0433, 창원기상대 ☎ 243-0365

4) 황사대비 주민 홍보

가) “황사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용 브로셔 자체 제작·배포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나) “황사대비 국민행동요령“ 반상회 회보 및 지역신문 게재

다) 황사대비 홍보용 비디오 배부/상영

라) 홈페이지 게시 사이버 홍보실시

마) 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황사특보 발령사항 통보

- (1) 중앙에서 도 및 군 재난안전대책본부로 ⇒ NDMS활용 신속 통보
- (2) 지역주민에게는 군 및 읍·면에서 앰프 등을 통하여 홍보 및 전달

5) 황사피해 예방 사전점검

가) 황사발생에 따른 개인위생 관리 철저

외출 후 손발 및 눈 헹구기, 양치질 등으로 입안청결유지 습관화

나) 축사, 시설원예 및 비닐하우스의 세척장비 및 세척 수 확보

다) 야적된 사료용 건조, 볏짚 치우기 및 피복제 준비

라) 외출 시 필요한 보호 장구 마련방안 강구

마) 언론매체 및 홍보물을 통한 단계별 행동요령 숙지

바) 집에서 가까운 병원의 연락처를 확인

사) 기상청 황사 예·특보 발령에 따른 국민행동요령이 실린 홍보물 제작·배포

아) 기상특보의 신속한 대 주민전파방법 강구

2. 대비대책

가. 황사대책에 관한 연구개발 및 조사 활성화

- 1)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황사에 관한 조사·연구개발
- 2) 황사에 대비한 기초자료 집적, 연구시설 확충 등
- 3)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 추진(매년 환경부 주관)
- 4) 황사 예·특보제 운영('02. 4월부터 기상청)
 - 가) 황사예보 : 약한황사, 보통황사, 진한황사 등 3단계 구분 발표
 - 나) 황사특보
 - (1) 황사 주의보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농도가 $500\mu\text{g}/\text{m}^3$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2) 황 사 경 보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농도가 $1,000\mu\text{g}/\text{m}^3$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5) 황사감시체계 운영(환경부, 기상청)
 - 가) 중국 내 한·중 공동 황사감시관측소 설치(5개소, 기상청)
 - 나) 국내에 대기오염측정망 209개소 및 황사관측망 확충(16개소)
- 6) 어린이 보호대책(경상남도 교육지원청) 등 각 부처별 추진계획 추진

나. 분야별 대비방안

- 1) 가정 및 식품취급 장소
 - 가)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실외활동 자제
 - 나)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점검
 - 다) 외출 시 필요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의복, 위생용기 등을 준비
 - 라) 과일, 채소류 등 미 포장 식품의 야적 자제
- 2) 학교 등 교육기관
 - 가) 기상예보를 청취, 지역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 검토
 - 나) 학생 비상연락망 점검 및 연락체계 유지
 - 다) 맞벌이부부 자녀에 대한 자율학습대책 등 수립
 - 라) 황사대비 국민행동요령 지도 및 홍보 실시
- 3) 축사·시설원예 등 농가
 - 가) 가축이 활동하는 운동장 및 방목장의 가축 대피 준비
 - 나) 노지에 방치, 야적된 사료용 볏짚 등에 비닐 씌우기

- 다) 동력분무기 등 황사세척용 장비 점검·정비
- 라)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 및 환기창 점검

3. 대응대책

가. 황사발생 시 대책

1) 황사예보 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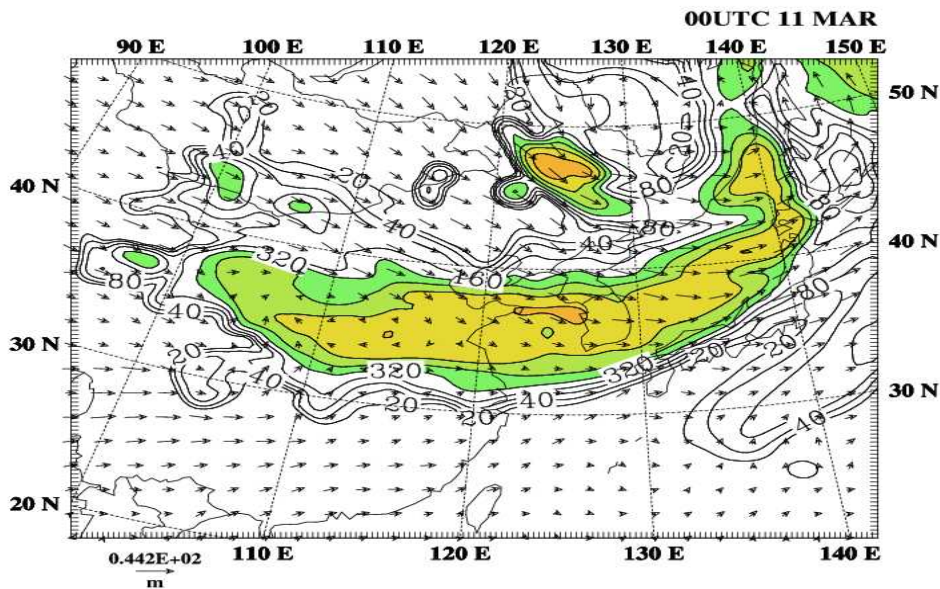
가) 지역예보모델(MM5 : Mesoscale Model)에 중국 현지의 지표상태, 식생상태, 지상관측자료, 상층풍 자료 등의 수치예보자료를 입력하여 앞으로 48시간 예측하는 모델

⇒ 수치예보 : 기상요소의 시간변화를 컴퓨터로 계산하여 미래의 날씨를 예측하는 과학적인 방법

나) 우리나라의 황사예보모델(ADAM) 개발 운영

(1) ADAM(Asian Dust Aerosol Model)은 기상연구소 '03. 9~12월까지 4개월 시험운영 후 기상청에서 2004년 1~2월 현업시험운영 실시

(2) 2004. 3. 11. 황사예보모델(아담) 운영으로 황사주의보 지원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황사 예·특보 업무지원



<2004년 3월 9일 21시에 예측된 황사현황>

- 다) 황사예보모델은 우리나라의 ADAM을 비롯하여 일본 2개, 미국 2개, 중국 2개, 캐나다 1개, 말타 1개 등 총 6개국에 9개 모델이 있음
- 라) 2004년 1월 제주국제 황사워크숍 시연에서 다른 나라의 모델과 비교하여 검증한 결과 ADAM이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음

2) 주민에 대한 예·특보 신속 전파

가) 유선방송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 강화

나) 방재관련 유관기관과의 홍보협조 강화

다) 홍보용 전단지 작성·배포

황사발생에 따른 단계별 주민행동요령 숙지

3) 기상상황 및 재난상황의 전달

가) 황사에 대한 특보 등의 기상상황과 재난상황 등 관련정보를 언론매체를 통하여 국민에게 신속히 전달

나) 의령교육지원청과 협조체제 구축으로 휴교조치 검토 등 학생보호대책 강구

나. 황사발생 시 대처요령

1) 가정 및 식품취급소에서

가)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등은 실외활동 금지

나) 창문을 닫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 하되, 외출 시 보호안경,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후에는 손과 발을 씻고 특히 미지근한 물로 눈을 헹구어 주고, 양치질 등으로 입안 청결유지

다) 노출된 채소, 과일 등 농수산물은 충분히 세척 후 섭취

라) 식품제조·가공, 조리 시 철저한 손 씻기 및 기계·기구류 세척 등 위생관리로 2차 오염 방지

2)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가)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금지 및 수업단축 또는 휴업

나) 등하교 시 긴 소매의복, 방진마스크착용 등 보호장구 착용 교육

다) 방과 후 철저한 개인위생관리 교육

라) 학교급식소 위생관리를 위한 소독철저 및 방역실시

3) 축산·원예시설 등 농가에서

가) 방목장의 가축이 축사 안으로 신속히 대피시켜 황사 노출 방지

나) 비닐하우스, 온실 및 축사의 출입문과 창문을 닫고 외부 공기와 접촉을 가능한 적게 할 것

다) 야적된 사료용 건조, 볏짚 등을 비닐, 천막 등으로 덮기

4. 복구대책

가. 황사피해(복구)의 지원체제 확립

- 1) 현재 황사를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로는 분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피해기준 및 복구방침이 미비하여 복구비 지원 애로
- 2) 황사피해로 규정할 구체적 피해기준 마련 시급
- 3) 황사피해조사 전담 전문기관 및 전문인력 확충

나. 황사발생 후 응급복구방안

- 1) 실내공기의 환기 및 황사에 노출된 물품 등은 세척 후 사용
- 2) 학교 실내·외 방역 및 청소, 감기·안질 등 환자는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 조치
- 3) 축사, 방목장 사료조 및 가축과 접촉되는 기구류 등은 세척 및 소독
- 4) 가축질병의 발생유무 관찰 및 병든 가축 발견 시 신고
- 5) 비닐하우스, 온실 등에 쌓인 황사 세척

《우리나라 기상 관측망도》



황사대비 국민행동요령

1. 황사발생 전

가정 및 식품 취급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실외활동 자제 -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점검 - 외출 시 필요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의복, 위생용기 등을 준비 - 과일, 채소류 등 미 포장 식품의 야적 자제
학교 등 교육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예보를 청취, 지역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 검토 - 학생 비상연락망 점검 및 연락체계 유지 - 맞벌이부부 자녀에 대한 자율학습대책 등 수립 - 황사대비 국민행동요령 지도 및 홍보 실시
축산시설원에 등 농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이 활동하는 운동장 및 방목장의 가축 대피 준비 - 노지에 방치, 야적된 사료용 벧짚 등에 비닐 씌우기 - 동력분무기 등 황사세척용 장비 점검·정비 -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 및 환기창 점검

2. 황사발생 중

가정 및 식품 취급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등은 실외활동 금지 - 창문을 닫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되, 외출 시 보호안경,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후에는 손과 발을 씻고 특히 미지근한 물로 눈을 헹구어 주고, 양치질 등으로 입안 청결유지 - 노출된 채소, 과일 등 농수산물은 충분히 세척 후 섭취 - 식품제조·가공, 조리 시 철저한 손 씻기 및 기계·기구류 세척으로 위생관리 2차 오염 방지
학교 등 교육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금지 및 수업단축 또는 휴업
축산시설원에 등 농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목장 가축을 축사 안으로 신속히 대피시켜 황사 노출 방지 - 비닐하우스, 온실 및 축사의 출입문과 창문을 닫고 외부 공기와 접촉을 가능한 적게 할 것 - 야적된 사료용 건축, 벧짚 등을 비닐, 천막 등으로 덮기

3. 황사 발생 후

<p>가정 및 식품 취급 장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공기 환기 및 황사에 노출된 물품 등은 세척 후 사용
<p>학교 등 교육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실·내외 방역 및 청소, 감기·안질 등 환자는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조치
<p>축산시설원예 등 농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사, 방목장 사료조 및 가축과 접촉되는 기구류 등은 세척 및 소독 - 가축질병의 발생유무 관찰 및 병든 가축 발견 시 신고 - 비닐하우스, 온실 등에 쌓인 황사 세척

I. 계획의 의의

1. 목 적

- 가. 최근 지구온난화현상 등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폭염으로 인한 피해발생 사례가 빈발
- 나. 우리나라도 '04년 열대야 현상이 10일 이상 지속되는 등 폭염으로 인한 피해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종합대책마련으로 피해 최소화

2. 재난관리의 여건 및 전망

가. 기본방향

- 1)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급격한 기온상승으로 농작물 피해 및 전력수급부족, 일사병환자발생 등 폭염에 따른 국민생활불편 초래예상
- 2) '04년 8월에 10일 이상 열대야현상이 지속되어 제한급수조치, 농축산물 가격 폭등 등 산업손실 및 전력수급 불안정 사태발생
- 3) 따라서 폭염에 대비한 중·장기 개선대책 마련 및 단계별 국민행동요령 숙지 등 폭염에 대비한 종합적 예방대책을 강구

나. 폭염의 발생원인 및 특성

1) 폭염의 발생원인

- 가) 우리나라는 1987년 이후 기후가 따뜻해지고 있으며, 1980년 이후 경향이 뚜렷함
- 나) 엘니뇨 해류에 의한 태평양의 에너지 분포 및 대기흐름 변화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 또는 팽창되면 이상기온현상 발생
 - (1) 북태평양 고기압 수축 → 이상고온 현상
 - (2) 북태평양 고기압 팽창 → 이상저온 현상
- 다) 아시아 대륙의 서쪽에 위치한 티벳 고원의 적설량과 한반도 여름철 기온·강수량과 한반도 여름철 기온은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음
- 라) 도시화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콘크리트·아스팔트 구조물의 큰 열용량, 도시기반시설의 열 다량 발생 등으로 인하여 주요도시의 최고기온이 상승되는 경향 발생

2) 폭염의 특성

가) 태풍 등 다른 기상현상과 달리 발생가능성을 정확히 예측 가능

나) 자발적 주민대응 및 피해상황 확인이 어려움

(1) 노인계층 등 재해약자들이 냉방대피소 방문과 같은 필요한 행동을 혼자 힘으로 취하기 어려움

(2) 인명피해가 폭염 시작 후 48시간 내외에서 서서히 나타나고 피해 장소가 주로 주택이므로 즉각적인 피해상황 확인이 어려움

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광범위하고 동시다발적 발생으로 응급의료체계의 신속한 가동이 어려우므로 폭염발생 시에 신속하게 가동이 가능한 중소규모의 병원까지 네트워크 구축 필요

라) 더위가 일상적인 열대지방보다는 온화한 온대지방에서 기온이 급상승할 경우 폭염으로 인한 피해 증가

3. 재난관리대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가. 기본방향

- 1) 폭염으로 인한 피해현황 및 피해발생원인을 조사하고 폭염대비 주요시책에 관한 자료를 수립·분석
- 2) 무더위 발생시 국민들이 준비하고 행동해야 할 수칙을 마련,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폭염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 도모

나. 추진전략

- 1) 폭염에 대한 단계별 주민준비요령 배포·활용
- 2) 고령·독거노인에 대한 보호체계 구축
- 3) 폭염대비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 4) 철도 등 피해예상시설 안전대책 강화
- 5) 폭염대비 응급의료체계 구축
- 6) 폭염피해에 대한 종합적 복구체계 확립

II. 재난관리대책

1. 예방대책

가. 폭염예방대책

1) 공 통

가) 폭염대비 단계별 주민행동요령 작성·배포

(1) 기상청 발표 열파지수(Heat Index)를 기준으로 단계별 주민준비요령 마련

(2) 홍보물 제작, 다중이용시설 등 비치하여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나) 열파지수 및 기상청 발표에 따른 행동요령 숙지

다) 폭염단계 구분 기준마련

라) 각 기관별, 부서별 폭염대비에 관한 세부기준마련

2) 폭염이 미치는 영향

가) 개인적 영향

(1) 보통 습도에서 25℃ 이상이면 무더위를 느끼며 장시간 야외 활동 시
일사병, 열경련, 뇌일혈 등 질병 발생 가능성 증대

(2) 밤 최저기온이 25℃ 이상인 열대야에서는 불면증·불쾌감 등의 증상 발생
- 미국의 경우 수면장애로 인한 개인·사회적 손실을 연간 150억 달러로 추정

(3) 30~32℃ 이상이면 고령자·노약자 등의 사망률 증가

나) 산업에 미치는 영향

(1) 고온으로 인한 잎 도열병, 적조발생, 닭·소·돼지 폐사 등 1차 산업의
생산량 감소

(2) 정전사태, 집중력감소로 인한 생산성 감소, 에너지비용 증가 등
직·간접적인 사회적 비용 증가

다)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

(1) 야채·농축산물·생활필수품 등 수급차질로 국민생활불편 초래

(2) 모기 개체 수 증가, 수인성 질환 및 음식물 매개 질환이 증대

(3) 불쾌지수가 높아져 우발적 사고 발생가능성 증가

3) 폭염대비 주민홍보 및 전달체계

가) “무더울 땐 이렇게 준비 하세요” 홍보용 브로셔 제작·배포(5,500부)

의령군, 교육지원청(학교),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나) 폭염대비 “주민준비요령” 반상회 회보 및 지역신문 게재

다) 유선방송 등 홍보방송 협조(실시)

라) 홈페이지 게시 사이버 홍보실시

마)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폭염사항 통보

(1) 중앙에서 도 및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활용

(2) 주민들에게는 군 및 읍·면에서 앰프 등을 통하여 대비요령 홍보

4) 폭염대비 사전준비사항

가) 라디오나 TV의 무더위 관련 기상상황에 매일 주목

나) 정전에 대비 손전등, 비상 식음료, 부채, 휴대용 라디오 등을 미리 확인

다) 집에서 가까운 병원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본인과 가족의 열사병 등 증상을 미리 체크

라) 단수에 대비하여 생수를 준비하고 생활용수는 욕조에 미리 확보

마) 냉방기기 사용 시는 실내·외 온도차를 5℃ 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을 예방(건강 실내 냉방온도는 26℃~28℃가 적당)

바) 변압기의 점검으로 과부하에 사전대비 (특히, 오래된 공동주택은 각별히 주의)

사) 창문에 커튼이나 천 등을 이용, 집안으로 들어오는 직사광선을 차단

아) 차량의 장거리 운행계획이 있다면 도로의 변형 등으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행선지를 사전에 신중히 검토

2. 대비대책

가. 폭염대책에 관한 연구개발 및 조사 활성화

나. 폭염대비 실과 및 유관기관 별 추진방안

1) 농정과

가) 농업용수 부족 및 가뭄대책 추진

나) 벼 잎도열병, 이삭도열병 등 병충해 방제대책 추진

병해충발생 상습지 지역예찰강화 및 공동방제 방안 강구

다) 고온기 가축질병 예방대책 추진

- (1) 폭염으로 인한 초지사료 등 조사료 공급대책 마련
- (2) 혹서기 정전사태에 대비, 축사시설 내 화재예방대책 강구
- 라) 양계장, 목축업, 양돈업 등에 대한 피해 최소화 대책 추진
 - 밀집 사육 시설에 대한 대책 강구, 축사 위생 관리 및 소독 등 방역 관리대책 마련
- 마) 비닐하우스 등 온실재배작물 온도관리 대책
 - (1) 하우스 내 온도관리 지도강화 및 방제대책 추진
 - (2) 채소류 수급불안으로 인한 가격폭등을 대비하여 출하량 조절대책 추진
- 바) 육상 양식장 피해 최소화 방안 강구

2) 보건소

- 가) 긴급의료상황에 대비한 긴급의료지원체계 수립·추진
 - 폭염으로 인한 응급환자 발생 시 모든 국·공·사립병원에서 의무적으로 수용하도록 하는 제도마련
- 나) 전염병 대비 비상방역 대책 추진
- 다) 고령자, 독거노인 등의 건강대책 추진
 - (1) 독거노인 부모 맺기, 효 사랑기능 봉사대 등을 연계·확대하여 도우미를 이용한 건강체크시스템 구축 및 매일 1~2시간 이상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에 냉방시설 설치
 - (2) 폭염 시 특별주간을 설정, 노약자·독거노인 등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는 체제 구축
 - (3) 지역 내 양로원 냉방시설 유무 실태 등을 파악 지원대책 추진
- 라) 독거노인 거주지역에 대한 구조 구급요원 수시 순회 관찰

3) 환경수도과

- 가) 비상급수를 대비한 수원 확보
- 나) 물 소비 감소방안 강구
- 다) 생수 공급업체 수질관리 및 유통실태 지도·점검
- 라) 정수장 등의 수질오염 사전예방대책 추진
- 마) 물 절약 홍보요원 위촉 및 주부들 대상 물 전문가 양성과정 개설

4) 건설도시과

- 가) 건설, 야외 현장 노동자 등의 안전을 고려, 일정온도 이상 시 폭서기를 설정, 공사중지 명령 방안 강구
 - 개인별 아이스 팩 안전조끼 착용 및 20분 이내의 낮잠 권장
- 나) 근로사고 사례 및 예방책 추진
 - 야외작업관련 행동요령 등 안전자료의 발간·배포 및 안전교육 실시
- 다) 도로포장 표면변형 대비, 살수차 동원 살수 실시
 - 중차량 통행이 빈번한 구간의 대기온도 35℃이상 예보 시

5) 의령교육지원청

- 가) 초등·중·고등학교 수업단축 및 휴교 검토 추진
- 나) 급식 시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등 실시
- 다) 운동장에서의 체육활동 등 야외활동을 자제

6) 의령경찰서

- 가) 최근 인명 경시 풍조에 편승하여 폭염과 불쾌지수 상승에 따른 우발적, 무조건적 강도·살인 사고 등에 대한 예방대책 추진
- 나) 저 소득층 및 노숙자, 사회 불만자 등의 우발적, 불특정 다중 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치안대책 추진

7) 창원기상대

- 가) 열파지수의 국민 이해증진을 위한 홍보
- 나) 열파지수와 연동된 폭염주의보·경보단계 기준 마련
- 다) 주의보·경보 발령 시 언론매체에 신속전달체계 구축

8) 한국전력 의령지사

- 가) 전력 예비율 점검 및 관련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 나) 이상 고온에 따른 광역 정전 시 단계별 긴급복구 대책 추진
- 다) 공급 예비율 저하에 따른 단계별 전기소비 절약지침 마련 및 홍보
- 라) 노후 된 공급시설 등 주요시설 점검 및 정비
- 마) 아파트 등 시설별 변압기 등 과부하에 따른 대비책 마련

3. 대응대책

가. 폭염발생 시 대책

1) 폭염단계 구분체제의 확립

가) 미국·프랑스 등 선진국의 폭염주의보·경보 등 단계별 구분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구분기준 제정 시급(기상청)

나) 폭염정보수집과 비상연락체제 확립 등 대응조치

재난관리책임기관, 공공기관 등과 상호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

2) 주민에 대한 폭염 예·경보 신속 전파

가) 유선방송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 강화

나) 방재관련 유관기관과의 홍보협조 강화

다) 홍보용 전단지 작성·배포

열파지수에 따른 단계별 주민준비요령 숙지

3) 기상상황 및 재난상황의 전달

가) 폭염에 대한 특보 등의 기상상황과 재난상황 등 관련정보를 언론매체를 통하여 국민에게 신속히 전달

나) 의령교육지원청과 협조체제 구축으로 학생수업단축 및 휴교조치 검토 등 학생보호대책 강구

4) 민·관 협력체제 구축

가) 민간자원봉사단체 및 지역주민 스스로 협의체제 구성

재난예방·경감에 일정부분 역할을 담당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재체제 구축

나) 지역 내 독거노인 및 재해약자에 대한 수시방문으로 폭염으로 인한 일사병환자의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

나. 폭염발생 시 분야별 대처요령

[열파지수 130이상 - 열사/일사병 위험 매우 높음]

1) 일반 가정에서

가) 낮 12시~오후 4시 사이에는 야외활동 금지

나) 준비운동 없이 물에 들어가거나 갑자기 찬물 샤워금지(심장마비 위험)

다) 선풍기를 창문 쪽으로 돌려 환기 유도

라) 늦은 시간의 과도한 운동은 숙면을 방해하므로 자제하고 정신적 긴장감을 줄 수 있는 드라마 시청, 컴퓨터 게임의 장시간 사용금지

마) 넉넉하고 가벼운 옷을 입어 자외선을 방지하고 노출부위는 썬 크림 등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보호

바) 거동이 불편한 고령, 독거노인, 신체허약자, 환자 등은 외출을 금지시키고 가족 및 친척·이웃이 수시로 상태 점검

2) 직장에서

가) 각종 야외행사를 취소하고 야외활동 금지

나) 직원을 대상으로 낮잠시간을 한시적으로 검토

다)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탄력시간근무제 검토

라) 정상적인 몸 상태가 아닌 직원에 대하여는 강제휴가 조치

3) 학교에서

가) 초등·중학교에서는 휴교조치 검토

나) 운동장에서의 체육활동 및 소풍 등 각종 야외활동 금지

다) 학교 급식 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점검

4) 산업·건설현장에서

가) 현장관리자의 책임 하에 공사중지 검토

나) 장시간 작업을 피하고 작업시간을 단축하여 야간 근무 등 방안 마련

다)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12시~오후4시 사이에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 실시

라) 수면부족으로 인한 피로축적으로 감전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취급을 삼가고 부득이 취급할 경우에는 안전장구 착용

5) 어류양식장에서

가) 사육어의 먹이섭취 행동이나 이상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고 이상어류는 즉시 제거(질병 전염방지)

나) 환수량을 최대한 늘리고 수조 내 열음을 넣어 수온 상승 억제

다) 사육밀도를 최대한 낮추고 급이량 감소

라) 습기 또는 직사광선에 의한 사료 부패에 주의하고 생 사료는 산화가 빠르므로 각별히 주의

6) 농가·축사에서

가)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비타민, 광물질을 섞은 사료제공

나) 곰팡이가 피거나 오래된 사료 공급금지

- 다) 가축 폐사 시 신속하게 매몰하고 소독 실시로 전염병 예방
- 라) 축사 등의 분뇨제거와 건조상태 유지
- 마) 전기누전과 합선, 과열 등으로 인한 화재발생에 대비 전기사용량 수시 확인
- 7) 도로에서
 - 도로표면 변형 및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중 차량 등 통행제한 및 살수 실시

4. 복구대책

가. 폭염피해(복구)의 지원체제 확립

- 1) 현재 자연재해대책법상 폭염을 자연재해로 분류하지 않고 있음
- 2) 폭염피해에 대한 구체적 복구방침이 없어 피해는 있어도 복구비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 3) 폭염피해로 규정할 구체적 근거 미흡
- 4) 폭염의 단계별 구분기준마련 검토(기상청)
- 5) 관련법령(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복구체계구축 시급

나. 중·장기 폭염종합대책 추진

- 1) 폭염단계 구분기준 마련(기상청)
 - 미국·프랑스 등 선진국의 폭염주의보·경보 등 단계별 구분을 참조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주의보·경보단계 구분 기준 제정 검토
- 2) 건설·산업현장 낮잠제도 등 검토(국토교통부, 노동부)
 - 가) 폭염이 지속되는 경우, 건설·산업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별 안전대책 마련
 - 나) 20분 이내의 낮잠 및 낮잠을 위한 별도의 시설 마련 의무화 방안 검토
 - 다) 개인별 아이스 팩 안전조끼 착용 의무화 방안 검토
 - 라) 작업시간 단축 및 폭염지속 시 공사중지 의무화 방안 검토
- 3) 수업단축 및 휴교조치 방안 강구(교육부)
 -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초·중·고등학교 수업단축·휴교 권고 시 수업단축 및 휴교조치 검토
- 4) 응급의료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 폭염으로 인한 응급환자 발생시 모든 국·공·사립병원에서 의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열파지수란 ? 》

1. 열파(Heat Wave) 란 ?

“비정상적이고 불쾌한 느낌을 주는 덥고 습한 날씨가 지속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2. 열파지수(Heat Index) 란 ?

기온과 습도에 의해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무더위의 정도를 지수화 한 것을 말하며, 화씨온도(°F)로 표시됩니다.

가. 열파지수에 따른 발생 가능한 질병

열파지수	지속적인 노출 시 위험사항
130 이상	열사/일사병 위험이 매우 높음
105 ~ 130	신체활동 시 일사병/열 경련/열 피폐 높음
90 ~ 105	신체활동 시 일사병/열 경련/열 피폐 가능성 있음
80 ~ 90	신체활동 시 피로위험이 높음

나. 열파지수 표

Heat Index Chart - National Weather Service

		Relative Humidity, %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80	85	90	95	100
Temperature, °F	70	64	64	65	65	66	66	67	67	68	68	69	69	70	70	70	70	71	71	71	71	72
	75	69	69	70	71	72	72	73	73	74	74	75	75	76	76	77	77	78	78	79	79	80
	80	73	74	75	76	77	77	78	79	79	80	81	81	82	83	85	86	85	87	88	89	91
	85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3	95	97	99	102	105	108
	90	83	84	85	86	87	88	90	91	93	95	96	98	100	102	106	109	113	117	122		
	95	87	88	90	91	93	94	96	98	101	104	107	110	114	119	124	130	136				
	100	91	93	95	97	99	101	104	107	110	115	120	126	132	138	144						
	105	95	97	100	102	105	109	113	118	123	129	135	142	149								
	110	99	102	105	106	112	117	123	130	137	143	150										
	115	103	107	111	115	120	127	135	143	151												
	120	107	111	116	123	130	139	148														
	125	111	116	123	131	141																
	130	117	122	131																		
	135	120	128																			
140	125																					

* NWS에서 발표하는 열파지수[가로축은 상대습도(%), 세로축은 기온(°F)이다]

1) 섭씨온도(°C)를 화씨온도(°F)로 변환

$$°F = (°C \times 1.8) + 32$$

2) 상대습도(%) = (현재온도에서의 수증기량/ 포화수증기량) × 100

가) 온도 및 습도는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http://www.kma.go.kr>)

1. 개요(목적)

국지성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증가 추세인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대응책을 강구함으로써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2. 주요내용

가. 산사태 취약지역 중심의 사전예방 강화

- 1)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고시 추진
- 2) 산사태 취약지역 사전 점검 및 정비 실시
- 3)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대피체계 구축

나. 상황 발생에 대비한 신속대응 체계 구축

- 1) 산사태대책상황실 설치·운영
- 2) 유관기관·단체 협조체계 구축
- 3) 산사태정보시스템 사용자정보 현행화 등 운영·관리 강화
- 4) 「산사태 예방·대응 행동메뉴얼」을 통한 대응체계 확립

다. 피해발생시 조사·복구체계 구축

- 1) 산사태 발생원인·피해조사를 위한 사전 조사반 편성

3. 추진체계 및 일정

가. 산사태 취약지역 사전 점검 실시

- 1) 기 간 : 2016. 2. 25. ~ 4. 30.
- 2) 주 관 : 민관합동점검반(공원녹지 3명, 산림조합 3명)
- 3) 대 상 : 산사태취약지역 53개소
- 4) 내 용 : 산사태취약지역 토석유출·붕괴·침식의 정도, 인명·시설 피해 가능성 여부 등

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추진

- 1) 산사태취약지역 실태 조사 : 3월
- 2) 산사태취약지역 열람공고 및 이의신청 : 4월
- 3) 지정위원회 심의 : 5월초
- 4) 지정 : 5월말

다. 산사태대책상황실 운영

- 1) 기 간 : 2016. 5. 15. ~ 10. 15.(5개월)
- 2) 설치장소 : 의령군 산림녹지과(☎ 055-570-2643)
- 3) 주요임무 : 의령군 산사태 대응활동의 총괄지휘, 산사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산사태 관련 군민 홍보 등 실시

4. 소요예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심의 위원회 운영비 : 2,800천원

제8절 녹조대책

1. 개요

- 가. 조류대발생(녹조)시 위기형태에 따른 신속한 수습·조치를 위한 범정부적 대응체계 가동
- 나. 신속한 초동조치 및 상황 전파·보고
- 다. 범정부적 대응활동 전개
- 라. 위기형태에 따른 대응활동 전개
- 마. 피해의 최소화

2. 주요내용

가. 예방대책

- ▶ 녹조 발생 감시체계 구축·운영
- ▶ 녹조 발생 대비 및 예방강화
- ▶ 유관기관 협조·지원체계 구축·유지
- ▶ 주기적 모니터링 및 녹조발생 예측시스템 구축·운영

- 축산농가 밀집지역 주기적 점검 및 계도 활동
- 유기물질, 총인, 총질소 다량배출사업장 목록화 및 주기적 점검 실시
- 조류 우심구간 상류 부유쓰레기 제거 등 하천정화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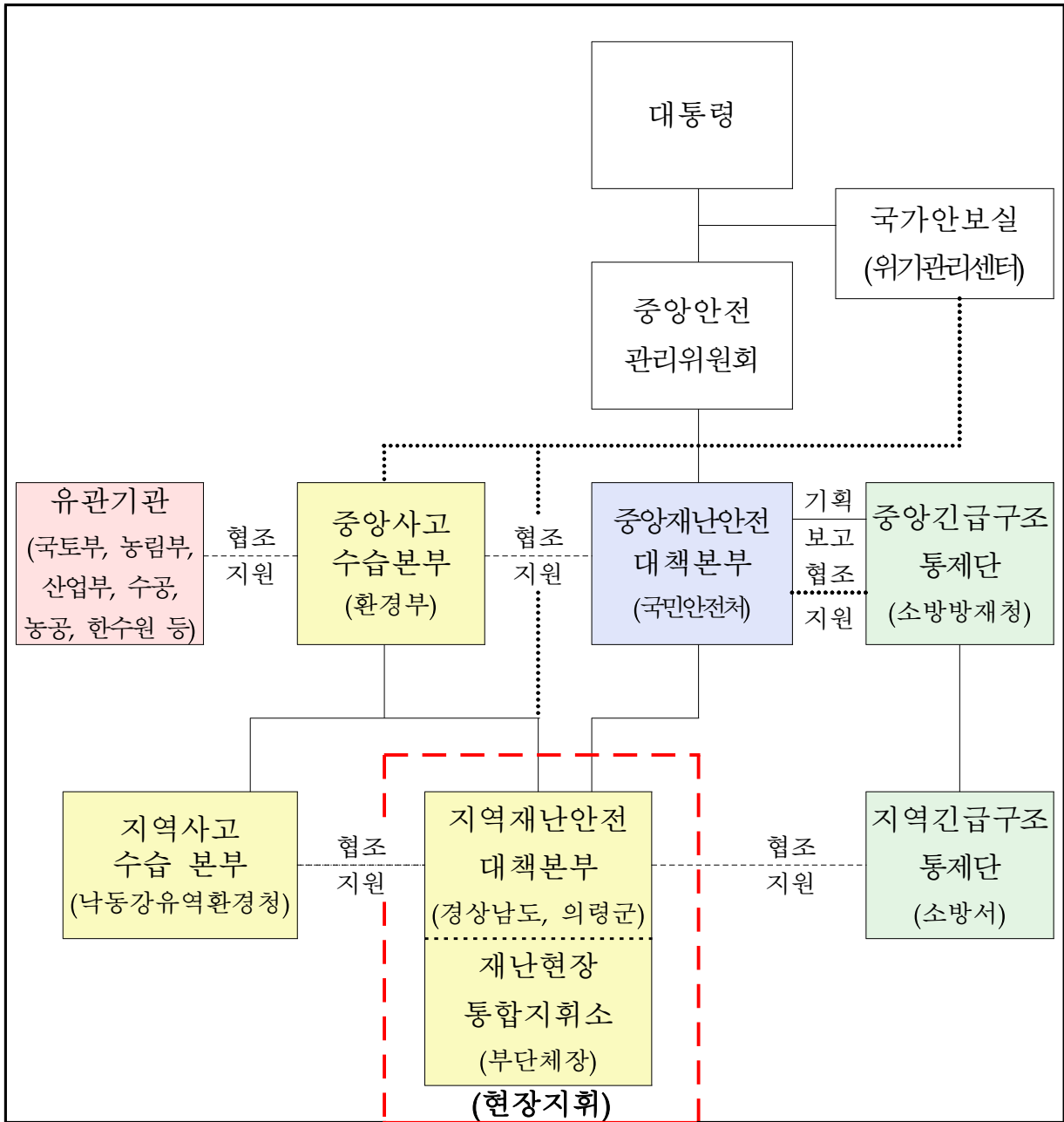
나. 대비대책

- ▶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조·지원체계 구축
- ▶ 녹조발생 대비 조류제거물질 확보
- ▶ 방제교육 및 모의훈련 실시

- 조류대발생 대응매뉴얼(행동) 주기적 점검 및 현행화
- 녹조유발 오염원에 대한 집중점검 실시
- 취·정수장 운영자 및 수면관리자 등 유관기관과 녹조대응 비상체계 구축
- 조류제거물질 등 방제장비·약품 기관별로 사전확보 및 적재적소 비치여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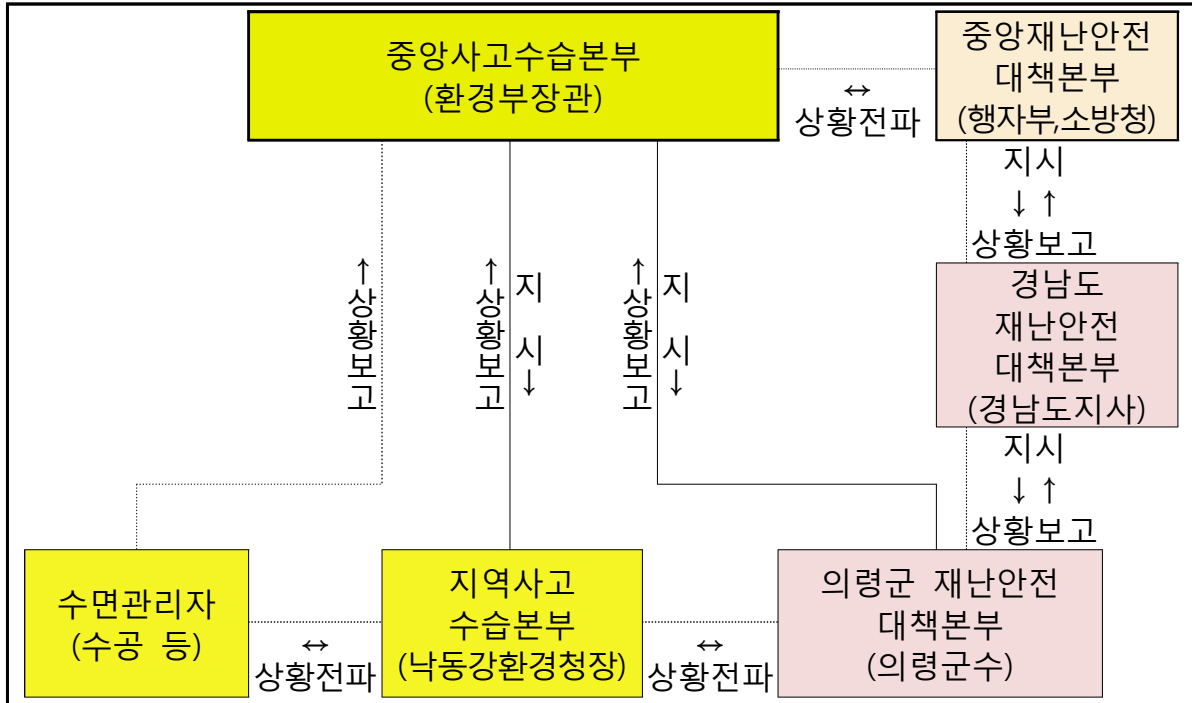
- 다. 대응대책 ※ 의령군 「조류 대발생(녹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름
- 지역재난대책본부 설치·운영(조류대발생)
 - 인근 시·군·구의 상호협조체제 구축
 - 수면관리자 녹조제거 조치 및 취·정수장 녹조대응 상황 점검·관리

< 위기관리 업무수행체계도 >



< 상황보고 체계도 >

○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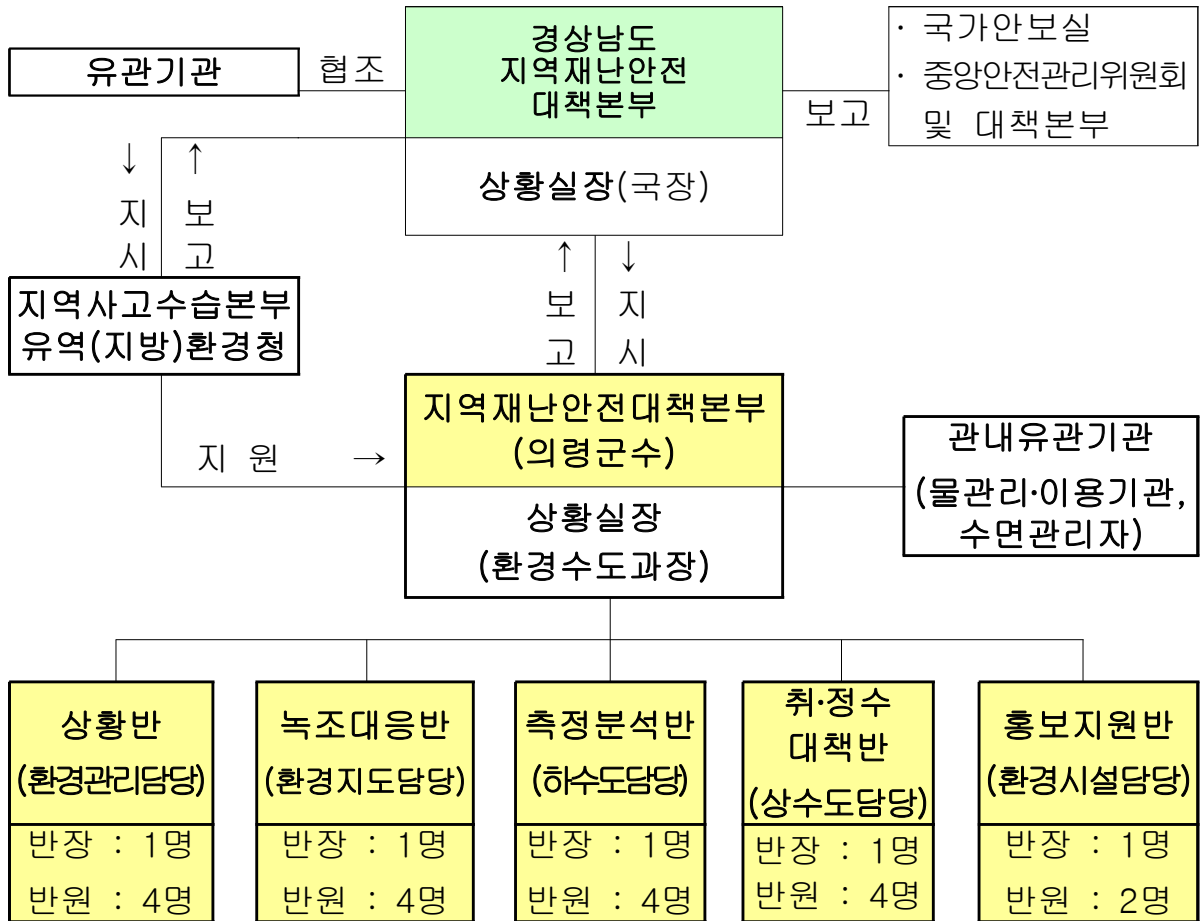


○ 상황단계별 주요 보고내용

상황단계	상황보고 내용	보고시기
녹조 대발생 접수 시	- 녹조 발생일시, 장소 등 - 녹조발생 하천의 폭, 유속·유량 등 하천정보 - 하류지역 물이용 현황(상수원, 농·공업용수 등) 등	조류 측정결과 접수 즉시
초동조치 단 계	- 초동방제를 위한 조치상황 - 녹조 유발 조류 종류 및 유해 남조류 세포수 - 정수장 피해 상황 및 지역 언론동향 등	현장상황 파악 즉시
사고수습 단 계	- 녹조 발생·확산 정도 및 피해발생 상황 - 인력·장비 동원현황 - 녹조 방제활동 진행상황 - 유관기관 참여현황 및 언론동향 등	진행상황에 따라 수시보고
상황 종료 시	- 사고수습 및 방제활동 추진경과 - 최종 피해상황 등	사고수습 완료 후 즉시

< 대응체계(지역재난대책본부 설치·운영) >

○ 설치·운영 체계도



○ 반별 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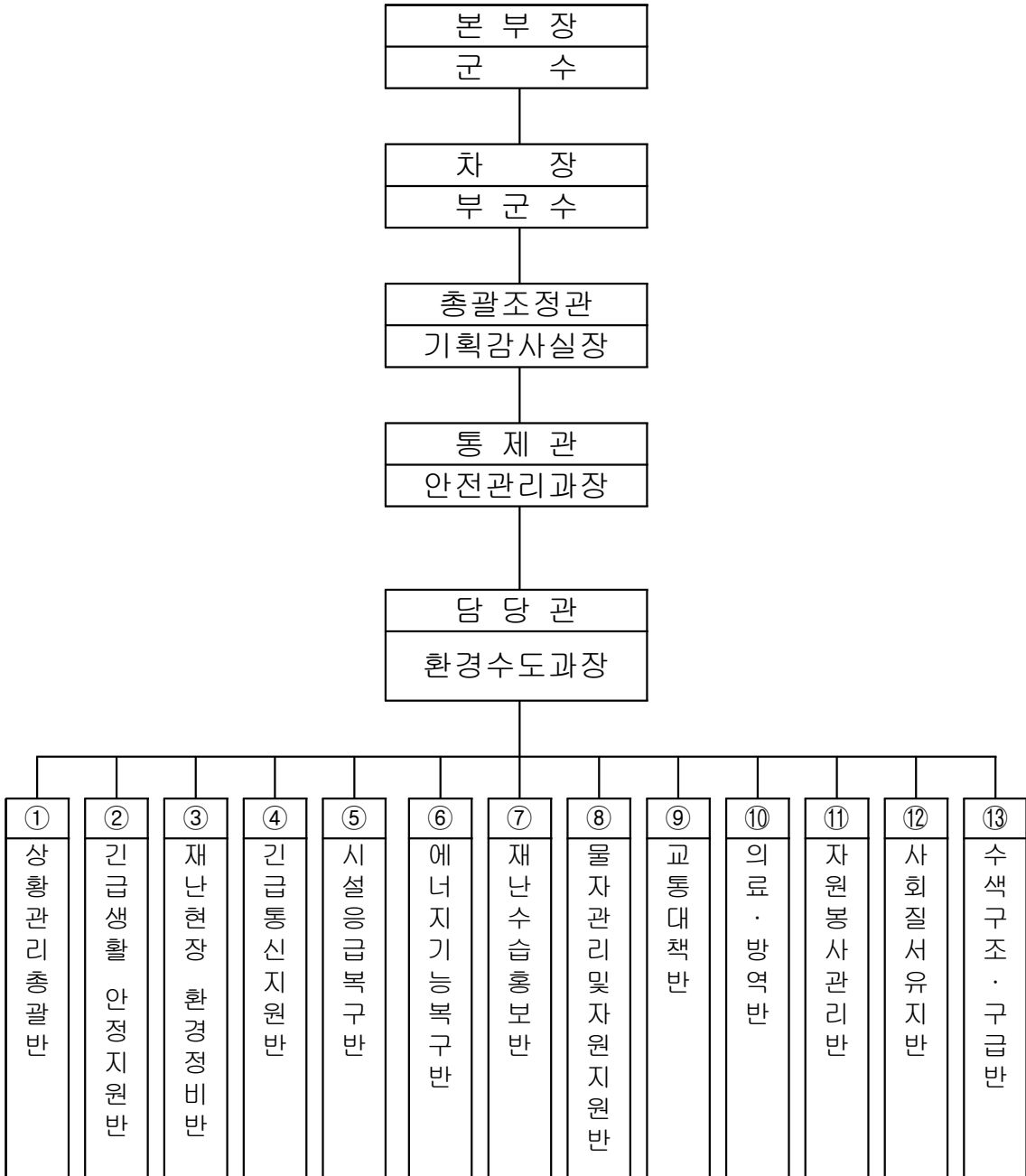
구 분	임 무 · 역 할
종합상황반	○ 소관지역 녹조 재난 대응상황 총괄, 녹조대응 방향설정, 지역유관기관 지원요청
녹조대응반	○ 방제복구 지휘, 녹조로 인한 피해조사, 사후대책 강구 * 수면관리자 파견인력은 소관지역 녹조대응 주관
측정분석반	○ 사고지역 환경조사, 시료채취·분석 및 사고 원인물질 규명, 환경영향 사후관리
취·정수대책반	○ 수질분석 및 정수처리 강화, 비상급수대책 수립, 식·용수 분야 매뉴얼 가동 준비
홍보지원반	○ 대국민 홍보활동

라. 복구대책

- 사고수습상황 종료 결정 및 전파
- 피해사례 신고지역 중 대표적 현장
- 사고지역 하류 하천·호수, 취·정수장 등에 대한 현장 조사
- 사후 환경영향조사 실시

3.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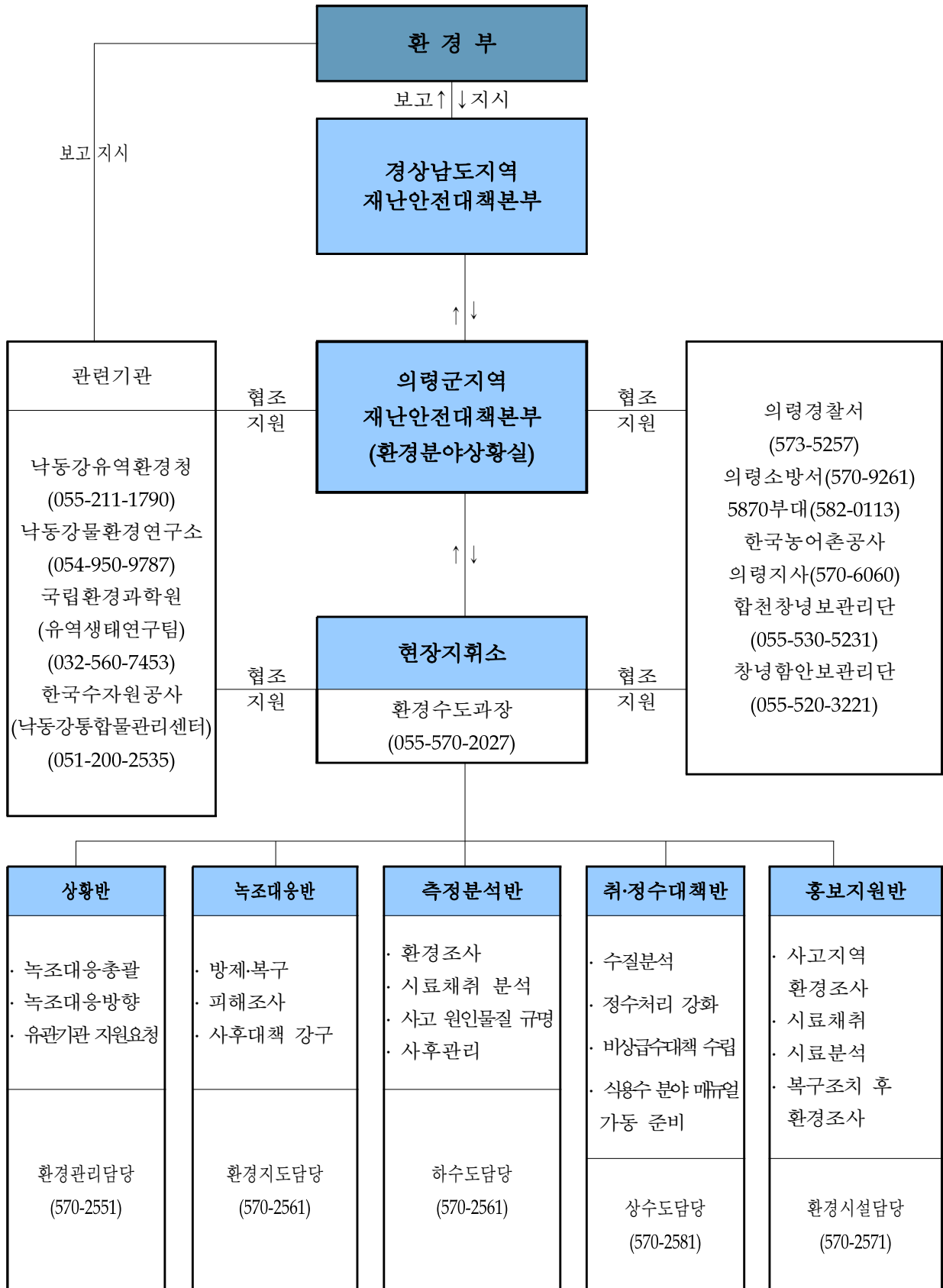
- 의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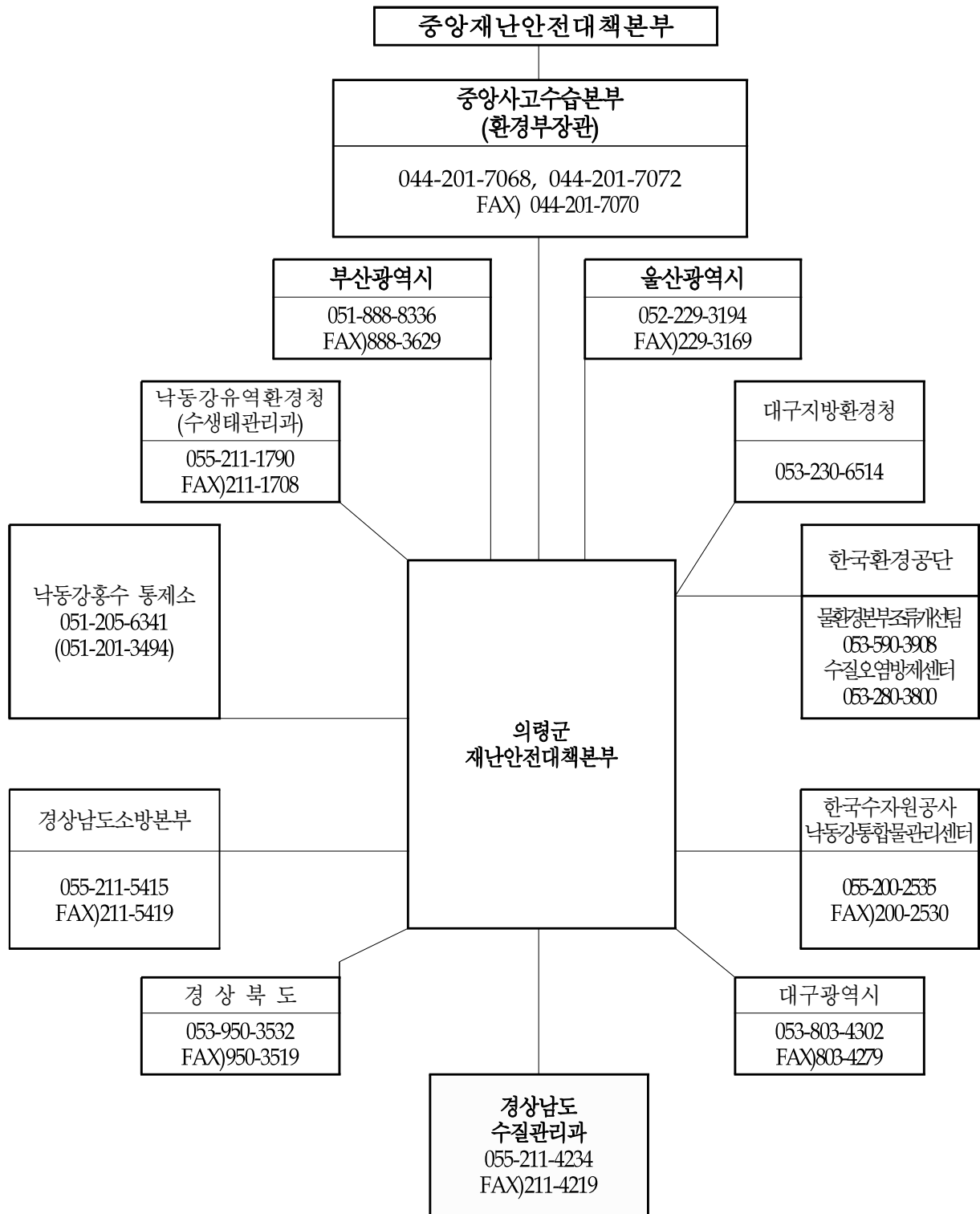
○ 협업기능별 기관 및 반별 임무와 역할

구 분	주 요 내 용	관련부서
① 상황관리 총괄	· 다수기관 수행 전반적 재난관리활동 지원·조정	안전관리과
② 긴급생활 안정지원	· 재난발생지역 세제·금융지원, 전기·통신료 감면	주민생활지원실
③ 재난현장 환경정비	·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수거·처리 지원	환경수도과
④ 긴급통신 지원	·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 기관간 정보통신 체계 운영	행정과
⑤ 시설 응급복구	· 피해시설 응급복구	건설도시과 농업정책과 의병문화관광과 환경수도과
⑥ 에너지 기능 복구	· 가스·전기·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 회복 지원	경제교통과
⑦ 재난수습 홍보	· 재난대처 관련 각종 정보 배포·조정	기획감사실
⑧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 방재자원 공동 활용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한 자원 배분	안전관리과 주민생활지원실
⑨ 교통대책	· 교통수단 지원 및 교통소통 대책	경제교통과 건설도시과
⑩ 의료·방역	· 공중보건서비스, 전염병 방역 서비스	보건소 농축산유통과
⑪ 자원봉사 관리	· 재난지역 배정, 자원봉사자 동원, 공공근로 및 기술지원	주민생활지원실
⑫ 사회질서 유지	· 교통통제, 현장통제, 안전관리, 주민대피	기획감사실 의령경찰서
⑬ 수색, 구조·구급	· 인명구조, 응급처치, 응급운송, 사망·실종자 수색	행정과 의령소방서

○ 유관기관 연락체계



○ 비상연락망



4. 소요예산 : 없음

1. 배수문 현황 및 비상연락망

읍·면	배수문 현황					비상연락망		
	수문	위치	형식	규격(구체)	연도	관리자	전화번호	비고 (공무원)
계	31개소							국가하천 17개소 지방하천 14개소
의령	동동 서동 대산 무전 정암 오감	동동 서동 대산 무전 정암 대산	핀잭(전동) 스핀들(자동) 핀잭(전동) 핀잭(전동) 핀잭(전동) 핀잭(전동)	2.0×2.0×2 1.4×1.4×2 1.4×1.4×2 2.0×2.5×2 1.2×1.3×1 2.0×2.5×1	1989 1953 1994 1995 2000 1999	이태희 이성기 고상근 박우만 황상수 허현영	010-3873-8868 010-3571-6563 010-3596-4665 010-4873-1175 010-4576-2705 010-2599-5455	박광원 570-4372
대의	마쌍	마쌍	핀잭	2.3×2.5×2	2001	오관용	010-4571-9062	노영주 570-4493
화정	상일 상이 화양 상정	상일 상이 화양 상정	핀잭(전동) 핀잭(전동) 핀잭 핀잭	1.8×2.5×1 1.5×1.8×1 2.1×2.2×2 2.8×3.0×2 2.0×2.0×3	1972 1973 1990 2012 1995 1985	태용 곽상윤 박영곤 조윤철	010-4554-9725 010-9984-1552 010-6543-8005 010-6419-8877	유준학 570-4534
용덕	교암 구소 정동	교암 소상 정동	핀잭(전동) 핀잭(전동) 핀잭(전동)	1.8×1.8×1 1.7×1.9×1 2.0×2.0×1	2000 2000 1995	박봉욱 강신대 박만복	010-4545-1892 010-9321-5488 573-0460	김슬기 570-4574
정곡	죽전 월현 예둔 백곡 적곡	죽전 중교 예둔 두호 적곡	핀잭 핀잭 핀잭(전동) 핀잭(전동) 핀잭(전동)	1.6×1.6×1 1.6×1.6×1 2.7×2.7×3 2.3×2.3×2 2.4×2.4×2	1975 1975 1975 1998 1993	서정환 주철수 김문곤 김문태 전병원	010-4044-8070 010-5313-4603 011-590-2516 010-8928-2237 010-6602-2264	이영기 570-4613
지정	오천 수월 성당 마산 포외 백야 다안	오천 두곡 성당 마산 포외 백야 다안	핀잭(전동) 핀잭 핀잭(전동) 핀잭(전동) 핀잭(전동) 핀잭(전동) 핀잭(전동)	2.0×2.5×2 2.5×2.5×2 1.0×1.0×1 1.5×1.5×2 1.5×1.5×1 2.0×2.0×3 1.0×1.0×1	1995 1993 1997 1995 2003 1995 2003	이종환 강종국 박국진 구재석 신용철 안상욱 김상용	010-6410-5350 010-8662-5345 010-9391-5117 010-9072-5079 010-3841-5878 010-3404-5331 010-4706-5803	김민구 570-4654
부림	감암 오소 대곡1 대곡2 수축	감암 대곡 대곡 대곡 단원	전동기 수동 핀잭 핀잭 핀잭	2.6×2.6×2 1.7×1.2×1 0.8×1.5×1 1.5×1.4×2 1.0×1.0×1 자동배수문	2001 1975 1975 1998 2001 2001	임현중 임현중 임현중 김영호 김영호 임현중	010-5488-2363 010-5488-2363 010-5488-2363 010-2835-1005 010-2835-1005 010-5488-2363	박성룡 570-4772

2. 배수장 현황 및 비상연락망

읍·면	배수장 현황				비상연락망			
	배수장	위치	규 모	배수량	관리원	연락처	관리자	연락처
계	44개소	리동	HP×M/M×대	m ³ /s				
의령	정암	정암	150×700×2	4.4	송철영	573-1936 010-5573-1936	임현중	010-5488-2363
	무전	무전	410×1200×4	12.52	허영환	010-3577-3248	임현중	010-5488-2363
	대산	대산	200×1000×2	4.50	장경찬	010-557-6342	임현중	010-5488-2363
			100×600×1					
	오감	대산	30×300×2	25	허현영	010-2599-5455	정재호	010-3568-8437
	화양	화양	200×900×1	3.11	박호근	010-6543-8005	하정상	010-3882-6163
화정			75×650×2					
	금동	상정	75×250×2	3.99	조윤철	010-6419-8877	하정상	010-3882-6163
	상이	화양	270×1000×3	6.16	곽상윤	010-9984-1552	하정상	010-3882-6163
			125×600×1					
	상일	상일	215×1000×3	6.75	태용	010-4554-9725	하정상	010-3882-6163
			100×600×1					
용덕	덕암	교암	150×700×2	10.0	홍영기	010-3889-1129	박성희	010-5499-3173
	소상	소상	150×750×3	3.0	임경섭	010-4133-6694	박성희	010-5499-3173
	정동	정동	150×700×1 125×350×1	1.4	박만복	055-573-0460 010-4899-0460	박성희	010-5499-3173

읍·면	배수장 현황				비상연락망			
	배수장	위치	규 모	배수량	관리원	연락처	관리자	연락처
정곡	백곡	백곡	360×1200×2	8.4	전병훈	010-8287-0721	조영제	010-3860-1249
			125×600×2					
	적곡	적곡	300×1000×1	2.8	전병훈	010-8287-0721	조영제	010-3860-1249
			120×600×1					
	월현1	예둔	500×1200×2	7.75	김문곤	010-3590-2516	조영제	010-3860-1249
			350×1000×1					
	월현2	중교	250×800×1	2.0	이규삼	011-583-4852	조영제	010-3860-1249
			125×500×1					
	죽전	중교	93×800×1	2.08	박승제	010-9236-3392	조영제	010-3860-1249
			149×600×1					
지정	오천2	두곡	350×900×2	14.5	성금영	010-2544-0185	장용두	010-3870-4617
	오천3	두곡	650×1300×4	14.0	성금영	010-2544-0185	장용두	010-3870-4617

읍·면	배수장 현황				비상연락망			
	배수장	위치	규 모	배수량	관리원	연락처	관리자	연락처
지정	오천4	오천	250×1000×2	3.7	성금영	010-2544-0185	장용두	010-3870-4617
	마산	마산	350×900×2	3.5	이재욱	011-567-5875	장용두	010-3870-4617
	백산	유곡	50×300×1	1.19	진윤백	010-2847-1925	장용두	010-3870-4617
			200×700×2					
	성산	성산	300×900×2	3.5	이찬현	010-3873-5330	장용두	010-3870-4617
	성당	성당	100×500×2	72	박국진	010-9391-5117	이광윤	010-2567-8686
	독대	백야	100×700×1		안상욱	010-3404-5331	이광윤	010-2567-8686
	포외	마산	50×400×1	30	신용철	010-3841-5878	이광윤	010-2567-8686
			30×200×1					
	다안	백야	75×400×1	36	김상용	010-4706-5803	이광윤	010-2567-8686
			50×300×1					
낙서	오운양 배	오운	25×200×1	2.92	박종부	010-9988-8608	김영호	010-2835-1005
			15×150×1					
			175×850×2					

읍·면	배수장 현황				비상연락망			
	배수장	위치	규 모	배수량	관리원	연락처	관리자	연락처
낙서	정곡	정곡	200×1000×2	6.7	홍성만	010-9230-5311	김영호	010-2835-1005
	내제	내제	150×700×1	2.4	이기두	010-4169-3676	김영호	010-2835-1005
			200×800×1					
	감곡	내제	125×600×2	1.2	김원영	010-2652-7258	남택균	010-8929-2589
	척후	아근	50×350×1	2.0	김재웅	010-8515-9747	김영호	010-2835-1005
			30×300×2					
	여의	여의	150×600×2	2.8	김형식	010-9032-4848	김영호	010-2835-1005
	여의1	여의	125×400×2	1.0	김재욱	010-2610-8907	김영호	010-2835-1005
	오운	율산	400×1000×4	8.8	김재욱	010-2610-8907	김영호	010-2835-1005
	여의2	여의	50×300×1	20	김재욱	010-2610-8907	김영호	010-2835-1005
	아근	아근	200×500×1	26	이영원	016-833-7429	남택균	010-8929-2589
	상포	아근	100x500x2	41	박재우	010-3245-3499	남택균	010-8929-2589
부곡	전화	175×600×2	59	전영중	010-3591-1455	남택균	010-8929-2589	
부림	감암	감암	125×600×1	7.59	신광식	010-2592-6033	김재준	010-2881-4040
			500×1300×2					
	손오	오소	225×800×2	3.3	강종학	055-572-7560 016-835-7560	김재준	010-2881-4040

읍·면	배수장 현황				비상연락망			
	배수장	위치	규 모	배수량	관리원	연락처	관리자	연락처
부림	대곡	대곡	250× 900× 2	2.28	김정만	011-572-9350	김영호	010-2835-1005
			150× 600× 3					
	수축	단원	120× 600× 2	1.30	김정남	010-2949-2613	김재준	010-2881-4040
	박진	경산	200× 700× 3	30	이진석	010-6599-3788	김대운	010-8538-5604

3. 저·소류지 현황

일련 번호	시설명	위 치		유역 면적 (ha)	유효 저수량 (천톤)	담당공무원		지역주민 관리자	
		읍·면	리			관리 자	연락처	관리자	연락처
1	내산다	의령	상	30.0	15.2	박광원	570-4372	장종렬	010-9878-3532
2	오령지	의령	상	55.0	26.0	박광원	570-4372	왕만호	010-3834-3271
3	외산다	의령	상	47.0	13.0	박광원	570-4372	장종렬	010-9878-3532
4	척곡	의령	중	175.0	36.4	박광원	570-4372	제필모	010-8530-7252
5	수암	의령	하	320.0	36.6	박광원	570-4372	송지연	010-9962-1265
6	장재	의령	하	58.0	18.0	박광원	570-4372	송지연	010-9962-1265
7	대산	의령	대산	15.0	19.4	박광원	570-4372	허승오	010-3535-2594
8	우수곡	의령	서동	42.0	10.6	박광원	570-4372	한병길	011-572-7694
9	무상	의령	무전	22.0	20.0	박광원	570-4372	강명구	011-864-4334
10	오감	의령	대산	23.0	8.7	박광원	570-4372	허승오	010-3535-2594
11	구룡포	의령	상	48.0	2.2	박광원	570-4372	장종렬	010-9878-3532
12	운곡	의령	중	7.5	3.0	박광원	570-4372	주정돈	010-3570-3287
13	서암	가례	괴진	1380	258.1	강지윤	570-4412	강대성	010-9558-1082

일련 번호	시설명	위 치		유역 면적 (ha)	유효 저수량 (천톤)	담당공무원		지역주민 관리자	
		읍·면	리			관리자	연락처	관리자	연락처
14	갑을	가례	갑을	80.0	47.1	강지윤	570-4412	정현대	010-4929-1006
15	개승	가례	개승	55.0	26.4	강지윤	570-4412	김중복	010-2822-4328
16	상촌	가례	운암	138.0	14.0	강지윤	570-4412	손용운	010-6562-3623
17	대천	가례	대천	14.6	15.9	강지윤	570-4412	김태경	010-4111-3772
18	운암	가례	운암	119.4	258.9	강지윤	570-4412	손영구	010-6769-0359
19	내조	칠곡	내조	127.8	36.5	김지은	570-4454	전용근	055-572-3561 011-869-3561
20	산상	칠곡	내조	100.0	9.4	김지은	570-4454	이병규	055-572-3981
21	양천	칠곡	내조	40.0	8.5	김지은	570-4454	전개수	055-572-3609
22	자굴티	칠곡	내조	85.0	6.0	김지은	570-4454	강연선	055-572-3635
23	방곡	칠곡	외조	49.0	14.2	김지은	570-4454	하영세	055-572-3891
24	우곡	칠곡	외조	46.0	7.8	김지은	570-4454	전영수	010-3570-3630
25	수부	칠곡	도산	62.0	14.9	김지은	570-4454	허숙도	010-8512-3611
26	향수	칠곡	도산	90.0	3.9	김지은	570-4454	백용수	010-8455-3623
27	압수	칠곡	도산	37.0	3.1	김지은	570-4454	허중섭	010-9334-3747
28	산남	칠곡	산남	41.5	4.7	김지은	570-4454	남도현	055-572-3708 010-4145-3708

일련 번호	시설명	위 치		유역 면적 (ha)	유효 저수량 (천톤)	담당공무원		지역주민 관리자	
		읍·면	리			관리자	연락처	관리자	연락처
29	양촌	칠곡	산북	38.0	0.5	김지은	570-4454	옥용호	010-2834-3734
30	죽공	칠곡	산북	38.0	2.3	김지은	570-4454	김창호	055-572-3925
31	산북	칠곡	산북	35.0	9.6	김지은	570-4454	전종철	010-3858-8747
32	칠곡	칠곡	산남	99.8	581.6	김지은	570-4454	전길수	011-576-1881
33	마전	대의	마전	65.0		노영주	570-4493	장종규	010-2599-5455
34	신전大	대의	신전	86.0	30.7	노영주	570-4493	서원태	010-6475-841
35	곡소	대의	신전	15.0	0.9	노영주	570-4493	양인상	010-8900-7784
36	암하	대의	행정	13.0	0.6	노영주	570-4493	심윤상	010-6470-1892
37	중촌	대의	중촌	63.0	8.3	노영주	570-4493	정청남	011-9509-5282
38	사곡	대의	중촌	40.0	3.9	노영주	570-4493	정청남	011-9509-5282
39	하촌	대의	하촌	75.0	14.6	노영주	570-4493	전경실	010-4595-9241
40	서술	대의	하촌	75.0	1.8	노영주	570-4493	전경실	010-4595-9241
41	내동	대의	다사	18.0	3.7	노영주	570-4493	김태기	055-572-8935 010-9908-8935
42	평촌	대의	마쌍	25.0	1.2	노영주	570-4493	하보용	010-2808-8962
43	부곡	대의	추산	30.0	6.8	노영주	570-4493	송학섭	016-585-7405

일련 번호	시설명	위 치		유역 면적 (ha)	유효 저수량 (천톤)	담당공무원		지역주민 관리자	
		읍·면	리			관리자	연락처	관리자	연락처
44	신전小	대의	신전	150	65	노영주	570-4493	심영조	010-4899-9675
45	추산	대의	추산	7	5.8	노영주	570-4493	허 증	010-2869-9367
46	천곡	대의	천곡	18.3	12.7	노영주	570-4493	오수현	010-9059-7899
47	죽전	대의	다사	20	5.7	노영주	570-4493	오관용	010-4571-9062
48	쌍쌀	대의	천곡	10.2	17	노영주	570-4493	허 증	010-2869-9367
49	심지 ^上	대의	심지	4.2	3.7	노영주	570-4493	허 증	010-2869-9367
50	심지 ^下	대의	심지	65	2.6	노영주	570-4493	허 증	010-2869-9367
51	신기	대의	신기	13.6	19	노영주	570-4493	허 증	010-2869-9367
52	마쌍	대의	마쌍	3.3	3.9	노영주	570-4493	오관용	010-4571-9062
53	다사	대의	다사	8.2	4.6	노영주	570-4493	오관용	010-4571-9062
54	오산	합천 대양	오산	89.6	623.8	노영주	570-4493	김종록	010-8007-0556
55	유수	화정	가수	28	1	유준학	570-4534	박영수	010-3855-3970
56	원촌	화정	가수	29	1	유준학	570-4534	이두천	010-9279-4485
57	선곡	화정	가수	32	1	유준학	570-4534	이재준	010-9345-4460
58	덕교	화정	덕교	30	2	유준학	570-4534	하상준	019-545-4328

일련 번호	시설명	위 치		유역 면적 (ha)	유효 저수량 (천톤)	담당공무원		지역주민 관리자	
		읍· 면	리			관리자	연락처	관리자	연락처
59	명주	화정	덕교	41	1	유준학	570-4534	유영권	010-4627-4150
60	문주上	화정	석천	45	1	유준학	570-4534	최선희	010-9494-8589
62	석천	화정	석천	160	4	유준학	570-4534	박성출	010-3572-4442
62	석천	화정	석천	160	4	유준학	570-4534	최선희	010-9494-8589
63	남재	화정	상정	25	1	유준학	570-4534	조영화	010-7582-3324
64	공모	화정	상이	20	1	유준학	570-4534	한만영	010-3592-4593
65	삼정	화정	상일	45	1	유준학	570-4534	박승규	010-5075-3384
66	보천	화정	상일	64	1	유준학	570-4534	태 용	010-4554-9725
67	여곡	화정	상이	45	1	유준학	570-4534	이규석	010-9574-1518
68	지곡상	화정	상이	25	1	유준학	570-4534	김장균	010-8670-5415
69	지곡하	화정	상이	56	1	유준학	570-4534	김장균	010-8670-5415
70	사곡	화정	상이	45	1	유준학	570-4534	김장균	010-8670-5415
71	탐곡	화정	상이	35		유준학	570-4534	태 용	010-4554-9725
72	원촌상	화정	가수	20		유준학	570-4534	이두친	010-9279-4485
73	유곡	화정	덕교	30		유준학	570-4534	하상준	019-545-4328

일련 번호	시설명	위 치		유역 면적 (ha)	유효 저수량 (천톤)	담당공무원		지역주민 관리자	
		읍· 면	리			관리자	연락처	관리자	연락처
74	가수	화정	가수	104.3	529.8	유준학	570-4534	김문수	010-3570-4325
75	금동	화정	상정	5.6	17.1	유준학	570-4534	박성출	010-3572-4442
76	백곡	화정	화양	10.3	13.32	유준학	570-4534	금봉옥	010-3715-7402
77	저곡	화정	상정	15	27	유준학	570-4534	박성출	010-3572-4442
78	이목	용덕	이목	85	4	김슬기	570-4574	김두천	055-574-4379
79	절골	용덕	이목	90	6	김슬기	570-4574	최장진	055-574-4386 010-4543-0150
80	대곡	용덕	가미	30	9	김슬기	570-4574	김기태	055-574-1104 010-8552-9508
81	미곡	용덕	와요	47	10	김슬기	570-4574	홍순철	055-574-4100 010-7182-4100
82	죽전	용덕	죽전	1	3	김슬기	570-4574	이재규	055-573-3911 010-8554-3578
83	성비	용덕	죽전	80	14	김슬기	570-4574	이상국	055-573-4069 010-6766-4069
84	기본곡	용덕	죽전	41	7	김슬기	570-4574	황균원	010-3567-4023
85	장곡	용덕	연	60	18	김슬기	570-4574	이용수	055-573-5566 010-3573-5512
86	보자곡	용덕	운곡	41	34	김슬기	570-4574	전명수	055-573-4078 010-3559-1372
87	석수곡	용덕	연	35	6	김슬기	570-4574	이강사	055-573-4125 010-8871-4125
88	우수곡	용덕	연	52	9	김슬기	570-4574	이우석	055-573-7599

일련 번호	시설명	위 치		유역 면적 (ha)	유효 저수량 (천톤)	담당공무원		지역주민 관리자	
		읍· 면	리			관리자	연락처	관리자	연락처
89	태화곡	용덕	연	22	9	김슬기	570-4574	이정찬	055-573-4173 010-3590-4173
90	예곡	용덕	용소	20	6	김슬기	570-4574	임중남	055-573-4348 010-9213-4348
91	용소	용덕	용소	220	29	김슬기	570-4574	김병태	055-573-4337 010-4830-4337
92	가락	용덕	가락	126	110	김슬기	570-4574	전길수	055-573-3816 010-4728-3816
93	덕암	용덕	이목	136.2	1,044	김슬기	570-4574	김기소	055-574-8020 010-9309-8020
94	와요	용덕	와요	3.5	36	김슬기	570-4574	홍순범	055-574-2868 010-5411-2868
95	문곡	정곡	중교	1.0	12	이영기	570-4613	주철수	010-5313-4603
96	두곡	정곡	중교	2.0	49	이영기	570-4613	허방진	011-282-9729
97	오동	정곡	죽전	1.0	17	이영기	570-4613	김근석	011-844-4879
98	대신	정곡	죽전	1.2	22	이영기	570-4613	박송재	010-9236-3392
99	죽전	정곡	죽전	1.2	30	이영기	570-4613	박동출	011-9398-7683
100	성황小	정곡	성황	0.1	3	이영기	570-4613	남기	011-863-9800
101	성황大	정곡	성황	1.2	21	이영기	570-4613	남기	011-863-9800
102	무곡	정곡	예둔	1.0	4	이영기	570-4613	김진수	011-9524-0101
103	무동	정곡	예둔	0.4	2	이영기	010-2466-2298	김진수	011-9524-0101

일련 번호	시설명	위 치		유역 면적 (ha)	유효 저수량 (천톤)	담당공무원		지역주민 관리자	
		읍· 면	리			관리자	연락처	관리자	연락처
104	예동	정곡	예둔	1.0	9	이영기	570-4613	서태문	010-6708-5011
105	신기	정곡	백곡	1.1	9	이영기	570-4613	전영배	010-4857-1276
106	석곡	정곡	석곡	1.1	7	이영기	570-4613	한정희	010-9327-4738
107	월현	정곡	오방	8.0	79	이영기	570-4613	이종식	010-4551-4790
108	사례실	정곡	상촌	17.4	8.4	이영기	570-4613	안영준	010-4040-1780
109	나림	지정	봉곡	47	10	김민구	570-4655	안점식	010-3854-5429
110	포수	지정	봉곡	32	12	김민구	570-4655	이창호	010-6347-6091
111	상신기	지정	봉곡	36	15	김민구	570-4655	이창호	010-6347-6091
112	웅곡	지정	오천	32	14	김민구	570-4655	손태길	010-9206-5887
113	상촌	지정	오천	30	19	김민구	570-4655	김희수	010-3574-5318
114	양동	지정	유곡	41	25	김민구	570-4655	차세인	010-4712-1980
115	각곡	지정	태부	37	11	김민구	570-4655	오정환	055-572-5292
116	내곡	지정	태부	85	37	김민구	570-4655	송영호	055-572-5654
117	상태부	지정	태부	45	11	김민구	570-4655	김종도	055-572-5568
118	오척	지정	태부	45	18	김민구	570-4655	곽병호	055-572-8706

일련 번호	시설명	위 치		유역 면적 (ha)	유효 저수량 (천톤)	담당공무원		지역주민 관리자	
		읍·면	리			관리자	연락처	관리자	연락처
119	남영	지정	태부	40	7	김민구	570-4655	임이채	055-572-5195
120	백야	지정	백야	36	14	김민구	570-4655	김강우	010-9260-5495
121	삼산	지정	두곡	24	10	김민구	570-4655	이진호	010-9340-1688
122	관동	지정	두곡	12	44	김민구	570-4655	손두현	010-9120-1301
123	득소	지정	득소	67	62	김민구	570-4655	박용관	010-6556-5386
124	오천	지정	오천	10	31	김민구	570-4655	진용구	055-572-5280
125	지산	지정	두곡	29	139.6	김민구	570-4655	이진호	010-9340-1688
126	두곡	지정	두곡	10	10.2	김민구	570-4655	이진호	010-9340-1688
127	율산	낙서	율산	28	23	남택균	570-4694	최동두	011-9305-7277
128	두곡	낙서	두곡	15	79.2	하정호	570-4692	정용균	055-572-7573 010-840-7573
129	방계	낙서	전화	10.3	14.7	하정호	570-4692	구석희	010-9330-7192
130	단원	부림	단원	50	10	박성룡	570-4772	강상복	019-516-1935
131	수축	부림	단원	50	19	박성룡	570-4772	안경구	017-545-8758
132	율리	부림	단원	62	9	박성룡	570-4772	전병하	010-8200-7899
133	대곡	부림	대곡	43	3	박성룡	570-4772	김재웅	011-9518-9747

일련 번호	시설명	위 치		유역면 적 (ha)	유효 저수량 (천톤)	담당공무원		지역주민 관리자	
		읍·면	리			관리자	연락처	관리자	연락처
134	상여	부림	여배	121	4	박성룡	570-4772	윤재성	011-9534-6768
135	하여	부림	여배	200	5	박성룡	570-4772	조태규	017-842-9219
136	익구	부림	익구	170	26	박성룡	570-4772	최재덕	010-9354-7425
137	막곡	부림	막곡	120	22	박성룡	570-4772	이현두	011-488-9766
138	경산	부림	경산	103	23	박성룡	570-4772	이재봉	011-9523-6629
139	창곡	부림	감암	62	28	박성룡	570-4772	이차규	011-515-9926
140	감암	부림	감암	20	2	박성룡	570-4772	이차규	011-515-9926
141	방계	봉수	칭계	140	29	김철하	570-4792	오정모	010-6852-3459
142	천락	봉수	천락	104.5	1450	김철하	570-4792	이순기	010-3569-9047
143	대현	공류	평촌	160	13	양희원	570-4833	최상철	010-3113-5101
144	압곡	공류	압곡	36	9.8	양희원	570-4833	이재수	010-8280-8277
145	토곡	공류	토곡	165	39.9	양희원	570-4833	신태영	010-3593-8071
146	다현	공류	다현	80	18.1	양희원	570-4833	정송음	010-5264-2322
147	지동	공류	지동	79	35	양희원	570-4833	이권수	010-5459-1822
148	소화	공류	소화	70	15.2	양희원	570-4833	노판현	010-9677-7703

일련 번호	시설명	위 치		유역면 적 (ha)	유효 저수량 (천톤)	담당공무원		지역주민 관리자	
		읍·면	리			관리자	연락처	관리자	연락처
149	벽계	공류	벽계	363.6	2490	양희원	570-4833	이재규	010-8280-8277
150	예동	공류	평촌	3.3	10	양희원	570-4833	노기현	010-6599-8128
151	입사	공류	운계	57	363	양희원	570-4833	김종돌	010-3851-8050
152	남곡	유곡	상촌	37	1.15	강병훈	570-4873	김영호	010-3103-0266
153	상촌	유곡	상촌	65	2.99	강병훈	570-4873	김영호	010-3103-0266
154	구송산	유곡	송산	460	2.75	강병훈	570-4873	표종남	010-8895-8613
155	오목	유곡	상곡	100	3.6	강병훈	570-4873	최 덕	010-4581-8584
156	신촌	유곡	신촌	65	1.6	강병훈	570-4873	서정열	010-8561-0541
157	구오목	유곡	오목	30	2.14	강병훈	570-4873	임채권	010-5099-1639
158	옥동	유곡	칠곡	55	1.6	강병훈	570-4873	한해균	010-2580-8392
159	덕천	유곡	덕천	50	2.46	강병훈	570-4873	표세철	010-5080-6101
160	덕천小	유곡	덕천	48	0.7	강병훈	570-4873	표세철	010-5080-6101
161	마장	유곡	마장	11.9	24.8	강병훈	570-4873	성사용	010-3586-8512
162	유곡	유곡	당동	14.7	108	강병훈	570-4873	강석동	010-5573-8406
163	표촌	유곡	마장	3.9	126.8	강병훈	570-4873	성사용	010-3586-8512

4. 제 방 현 황

하천명	제방명	행 정 구 역		제방연장 (km)	비 고
		시점	종점		
남강	대산제	의령읍 대산리	의령읍 대산리	2,140	
남강	만천제	의령읍 만천리	의령읍 만천리	170	
남강	정암내제	의령읍 정암리	의령읍 정암리	380	
남강	정암외제	의령읍 정암리	의령읍 정암리	780	
남강	상정제	화정면 상정리	화정면 상정리	320	
남강	상일제	화정면 상일리	화정면 상일리	3,040	
남강	화양제	화정면 화양리	화정면 화양리	2,080	
남강	소상제	용덕면 소상리	용덕면 소상리	4,000	
남강	정동제	용덕면 정동리	용덕면 정동리	2,640	
남강	월현1제	정곡면 예둔리	정곡면 예둔리	250	
남강	월현2제	정곡면 죽전리	정곡면 예둔리	580	
남강	백곡제	정곡면 가현리	정곡면 적곡리	3,260	
남강	적곡제	정곡면 적곡리	정곡면 적곡리	3,156	
남강	다안제	지정면 백야리	지정면 백야리	154	
남강	백야제	지정면 백야리	지정면 백야리	320	

하천명	제방명	행정구역		제방연장 (km)	비고
		시점	종점		
남강	성당제 1	지정면 마산리	지정면 마산리	75	
남강	성당제 2	지정면 성당리	지정면 성당리	180	
남강	마산제 1	지정면 마산리	지정면 마산리	150	
남강	마산제 2	지정면 마산리	지정면 마산리	320	
남강	마산제 3	지정면 마산리	지정면 마산리	130	
남강	포외제	지정면 마산리	지정면 마산리	300	
남강	오천제	지정면 오천리	지정면 오천리	1,030	
낙동강	성산제	지정면 성산리	지정면 성산리	2,414	
낙동강	백산제	지정면 백산	지정면 유곡리	330	
낙동강	부곡제	낙서면 전화리	낙서면 전화리	240	
낙동강	오운제 (전화제)	낙서면 전화리	낙서면 전화리	360	
낙동강	율산제	낙서면 율산리	낙서면 율산리	250	
낙동강	정곡제 (여의제)	낙서면 여의리	낙서면 정곡리	6,169	
낙동강	감곡제	낙서면 내제리	낙서면 내제리	220	
낙동강	내제제	낙서면 내제리	낙서면 내제리	360	
낙동강	아근제	낙서면 아근리	낙서면 아근리	298	
낙동강	상포제	낙서면 아근리	낙서면 아근리	350	

5. 국가하천 현황

구 분	개소수	시점	종점	하천연장	제방연장(km)			
					계	개수	미개수	개수율(%)
계	2			56.4	56.4	52.5	3.9	93.1
낙동강	1	낙서 아근	지정 성산	21.0	21.0	17.1	3.9	81.4
남 강	1	화정 상정	지정 성산	35.4	35.4	35.4	-	100

6. 지방하천 현황

읍·면	개소수	하천연장	제방연장(km)				비고
			계	개수	미개수	개수율(%)	
계	41	227.1	290.4	102.5	187.9	35.3	
의령	3	16.8	19.4	8.6	10.8	44.3	
가례	2	15.9	19.6	5.6	14.2	28.5	
칠곡	3	13.3	22.9	0.8	22.0	3.8	
대의	5	21.3	19.9	1.2	18.7	5.9	
화정	3	14.2	18.6	3.4	15.2	18.6	
용덕	2	15.3	20.3	8.9	11.4	44.0	
정곡	4	17.0	22.3	10.3	12.0	46.1	
지정	3	17.0	23.3	7.3	16.0	31.3	
낙서	2	8.1	10.9	2.0	8.9	18.7	
부림	4	23.4	30.4	24.6	5.7	80.9	
봉수	1	16.0	19.1	8.7	10.4	45.4	
궁류	5	23.0	29.7	4.4	25.3	14.9	
유곡	4	25.8	34.0	16.7	17.3	49.2	

7. 소하천 현황

읍·면	개소수	하천연장	제방연장(km)				비고
			계	개수	미개수	개수율(%)	
계	160	175.636	351.272	103.422	247.85	29.32	
의령	14	16.808	33.616	9.323	24.293	27.73	
가례	14	12.806	25.612	4.819	20.793	18.81	
칠곡	8	7.511	15.022	3.713	11.309	24.71	
대의	12	11.853	23.706	4.483	19.223	18.91	
화정	18	22.040	45.480	13.053	32.427	28.7	
용덕	11	11.555	21.710	3.585	18.125	16.51	
정곡	14	17.520	35.040	8.712	26.328	24.86	
지정	19	18.824	37.648	16.302	21.346	43.3	
낙서	8	10.69	21.380	10.930	10.45	51.12	
부림	12	13.363	26.726	11.720	15.006	43.85	
봉수	6	6.240	12.480	3.558	8.922	28.50	
궁류	10	8.656	17.312	4.204	13.108	24.28	
유곡	16	17.770	35.540	9.020	26.52	25.37	

8. 지역자율방재단 조직현황

□ 현황 : 13개 읍·면 13개단(단원 255명)

읍 면	단원수	대표자	전화번호	휴대폰	비고
계	255	13			
의령	21	강철석	574-7575	010-3876-1235	
가례	13	김덕호		011-867-3519	
칠곡	14	김갑진	572-3946	010-3579-3946	
대의	14	박수근	573-4481	010-3578-5863	
화정	18	허만옥	572-4372	010-6310-4372	
용덕	21	강해석	573-0034	010-9966-1892	
정곡	22	남인현	572-4742	010-3572-4742	
지정	21	이재현	572-3179	010-8519-3179	
낙서	20	김연삼	572-8660	010-6618-8660	
부림	28	진창태	574-1203	010-4142-3104	
봉수	26	백성열	572-3265	010-2056-3265	
궁류	17	김종돌	572-8005	010-3851-8050	
유곡	20	박용주	572-8572	010-4192-8572	

11. 상습 교통두절 예상구간 현황

노선명	위치		두절 예상 구간	두절연장 (km)	우회도로	비고
	읍·면	리				
계			13	17.3		
국도20호	대의	다사	대의 다사~ 칠곡 산북	1.2	국도33호선 진주시 경유	
국도20호	정곡	죽전	정곡 죽전~ 용덕 정동	2.0	국도79호선 함안군 가야읍 경유	
국도20호	정곡	오방	정곡 오방~ 유곡 세간	1.0	지방도1011호선 유곡면 신촌리 경유	
지방도1013호	칠곡	도산	칠곡 도산~ 화정 가수	1.2	지방도1037호선 의령읍~화정방향경유	
지방도1013호	화정	덕교	화정 덕교	1.0	지방도1037호선 의령읍~화정방향 경유	
지방도1040호	의령	정암	의령 정암	0.3	군도11호선 구룡공단 경유	
지방도1041호	유곡	세간	유곡 세간~ 지정 태부	1.0	지방도1008호선 창녕군 남지읍 경유	
지방도1011호	정곡	중교	정곡 중교~ 유곡 신촌	2.0	국도20호선 유곡면 세간리 경유	
지방도1041호	유곡	마두	유곡 마두	0.6	국도20호선 유곡면 세간리 경유	
지방도1011호	봉수	신현	봉수 신현	2.0	국지도60호선 부림면 신반리 경유	
국지도60호	봉수	삼가	봉수 삼가	2.0	지방도1011호선 합천군 대양면 경유	
지방도1041호	지정	마산	지정 마산	1.0	지방도1041호선 함안군 대산면 경유	
군도5호	낙서	전화	낙서 전화	2.0	국도20호선 합천군 청덕면 경유	

기상 악화시 주민행동요령

1. 태 풍

가. 태풍주의보 발령시

《 도시지역 》

- 저지대·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준비
- 노후가옥, 위험축대 등 시설물 점검 및 임시철거
- 고압전선 접근금지
- 옥내 외 전기수리 금지
- 각종 공사장의 안전조치
- 고속도로 이용차량 감속운행
- 뇌우 시 저지대 또는 인근가옥으로 대피
- 지붕결박 및 낙하위험 시설물의 제거 또는 결속
- 송전철탑의 도피 또는 누전·방전 발견 시 인근 기관이나 한전에 동시 연락
- 출입문·창문 등은 굳게 닫고 잠글 것
- 노약자, 어린이 외출금지
-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및 태풍상황 청취

《 농촌지역 》

- 저지대·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준비
- 노후가옥, 위험축대 등 시설물 점검 및 임시철거
- 고압전선 접근금지
- 옥내 외 전기수리 금지
- 각종 공사장의 안전조치
- 고속도로 이용차량 감속운행

- 뇌우 시 저지대 또는 인근가옥으로 대피
- 지붕결박 및 낙하위험 시설물의 제거 또는 결속
- 송전철탑의 도괴 또는 누전·방전 발견 시 인근 기관이나 한전에 동시 연락
- 출입문·창문 등은 굳게 닫고 잠글 것
- 노약자, 어린이 외출금지
-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및 태풍상황 청취
- 농작물 보호조치
- 용·배수로 점검
- 소하천 및 간이 취수장 등의 정비
- 산간계곡 야영객 대피
- 농촌시설보호 및 보강

《 하천주변지역 》

- 저지대·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준비
- 노후가옥, 위험축대 등 시설물 점검 및 임시철거
- 고압전선 접근금지
- 옥내 외 전기수리 금지
- 각종 공사장의 안전조치
- 고속도로 이용차량 감속운행
- 뇌우 시 저지대 또는 인근가옥으로 대피
- 지붕결박 및 낙하위험 시설물의 제거 또는 결속
- 송전철탑의 도괴 또는 누전·방전 발견 시 인근 기관이나 한전에 동시 연락
- 출입문·창문 등은 굳게 닫고 잠글 것
- 노약자, 어린이 외출금지
-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및 태풍상황 청취
- 저지대 위험 지역에 대한 경계 강화 및 주민안전지대 대피 준비

나. 태풍경보 발령 시

《 도시지역 》

- 저지대·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준비
- 노후가옥, 위험축대 접근금지
- 옥내 외 전기수리 금지
- 피해개소에 대한 응급복구
- 수방자재 및 구호물자의 활용
- 낙뢰가 있을시 작업장 안전조치
- 위험시설물의 사전 제거
- 고속도로 이용차량의 감속운행
- 출입문·창문 등은 굳게 닫고 잠글 것
-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및 태풍상황 청취

《 농촌지역 》

- 저지대·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준비
- 노후가옥, 위험축대 접근금지
- 옥내 외 전기수리 금지
- 피해개소에 대한 응급복구
- 수방자재 및 구호물자의 활용
- 낙뢰가 있을시 작업장 안전조치
- 위험시설물의 사전 제거
- 고속도로 이용차량의 감속운행
- 출입문·창문 등은 굳게 닫고 잠글 것
-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및 태풍상황 청취
- 농작물 보호조치

- 용·배수로 보수
- 논둑 보수 및 물꼬조정
- 소규모 교량은 안전 확인 후 이용
- 산사태 위험지구 경계강화 및 접근금지
- 산간계곡 야영객 대피
- 농림시설결박 및 보호조치 강화

《 하천주변지역 》

- 저지대·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준비
- 노후가옥, 위험축대 등 시설물 점검 및 임시철거
- 옥내 외 전기수리 금지
- 피해개소에 대한 응급복구
- 수방자재 및 구호물자의 활용
- 낙뢰가 있을시 작업장 안전조치
- 위험시설물의 사전 제거
- 고속도로 이용차량의 감속운행
-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및 태풍상황 청취
- 저지대 주민 경계강화 및 안전지대 대피
- 소규모 교량은 안전 확인 후 이용
- 산사태 위험지구 접근금지

2. 호 우

가. 호우주의보 발령 시

《도시지역》

- 저지대·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준비
- 노후가옥, 위험축대 등 시설물 점검 철거
- 고압전선 접근금지
- 옥내 외 전기수리 금지
- 각종 공사장의 안전조치
- 고속도로 이용차량 감속운행
- 뇌우 시 저지대 또는 인근가옥으로 대피
-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및 홍수예보 청취
- 배수문 및 양수기 점검 철저
- 하수도 및 배수로의 정비점검

《 농촌지역 》

- 저지대·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준비
- 노후가옥, 위험축대 등 시설물 점검 철거
- 고압전선 접근금지
- 옥내 외 전기수리 금지
- 각종 공사장의 안전조치
- 고속도로 이용차량 감속운행
- 뇌우 시 저지대 또는 인근가옥으로 대피
-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및 홍수예보 청취
- 배수문 및 양수기 점검 철저
- 하수도 및 배수로의 정비점검
- 농작물 보호조치
- 용·배수로 정비

- 소하천 및 봇물 뚝 정비
- 산간계곡 야영객 대피
- 농촌시설 보호조치

《하천주변지역》

- 저지대·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준비
- 노후가옥, 위험축대 등 시설물 점검 철거
- 고압전선 접근금지
- 옥내 외 전기수리 금지
- 각종 공사장의 안전조치
- 고속도로 이용차량 감속운행
- 뇌우 시 저지대 또는 인근가옥으로 대피
-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및 홍수예보 청취
- 배수문 및 양수기 점검 철거
- 하수도 및 배수로의 정비점검
- 수산 증·양식시설물 보호조치
- 저지대 위험 지역에 대한 경계 강화 및 주민안전지대 대피 준비

나. 호우경보 발령 시

《 도시지역 》

- 저지대·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준비
- 노후가옥, 위험축대 등 시설물 점검 철거
- 옥내 외 전기설비 고장 시 수리금지
- 수방자재 및 구호물자의 활용
- 피해지구의 응급조치
- 낙뢰우가 있을시 작업장 안전조치
- 위험시설물 사전제거
- 고속도로 이용차량의 감속운행

- 홍수에 따른 저지대 주민의 대피
-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및 홍수예보 청취

《 농촌지역 》

- 저지대·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준비
- 노후가옥, 위험축대 등 시설물 점검 철거
- 옥내 외 전기설비 고장 시 수리금지
- 수방자재 및 구호물자의 활용
- 피해지구의 응급조치
- 낙뢰우가 있을시 작업장 안전조치
- 위험시설물 사전제거
- 고속도로 이용차량의 감속운행
- 홍수에 따른 저지대 주민의 대피
-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및 홍수예보 청취
- 농작물 보호조치
- 용·배수로 정비
- 논둑 보수 및 물꼬조정
- 소규모 교량은 안전 확인 후 이용
- 산사태 위험지구 경계강화 및 접근금지
- 산간계곡 야영객 대피
- 농촌시설 보강

《 하천주변지역 》

- 저지대·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준비
- 노후가옥, 위험축대 등 시설물 점검 철거
- 옥내 외 전기설비 고장 시 수리금지
- 수방자재 및 구호물자의 활용
- 피해지구의 응급조치

- 낙뢰우가 있을시 작업장 안전조치
- 위험시설물 사전제거
- 홍수에 따른 저지대 주민의 대피
-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및 홍수예보 청취
- 저지대 주민 경계 강화 및 주민안전지대 대피 준비

3. 대 설

가. 대설주의보 발령 시

《 가정에서의 대비사항 》

- 각종차량의 감속운행(안전장구 부착)
- 노후가옥 안전점검
- 노약자 및 어린이 외출 금지
-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청취
- 대중교통수단 이용
- 피해지구 응급복구 참여
- 내집 앞, 골목길 등에 염화칼슘·모래 등 배치

《 농촌지역 대비사항 》

- 등산객, 관광객의 조속하산 및 귀가
- 각종차량의 감속운행(안전장구 부착)
- 노후가옥 안전점검
- 노약자 및 어린이 외출 금지
- 각종 공사장의 안전조치
-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청취
- 대중교통수단 이용
- 가옥주변 적설제거
-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시설에 대한 보호조치

《운전자 대비사항》

- 각종차량의 감속운행(안전장구 부착)
-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청취

나. 대설경보 발령 시

《가정에서의 대비사항》

- 각종차량의 감속운행(안전장구 부착)
- 노후가옥 안전점검
- 노약자 및 어린이 외출 금지
-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청취
- 대중교통수단 이용
- 피해지구 응급복구 참여
- 내집 앞, 골목길 등에 염화칼슘·모래 등 배치

《농촌지역 대비사항》

- 등산객, 관광객의 조속하산 및 귀가
- 각종차량의 감속운행(안전장구 부착)
- 노후가옥 안전점검
- 노약자 및 어린이 외출 금지
- 각종 공사장의 안전조치
-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청취
- 가옥주변 적설제거
-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시설에 대한 보호조치

《운전자 대비사항》

- 각종차량의 감속운행(안전장구 부착)
-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청취

4. 황 사

가. 황사주의보 발령 시

《가정에서의 대비사항》

-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점검하고
 - 실내 공기정화기 및 가습기 등을 준비
 - 외출 시 필요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의복 등을 준비
- 포장되지 않은 식품 등은 운반 시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용기 등을 준비

《교육기관에서의 대비사항》

- 기상청 등에서 발표한 기상예보를 청취·분석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 등을 신중히 검토
 - 학생 비상연락망 점검 및 연락체계 유지
 - 휴업 조치 시 맞벌이 부부자녀에 대한 자율학습대책 등 수립
-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황사발생대피 피해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 지도 및 홍보 실시

《농축산 농가에서의 대비사항》

- 운동장 및 방목장에 있는 가축 대피 준비
- 노지에 방치, 야적된 사료용 볏짚 등에 대한 피복물 준비
- 동력분무기 등 황사세척용 장비 점검·장비
-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 및 환기창 점검
- ※ 기타 제조업체 등 사업장에서는 자재 및 생산제품의 옥외야적을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포장 및 차단시설 설치

나. 황사경보 발령시

《가정에서의 대비사항》

- 가급적 외출을 삼가되, 외출 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의복을 착용하고, 귀가후 손과 발 등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
- 황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고 실내공기의 정화 및 가습기를 사용한 적정습도 유지
-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등 농수산물은 충분히 세척 후 섭취
- 식품가공, 조리 시 철저한 손씻기 등 위생관리로 2차 오염 방지

《교육기관에서의 대비사항》

-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금지 및 수업단축 또는 휴업
- 황사발생기간 중 실외학습, 운동경기 등 중지 및 연기 조치

《농축산 농가에서의 대비사항》

- 운동장, 방목장에 있는 가축은 축사 안에서 신속히 대피시켜 황사에 노출방지
- 축사의 출입문 및 창문을 닫아 황사유입을 최소화하여 외부의 공기와 접촉을 가능한 적게 할 것
- 노지에 방치·야적된 사료용 건초, 볏짚 등을 비닐, 천막 등으로 덮기
-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 및 환기창 닫기
- ※ 기타 제조업체 등 사업장에서는 생산공정 불량률 발생방지를 위한 작업 일정 조정 및 상품포장, 청결상태 유지

5. 가 목

《가정에서 할일》

- 변기에 벽돌을 넣어 수세식 화장실 물을 아낀다
- 세탁물을 모아서 한번에 한다
- 수도꼭지에 절수기를 달아서 사용한다
- 이웃 주민과 절수 운동을 실천 한다
- 공공 시설물 물 낭비를 확인 한다
- 자동차 세차의 횟수를 줄인다
- 물탱크 누수를 확인한다
- 오래된 수도 파이프의 누수를 확인한다
- 가정마다 10% 절수 운동을 시작 한다
- 세탁 헹굼물을 화장실 청소 등으로 재 사용한다
- 목욕물을 수세식 변기 등에 재 사용한다

《농축산농가에서 할일》

- 관정, 양수기 등 양수장비를 총동원하여 초지 등에 급수대책 실시

《산업시설에서 할일》

- 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비상급수시설, 인근 정수장, 간이상수도 전용 상수도 등을 활용한다
-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비상급수를 위한 시설장비 및 인력을 확보한다. (군부대, 소방서 등)

6. 지 진

《가정에서 할일》

- 화재예방
 - 열기로부터 순간적으로 화재가 발생되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화기를 신속히 처리하고 화재 발생시는 5분 이내에 진화하도록 하며 대피 시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낮은 자세로 기어서 대피
- 성냥, 라이터, 가스렌지, 석유난로 등 발화물질 사용 금지
- 라디오, TV 등 방송을 청취하며 상황판단과 질서 유지
- 가스, 수도, 전선 등의 이상 발견 시는 즉시 차단조치
- 목욕탕, 화장실 등 좁은 공간은 안전하므로 황급히 외부로 나오지 말고 상황과약 후 행동
- 가정에 있을 경우에는 1층보다 2층이 더욱 안전하므로, 1층 출입구에 있으면 밖으로 대피, 계단 가까이 있을 때는 2층으로 대피

《다중이용시설에서 할일》

- 상점가에 있을 경우
 - 간판이나 유리가 떨어져 내릴 수도 있으므로 도로의 복판으로 대피
- 영화관, 학교, 사무실 등 실내에 있을 경우
 - 신속히 의자 밑으로 머리를 숙이고 상황을 살핀 후 도피보다는 화재가 위험하므로 상황을 보아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히 출구로 대피
- 지하도에 있을 경우
 - 당황하여 출입구로 쇄도하거나 소리 지르지 말고 침착하게 질서를 유지하며 대피
- 운동장에 있을 경우
 - 당황하여 출입구로 쇄도하기 보다는 넓은 운동장으로 대피하는 것이 더욱 안전

- 응급대피
 - 옥내에서 테이블, 침대 등 비교적 견고한 가구 밑에 순간적으로 대피하고 옥외에서는 낙하물이 없는 내진성이 강한 건물로 대피하여 최소한 비상지참물을 휴대하고 도보로 대피
- 유연비어에 현혹되지 말 것
 - 유연비어로 인한 공포분위기 조성에 침착하게 대처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행동한다.

《고층건물에서 할일》

- 실내에 있을 경우
 - 창문에서는 멀리 떨어지고, 건물 중앙의 벽 쪽이 안전
- 피해 입은 건물에서는 승강기보다 계단이용 신속히 대피

《저지대지역에서 할일》

- 산이나 절벽에서는 산사태 발생이나 낙석에 주의하고 저지대는 침수사태에 대비

《보행자가 할일》

- 강한 진동이 계속되는 시간은 15초를 넘지 않으므로 멀리 대피하기 위하여 서둘러 말고 있던 장소에서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
- 질서유지에 협조
 - 번화가, 지하시설 등에서는 낙하물 사고 및 정전에 대비하여 유도요원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따른다.

《차량운행중에 할일》

- 운전 중인 때의 행동
 - 차량을 신속히 평지나 지하차고로 대피 후 차에서 떨어진 곳으로 대피

7. 강 풍

《평상시 할 일》

- 노후간판을 정비하고, 지붕, 옥상 등에 바람에 날릴 수 있는 물건을 치운다.
- 만일을 대비하여 대피장소를 정하고 대피경로를 실제 도보로 확인해 둔다.
- 손전등, 라디오, 가정상비약 등 대피준비물을 준비해 둔다.

《강풍 주의보·경보가 예보된 경우 할 일》

- TV, 라디오 등을 통해 강풍정보를 수시로 확인한다.
- 가능하면 외출을 자제하고 특히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는 외출을 금지한다.
- 가옥 내·외의 전기수리를 하지 않는다
- 입간판, 창가의 화분 등을 제거한다
- 지붕위 등 지상보다 높은 곳에서는 가능한 작업을 하지 않는다
- 외부에 있을 때는 신속히 건물 안으로 대피하고, 나무 밑으로는 피하지 않는다
- 출입문을 굳게 닫고,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커튼, 블라인드 등을 치고 창문에서 멀리 떨어진 화장실, 골방 등으로 피한다
- 자동차를 타고 갈 때에는 속도를 줄이고 방음벽 아래로 대피하지 않는다
- 놀이공원, 유원지 등의 놀이시설, 공사장의 크레인, 리프트 등은 즉시 운영을 중지하고 대피한다
- 전주, 송전철탑 주변에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
- 낡은 집이나 위험담장 등에 접근하지 않는다
- 공사장에서는 안전장비를 점검하고 임시시설, 낙하의 위험이 있는 시설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취한다
-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버섯재배시설 등 농림시설에 대하여는 결박 및 보강조치를 취한다.

제 2 장 사회재난 관리대책

현장중심의 산불예방과 초동진화로 산불피해 최소화

-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산불발생요인 사전차단
- 특정의 날 지정 맞춤형 산불예방 초동진화로 산불피해 최소화

I. 성과와 반성

- 임차헬기 공중순찰, 무인감시카메라, 감시초소 등 다각적 방법을 통한 조기 발견 및 예방활동 강화로 산불발생 사전차단 및 조기발견, 효율적 초동진화로 산불피해 최소화.
- 산불발생 위험시기 공무원 담당마을 주재 근무로 대민홍보 및 산불예방 성과거양
- 산 연접지 소각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경각심 고취
- 읍·면별 자체 산불방지 시책개발 추진으로 산불방지 총력경주 등

II. 산불발생 전망 및 추진방향

- 전 망
 - 예년에 비해 동절기 적설량이 적고 가뭄, 강풍 등으로 산불발생 요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산림의 여건변화 및 산림이 울창해져 산불발생시 대형화 우려
 - 삶의 질 향상으로 여가활용 및 산나물채취 입산자 증가
 - 농산촌 인구 노령화 및 노동력 부족으로 논·밭두렁 태우기 상존

III. 추진방침

- 맞춤형 예방위주의 근원적 방지대책 적극강구
- 감시 및 신고, 초동태세 강화로 초동진화체제 확립
- 산불 취약마을 집중계도로 산불방지 경각심 고취

- 지역실정 감안 새로운 특별대책 발굴추진
- 실질적 진화체제 조직정비로 총력진화 강구
- 진화장비 보강 및 진화능력 배양
- 군, 경찰, 소방, 민방위 등 유관기관, 단체의 지원체제 강화
- 산림보전의식 공감대 조성을 위한 대 군민 홍보강화

IV. 일반현황

1. 산림기본현황

- 소유별 임야면적

(단위 : ha)

면적	국 유 립			공 유 립			사유림	비고
	소 계	산림청	타부처	소 계	도유림	군유림		
33,058 (100%)	515 (1.7%)	566	6	998 (3.0%)	-	998	31,545 (96%)	

- 임상별 면적 및 축적

(면적 : ha, 축적 : m³)

임상별	계	침엽수	활엽수	혼효림	죽림	무입목지
면 적	33,058	17,190	3,305	12,231	102	230
축 적	4,070,328	2,177,932	318,583	1,573,813	-	-

※ ha당 축적(2010.12.31 기준) : 전국 125.6m³, 경남 132.3m³, 본군 123.14m³

2. 임도시설현황

- 임도 총연장 : 38개소 154Km
- 임도 밀도 : ha당 4.54m

V. 중점추진계획

- 감시인력 취약지 중점배치 및 활용강화

- 명예감시원 자율 감시활동 추진
- 산연접지 논·밭두렁 사전소각 강력 단속
- 산림내 취사행위와 인화물질 휴대입산 단속
- 다각적인 홍보활동 강화로 범·군민적 산불예방 생활화
- 산불 취약마을 집중계도로 산불방지 경각심 고취
- 군 병력 작전 훈련시 산불예방 및 산불발생시 진화협조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조직보강
- 헬기순찰효과 극대화(오후 취약시간 순찰강화)
- 무인감시카메라 활용도 강화

【준비사항】

- 지역실정과 여건에 맞는 산불방지 세부추진대책 수립 : 2015. 10. 31.까지
-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고시 : 2015. 10. 15. 고시
- 취약지역의 면밀한 현황파악 및 적정대처 : 10월 말까지
 - 감시초소, 진화장비, 동력펌프, 무전기, 기동력 등 정비
 - 입간판, 경고판 등 각종 표지판 정비
 - 산불조심 깃발 설치 : 11월초(1,400개소)
- 유급 감시원 배치 : 2015. 11. 01. ~ 2016. 5. 15.(76명)
- 산림공익근무요원의 활용도 강화
 - 산림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의거 자체교육 실시
 - 산불방지기간 동안 출퇴근 시간 조정
- 산불 명예감시관 조직 및 정비
 - 조직결성 : 2015. 11. 15. 까지
 - 읍 면 별 : 13개대(1개대 10명 이상)
- 산불취약지 마을 집중계도, 좌담회 등 : 기상 사태별 수시개최
- 각종 홍보물 제작 활용으로 홍보효과 제고
 - 스티커, 리본, 깃발, 표어, 현수막, 포스터, 테이프, VTR 등
- 유관기관 업무협조 지원 등 공동대처 방안 적극강구
 - 인력, 장비, 헬기지원 등
 - 방송, 신문사와 협조로 홍보강화

1. 산불방지 근무태세 확립

가.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

- 기 간 : 2015. 11. 1. ~ 2016. 5. 15.(7개월간)
- 설치기관 - 군: 산림녹지과 ┆ 일반전화 : 570-2660~3
 ┆ 행정전화 : 2660~3
 - 읍·면 : 읍·면장실
- ※ 도청 : (055)211-4262~5
- 근무시간
 - 추기 : 09:00~19:00(이후 당직실)
 - 춘기 : 1~2월은 19:00까지, 3~5월은 20:00까지(이후 당직실)
단, 야간진화작업의 경우는 진화완료시각(뒷불정리 종결시간)까지 운영
- 근무인원 ▣단계(관심) : 산불대책본부 상황근무요원 배치대기
 ▢단계(주의) : 산불대책본부 상황근무요원 배치대기
 ▤단계(경계) : 직원 1/6이상
 ▥단계(심각) : 직원 1/4이상
산불발생 시 전 직원(해당 읍·면, 군청)
- 대책본부임무
 - 산불방지종합대책 추진 및 근무유지
 - 산불경보 발령 및 단계별 조치사항 이행
 - 산불예방·진화대책 수립 및 진화장비 확보, 점검
 - 산불발생시 헬기지원 및 현장 진화지휘체계 유지
 -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과 업무협조
 - 진화상황 등 산불발생 보고 및 기타 필요한 사항
 - 근무보고자 : 근무개시 즉시
 - 이상유무보고 : 매일4회(10:30, 12:00, 14:00, 16:00, 17:30)
 - 산불심각경보시 군 실과장 2명 윤번제 근무(본부1, 현지1명)
- ※ 대책본부상황관 : 산림녹지과 설치 운영

나. 기상사태에 따른 산불경보제 확립

○ 산불경보의 발령기준

산불경보 구분	발령 기준
관심	○ 산불 발생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불예방에 관한 관심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의 경보 발령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주의	○ 관할구역의 산림 중 산불위험지수가 51 이상 65 이하이거나 산불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계	○ 관할구역의 산림 중 산불위험지수가 66 이상 85 이하이거나 발생한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각	○ 관할구역의 산림 중 산불위험지수가 86 이상이거나 산불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대형 산불로 확산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산불경보별 조치기준

산불경보 구분	소속공무원·직원의 산불발생 취약지 배치 또는 비상대기 인원 기준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기준	등산로 노선의 폐쇄 기준
관심	○ 산불방지대책본부에 속한 상황근무요원을 배치·대기	○ 전체 산림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 지정	○ 전체 등산로 노선의 50퍼센트 이상을 폐쇄
주의			
경계	○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의 3분의 1 이상을 배치·대기 ○ 소속 공익근무요원의 3분의 1 이상을 배치·대기	○ 전체 산림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지정	○ 전체 등산로 노선의 80퍼센트 이상을 폐쇄
심각	○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의 2분의 1 이상을 배치·대기 ○ 소속 공익근무요원의 2분의 1 이상을 배치·대기		

2. 산불 감시활동 강화

가. CCTV를 통한 효율적인 산불방지

- 설치현황
 - 설치장소 : 자굴산 1대, 옥녀봉 1대, 장등산 1대, 왕령산 1대
 - CCTV실 : 군청 산림녹지과
- CCTV 시설관리 및 모니터실 근무철저
- 상황근무(전문진화대 1명)

나. 산불감시원 활동강화

- 확보계획 : 76명
 - 기동감시원 : 13명(읍·면당 1명)
 - 초소감시원 : 10명(9개초소, 초소당 1~2명)
 - 화기물보관소감시원 : 4명(내조리 1, 백련암 1, 찰비계곡 1명, 쇠목재)
 - 일반감시원 : 49명(읍·면당 3~5명)
- 사역일수 : 가을, 봄철 산불방지기간
- 감시원 중점배치 및 점검
 - 감시초소, 취약지, 산정 및 등산로 입구에 중점배치
 - 감시원 책임구역 및 정위치 지정
 - 감시인력 기동력 확보 및 진화장비 휴대
 - 근무상황 지도점검
 - 군 => 읍·면 => 기동감시원 => 일반감시원
- 배치계획
 - 기동감시원
 - 기동장비와 무전기를 휴대
 - 군 읍·면 대책본부 및 감시초소와 무선 연락망 유지
 - 군내 순찰과 일반감시원의 근무상황 확인
 - 초소감시원 : 자굴산 등 9개소
 - 각 감시초소에서 쌍안경, 무전기, 손전등, 도면 등을 휴대
 - 군, 읍·면, 기동감시원간 무선연락망 유지(2시간 간격 대책본부 이상유무 보고)하여 산불발생시 신속대처

- 화기물 임시보관소
 - 주요 등산로 입구 및 입산자가 많은 취약지역에 고정 배치
 - 입산자의 화기물 보관 및 입산자 통제
- 일반감시원
 - 개인별 책임구역 및 정 위치 지정 예방 활동전개

3. 산림내 취사행위 등 단속강화

- 산림내 취사행위 전면금지
- 등산로 입구 인화물질 휴대입산금지 현수막, 안내판 집중설치
- 무단 입산자와 화기물 휴대입산자, 산림내 취사행위 의법조치
 - 자기소유 산림에 방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 불을 놓은 자는 100만원 이하 벌금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50만원 이하 벌금
 - 산림내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행위나 담배꽂초를 버린자는 30만원 이하 벌금
- ※ 과태료 부과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각 호, 항
- 단속반 편성후 지속적인 순찰 및 단속강화
 - 과태료 부과 확행
 - 제복착용, 신분증 등으로 종사자의 명확한 신분표시
- 주민 의식전환으로 산행질서 정착 : 도시락 지참 유도

4. 산불방지 지역책임제 실시

가. 공무원 책임(담당)구역제 실시

- 도 : 실, 국장, 과장(담당관)산불 지도 담당군
 - 군 : 실·과·소별 담당읍·면(마을)-불임
실·과·소별 산불방지 담당읍·면 지정
 - 읍·면 : 마을담당제로 책임의식 부여

□ 실과소별 산불방지 담당읍·면 지정

2016. 1월 기준

읍 면	담당 실과소	비 고
계	15개 실과소	
의령읍	민원봉사과	
가례면	기획감사실	
칠곡면	재무과	
대의면	환경수도과	
화정면	안전관리과, 산림녹지과	
용덕면	농업정책과	
정곡면	보건소	
지정면	건설도시과	
낙서면	경제교통과	
부림면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봉수면	주민생활지원실	
궁류면	의병문화관광과	
유곡면	행정과	

건조기 산불비상근무 지침

- 산불예방활동 집중전개
- 주말, 공휴일 비상근무 실시
- 산림내 화기물 휴대입산 및 취사행위 강력단속
-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집중단속
- 입산통제구역 입산금지
- 취약지 산불감시원 및 공무원 중점배치, 감시인력 근무태세 확립
- 마을방송 반복실시
- 조기발견 초동진화를 위한 군, 경찰 등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
- 산불발생시 즉시 발생상황을 군청 산불종합상황실에 즉보
- 산불진화를 위한 기동대 편성운영

나. 산불방지 대책협의회 운영

- 군수 주관하에 산불조심 기간중 월 1회 이상 산불방지 협의회 개최
- 지역재난방지차원에서 공동 책임의식 고취
- 산불발생시 차량, 장비, 인력 등 총동원 공동대처
- 지역주민 계도 및 홍보활동 합동전개
- 방화, 실화, 공동대응(특히 야간발생 원인규명 경찰 합동대처)
- 담당구역제 지정 : 관내 전 기관, 단체, 기업체 등.

다. 마을별 자율 감시 및 계도실시

- 주민 자율순찰조 편성 예방 및 진화활동
- 등산, 성묘객 등 외래객 입산통제 및 계도철저
- 아침, 저녁 마을앰프를 통한 산불방지 홍보

라. 산악회, 자연보호회 등 자생단체의 지역분담보호제 실시

마. 산림애호가 자발적 산불방지 참여제도

- 대면적 소유자(50ha이상), 산림수혜자 및 공원, 관광지, 공유림 대부자에게 방화선 설치, 감시원배치, 진화장비 확보 등 자율적 산불방지 예방명령
- 50ha이상 산림소유자 : 7명(부영학원, 수도사, 이근영, 김용성, 곽철만, 전영대, 김영필)
-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 : 유재상, 김정수, 김천우, 김경곤, 박인홍, 김성근, 전재훈, 정태주

5. 취약지 산록변 풀베기

가. 대상지역

- 전 도로변 폭 10m이상 풀베기 등 인화물질 제거
- 산림연접지 도로 및 농경지 주변
- 독가촌, 산림내 산업시설, 축사, 사찰 주변
- 등산로, 쓰레기 소각장, 사격장, 공동묘지 주변
- 마을주변 및 기타 취약지

나. 제거기간 : 2015. 10. 1. ~ 11. 30.(2개월간)

다. 추진요령

- 감시원, 공익근무요원 최대 활용

- 읍, 면, 리별로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실시
- 추진상황 실적확인 : 전 읍·면 실행지 지도확인

라. 제거방법

- 대상으로 폭 10m내외의 지상입목과 낙엽제거

6. 산연접지 논·밭두렁 “산불예방선” 소각

- 산연접지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 대부분 차지
- 20m폭으로 사전소각 산불예방선으로 활용

가. 대상지역

- 산림과 연접 또는 개재된 농경지, 과수원 등 산불발생 위험이 극히 우려되는 지역

나. 목 적

- 산림과 연접 또는 개재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의 소각을 합리적으로 통제하여 산불발생요인을 사전제거

다. 추진요령

- 대상지 선정 마을별 소각계획 수립(11월중)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방화선 설치를 위한 가연물질 제거조치
- 마을단위로 책임자와 소각일자 지정 공무원 입회하에 실시
 - ※ **산불경보 경계, 심각 발령시 일시중지**
- 소각 기간 후는 단속강화(위반자 의법 조치)
- 읍·면별로 지도책임구역제 실시
- 산불 발생원인이 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철저
- 산불감시원, 공익근무요원, 행정자치부 공공근로사업비 활용
- 유관기관 실시계획 사전 통보
- 개별 소각자 엄격통제
- 추진상황 실시확인 : 군 전 대상지 지도확인 실시

라. 단계별 추진계획

- 군
 - 읍, 면, 리 단위 논·밭두렁 소각계획 시달
(2015년 12월 ~ 2016년 1월경 : 산불위험성이 없을 경우)

- 읍, 면, 리 추진사항 지도점검
- 읍, 면, 리
 - 읍·면장은 소각대상 농경지 소유자에게 소각일자를 고지하여 마을공동으로 당일 소각토록 지도(지정기간 외 소각금지 주지)
 - 리별로 소각 실천계획수립 및 주민계도(마을앰프, 계도차량 동원)
 - 담당공무원, 리장, 새마을 지도자를 소각책임자로 지정 소각현장 배치 입회지도
 - 소각시에는 지역 민방위대, 의용소방대, 예비군 등이 출동할 수 있도록 연락유지
 - 소각작업은 당일 가급적으로 오전 11:00까지 완료하고, 13:00까지 불씨 정리 후 현지 철수조치
- 소각책임 공무원
 - 마을별로 소각대상지 및 금지구역을 조사하여 견지도 작성 지도
 - 마을별로 소각책임자를 지정(가급적 마을 청·장년을 소각요원으로 임명)
 - 개별 소각을 엄격히 통제하고 소각 시 산불대비 동력펌프, 등짐펌프 등 진화장비 현장배치

마. 행정사항

- 논·밭두렁 소각계획 수립
- 논·밭두렁 소각 추진사항 보고
- 군 소각 추진상황 지도 및 점검반 편성 운영

7. 산불발생요인 근원적 방지 및 산불취약지 대책

가.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통제 지정 및 등산로 폐쇄
- 입산통제 대상지
 - 최근 5년간 산림 사업지 : 조림, 육림, 벌채, 숲가꾸기 등
 - 과거 산불발생지역, 관광지, 유원지 등 입산통제가 불가피한 산림
 - 천연보호림, 대단지조림지, 명산, 희귀수목 분포지역 등 주요지역
- 입산 통제구역 관리요령
 - 단속 : 공무원, 감시원 순찰강화 및 적발 시 과태료 부과

- 홍보 : 마스크, 간판, 현수막, 앰프방송 등 최대 활용
- 입산통제구역 관리대장, 도면(1/50,000)비치

나. 산초 및 산약초 채취자 집중관리

- 채취자 명단관리 - 마을, 읍·면
- 일정기간 공동채취 유도
- 채취지역 순찰강화 및 감시원 중점배치 화기물 소지 입산저지
- 산불방지협조 서한문 발송 => 채취자, 책임자

다.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계도 및 단속강화

- 소각통제 지역
 - 산림과 연접한 100m이내 논·밭두렁 등 경지, 폐경지, 휴경지
 - 산림내 다락논·밭두렁, 밤조림지, 과수원, 초지 등
 - 기타 산불발생 위험이 극히 우려되는 지역
- 소각행위 계도 및 단속강화
 - 마을별 공동소각(책임자와 일자지정 바람없는 오전 중 실시)
 - 농산폐기물은 일정한 안전장소로 옮겨 소각토록 지도
 - 취약마을 순찰강화 및 마을방송으로 반복계도(아침저녁 2회이상)
 - 노약자, 부녀자 특별계도 : 경로당, 부녀회, 호별 방문 등으로 특별계도
 - 논·밭두렁 소각이 “병충해 방제 효과 없음”을 대대적으로 반복홍보
(개별면담, 전단부착, 반상회, 마을앰프 등으로 반복 홍보)
 - 개별소각 위반자 과태료 부과 등 의법 조치로 경각심 고취

라. 정신질환자의 방화 및 어린이 불장난 예방 등 감시철저

- 보호자에게 산불조심 의식 환기 - 화기 및 인화물질 휴대 못하도록 지도
- 읍·면별 명단파악 특별관리 - 대장작성 비치
- 보호자 책임관리 유도
- 유치원, 유아원, 각급학교 등 학교기관과 협조 어린이 계도 강화
 - 각급학교, 교육지원청 직접방문 협조요청
 - 산과 연접된 어린이 놀이장소에 모닥불 등 불장난 감시철저

마. 성묘객 및 무속행위자 실화방지계도 단속강화

- 설날, 정월대보름, 청명, 한식, 석가탄신일 등 전후 특별경계 강화
 - 성묘, 무속행위 성행지역 사전파악 집중감시

- 공원, 사찰지역 등 순찰강화 및 신도 자율적 감시체제 확립
- 공동묘지, 산신당, 약수터, 계곡 등 감시인력 집중배치
- 촛불, 향불, 예단소각 단속
- 무속행위자 입산 엄격통제

바. 군 작전 및 훈련에 따른 산불방지 특별대책 강구

- 군부대장과 산불방지대책 협의
- 사격훈련장 주변 방화선 등 산불예방시설 사전조치 및 초동진화 대책 강구
 - 산불위험경보, 주의보시 대책강구후 사격훈련
 - 사격훈련, 폭발물 처리시 진화장비, 진화인력대기 등 진화대비
- 지휘관 책임한계
 - 산불발생 원인자 처벌 및 책임한계를 규명하여 엄정처벌
- 산불피해 배상책임 사전주지
 - 피해산주에게 배상 청구절차 등 주지
- 군사훈련에 대한 대책강구
 - 산불위험시기 산림내 사격지양 협조요청
 - 유급감시원 집중배치
 - 사격장주변에 대한 방화선 설치(산불발생 및 가연물질 제거계획과 연계)
 - 지역 군부대와 유기적인 협조강화
- 산불예방활동 및 진화병력 지원 사전협의로 협조체제 유지

사. 기 타

- 산지전용, 임목벌채, 육림, 조림 등 산림내 작업시 화기취급 및 불놓기 금지
- 작업인부 사용자 동시처벌 규정 주지
 - 작업 감독자 자율적 산불조심 예방계도
- 야간순찰, 길목 지키기 등 실행 고의적 방화예방

아. 현대화된 진화장비 및 기동력 보강

- 진화차량을 통한 초동진화 체제구축
- 동력펌프에 대한 사용요령 교육 강화 및 긴급활용 체계 강구
- 보유 장비 정비점검 및 확보 계획물량 2월말까지 전량 구입
- 상호 연락이 가능하도록 무전기 활용 및 정비 철저
- 주요 산불 진화장비 확보현황

구분	계	진화차량	동력펌프	안전모	무전기	동력톱	등짐펌프	헬기수조	불갈퀴	휴대용발전기	임차헬기	기타(5종)
계	4,372	16	18	250	141	16	942	6	1,982	1	0	1,000
본청	1,825	3	5	65	45	3	150	3	550	1		1,000
의령	239	1	1	65	8	1	60	3	100			
가례	181	1	1	10	8	1	60		100			
칠곡	181	1	1	10	8	1	60		100			
대의	181	1	1	10	8	1	60		100			
화정	179	1	1	10	6	1	60		100			
용덕	189	1	1	10	6	1	70		100			
정곡	253	1	1	10	6	1	60		174			
지정	181	1	1	10	8	1	60		100			
낙서	179	1	1	10	6	1	60		100			
부림	183	1	1	10	10	1	60		100			
봉수	178	1	1	10	5	1	60		100			
공류	182	1	1	10	9	1	60		100			
유곡	241	1	1	10	8	1	62		158			

8. 산불 조기신고 및 진화체제 확립

가. 조기발견 및 조기신고 체제 확립

(1) 지상감시 및 신고체제

- 감시초소 배치인력 감시능력 배양, 산불 조기발견 감시기능 이행
- 유급감시원 사역
 - 채용조건 강화
 - 지역에서 덕망이 있는 신체건강한 자(65세 이하)
 - 퇴직공직자, 과거 산불감시원으로 적극 활용
- 명예감시관 위촉운영
 - 산림관계 단체 및 각종 민간단체(산악회, 자연보호 단체 등) 임직원과 회원, 독립가, 영농회장, 임업후계자 등으로 확대
- 마을단위 신고망 재정비

- 마을영농회장, 임업후계자 등을 중심으로 신고체제 확대
- 독립가옥, 리·반장, 마을상점, 새마을지도자, 사찰 등을 신고소로 활용
- 신고소에 신고요령, 신고전화번호 비치(군, 읍·면 신고전화번호)

○ 통신시설 보강(중계기 설치) 및 노후 통신시설 교체 및 정비

나. 진화조직 보강 및 진화능력 배양

○ 진화조직의 재정비 : 유사시 동원가능 인원으로 편성관리

○ 진화조직 : 144개대 2,780명

1) 특별진화대 : 군, 읍·면 공무원을 중심으로 편성운영

- 조 직 [군청 특별진화대 : 2개대 60명
 [읍·면 특별진화대 : 13개대 130명(읍·면별 1개대 각 10명)
- 임 무 [신속출동 체제확립
 [인명구조 및 의료활동 뒷불정리
- 운 영 : 붙임 특별진화대 조직운영“안”

2) 읍·면 진화대 : 13개대 270명(읍 30명, 면 20명)

- 읍·면단위 청·장년 민방위대원 및 의용소방대를 주축으로 공동조직
 ※공동 초동진화 지휘책임제 실시

- 조 직 [대장 : 의용소방대장(읍·면장)
 [대원 : 청·장년 민방위대원, 의용소방대원

- 훈 련 : 기간내 2회 이상(민방위훈련 병행)

 ※의용소방대원 산불진화시 출동수당 지급 => 민방위관련부서 협조

3) 리 진화대 : 116개대 2,320명(법정리별 : 1개대 각 20명씩)

- 법정리 단위로 청·장년 민방위대원 조직
- 조 직 [대장 : 현지를 잘 알고 지휘능력이 있는 자
 [대원 : 청·장년 민방위대원 등

○ 진화지휘 체계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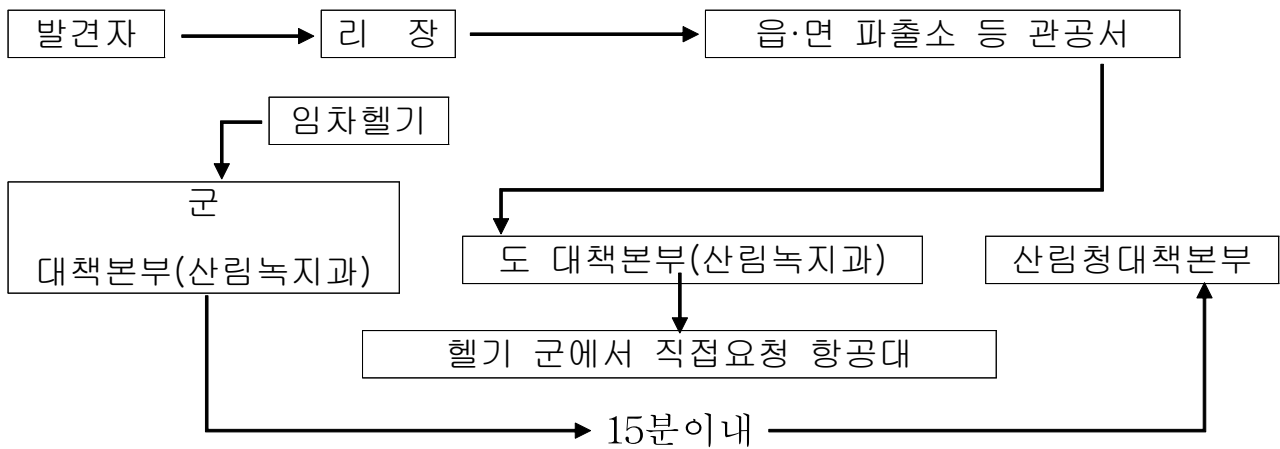
- 동원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소방기본법 제38조, 민방위기본법 제22조
- 산불진화 지휘본부 설치 : 산불대책 상황실과 연락체제 유지
- 단계별, 규모별 산불진화 책임자 지정, 통합지휘권 투여

<산불규모 및 진화시간에 따른 산불진화지휘자>

- 소형산불(5ha 미만, 8시간 이내 진화가능) : 담당과장
- 중형산불(5~30ha, 8시간 이내 진화불가능) : 군수 통합지휘
- 대형산불(30ha이상, 24시간이상 계속) : 도지사 통합지휘

다. 신고 및 진화

- 산불발견자는 불이 난 시간, 장소, 상태 등을 신속신고
(읍·면, 군 산불대책본부, 소방부서 등)



○ 지휘체계 확립

- 현장지휘본부 설치(도 대책본부와 연락체계 유지)
- ※ 현장지휘본부와 군, 도 대책본부와 연결가능한 곳을 중간 연락처로 지정 공무원 배치활용

○ 진화지휘체계

지휘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화우선순위, 조편성 등 진화계획 수립 - 인력, 장비동원 등 진화대책협의 - 헬기 필요성 판단 등에 요청 - 군, 도 대책본부 연락체계 유지
본부장: 군수 (협조 : 경찰서, 군 부대장, 소방서장)	

진화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원 및 진화, 피해지 조사 가해자 검거 - 인력, 장비 등 지휘 본부에 지원요청 - 상황보고 → 본부장
산림녹지과장 행정과장	

조장 및 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장지휘에 따라 조별 안전하게 진화작업 - 조장 무전기휴대 진화대장에게 현장상황 유기적 보고
조장 : 산림녹지과 조원 : 진화대 전원	

○ 연락체계 유지

- 현장과 연결가능한 곳에 보고책임자 상황보고
- 산림녹지과 직원 등 현장 투입된 인력중 무전기 및 휴대폰 소지자

라. 진화시 안전대책 강구

- 진화대원 투입시 조편성, 책임자 지정 및 안전수칙 교육
- 다중집합 교육시 산불진화 및 안전교육 의무화
 - 민방위교육, 예비군교육, 반상회 등
- 각종 산림사업 인부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
- 강풍, 급경사지, 좁은 골짜기 등에서 불머리쪽으로 진화대 투입금지
- 면으로된 진화복 착용(나일론 계통 착용 절대금지)

마. 진화장비 확보

- 산불진화 장비 조기구입 전진배치
- 산림부서 차량장비 적재 신속대처

바. 일몰전후 취약시간대 산불발생 방지

- 산불감시원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조정운영)
- 산불감시원 지역담당제로 일몰전후 순산확행
- 마을담당 공무원 일몰전후 마을순찰 확행

사. 헬기임차

인근 시군과 공동으로 민간헬기 임차 초동진화 및 산불예방에 대비

- 임차기간 : 2015. 11. 1. ~2016. 5. 15.(6개월간)
- 임차대수 : 1대
- 예 산 액 : 152,050천원
- 임차권역 : 의령군, 창원권

아. 산불진화 기동훈련 및 교육실시

- 대상지역
 - 산불취약지역
 - 대규모 산불피해 확산 우려지역
 - 과거 산불 자주 발생지역
 - 읍·면별 자체선정
- 산불진화 기동훈련 실시(년 1회이상)
 - 민방위훈련과 연계추진, 읍·면별 자체계획 수립 실시
- 훈련내용
 - 감시 및 신고 요령
 - 인력동원 및 장비사용 요령
 - 산불 유형별 진화요령
 - 진화시 안전사고 방지요령 교육
 - 뒷불감시요령 교육

※ 목적 : 전 군민 산불예방에 대한 인식고취와 산불진화장비 사용요령 숙지

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 목 적 : 산불초동진화 대비(위험시기 순찰)
- 인 원 수 : 30명 정도
- 인원구성 : 만20세 이상 50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남자
- 운영기간 : 2015. 10. 25.~ 2016. 5. 15.
- 장 비 : 차량 3대
 - 지휘차량 : 1대(산불진화 지휘)
 - 장비차량 : 1대(동력펌프 등 6종 200점)
 - 진화차량 : 1대(동력펌프 및 호스 800m, 물적재 1,500ℓ)

○ 임 무

- 산불계도 및 산불요인 사전제거 등 예방활동 추진
- 산불진화, 뒷불감시 및 장비의 유지관리
- 기타 산불과 관련된 현장업무의 보조

9. 산불방지 홍보

가. 대중홍보매체 적극활용

- 신문사, 방송국, 유선방송사와의 협조 유지
 - ※ 산림의 공익적 기능 및 산림재해방지의 중요성 홍보
- 우체국앞 전광판(산불예방 경각심 고취 동영상 방송)
- 유선방송 2개사(자막방송)
- 주말, 공휴일 집중홍보

나. 산불방지 캠페인

- 등산로입구, 버스터미널, 시장 등 대중왕래 장소에서 주말, 공휴일 산불조심 캠페인 실시
- 등산로 입구 : 차량가두방송, 마을앰프방송 등

다. 각종 교육을 통한 산불방지 생활화 교육실시

- 각급학교(유치원 포함) 및 가정교육을 통한 어린이 교육 (교육관서와 협조)
 - 관내 학교장 협조요청 : 24개교(초등 14, 중학 7, 고등 3)
 - 조회, 특별활동 시 산불조심 및 애립사상 교육
 - 산불조심 글짓기 및 포스터 그리기 대회
 - 등·하굣길 산림 또는 인접지에서 불장난 금지
 - 방학 중 산림 또는 연접지에서 불장난 금지
- 영농교육, 부녀회를 통한 산불조심 계도
- 예비군, 민방위대, 농민 교육훈련 시 산불방지 계도
- 반상회보, 취약지 간담회를 통한 교육

라. 다양한 홍보물을 이용한 홍보

- 차량용 산불조심 깃발, 스티커 등 제작하여 캠페인 및 민간 단체 배부로 시민 동참 유도
- 관공서, 주요지역, 도로변 등에 현수막, 입간판, 깃발 등 집중계양
- 지역신문 등 적극 활용

10. 산림연접지 산불요인 제거사업 적극 추진

가. 사업배경·사업목적·시행절차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 반상회, 리장, 새마을지도자 등을 동원 사업홍보 강화
- 11월 이후, 사업실행 전후 사업안내 현수막이나 안내판 설치
- 불법개별 소각자는 일벌백계로 단속처벌 및 처리사항 홍보 강화
<산림연접지(100m이내)의 모든 소각행위는 허가사항으로 단속 규정>
- 농산부산물은 소각 혹은 파쇄 후 사료, 퇴비 등 활용
- ※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에 의거 폐비닐 야외소각 시 벌금 200만원

나. 산림연접지 중 산불요인 사전 제거사업 대상지역 파악

- 산림연접지 중 논·밭두렁, 농산부산물 및 농산폐기물, 도로변·철로변·쓰레기장 주변의 소각 우려지역
- 읍·면에서 산림연접지 소각 우려지역을 파악하되, 마을 자체 공동소각 신청도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대상지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제거사업 전개
- 간벌·숲 가꾸기 등 산림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임내 잔존물 제거하거나 등고선과 수평방향으로 정리토록 조치

다. 2016년 2월까지 연료 사전 제거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

- 소각대상지를 조사하여 2015. 11. 1.까지 계획 수립
- 공동소각 사업은 마을행사, 국고보조사업 등을 활용하여 2016. 2. 28.까지 완결
- 가을에서 겨울까지는 강설 및 높은 연료습도로 소각이 어렵더라도 대형화 위험이 낮으므로 이 시기에 집중 추진하고 대형 산불 위험 시기는 금지
- 공익요원, 산불감시원 등 관 주도로 가용자원 적극 활용

11. 기관별 조치 및 관계부서별 협조사항

가. 기관별 조치사항

기 관 별	조 치 사 항
리,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 : 발견자, 군청, 읍·면, 파출소 등 최단거리 관공서 ◦ 이장 : 마을앰프방송, 마을주민 총동원 인솔 출동 ◦ 이장부채시 : 새마을지도자, 반장 등 대행 ◦ 인접리 : 신고 및 진화지원
읍, 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 : 군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 ◦ 특별진화대장 : 특별진화대 인솔 출동 ◦ 읍·면장 : 유관기관 협조요청 및 민방위대 읍·면진화대, 리 진화대 동원출동 ◦ 산업담당주사 : 대책본부상황실에 상황보고 및 진화지원
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직원 비상소집 - 특별진화대 출동배치 - 산불예방전문진화대 출동배치 - 경찰, 군부대 등 유관기관 협조요청 - 기동차량, 진화도구 동원명령 - 현지 지휘본부에서 진화지휘 - 도 대책본부 상황실과 보고체계유지 - 출동직원 인솔, 현장 출동 - 현장상황에 따라 헬기 지원요청 - 현지인력, 장비동원 - 진화대 재편성 및 뒷불감시 책임자 지정 ◦ 부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대책본부 상황실 근무 임무 수행 - 인력, 장비동원 등 진화지원 임무수행 ◦ 농업정책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책본부 상황실 요원 지정 후 현장출동 - 지휘관 보좌 및 진화지휘 - 현장상황 도 대책본부 상황실 수시 보고 ◦ 뒷불감시조 : 뒷불 마무리 감시 ◦ 대책본부상황실(보고담당자) : 도 대책본부 상황실과 상황유지보고

나. 관계부서와 협조

○ 실과별 협조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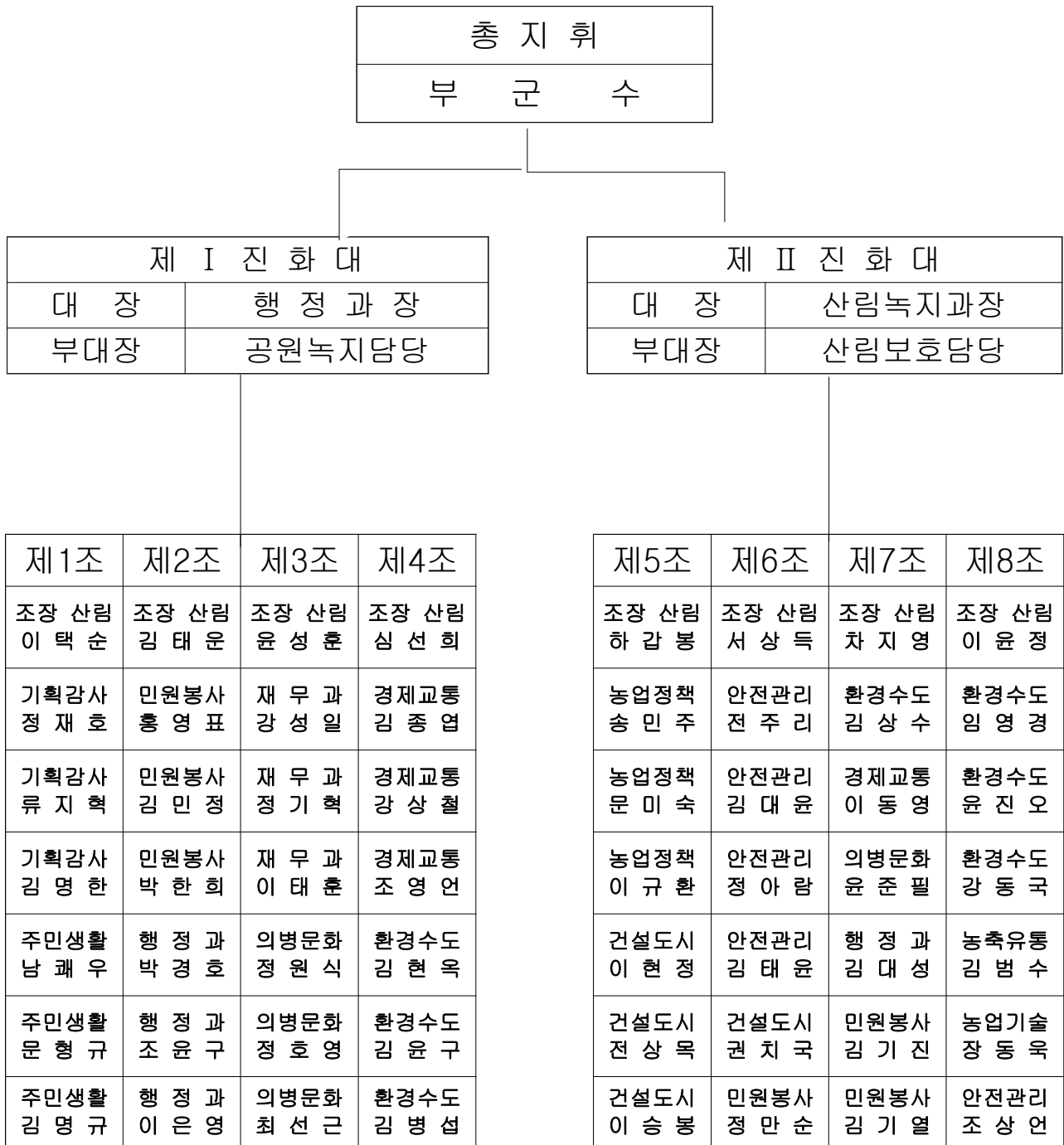
실과별	협조사항
기획감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내 소재하는 각 종교단체에 산불조심 협조 ◦ 산불조심기간 동안 군정주요시책으로 책정추진 ◦ 산불관련 소요예산 지원 등 ◦ 산불조심기간 중 신문 등 기타 언론매체를 통한 산불조심 지속적홍보 ◦ 보도 등 산불조심 특별기획 홍보
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불 발생시 직원 비상소집 ◦ 전화 교환시에 산불예방 음성안내 서비스 구축 ◦ 각종 교육시 산불방지 교육실시 추진 ◦ 대민업무 취급시 산불예방 홍보조치
재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불기간중 차량 및 기사 고정배치 ◦ 기타 차량지원 및 급식지원
산림녹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환경보전 운동과 연계 산불조심 캠페인 실시 ◦ 청소차 앰프를 통한 산불계도 방송
경제교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버스, 시내버스, 택시 등 계도협조(전단부착) ◦ 달리는 차에서 담배불 버리지 않도록 계도 ◦ 각종 공사 주민설명회시 산불예방홍보 및 주민계도 협조 ◦ 운행중 발견된 산불은 가까운 관공서로 통보협조 등
건설도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연접지의 각종 공사시 모닥불 놓는 행위금지 및 산불조심기 계약 ◦ 제방소각시 산불예방 대책수립 추진 ◦ 각종 공사 주민설명회시 산불예방홍보 및 주민계도 협조
안전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방위대를 통한 산불예방 활동 ◦ 전 민방위대원 교육 산불방지 교육훈련 ◦ 소방 대상지인 산림화재의 소방활동 적극 실시 ◦ 민방위대 및 의용소방대원 진화작업 동원 실시 ◦ 산불진화시 소방차량 신속 동원활동 적극 실시
농업기술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교육시 산불방지 교육실시 ◦ 논·밭두렁 소각으로 해충방제 “효과없음”을 계도
보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불진화시 부상자 신속치료 및 조치

○ 유관기관 단체와 협조

기간단체별	협 조 사 항
공 통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재난방지 차원에서 유관기관, 단체 등 산불방지 협의회 개최 정례화 ◦ 각 지역 유관기관 단체의 협조사항 면밀히 파악 공동대처 ◦ 책임구역 순산 공휴일 산불조심 캠페인실시 협조 등
경 찰 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불가해자, 특히 방화협의자 검거 및 검거사항 적극홍보 ◦ 무단입산자 단속 및 범법자 색출 협조 ◦ 지구대 및 도서, 오지, 초소근무자에 대한 산불조심 계도 및 신속 진화지도 ◦ 순찰차를 이용 방화우려지, 산불취약지 야간순찰 협조
교 육 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급 학교를 통한 산불조심 계도 교육 (조회, 글짓기, 그림그리기 등) ◦ 어린이불장난 금지 지도교육 및 학생을 통한 학부모 산불조심 계도 ◦ 중고생 산림연접지 산불요인 제거사업 봉사활동 인정
우 체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지대소재 통신중계소 등에서 발견한 산불 인근 기관에 통보 ◦ 집배원의 산불예방 신고 및 산불조심 계도
군 부 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불예방활동 적극 지원 ◦ 병력(예비군포함) 동원 진화지원 ◦ 군 주도 작전지역 산불 자체예방 및 책임진화 ◦ 사격장 주변 방화선설치 및 보수 등 예방대책 강구 ◦ 사격훈련중 산불발생시 조기진화 및 부대장 책임진화 ◦ 군 작전관련 산불피해 배상(보상) 철저 이행 ◦ 산불위험기간 중 사격훈련 중지(2~4월)
산 립 조 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 임직원 및 리 산림계원을 산불감시 및 진화대원으로 조직 ◦ 자율 윤번 순산 및 진화 유도
운 수 및 관광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내 방송으로 산불조심 계도 ◦ 달리는 차에서 창밖으로 담배불을 버리지 않도록 계도 ◦ 운전기사 산불예방 모니터 요원화 구축 (전단비치, 운행중 산불예방홍보, 산불발생시 신고 등)
각 산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산시 산불조심에 대한 입산자 계도 ◦ 산불조심 캠페인 참가 ◦ 산불발견시 신고 및 초동진화
유 선 방송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불조심에 따른 각종 표어를 자막방송 ◦ 어린이 불장난 금지홍보 ◦ 산림내 취사행위 금지홍보 ◦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논·밭두렁 소각행위 금지홍보

12. 대형 산불발생시 산불진화대 및 지원반 운영

- 목 적 : 대형산불 발생시 읍·면·리 진화조직과 연계 체계적 대처
- 사전준비 : 개인별 임무숙지 및 조별로 능동적 대응
- 의령군 산불특별진화대 편성표



※ 인사이동시 보충 : 후임자가 자동 승격됨

【붙임 1】

산불 발생시 행동요령

《산불발생시 인명피해 발생요인》

- 경사가 급하거나 또는 좁은 골짜기의 무리한 진화작업
- 바람이 강한 경우 돌풍에 의한 비화시 진화대 투입
- 불타기 쉬운 마른 낙엽, 가지, 나무 등이 밀집되어 있는 상태의 강한 화세의 직접 진화
- 안전수칙 등 불이행 및 특히 야간 진화작업시 무질서한 개별행동 등

《인명피해 유형》

- 강풍으로 비산화가 발생, 연기에 의한 질식사 또는 불길에 휩싸여 화상을 입고 사망하는 경우
- 굴러내리는 돌, 통나무에 의한 부상
- 진화작업 도중 부주의한 도구사용에 의한 부상 등

《진화작업시 행동요령》

- 산불 진화작업시 주의해야 할 안전수칙
 - 노약자는 진화작업에 출동 금지
 - 진화작업에 출동시는 반드시 100%면으로 된 긴소매 착용(긴팔은 살갓이 노출되는 것을 막아주고 면종류는 화학섬유에 비하여 쉽게 불에 타지 않고 불이 붙어도 달라붙지 않는다)
 - 가급적 가죽장갑이나 면장갑을 끼는 것이 손 보호에 좋다.
 - 간단한 비상식량과 마실 물을 준비한다.
- 진화현장에 도착시 안전요령
 - 경사도, 불에 탈 수 있는 연료량, 풍향, 풍속 등을 살펴본 후 불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빨리 진행할 것인가를 예측해 본다.
 - 비상시 대피장소를 선정해 둔다.
 - 진화는 불머리(하두)쪽으로 접근을 피하고 불길이 약한 측면에서부터 진화하여 점차 화세가 강한 불머리 쪽으로 좁혀간다.

- 암석지대, 부식, 낙엽층이 많은 지대는 뒷불감시를 철저히 하여 재연소 방지
※ 뒷불감시조 대기(30명이상 8시간 이상)

○ 불길에 휩싸인 비상시 대처요령

-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위를 살펴본 다음
- 불길(화세)이 가장 약한 곳(나무가 적게 서 있는 곳, 암석지대, 개울, 움푹 파인 곳, 이미 불이 지나간 곳 등)으로 대피한다.
- 대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주변에 낙엽, 마른나무 등 임산물이 적게 쌓인 곳을 골라 굽어낸 후, 손,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다.

※ 불꽃은 윗 부분이 온도가 높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지면에 낮게 엎드려야 한다.

○ 기타 안전요령

- 진화작업 중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혼자 독립되지 않도록 반드시 조별로 행동한다.
- 무전기, 호각 등 적당한 통신연락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예” 진화현장까지 뛰어가서 지쳐 기진맥진 하는 경우가 없어야 함)

【붙임 2】

산불발생시 안전사고 방지요령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원인

- 경사가 급하거나 좁은 골짜기에서 무리한 진화작업
- 바람이 강하거나 돌풍이 있을 때 산정에서 산 아래로 진화대 투입
- 불타기 쉬운 마른 낙엽, 가지, 나무 등이 밀집되어 있는 상태의 강한 불길에 근접 진화
- 안전수칙 불이행 및 특히 야간 진화작업 시 무질서한 개별행동 금지 등

인명피해 유형

- 강풍으로 불길이 급속히 번질 때 연기에 의한 질식사 또는 불길에 휩싸여 화상 등 사고를 당하는 경우
- 굴러 내리는 돌, 부러진 나무 등에 의한 부상
- 진화작업도중 장비의 사용 잘못으로 인한 부상
- 야간진화 과정에서 이동시 추락 등에 의한 사고

진화작업 시 행동요령

- 산불진화 시 진화복, 안전화,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화세에 둘러싸일 경우 방연마스크, 방염텐트 등을 착용하여 신체를 보호한다.
- 산불진화 시 2인 이상 조를 편성하여 이동하고 고립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산불진화도구 사용 시 대원간의 거리는 3m이상 적당한 간격을 유지한다.
- 한 장소에 오래 머물러 있지 말고 진화작업을 진행하면서 이동한다.
- 천연적인 방화선을 이용하면서 진화하고 계곡방향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 급경사지에서 진화작업을 할 경우에는 낙석 등에 주의한다.
- 화두 양 측면을 우선 진화하고 화세가 약해지면 화두를 진화한다.
- 위험연료에 확산되는 불씨부터 진화하고 비산된 불은 낙하 즉시 진화한다.
- 산불은 기상변화에 따라 연소속도가 빠르고 연소방향이 급변하므로 유사시 대피할 수 있는 대피로를 2곳 이상 확인한다.
- 산불을 방화선구축이 용이한 지역으로 유도하면서 위험한 임산물에 연소 확산되는 불씨를 제거한다.

- 진화조장은 대원과 항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통신망을 유지한다.
- 산불진화 중 불길에 휩싸일 경우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화세가 약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한다.
- 대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낙엽, 마른나무 등 임산물이 적게 쌓인 곳을 골라 연소물질을 긁어낸 후 방염텐트를 사용하거나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다.
- 헬기에서 소화약제 또는 물을 투하할 때에는 투하지역에서 비행로의 90° 방향으로 피하며, 얼굴은 아래로 향하고 안전모를 잡고 투하물에 의하여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물체를 단단히 잡는다.

진화대원 10대 안전수칙

- ① 기상상태와 예보를 주시하라.
 - 기상상태는 산불확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 ② 연료상태 및 지형을 확인하고 산불의 동태를 항상 주시하라.
 - 연료의 상태 및 지형은 산불의 확산 및 진행에 영향을 미치므로 산불을 예측하고 연소지역을 확인하여 동료에게 정보를 전달한다.
- ③ 산불의 동태를 토대로 모든 조치를 취하라.
 - 작업에 앞서서 산불현장과 불의 동태를 유심히 살핀다.
 - 모든 행동은 현재 및 예상되는 불의 동태를 토대로 실행한다.
- ④ 탈출로를 확보하고 모든 대원들에게 알려라.
 - 탈출로는 타버린 임산물지대, 저지대, 임산물이 없는 지역, 도로 등이 적합하고 반드시 불의 경로 밖이어야 한다.
 - 또한 불의 상부에 위치해서는 안되며, 복사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고 장비와 개개인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넓어야 한다.
 - 대원들이 위험할 경우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위험신호를 정한다.
- ⑤ 위험지역에 감시자를 급파하라.
 - 고지대나 능선에 가려진 지역의 불은 확인이 어려우므로 이러한 위험지역에 감시자를 보내 감시자가 육성 또는 무선통신으로 의사전달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 ⑥ 방심하지 말고 침착, 차분하게 판단하여 단호하게 행동하라.
 - 긴급하고 필요한 행동에 집중한다.

- 모든 가능성을 예측하고 상황을 숙고, 결정하여 행동한다.
- 만약 도움이 필요하면 즉시 요청한다.
- ⑦ 무선통신을 확인하라.
 - 조장은 모든 대원과 통신을 유지해야 하며, 산불진화지휘본부장, 지상진화대장, 헬기와 긴밀한 연락과 확인을 하여야 한다.
- ⑧ 명확한 지시를 내려라.
 - 명령을 내리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내려진 명령은 반복하여 확인하고 계속 유지되도록 한다.
- ⑨ 항상 전원통제를 유지하라.
 - 할당된 지역 내에서 진화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팀이 2개조로 활동 시 조장을 임명한다.
- ⑩ 불을 진화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진화하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
 - 대원들에게 조장의 안전교육과 선례에 따라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며, 안전이 최우선임을 명심한다.

응급처치

- 응급처치의 일반적인 원칙
 -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라도 구조자 자신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인다.
 - 신속, 침착하고 질서있게 대처한다.
 - 긴급을 요하는 환자부터 처치한다.
 - 부상 상태에 따라 의료 기관에 연락한다.
 - 쇼크 예방을 위한 처치를 한다.
 - 다음 환자에게는 경구에 아무것도 투여하면 안 된다.
(의식이 없는 환자, 복부에 심한 상처를 입은 환자, 출혈이 심한 환자)
 - 손상여부를 재차 확인한다.
 - 부상자를 옮길 때에는 부상정도에 따라 적절한 운반법을 활용한다.
- 응급처치의 구명4단계
 - 지혈
 - 기도유지
 - 상처보호
 - 쇼크방지 및 치료

산불방지 관련 처벌규정

위 반 내 용	근 거	처벌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소유의 산림이나 보안림, 유전자원보호림, 시험림·수형목 또는 보호수에 방화 	법 제71조	◦7년이상 징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소유의 산림에 방화한 자 	법 제72조	◦10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 병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항의 불이 타인소유의 산림까지 확산되어 피해 	법 제72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실로 인하여 타인소유의 산불발생 또는 자기소유의 산림을 불에 타게 한 자 	법 제72h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50조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 안에 오물 또는 쓰레기를 버린 자 	법제79조제2항제3호	1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자 	법제79조제2항제4호	1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법제79조제2항제4호	5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67조제1항에 위반하여 보고·자료제출·조사·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법제79조제2항제5호	5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산불예방에 필요한 조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제79조제3항제1호	3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54조제3항을 위반하여 화기 또는 인화·발화물질을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간 자 	법제79조제3항제2호	3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54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 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행위를 하거나 산림 안에 담배꽂초를 버린 자 	법제79조제3항제3호	3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50조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행정관서에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 	법제79조제4항제1호	1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법제79조제4항제2호	10만원

제1절 계획의 의의

1. 목적

- 가. 낙석, 붕괴 위험도로 및 교량에 대한 순찰점검 등 안전대책 강구로 안전사고 미연 방지
- 나. 사고발생 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습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의 최소화 도모

2. 기본방침

- 가. 위험도로,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및 통행제한 등 완벽한 대책 수립
- 나. 대형공사장(도로, 교량) 안전점검 및 대책 강구
- 다.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사고 대책반 편성 운영
- 라. 복구장비, 자재, 인력의 긴급 동원태세 강구
- 마. 효율적인 복구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제2절 재난관리대책

1. 재난예방대책

가. 재난관리체계 구축

- 1) 도로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완벽한 재난관리체계를 구축
- 2)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난관리체계 및 도로법에 의한 도로관리청을 감안한 관리체계 등 확립

나. 재난예방을 위한 점검 및 관리

1) 각종 법령에 규정된 안전점검의 철저한 이행

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대상 시설물

- (1) 재난위험시설 월 1회 이상, 중점관리 대상시설 반기 1회 이상 정기점검

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

- (1) 정기점검 : 반기별 1회 이상, 정밀점검 : 2년에 1회 이상

(2) 규모와 특성에 따라 1종 및 2종 시설물로 구분하여 추진

구 분	1종	2종
· 교량	· 500m이상, 특수교	· 100m이상
· 터널	· 1,000m이상	· 국도급 이상 도로의 터널 등
· 절토사면		· 수평연장 200미터 이상 (연직높이 50미터 이상)
· 옹벽		· 연장 100m이상 (지면노출 5m이상)

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1) 대상 : 시특법상 1, 2종 시설물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2) 자체점검 : 건설업자가 공사 중 매일 실시

(3) 정밀안전점검 : 1, 2종 시설물 건설공사 등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주요 공종별로 전문기관이 실시

2) 수시점검 및 특별 점검

(가) 기관별 필요하다고 판단 시 자체점검 추진

3) 취약시설물 지정관리

가)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을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관리

4) 각종 법령에 규정된 안전점검의 철저한 이행

(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대상 시설물

(1) 재난위험시설 월 1회 이상, 중점관리

다 안전점검 체계

1) 단계별 점검실시

1 단계 : 순찰책임자 지정(주 1회 이상)

2 단계 : 일상점검(분기별 1회)

3 단계 : 정기점검(년 1회)

4 단계 :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필요시)

2) 점검주기

단 계 별	점 검 방 법	점 검 기 관	점 검 주 기
제 1단계	· 수시점검	점검분담별 실시	주 1회 이상
제 2단계	· 일상점검 · 정기점검	산업담당 (개발담당)	분기별 1회
제 3단계	· 일상 및 정기 점검 시 불량교량 · 특별법상 교량일상 및 정기점검	군 건설도시과	읍·면 점검 후 5일 이내
제 4단계	· 정밀안전점검·진단	전 문 가 전문기관	불량 위험교량 판정시

3) 점 검 반

- 가) 군 총 괄 : 건설도시과장
 반 장 : 도로담당
 반 원 : 건설도시과 직원 4명
- 나) 읍·면 총 괄 : 읍·면 장
 반 장 : 산업(개발)담당
 반 원 : 산업(개발)담당 직원

다) 조 치

- (1) 위험도로, 교량에 대한 통행제한, 우회 등 안전대책 강구
(2) 대형공사장 안전점검 및 대책강구

라. 시설개선 및 안전시설 설치

- 1) 사고 취약지점 개선 및 도로안전진단 추진
가) 사고 취약지점을 선정하여 개선사업 추진
나) 교통사고 위험노선 도로안전진단 실시
다) 사고 위험구간에 대한 안전시설 보완
- 2) 노후위험시설 개선 및 성능보강
- 3)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 위험도로 개량 등

마. 안전문화 운동 추진

1)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캠페인(의령경찰서, 경제교통과)

2) 교통안전 대책 홍보

3) 교통기초질서 준수 계도

가) 제한차량 불법운행 적극 단속(이동단속반 편성운영)

나) 갓길 불법 주·정차 적극 계도(고발)→경제교통과

다) 특별수송 대책기간 경찰서와 합동 단속

4) 운수업체 안전관리 강화

가) 교통안전진단 실시

(1) 대 상 : 사고다발업체 및 대형사고 발생업체

(2) 시 기 : 연 1회

(3) 점 검 반 : 교통담당, 교통안전공단

(4) 진단내용

┌ 운전자 관리 및 후생복지시설 운영

└ 교통안전 관리, 차량관리 등 경영전반

나) 운수업체 지도점검

(1) 대상 : 군내 전 운수업체

(2) 주관 : 교통담당

(3) 점검사항

┌ 차량정비 및 점검 등 관리

└ 운전자관리, 과속방지대책, 안전교육실시 상태 등

5) 안전점검 및 재난의 날 행사 추진

가)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매년 5월 25일 재난의 날 행사실시

바. 상시 응급구조 및 구난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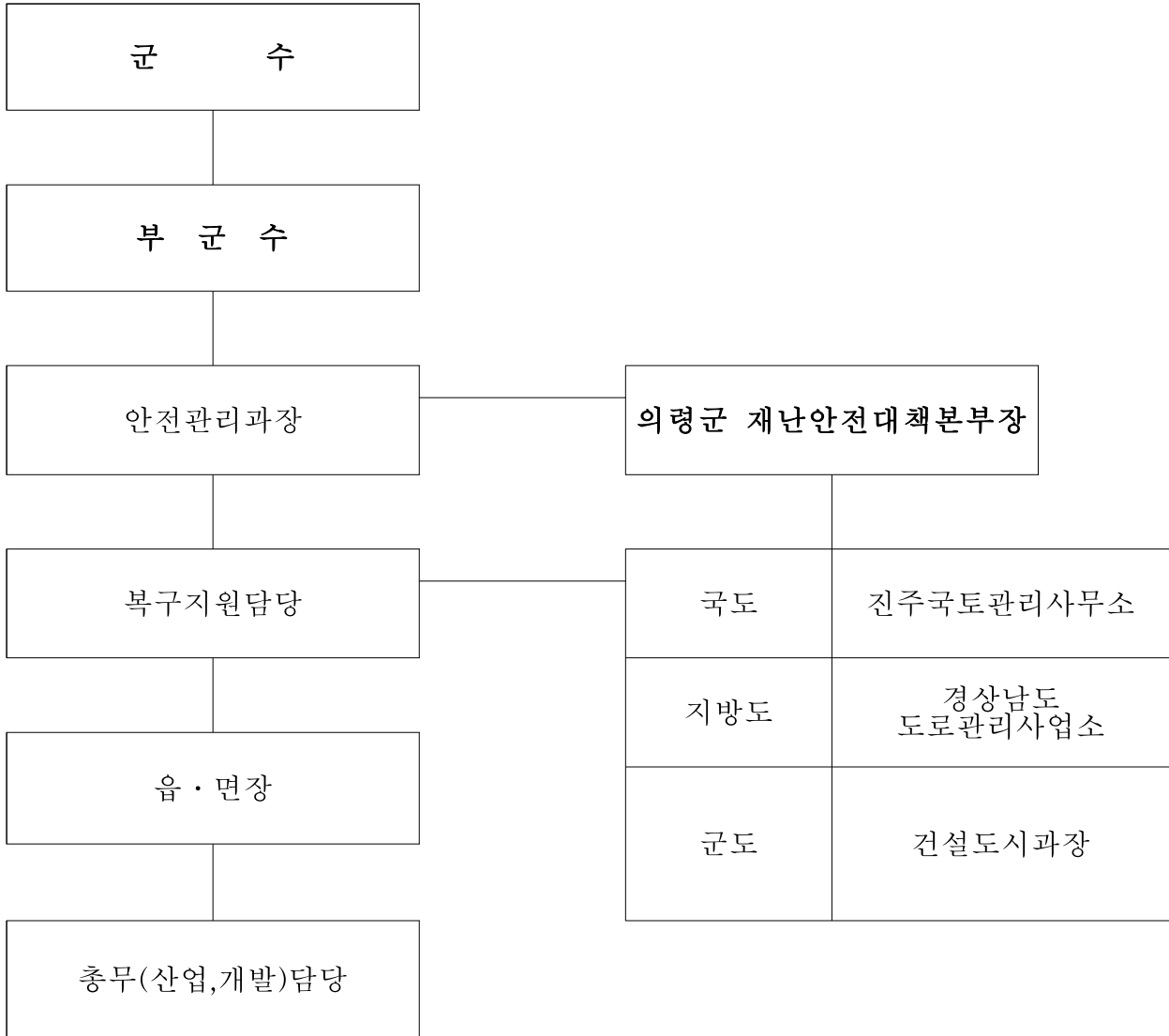
1) 인명사고 발생 시 응급구조대, 인근소방서, 군부대, 경찰서 등과 즉시 연락이 가능한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2)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병원을 지정하여 사고발생 시 신속한 환자 후송과 치료, 보상체계 등을 구축

2. 재난대비대책

가. 재난정보 관리체계

1) 재난상황 보고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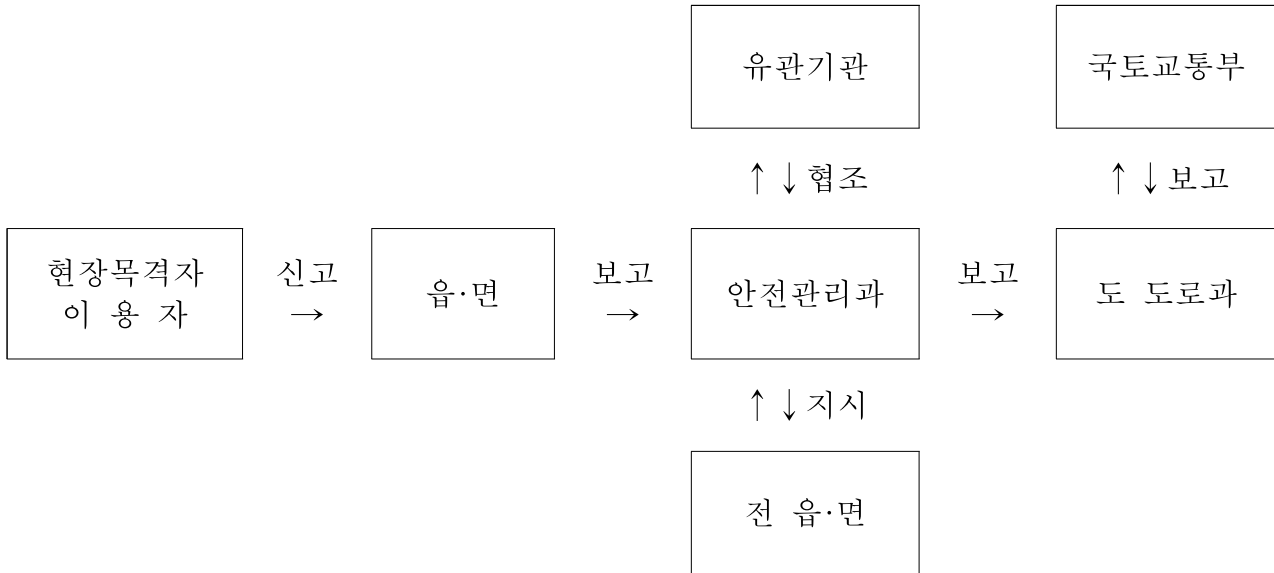
나. 자원동원계획

- 1) 긴급복구에 필요한 자재, 인력 및 장비 동원계획 수립
- 2) 우선 자체인력 장비투입, 부족 시 인근사무소 관련지자체와 상호지원 체계 구축

3. 재난대응대책

가. 재난상황 전파 및 보고체계

1) 재난발생시 아래 체계에 따라 재난상황을 전파 및 조치내용을 보고



나. 재난상황 보고내용 및 방법

1) 보고내용

- 가) 재난의 개요
- 나) 주요 조치 상황(시간대별)
- 다) 기타 지원 및 협조사항, 교통처리 상황 등

2) 보고방법

- 가) 보고수단 : FAX 또는 전화, 전산망을 이용
- 나) 보고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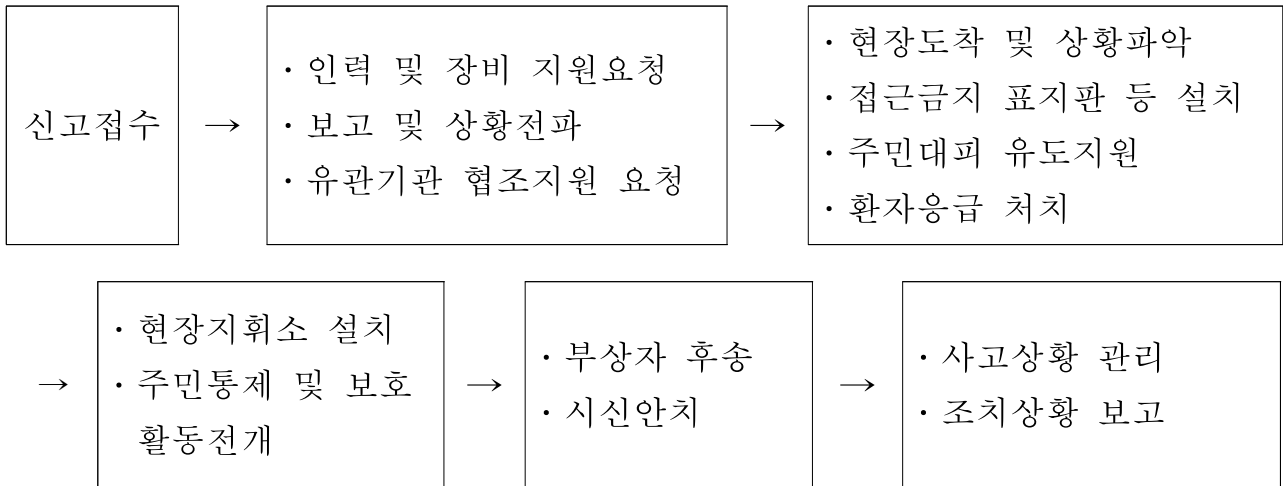
(1)정후보고, 발생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3) 보고양식

- 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식

다. 사고발생시 수습대책

1) 처리흐름도



2) 신고접수 및 초동조치

가) 신고접수

- 1) 붕괴 등 현장목격자 및 이용자
- 2) 인근지역 및 인근기관에 상황 전파
- 3) 군 및 유관기관에 사고수습지원 요청

나) 초동조치

- 1) 민방위대 긴급소집 요청, 수로원 등 인력 확보
 - 가) 직장대, 기술지원대의 사고수습 활동 전개
- 2) 구난장비 동원
 - 가) 구급차, 소방차, 도져, 그레이더, 페이로다, 덤프트럭, 기타 장비
- 3) 사고지역 통제 등 경계구역 설정
- 4) 주요지점에 교통통제소 설치운영
 - 가) 경찰, 예비군, 공무원
- 5) 인명구조 및 응급복구 등 초동대처

※ 관리책임

- 고속국도 : 한국도로공사
- 국 도 :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및 진주국도 유지건설사무소

- 지방도 : 경남도 도로과 및 도로관리사업소
- 군도, 농어촌 도로 : 군 건설도시과

4) 현장에서 조치할 사항

가) 출동 중 조치사항

- (1) 민방위대 수로원 및 각종 인력 출동소집
- (2) 구난장비 동원
- (3) 군 및 유관기관 협조지원 요청

나) 선착대 지휘보고

- (1) 사고지역 판단보고
- (2) 사망자 및 부상자 처리결과보고
- (3) 인근지역 피해예상주민 긴급대피 결과 보고

다) 지휘차량 현장도착

- (1) 사고지역 통제제한 등 경계구역 설정
- (2) 부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조치
- (3) 긴급구조 통제소 설치
- (4) 사고지역에 대한 긴급구조 실시
- (5) 사망자 처리

라. 긴급구조 및 구급체계

1) 유관기관 협조 및 이송체계

가) 인명의 긴급구조가 필요한 상황발생시 아래기관에 연락하여 협조 요청

- (1) 112경찰, 119소방구조대 및 구급대

나) 구급차의 접근이 어려운 격리지역, 고속도로 등의 인명구조 및 이송을 위해 헬기구조를 요청

- (1) 연락기관 : 중앙긴급구조본부(전화 3703-4119)에 신고

2) 사고현장 질서유지

가) 사고현장 책임기관 자체인력 우선 동원

나) 공조협의기관(경찰서, 군부대, 민방위대, 소방서 등)인력동원 긴급요청

3) 사상자구조

가) 자체인력으로 우선 긴급구조 활동 전개

나) 공조협의기관(경찰서, 군부대, 소방서, 구난기관 및 업체)에 구조인력 및

- 헬기, 구조차, 소방차 등 장비 긴급요청
- 다) 긴급구급기관에 사상자 구급 및 후송 요청

마. 사고대책본부 구성·운영

- 1) 재난규모별 비상근무체계에 따라 필요시 사고대책본부 설치·운영

바. 차량통제 및 우회조치

- 1) 부분(일부차로) 통제시
 - 가) 현장 질서유지를 위한 인원배치(신호수 등)
 - 나) 차량통제 안내간판 및 웬스, 전광등 등 차량 유도시설 설치
 - 다) 의령경찰서에 차량통제 협조 요청
- 2) 전면통제 시에는 우회도로 지정 운영
 - 가) 현장 질서유지를 위한 인원배치(신호수 등)
 - 나) 의령경찰서에 차량통제 협조 요청
 - 다) 우회도로 시·종점에 안내간판 설치
 - <우회도로 지정내용, 복구 및 정상소통 예정일 등을 기재>
 - 라) 언론기관에 우회도로 지정에 대한 주민홍보 및 보도요청

사. 홍보·보도대책

- 1) 긴급구조활동 상황의 보도·안내
 - 가) 취재인력 및 장비의 출입통제
 - 나) 현장대변인의 지정 운영
 - (1) 사고관련 보도사항을 스크랩, 모니터하여 사실여부 확인
 - 다) 공동취재단의 구성운영 등 언론기관에 대한 협조
- 2) 주민 홍보대책
 - 가) 주민대피, 현장접근통제, 교통통제 등 긴급한 사항 홍보 필요시에는 사고 개요 및 협조사항만 우선 보도요청
 - 나) 필요시 기관장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협조사항 등 적극홍보
 - 다) 언론의 과대보도, 오보에 대하여는 즉시 정정 보도를 요청하여 불필요한 불안감 해소

4. 재난복구대책

가. 응급복구

- 1)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응급조치 시행
 - 가) 복구장비, 인원, 자재 소요과약 및 복구방법 결정
 - 나) 전문인력 및 장비 긴급출동
 - (1) 자체 인원 장비 우선활용, 부족 시 인근사무소 및 지자체 등에 지원 요청
 - 다) 조속한 응급복구 시행
 - 라) 사고 잔재물 수거처리
 - 마) 화재·폭발 등 2차 피해 유발요인 진단 및 제거
 - 바) 유관기관에 인접지역 시설의 피해확산방지 협조요청

나. 사고원인조사

- 1) 합동조사단을 구성 현장을 조사·점검하여 사고원인 규명
 - 가) 구성 : 소관 도로관리청 담당자 및 외부전문가
 -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에 의거 1, 2종 대상시설물 중 중대한 사고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사고조사반에서 조사 실시
- 2) 정밀안전진단, 안정해석 등을 통한 항구복구 대책 수립
- 3) 증거보존 자료의 수집
 - 가) 사고원인에 관계되는 증거물을 현 상태대로 보존하고 사고 당시 상황과 복구과정 등을 사진촬영
 - 나) 필요한 경우 출입통제 등의 조치를 시행
 - 다) 공조협의기관(경찰서, 군부대, 소방서 등)에 증거물 보존 등 사고현장조사에 관한 협조지원 요청

다. 피해배상(보상) 대책

- 1) 재난발생 원인 및 피해현황 조사
 - 가) 피해상황 인명피해, 재산피해, 이재민현황 등
 - 나) 책임소재 분석배상(보상)책임자 규명
 - (1) 필요시 구상권 행사
 - 다) 배상(보상) 능력 유무 판단
- 2) 배상(보상) 기준의 설정
- 3) 피해자 배상(보상) 계획 수립
- 4) 조기협상이 되도록 적극 중재 유도

라. 항구복구

- 1) 제시된 항구복구 대책에 의거 신속 복구
- 2) 소요예산확보 및 완벽한 복구 시행
- 3) 재난발생 원인을 감안하여 재발되지 않는 구조로 복구

마. 재발방지 대책

- 1) 사고원인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설계단계, 시공단계, 유지관리단계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
- 2) 제도개선 사항 등 종합대책 마련

I. 계획의 의의

1. 목 적

가. 대규모 화재 등 재난발생에 따른 위기상황에 대비

1) 대응체계를 정립하고, 업무수행·절차 등에 관한 기본계획

나. 위기상황으로 발전하는 요인을 사전제거, 감소하기 위한 일련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활동의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

1) 화재·위험물·폭발사고 경감대책 등을 사전계획·대비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대응능력 제고로 인명·재산피해발생을 최소화

다. 화재·위험물·폭발사고 시 관련부처 등에서 협조 및 조치할 기준 제공 등

2. 재난관리대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가. 기본방향

1) 재난관리 전 과정별 목표설정과 종합적 관리체계로 전환

2) 제도정비·지도 등을 통한 대형사고 예방과 피해저감 대책 강구

3) 봄철·월동기 등 취약시기별 안전관리 강화대책 수립

4)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긴급대응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나. 추진전략

1) 국민생명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한 단계 앞선 예방활동 전개

2) 화재·위험물·폭발 등에 영향을 주는 안전 관련법령 연계관리 강화

3) 대형사고 이후 달라진 법령 엄격한 준수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4) 자율방화관리체제 구축 및 정보공유·관리감독 기능 강화

5) 종합적 상황관리 및 신속·효율적인 대응체계 확립 및 가동

6) 일사불란한 대응을 위하여 현장지휘체계와 통제권 등 강화

II. 재난관리대책

1. 재난예방대책

가.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예방 및 경계활동 강화

- 1) 대형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대형화재 취약시설 지정·관리”
 - 가) 숙박시설·병원·공장·복합건물, 판매시설 등 재선정 및 정비
 - 나) 소방·건축·가스·전기 및 NGO 등 합동검사로 종합적 안전관리
- 2) 대형피해확대가 예상되는 “소방차진입곤란지역” 관리 감독강화
 - 가) 시장·목조건물이 밀집지역, 소방용수·소방통로가 미흡한 지역 등
 - 나) 취약 지역내 소방검사·훈련실시 및 소방용수·소화기구 확보 등
- 3)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 및 위험물 제조소 등)의 분류 및 관리감독
 - 가) 건축물 :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문화재 등
 - 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위험제조소, 가스제조·저장시설 및 취급시설 등
- 4) 취약시기별·유형별 등 특별소방안전대책 수립·추진
 - 가) 월동기·봄철 및 명절 등 취약시기별 소방안전대책 계획수립
 - 나) 건축·전기 등 부서 합동 소방·방화시설 등 검사 및 단속
 - 다) 청소년수련시설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안전대책마련
- 5) 방화·테러에 의한 대형인명·재산피해 예방시설 관리감독 강화
 - 가) 소화·경보·피난 및 소방 활동 설비 등 적절한 활용방안 검토
 - 나) 사고유형별 관련기관 협력체제 및 단계별 조치계획
- 6) 전기·가스·유류 사용시설 상시점검
 - 가) 화재위험요인 사전 발굴·제거를 통한 예방 및 피해경감
- 7) 다중이용건축물의 소방시설·건축기준 준수 엄정집행·감독지도
 - 가) 소화·경보·피난시설 및 소화용수 등 안전설비 완비적용
 - 나) 내화·방화구조 건축 및 불연 마감재료 사용 준수 지도감독
 - 다) 관계자·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및 긴급피난훈련 실시 등
- 8) 소방특별조사 실명제를 통한 현장 확인 및 책임행정 강화
 - 가)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표 비치 및 실명제 카드 등 활용

※ 불량대상에 대해서는 시설완비 시까지 지속적 추적관리

나. 위험물시설 등 특별소방안전대책 추진

- 1) 대량위험물취급 화학공장 등 화재·폭발사고 방지대책 수립
 - 가) 노후 된 주요 위험물시설 특별관리 및 설비 교체·보수 적극 유도
 - 나) 자체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1) 계획·설계단계부터 기술검토 강화로 자율안전관리 지도
 - (2) 작업장소별 안전수칙 및 응급조치 절차 표지부착 등 감독지도
 - 다) 대량위험물제조소 등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관리감독 철저 이행
- 2) 대국민 안전문화 제고를 위한 소방홍보활동 지속 전개
 - (1) 각종 방송·언론매체 활용, 재난 시 국민행동요령책자 보급 등
- 3) 부서별 조치 및 협조사항

구 분	조치 및 협조사항
국민안전처	○ 소방안전종합대책 수립·운영 - 안전관리 체계·규정 정비 및 보완
의령소방서	○ 대형화재위험시설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
경제교통과	○ 에너지 공급시설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도 ○ 다중이용건축물 방화안전관리 기준 선진화
의령교육지원청	○ 소방안전교육 및 교육시설 안전관리
의병문화관광과	○ 위락·체육·노유자 시설 안전관리

2. 재난대비대책

가. 유관기관간 소방협조 및 지원체제 구축

- 1) 신속한 화재·폭발발생 경보 및 전파체계 확립
 - (1) 유관기관 합동 전방위 화재·폭발감시 및 경보체제 운영
- 2) 취약시설과 119상황실·유관기관간 소방 긴급통신망 구축
 - (1) 초고속회선을 이용한 음성·영상·데이터 정보통신망 구성 등
- 3) 재난 유관기관간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한 신고 일원화
 - (1) 재난관련 긴급신고 119일원화로 국민의 신고편익 증진

나. 현장지휘체계 강화 및 초동대응태세 확립

- 1) 화재·폭발 등 재난상황관리 철저 및 보고체계 확립
 - 가) 신속·정확한 119신고접수 및 상황관리 철저
 - 나) 재난수습단계별 재난상황 보고체계 구축
- 2) 재난유형별 대응매뉴얼 개발 및 보급
 - 가) 긴급구조 통제단 운영지침 및 표준 대응매뉴얼 등

다. 화재·위험물·폭발사고 대비 효율적 진압 등을 위한 대책 강구

- 1) 인근 지자체·소방서간 응원체계 구축 및 가동훈련
 - 가) 광역소방응원체제의 재정비 운영
 - (1) 도로여건, 출동거리, 소요시간 등을 고려 재정비
 - (2) 협정체결 기관간 실제 응원효과 판단, 응원협정 체결
 - 나) 시·도간 광역 소방력 지원을 위한 사전 지원태세 강화 등
- 2) 진압 및 구조·구급체계 구축 및 대응기술 개발
 - 가) 시장·복합영상관 등 유형별 특성에 부합하는 대비대책 강구
- 3) 화재취약지구 등 소방통로 확보로 신속한 현장대응능력 강화
 - ※ 화재경계지구, 재래시장, 주거 밀집지역, 재개발지역 등
 - 가) 이면도로 소방통로 확보훈련 및 순찰, 주민계도 활동
 - 나) 주기적인 소방차 통행훈련,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 등
- 4) 자원봉사자 등 민간단체 연계·조직화 활용방안 강구
 - 가) 훈련·통신체계의 단일화로 현장 활동 인프라 구축
 - 나) 화재·위험물·폭발의 진압·복구를 위한 동원체계 구축 및 자재 비축
- 5) 자율 소방력 강화를 위한 자위소방대 운영, 교육·훈련 등 강화
 - 다중이 밀집하는 시장,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

라. 재난대비 실효성 있는 소방교육·훈련 강화

- 1) 대형·특수재난 대비훈련의 내실화
 - 가) 시범훈련 중심에서 메시지에 의한 실제대응훈련으로 전환
 - 나) 생화학테러 등 특수재난대비 훈련 실시
 - 다) 긴급구조 대응계획 수립, 시행

2) 전문구조대원 양성을 위한 특수 교육훈련 실시

가) 유해화학물질, 방사능 유출사고 등 특수사고별 전문구조능력 배양

※ 수난구조교육훈련, 특수 항공구조훈련, 생화학테러 대응교육, 방사선 안전교육 등

3) 임무확인·대응절차 숙달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소방교육·훈련

가) 유관기관 합동 도상 및 실제훈련 실시(건물구조·접근로 등 시설물 답사)

나) 소방응원출동 훈련실시 및 능력평가(통신망, 소요시간, 통합 지휘방법 등)

4) 부서별 협조·조치사항

구 분	협조·조치사항
국민안전처	○ 대형화재위험시설 유관기관 합동 소방점검 ○ 시·도 소방안전관리업무 조정 및 지원 ○ 필요 인력·물자 동원 및 자재 비축
의령소방서	○ 대형화재위험시설 일제 안전점검 ○ 소방관서 중심 화재대응훈련 실시
보건소	○ 응급의료체계 구축(권역별 응급의료센터 지정 등)
의령경찰서	○ 소방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유지
경제교통과	○ 가스·전기·유류 안전관리체계 실태 점검
건설도시과	○ 화재복구용 동원장비 지정·관리
군부대	○ 재난구조 협력 및 지원 전담요원 육성·관리
의령교육지원청	○ 청소년 대상 소방안전교육 강화
민간단체 등	○ 재난발생 대비 생필품 비축·관리 등

3. 대응대책

가. 통합 지휘·통제체계 확립

1) 대응역량 집중을 위해 유관기관 통합 지휘체계 강화

2) 유관기관 통합작전이 가능한 군 CP개념의 지휘체계 확립

3) 유관기관 비상자원동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나.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 1) 진압활동 능력 향상을 위한 대형화재 확대방지
 - 가) 재래시장 등 대형 화재취약대상 경방관리 대책 수립
 - 나) 화재취약지역 등 소방출동로 확보 및 소방훈련 강화
 - 다) 소방출동로 확보실태를 위한 홍보활동 전개
- 2) 화재조사 전문화 및 현장대응능력 강화
 - 가) 화재조사 과학화로 대외신뢰도 제고 및 대형사고 재발방지
 - (1) 화재통계 정밀분석 및 화재피해액 산정기준 재정립 등
 - 나) 대형·특수화재 발생시 신속하고 정밀한 현장조사 등
- 3) 광역소방 응원출동체제 구축으로 소방력 운용의 효율화
 - 가) 체결기관간 실제 응원출동 훈련실시로 출동능력 제고
 - 나) 응원협정서의 재검토로 응원기관간 효율성 제고
- 4) 의용소방대 조직관리 내실화를 통한 기능의 활성화 및 강화
 - 가)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투입인력 확보
 - 나) 지역자율 소방체제의 구축 및 사기진작책 강구 등
- 5) 의무소방대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실질적인 소방력 보강
 - 가) 부족 소방력 확충으로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 나) 우수 의무소방원 선발을 위한 홍보활동 추진 등

다. 재난관련통합시스템 및 소방종합정보망 구축

- 1) 재난관련 긴급신고 119일원화 추진
 - 가) 재난유관기관간 상황전파 위한 신고 일원화 시스템 설치
※ 전기(123), 가스(0019), 환경(128), 해경(1588-0333) ⇒ '119' 일원화
 - 나) 재난유관기관간 공조통신망 구축
 - (1) 상이한 무선시스템(방식, 주파수 등)을 연계망 구축
 - (2) 현장통제관(소방관서장)의 원활한 작전지휘 및 통제지원
 - (3) 동시다발 재난사고대비 119신고전화의 전용회선 보강
 - (4) 이동전화 위치정보를 이용한 119신고체계 구축

라. 효율적 화재·위험물·폭발사고 진압 및 구조구급활동 전개

1) 신속·정확한 상황보고·전파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가) 화재·폭발발생 및 피해상황 신속 보고 및 전파

나) 지자체·소방서 중심의 긴급구조·화재진압 지휘통제

2) 신속·정확한 상황관리 및 지휘로 재난대응능력 강화

가) 신속한 현장 장악과 진압을 위한 정보수집 활동전개

(1) 상황실 및 현장지휘관의 신속한 재난상황 파악

(2) 재난수습단계별 재난상황 보고체제 구축

※ 현 장 → 소방서 → 소방본부 → 중앙긴급구조상황실

나) 체계적·효율적인 화재진압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다) 현장지휘소 설치·운영 및 표준현장지휘체계 적용

(1) 현장 참여 조직·인력 통합운영시스템 운영

라) 라이프 라인(전기·가스·통신 등) 긴급 확보

마) 협조·지원기관 역할 분담 후 현장 활동 신속·정확한 전개

바) 인근 지자체·소방서 및 민간구호단체 응원 및 협조 요청

3) 화재·위험물·폭발사고 유형별·사안별 전문 진압·구조요원 신속 배치

가) 인명구조 헬기, 고가사다리차 등 현장 요구 동원장비 투입

마. 응급구조·구호체계 신속 가동

1) 신속한 피난유도 및 인명구조·구급활동 최우선 실시

2) 응급의료전문기관 상호 협조체제 구축 및 신속 가동

가) 관내 종합병원·응급 의료센터 등 핫라인 설치·운영

나) 현장 의료구호소 설치 및 후방 의료기관 운영

3) 민간 구조단체와 합동으로 긴급 구조·구급활동 전개

가) 긴급구조기관 요원·자원봉사자에 대한 임무부여 및 관리

4) 이재민 수용·급식 등 생필품 구호, 의연물품 접수 및 배분

바. 재난종류별 소방장비 집중관리시스템 구축

1) 필요장비 집중관리로 대형재난 시 신속대처

가) 기자재 운송차 : 재해에 알맞은 컨테이너 운반차량

나) 컨테이너 : 재해에 필요한 기자재 유사 용도별로 구분 수납

- (1) 대형화재용(2기) : 공기호흡기, 고발포기, 엑스커베이터 등
- (2) 화학재해용(1기) : 제염샤워텐트, 중화제살포기, 생물화학 보호복 등
- (3) 집단구급사고용(2기) : 간이침대, 에어텐트, 들 것, 모포 등
- (4) 도시수해용(2기) : 수중펌프, 간이 물 흡수대, 고무보트 등
- (5) 산림화재용(2기) : 간이저수조, 고압산림펌프, 수관 등

2) 지역특성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2개소 지정배치·운영

사. 부서별 협조·조치사항

구 분	협조·조치사항
국 민 안 전 처	○ 중앙안전대책본부 운영
중 앙 소 방 본 부	○ 중앙 긴급 구조통제단 운영 - 응급구조·구급체계 및 화재진압 총괄 - 피해상황 보고·전파(중앙긴급구조상황실) ○ 유관기관에 필요사항 협조·지원 요청
의 령 소 방 서	○ 지역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 긴급 구조 통제단 및 현장지휘본부 운영 - 피해 및 구조상황 보고(합동종합상황실) ○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활동 시행
보 건 소 대 한 적 십 자 사	○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 사상자 후송·치료 ○ 의연금품 접수 및 배분(대한적십자사) - 이재민 구호
의 령 경 찰 서	○ 현장 출입통제선 설치 및 주민 긴급대피 ○ 인명구조 및 사망자 신원파악 등
전기안전공사경남지사 가스안전공사경남지사 경 제 교 통 과	○ 전기·가스·유류분야 전문인력·장비 긴급출동 - 2차 피해 방지대책 강구
건 설 도 시 과	○ 응급복구를 위한 중장비 및 조작요원 지원 ○ 시설물 안전진단 기술 지원
군 부 대	○ 응급구조·시설복구 전담요원 및 장비 지원
K T 의 령 지 사	○ 화재현장 보고 및 지휘통신망 가설
의 병 문 화 관 광 과	○ 화재피해 및 진압·수습상황 대국민 브리핑
민 간 단 체 등	○ 인명구조·구급 및 이재민 구호 - 사상자 후송 및 수용·급식·생필품 지원

4. 복구대책

가. 수습 및 복구

- 1) 민·관·군 합동 피해복구 통합지원체제 운영
 - 가) 사상자 후송·치료, 이재민 수용 등 구호 조치
 - 나) 전기·가스·통신 등 라이프 라인 우선적 복구 조치
 - ※ 수습조치는 재난관리체계에 의하여 처리
- 2) 대한적십자사, 민간 자원봉사자 등 민·관 합동 구호 조치
 - 가) 1339, 지역응급대책협의회, 응급의학 전문의 활용 응급 의료
 - 나) 급식·급수, 생필품 구호, 의연물품·의연금 접수 및 배분
- 3) 각종 안전조치 및 화재·위험물·폭발 잔재물 수거 처리
 - 가) 전기·가스 등 공급차단 및 시설붕괴 긴급진단
- 4) 신속·정확한 피해조사에 의거 복구지원계획 수립
 - 가) 화재보험 연계 피해주민 지원대책 개발
- 5) 긴급구조 및 복구활동상황 보도 및 주민 홍보

나. 신속한 화재·위험물·폭발원인 및 피해 조사

- 1) 단계별 화재대응활동 평가 및 평가결과 환류
- 2) 화재원인 철저 규명을 통해 유사사고 재발 방지대책 강구
 - 가) 유관기관 합동 조사체계 구축 및 특별조사팀 운영
 - 나) 주요화재 사례분석을 통한 항구적 사후 관리시스템 개발

다. 유사 사고 방지 등을 위한 대책 강구

- 1) 사고원인 분석자료 등을 근거로 한 관련부처 합동 대책회의
 - 가) 우선적 조치사항 협의 및 제도적 정비·보완 대책방안 등

I. 계획의 의의

1. 목 적

- 가. 재난발생위험이 높은 시설 및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재난 발생 요인 사전해소
 - 1) 대상 시설의 일제조사 지정·관리, 응급조치
- 나. 사고수습의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 확립
- 다. 각종 홍보를 통한 안전문화의식 제고

2. 기본방침

- 가. 건축물 붕괴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처 능력 강화
- 나. 주요 취약건물에 대한 사전 지도·점검 등 예찰 활동 강화
- 다.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관리체계 확립
- 라. 다중이용 건축물(의료시설, 숙박시설 등)의 중점관리
- 마.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 국민 홍보활동 강화

II. 재난예방대책

1. 재난예방을 위한 점검 및 관리

가.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 1)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및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장·단기 해소 대책 추진, 취약시기별 중점 안전점검 실시로 재난예방 능력제고
 - 가) 중점관리대상시설(년 2회), 재난위험시설(월 1회) 정기점검 실시
 - 2) 재난위험시설 등 지정을 위한 일제조사 실시
 - 가) 기간 : 매년 9~11월(년 1회)
- ※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수시조사 및 안전점검 실시

나) 지정대상 및 관리부서

구 분		대 상 범 위	종 류	관리부서	
공공업무시설		◦ 연면적 1,000㎡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재무과 시설관리사업소 농업정책과 보건소	
공 동 주 택	아 파 트	◦ 5층 이상 ~ 15층 이하		안전관리과	
	연립주택	◦ 연면적 660㎡초과, 4층 이하			
중 소 형 건 축 물	판매시설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7호가,나,다목에 따른 판매시설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비디오·게임제공업 등)	경제교통과 의병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숙박시설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로 해당시설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일반숙박시설, 관광호텔, 휴양콘도미니엄, 고시원 등	민원봉사과	
	운수시설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8호가목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 「항만법」 제2조제5호나,다목의 여객이용시설 또는 종합여객시설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	경제교통과	
	문 화 및 집 회 시 설	공연장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5호가목에 따른 공연장으로 연면적 500㎡ 이상 ~ 5,000㎡ 미만	연회관, 음악당, 서어커스장 등	의병문화관광과 시설관리사업소
		집회장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5호나목에 따른 집회장으로 연면적 500㎡ 이상 ~ 5,000㎡ 미만	예식장, 마권장외발매소, 회의장 등	의병문화관광과 안전관리과
		관람장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5호다목에 따른 관람장으로 바닥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경마장, 경륜장, 자동차 경기장 등	의병문화관광과 시설관리사업소
		전시장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으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박람회장,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등	의병문화관광과 농축산유통과
	의료시설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9호가목에 따른 병원으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등	보건소	
	장례식장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8호 장례식장으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장례식장	주민생활 지원실	

나. 다중이용건축물 안전점검

- 1) 점검시기 : 설날, 추석절 대비 (년 2회이상)
- 2) 점검대상 : 다중이용건축물 24개소
- 3) 점 검 자 : 해당실과 관련업무 담당자
- 4) 점검내용
 - 가) 건축물 주요 구조부 균열, 파손 등 구조안전여부
 - 나) 관리주체의 건축물관리 의무사항 이행여부
 - 다) 점검 및 진단결과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등 조치이행 여부

다. 공동주택

- 1) 점검시기 : 연 2회 (2월 해빙기, 6월 우기)
- 2) 점검대상 : 공동주택 13개소
- 3) 점 검 자 : 건축행정업무 담당자
- 4) 점검내용
 - 가) 건축물 주요 구조부 균열, 파손 등 구조안전여부
 - 나) 난방시설, 유류저장시설, 펌프실, 승강기, 인양기 등 관리실태
 - 다) 석축, 옹벽, 법면 등 안전여부

라. 점검 후 조치계획

- 1) 보수·보강이 필요한 건축물을 관리주체·건축주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 보수·보강토록 조치
- 2) 구조상 불안전이 해소될 때까지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 추적 관리하고 수시 순찰 강화
- 3) 점검결과 건축물의 구조상 불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사용제한, 사용금지, 철거 등 조치

마.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대상 시설물 자체점검에 대한 관리

- 1) 점검 시기
 - ┌ 정기점검 : 반기별 1회이상
 - └ 정밀점검 : 등급별 실시
 - └ 긴급점검 : 필요시

2) 규모에 따라 1종 및 2종 시설물로 구분하여 추진

구 분	1 종	2 종
대상시설	해당없음	-상하수도, 교량 10종

2. 불법건축물 단속 강화

가. 시 기 : 연중

나. 단속대상 : 모든 건축물, 특히 무허가 건축물, 무단용도변경 및 위법 시공 건축물 등

다. 점검방법

- 1) 중점 점검사항을 토대로 점검 실시
- 2) 건축주 및 시설물 관리자 입회점검
- 3) 실적위주의 현장점검보다는 위법예방을 위한 행정지도

라. 점검결과 조치

- 1) 무단용도변경 및 관리상태 불량 등 건축법과 주차장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건축주 시정조치
- 2) 시정명령 불이행시 주차장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건축법 제83조 및 주차장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
- 3) 시공중인 불법건축물 또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공익상 위해할 경우 즉시 행정대집행 조치
- 4) 기타 관계법령 위반 시 관련부서 협조 시정촉구

※ 경미한 사항은 건축주 및 관리자에게 개선방향 설명 현지 시정조치

마. 사전예방 단속활동 철저로 신규발생 억제

- 1) 사용승인 후 1년간 특별관리기간 설정운용(분기 1회 이상 점검)
- 2) 사용승인 1년 후부터는 정기점검(반기 1회 이상 점검)
- 3) 점검반 조치사항 : 관련법에 의거 시정명령 및 고발

Ⅲ. 재난대비대책

1. 취약시설물 일제조사 및 긴급 안전점검 실시

- 가. 시 기 : 해빙기, 태풍발생시, 집중호우발생시 등
- 나. 점검대상 : 축대, 옹벽, 지반침하 등
- 다. 점검방법 : 읍·면별 담당자 지정 점검반 편성 운영

2. 자원동원계획

- 가. 긴급복구에 필요한 자재, 인력 및 장비 동원계획 수립
 - 1) 인력동원 : 5870부대 5대대
 - 나) 장비동원

(단위:대)

계	굴삭기	덤프트럭	기 중 기	비 고
6	3	2	1	

- ◆ 굴삭기 : 의령합동중기(의령), 동부중기(부림)
- ◆ 덤 프 : 의령덤프연합(의령), 동부중기(부림)
- ◆ 기중기 : 의령크레인(가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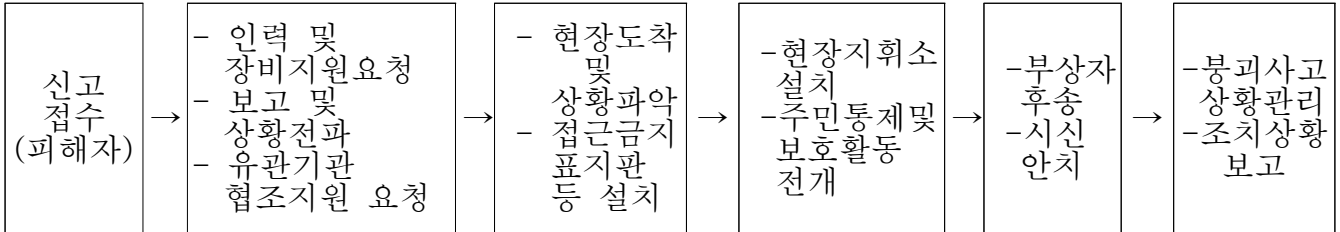
3. 상시 응급구조 및 구난체계 구축

- 가. 인명사고 발생 시 응급구조대, 인근소방서, 군부대, 경찰서 등과 즉시 연락이 가능한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나.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병원을 지정하여 사고발생 시 신속한 환자 후송과 치료, 보상체계 등을 구축
 - 1) 지정현황 : 의령병원, 의령사랑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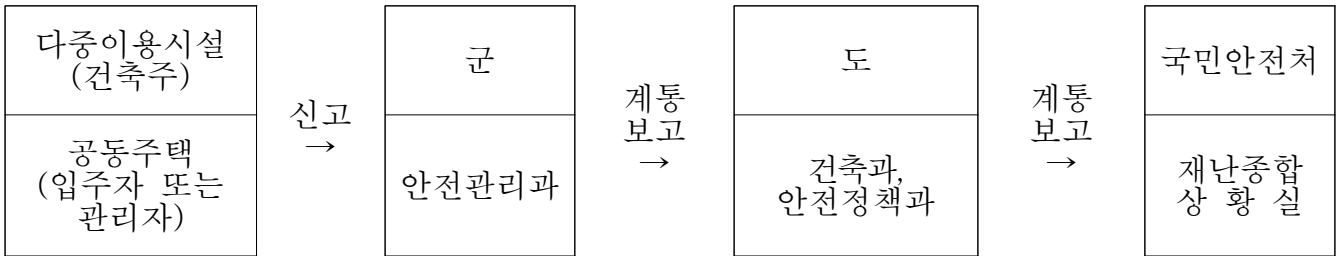
IV. 재난대응대책

1. 사고수습 및 신고, 보고 체계도 정비

가. 처리흐름도



나. 신고 및 보고 체계도



2. 재난구조 구난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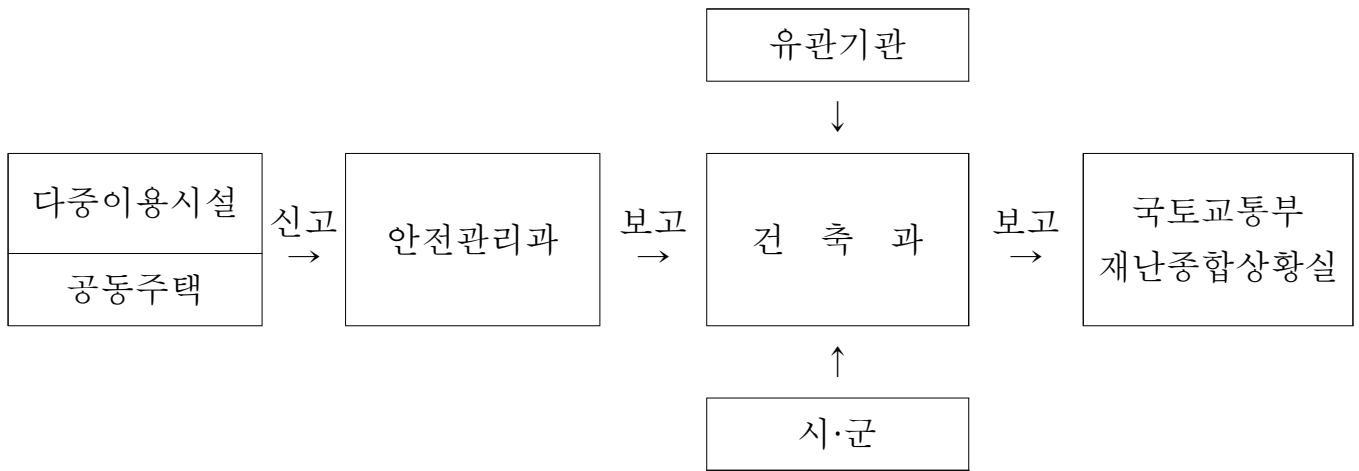
가. 신고접수

- 1) 발생보고 및 유관기관 전파
- 2) 붕괴건물 입주민 및 이용자 전파
- 3) 인근지역 및 인근기관에 상황전파
- 4) 군 및 유관기관에 사고수습 지원요청

나. 구조구난조치

- 1) 민방위대 긴급소집요청 : 직장대, 기술지원대의 사고수습활동 전개
- 2) 구난장비 동원 : 구급차, 소방차, 크레인, 백호우, 차압기, 유압잭, 덤프 트럭, 로우더
- 3) 사고지역 통제제한 등 경계구역 설정
- 4) 주요지점에 교통통제 설치운영 : 경찰, 예비군, 공무원 등
- 5) 인명구조 및 응급복구 등 초동대처

다. 상황전파체계



라. 현장출동 및 수습

1) 출동중 조치사항

- 가) 민방위대 및 각종 인력 출동조치
- 나) 구난장비 동원
- 다) 군 및 유관기관 협조 지원요청

2) 선착대 지휘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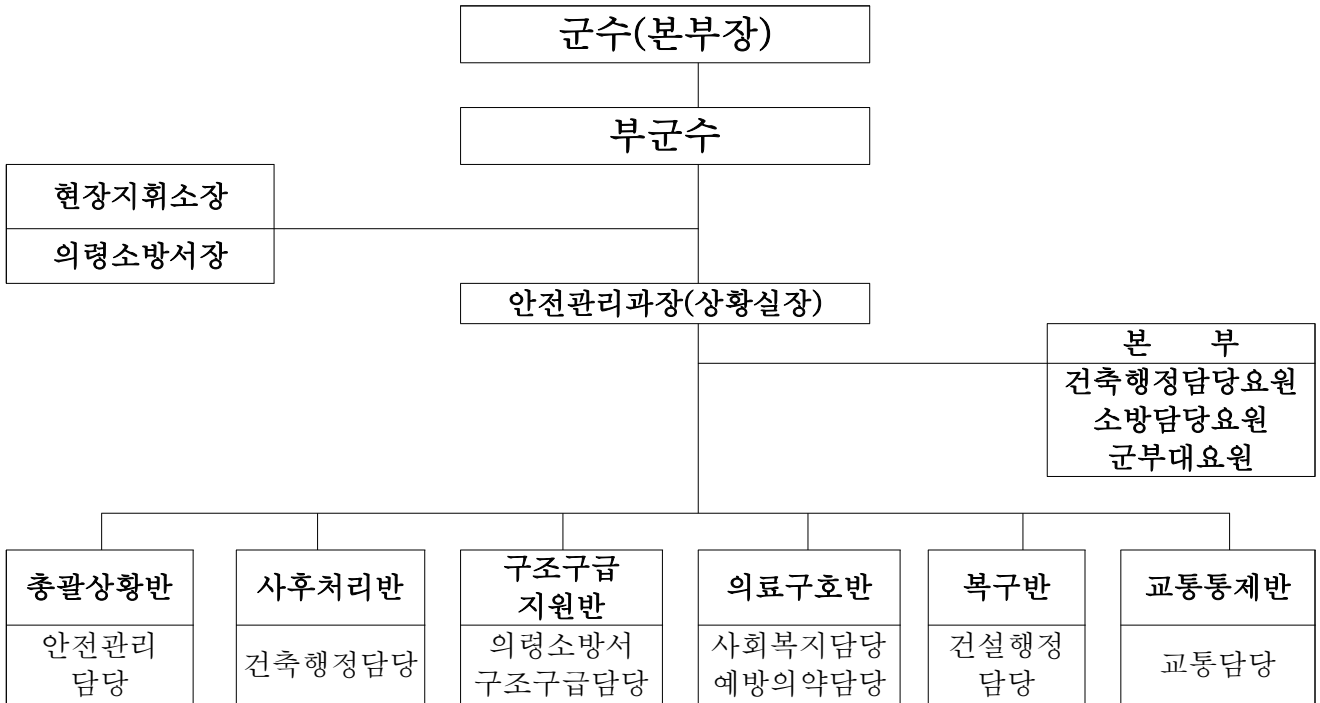
- 가) 사고지역 판단보고
- 나) 사상자 및 부상자 처리결과 보고
- 다) 인근지역 피해 예상주민 긴급대피 결과보고

3) 지휘차량 현장도착

- 가) 사고지역 통행제한 등 경계구역설정
- 나) 부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조치
- 다) 긴급구조 통제소 설치
- 라) 사고지역에 대한 긴급구조 실시
- 마) 사망자 처리

3.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가. 구성



나. 반별 임무

반 별	조 치 계 획
총괄상황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대책본부 운영 ○ 수습대책수립, 시행 ○ 종합상황보고 및 전파
사후처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원인 및 피해상황 조사 분석 ○ 각종 민원사항 접수처리 ○ 종합상황보고 및 전파
구조구급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환자 발생에 따른 인명구조 활동 ○ 환자응급처리
의료구호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응급진료소 설치운영 ○ 환자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후송
복 구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 및 업체 동원계획 수립, 시행 ○ 분야별 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실시
교통통제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지역 교통소통 및 통제대책 시행 ○ 사고지역 경비 및 질서유지

V. 복구대책

1. 피해시설에 대한 복구대책 추진

가. 구호대책 추진

- 1) 사상자 병원 분산수용 및 신원파악, 사망자 장례지원 및 부상자 관리 등
- 2) 기존수용시설 활용 및 임시수용시설 확보, 생활 필수시설 설치
- 3) 응급구호용품 긴급활동 및 급식조치, 방역소독

나. 현장주변 등 질서유지와 교통대책

- 1) 사고현장, 후송병원, 주요통행로 주변 원활한 교통로 확보
- 2) 보도진 등에 의한 인명구조, 긴급복구 지연사태 예방
- 3) 대중교통 노선의 조정 및 교통소통대책 마련

다. 피해조사 및 응급복구

- 1) 피해시설 응급복구 추진, 2차 피해 유발요인 진단 및 제거
-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교통, 통신, 상하수도, 전기, 가스시설 등 우선 응급 복구
- 3) 합동조사반 편성, 사고원인, 피해내용, 조사 및 항구복구대책 추진

라. 항구복구대책

-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피해시설에 대하여 복구계획 수립
- 2) 피해에 대한 정확한 조사 및 원인 분석으로 향후 유사사고 예방이 되도록 복구
- 3) 공공시설일 경우 : 관련 주무부서와 유관 기관간 합동추진
(예산확보대책 강구 : 국비, 지방비 등)
- 4) 민간시설 : 소유자 복구 능력별, 다각적인 복구대책 강구
※ 민간시설에 대한 수습·복구와 관련한 지원방안 검토

I. 계획의 기본방향

1. 목 적

가.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고 만약의 사고에 신속 대처할 수 있는 대응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오염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2. 추진방침

사 고 관 리 체 계 강 화

- 사고의 예방 → 사고발생 요인의 근원적 제거
- 발생사고의 조기발견 → 입체적 감시체계 구축
- 신속수습체계 구축 →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 확립



중 점 추 진 과 제

- 재난유형별 사고예방대책 강구
- 계절별 특성에 맞는 사고예방대책 강구
- 오염사고 조기발견을 위한 입체적 감시체계 구축
- 재난위험시설 지정·관리 및 안전점검 실시
- 관계기관간 비상연락체계 구축·운영
- 기관별 방제장비 확보 및 사고대비 관련기관 합동방제훈련 실시



환경오염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II. 재난관리 체계구축

1. 재난유형 및 관리부서

가. 재난유형

- 1) 유류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사고
- 2) 대기오염물질 유출사고
- 3) 중금속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의 공공수역 유출사고
- 4) 물환경변화 등에 의한 물고기 폐사사고
- 5) 환경기초시설에서의 오·폐수 유출사고
- 6) 유독물질 유출사고
- 7) 수돗물 오염사고 등

나. 관리부서

1) 환경수도과

- | | |
|-----------------------------|--------|
| 가) 총괄 관리 : | 환경관리담당 |
| 나) 대기, 수질, 토양오염, 유해화학물질사고 : | 환경지도담당 |
| 다) 폐기물사고 : | 환경지도담당 |
| 라) 상수도사고 : | 상수도담당 |
| 마) 하수도사고 : | 하수도담당 |

※ 기타사고는 사고유형에 따라 업무담당 부서에서 주관

2. 재난예방대책 추진

환경오염사고 우려시설·지역·물질 등에 대한 사전점검과 특별관리를 통하여 사고발생 요인의 근원적 차단

가. 재난유형별 관리대책 수립·추진

1) 대기오염사고 예방대책

가) 사고가 우려되는 대기배출업소에 대한 관리 철저

- (1) 적색사업장 및 민원유발업소 등 문제사업장에 대하여는 제조공정,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발생량, 피해예상지역 등 자료를 전산화하여 관리
-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적정한 운영에 의한 오염행위 중점 단속

- 나) 물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자체 안전점검 실시
 - (1) 업소별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발생량, 처리방법 및 응급처치 요령 등을 파악 비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실시후 그 결과를 기록유지
 - (2) 배출(방지)시설에 대한 유해물질의 유출 및 정상가동여부 상시 확인
 - (3)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자가 종업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2)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 가) 업체별, 업종별로 사용품목, 폐수발생량, 처리실태 등을 정밀조사하여 자료를 분석, 문제업소에 대한 중점관리 실시
 - (1) 지역별·수계별로 업체현황을 분석·정리하여 전산화 관리
 - 나) 수질오염물질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차단시설(방류벽, 턱, 저류조 등) 설치
 - (1) 맨홀 등 외부 유출구는 가급적 저장시설과 먼 곳에 설치
 - 다) 관련시설 자체 안전점검 정례화 및 준수사항 이행실태 철저히 관리
 - (1) 유해물질 취급·저장시설, 이송관, 유입·배출구에 대하여 월1회 이상 이상유무 점검 실시, 그 내용을 기록 유지
 - (2)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업원에 대하여 관리자가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토록 지도·감독
 - 라) 유류유출 우려 관련시설 관리강화 및 관련자 안전교육 실시
 - (1) 유류취급업소 등의 유류보관·이송·사용·판매시설 등 관리 철저히
 - (2) 유류관련협회 등을 통하여 유류차량 운전자, 유류시설 관리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홍보 실시
 - 마) 수질오염사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 하수구와 상수원 상류지역 하천으로 흘러드는 하수배출구 등에 예방대책 강구
- 3) 물환경변화에 의한 물고기 폐사사고 예방대책
 - 가) 퇴적물의 하천 유입방지 및 퇴적된 오염물질의 제거 실시
 - (1) 하수구·맨홀 내 퇴적물 제거, 실개천 정화작업을 실시하여 강우 시 하천으로 유입되는 퇴적물 양을 최소화
 - (2) 오염물질 배출업소 사업장 바닥 및 도로의 청소 실시
 - 나) 과거 물고기 폐사지점 및 폐사우려지역에 대하여 초기 강우에 대비 하상퇴적물 제거 등 중점적인 하천정화작업 실시

- (1) 하천의 물막힘 현상이나 정체된 수역이 없도록 하천을 정비
- 4) 축산분야 오염사고 예방대책
 - 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 (1) 재난위험시설 등 지정을 위한 일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등급별로 관리
 - (2) 노후, 부식이 잘되는 배관설비 등 취약시설에 대한 보수 및 점검
 - (3) 구조물의 균열 및 침하여부 등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 (4) 운영요원에 대한 운전교육 강화 및 자동제어 장치에 대한 이상유무 수시 확인 관리
 - (5) 정전에 대비한 자가 발전기 또는 인입선 이중설치 및 모터펌프, 브로와 등 고장에 대비한 예비 장비 확보 등
 - (6) 특히, 해빙기 및 장마철 대비 시설물 안전대책 수립 추진
 - 나)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 (1) 문제시설에 대해서는 카드화 관리 및 담당자 지정 추진
 - (2) 연말연시, 명절, 연휴기간 등 취약시기 사고 우려업소 집중감시 등 관리강화
 - (3) 가축분뇨 등이 강우에 씻겨 유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오염물질 지하침투 방지시설, 외부유출방지시설 등 점검 철저
- 5) 폐기물처리시설, 마을하수도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서의 사고예방 대책
 - 가) 노후·부식이 잘되는 배관설비 등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보수
 - 나) 구조물의 균열·침하여부 등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
 - 다) 운영요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및 자동제어 장치에 대한 이상 유무를 수시로 확인
 - 라) 정전에 대비하여 자가 발전기 또는 인입선의 2중설치 및 모터펌 등 고장에 대비한 예비 장비 확보
- 6) 유해화학물질 운송 및 안전관리대책
 - 가) 유독물 영업자 안전교육 강화
 - (1) 유독물 취급업소(사용·운반)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강화
 - ※ 우리군 유독물 취급사업장 : 1개소(동일제지-의령읍)

- 나) 유독물 취급업소 대표자 및 책임부서장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여 자율적으로 자체 안전관리를 강화
- 다) 취약시기 유독물 취급시설 지도점검 강화
- 라) 장마철, 동절기, 갈수기 수질오염행위 특별점검 등과 병행하여 사고대비물질 및 유독물취급시설에 대한 합동점검 실시
- 마) 사고우려 취약업소 책임공무원제 운영
- 바) 사고우려 취약업소별 책임공무원을 지정하여 문제점 개선시까지 중점관리
- 사) 유독물 운반차량 안전관리
 - (1) 유독물 운반차량 정비강화 및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 (2) 운반중 사고에 대비한 방제장비 및 방제요령카드 비치
- 아) 연간 2,000톤이상 유독물 취급업소 및 취급제한유독물 취급업소의 자체 안전진단계획 수립·시행여부 관리

7) 상수원 관리강화

- 가) 상수원 오염원 관리
 - (1)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 오염물질과 유해물질로부터 보호
 - ※ 우리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대상 : 우곡정수장
- 나) 상수원 관리
 - (1) 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 확보
 - (2) 상수원 오염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

나. 계절별 특성에 맞는 재난예방대책 수립·추진

- 1) 갈수기(12 ~ 익년 4월) : 환경수도과에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 가) 사고우려 오염원에 대한 감시단속 실시
 - 나) 하천감시활동 강화
 - 다) 해빙기(3~4월)에 유독물·유류·유기용제 저장탱크 및 환경기초 시설의 붕괴 및 균열 등으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병행 추진
- 2) 장마철(6~7월) : 오·폐수처리장·분뇨·축산폐수처리장 등 시설물의 안전대책 수립 추진
 - 가) 폐수다량배출업소, 유해물질·유기용제 사용업소 등 사고 취약업소에 대하여 중점단속 실시

- 3) 연말연시, 설날, 추석 연휴기간 등 취약시기에 사고우려 업소에 대하여 집중감시 등 단속강화

다. 오염사고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하천감시체계 구축·운영

- 1) 공공감시체계에 의한 입체적 하천감시
 - 가) 수질감시초소 설치, 공익요원 배치로 육상감시기능 강화
- 2) 초경량 항공기 이용 감시기능 체계 확립
 - 가) 낙동강환경감시대 및 항공지대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긴급 상황 발생시 신속히 통보 되도록 조치
- 3) 수질측정망을 이용한 감시체계의 효율적 운영
 - 가) 측정망 운영
 - (1) 낙동강환경관리청 : 3개소(의령천, 정암철교, 지정면 성산)
 - (2) 보건환경연구원 : 1개소(신반천)
 - (3) 환경수도과 : 5개소(의령천, 유곡천, 봉수천, 서암·벽계저수지)
 - 나) 수질측정결과 특이사항 발생감지 시 즉시 오염원 추적 등 원인규명과 오염 방제를 실시하는 등 긴밀하게 대응하여 피해확산을 방지
- 4) 민간자율 감시체계에 의한 하천감시
 - 가) 하천주변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상점·양식장·식당 등에 종사하고 있는 자 중, 환경보전의식이 투철한 자를 「하천감시 모니터 요원」으로 지정하여 하천관찰·감시업무 수행
 - 나) 공공기관, 민간봉사단체, 기업체, 각급학교, 군부대 등 하천감시 업무수행 능력이 있거나, 하천감시를 희망하는 기관·단체를 책임 감시자로 선정하여 자율 감시체계에 의한 하천감시

라. 재난위험시설 등 지정·관리

- 1) 재난위험시설 등 지정을 위한 일제조사
 - 가) 조사대상
 - (1) 환경오염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사고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환경관련시설
 - 나) 조사시기 : 년 1회(필요시 수시조사)
 - 다) 조사방법 : 재난관리총괄부서 또는 주관부서 직접조사
 - (1) 시설물 관리부서(민간시설의 경우 지도·감독부서)에서 분야별로 현지조사

라) 조사결과의 정리

- (1) 시설물의 상태를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시설물 평가 기준에 따라 A~E의 5개 등급으로 평가하여 A~C급은 중점 관리 대상 시설로, D~E급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
- (2) 중점관리대상 : 위험요소는 있으나 현재는 문제가 없는 상태
- (3) 재난위험시설 : 긴급히 보수·보강 등을 요하는 상태

구 분	등 급	상 태
중점관리 대상시설	A 급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으며 정기점검 요하는 시설
	B 급	경미한 손상이 있으나 양호한 상태로 간단한 보수로
	C 급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상태로 일부시설 대체 요
재난위험 시 설	D 급	주요부재의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으로 긴급한 보수 요
	E 급	안정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로 시설물 사용금지 및 개축 요

마) 우리군 환경재난 위험시설 현황

- (1) 환경기초시설 : 6개소(동동·부림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하수종말 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우곡정수장)
 - (2) 배 출 업 소 : 1개소(동일제지(주) 의령공장)
- 2) 장·단기 위험성 제거계획 수립·시행
- 가) 총괄적인 장기(5년)계획과 단기(1년)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
- (1) 세부 정비·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 (2) 재원 확보대책 등 포함
- 나) 단위 시설물별로 위험해소를 위한 지역별 계획 수립
- (1) 지역내 환경분야 재난 위험시설(지역)에 대한 “지역별 종합계획” 수립
- 다) 공공시설은 연차별 보수·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여 보수·정비 추진(예산편성시기에 맞춰 연도별 종합계획 수립완료)
- 라) 민간소유시설은 재정투자계획에 의한 장·단기 정비계획 추진과 조속한 보수·보강이 이루어지도록 관계법상의 조치와 함께 강력한 행정지도 및 지원방안을 강구
- 3)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검사 실시

가) 재난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원칙

(1) 대상시설 :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 대상시설

(2) 점검종류 및 주기

(가) 정기점검 : 재난위험시설(월 1회), 중점관리 대상시설(반기 1회)

(3) 수시점검 :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4) 실시주체

(가)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하거나 안전진단 전문기관(또는 전문가)의 협조 하에 실시

(5) 주요 점검내용(방법)

(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에 의한 일상점검 수준 준용

(6) 점검결과 관리

(가) 환경분야 재난위험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카드에 점검결과와 안전 조치사항 등 기록유지

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1) 대상시설(법제 2조제2호)

가) 2종시설물 : 지방상수도 및 부대시설,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매립 시설(매립용적 20만 m^3 이상~40만 m^3 미만)

2) 점검 종류별 주기

가) 일상점검 : 분기별 1회 이상

나) 정기점검 : 2년 1회 이상

다) 긴급점검 : 필요시

3) 실시방법

가) 각 환경분야 재난위험시설(지역) 및 중점관리 대상시설(지역)별로 개별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되

나) 재난관리법시행령에 의한 점검을 병행 실시

바. 안전문화운동추진 등

1) 환경오염사고 예방교육(민간자율 하천감시요원 등) 언론매체 등을 통한 사고예방 홍보 등

2) 환경신문고 활성화 등으로 오염사고 문화 정착

가) 오염사고 포상금제도 시행 및 우수신고자 표창

3. 재난대비 대책의 추진

가. 관계기관 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 1) 물 관련기관 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매분기 1회 이상 변동사항을 점검 보완

나. 비상급수대책 강구

- 1) 정수장별로 수질오염사고에 따른 급수 중단 사고에 대비하여 단계별 급수대책 수립

2) 재난발생시 취·정수장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강구

가) 취수장

- (1) 매 시간대별 시료채취 및 수질분석
- (2) 분말활성탄, 이산화염소 등 비상약품 투입

나) 정수장

- (1) 오염물질 유입시 정수처리 대책 강구
- (2) 배수지 및 정수시설 용량 증대방안 강구

3) 재난발생시 긴급 식수원 확보 및 생활용수 공급

가) 유희정호 또는 농업용관정 등 기존관정을 최대한 이용 용수공급

나) 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비상급수시설, 인근정수장, 간이상수도, 전용상수도 등을 활용하여 생활용수 공급

다) 농업용수, 공업용수, 발전용수 등 다른 수리시설을 일시 전용

라) 소방서, 군부대, 민간단체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비상급수를 위한 시설장비 및 인력 확보

마) 먹는 샘물 업체의 협조를 받아 샘물 공급

다. 오·폐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사고대비 대책 강구

- 1) 오·폐수처리시설의 중계펌프시설, **차집관리** 등 실태 정기점검

가)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기술진단 후 시설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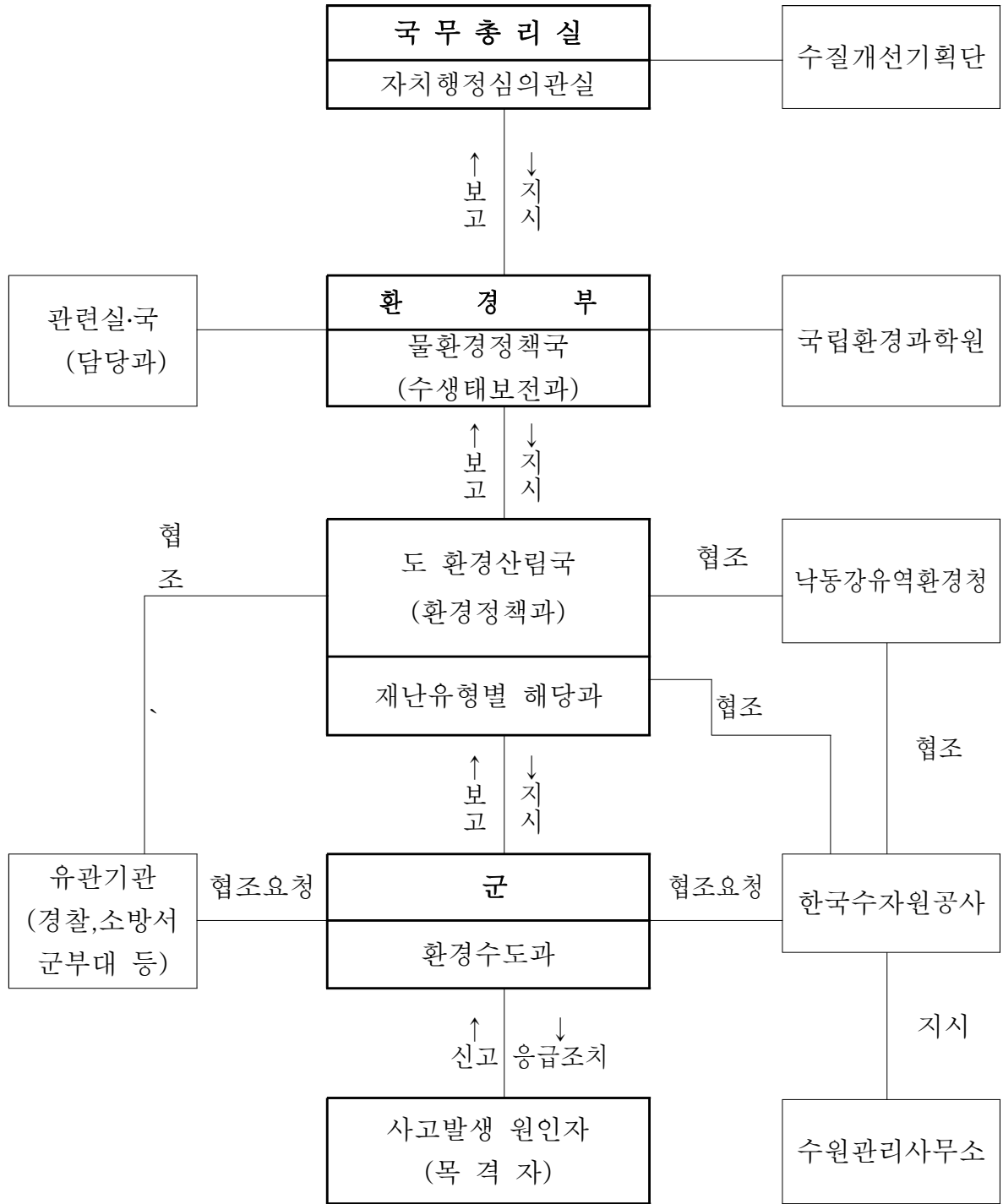
- 2) 모타펌프 등의 고장에 대비한 예비장비 확보 및 정전에 대비하여 자가 발전기 또는 인입선의 이중 설치

4. 재난의 수습대책

가. 재난발생보고 및 지휘체계 구축

- 1)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난관리 보고체계에 따라 즉시 보고
- 2) 보고내용은 6하원칙에 의거 작성하되 수질오염사고의 경우 하류 지역의 취·정수장과의 거리 및 영향여부를 필히 기재
- 3) 보고는 징후보고, 발생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로 구분하여 FAX 또는 전화로 신속히 보고
 - 가) 징후보고 : 사고발생의 징후가 보이거나 예상되는 경우에 그 경위와 원인, 향후전망, 대책 등을 보고
 - 나) 발생보고 : 사고발생 즉시 사고 상황·수습상황 등을 보고
 - 다) 중간보고 : 상황진전에 따라 사고원인, 피해상황, 수습계획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사항, 지원 요청사항 등을 보고
 - 라) 최종보고 : 사고를 완전히 수습한 후, 수습상황과 유관기관과의 공조사항 및 문제점·대책

<보고 및 지휘체계>



※ 야간은 재난상황실 및 당직책임자가 보고임무 수행

나. 재난수습체계구축

1) 환경오염사고수습대책본부 구성

가)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준하여

나) 설치시기

- 1) 시·도 또는 시·군 지역에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때에 사고의 예방 및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

다) 설치장소 : 군 환경수도과

라) 구 성

- 1) 본부장 : 군 수
- 2) 차 장 : 부군수
- 3) 총괄담당관 : 환경수도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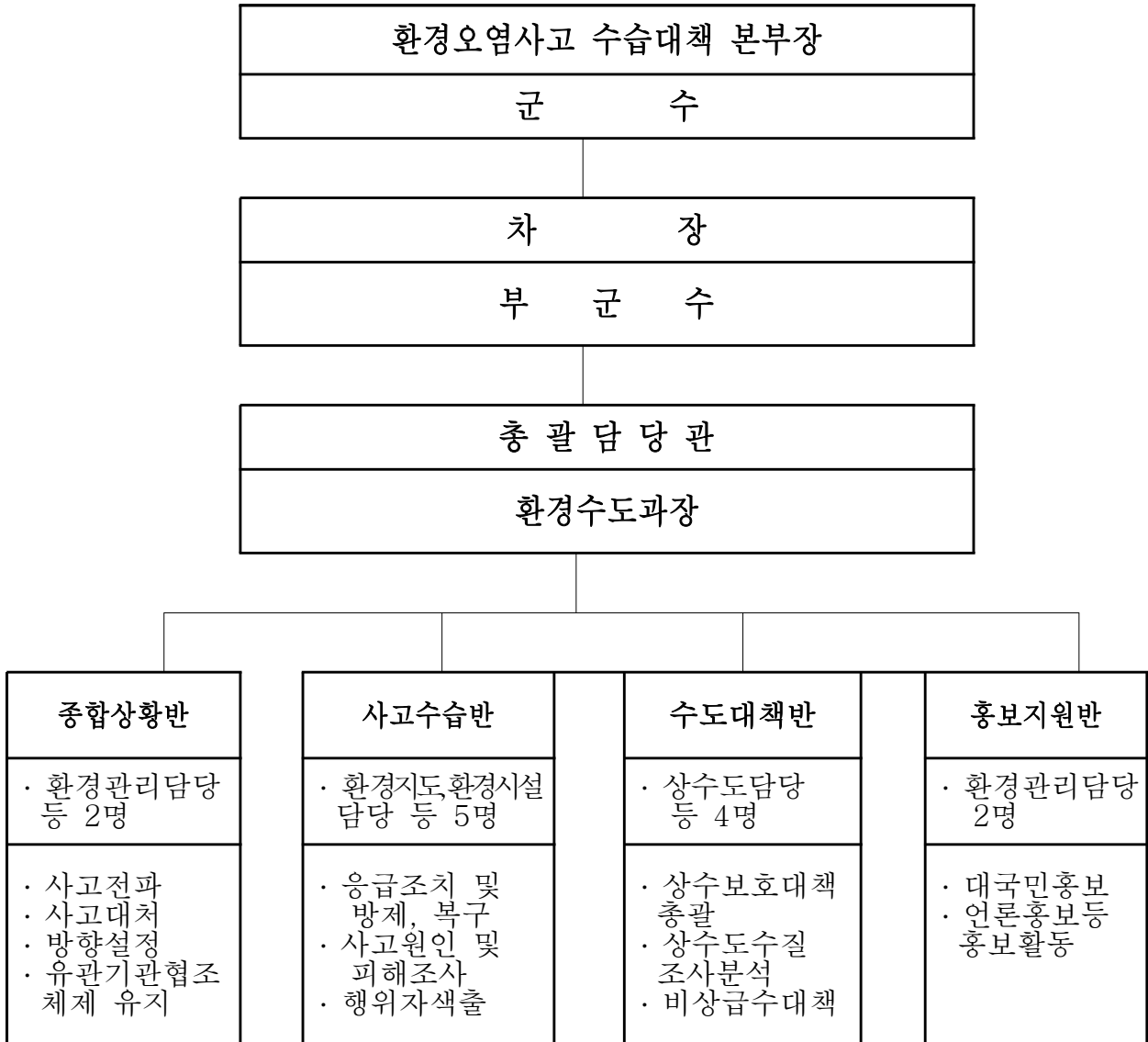
마) 기 능

- 1) 당해지역 환경오염사고 예방·수습 및 복구에 관한 업무총괄
- 2) 당해 지방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나 기타 필요한 업무협조 요청
- 3) 사고의 수습에 필요한 기능별 실무반 설치·운영 등

바) 운 영

- 1) 사고발생 접수 즉시 계통보고(상황실장)하여 대책본부 설치 운영
- 2) 대책본부는 재난유형별 소관과에 설치운영

사) 환경오염사고 수습대책본부 편성



※ 측정 분석 및 환경조사는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다. 사고수습대책 강구

1) 방제장비 확보 및 지원체계 구축

가) 부분별 사업계획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설·장비·물자 확보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적기에 확보하여 환경오염사고 예방에 대비

나) 관내 하천현황 등을 감안하여 기관별 방제장비 확보·비치

(1) 방제장비는 하천에 인접한 수질감시초소 등에 분산 비치하여 사고발생시 신속히 투입되도록 조치

다) 군부대, 소방서, 경찰서, 방제관련협회, 방제전문회사 등 유관기관
에서 지원 가능한 인력 및 방제장비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사고 시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조체계 구축

라) 유류 다량사용업소 등에 대하여도 사고를 대비한 방제장비 확보
유도 및 종업원에 대한 방제장비 사용요령 교육실시

2) 방제훈련 실시

가) 사고유형별로 실제와 유사한 가상 시나리오를 수질오염사고 가상
방제 훈련 반기 1회 이상 실시

(1) 기업체, 민간단체,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 많은 인원을 참관토록
하여 훈련 효과 제고

1. 현 황

- 2016년 시행 건설사업장
 - 위 치 : 의령읍 등 13개 읍·면
 - 기 간 : 2016. 1. 1.~ 2016. 12. 31.(1년간)

2. 추진방침

- 건설사업장 재해예방 및 피해 최소화
-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완벽한 대책 수립

3. 안전관리대책

가. 예방대책

- 점검시기 : 수시 실시
- 점 검 자 : 군, 공사감독관

나. 단계별 점검실시

① 1단계 : 일상점검(수시)

- 관내 건설사업장 수시 순찰 및 점검
- 건설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계도

② 2단계 : 정기점검(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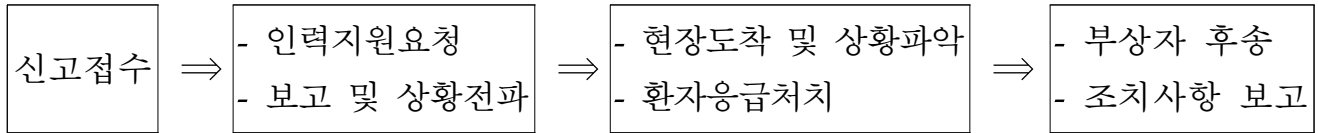
- 재난발생 위험이 높아 관리가 필요한 현장에 대해 집중 점검
- 사고 위험구간에 대한 안전시설 점검 및 보완

- 재난대비 관련기관 비상연락 체계 구축
 - 시설물 담당 비상연락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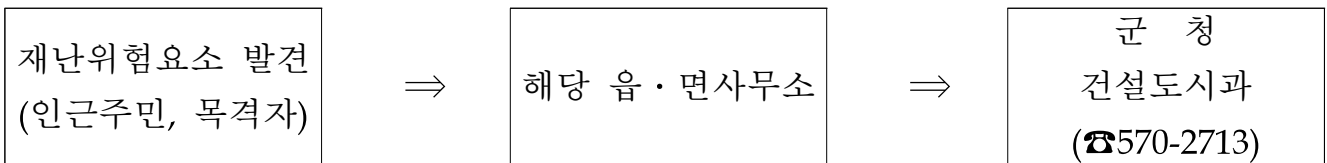
구 분	직 위	성 명	연 락 처
건설도시과	과 장	남기주	055-570-2029
	도로담당	박석중	055-570-2711
	담 당 자	박소정	055-570-2713

다. 대응대책

○ 재난대응처리 흐름도



○ 신고 및 보고체계도



○ 신고접수 및 초동조치

1) 신고접수

- 읍·면 사무소 및 군청 직원

2) 초동조치

- 응급환자 발생시 119 구급차 출동요청
- 구급차 장비·약품 구비 신속출동 대처

3) 상황전파

- 조치사항 보고

라. 복구대책

○ 사고 조기수습 대책 강구

- 재난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사고원인, 피해상황, 책임소재 등 과학적 피해조사
-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신속·정확한 사고수습

○ 피해시설 복구 및 정비대책 수립

- 제시된 항구복구 대책에 의거 신속 복구
- 소요예산확보 및 완벽한 복구 시행
- 재난발생 원인을 감안하여 재발되지 않는 구조로 피해시설 복구

제7절 에너지(전기,가스,석유)

I. 계획의 의의

1. 목적

태풍·풍수해, 지진 등 자연재해와 화재·폭발 등 인적재난으로부터 전기·유류·가스 등 에너지시설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재난발생시 효율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2. 재난관리대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가. 기본방향

- 1) 전기·유류·가스분야 재난사고 발생의 저감
- 2) 현장중심의 재난대응능력 향상
- 3) 재난관리업무의 내실화 추진

나. 추진전략

- 1) 예방위주의 재난관리로 에너지시설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 ※ 재난 취약시기별 안전관리 강화대책 추진
- 2) 신속한 상황파악 및 긴급 대응능력 제고
- 3)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계도활동 강화

II. 재난관리대책

<전기분야>

1. 재난예방대책

가. 기본방침

- 가) 전기사고 방지를 위한 근무태세 확립 및 근원적 사고방지 대책강구
- 나) 과학적이고 주기적인 안전검사로 전기사고 사전방지와 정전지역 극소화
- 다)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강화 - 한국전력공사 의령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남지역본부, 의령소방서 등

나. 안전관리대상

시 설 명	소 재 지	최고전압 (KV)	변전용량 (KVA)	근무 인원	전화번호
의령변전소	의령군 대의면 천곡리 산 130 번지	345	340,000	12	702-1042

다. 전기사고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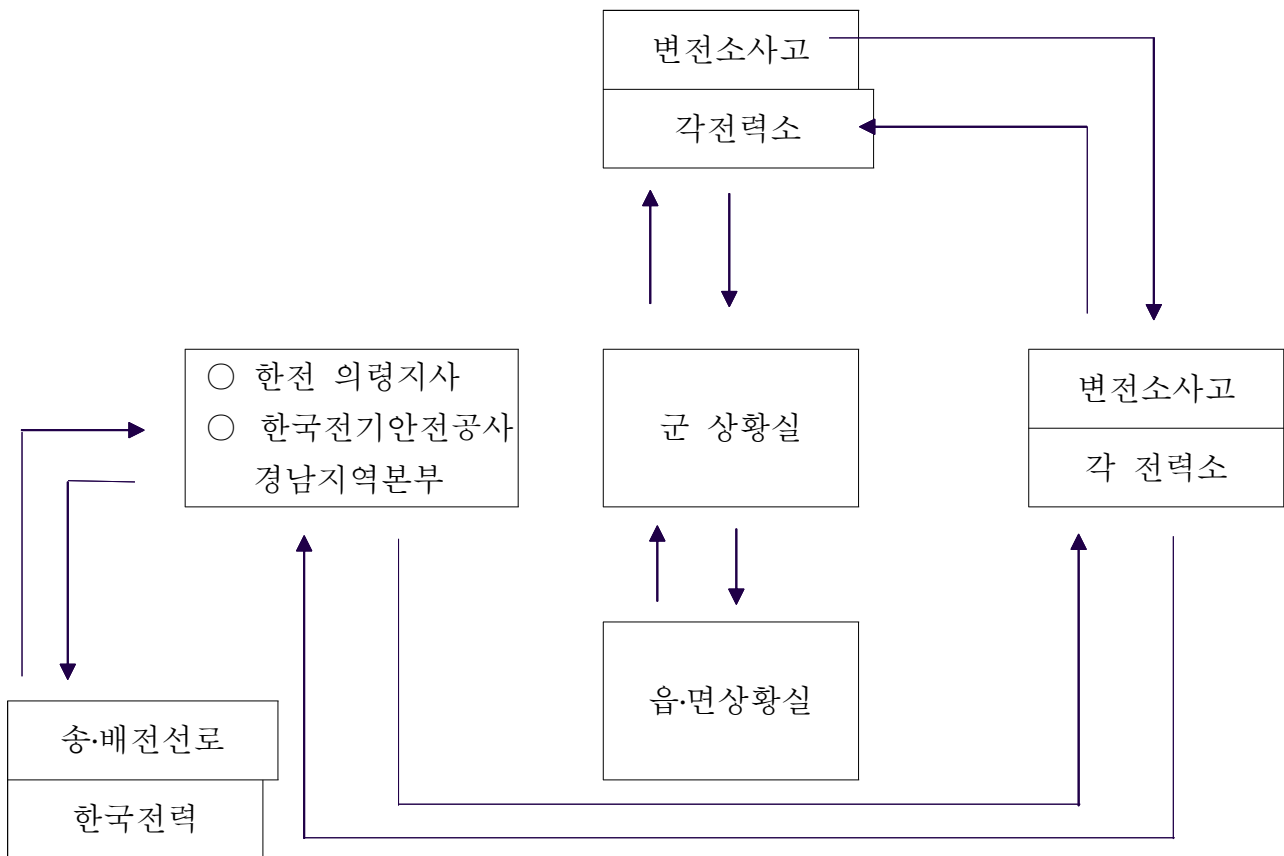
- 1) 발전소 붕괴로 인명과 재산피해 발생 시
- 2) 전력소 사고로 전력공급이 장기간 불가능 시
- 3) 송·배전 선로 단선으로 24시간 이내 복구 불가능 시

라. 안전점검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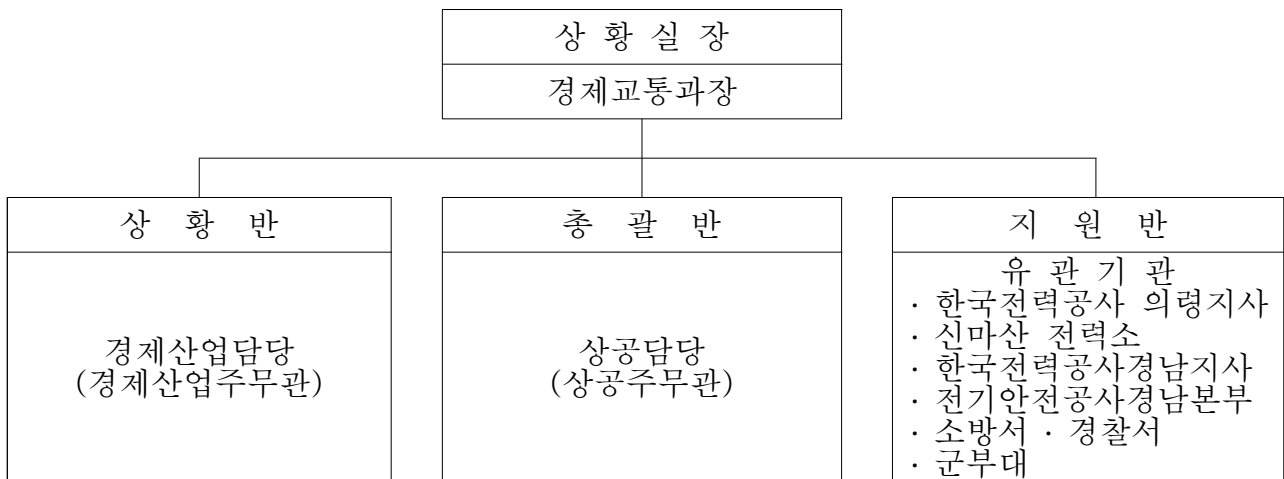
부 서 별	세 부 실 천 사 항	협조부서
경제교통과	1. 취약지 실태조사 - 전기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 예비기자재 확보사항 - 복구장비 보유실태 및 응급복구반 운영상태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남지역본부
한국전력 공 사 의령지사	2. 전기설비 ○ 한전계통 발·변전소 - 자체 안전 점검팀 운영 ○ 한전계통 송·배전선로 -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순회점검 실시	
경제교통과	3. 신뢰성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점검 ○ 점검시기 : 매년 1회 이상 ○ 점검대상 : 전 전기설비 중 위험요인 취약설비 ○ 점 검 자 : 합동 ○ 점검내용 - 전기설비 기술기준 적합 여부 - 예비기자재 확보사항 - 복구장비 보유실태 및 응급 복구반 운영상태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남지역본부 한국전력공사 의령지사

2. 재난대비대책

- 1) 재난상황 관리체계의 구축
- 2) 유관기관 비상연락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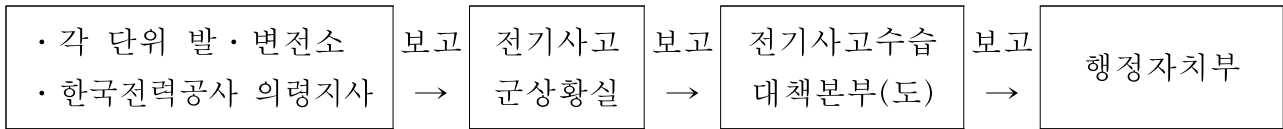
3) 전기사고 예방 상황실 운영



3. 재난대응대책

가. 재난상황 전파 및 보고체계

1) 신고 및 수습 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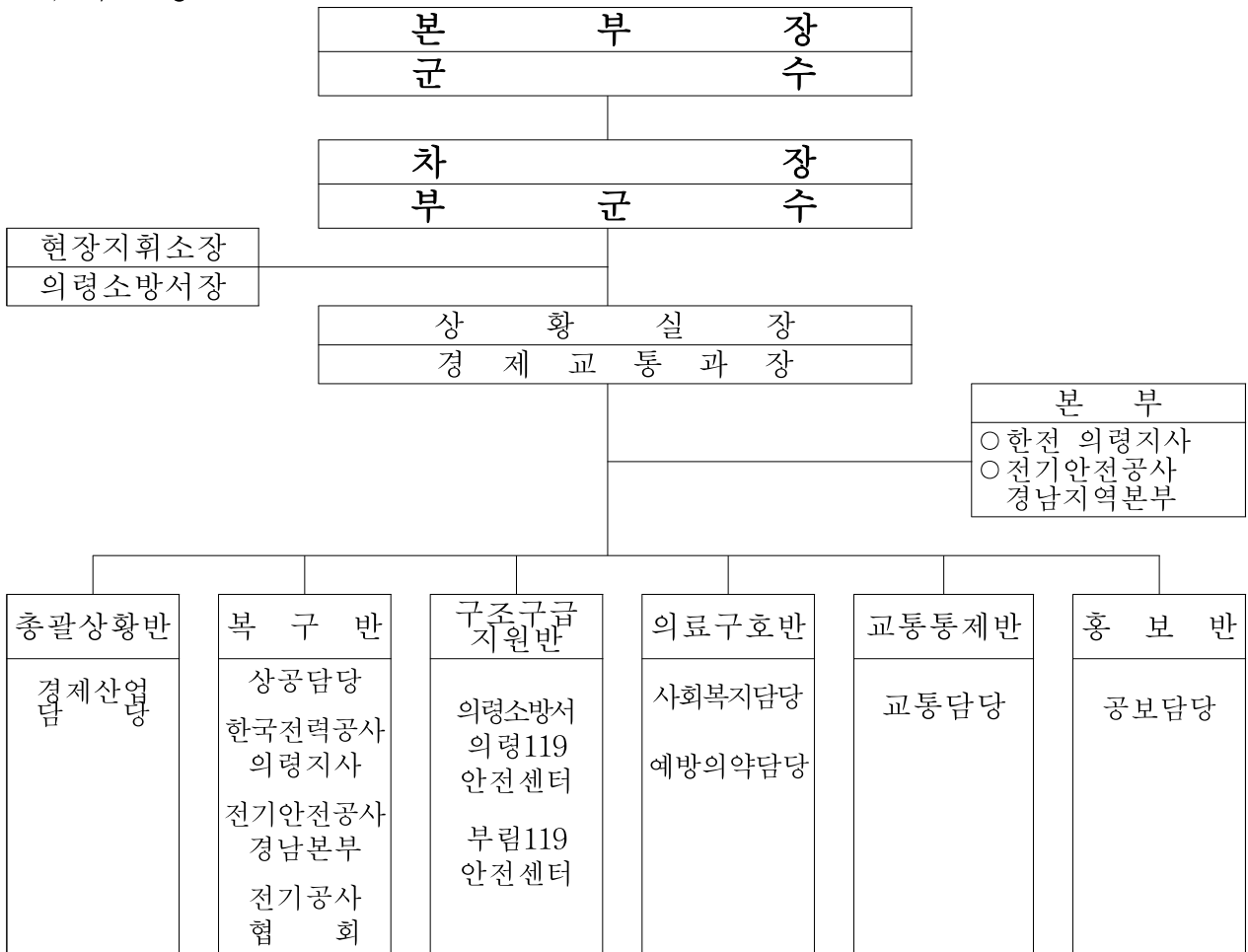
2) 재난보고 및 초동대응태세 확립

가) 재난 · 재해 시 단계별 표준절차서 운영

- (1) 재난 · 재해별 행동지침을 운영함으로써 신속한 대응체제 유지
- (2) 단계별 행동요령

나. 정전(전기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1) 구 성



※ 평시에 경제교통과에서 전기사고 예방상황실을 설치하여 전기사고 발생 즉시 사고대책본부로 전환 운영

2) 반별임무

반 별	조 치 계 획	비 고
총괄상황반	○ 재난상황 총괄관리 ○ 각종 인력동원 ○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복 구 반	○ 사고현장 수습 ○ 복구대책 총괄 및 복구실시 ○ 복구용 중기 및 장비동원	
구조구급 지원반	○ 인명구조 총괄 지휘통제 및 구조 ○ 화재예방 및 진압 ○ 피해 지역주민 대피명령	
의료구호반	○ 사상자 처리 및 환자관리 ○ 유족관리 및 방역 ○ 이재민 구호	
교통통제반	○ 교통통제 ○ 재해현장의 경비 및 질서유지 ○ 피해차량관리 및 보상대책	경찰서와 협조
홍 보 반	○ 여론, 동향파악 및 대외홍보 ○ 주민 행동요령 홍보 ○ 현장촬영 등 기록유지	

다. 긴급구조·구급대책 추진

1) 긴급구조본부의 임무 및 연락처

가) 임 무

- (1) 재난·재해 발생시 초동단계 긴급출동
- (2) 응급조치 복구지원 등 사안에 따라 후속조치
- (3) 신속한 구조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 전개

나) 연 락 처 : 1588-7500

2) 긴급구조업무 추진계획

가) 재난신고 접수처리

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통보

다) TV, 라디오 등 언론매체 보도에 의한 인지

3) 긴급구조대책

- 가) 구조현장에 필요한 비상전원 확보
- 나) 구조 대책본부 등 주변 시설 안전점검 실시

4) 현장 지휘소 설치·운영

- 가) 피해가 심한 공공장소 설치
- 나) 신속한 복구 및 대응체계 구축

5) 구조 활동 상황의 보도 안내

- 가) 복구활동에 대한 보도자료 실시간 실시
- 나) 공사 홈페이지에 복구지원 실태 게재

4. 재난복구대책

가. 피해시설에 대한 복구 및 정비대책 수립

1) 상황발생단계

- 가) 직원 비상소집 및 초동 출동반 현장 투입
- 나) 유관기관과의 상시 연락체제 유지로 신속한 복구대책 강구
- 다) 복구에 필요한 장비·자재 등 확보

2) 상황안정단계

- 가) 사고현장에 복구지원 대책본부 편성·운영

3) 복구 우선순위에 따라 복구활동 추진

- 가) 인명구조에 필요한 임시전원 가설
- 나) 이재민 수용시설 및 복구 대책본부 전기안전 점검
- 다) 사고 주변시설에 대한 이상유무 안전 점검

4) 사고지역 주민에 대한 전기안전 사용 계몽·홍보

- 가) 안전 점검 및 복구활동과 병행하여 추진

<가스분야, 석유분야>

1. 재난예방대책

가. 재난예방을 위한 점검 및 관리

1) 가스업소 현황

계	제 조	충 전	집단공급	판 매	저 장
30	5	2	2	9	12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대상시설(1,2종시설물)은 없음

2) 가스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가) 취약시기별 관계기관 합동점검

(1) 점검시기 : 해빙기, 우기, 동절기

(2) 점검대상 : 가스제조, 공급, 저장, 충전, 판매 및 사용시설

(3) 점검방법 : 도, 군, 가스안전공사 합동 점검

(4) 점검내용

(가) 해빙기에 발생하기 쉬운 지하배관의 침하 등 위해요소 점검

(나) 우기 시 침수, 지반손실 등에 의한 가스시설 손상대비 점검

(다) 가스용량의 증가에 따른 동절기 안전 점검

(5) 점검 후 조치

(가) 취약점에 대한 조속한 안전조치

(나) 사고발생 취약시설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자 지정 및 예찰활동 강화

나) 취약시설 수시 점검

(1) 점검시기 : 재해우려 시, 사고발생시,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점검대상

(가) 각종 점검 및 검사결과 부적합업소

(나) 사고발생 및 발생우려 업소

(3) 점검방법 :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편성 운영

3) 특정재난시설물의 지정 및 관리

가) 9~11월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위험정도 및 상태에 따라 중점관리시설 또는 재난위험시설로 지정 관리

나) 점검시기 및 방법

(1) 시기 : 매 반기별 1회 이상

(2) 방법 : 재난, 건축, 가스 등 관련기관과 합동 점검

(3) 점검결과 :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추적관리

다) 지정 범위

구 분	대 상 범 위	비 고
가스취급시설	충전소, 판매소, 제조소, 지역정압기	주거·상업·준공업 지역내 시설
유독물취급시설	유독물 보관·저장소	
화학물질취급시설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공장	

라) 지정 현황

시설명	위 치	시설현황	등급	비고
정암LPG충전소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421-5	·가스종류 : 프로판, 부탄 등 ·저장능력 : 22.88톤	A	
의령가스충전소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393	·가스종류 : 프로판, 부탄 등 ·저장능력 : 10톤	B	

나. 안전문화운동 추진

1) 가스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실시

가) 교육실시 :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지역본부

나) 시 기 : 년 중

다) 가스취급자에 대한 법정교육

(1) 교육대상 : 가스시설시공 및 관리책임자, 가스업종사자

(2) 교육내용

(가) 일반시설 안전관리자(정규, 특별)

(나) 가스운반 책임자

- (다) 온수보일러 시공자 및 시공관리자
- (라) 안전 점검원
- 라) 군민을 위한 안전교육
 - (1) 가스취급소 전 직원 안전교육 : 월 1회
 - (2) 순회교육 : 주부, 중고생, 민방위대원
- 2) 가스안전점검의 날 행사실시
 - 가) 시 기 :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 나) 방법 : 의령군, 가스안전공사 경남지사와 합동 점검 및 홍보
 - (1) 현장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실시
 - (2) 홍보물 제작 배포
 - (3) 언론매체 홍보 : 신문, 유선, 이장회의 등
 - (4) 시설주(거주자)·종사자 대상 전기안전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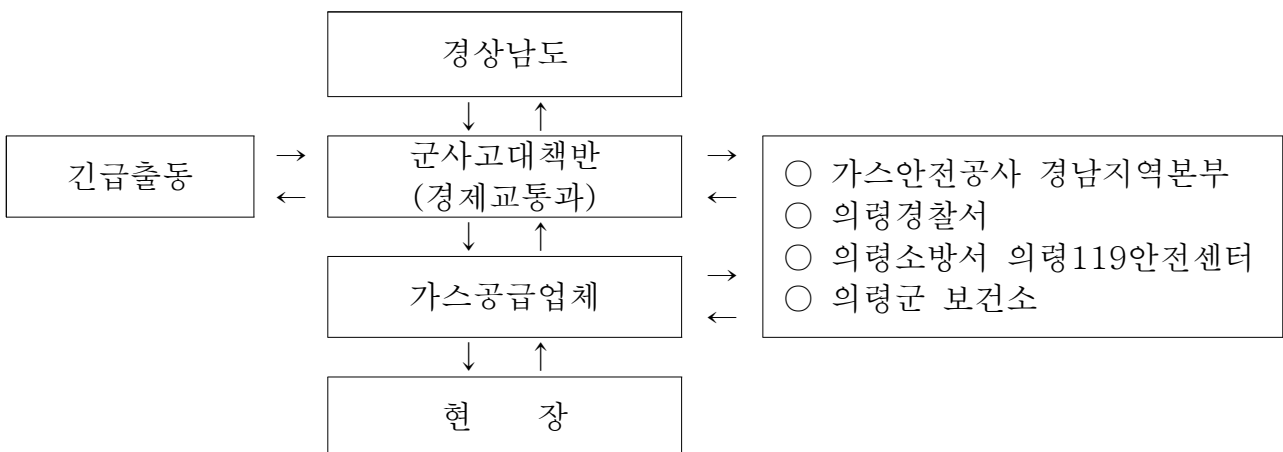
2. 재난대비대책

가. 재난정보 관리체계

1) 재난상황 관리체계의 구축

가) 재난 상황의 신속한 파악 및 적기수습을 위한 상시 보고체계와 유관기관과의 협조·지원체계 사전 및 24시간 보고 체계 구축

(1) 보고체계도



(2) 유관기관 연락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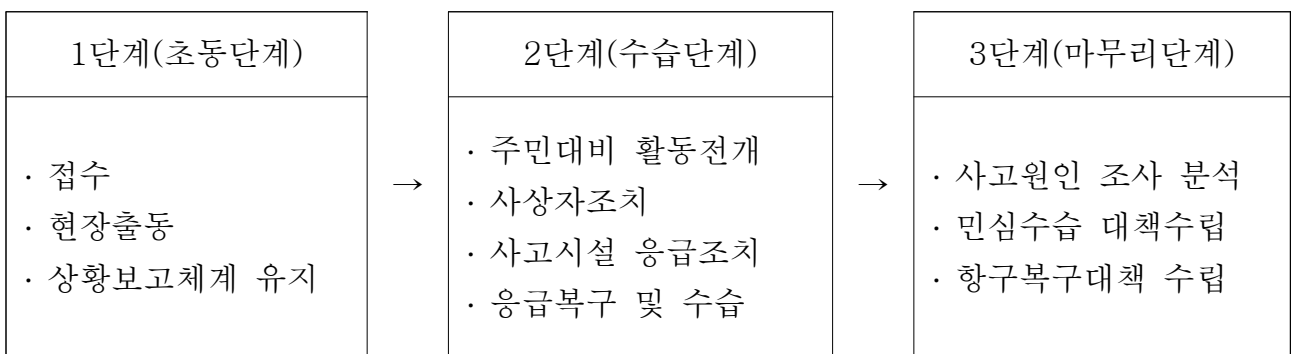
나. 재난대비 자원동원계획

- 1)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동원장비 확보

3. 재난대응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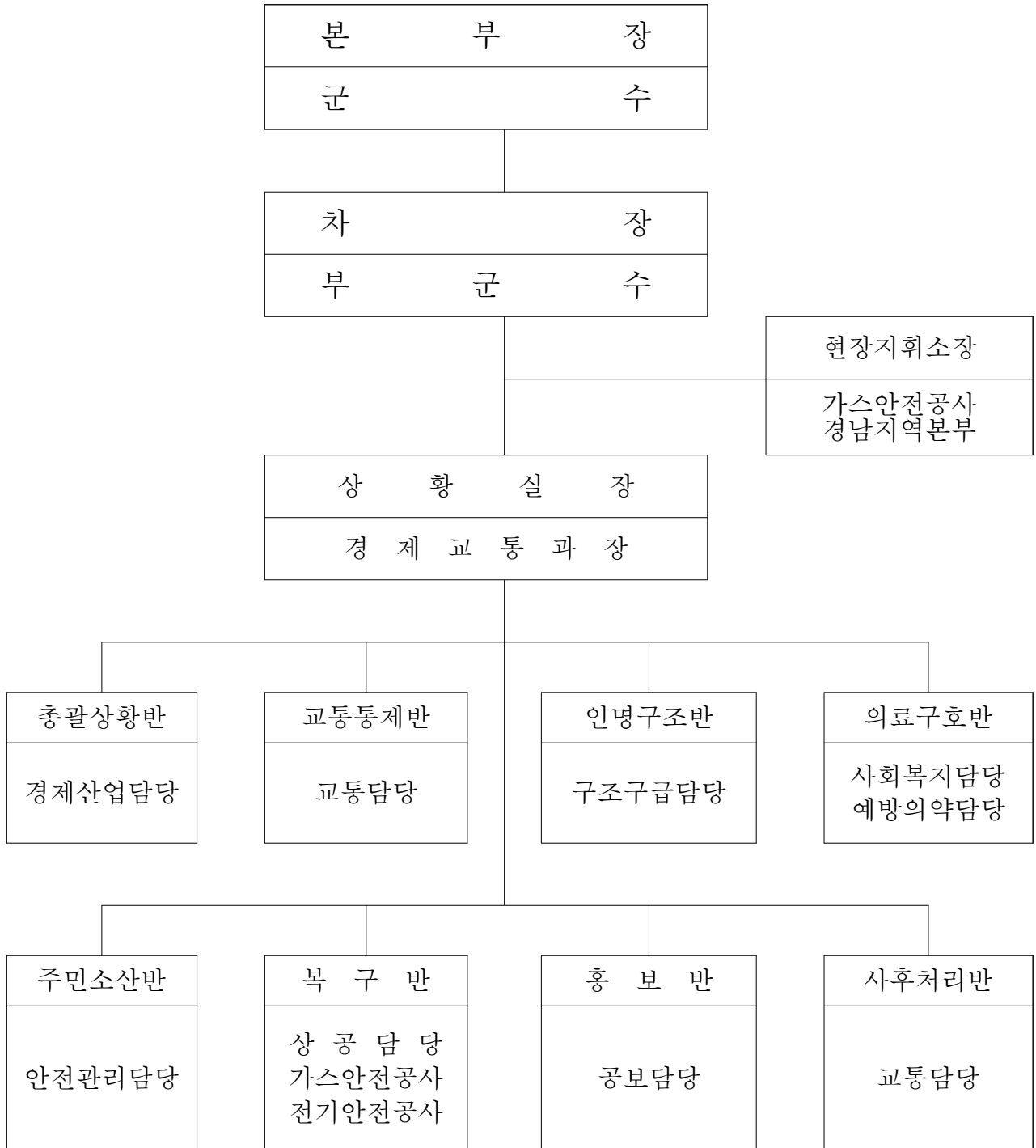
가. 재난상황보고 및 초기대응체제 확립

- 1) 초기대응 단계



2) 사고수습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가) 구 성



나) 반별임무

반 별	조 치 계 획	비 고
총괄상황반	○ 재난상황 총괄관리 ○ 민방위대 및 각종 인력동원 ○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교통통제반	○ 교통통제 ○ 재해현장의 경비 및 질서유지 ○ 피해차량관리 및 보상대책	
인명구조반	○ 인명구조 총괄지휘통제 및 구조 실시 ○ 화재예방 및 진압	
의료구호반	○ 사상자 처리 및 환자관리 ○ 이재민 구호 등 ○ 유족관리 및 방역, 예방접종	
주민소산반	○ 피해지역 주민 긴급대피 ○ 화재방 기술지원	경찰서와 협조
복 구 반	○ 복구대책 총괄 및 복구 실시 ○ 복구용 중기 및 장비동원 ○ 전기시설 복구 실시	
홍 보 반	○ 여론, 동향과악 및 대외홍보 전담 ○ 주민행동요령 홍보 ○ 피해지역 현장촬영 등 기록 유지	
사후처리반	○ 피해보상대책 및 유족관리	

나. 사고수습요령

1) 비상소집 및 현장출동

가) 사고대책실무반 비상소집

→ 현장조사 및 사후처리반 현지출동

나) 유관기관 상황전파 및 협조요청

2) 주민대비

가) 폭발성 가스의 경우

(1) 대외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유관기관에 사태진압 및 주민대피 지원 요청

(2) 사내 경보발령(비상벨, 경보기, 메가폰, 페이지 설비 등)으로 위급 사태 전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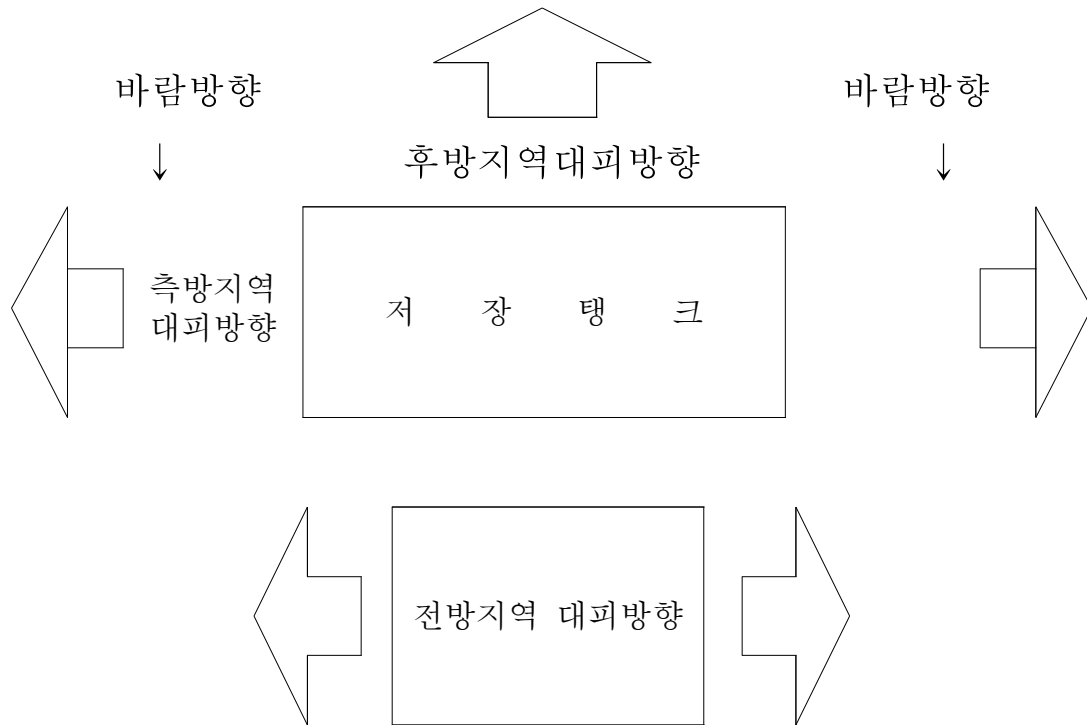
(3) 경계표지판 설치 및 사고현장의 인원 및 차량통제

(4) 대피유도 방법

(가) 저장량에 따른 피해범위를 설정하여 지형을 참조하여 피해 안전 거리
까지 대피 유도

(나) 피해방향은 풍향을 전방 및 측방은 바람방향의 직각방향으로 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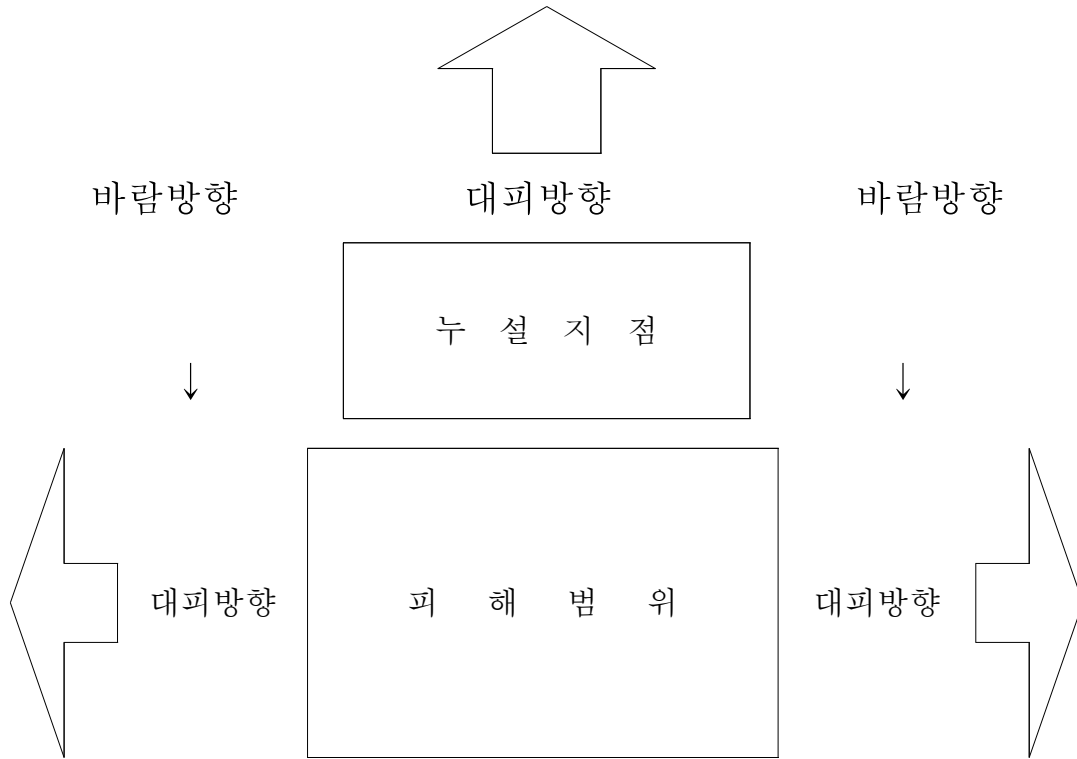
(예)



나) 유독성 가스일 경우

- (1) 대외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유관기관에 사태진압 및 주민대피 지원요청
- (2) 사내 경보발령(비상벨, 경보기, 메가폰, 페이지설비 등)으로 위급사태 전파
- (3) 풍향, 가스누설의 농도 등을 측정하여 오염지역 안에는 경계표지판을 설치하고 필요한 인원 외에는 사고현장의 인원 및 차량의 통제
- (4) 대피유도 방법
 - (가) 염소가스의 방출 유형에 따라 피해범위를 설정하고 지형을 참조하여 피해안전 거리까지 대피유도
 - (나) 염소가스 농도가 7ppm(암모니아 : 50ppm)이 되기 전에 미리대피를 시키고 누설 및 피해 장소보다 높은 곳으로(암모니아 : 낮은곳) 대피유도
 - (다) 오염지역 안에서 이미 대피가 늦은 종업원 및 인근 주민은 손수건, 옷 등에 물을 적셔서 코와 입을 대고 바람방향의 직각방향으로 대피유도

(예)



3. 사고시설 응급조치

가) 폭발성 가스의 경우

- (1) 긴급 차단밸브를 작동시킨다.
- (2) 주위의 화기 또는 인화물질을 사전 제거하고 가스가 체류하지 않도록 통풍을 양호하게 한다.(냉각수 별도 준비)
- (3) 가스누설 부위에는 복구 장비를 이용, 누설을 방지한다.
- (4) 인화되었을 때에는 다른 가스용기 및 건물에 살수하여 냉각, 연소를 방지하면서 소화한다.

※ 사고형태별 조치요령

<가정, 상가>

① 밸브 잠금

⇒ 가스렌지 점화코크와 중간 밸브를 잠근다.

② 환 기

⇒ 창이나 출입문을 크게 열어 환기를 시킨 다음 부채 등으로 쓸어낸다.

③ 메인밸브를 잠금

⇒ LPG는 용기밸브, 도시가스는 메인 밸브를 잠근다.

④ 가스공급소 연락

⇒ 가스판매소나 도시가스 회사에 연락하여 점검을 받고 사용한다.

<공 장>

① 긴급차단밸브를 잠근다.

② 인근주민을 피해반경 범위를 벗어나게 대피시킨다.

③ 살수장치 및 자체소화기를 작동시킨다.

④ 대외 비상연락망을 통한 유관기관에 즉시 통보한다.

나) 유독성 가스의 경우

구 분	염 소 (Cl ₂)	암모니아 (NH ₃)
재해제살포	○ 가성소다수 용액 ○ 탄산소오다수 용액 ○ 소석회	○ 물
조치요령	○ 재해제를 충분히 살포 ○ 긴급 차단벽 작동 ○ 누설부위 납전, 나무전, 고무 패킹으로 누설부위를 감아 차단	○ 충분한 물로 살포하여 암모니아가스를 흡수, 중화 ○ 주위 화기 차단 ○ 긴급 차단벽 작동

4. 재난복구대책

가. 응급복구 및 사고수습

1) 사고현장 목격자(발견자) 및 신고자로부터 사고발생시의 상세한 상황 청취, 증거

가) 자료수집(사진촬영, 시료채취 등)

(1) 자체 안전점검 및 종사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2) 가스공급자 의무사항 준수 철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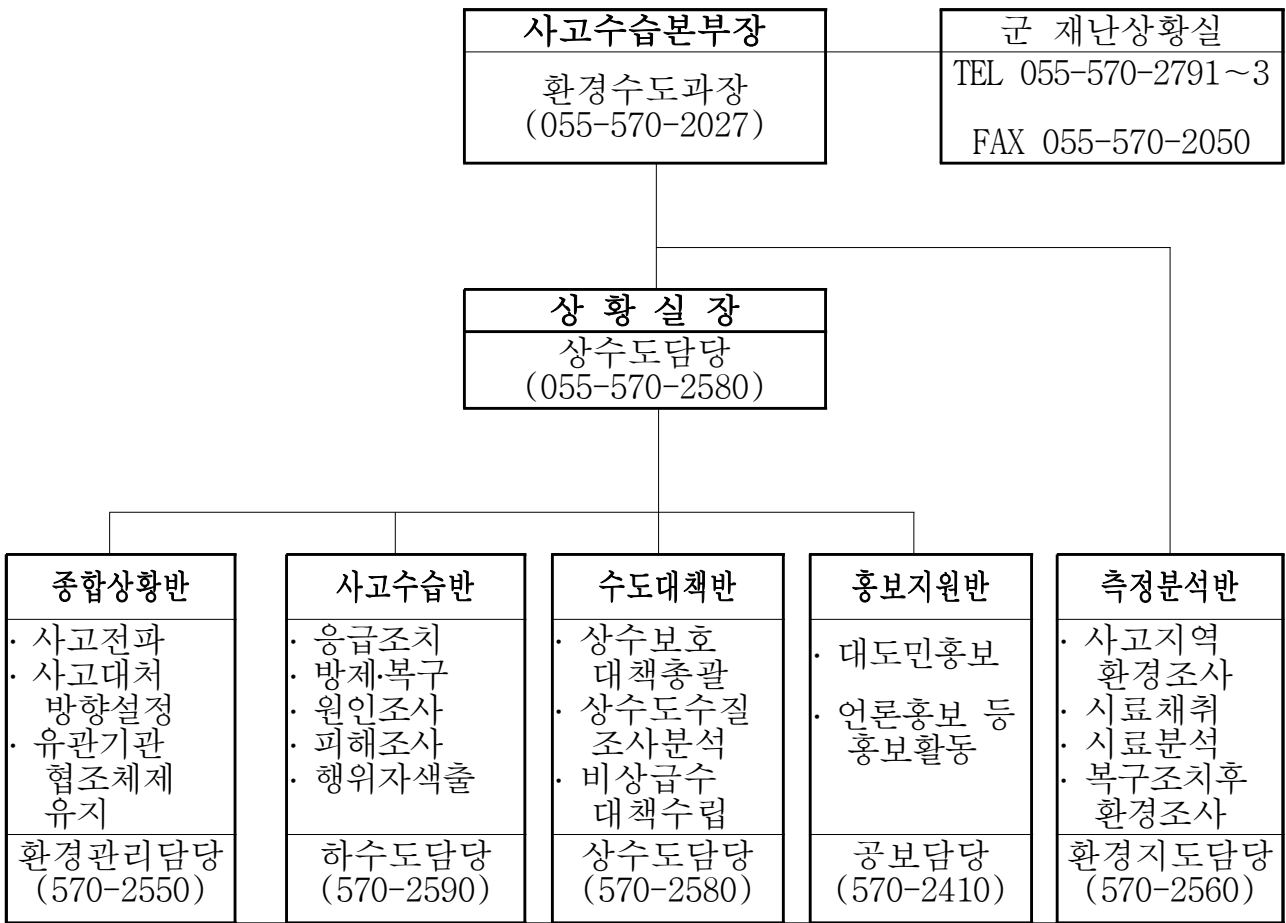
(3) 가스용품의 무질서한 사용에 따른 사고위험요인 제거

제8절 식용수(식수·농업용수)

《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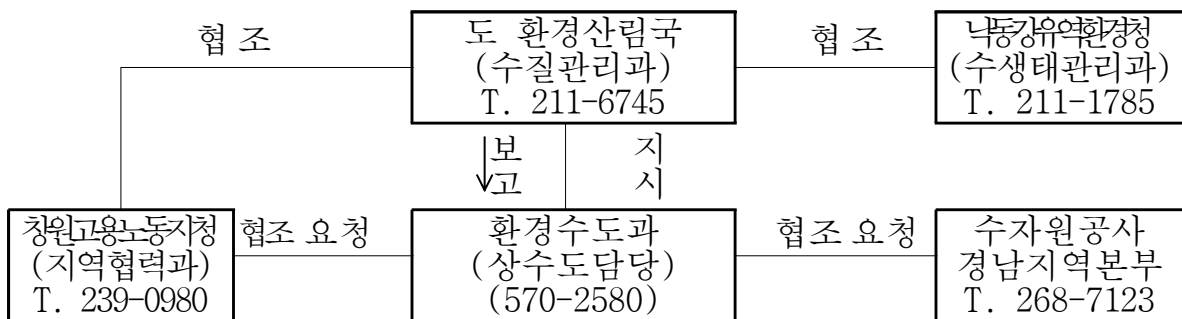
1. 재난대응체제

가. 조 직



※ 인력, 사고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고수습 본부장이 신축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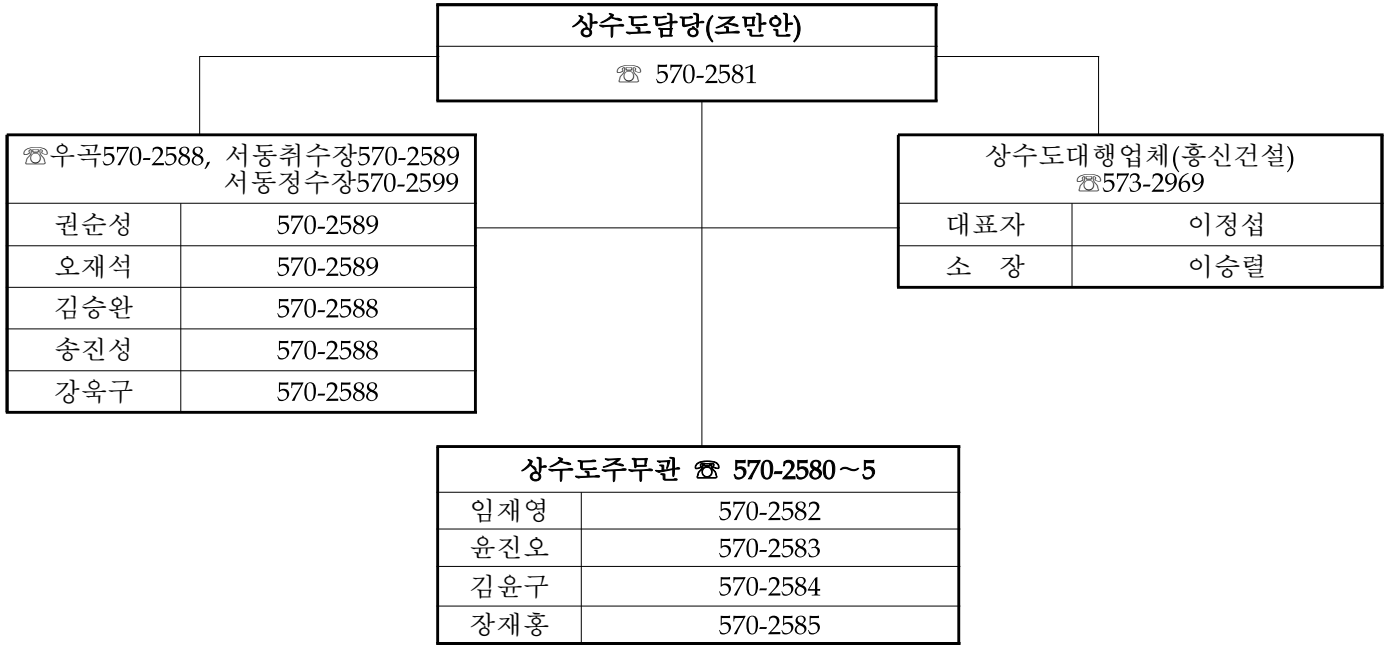
나. 비상연락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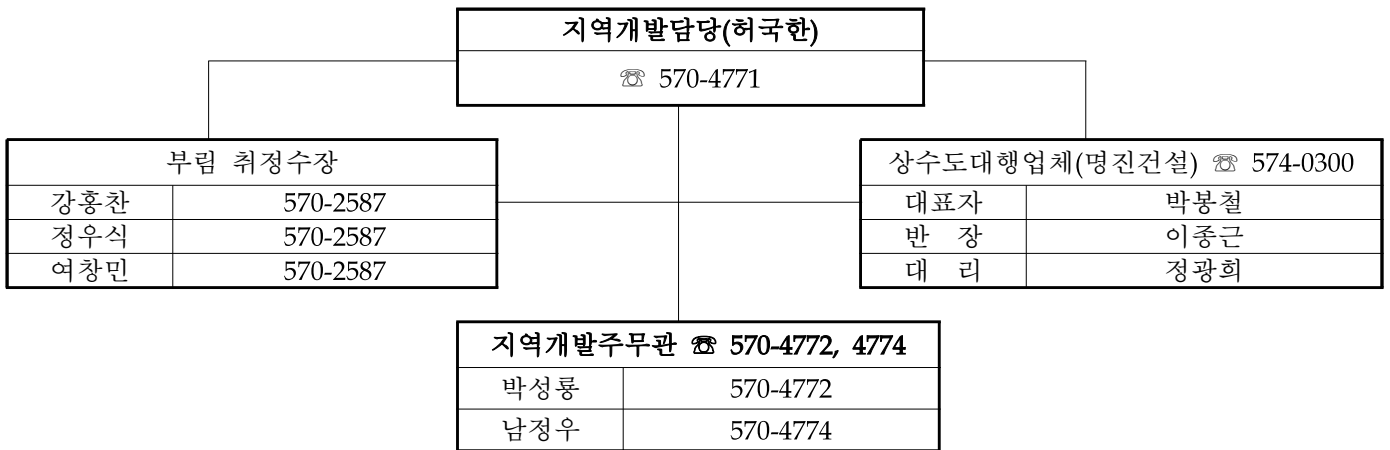
다. 의령군 상수도 조직도

○ 총 괄 : 환경수도과장 강현배(☎ 570-2027)

○ 의령상수도



○ 부림상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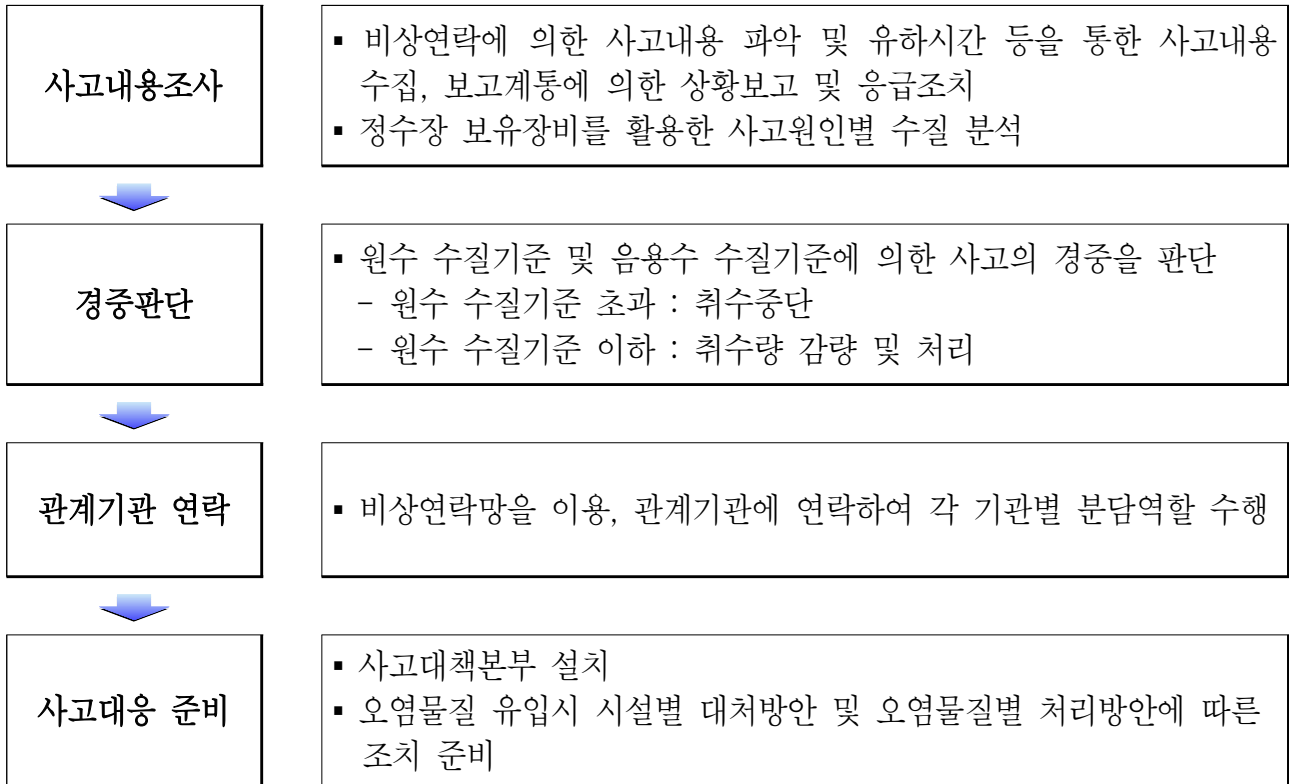
○ 화정상수도

화정 취정수장	
박상환	070-7727-8178
정인제	070-7727-8178
김형호	070-7727-8178

2. 유형별·단계별·항목별 대책

《 재난유형 : 정수장내 수질오염 사고 》

○ 단계별 처리내용



○ 오염물질 유입시 시설물별 대처방안

<p>취수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발생시 정수장으로 비상연락 및 상황을 통보 ▪ 긴급하다고 판단될 때는 취수중단의 기준에 준하여 취수중단 ▪ 취수장에서 실시 가능한 방제조치 실시 (기름띠 발견시 오일웬스 등 설치) ▪ 비상약품 투입시설이 설치된 경우 비상약품 투입 (일반적으로 분말활성탄, 이산화염소를 항상 비치)
<p>착수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수 도달전 사전에 원수를 확보하여 예비 수질조사 ▪ 어류관찰수조 등 수질경보장치를 설치하여 독성물질 유입 관찰 ▪ 수시로 수질을 분석하여 오염물질의 종류와 농도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약품투입 실시
<p>약품투입 시설 및 혼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염소처리를 위한 염소 및 이산화염소, 응집제, 소석회, 분말 활성탄 등 수처리제 상시 구비 ▪ 약품종류별 Jar-Test를 통한 최적 응집약품 선정 및 약품주입량 결정 ▪ 분말활성탄 투입후 충분한 접촉시간후 전염소 투입
<p>응집 및 침전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탁도 및 응집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의 유입에 대비하여 침전지의 체류시간을 조절하는 방안 검토 ▪ 처리효율을 높이기 위해 주기적인 청소 및 슬러지 배제 ▪ 수질오염사고 발생시 침전수 탁도 및 기타 오염물질의 수질분석
<p>여과 및 소독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과시설은 역세척에 의해 여과효율이 결정되므로 역세척의 빈도, 시간 조정 등을 수질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 ▪ 여과효율 감소를 가져오는 머드볼을 제거하기 위해 표면세척 및 역세척을 반복하고 제거되지 않은 머드볼은 여과사 1-2cm를 포함하여 제거하며, 적절한 여과사 보충을 실시 ▪ 조류의 과다번식으로 인한 맛·냄새 유발물질의 유입이 있거나 수인성 전염병 등의 발생이 있는 경우에는 염소 투입량 증가
<p>정수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질분석시간 확보를 위한 정수지 체류시간 증대 ▪ 사고시 원활한 퇴수를 위한 퇴수밸브 수시 점검 ▪ 역세척 구조의 역할을 겸용하는 소규모 정수지는 충분한 용량 확보 ▪ 독성물질이나 미량유해물질 유입의 이상징후가 발견된 경우는 급수중단

○ 오염물질별 처리방안

오염물질	오염원	처리방안
기름 (Oil & Grea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 차량의 오일류 공장기계유 및 중유 폐유 처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수중단 ▪ 취수점 유입구에 오일펜스 설치 또는 감량취수로 기름유입방지 ▪ 취수원 기름제거작업 및 취수구 하류쪽 방류 병행 ▪ 원수지에 분말활성탄 주입 및 기름 중화제 살포 ▪ 정수장 유입시 게이트 조작으로 침사지와 하천수위차를 형성하여 역류시키거나, 착수정 침전지에서 오일 매트로 제거작업
냄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댐, 저수지 조류에 의한 곰팡이 냄새, 페놀, 유기용제 등의 유출 ▪ 사이클로헥실아민(조미료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성탄 투입에 의한 희석 ▪ 전염소처리와 응집침전 효율을 높여 조류 제거 ▪ 심한 경우 취수중단
시안 (C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금공장, 화학섬유공장의 저장탱크 ▪ 공장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원 유역 순회 감시로 물고기 폐사 감시 ▪ 하천의 각 지점별 수질검사에 의해 취수원을 열고 하류부근 방류 ▪ 심할 경우 취수 및 송수 중단
농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초제, 살균제, 저장탱크, 운반차 ▪ 논밭에서 강우시 유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수조에 물고기를 사육함으로써 조기 발견 ▪ 농약의 종류와 독성검사 및 염소에 의한 분해실험 ▪ 심할 경우 취수중단 및 제한급수
암모니아성 질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폐기물 침출수, 하수 및 분뇨처리장, 수산회사 냉장고 냉매, 갈수시 하천 저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수점에서의 조기발견 ▪ 전염소처리(파괴점 염소주입)
산폐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산, 공장폐수, 보일러 세정수 (병원, 공장 대형건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폐수 방류 감시 감독 ▪ 보일러 정기점검시 감시기관과의 긴밀한 연락체계
고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수시 하천 유출량 증가, 하천 준설, 전자재 공장 모래세정기 및 세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수장내 응집제 주입량 증가

[재난유형 : 식·용수 시설·설비 파괴]

○ 관로 및 설비사고 단계별 조치

구분	조치사항	조치내용	담당부서	비고
1단계	비상연락 긴급출동 현장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로시설 누수사고 신고접수후 즉시 긴급복구반 비상연락망 가동 	최초 신고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내차량 및 점검정비업체 사고현장 조기출동 및 현장확인·상황보고 사고현장 응급조치 및 안전시설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수물량 유도배수로 확보 (양수 및 모래주머니) - 사고현장 안전조치 (웬스설치 및 교통·인원통제) - 사고위치, 사고원인, 지역침수 피해여부 등 조사 - 상황반 및 본사주관부서에 수도사고 발생보고 	관로시설 담당부서	
2단계	상황판단 및 사고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복구 및 단수여부 판단 (무단수 검토) 복구장비·예비자재 확인 및 밸브조작 계획수립 긴급복구 의뢰 (지시) : 점검정비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매설물 관리기관 통보 - 굴착장비 투입 및 누수부위 확인 - 취수장 펌프가동 정지 - 단수작업 (제수밸브 폐쇄 및 이토밸브 개방) 수요자 단수통보 및 시민홍보 요청 TV, 라디오 등 방송의뢰 사고내용 확인 및 조치계획 보고 	관로시설 담당부서 긴급복구 지원부서	
3단계	긴급복구 공사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언론기관 (민원) 업무총괄 안전사고 대비 구급약품, 안전장구 확보 각종 기전설비 정지 및 가동 총괄 	긴급복구 지원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복구공사 시행 및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굴착 관할경찰서와 협의 및 교통·인원통제 - 폐기물처리 등 현장 마무리 및 뒷정리 	관로시설 담당부서	
4단계	긴급복구 공사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수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펌프가동 및 용수공급 감시요청 - 이토밸브 폐쇄·이토물량 확인 및 제수밸브 개방 - 공기밸브 점검 및 통수관로 확인 - 통수통보 및 배수지 유입물량 확인 관로사고 원인조사 분석 및 긴급복구 완료보고 긴급복구비 정산 및 자료정리 	관로시설 담당부서	

○ 전력공급 설비 파손시 수전계통별 응급조치

- 신고접수 : 사고접수후 비상연락망 가동(사고위치, 시간, 사고내용 등)
- 현장확인 : 현장출동 및 확인(한전측 사고 또는 자체 사고)
- 응급조치



- 응급조치 사항

사고내용	한전선로 또는 자체사고로 인한 변전실 정전
긴 급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전선로로 인한 정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전선로 지락에 의한 결상사고시 ALTS반 자동전환이 안될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예비선로 수전 방법에 따라 수동조작으로 선로 전환. - 상용 복구시 예비선로 수전방법에 의한 상용수전 ■ 자체사고로 인한 정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전실 및 현장 수전 설비 점검하여 사고원인 파악 - 변전실 차단기반 및 각 현장 MOTOR 기동반 계전기 동작 확인후 RESET - 모터, SA, 콘덴서, 리액터, VCB 이상시 : 각호기의 과전류 및 내, 외부 상태 확인하여 이상개소 분리 후 운전 가능할 시 정전복귀방법에 따라 정상운전 - 특고변압기 및 고압변압기 이상시 : 변압기 교체방법에 따라 변압기 교체 후 정상운전
점검 및 조치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분기점이내(소내) 이상시 사고원인을 파악한 후 경고장시 정상운전 하고 중고 장일 경우 보고 후 조치 ■ 한전선로 이상시(사고장소, 원인, 복구시간)확인 후 보고

《 재난유형 : 전산/시스템 운영 중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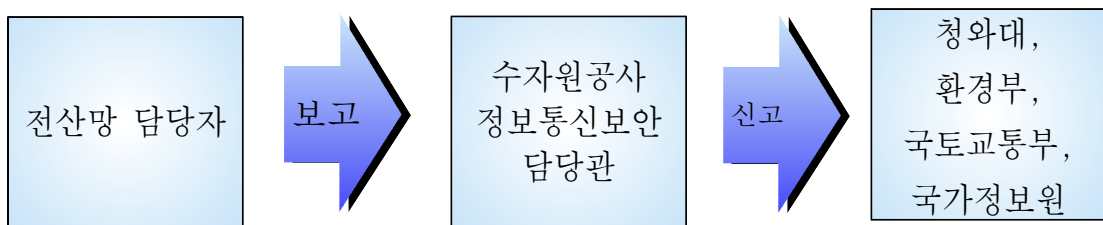
○ 해킹/바이러스 침투 등 사이버테러 대응

<응급조치>

- (1) 해킹사고 인지시 가능한 피해 시스템의 연결과 통신선로를 신속히 차단 후 주요 자료를 백업

※ 이중시스템으로 구성된 경우 백업시스템으로 전환

- (2) 해킹사고 현황 보고/신고



<사고신고>

- (1) 응급조치 후 계통보고
- (2) 필요에 따라 전산망담당자는 국정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 해킹사고 신고 후 전문요원의 지시에 따라 후속 조치 실시

<복 구>

- (1) 긴급한 해커의 행위(파일시스템 삭제, 스팸메일 발송 등)가 발견된 경우 정수장운영 시스템을 수동으로 전환
- (2) 이후 정수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후 긴급 복구작업 시행

<사후조치>

- (1) 전문요원의 점검 후 권고사항과 조치결과를 정리,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 상급기관까지 보고토록 조치

《재난발생 유형 : 상수도시설 운영자의 파업(근무지 이탈, 점검·방해)》

예 방

- 상수도시설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운용요원 단체행동 의지 표현 단계부터 대화협의체 구성 및 갈등 해소에 노력
-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 강화 및 주요시설에 대한 이상 유무 수시 확인
- 주요장비에 대해서는 예비 장비 사전 확보

사고발생시

- 1단계 : 지자체 소유 타 정수시설 근무인력을 동원하여 정수시설 운영업무 수행
⇒ 환경시설관리공사 운영·정비팀 : 원일훈, 박상열
- 2단계 : 인근 지자체에 인원 및 장비 지원을 협조 요청하여 정수시설 운영 업무 수행(1단계 조치로 부족할 경우)
⇒ 상황별 지자체 적의 협의 시행
- 3단계 : 한국수자원공사 등 상수도 전문기관의 인력 및 장비지원 협조를 요청하여 정수시설 운영업무 수행(1,2단계 조치로 부족할 경우)
⇒ 한국수자원공사 창원관리단

3. 응급조치에 일시사용 할 장비 및 인력의 운영방안

- 정수장 응급동원계획은 시설운영요원 부재시 비노조원 및 점검정비 요원이 투입되어 정상운영
- 재난수습에 필요한 동원 인력·물자·장비 등을 파악하여 보유업체 또는 소유자에게 사전협약 등 지원요청
 - 인근 정수처리전문업체 활용 : (주)하이위텍ENG
 - 인근 지자체의 유휴인력 - 한국수자원공사 직속기관
- 유관기관, 단체, 관련회사 등과 협조체제 유지
 - 한국전력 의령지사, 의령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본부 등

《농업용수》

1. 현 황

가. 중점관리대상 저수지 현황 : 2개소

시설명	소재지			준공연도	시설규모(m)		총저수량(천톤)	등급	비고
	시군	읍·면	동리		길이	높이			
천락	의령	봉수	천락	1998	194	40.0	1,345	B	
벽계	의령	궁류	벽계	1986	205	36.2	2,490	B	

나. 가뭄 우심지역

지사별	행정구역	우심지역(ha)			비고
		계	논	밭	
의령	의령군	300.0	3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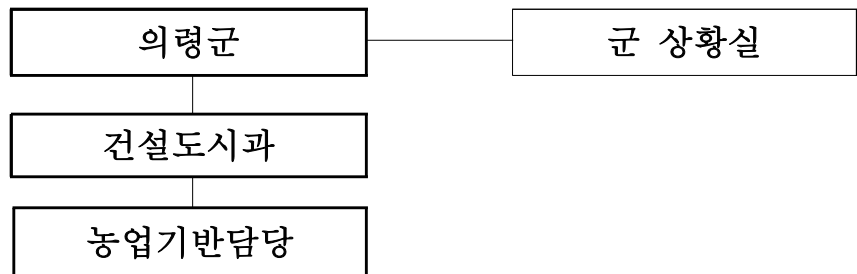
다.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 현황

사업장명	부서장		종업원수	전화번호		사업장주소
	직급	성명		전화	FAX	
의령지사	1급	정철호	33	570-6060	573-4454	(636-805) 의령읍 서동리 483-1

2. 재난대응체제

가. 재난관리부서 기구 및 정·현원 현황

○ 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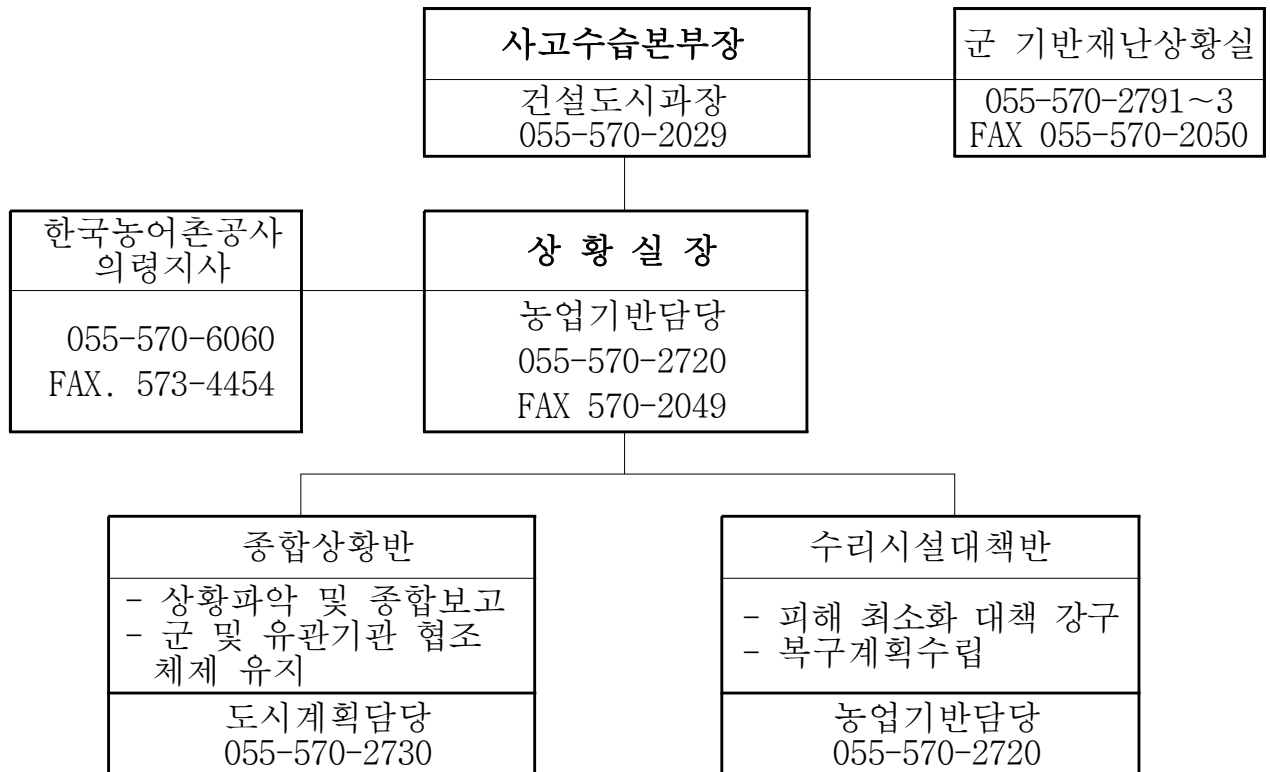
○ 정·현원

구 분	정 원(명)					현 원(명)				
	계	5급	6급	7급	8급 이하	계	5급	6급	7급	8급 이하
건설도시과 농업기반담당	5	1	1	1	2	4	1	1	1	1

나. 담당업무 분장내역

구 분	직 위 (급)	성 명	업 무 분 장	연락처
건설도시과	과장	남기주	총 괄	570-2029
농업기반담당	담당	김봉식	농업용수 분야	570-2721
“	주무관	권치국	”	570-2723
“	주무관	김형진	”	570-2724

<조 직>



3. 유형별·단계별·항목별 대책

《재난유형 : 농업용 저수지 손괴시 》

1단계 : 준비단계

- 정기·수시점검과 정비·보수계획
 - 정기점검 재난위험시설(월 1회 이상), 중점관리 대상시설(연 2회 이상)
 - 수시점검필요 시 수시 실시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 1종시설물 지정 현황 (서암·산남·천락·백계·오산저수지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
- 정밀안전진단실시
 - 안전점검결과 이상징후 발견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완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1종시설물은 매 5년 마다 1회 실시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안전 점검
 -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안전 점검, 정밀 안전진단 실시
 - 일상점검 매분기 1회 실시
 - 정기점검 매년 영농기 전 실시
 - 긴급점검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긴급히 보수·보강이 필요한 때
- 비상대처계획수립(EAP) 및 비상대처 가상훈련(CPX) 실시
 - 기상, 지진, 해일 등 재해, 재난 예·경보에 따른 행동요령 훈련
- 긴급복구 자재 확보, 동원업체 지정 등

2단계 : 대비단계

- 상황유지
 - 재난사고에 대한 상황 파악·보고 및 전파
 - 관련 기관간 사건·사고에 관한 비상연락 체계 유지
 - 필요시 관련기관에 응급조치 및 복구지원 요청
 - 재난수습방안 모색 및 조치

○ 긴급구조 및 구급체계

- 인명사고가 발생시 인명구조에 최우선을 두어 119등 긴급구조기관 협조요청
- 재난현장 책임자 및 시설관리자는 재난발생에 대비한 상시 응급복구 및 수방장비 비축

3단계 : 대응단계

○ 사고의 접수 및 보고전파

- 사고가 발생하면 직원 비상소집 및 수습대책반 구성
- 사고내용을 보고계통에 따라 보고하고, 해당지역에 전파
- 지방 및 중앙 재난관련기관과의 재난정보교류, 전파체제확립

○ 사고수습 및 대응

- 재난사고와 관련 자치단체 및 관련기관 등에 협조사항 지원요청
- 구조기관에 사상자 구조 등 지원요청
- 재난상황의 정확한 판단 및 활동방침 결정
-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우선 복구
- 피해조사 완료후 항구적인 복구대책 추진

4단계 : 복구단계

○ 재난피해 보상대책 수립

○ 피해시설에 대한 복구 및 정비대책 수립

- 복구체계 재난 피해내용 조사
- 사고원인 규명
- 재발방지대책 수립
- 사고원인을 전파하여 타시설에 대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일제 점검하여 문제시설은 정비

《재난유형 : 저수량 부족 등에 따른 식·용수 공급 부족》

1단계 : 가뭄대책 준비/계획 단계

○ 준비사항

- 강수량, 저수율 및 장·단기 기상예보 분석 및 검토
- 수해지역 및 급수부족면적에 대한 용수대책 수립 및 불가능지역 대처방안 강구
- 수리시설, 관정·양수장비 점검·정비 계획수립 및 실시
 - 수리시설 : 저수지, 양수장, 관정, 취입보, 용수로 등
 - 가뭄대책장비 : 양수기, 송수호스 등
- 지하수 수맥조사 및 관정 개발계획 수립
- 집단 못자리, 반복수이용 등 절수영농계획 수립(직파재배 지양)

○ 용수대책

- 용수대책 총력추진 및 용수개발 확대
- 작물별 물절약급수 및 비상급수 추진
- 보리, 과수, 노지채소, 시설채소 등 밭포장의 피복관리
- 모내기 못한 논외 대파 실시

2단계 : 가뭄대책 마무리단계

○ 가뭄대책사업 마무리

- 가뭄지역 피해상황 정밀조사 및 향후 대책 수립
- 가뭄대책장비 점검·정비, 관리철저
- 지역간 분배·동원 장비 회송
- 간이양수장 및 관정개발의 사후관리
- 굴착하천, 배수로의 원상복구 추진
- 고사한 작물 및 미이양답 대파추진
- 가뭄대책업무를 풍수해대책 업무체제로 전환

《 동원업체 지정현황 : 한국농어촌공사 현황자료 》

구분 지역별	지정업체수(개수)					관정(개)			양수기(대)			송수호스(km)	비고	
	계(B)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계	대형	소형	계	엔진	탑재			모터
의령	14	3	-	6	5	11	11	-	17	10	-	7	0.3	

《상수도대책》

I. 계획의 의의

1. 목 적

상수도시설물을 상시점검, 정비하여 시설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사고 시 체계적인 시설복구와 비상급수시설을 확보하여 주민생활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함.

2. 재난관리대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 가. 상수도 시설물 상시점검 정비하여 안정적 급수관리
- 나. 상수도 안전사고 발생시 긴급복구 체계 확립 및 비상급수 대책
- 다. 생활용수 절수에 따른 주민홍보 강화

II. 재난관리대책

1. 시설현황

가. 급수인원 (단위 : 명)

읍 면	계	지방상수도	소규모수도시설	비고
계	30,329	16,659	13,670	
의 령	9,736	9,736	-	
가 례	2,015	711	1,304	
칠 곡	1,271	657	614	
대 의	1,219	-	1,219	
화 정	1,713	1,697	16	
용 덕	1,838	1,187	651	
정 곡	1,753	-	1,753	
지 정	2,124	-	2,124	
낙 서	1,039	-	1,039	
부 립	3,509	2,172	1,337	
봉 수	1,229	499	730	
궁 류	1,423	-	1,423	
유 곡	1,460	-	1,460	

나. 급수시설

(단위 : 개소/톤)

취·정수장	가압장	소규모수도시설	전용상수도	수도관로(km)	비고
4/12,300	24	224	-	199	

2. 예방대책

가. 상수원 수질오염사고 예방

- 1) 상수원 주변지역에 특별대책지역(상수원보호구역) 등을 지정하여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 및 수질 측정 강화하여 수질오염 사전예방
 - 가) 수질 측정반 운영 : 2개반 12명(환경수도과)
 - 나) 수질 측정망 : 2개소(가례천, 우곡취수장)
- 2) 취수지 등에 대한 일일순찰을 실시하고 특히 행락철 및 장마철 등 취약 시기에는 일일 수시 순찰 강화
- 3) 우기 전 정수장 시설 점검정비 및 수방자재 확보 상황 점검
- 4) 우기를 틈타 오·폐수 불법배출 감시·단속 강화

나. 재난예방을 위한 점검 및 관리

- 1) 안전점검의 철저한 이행
 - 가) 대상시설물 : 취수원, 취·정수장, 간이상수도, 가압장, 관로
- 2) 안전점검 단계별 체계

단계별	점 검 방 법	점 검 기 관	점 검 주 기
1단계	수시점검	청경, 관리요원	주 1회이상
2단계	일상점검	환경수도과 총무(개발)담당	분기별 1회
3단계	일상 및 정기 점검시 불량시설	환경수도과	읍·면 점검후 5일 이내
	정기점검	"	2년에 1회 이상
4단계	정밀안전진단	전문가(기관)	배관파손 등 누수시

3) 점검반 편성 운용

- 가) 군 총괄 : 환경수도과장
 반장 : 상수도담당
 반원 : 상수도담당자 및 청경
- 나) 읍·면 총괄 : 읍·면장
 반장 : 총무(개발)담당
 반원 : 상수도담당자

3. 대비대책

가. 정수장시설 안전 경계예방 대책

1) 평소안전경계

- 가)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주변에는 담장, 헨스, CCTV 등을 설치하여 외부인의 임의적인 접근을 완전차단
- 나) 출입자는 반드시 정문을 통하도록 하고 출입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방문일지에 기록유지
- 다) 평일에는 정수장에서 판단할 때 취약지로 생각되는 지점에 대한순찰을 실시하고 외부인의 출입 시에는 혹시 모를 독극물 투입 등에 대비하여 중요지점에 대한 순찰을 강화
- 라) 긴급복구에 소요자재 및 인력 확보(각종 밸브, 수도관, 장비, 기능공 등)

2) 사태발생시 안전경계

- 가) 외부 침입자 및 불순분자의 행동이 있을 경우에는 의령경찰서, 군부대 등에 즉시 협조요청 등 시설안전 경계대책을 강화
- 나) 수돗물 수질검사결과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의 경우 지체 없이 수돗물 공급중단하고 비상급수

3) 정수장, 가압장 근무자 현황

우곡정수장	서동정수장	부림정수장	화정정수장	중리가압장	비 고
김창식,송진성, 강육구	권순성,오재석	남정우,강홍찬, 정우식	박상환,김형호	무인시스템	근무자
570-2588	570-2589	570-2587	070-7727-8178	-	연락처

나. 유관기관 역할분담 협조체제 및 비상연락망 구축

- 1) 의령경찰서, 육군5대대 : 취·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경계 병력지원
- 2) 한전 : 취·정수장, 가압장 전기복구(전기대행업체 사전파악지정)
- 3) 의령·부림 119안전센터 : 비상급수차량 지원
- 4) 경남보건환경연구원, 의령보건소 : 수질검사

다. 응급복구 및 긴급복구 상수도 대행업체 확보

- 1) 상수도대행업체지정 확보현황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계		2개소		
홍신건설(주)	이정섭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862-23	573-2969	의령
명진건설(주)	박봉철	의령군 부림면 신반리 380-6	574-0300	부림

라. 비상급수장비 및 차량 확보

- 1) 장비 확보현황

종 류	대 수	용 량	비 고
급수차량	1	5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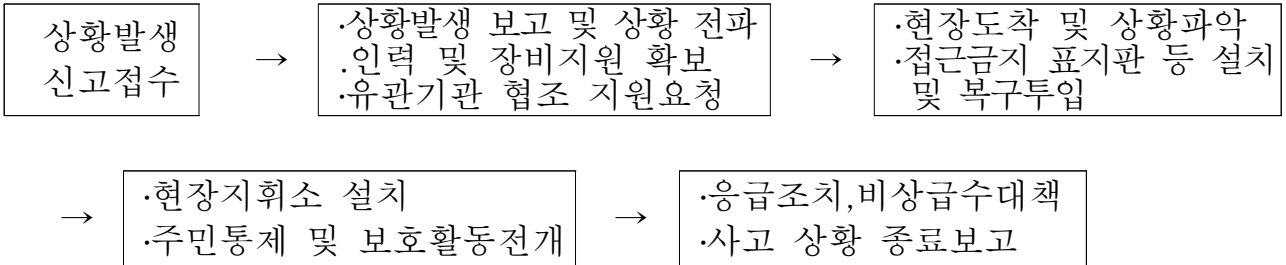
- 2) 의령소방서 소방차 확보현황

소 속	차량번호	용량(톤)	연락처	비고
계	18대			
의령소방서 소방행정과	15두7298		055-570-9222	쏘나타
	10거2827			싼타페
의령소방서 예방대응과	79버2293		055-570-9281	성진소방 지휘차
	79버2285			성진소방 조사차
	79버2282			그랜드스타렉스
의령소방서 구조대	99부2175		055-573-8119	이엔쓰리
의령소방서 의령안전센터	97다1771	3톤		현대5톤
	97모8131	2.6톤		우리화학소방펌프자동차
	93고3328	12톤		이엔쓰리
	79버3520			그랜드 스타렉스
	02주2094			테라칸
	79버2296			그랜드스타렉스
	97모8050			봉고III
	경남98가1045			남영
의령소방서 부림안전센터	96무2634	3톤		055-574-6119
	97다2727	3톤	현대5톤	
	97가3911	6톤	현대8.5톤	
	79버2298		오텍	

4. 대응대책

가. 재난수습대책

1) 처리흐름도



나. 신고접수 및 초동조치

1) 상황발생 신고접수

가) 급수관 파열 등 현장목격자 및 이용자

2) 초동조치

가) 급수지역 및 인근기관에 상황전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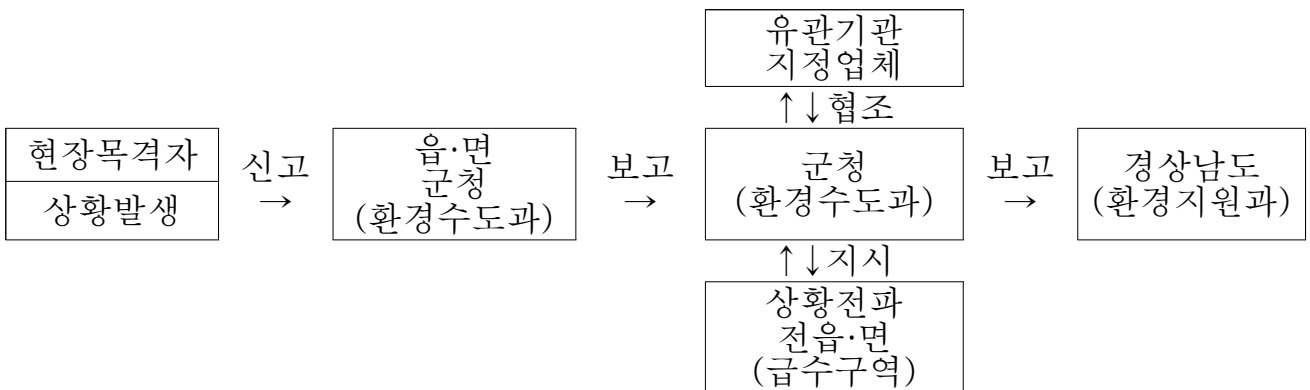
나) 유관기관 사고수습 지원요청

다) 응급복구장비, 자재 및 대행업체 동원투입

라) 정수장 및 배수지 단수조치

마) 도로빙판 방지 안전표시판 설치 등 주요지점 우회도로지정안내

3) 상황전파체계



4) 현장출장 및 수습

가) 긴급 인력 및 장비확보투입

나) 비상급수 동원 및 지휘체계 확립

다) 비상급수 안전대책 및 수인성전염병예방대책

다. 상수도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1) 구 성



2) 반별임무

반 별	반 장	임 무
상 황 반	환경관리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도 사고대책본부 운영 · 종합상황 보고 · 수습대책수립
기동수리반	상수도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원인 및 피해상황조사 분석 · 복구장비 투입 · 도로빙판 방지 등 주민불편해소
용수공급반	하수도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급수동원 · 비상급수 안전대책 수립

5. 복구대책

가. 피해조사단 구성 및 임무

1) 피해조사단 구성

가) 상수도 전문가, 관할 읍·면장, 지역주민대표, 피해주민대표

2) 임무

나) 사고발생원인규명, 피해상황 조사 분석, 재발방지대책, 항구복구대책

나. 피해조사 및 피해보상대책수립

1) 사고원인 규명 등에 따라 피해보상방안 강구

2) 피해자 대표자와 협의 보상지급대책 방안 강구

제9절 보건 의료서비스

I. 보건·의료서비스

1. 일반현황

가. 공공보건기관 현황

○ 대상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현장상황 관리관	전화
		인원	면적(m ²)		
의령군보건소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8길 16	28	2,633	최용길	570-4011
칠곡면보건지소	의령군 칠곡면 자굴산로 7	2	203.66	조미경	570-4061
대의면보건지소	의령군 대의면 대의로 44-6	3	341.03	김은주	570-4062
화정면보건지소	의령군 화정면 화정로 298-6	2	353.96	하순기	570-4063
용덕면보건지소	의령군 용덕면 용암로1길 5	2	350.75	김원자	570-4064
정곡면보건지소	의령군 정곡면 법정로 932-7	2	374	김말순	570-4065
지정면보건지소	의령군 지정면 함의로4길 8	2	731	김민지	570-4066
부림면통합보건지소	의령군 부림면 신변로10길 21-5	8	2,361	허희자	570-4050
봉수면보건지소	의령군 봉수면 대한로 1213	2	756	강정미	570-4067
공류면보건지소	의령군 공류면 공류로4길 3	3	240.37	이경은	570-4068
유곡면보건지소	의령군 유곡면 청정로 2241	2	364	박은숙	570-4069
양성보건진료소	의령군 가례면 가례로8길 51-6	1	170.3	전정희	570-4426
중촌보건진료소	의령군 대의면 모의로3길 20	1	139.68	백혜경	570-4506
화양보건진료소	의령군 화정면 화정로 967-8	1	173.23	노은순	570-4546
신촌보건진료소	의령군 용덕면 덕암로 59-10	1	170.58	여유성	570-4586
백곡보건진료소	의령군 정곡면 강변로1길 7-1	1	180.63	서헌록	570-4626
성당보건진료소	의령군 지정면 강변로7길 10-12	1	106.73	조아람	570-4666
여의보건진료소	의령군 낙서면 낙동강로8길 37	1	170.41	전미연	570-4706
서암보건진료소	의령군 봉수면 청계로 9	1	164.32	노규순	570-4806
평촌보건진료소	의령군 공류면 벽계로 4	1	182.07	임수현	570-4846
송산보건진료소	의령군 유곡면 청정로 1679	1	178.8	김남희	570-4886

○ 공중보건 의사 배치 현황

구분	계	일반의	인턴	치과의	전문의	한방의
총계	23	7	-	3	7	6
보건(지)소	20	7	-	3	5	5
민간병원	3	-	-	-	2	1

나. 의약업소 현황

○ 대상 : 의료기관(병·의원)

의료기관 현황						
병·의원 명	개설자	건축면적 (m ²)	소재지	전화번호	개설일	
1	의료법인 벽암의료재단 의령병원	김영희	1,625.34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14길 10	573-4100	2008.10.24
2	의령군립노인 전문병원	류정건	2,836.62	의령군 부림면 대한로 1655	572-0004	2011.10.05
3	의료법인 국제의료재단 의령사랑병원	구제길	4,176	의령군 의령읍 의합대로 105-8	600-2000	2013.03.22
4	의료법인 국제의료재단 의령사랑요양병원	구제길	4,028	의령군 의령읍 의합대로 105-8	600-2000	2013.08.26
5	하나의원	유종식	302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 226-1	573-9482	1998.12.18
6	의령정형외과의원	하홍주	1,693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 205	573-7582	2003.04.04
7	덕영내과의원	김현수	580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 217	574-0071	2005.07.15
8	신반의원	김수환	97.1	의령군 부림면 신반로 151-1	574-0020	1991.12.10
9	신부림의원	문두만	299.2	의령군 부림면 신반로 147-1	574-1707	2005.09.22
10	복음의원	황현일	226.08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23-6	573-9977	2008.03.03
11	현대의원	김광현	128.2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27	573-1451	1991.01.31
12	제일의원	이태균	98.6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 235-1	572-2996	2012.06.15
13	다나을외과의원	김지	123.75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 9길 6-13	573-1900	2015.05.20
14	조은인연의원	조현구	411.8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15-4	573-6999	2015.09.25

○ 대상 : 치과의원·한의원

치과의원						
병.의원명	개설자	건축면적 (㎡)	소 재 지	전화번호	개설일	
1	의령치과의원	박철범	76.9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 209	572-1900	1994.07.22
2	박치과의원	박순홍	103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17길 13-2	573-5695	2008.06.02
3	신반치과의원	박천성	37.24	의령군 부림면 신변로 163	574-2625	2009.06.01
4	서울치과의원	김제일	133.68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 228-1	573-2875	2005.03.20
5	뉴욕진치과의원	최용진	178.6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 205	574-2877	2014.10.18
한 의 원						
병.의원명	개설자	건축면적 (㎡)	소 재 지	전화번호	개설일	
1	의령한의원	이재용	103.08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 225	574-5335	2009.04.03
2	석주엽한의원	석주엽	99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 228-1	572-1075	2013.09.30
3	인제한의원	노재환	93.43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 200	572-0766	1989.05.26
4	손한의원	손상식	130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23-4	573-4870	1993.09.17
5	신반한의원	이종렬	60	의령군 부림면 대한로 1765	574-5738	2004.02.27
6	동제한의원	박순일	199.14	의령군 부림면 신변로 148	574-7582	2012.08.06
7	대성한의원	김지훈	105	의령군 부림면 대한로 1773	573-1075	2013.05.29

○ 대상 : 의약품 판매업소

의약품 판매업소(약국)						
약국명	개설자	건축면적 (㎡)	소 재 지	전화번호	개설일	
1	자굴산약국	김창현	109.86	의령읍 의병로 228-1	572-4912	2014.06.02
2	우리약국	박희성	33	의령읍 의병로 223	573-2013	1966.06.15
3	이선약국	이선민	82.10	의령읍 충익로 23-2	573-6033	1990.07.14
4	부림약국	김형국	71.95	부림면 신변로 149	574-6105	2005.11.30
5	천일약국	김원영	47.21	부림면 신변로 160	574-6059	1995.11.23
6	의령제일약국	박영찬	99	의령읍 의병로 257	572-2527	2004.05.01
7	한솔약국	정순환	39.6	의령읍 의병로 218	573-1656~7	2012.04.30
8	한양약국	오유미	36.54	의령읍 의병로 217	574-4271	2006.08
9	보람약국	김동춘	34.3	의령읍 의병로14길 8	573-5740	2013.11.11
10	의령약국	임봉수	34.6	의령읍 의병로 233	573-8706	2013.4.1

○ 대상 : 응급의료기관

계	권역응급의료기관	경남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역응급의료기관
12	5 개소 (삼성창원병원, 경상대학병원, 양산부산대학병원, 창원파티마병원, 창원한마음병원)	6 개소 (MH연세병원, 마산의료원, 청아병원, 진주고려병원, 창원산재병원, 진해연세병원)	1 개소 (의령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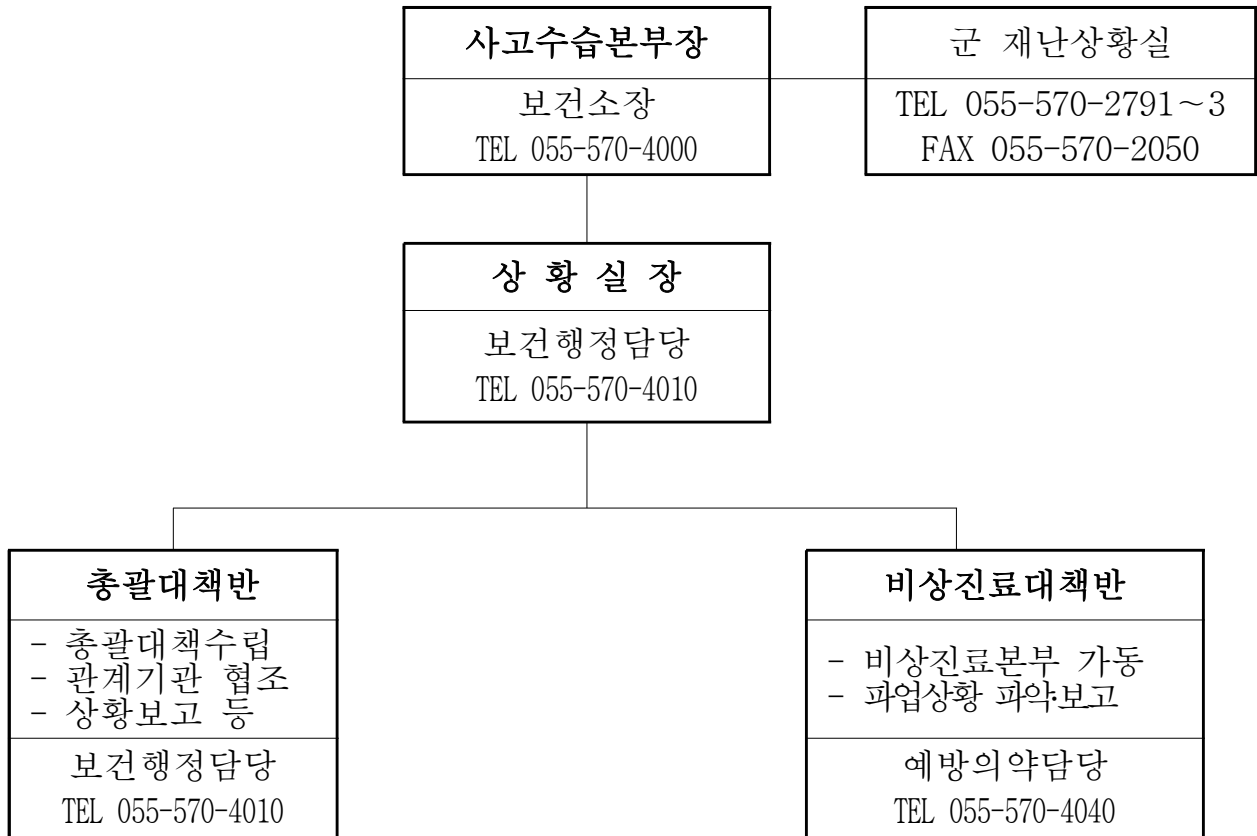
다. 관련단체 현황

순번	소재지	연락처		비 고
		전화	FAX	
1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 205 의령군 의사회 (회장 하홍주)	573-7582	573-7583	
2	의령군 부림면 신변로 160 의령군 약사회 (회장 김원영)	574-6059	0303-3132- 6059	

2. 재난대응체제

가. 기구 및 현원

○ 기구



○ 현원

(단위 : 명)

구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능직
보건소	52	1	-	26	16	8	0	1

3. 유형별 · 단계별 · 항목별 대책

《 재난유형 》

- 보건의료노조의 집단업무 거부로 대규모 병원 진료중단
- 전국 의사의 집단 진료거부로 대규모 병원 진료중단
- 전국 약국의 연대업무거부로 대규모 의약품 공급 장애
- 혈액수급 부족으로 대규모 혈액 공급 장애

예 방

가. 중점사항

- 보건의료분야의 예상되는 위협 및 취약 요소를 발굴하고, 보건의료 관련 시설·운영 체계의 위기발생을 차단·억제

나. 세부 활동내용

- 보건의료분야 정부 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등 보건의료분야 위기발생을 차단, 억제 및 정책홍보
- 보건의료 관련 단체 및 노사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사협회·약사회 등과의 유기적 관계를 유지

다. 기관별 임무·역할

구 분	내 용
보건소	○ 병원 진료중단 및 의약품공급 중단, 혈액공급 장애에 대한 시군별 자체계획 수립 ○ 혈액수급 방안을 위한 군·관·단체 등에 헌혈 협조 ○ 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의사회 및 약사회	○ 이탈한 의료인 업무복귀 대책방안 수립 ○ 의료기관간 비상 혈액공급 체계 가동
기 타 (공보담당)	○ 대국민 홍보강화

대 비

가. 중점사항

- 보건의료 분야 위기와 관련하여 주관·유관 기관별 정보공유 및 협조 체계를 구축·운영
- 위기경보 수준별로 주관·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위기 확대 방지

나. 세부 활동내용

- 위기발생에 대비 비상진료 체제 구축

- 보건의료 분야 위기경보는 징후별로 4단계로 구분하고, 수준별로 대응
- 유관기관 및 정보기관 등을 통해 보건의료분야의 위기정보를 수집·분석 및 전파
- 공식적, 비공식적 조직을 통하여 보건의료 위기 확산방지 대책을 강구·시행
- 의사회·약사회 등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위기 대비 체계를 구축 및 가동
- 위기 발생에 대비하여 응급의료 기관의 응급실에 야간진료 기능을 부여하는 등 진료수단 보완 및 비상진료 대책을 강구·구축
- 보건의료 분야 정부시책에 대한 홍보 활동 및 위기경보 수준별로 대국민 행동에 대한 홍보활동

다. 위기경보 수준별 기관의 임무·역할

1) 관심(Blue)

구 분		내 용
징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의료노조 지부의 파업 징후 ○ 의사의 지역별 집단 진료거부 징후 ○ 약국의 지역별 파업 징후 ○ 혈액수급 부족 징후
기관별 조 치 내 용	보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상황 모니터링 및 위기경보 발령 ○ 비상대책본부 가동 준비 ○ 정보수집 및 분석 ※ 비선조직, Internet, 정보기관 등 활용 ○ 위기 확산 방지대책 수립 ○ 의사의 진료거부 대비 금지명령 검토 ○ 약국의 불법집단업무거부 대비 업무개시 명령 검토 ○ 혈액수급 비상대책 강구 및 시행 준비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서 : 의료기관의 폐업·업무거부 추진 동향 파악

2) 주의(Yellow)

구 분		내 용
정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의료노조 지부별 파업 ○ 의사의 지역별 집단 진료거부 ○ 약국의 지역별 업무거부 ○ 부분적 혈액수급 부족
기관별 조 치 내 용	보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상황 모니터링 및 위기경보 발령 ○ 비상대책본부 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조·의사·약국의 폐업·업무거부, 진료거부 상황 파악 및 실시간 상황을 보고·전파 - 진료대책 점검, 유관 기관과 협조 ○ 의사협화·약사회 간부 등을 접촉하여 정부 입장을 적극 홍보 및 설득 ○ 폐업·파업 돌입시 사범처리 대상자 명단을 사전 파악 ○ 의사 진료거부에 대한 금지명령 발동 ○ 약국의 불법 집단업무거부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 발동 ○ 위기상황 대처에 대한 홍보 대책반 운영 ○ 위기상황에 따른 대국민 진료대책 안내 ○ 헌혈 관련 대국민 홍보 활동 강화 ○ 헌혈의 집 운영시간 연장 조치
	노동관련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 집단업무거부 확인 및 노사합의 유도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서 : 의료기관의 폐업·업무거부 추진 동향 파악

3) 경계(Orange)

구 분		내 용
정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의료노조 지부별 집단업무거부 규모 확대 ○ 의사의 지역별 집단 진료거부 규모 확대 ○ 약국의 지역별 파업 규모 확대 ○ 혈액수급 부족 확대
기관별 조 치 내 용	보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상황 모니터링 및 위기경보 발령 ○ 비상대책본부 가동·활동 강화 ○ 폐업·업무거부 돌입 방지를 위한 설득 ○ 관련 단체의 불법 폐업 금지명령 발동 ○ 약국의 불법업무거부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발동(확대) ○ 진료보완 수단 동원 준비 ○ 홍보대책반, 비상 정보수집 대책반 운용 ○ 비상 혈액 공급 체계 가동 준비 ○ 단체 헌혈 운영 강화
	노동관련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 집단업무거부 금지명령 발동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서 : 의료기관의 폐업·업무거부 추진 동향 파악 ○ 119안전센터 : 응급환자 이송 지원

4) 심각(Red)

구 분		내 용
징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의료노조 집단업무거부 징후 ○ 전국 의사의 집단 진료거부 징후 ○ 전국 약국의 연대업무거부 징후 ○ 전국적 규모의 혈액수급 부족 징후
기관별 조 치 내 용	보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상황 모니터링 및 위기경보 발령 ○ 진료 및 불편 해소 대책 시행 ○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 야간진료 기능 부여 ○ 대체인력(군의원, 공중보건의 등) 동원 배치 ○ 비파업 병원과 연계체계 구축 ○ 국립병원, 군병원 등 관련 의료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비상진료 체계 구축 ○ 비상 헌혈 공급 체계 가동 ○ 임시 헌혈소(헌혈 차량 등) 설치·운영
	노동관련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 집단업무거부 금지 활동 지속 추진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서 : 의료기관의 폐업업무거부 추진 동향 파악 ○ 119안전센터 : 응급환자 이송 지원

대 응

가. 중점사항

- 위기유형과 원인을 신속하게 식별하여 초기에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여 보건의료서비스 유지 및 국민건강 도모
- 보건의료 분야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상 진료체계를 가동하여 최소한의 보건의료 체계를 유지

나. 세부 활동내용

- 위기상황 발생시 범국가적 대응으로 위기상황을 조기에 식별 신속하게 대응하여 극복
- 상황관리 및 보고체계를 가동하고 보건의료 기관간의 연계체계를 가동하는 등 보건의료 기능의 지속성 보장을 위해 각종 비상조치를 시행
- 병원서비스 중단 시 비상진료대책반을 구성 진료실태 파악 및 대책 강구·시행
- 응급의료 기관의 응급실에 야간진료 기능 등을 부여 비상진료체계 가동
- 유형별 위기 상황을 고려 공중보건의 배치를 재조정하는 등 조치를 통하여 보건의료체계 마비 상황 방지

- 유형별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군의 인적·물적 대체자원을 활용하고, 민간인에 대한 군병원 개방을 통해 위기상황을 극복
- 전국 약국의 연대업무거부 등에 의한 의약품 공급 장애가 발생할 경우 약국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또한 약사회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 위기 상황에 능동적 대응
- 혈액수급 부족으로 인한 혈액공급장애의 위기가 발생할 경우 단체 헌혈을 통하여 위기에 대처하고, 헌혈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
- 위기상황에 대한 응급대처방안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 국민불안 해소

다. 위기 유형별 역할

- 1) 보건의료노조 집단업무 거부로 대규모 병원 서비스 중단
 - 비상대책본부 가동
 - 비파업 병원과 연계체계 가동
 - 국립병원, 군병원 등 관련 의료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비상진료 체계 가동
 -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 야간진료 기능 부여
 - 위기발생 기간중 비응급 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관리료 부과 금지 조치
- 2) 전국 의사의 집단 진료거부로 대규모 병원 서비스 중단
 - 진료보완 대책 시행
 - 군의관 지원 배치 및 군병원의 민간 개방 협조
 - 공중보건의 배치 조정
 - 지역 거점병원,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비상진료
- 3) 전국 약국의 연대업무거부로 대규모 의약품 공급 장애
 - 업무개시명령 발동
 - 약사회 동향 파악 및 대화채널을 유지하여 위기해소 추진
- 4) 혈액수급 부족으로 대규모 혈액공급 장애
 - 혈액수급 비상대책 마련·시행
 - 대국민 헌혈 홍보 활동 강화

- 군·관에 대한 단체헌혈 확대 실시
- 임시 헌혈소(헌혈 버스) 설치·운영
- 한시적으로 전혈 중심 채혈 실시
- 의료기관 등에 대한 비상 혈액 공급체계 가동
 - 신속한 혈액 공급을 위한 특수 운송수단 강구
 - 혈액원별 혈액 재고량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 공유로 권역 구분 없이 혈액 공급

사후관리대책

가. 중 점

- 보건의료 분야 위기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식별하여 복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운영체계를 보완

나. 세부 활동내용

- 위기기간 중 발생한 피해사례 종합 및 복구대책 마련·시행
- 위기 발생 원인 분석·조사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 강구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운영체계를 보완
- 위기 발생과 관련된 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대화 창구 개발

다. 응급조치에 일시사용 할 장비 및 인력의 운영방안

- 재난발생 기간 중 진료실시 의료기관에 대한 외래환자 진료시간 연장
 - 종합병원, 병원의 외래시간 연장 : 20시까지
 - 약국 : 매일 22시까지
- 재난발생 기간 중 공공보건의료기관 진료시간 연장
 - 보건소·보건지소 : 매일 20시까지
- 재난발생 기간 중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진료 강화 및 야간진료 기능부여
 -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비상진료체계 가동 지시
 - 집단업무거부 기간 중 비응급 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관리료 (응급의료센터 : 3만원, 응급의료기관 2만원) 부과 유예 조치
- 가용 의약품 및 혈액 확보 노력
 - 공공의료기관의 재고 의약품 수집
 - 임시 헌혈차 설치·운영, 헌혈의 집 운영시간 연장 및 야간·휴일 확대, 군·관에 대한 단체헌혈 확대 실시

제10절 통신전산망(전산·통신)

I. 개 요

- 가. 각종 재난 발생 시 국가기반시설인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유지로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
- 나. 각종 재난에 대한 철저한 준비 및 사전 예방활동 강화로 재난발생 시 긴급 통신수단 등을 활용한 효율적 대응체계 구축

2. 추진계획

- 가. 주요 기간통신망 및 국가정보통신망에 대한 국가기반시설 지정·관리 및 시설물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 강화
- 나. 주요 기간통신사업자 시설물에 대한 적극적인 안전관리 조치 강구
- 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긴급복구 체계 구축

3. 주요현황

가. 총괄 현황

시 설 명	소재지	시설규모		현장상황 관리관	연락처	
		인력	설 비			
의령군 전산실	의령군 의령읍	7	전산장비 23종	하정민	570-2221	010-2881-4515
의령군 통신실			통신장비 28종			
KT유선운영센터 창원운영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159	·TDX-100, 10G전송장치, ATM	양경호(교환)	291-1200	010-2835-9060
				김진기(전송)	289-3528	010-2833-7529
				김희석(선로)	289-3331	010-3068-8855
KT함안지사 (CM)	의령군 의령읍	19	·교환시설(17,440회선) ·전송시설(130시스템) ·광케이블(1,324Km)	양경호(교환)	574-1200	010-2835-9060
				최점현(전송)	572-3299	010-9512-6005
				임종익(선로)	573-0060	010-2832-6000

나. 의령군청 현황

○ 기반시설 현황

운 영 면 적(m ²)			항온항습기		무정전전원장치(UPS)		하 론 소화설비
전 체	전산실	통신실	제 품 명	용 량(RT)	제 품 명	용 량(KW)	
149	81	68	TS-AZN-15 TS-AU-10	15 10	대농 엔지니어링	60	2식(50Kg)

○ 전산장비 현황

기기명	용 도	도입연월	기기명	용 도	도입연월
HP rp7410	전자문서 결재 시스템	2002. 12	Qualstar RLS-8236	웹서버용 백업시스템	2005. 12
LGIBM x235	문자전송시스템	2004. 11	ZSS150	민원공개시스템	2005. 12
HP rp7420	자료관시스템	2005. 12	ZSS230	홈페이지시스템	2006. 9
HP ProLiant DL380 2식	공통기반시스템 인터넷 웹서버	2006. 9	ZSS230T	쇼핑몰시스템	2006. 12
IBM p570 2식	공통기반2시스템 AP, DB 서버	2006. 9	ZSS132	유해정보차단 시스템	2006. 12
IBM 306M	네트워크 모니터 서 버	2006. 9	ZSS132	향우홈페이지 시스템	2006. 12
HP BL870c i2 2식	공통기반1시스템 AP, DB 서버	2010. 12	IPSWALL 2000	방화벽시스템	2007. 6
데이터도메인 RLS-8244 2식	통합백업시스템	2011. 3.	ZSS132-Q	DNS 서버	2007. 9
IBM P770	한국토지정보시스템	2011. 4	privacy center 100	개인정보유출 차단시스템	2007. 10
X3650	도시계획정보체계 AP서버	2012. 2	WAPPLES	웹방화벽시스템	2008. 1
IBM P770	온-나라 시스템 AP, DB 서버	2012. 2	ZSS132	재난관리 웹시스템	2008. 1
HP ML350T05	골프장예약관리 시스 템	2008.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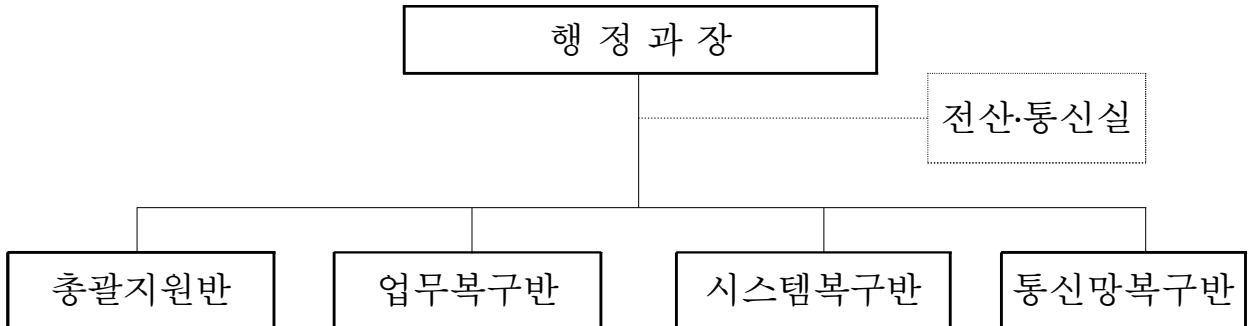
○ 통신장비 현황

모델명	용도	도입연월	모델명	용도	도입연월
Catalyst 6509	백본스위치 (메인)	2002. 5.	Catalyst 6509	백본 이중화스위치	2006. 7.
Catalyst 6509	ATM 스위치I (업무용)	2004. 1.	Catalyst 6509	ATM 스위치 II (인터넷용)	2011. 1.
KT CE (전송장비)	도-구간 국가정보 통신망	2011. 1.	SniperDD X 2000	DDoS 방지 장비 (경남도청 자산)	2011. 1.
Secuway Center2000 2식	네트워크암호장비 운용서버	2002.10.	Future UTM3000 2식	네트워크암호장비 (본청 VPN)	2008. 8.
Secuway Gate 2000 2식	네트워크암호장비 (보건,농촌 VPN)	2002.10.	WeGuardia XIM500 12식	네트워크 암호장비 (면사무소 VPN)	2012. 1.
지니안 GPS2000 1식	네트워크접근제어 NAC	2013. 3	IPS NE4000	침입방지시스템 (인터넷용 IPS)	2013. 3.
IPS E2000	침입방지시스템 (업무용 IPS)	2010. 3.	IPS NE 2000	침입방지시스템 (공인망 IPS)	2012. 3.
Sniper UTM4000	네트워크 방화벽 (업무용 IDS)	2009. 2.	Cisco 3750 2식	L3 네트워크 스위치 (KT 3차망)	2012. 1.
Catalyst 6509	서버팜스위치	2007. 3	Cisco 3750 2식	L3 네트워크 스위치	2006. 7
Avaya S8320 2식	인터넷교환기 (미디어서버)	2007. 2.	Avaya G650 3식	인터넷교환기 (게이트웨이)	2007. 2.
Avaya EMMC	일제지령 및 음성회의	2007. 2.	Avaya AUDIX	음성녹취 및 안내멘트	2007. 2.
DWSM 서버 1식	DID회선 컬러링 서비스	2008. 2.	Avaya 363T 2식	L2 네트워크 스위치	2007. 2.
Catalyse 2960 18식	L2 네트워크 스위치	2013. 1.	Avaya 364T 2식	L2 네트워크 스위치	2007. 2.
Cisco 3560 20식	L3 네트워크 스위치	2007.10.	Cisco 2960 3식	L2 네트워크 스위치	2009. 2.

4. 재난 대응 체제

가. 기구 및 정·현원 현황

○ 기 구



○ 정·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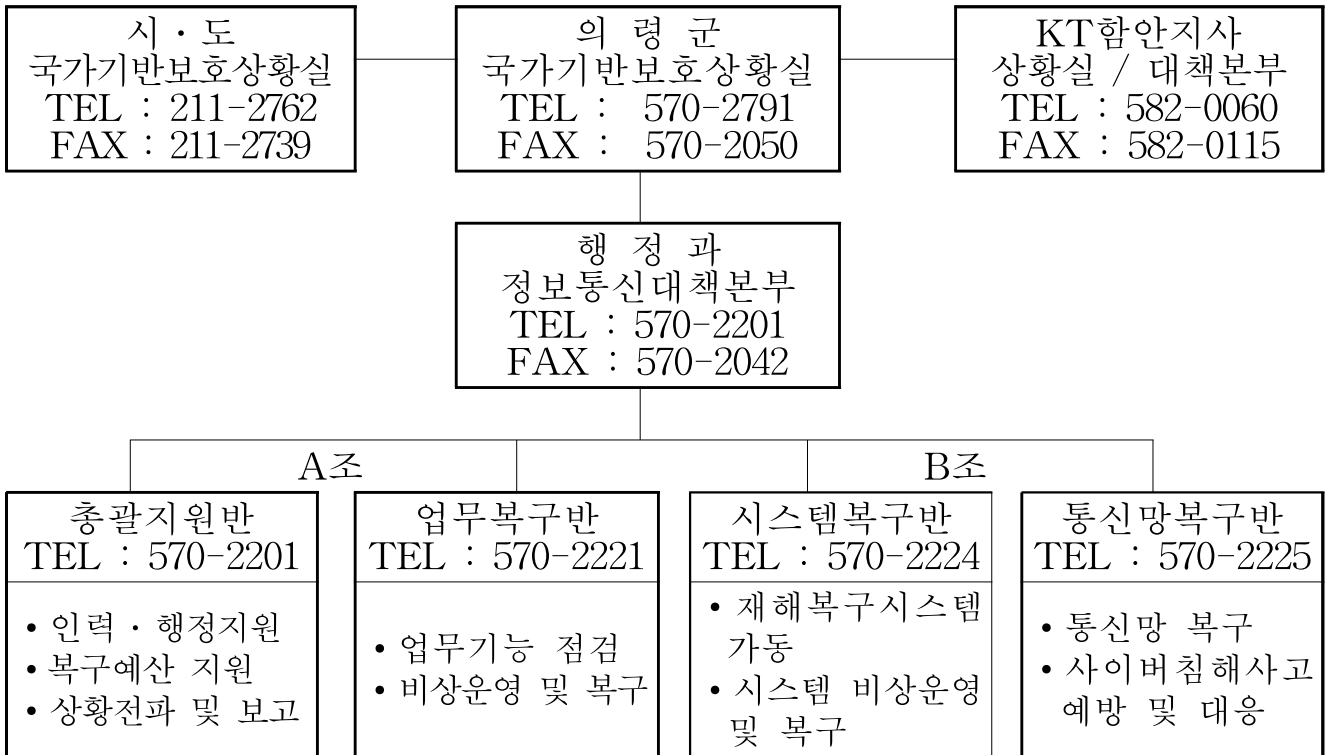
구 분	정 원(명)					현 원(명)				
	계	5급	6급	7급	8급 이하	계	5급	6급	7급	8급 이하
행정과 정보통신담당	9	1	2	4	2	9	1	3	3	2

○ 정보통신 재난대책반 업무 분장 내역

구 분	직 위 (급)	성 명	업 무 분 장	연락처
행정과	행정과장	강병홍	업 무 총 관	570-2022
행정과 (행정담당)	담당	이미옥	총괄지원반장	570-2201
행정과 (정보통신담당)	담당	하정민	업무복구반장	570-2221
"	주무관	김진희	업무복구반	570-2226
"	주무관	강은영	시스템복구반장	570-2224
"	주무관	이병완	시스템복구반	570-2228
"	주무관	임상근	통신망복구반장	570-2225
"	주무관	손호빈	통신망복구반	570-2227

나. 국가기반재난 상황관리체계 구축

○ 상황관리 체제



○ 정보통신 재난상황실 설치 및 단계별 운영

- 위 치 :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청 통신실
- 단계별 운영

구 분	주 요 업 무	비 고
1단계 (준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발생 가능 시 - 정보통신 기반시설 점검강화 및 보고 - 정보통신망 백업 및 예비물품 확보 - 예방·경보 상황전파 	정보통신담당 1/2 비상근무
2단계 (비상운영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시스템 비상체제 운영 - 정보통신망 백업회선 및 백업시스템 운영 - 전 직원 비상근무 실시 - 국가사이버 위협 경보 경계단계 	정보통신담당 전직원비상근무

구 분	주 요 업 무	비 고
3단계 (복구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시스템 복구 (국가사이버위협 경보 경계 및 심각단계) - 정보통신 기반시설 피해상황 보고 - 정보통신망 시스템별 복구절차 수행 - 정보통신망 및 보안시스템 정상가동 실시 - 테러 발생 경계 및 비상근무 유지 	정보통신담당 전직원비상근무

○ 정보통신 재난 정보수집 및 상황보고

구 분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상황보고	경남도청	정보통계담당관실 정보기획담당	이선기	TEL:211-2612 FAX:211-2619
	경남도청	정보통계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	김용일	TEL:211-2642 FAX:211-2619
정보수집	의령군청	행정과 정보통신담당	임상근	TEL:570-2225 FAX:570-2042
	KT함안지사	특별기동팀	임종익	TEL:572-3299 010-2832-6000 FAX:572-0115

II. 예방대책

1. 안전관리대책

가. 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

- 통신재난 대비 긴급복구 대책 및 취약지역 통신시설관리 등 실질적인 통신 재난 대책 수립

나. 봄철 해빙기, 여름철 풍수해, 겨울철 설해 등 계절별 안전관리를 위해 분기별 통신시설 안전점검 실시

다. 국가기반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기점검 실시

- 장비별 수시 및 정기점검(일·주·월) 확행

라. 교육·홍보 및 훈련 강화

- 재난대비 안전관리분야 교육 시 정보통신 보안 포함
- 사이버위협 대응, 개인정보 보호 등 정기적인 보안교육 훈련 실시

2. 주요 정보통신 시설 보호 대책

가. 보호구역(전산실, 통신실 등) 보안 강화

- 출입자 기록부 비치 및 비인가자 출입 통제
- 무인경비시스템, 이중시건장치, 주야간 감시대책 CCTV설치운영
- 통신·전산장비 관리책임자 지정 운영 및 비인가 장비 반·출입 금지

나. 정보통신시설 보안관리 강화 및 대책 수립

- 정보통신시스템의 실·과별 관리책임자 지정 운영
- 사고발생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비상연락체계 유지
 - 음성메시지(VMS) 및 문자메시지(SMS)를 통한 신속연락체제 확립
- 서비스 보안정책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등 보안강화
 - 공인망 침입방지시스템 및 침입차단시스템 운영 철저
 - 내부행정망 유해트래픽 차단 및 침입방지시스템 운영

나. 정보통신기기 보안관리

- 행정전화 및 개인전화 사용 시 음성통신 보안강화
(통신보안의 생활화)
- 무선통신기기 사용부서 호출부호 정기적 변경 철저
- FAX 사용 시 보안사항 유출 금지(보안문건 암호장비 활용)
- PC별 취급관리 책임자 및 관리자 지정 운영
- PC 접근제어 프로그램 설치 및 비밀번호 부여로 무단열람 방지
-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단말기 파일공유기능 사용금지

Ⅲ. 대비대책

1. 정보통신 관리·지휘체계 구축

- 가. 중앙·도·유관기관과 연계한 정보통신 재난대책반 및 상황관리체계 구축 운영
- 나. 국가정보원·기간통신사업자 등 정보통신 전문기관과 정보공유 및 공조 체계 구축

- 다. 재난·재해로 인한 통신두절 등 사고발생 시 피해확산방지와 응급복구를 위한 비상연락체계 유지
- 라. 재난발생 시 동원 가능한 긴급통신장비와 인력 파악 및 장애유형별 응급복구 체계 마련
- 마. 사이버 공격 대비 주기적 서버 백업 관리 및 백신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운영
- 바. 주요시설 및 네트워크 파손 시 충무계획(Ⅲ급비밀)에 의거 조치

2. 재난 유형별 실질적 모의연습 실시(연 1회)

- 가. 풍수해, 지진 등으로 인한 통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대응 도상훈련
- 나. 해킹 등 각종 사이버공격에 대한 사이버 위기대응훈련
- 다. 위기상황 전파 및 보고체계 점검

3. 정보통신망 및 시설장비 이원화 체계 구축

- 가. 백본 스위치, 교환기 등 주요 정보통신시설 이중화 구성
- 나. 주요 정보통신망(국가정보통신망, 기간통신망 등)선로 및 시스템 이중화 구성
- 다. 유선망 두절 시 우회통신망 확보(위성이동기지국 활용)

4. 정전 및 낙뢰 피해 대책

- 가. 전산실 및 통신실 무정전 전원장치(UPS 60KVA)구축 및 정전 시 비상발전기 운영
- 나. 분기 1회 이상 통신 접지저항 측정 및 보강

5. 정보통신 비상 복구자재 확보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전 화 기	AVAYA-9630	대	6	UTP케이블 (옥외용)	Cat 5e 300M	Box	3
개인 공구	드라이버 등	SET	3	UTP케이블 (옥내용)	Cat 5e 300M	Box	3
모듈러 잭	RJ-45	개	300	모듈러 잭	RJ-11	개	100

IV. 대응대책

1. 재난관리체계 강화

- 가. 재난종합상황실과 연계한 자체 정보통신재난상황실 설치 및 국가기반재난 상황관리체계 운영 강화
- 나. 국가정보원, 행정자치부, 도청 등과 연계한 사이버 테러 발생에 따른 피해상황 및 보고 채널 확보
- 다. 분야별 사이버안전 보안업체와 위협정보 전파 및 사고신고 연락체계 구성 유지
- 라. 단계별 비상운영 복구반 편성·운영

2. 재난지역 긴급 통신 대책

- 가. 행정기관 자체 재난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파악 및 복구자재 긴급투입, 충무 계획(Ⅲ비밀)에 의한 통신대책 적용
- 나. 행정기관 외 재난발생 시 재난상황 파악 및 대처 소요인력 및 우회통신 회선 구축
 - 위성용 휴대 전화기(6대) 채널 확보(안전관리과)
- 다. 국가기반재난 상황관리체계에 따른 단계별 상황실 운영

◆ 재난대책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관기관>

- 위성통신망 및 중계차 사용을 위한 도 지원협조
- KT 창원지사, 함안지사 등 유선통신사업자
- SKT, KTF, LGT 등 이동 무선통신사업자
- 5870부대, 경찰청 등 국가기관

<지원협조사항>

- 유선통신사업자 긴급 유지보수 인력지원 요청
- 군부대, 경찰청 등 유관기관 무선통신망 지원 협조
- 통신망 장애시 KT간 긴급회선 우회구성
- 이동통신사 무선통신망(무전기, TRS, 휴대폰 등) 임차 활용

V. 복구대책

1. 신속한 정보통신시설 복구

가. 상황전파 및 유지보수 인력으로 신속한 복구 조치

- 총괄책임자 : 행정과장
- 책임자 : 정보통신담당

나. 행정기관 자체 재난복구 조치

- 전 시설 복구 : 전 부서 차원의 재난대응 복구 조치
 - 자체인력 활용 긴급복구 및 도청 통신상황실 근무팀 지원 요청
 - 유지보수업체 및 유관기관의 신속한 복구 협조체제 가동
 - 긴급복구 예산투입 : 예산담당부서 비상재원 활용
- ※ 충무계획에 준하는 복구조치

- 부분재난 복구 : 확보물자 및 복구팀 인력활용으로 신속 복구
 - 군청사 외 직속기관, 읍·면 : 군 비상·운영 복구반 근무인력 투입
 - 자체인력 부족 시 외부 전문업체 및 유관기관 협조 조치

다. 행정기관 외 지역재난 사항 복구

- 재난지역 관할 유관기관 협조로 긴급복구 조치
 - 유·무선 통신시설 : KT 및 이동통신업체 복구 지원
 - 피해상황에 적절한 복구 물자 및 인력 동원 요청
 - 위성 휴대용 전화기(6대) 복구 활동에 활용 조치 (안전관리과)
 - 신속한 복구절차 진행 및 대민행정서비스 시행

※ 통신시설별 긴급복구 순위

우선순위	내 용	복구수준
제1순위	○기관장 지휘지령망 ○통신고립 산하기관	60%
제2순위	○군·검·경, 언론기관 등 유관기관 ○직속기관·사업소 정보통신망 ○그외의 행정, 유관기관 통신망	30%
제3순위	○제1순위 내지 제2순위 이외	10%

2. 사이버테러 복구 대책

- 가. 신속한 복구절차 진행 및 정보시스템 서비스 중단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복구반 운영
- 나. 국가정보원, 도 사이버관제센터 등 전문기관, 정보통신보안 전문업체와 협력체계 구축
- 다. 피해 복구 절차에 의한 정보시스템 비상운영 실시
 - 사이버공격에 의한 피해 최소화 조치 강구
 - 업무 중요도에 따른 복구 절차 이행

3. 정보통신 재난대비 비상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서비스명	담당부서
KT유선운영센터 창원운영팀(김진기)	055-289-3528 010-2833-7529	음성통신, 인터넷, 국가정보통신망	전송실
KT 창원지사 (양경호)	055-291-1200 010-2835-9060	음성통신, 인터넷, 국가정보통신망	교환실
(주)ECS (강경태)	051-507-4431 010-8993-8558	행정전화교환기	부산
(주)윌넷 (김정수)	055-747-8913 010-6398-3578	네트워크 장비	진주
(주)라이노 (김상목)	055-326-4700 010-6767-5855	보안 장비	김해

4. 정보통신 재난 시 인력 운영 방안

- 가. 최소기능 유지 소요(확보)인력

구분	의령군청 정보통신담당			KT 함안지사		
	계	통신직	전산직	계	통신직 (내부/외부)	전산직
자원현황	7	2	5	6	6 (4/2)	-

나. 보호자원 자체양성 및 확보계획

- 재난수습에 필요한 동원 인력, 물자, 장비 등을 파악하여 보유업체 또는 소유자 사전 협약 지원 요청
- 유관기관 및 단체, 관련업체 등과 사전 협조체제 유지

제11절 교통수송대책

1. 일반현황

가. 터미널 현황

구분	대표자	전 화	주 소	면허일자	비고
(주)의령 버스터미널	강성숙	573-2112	의령읍 의병로6길 13	'93.04.30.	

나. 운수업체 현황

○ 농어촌버스

구분	대표자	전 화	주 소	면허일자	등록 대수
경산여객자동차(주)	강병구	573-2112	의령읍 의병로6길 13	'08.02.21.	8

○ 전세버스

업체수	업 체 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사무소	등록 일자	등록 대수
3	(주)금강고속관광	이호창	573-7744	의령읍 의병로 24길 3	'96.02.09.	15
	(주)대야고속관광	조흠주	573-1800	의령읍 의병로 153	'99.07.09.	13
	보경산업(주)	유무수	574-3600	가례면 홍의로 211	'06.01.27.	20

○ 택시

계		일반(회사)택시		개인택시
업체수	면허대수	업체수	면허대수	면허대수
4	112	4	64	48

순번	업 체 명	대표자	대수	주 소	전화번호	FAX	비 고
1	(유)금성운수	오연화	26	의령읍 의병로 17길 3-3	573-2735		
2	(주)의령택시	김유진	21	의령군 의령읍 벽화로 610	573-7373		
3	(유)삼성택시	손태영	5	의령군 공류면 공류로 24	572-8026		
4	(합)신반택시	김규찬	12	의령군 부림면 신번호4길 6	574-3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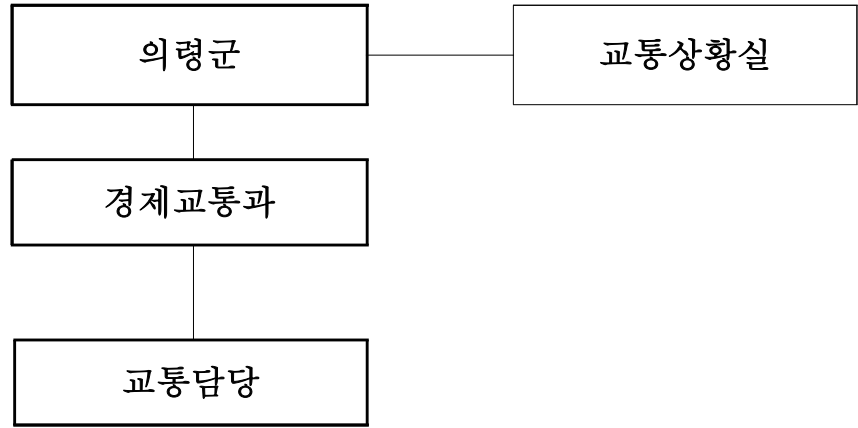
다. 관련단체 현황

기관·단체명	위 치	대표자	회원수	전 화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TEL)044-201-3820 FAX)044-201-5582
경상남도 교통정책과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사림동)			TEL) 211-4462 FAX) 211-4459
경상남도 버스운송사업조합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482	조옥환	50	TEL) 222-4111 FAX) 222-4112
경상남도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창원시 마산합포구 북성로 5 창동오피스텔 303호	박노철	107	TEL) 252-4030 FAX) 252-4033
경상남도 택시운송사업조합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209	문철수	126	TEL) 288-3311 FAX) 288-3336
경상남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창원시 의창구 북면 천주로 480번길 10-15	배판술	7,416	TEL) 274-0626 FAX) 274-0629
의령군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17길 6-1	송복언	48	TEL) 573-3515

2. 재난대응체제

가. 재난관리부서 기구 및 정·현원 현황

○ 기구



○ 정·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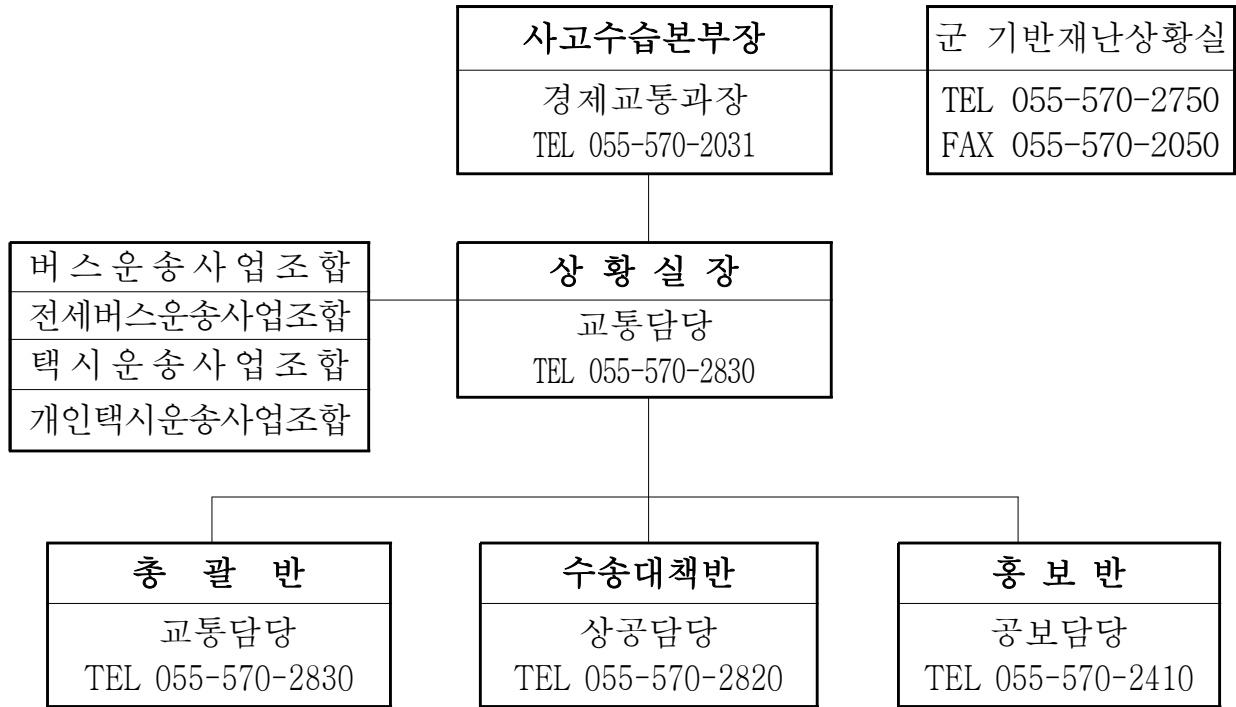
구 분	정 원(명)					현 원(명)				
	계	5급	6급	7급	8급 이하	계	5급	6급	7급	8급 이하
경제교통담당	6	1	1	2	2	5	1	1	1	2

나. 담당업무 분장내역

구 분	직 위 (급)	성 명	업 무 분 장	연락처
경제교통과	과 장	김철수	총 괄	570-2031
교통담당	담당	조영언	교통·수송분야	570-2831
"	주무관	이정은	"	570-2832
"	주무관	강명조	"	570-2833
"	주무관	조미정	"	570-2834

다. 상황관리 체제

1) 조 직



2) 임 무

○ 총괄반

- 교통수송 동향 파악 및 유관기관에 종합상황 보고
- 도 차원의 지원대책 검토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 수송대책반

- 비상수송대책 수립
- 비상수송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교통유관기관과 협조

○ 홍보반

- 비상수송대책의 홍보, 주민 협조 당부 등

3. 유형별·단계별·항목별 대책

《재난유형 : 버스타지노조의 집단행동 등 운행 거부》

- 기본 방침
 - 도내에는 전세버스 투입
 - 관련 타 업체에 개선명령 및 농어촌버스·시외버스 예비차량 동원
 - 운행정상화 조기 실현
 - 운행중단에 따른 위법사항 처분

예방 및 대비

- 월별 안전감독활동 추진
- 비상수송계획 사전 점검 및 단계별 조치계획 정비보완
-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체제 유지
- 대체운행 대비책 사전 강구
 - 운행노선, 운행시간 등 사전협의, 대체운행 종사자 교육

대응

- 수송대책 상황실 설치·운영
- 비상수송대책 수립·시행
 - 전세, 공용버스 및 승합차량 운행 노선 투입 등
- 운행중단 및 대체교통수단 홍보
 - 지역 유선 자막방송, 읍·면사무소, 마을방송 등 이용 (필요시 임시반상회 개최 검토)
 - 택시부제 해제, 자가용 카풀제, 임시운행 노선 적극 홍보
- 운행노선 관련 운수업체 대상 노선조정 등 개선명령
- 택시 합승행위 잠정 허용 및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행위 허가
- 주요지점별 관계공무원 배치
 - 차량배차지도 및 질서유지, 버스타승 운행지도, 홍보 등

복 구

- 정상운행 지시 미이행에 대한 위법사항 처분

4. 응급조치에 일시사용 할 장비 및 인력의 운영방안

1) 직접적 대안

- 운행중단 미 참여 업체 최대한 운행 협조(배차조정 등)
- 전세버스 및 기업체, 관공서 보유차량 노선대체 투입
-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전세버스, 통근버스, 자가용 등)
- 마을버스노선 연장운행 조치

2) 간접적 대안

- 택시부제 해제 및 관공서, 기관·단체 부제 해제
- 관공서, 공공기관·단체 출근시간 조정 협조(10시)
 - 관내 기관·단체·기업체 초·중·고등학교 자율참여 유도
- 자가용 카풀제 운행참여 및 시민 자율참여 홍보 등
 - 목적지별 편승 유도(카풀제 유도), 자가용 요일제 해제
- 관공서, 공공기관·단체 출퇴근시간 조정
- 언론보도(시민참여호소 광고문 게재 등)

《폐기물처리》

1. 일반현황

가. 국가기반 보호대상 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현장상황 관리관	연락처
		인력	설비		
의령군 쓰레기 매립시설	의령군 대의면 의령대로 224-211	3명	27,168㎡	김병섭	570-4931

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현황

소속	차량번호	규격	주운전자	연락처	비 고
군청	경남96무2960	5톤	김현철	570-2368	쓰레기수거
군청	경남96무2768	5톤	전장수	570-4933	쓰레기수거
군청	경남96무2747	5톤	조권도	570-4933	쓰레기수거
군청	경남96무2842	5톤(크레인)	주강도	570-2368	재활용품 수거
군청	경남96무2250	2.5톤	최상일	570-4933	재활용품 수거
의령읍	경남91어8234	5톤	고병용	570-4346	쓰레기수거
의령읍	경남91어8248	5톤	전효철	570-4345	쓰레기수거
부림면	경남91어8292	5톤	박시중	570-4734	쓰레기수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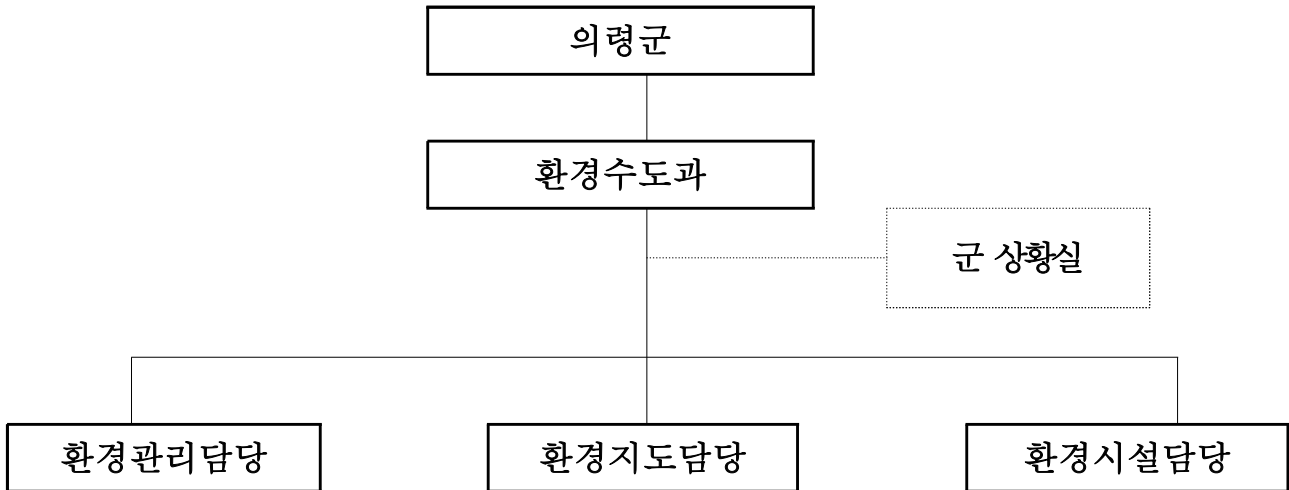
다. 유관기관(계획수립기관) 현황

기관명	소재지	총종업원수	국가기반 재난담당자	연락처
환경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45명	장명규	044-201-7353
낙동강유역환경청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136명	강명주	055-211-1617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855명	김용진	055-211-6674

2. 재난대응체제

가. 기구 및 연락처, 업무담당 내용

○ 기구



○ 정·현원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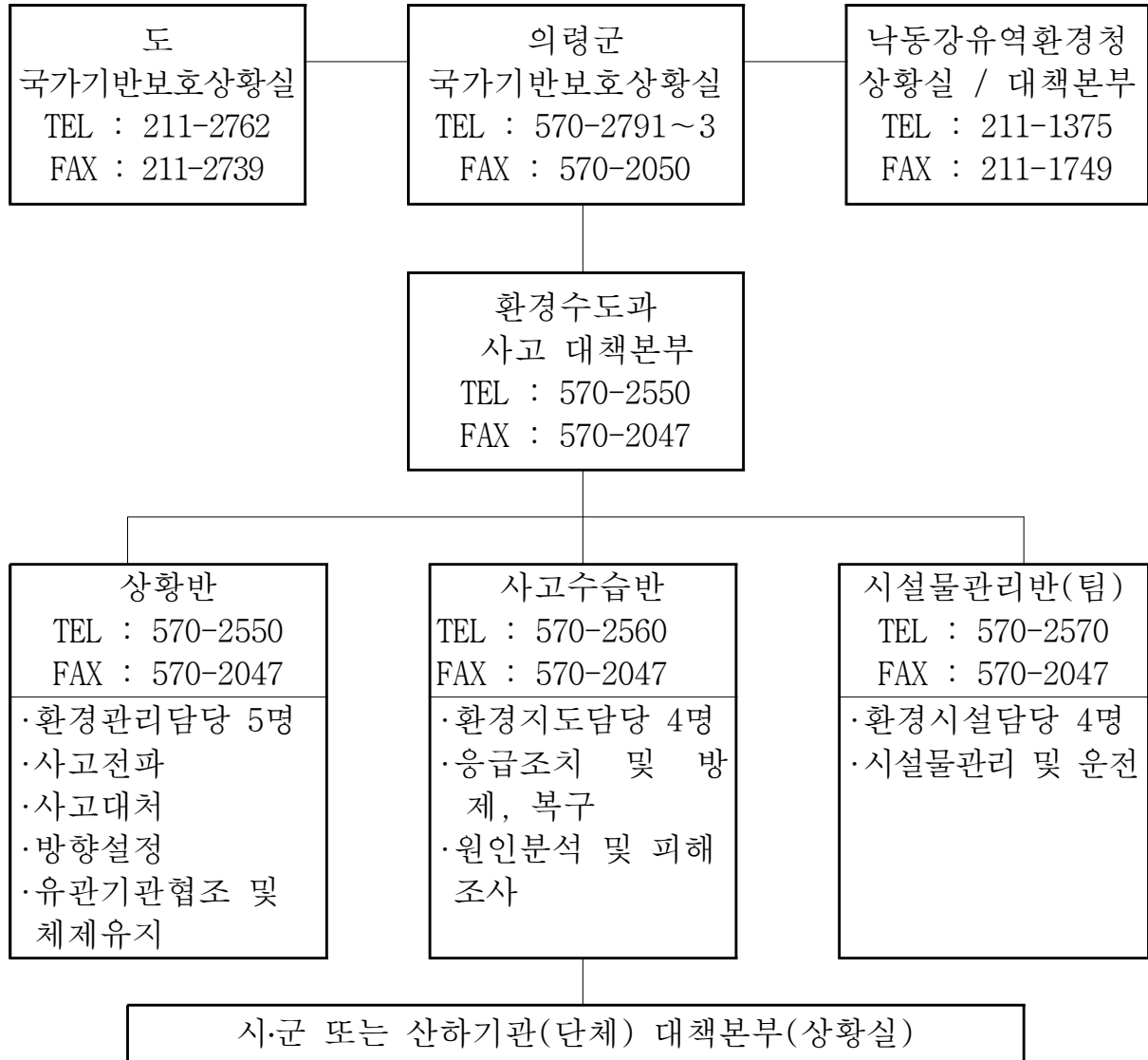
구분	정 원						현 원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이하
환경수도과	24	1	6	5	5	7	24	1	5	8	7	3

○ 담당업무 분장내역

구분	담 당		업무분장	연락처 (H.P)
	직위(급)	성 명		
환경수도과	과장	강현배	업무총괄	570-2027
환경관리담당	담당	노 환	상황반장	570-2551
환경지도담당	담당	장동재	사고수습반장	570-2561
환경시설담당	담당	이원권	폐기물처리분야	570-2571

나. 국가기반재난 상황관리체제 구축현황

○ 상황관리 체제



시·군 (기관별)	대책본부 (부서명)	전화번호	FAX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66	044-201-7370
낙동강유역 환경청	환경관리과	055-211-1621	055-211-1639
경상남도	환경정책과	055-211-6674	055-211-6619

○ 상황실 설치 및 상황관리 전담요원 배치현황

- 위 치 :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청 환경수도과
- 근무자 : 7/14 (2교대)
- 근무방법 : 상황관리체제에 따른 각 반별 1/2씩 근무 실시

○ 국가기반재난 정보수집 및 보고(통보)방법 등

구 분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정보수집	환경부	수질관리과	이종관	TEL.044-201-7072 FAX.044-201-7070
	낙동강유역 환경청	수생태관리과	조영훈	TEL.055-211-1785 FAX.055-211-1708
	경상남도	수질관리과	이정일	TEL.055-211-6726 FAX.055-211-4219
	의령군	환경수도과	임영경	TEL.055-570-2564 FAX.055-570-2047
상황보고 (통보)	환경부	수질관리과	이종관	TEL.044-201-7072 FAX.044-201-7070
	낙동강유역 환경청	수생태관리과	조영훈	TEL.055-211-1785 FAX.055-211-1708
	경상남도	수질관리과	이정일	TEL.055-211-6726 FAX.055-211-4219
	의령군	환경수도과	임영경	TEL.055-570-2565 FAX.055-570-2047

3. 유형별·단계별 대책

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요원 집단 업무거부

(1) 예방단계

-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안정적인 업무수행능력 확보를 위한 계약 및 사후관리체계 구축
-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자에 대한 주기적 교육 실시
 - 자체계획에 의한 년 1회 이상 실시
-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점검 및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여 관리
- 사고발생에 대비한 사고보고, 지휘체계 확립, 응급복구계획 수립 등 신속한 위기대응체제 구축
 - 중대사고 발생 : 폐기물 수집운반 전면마비, 처리시설 가동 불능
-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 사전해소 대책 수립 및 사전해소를 위한 협상과 조정 등 대화 협의체 준비

(2) 대비단계

- 사고발생에 대비한 사고보고, 지휘체계 확립, 응급복구계획 수립 등 신속한 위기 대응체제 구축
 - 중대사고 발생 : 폐기물 수집운반 전면마비, 처리시설 가동 불능
-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 사전해소 대책 수립 및 사전해소를 위한 협상과 조정 등 대화 협의체 준비
- 위기상황 발생 대비 신속한 대응체제 준비 및 비상연락망 구축, 유간기관 공조체제 유지
- 처리시설 운영요원 파업 및 테러 등에 대비한 대체자원 지정 및 동원계획 수립 추진
 - 인근 자치단체 및 시·군·구 인력과 장비 동원
- 사고수습에 필요한 각종장비 및 동원인력 파악, 사고유형별 가상 대비 훈련 주기적 실시
- 군부대, 소방서, 경찰서, 방재전문업체 등 유관기관 공조체제 구축
- 자연재해, 테러, 파업, 사회적 갈등 등 위기상황 감시를 위한 유관기관간 정보공유 및 비상대응체제 준비
- 시설의 미가동사태에 대비한 쓰레기 임시 적환장 지정

(3) 대응단계

- 상황발생시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비상소집 실시 등 비상 체제 가동
- 시설 미가동에 따른 폐기물 임시적환장 운영
 - 수집 쓰레기 임시적환 운반 조치
- 유관기관 상황전파 및 대체인력과 장비 동원

(4) 복구단계

- 유관기관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사고대책본부 설치로 상황보고, 원인분석 및 복구대책 수립 추진
 - 인력, 장비, 자원, 물자 등 동원체제 가동
-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대책 수립 및 사고유발자에 대한 관계 법규에 따른 조치

4. 응급조치에 일시사용 할 장비 및 인력의 운영방안

가. 의령군 쓰레기위생처리장(환경수도과 인력 포함)

구분	최소기능유지 소요인력					확 보 인 력				
	계	환경직	전기직	기계직	운전직	계	환경직	전기직	기계직	운전직
계	4	1	1	1	1	4	1	1	1	1
내부자원	3	1		1	1	3	1		1	1
외부자원	1		1			1		1		

- 보호자원 자체양성 및 확보계획
 - 재난수습에 필요한 동원 인력, 물자, 장비 등을 파악하여 보유업체 또는 소유자에게 사전 협약 지원 요청
 - 유관기관 및 단체, 관련업체 등과 사전 협조체제 유지
 - 타 시·군 안전관리계획 수립시 시설운영기관 및 업체와 시·군이 협의하여 세부계획으로 수립 추진

《하수처리》

1. 일반현황

가. 국가기반 보호대상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현장상황 관리관	연락처
		인력	설비		
의령하수 종말처리시설	의령군 의령읍 의합대로 44-54	6명	4,000m ³ /일	김동수	573-0225
부림하수 종말처리시설	의령군 부림면 대한로 1872-25	3명	1,000m ³ /일	김봉기	574-7472

나. 유관기관(계획수립기관) 현황

기관명	소재지	총종업원수	국가기반재난 담당자	연락처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45명	민희삼	044-201-6492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136명	김성철	055-211-1706
경상남도 (수질관리과)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855명	강수열	055-211-4383

2. 재난대응체제

가. 기구 및 연락처, 업무담당 내용

○ 기구



○ 정·현원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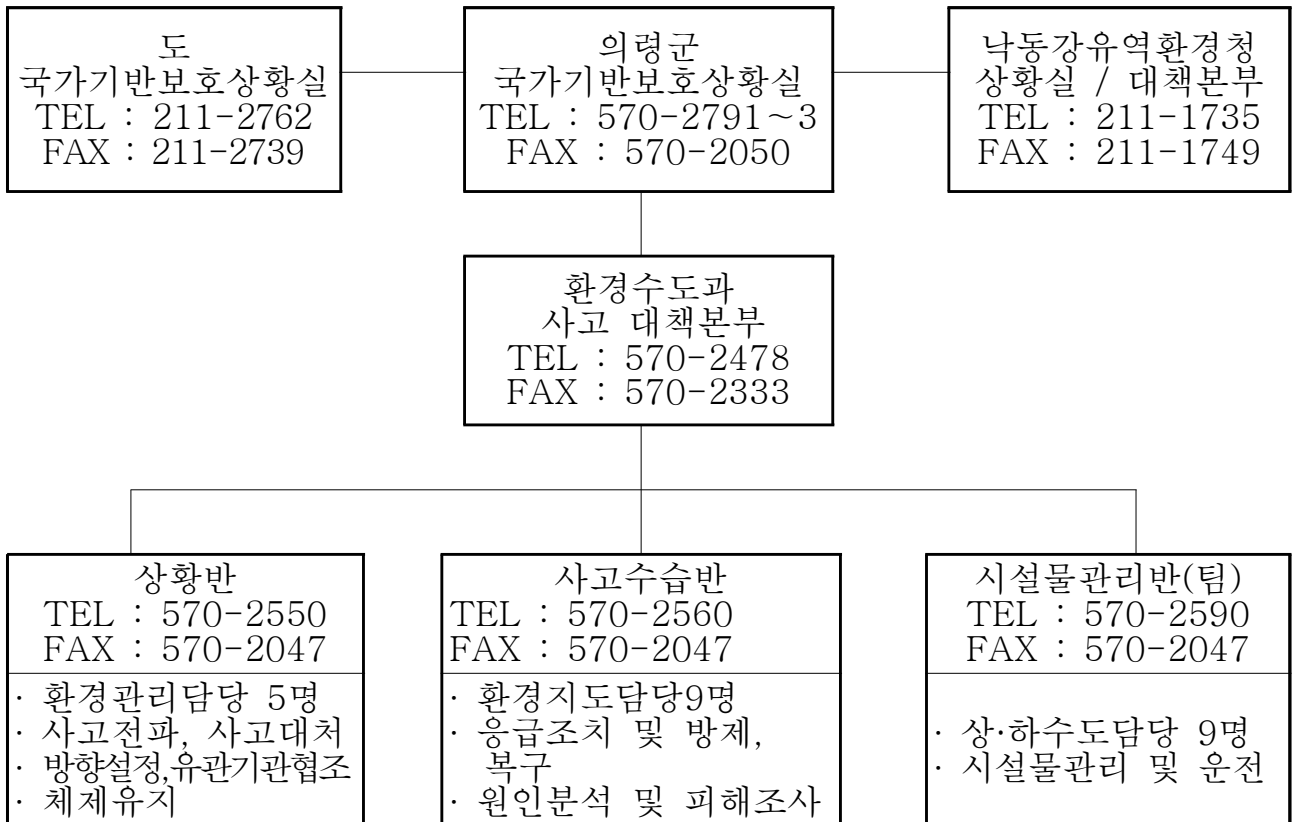
구분	정 원						현 원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5급	6급	7급	8급	9급이하
환경수도과	24	1	6	5	5	7	24	1	5	8	7	3

○ 담당업무 분장내역

구분	담 당		업무분장	연락처
	직위(급)	성 명		
환경수도과	과장	강현배	업무총괄	055-570-2027
환경관리담당	6급	노 환	상황반장	055-570-2551
환경지도담당	6급	장동재	사고수습반장	055-570-2561
환경시설담당	6급	이원권	폐기물관리반	055-570-2571
상수도담당	6급	조만안	시설물관리반	055-570-2581
하수도담당	6급	남기일	하수처리시설	055-570-2591

나. 국가기반재난 상황관리체제 구축현황

○ 상황관리 체제



3. 유형별·단계별 대책

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자 파업 및 붕괴사고 등 시설손괴

(1) 예방단계

-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자에 대한 주기적 교육 및 홍보 실시
 - 자체계획에 의한 년 1회 이상 실시
- 구조물의 균열침하여부 등에 대한 주기적인 정밀안전점검 실시
-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 강화 및 자동제어장치에 대한 이상 유무 수시 확인
- 하수종말처리시설 외곽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미처리 하수 유출조기 발견
- 정정에 대비하여 자가 발전기 또는 인입선의 2중설치
- 펌프, 브로와 등 주요장비에 대해서는 예비 장비 확보

(2) 대비단계

- 사고발생에 대비한 사고보고, 지휘체계 확립, 응급복구계획 수립 등 신속한 위기 대응체제 구축
 - 중대사고 발생 : 하수관 막힘으로 유입불량 , 처리시설 가동 불능
-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 사전해소 대책 수립 및 사전해소를 위한 협상과 조정 등 대화 협의체 준비
- 위기상황 발생 대비 신속한 대응체제 준비 및 비상연락망 구축, 유간기관 공조체제 유지
- 처리시설 운영요원 파업 및 테러 등에 대비한 대체자원 지정 및 동원계획 수립 추진
 - 인근 자치단체 및 시·군·구 인력과 장비 동원
- 사고수습에 필요한 각종장비 및 동원인력 파악, 사고유형별 가상 대비 훈련 주기적 실시
- 군부대, 소방서, 경찰서, 방재 전문업체 등 유관기관 공조체제 구축
- 자연재해, 테러, 파업, 사회적 갈등 등 위기상황 감시를 위한 유관기관간 정보공유 및 비상대응체제 준비
- 시설의 미가동사태에 대비한 쓰레기 임시 적환장 지정

(3) 대응단계

○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자의 파업시

- 1단계 : 지자체 소유 타 환경시설 근무인력을 동원하여 처리시설 운영 업무 수행
- 2단계 : 인근 지자체에 인원 및 장비 지원 협조를 요청하여 처리시설 운영 업무 수행(1단계 조치로 부족할 경우)
- 3단계 : 환경관리공단 등 환경전문기관의 인력 및 장비지원 협조를 요청하여 처리시설 운영업무 수행(1, 2단계 조치로 부족할 경우)

○ 하수종말처리시설 붕괴 등 손괴 시

① 대규모일 경우

- 유출수로의 차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속히 중장비 등을 사용하여 임시제방 또는 대형 옹덩이를 설치하고, 펌프를 이용하여 집수조 및 저류조 등으로 이송
- 하류에 우수지가 있는 경우에는 배수갑문을 차단, 우수지에 일시적으로 차단후 수거
- 추가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유출지점 하단부근을 굴착하여 대형 임시 저류조를 설치하여 차집
- 하천본류 유입차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신속히 하류 취·정수장에 상황을 전파하여 취수 중단 또는 정수방법 변경 조치

② 소규모일 경우

- 사고원인을 신속히 확인하여 유출지점을 폐쇄하고, 유출된 오염물질은 하천 본류 유입전에 중장비 등을 이용하여 옹덩이 또는 임시제방을 설치하고, 유출을 차단한 후 흡인차량 또는 펌프 등을 이용하여 수거
- 유출된 오염물질이 고농도이거나 유해물질이 함유된 하수가 본류에 유입 되었을 경우에는 하류 취·정수장에 신속히 상황 전파

※ 하수종말처리시설 복구(대규모, 소규모)가 지연될 경우

- 하수다량악성폐수 배출업소 등에 대한 조업제한 실시
- 인근 폐수종말 처리시설 등에 연계처리
- 하수종말처리장은 언론보도 등을 통한 절수운동 전개 등으로 하수 유입량 최소화 조치

(4) 복구단계

- 유관기관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사고대책본부 설치로 상황보고, 원인분석 및 복구대책 수립 추진
 - 인력, 장비, 자원, 물자 등 동원체제 가동
-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대책 수립 및 사고유발자에 대한 관계법규에 따른 조치

4. 응급조치에 일시사용 할 장비 및 인력의 운용방안

가. 하수종말처리장

구분	최소기능유지 소요인력					확 보 인 력				
	계	환경직	전기직	기계직	화공직	계	환경직	전기직	기계직	화공직
계	4	1	1	1	1	4	1	1	1	1
내부자원	9	5		2	2	9	5		2	2
외부자원	9	4	2	3		9	4	2	3	

※ 평시 민간위탁실시로 외부자원을 활용하고 파업 등 사고발생시 내부자원을 긴급 투입하여 조치

- 보호자원 자체양성 및 확보계획
 - 재난수습에 필요한 동원 인력, 물자, 장비 등을 파악하여 보유업체 또는 소유자에게 사전 협약 지원 요청
 - 유관기관 및 단체, 관련업체 등과 사전 협조체제 유지
 - 타 시·군 안전관리계획 수립시 시설운영기관 및 업체와 시군이 협의하여 세부계획으로 수립 추진

1. 전염병 대책

가. 개요(목적)

- 감시체계 운영 및 신속한 역학조사 및 대응으로 감염병에 대한 조기발견을 통한 집단 대유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감염병 분야 위기에 대한 예방·대비 체제를 강화하고, 대응태세를 사전에 구축하여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예방단계
 - 법정감염병 관리보고체계 구축
 - 감염병 신고보고체계 : 민간 의료기관 등 → 보건소 → 시·도 → 질병관리본부
 - 보고방법
 - 제1군~제4군 감염병 : 지체없이 신고, 전수감시
 - 제5군, 지정감염병, 인플루엔자 : 매주 1회 신고, 표본감시
 - 감염병 예방에 대한 주민 홍보강화
 - 반상회보, 인터넷, 언론 등 수시 홍보
 - 예방접종률 향상을 통한 국민 면역력 제고
 - 국가필수예방접종(15종) 실시
 - 예방접종 백신 적정온도(2℃ ~ 8℃) 보관·관리
 - 접종별 접종간격 및 접종방법 준수 후 안전접종 시행
 - 계절별 접종 홍보 및 안내
 - 감염병관리 교육을 통한 기본 대응능력 배양
- 대비단계
 - 감염병 발생의 사전 대응체계 확립
 - < 역학조사반 편성·운영 >
 - 운영기간 : 연 중

- 구 성 : 1개반 6명(의사, 간호사, 검사요원, 보건요원, 방역요원, 운전요원)
- 임 무 : 역학조사 수행, 환자조치, 살충·살균소독, 주민교육, 보고 등
- 운 영

⇒ 역학조사반의 출동기준(제1군 ~ 제5군, 지정감염병 유행 우려 시)
 ⇒ 관할구역 밖의 제1군 ~ 4군감염병의 유행이 관할구역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감시체계 강화

〈질병정보모니터망 운영〉

- 운영기간 : 연 중
- 대 상 : 93개소
- 모니터 주요업무
 -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주민계몽
 - ⇒ 감염병(의사) 환자발견, 검체채취(병·의원) 및 진단시 인적사항과 유행 상태 파악 보고
 - ⇒ 기타 감염성질환의 유행상태를 판단하여 소속된 보건소 전화통보

● 격리병상 확보 및 보호장구 비축

- 현 황
 - ⇒ 격리병상 지정 : 1개소 5병상
 - ⇒ 보호구 점검 및 적정수량 확보

● 재해대비 방역약품 비축관리

- 비축기관 : 보건소
- 재해대비 방역 소독약품 비축 현황

살충제	옥외살균제	우물소독약	비 고
180ℓ	80ℓ	60g	

● 해외감염병 발생 예방

-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
 - ⇒ 대 상 : 수인성감염병 보균자 등
 - ⇒ 시 기 : 연중
 - ⇒ 방 법 : 대상자 추적 역학조사 등 실시
 - ※ 균 검출 시 : 즉시 격리수용 치료, 가검물검사, 환자주변 소독

- 감염병 예방 홍보

- 추진기간 : 연중

- 방 침

- ⇒ 감염병 발생 시기별 집중홍보

- ⇒ 각종 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추진

- ⇒ 보건교육 등을 활용한 감염병 예방 홍보

- 홍보방법

- ⇒ 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 ⇒ 홈페이지 게재, 교육 및 캠페인 등 실시

- 대응단계

-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운영

- 범정부적·국가적 총력대응으로 위기상황을 조기에 식별하고 신속하게 대응

- 감염병 (의심)환자 관리 및 접촉자 관리

- 신속한 역학조사 및 가검물 채취

- 감염병 (의심)환자 격리조치

- 격리 병원 및 격리병상 지정 현황

의료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격리병상수	비고
계	1개소			
의령병원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14길 10	옥영호	5병상	

- 대주민 개인위생수칙 등 보건교육 강화

- 취약시설 및 재난지역 방역소독 강화

- 질병정보모니터망, 응급실증후군 감시체계 등 추가 환자발생 대비 감시 강화

- 환자후송, 소독인력 등 유관기관에 협조요청

- 응급환자 후송(지역소방서), 방역소독 지원(지역방역협회)

- 복구단계

- 위기기간 중 발생한 각종 피해사례별 복구대책 마련

- 환자 발생동향 지속 감시(의료기관, 학교, 집단시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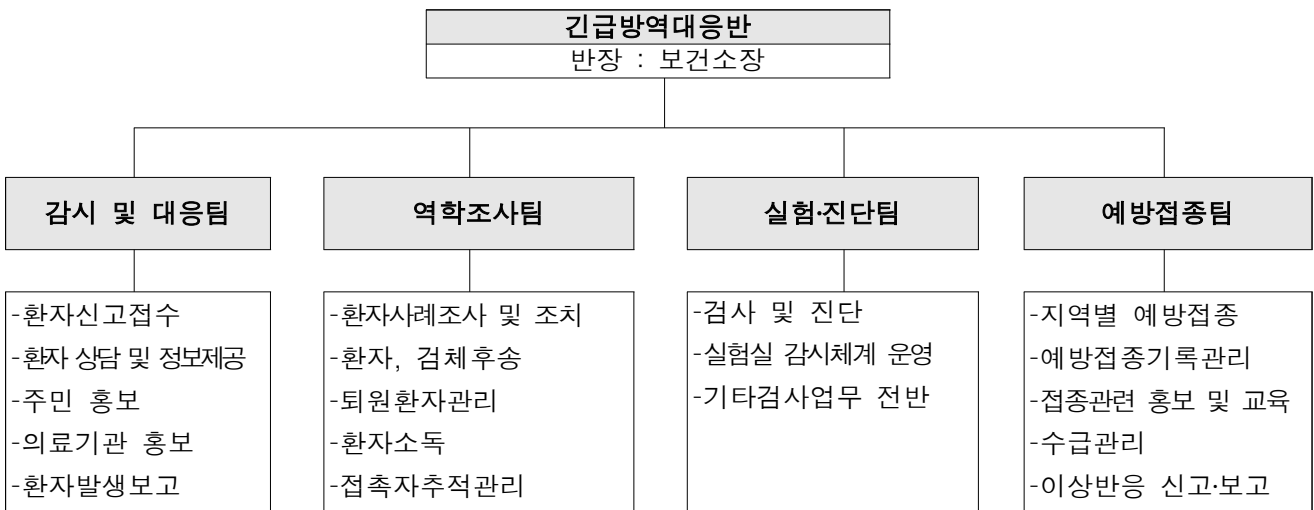
- 환자 입원에 따른 격리치료비 지급

- 재난지역 주민들의 정신건강을 평가하고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하여 서비스 제공

- 지역내 취약지 방역소독 실시
- 위기상황 발생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강구
- 대 시민 홍보 강화로 불안심리 해소

다. 추진체계 및 일정

- 감염병 재난관리체계 구성 및 운영



- 상황실 설치 및 상황관리 전담요원 배치 현황

- 위 치 : 보건소 사무실 및 자택(야간)
- 근무자 : 주간 보건소 직원 / 야간 당직 근무자
- ※ 상황에 따라 비상근무반 별도 편성·운영

- 재난상황 정보수집 및 보고(통보)방법 등

- 정보수집 : 의료기관 신고, 유관기관 상황보고, 자체정보수집
- 보고(통보) : Fax 570-4018/ E-mail/ 전화 570-4040

- 단계별 활동일정

- 현장투입전
 - 위기상황 접수 및 확인
 - ⇒ 발생 장소 및 시간
 - ⇒ 신고·보고자 확인(인적사항, 연락처 등)
 - (의심)환자 인적사항, 현 위치, 증상유무 등 관련 정보 확인
 - 위기상황 전파

⇒ 재난상황 접수자는 접수된 재난상황을 도지사 및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

⇒ 전파내용 : 발생개요, 조치내용, 향후 추진사항 등

- 지역내 유관기관 회의 개최

⇒ 유관기관 회의 : 위기단계에 따른 유관기관 협조 체계 구축

(군, 경찰, 소방/119구급대, 지역응급의료센터)

- 의사소통체계 점검

⇒ 점검주체 : 보건소, 군·도, 유관기관

⇒ 점검내용 : 발생현황 및 위기단계별 대응조치 관련 신속 전달체계 점검

- 감염병 발생 감시 강화

⇒ 지역주민 대상의 신종감염병 임상 증상 안내

⇒ 관내 의료기관 대상으로 신종감염병 (의심)환자 발생시 신고 독려

⇒ 응급실증후군감시체계, 감염전문가네트워크,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료기관 등 표본감시체계 강화 및 감시 결과 모니터링

- 대응 지침 제공 및 교육

⇒ 대상 : 초동대응요원, 보건의료인 등

⇒ 내용 : 감염병 대응 지침 제공 및 관련 내용 숙지 교육

-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자원 파악

⇒ 지역내 가용 의료자원 현황 파악 및 추가 확보 방안 마련

⇒ 관할 지역에서 인접한 적정 격리시설을 확보한 병원 현황 파악

· 임무 수행 시

-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통합지원 및 역할분담 논의

- 재난지역 감염병관리대책반 운영

- 감염병 (의심)환자 관리 및 접촉자 관리

- 환자 및 접촉자 대상 개인위생수칙 등 보건교육 실시

- 추가환자 발생 대비 감시체계 강화

⇒ 질병정보 모니터망, 응급실 증후군감시체계, 감염전문가 네트워크 등

- 대주민 감염병 예방 홍보 실시

⇒ 방법 : 관련자료 유관기관 배포, 언론보도, 직접교육 등

- ⇒ 내용 : 개인위생수칙, 군중활동 및 사회적 접촉 제한 등
- 환자후송, 소독인력 등 유관기관 협조요청
- 복구 시
 - 2차 유행 예방조치
 - ⇒ 2차 유행 예방을 위한 홍보 지속
 - ⇒ 관내 감염병 발생 감시 지속
 - 위기경보 해지 시 평시 감염병 관리체계로 변환

라.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세부사업	2015년 실적	2016년 계획	비고
주요감염병표본감시	400	300	
방역인부임	144,683	167,455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사업	70,800	72,200	

재난유형	전염병대책	담당부서	보건소	담당자	김말숙(☎ 570-4042)
------	-------	------	-----	-----	-----------------

1. 적용 범위

- 가. '대규모 가축질병' 발생시 적용
- 나. 가축질병 위기관리 업무와 관련되는 지자체(읍·면) 및 소속 가축방역단체 등 방역주체별 위기대응 활동에 적용
- 다.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가축과 가축전염병에 감수성이 있는 동물 및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물건·차량·사람 및 동물의 생산물 등에 대하여 적용

2. 위기대응 지침

- 가. 위기대응 지침
 - (1) 가축질병 위기 발생시 대응능력의 극대화로 조기 극복
 - (2) 가축방역 주체별 역할분담을 통한 위기관리 능력 배양 및 역량 극대화
 - (3) 감수성 가축의 이동제한 및 감염축 강제폐기 등 오염원의 근원적 제거와 전파·확산 방지
 - (4) 효율적 위기관리를 위한 관계부처 등 범정부차원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유지

3. 조치 내용

가. 현장 투입 전

- (1) 가축질병 의심축 접수 및 확인
 - < 질병 발생상황 접수 >
 - ① 의심축 신고 접수장소 및 시간
 - ② 신고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 직업)
 - ③ 발생농가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
 - ④ 신고사항(축종, 사육두수, 연령, 발생두수, 폐사두수, 기타)

- ⑤ 증상 및 병력 개요
- ⑥ 기 취한 응급조치
- < 질병 발생상황 확인 >
- ① 가축방역관 농장 현지파견 진단용 시료채취 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시료 송부
- ② 초동방역팀 투입요청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북부출장소
- ③ 가축질병(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발생상황 확인
- (2) 상황보고 및 유관기관 전파
 - ① 상부기관 : 경남도 축산과, 경남도축산진흥연구소 북부지소
 - ② 내부기관 :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 보건소장, 읍·면장
 - ③ 유관기관·단체 : 군부대, 소방서, 경찰서, 농·축협, 축종별 단체 등
 - ④ 보고내용 : 질병발생개요 및 긴급방역조치 상황 등
 - ⑤ 보고방법 : 상황전파 보고서 및 유·무선
- (3) 가축질병방역대책협의회 개최
 - ① 방역대 설치 및 긴급 초동방역 협의결정
 - ② 이동통제초소 설치위치, 개소수, 필요인력 등 협의
- (4) 방역대 설정 준비
 - ① 반경 500m이내, 3km이내, 10km이내, 20km이내 감수성 가축 축종별 사육현황 파악
 - ② 방역대별 이동통제초소 개수 및 위치 선정 및 타시군 경계 주요도로 노선 파악
- (5) 가축질병대책본부 설치
- (6) 인력 및 방역물자 동원 준비
 - ① 군부대·경찰서·소방서 및 농·축협 등 동원가능한 방역인력 파악 및 협조 요청
 - ② 개인보호장구 및 긴급 방역물품 조달(강제폐기·매몰시 소요물품)
 - ③ 강제폐기가축 운송차량, 장비 확보(화물트럭, 포크레인, 덤프 등)
- (7) 이동통제초소 운영 준비
 - ① 이동통제초소 운영 위치 및 운영인력(조) 편성
 - ② 컨테이너 및 도로변 차량소독시설 설치
 - ③ 근무자 급식지원 및 근무요령 교육 등

나. 임무 수행시

(1) 격리·억류·이동제한

- ① 발생지, 위험지역 및 경계지역 안에서 사육되는 감수성 동물에 대한 격리, 억류 또는 이동제한 명령
- ② 발생농장 입구에 가축질병 발생사실과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 ③ 발생농장의 관리자 및 동거가족 등 / 발생지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외출 통제

(2) 소독 등 차단방역 실시

- ① 발생농장 축사 내·외부 및 주변소독 실시
- ② 발생지, 위험지역, 경계지역 이동통제초소 소독시설의 설치·운영, 사람·가축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 ③ 군, 읍·면, 농·축협, 공방단 소독차량 운영 일제소독 실시

(3) 강제폐기·매몰(소각) 작업

- ① 발생농장, 발생지 등 강제폐기 범위 설정 및 대상축 강제폐기 명령
- ② 평가액 산정을 위한 관련 자료 및 개체 확인
- ③ 강제폐기·매몰 장소 선정
 - 발생지역내 위치한 장소로 가급적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않는 지반이 견고한 곳을 선택
- ④ 강제폐기 방법 결정
 - 사살, 전살, 타격, 약품사용, CO₂가스 등의 방법 중에서 현장에서 사용이 용이하고 신속히 완료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
- ⑤ 매몰방법
 - 매몰구덩이는 사체를 넣은 후 지표까지의 간격이 2m 이상의 깊이가 되도록 4~5m 깊이로 파냄
 - 매몰용량은 강제폐기 축종, 두수를 고려(폭 3m인 경우 1m당 소 5두, 돼지는 25두 매몰 가능)
- ⑥ 반드시 가축방역관의 감독 하에 소각 또는 매몰

(4) 이동통제초소 운영

- ① 방역대별(반경 500m, 3km, 10km, 20km) 경계지역에 이동통제 초소 설치·운영
- ② 방역대별 이동제한 이동통제초소 운영요령에 의함

- ③ 통행차량 중 가축·축산물·사료·원유·분뇨·동물약품 등 축산관련 수송 차량 확인 철저 및 소독강화

(5) 감수성 가축 예방접종 실시

- ① 예방접종 실시여부 및 접종범위 결정
- ② 예방접종 인력 및 동원(가축방역관, 공·개업수의사, 방역사 등)
- ③ 예방접종 지역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농장으로부터 접종을 시작하여 동심원의 중심으로 이동

(6) 가축 수매 실시

- ① 수매물량 파악 및 도축장·보관시설 지정·운영
- ② 방역대별로 가축방역관 임상관찰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출하 허용
- ③ 지정도축장의 처리능력을 감안하여 당일 처리 가능한 물량 범위 내에서 출하승인서 발급
- ④ 출하 시 이동경로에 따른 소독 실시 철저

(7) 가축시장 및 축산물 거래행위 통제

- ① 운영중인 가축시장 폐쇄조치
- ② 경찰서 합동으로 축산물 매점·매석 행위 특별단속반 운영
- ③ 발생지역·위험지역·경계지역에서 불법 반출한 감수성 가축의 구입 금지 및 이러한 가축을 판매·운송해 주는 업자 단속 등

다. 철수 시

(1) 강제폐기 인력 및 장비 소독조치

- ① 강제폐기 인력이 착용한 모든 의복, 신발, 모자 등 소각 실시하고, 지정 목욕탕 이용 목욕실시 후 깨끗한 의복으로 갈아입을 것
- ② 사용된 장비 및 차량은 철저히 소독을 실시하고, 가축방역관의 허가를 받은 후 반출

(2) 강제폐기 매몰지 사후관리

- ① 매몰지 사후관리반 구성(3개조 9명)
- ② 조별로 강제폐기 가축 매몰지역을 순회하여 기동성 있게 대처
- ③ 매몰지 함몰, 침출수 및 악취 발생 여부 등을 집중 점검 후 상황에 따라 보완 실시

(3) 예방접종축 사후관리

- ① 예방접종 표시 및 관리대장 작성·유지
- ② 예방접종 가축출하 지정 도축장 운영

(4) 대주민 홍보강화

- ① 사육가축 임상관찰 1일 2회 실시 및 의심축 발생시 즉시 신고
- ②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방문 금지 및 가축은 물론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물품(차량, 기구 등) 철저히 소독
- ③ 쥐 등 야생동물과 파리 등 매개곤충을 구제하고 축사 내·외부를 정기적으로 소독
- ④ 가축의 투매나 홍수출하 자제

(5) 질병 발생시 상황 유지

- ① 질병 의심축 발생시 즉시 신고체제 확립(☎1588-4060운영 등)
- ②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발생시 신속한 방역조치가 가능토록 긴급 방역 가동체제 유지
- ③ 강제폐기(방역) 인력 및 방역물자, 장비 등 동원망 확보
- ④ 축산밀집지, 축산관련시설 및 주요도로변 정기소독 실시
- ⑤ 국내·외 가축전염병 발생동향 주의

제 3 장 안전관리대책

1. 추진방침

- 보행자 중심의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시행
-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완벽한 대책 수립

2. 안전관리대책

가. 예방대책

- 점검시기 : 정기(반기 1회), 수시 실시
- 점검자 : 군, 시설관리자

나. 단계별 점검실시

① 1단계 : 일상점검(분기1회)

- 재난발생 위험이 높아 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
- 교통안전 및 보행자에게 불편 해소를 위해 기초질서 준수 계도

② 2단계 : 정기점검(년1회)

- 각종 노후시설 및 구조물에 대하여 개선사업 추진
- 사고 위험구간에 대한 안전시설 점검 및 보완

③ 3단계 : 정밀안전 점검 및 진단

- 노후시설 및 위험노선 안전진단 실시
- 불량 위험교량에 대한 전문가 판정 시 중점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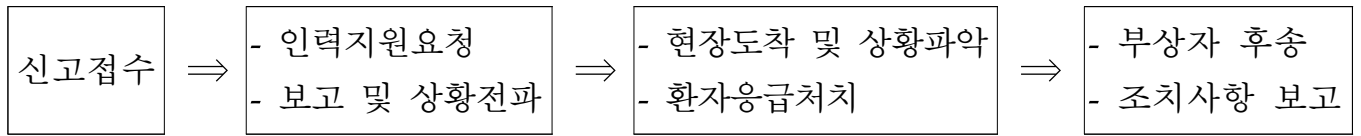
○ 재난대비 관련기관 비상연락 체계 구축

- 시설물 담당 비상연락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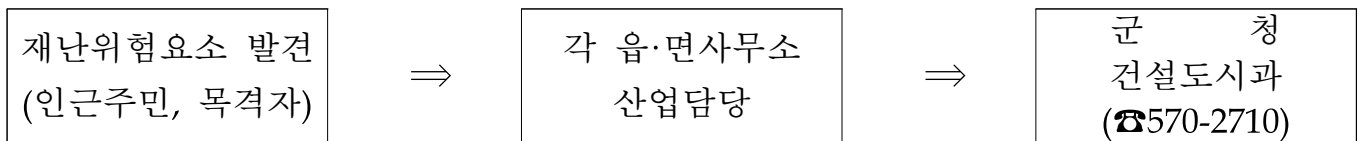
구 분	직 위	성 명	연 락 처
건설도시과	과 장	남기주	055-570-2029
	도로담당	박석중	055-570-2711
	담 당 자	박소정	055-570-2713

다. 대응대책

○ 재난대응처리 흐름도



○ 신고 및 보고체계도



○ 신고접수 및 초동조치

1) 신고접수

- 읍·면 사무소 및 군청 직원

2) 초동조치

- 응급환자 발생시 119 구급차 출동요청
- 구급차 장비·약품 구비 신속출동 대처

3) 상황전파

- 조치사항 보고

라. 복구대책

○ 사고 조기수습 대책 강구

- 재난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사고원인, 피해상황, 책임소재 등 과학적 피해조사
-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신속·정확한 사고수습

○ 피해시설 복구 및 정비대책 수립

- 제시된 항구복구 대책에 의거 신속 복구
- 소요예산확보 및 완벽한 복구 시행
- 재난발생 원인을 감안하여 재발되지 않는 구조

I. 추진방침

1. 목표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가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일상관리, 정기점검, 예방정비, 수리 등의 행위를 통해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수행
- 승강기는 어린이에서 노인까지 다양한 이용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 안전장치 및 기능을 유지

2. 추진 방향

- 사전예방을 위한 재난관리 계획 추진
 - 승강기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 개선
 - 재난예방을 위해 승강기 시설의 안전점검 강화
 - 관리자 및 이용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교육
- 재난발생시 대처능력 제고
 - 인명구조 우선의 조치 및 신속한 보고체계 유지
 -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및 신속한 수습

II. 안전관리대책

1. 예방대책

가. 승강기 시설현황

(자료출처 : 한국승강기관리원(<http://www.kesi.or.kr/>))

합계	공동주택	근린 생활시설	교육 및 복지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기타
119	55	14	17	7	10	16

나. 승강기시설 관리자 안전교육 실시

- 교육시기 : 연중 실시
- 교육주관 : 군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위탁)
- 교육대상 : 관리주체

○ 교육내용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 및 지침
- 비상연락, 사고보고 체계 확립 및 자체 안전점검 요령

2. 예방대책

가. 승강기 관리자 비상연락 및 사고보고 체계 확립

- 인근 소방서, 경찰서 등의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 비상연락망 확보 및 시설관리대장 비치
- 사고 발생 24시간이내 관할 시·군에 보고

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 지도점검 실시

- 점검대상 : 전 승강기시설
- 점검주체 : 도 및 군
- 점검횟수 : 연 1회 이상
- 주요 점검사항
 - 승강기의 운행규정의 작성 및 유지관리 여부 확인
 - 승강기 사고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관리 및 비상연락체계 등 대응 시스템 확인
 - 사고 예방을 위한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교육이수 여부 확인
 - 승강기시설 자체 안전점검 및 부적합사항 조치여부

다. 승강기시설 및 관리자 안전점검 자체 실시

- 관리자 및 관리시설 자체점검
 - 검사준수 여부
 - 자체점검 일지 작성 보관여부
 - 자체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 조치
- 승강기 시설 자체 점검
 - 각종 안전장치 및 스위치, 인터폰 적정설치·작동여부
 - 주 로프, 도르래 등 기계 설치 및 작동상태
 - 운행 상태

3. 대응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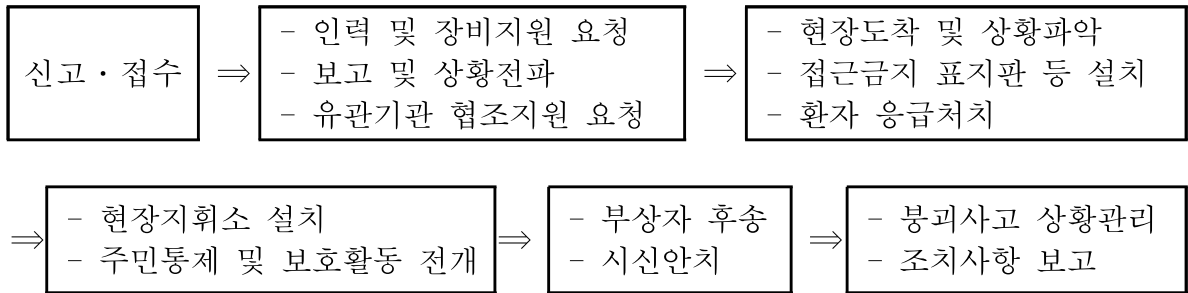
가. 재난상황관리체계 확립

- 재해 및 각종사고 최초발생시 자체에서 응급조치를 취한 후 사고 발생

사실 및 피해상황을 즉시 보고

- 인근 소방서, 경찰서 등과 즉시 연락 가능한 협조체제 구축
- 사고발생시 신속한 환자이송 및 치료가 가능하도록 인근 병원 지정
- 재난복구 및 사후수습에 필요한 각종 재원의 조속한 지원 등을 위해 군, 도와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나. 업무처리 흐름도



다. 신고접수 및 초동조치

- 신고접수
 - 응급환자 발생시 119 구급차 출동 요청
 - 군, 유관기관에 상황전파, 사고수습 지원 요청
 - 인명구조 및 응급복구 등 초동대처
 - 구급차 장비, 약품 구비 신속출동 대처
 - 응급실 당직근무 지정 및 상시 근무체제 확립

라. 현장출동 및 도착

- 출동 등 조치사항
 - 유관기관 협조지원 요청
 - 환자 응급조치소 설치, 사망자 및 부상자 처리결과 보고
 - 사고지역 통제제한 등 경계구역 설정
 -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조치

4. 복구대책

- 사고 수습 대책 강구
 - 승강기시설 관리자, 재난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합동조사반을 구성 사고원인, 피해상황 등 조사
 -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신속·정확한 사고수습

제3절 어린이 놀이시설

I. 추진방침

1. 목표

-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여 안전사고 방지
-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함.

2. 추진방향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자 교육, 놀이시설 지도점검 등으로 재난사전 예방 강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지침 준수로 재난 대비태세 구축
- 실효성 있는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대책 추진
- 시설물 운영자 및 관리자의 책임의식 제고와 안전수칙 준수

3. 기본 현황

-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 -

(2016. 1. 1현재)

합 계	아파트	음식점	복지시설	어린이집	초등학교 (유치원)	기타
23 (기타제외)	4	-	1	4	14	-
소관부서	안전관리과(건축행정담당)		주민생활지원실		교육지원청 별도 추진	-
	안전관리 총괄 : 안전관리과					

II. 안전관리대책

1. 예방대책

가. 놀이시설 관리자 안전교육 실시

- 교육시기 : 2년마다 1회
- 교육대상 : 관리주체

- 교육내용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 및 지침
 - 비상연락, 사고보고 체계 확립 및 자체 안전점검 요령

나.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자 안전교육

- 교육시기 : 수시
- 교육대상 : 유치원, 초등학생(1~3학년)
- 교육내용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한 이용
 - 놀이시설 별 특징과 이용방법

2. 대비대책

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자 비상연락 및 사고보고 체계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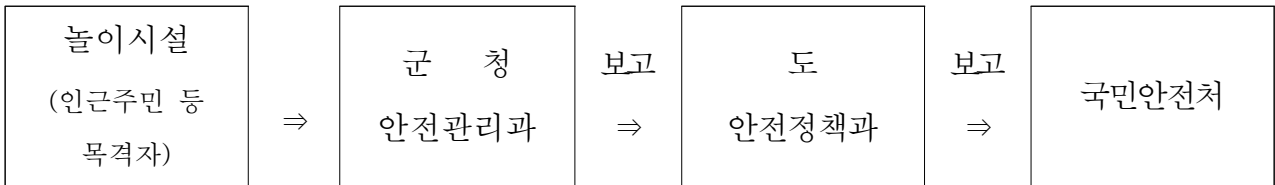
- 인근 소방서, 경찰서 등의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
- 비상연락망 확보 및 시설관리대장 비치
- 사고 발생 24시간이내 관할 군에 보고

나. 국가안전대진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도점검 실시

- 점검대상 : 전 어린이놀이시설
- 점검주체 : 관리주체 및 군
- 점검횟수 : 연 2회 (자체점검 1회, 군 지도점검 1회)
- 주요 점검사항
 - 사건·사고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 등 대응 시스템 확인
 -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놀이시설 설치검사 및 안전교육이수 여부 확인
 - 시설 자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
 - 시설 자체 안전점검 및 보험가입 여부
- 점검결과조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처분 및 지도

3. 대응대책

○ 신고 및 보고체계도



○ 신고접수 및 초동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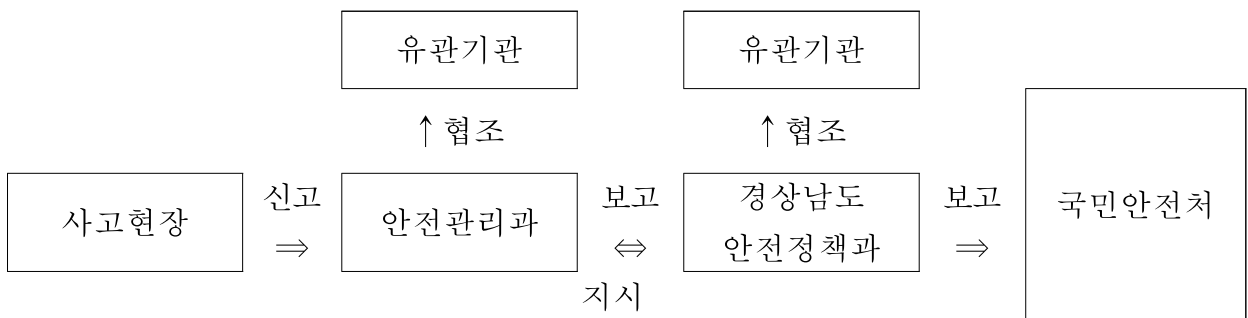
1) 신고접수

- 유기사설의 임원 및 직원
- 응급환자 발생시 119 구급차 출동요청
- 인근지역 및 군, 유관기관에 상황전파 사고수습 지원 요청

2) 초동조치

- 인명구조 및 응급복구 등 초동대처
- 의료기관 진료태세확립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 현장 환자 처치 후송을 위한 기동의료반 사전 편성운영
- 구급차 장비·약품 구비 신속출동 대처
- 응급실 당직근무 지정 및 상시 근무체계 확립

3) 상황전파



○ 현장출동 및 도착

1) 출동 중 조치사항

- 민방위대 및 각종 인력 출동 소집
- 구난장비 동원

- 유관기관 협조지원 요청
- 2) 선착대 지휘보고
 - 사고지역 판단보고
 - 환자 응급조치소 설치 사망자 및 부상자 처리결과 보고
- 3) 지휘차량 현장도착
 - 사고지역 통제제한 등 경계구역 설정
 -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응급의료기관 우선) 후송조치
 - 긴급구조 통제소 설치(현장지휘소)
 - 사고지역에 대한 긴급구조 실시

4. 복구대책

- 사고 조기수습 대책 강구
 - 어린이놀이시설, 재난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사고원인, 피해상황 등 조사
 - 피해자(대표)와 보상 협의(중재) : 놀이시설 대인배상보험 청구 등
 - 유관기관(군·경찰·병원 등)과의 적극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신속·정확한 사고 수습
- 피해시설 복구 및 정비대책 수립
 - 피해시설 복구에 필요한 예산 확보
 - 필요한 인력 및 물자 동원 등 비상연락체계 구축

I. 계획의 의의

1. 안전관리의 필요성

- 가.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물놀이를 즐기는 인구가 증가하여 하천 주변, 산간 계곡, 유원지 등 물놀이 장소와 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 필요
- 나. 물놀이 취약지역인 산간계곡, 강·하천 등의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매년 반복되는 안전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다. 여름철 피서객의 안전을 위해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물놀이 안전관리대책을 구축하고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

2. 추진방향

- 가. 국민소득 증가와 주 5일 근무제 정착으로 레저문화 인구가 증가됨에 따른 물놀이 안전사고의 사전예방 및 효율적 대응 추구
- 나. 물놀이 사고 감소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 다. 교육·홍보를 통한 사전예방 활동 및 안전관리 의식 제고

II. 예방대책

1. 예방대책

가. 물놀이 지역에 대한 지속적 관리

- 물놀이 안전사고 방지 전담 T/F팀 구성 및 운영
- 전담 T/F팀 지역별 담당자별 비상연락체계 가동
- 여름철 물놀이 집중기간(7월말부터 8월중순)에 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하여 비상근무 실시
- 물놀이 위험지역에 대한 특별대책 수립 및 예찰활동 실시

나.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 물놀이 안전관리가 취약한 하천, 산간계곡 등 물놀이 사고 다발지역에 구조 장비 설치
-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후 관리대장을 작성·관리 철저
- 장비 훼손 방지를 위해 수시순찰, 위탁관리 실시 등 사후관리 철저

다. 물놀이 안전

- 물놀이 안전 예·경보 발령 및 전파
- 물놀이 안전에 대해 위험요소 발생시 예·경보 발령하여 사전에 대비
-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설, 전광판 등 사전 점검·정비

2. 대비대책

가. 비상연락 및 사고보고 체계 확립

- 지역별 담당자와 물놀이 지역 주민간의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한 연락이 가능
- 인근 소방서, 경찰서 등의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과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
- 비상연락망 확보 및 시설관리대장 비치
- 사고 발생 24시간이내 관할 시·군에 즉시 보고

나. 물놀이 안전관리 지도점검 실시

- 점검대상 : 관내 물놀이 지역
- 점검주체 : 국민안전처, 경상남도 및 군
- 점검횟수 : 여름철 주1회 이상
- 주요점검사항
 - 물놀이 시설 비치 현황 및 관리상태 점검
 - 비상연락망 관리 및 비상연락체계 등 대응 시스템 확인
 - 물놀이 인파 및 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여부 확인

다. 물놀이 안전대책기간 설정 운영

- 기 간 : 여름철 (6월~8월)
- 교육기간 : 여름철 주1회 이상
- 운영내용 : 물놀이 안전사고 대비 유관기관 등 협의체 구성·운영
물놀이 위험구역 및 취약구역 관리
물놀이 취약시기 안전계도 방송 및 순찰·홍보활동

3. 대응대책

가. 재난상황관리체계 확립

- 사고 발생시 응급조치를 취한 후 사고 발생사실 및 피해상황을 즉시 보고(선 응급조치, 후 보고)
- 인근 소방서, 경찰서 등과 즉시 연락 가능한 상호 협조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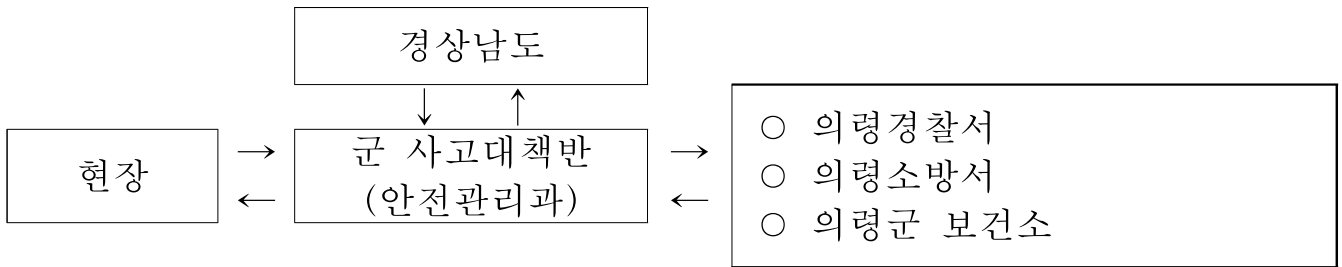
- 사고발생시 신속한 환자이송 및 치료가 가능하도록 인근 병원 지정
- 재난복구 및 사후수습에 필요한 각종 재원의 조속한 지원 등을 위해 군, 도와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나. 기상특보 및 안전사고 예보 발령에 따른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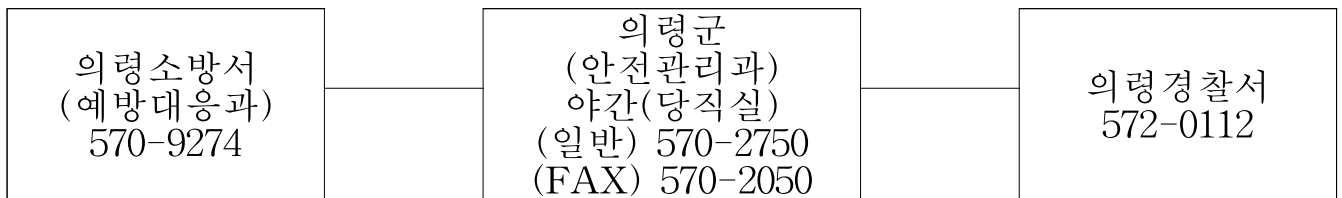
- 기상특보 및 안전사고 예보 발령사항을 홍보 및 전파하여 신속한 대피 조치

다. 사고 발생시 신속한 상황 조치

- 현장상황 확인 및 조치를 위해 관계공무원 즉시 현장 출동 조치
- 사고 발생시 군 물놀이 안전관리부서,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및 인적재난과에 통보
 - 보고 및 전파체계 수립



- 유관기관 연락체계



- 다. 물놀이 취약지역 순찰강화 및 안전관리 지도·점검
- 라. 물놀이 장소(시설) 안전요원배치, 인명구조장비 비치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 철저

4. 복구대책

가. 재난합동조사단 구성·운영

- 재난단계별 이행실태 점검
- 기관 간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점검·평가 기능 강화
- 재난단계별 평가분석 및 개선·수범사례 발굴
- 발생원인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 판단 및 재발방지 방안마련 등 개선대책 마련
- 물놀이 사고현황 DB 마련 등

제5절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청소년시설)

《 어린이집 》

I. 계획의 의의

1. 재난안전관리 여건 및 전망

- 영유아보육법 제3조의 보육이념에는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영유아(만 5세 이하)는 인지력의 부족과 신체발달의 미숙으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취약함.
- 여성의 사회, 경제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이 보편화되면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음.

- 어린이집 현황 -

(2016. 1. 1. 현재)

구 분	계	국·공립 어린이집	민 간 어 린 이 집				직장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소계	법인	법외	개인			
어린이집	11개소	2	7	-	2	5	-	2	
보육 아동	정원	513명	131	344	-	138	206	-	38
	현원	385명	104	243	-	103	140	-	38
종 사 자	76명	20	45	-	15	37	-	11	

2. 기본방침

- 보육종사자 교육, 보육시설 지도점검 등으로 재난사전 예방 강화
- 영유아보육법 및 보육사업 지침 준수로 재난 대비태세 구축
- 실효성 있는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대책 추진

II. 재난안전 관리대책

1. 예방대책

가. 2016년도 어린이집 동절기 안전점검 및 비상재해대비시설 점검 실시

- 점검시기 : 2016년 3월중
- 점검기관: 의령군 및 유관기관
- 점검대상 : 11개 어린이집
- 점검내용
 - 비상연락, 사고보고 체계 확립 및 자체 안전점검 요령
 - 어린이집의 건강·영양·위생관리 및 차량 안전관리 등
 - 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 여부 점검

나. 어린이집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 추진방법 : 2016년도 어린이집 종사자 보수교육 시 교과목으로 편성
- 교육시기 : 종사자 보수교육 기간 중(2016년 연중)
- 교육대상 : 어린이집 시설장 및 교직원 15명
- 교육시간 : 6시간
- 교육내용 : 응급처치, 건강관리, 안전관리, 영양관리, 식생활관리 등

2. 대비대책

가. 어린이집 시설장 비상연락 및 사고보고 체계 확립

- 인근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 유류 등의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유관 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
- 입소 아동 부모의 비상연락망 확보 및 응급처치 동의서 비치
- 사고 발생 24시간이내 관할 군에 보고

나. 어린이집 환경개선

- 사업량 : 어린이집 장비비 지원 2개소
- 지원대상 :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 추진방법 : 노후화된 건물 및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군의 신청에 의거 사업비 지원

다. 소방 및 안전교육 훈련 실시

- 주 관 : 어린이집 시설의 장
- 교육대상 : 어린이집 입소 아동 전원
- 교육내용
 - 소 방 훈 련 : 소방계획을 작성하고 매월 소방훈련 실시
 - 안전교육훈련 :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실시
 - 교통안전교육 : 2개월 1회 이상(연 12시간 이상)
 - 약물오남용교육 : 3개월 1회 이상(연 10시간 이상)
 - 재난대비교육 : 6개월 1회 이상(연 6시간 이상)
 - 성폭력예방교육 : 6개월 1회 이상(연 6시간 이상)
 - 실종·유괴의 예방방지 교육 : 3개월 1회 이상(연 10시간 이상)
- 결과보고 : 시설장 → 군수

라. 어린이집 안전관리 지도점검 실시

- 점검대상 : 전 어린이집
- 점검주체 : 도 및 군
- 점검횟수 : 연 1회 이상
- 주요 점검사항
 - 어린이집 건강·영양·위생관리 및 차량안전관리 준수 여부
 - 화재, 풍수해, 기타 재난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 등 대응 시스템 확인
 - 각종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재해 대비시설의 설치여부 및 상태확인
 - 시설 자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
 - 시설 자체 안전점검 및 비상대비 모의훈련 실시 여부
 - 어린이집 안전점검 자체 진단표에 대한 주기적 점검 여부
- 점검결과 조치 :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처분, 우수사례 전파

마. 어린이집 입소아동 안전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아동 429명
- 지원내용 : 어린이집 상해·배상보험
- 지원단가 : 4,890원/ 인
- 지원시기 및 절차
 - 계 약 일 : 2016년 2월 중
 - 보장기간 : 2016년 3월초~2017년 2월말
 - 지원절차 : 시·군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계약체결

3. 대응대책

가. 재난상황 관리체계 확립

- 재해 및 각종사고 최초발생 시 시설자체에서 응급조치를 취한 후 사고 발생사실 및 피해상황을 즉시 보고(선 응급조치, 후 보고)
 - 보고체계 : 시설 → 군 → 도 → 보건복지부
 - 상황접수 : 평시 주간 → 주민생활지원실, 야간 → 당직실
- 인명과 재산의 피해정도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
 - 대규모 상황 : 안전관리과에서 대처
 - 소규모 상황 :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대처

나. 유관기관과의 협조·지원체제 구축

- 시설장은 인근소방서, 경찰서 등과 즉시 연락 가능한 협조체제 구축
- 시설장은 사고발생시 신속한 환자이송 및 치료가 가능하도록 인근 병원 지정
- 시설장은 재난복구 및 사후수습에 필요한 각종 재원의 조속한 지원 등을 위해 군, 도,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4. 복구대책

가. 현지조사단 구성·운영

- 사고 발생사실을 보고 받는 즉시 현지 실태파악 및 지원대책 수립을 위한 현지조사단 파견
 - 현지 조사단 구성 : 여성아동담당 등 2명

나. 사고수습 대책본부 설치·운영

- 인명과 재산의 피해정도에 따른 사고수습 체계 구축
 - 대규모 상황 : 안전관리과에서 대처
 - 소규모 상황 :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대처
- 사고 수습 후, 군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사고발생요인을 분석,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도 및 보건복지부에 보고

《 청소년수련시설 》

1. 시설현황

가. 시설구분

(단위 : 개소)

합 계			생활권시설						자연권시설						유스 호스텔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계	공공	민간	계	공공	민간	계	공공	민간	계	공공	민간	계	공공	민간	민간
3	1	2	1	1					2		2				

나. 세부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규 모(m ²)		수용인원 (명)	운영대표자	비 고
		부지	건축			
의령군 청소년수련관	의령군 부림면 신변로11길 32	7,732	2,820	450	박 기 곤	공공
자갈산 청소년수련원	의령군 가례면 가례로 747-37	57,973	11,274	714	정 기 배	민간
홍천 소년수련원	의령군 의령읍 벽화로 408	9,735	5,525	490	강 수 광	민간

2. 추진내용

가. 목표

- 수련시설 이용자 건강과 안전 확보
 - 재난에 대비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실태 점검 및 교육 실시로 수련 시설 이용자인 청소년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확보
 - 안전에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완·조치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
- 안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 대비 태세 강구
 -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으로 재난 등 대비태세 강구

나. 전략

- 사전예방을 위한 재난관리 계획 추진
 -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 개선
 - 재난예방을 위해 시설의 각종 안전점검 강화
 - 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교육 강화
- 재난발생시 대처능력 제고
 - 인명구조 우선의 응급조치 및 신속한 보고체계 유지
 -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및 신속한 수습·복구태세 확립
- 재난관리 체제 정착
 -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시설물 관리의 주체(지방자치단체, 시설의 장)가 자율적으로 재난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
 - 소방장비 등 재난관리장비 정비

3. 안전관리대책

가. 예방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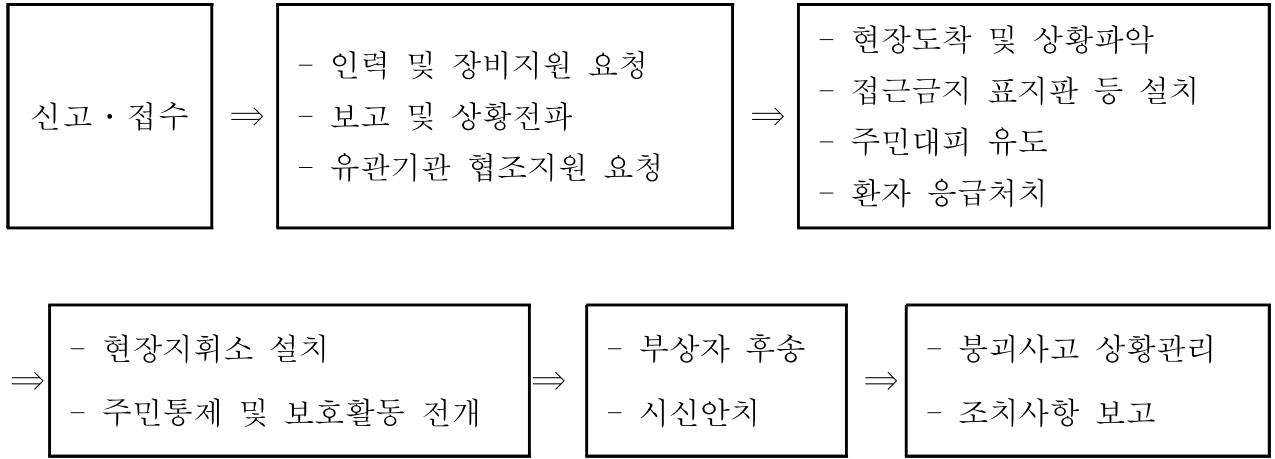
- 안전교육 실시
 -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홍보 및 계도 강화
 - 시설 운영자(책임자) 교육 실시 ⇒ 연 1회
 - 시설 종사자 교육 ⇒ 연중 수시
-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 시설안전점검 내실화 및 취약분야에 대한 보완조치 철저
 - 점검시기 : 정기(반기 1회), 수시 실시
 - 점검자 : 도, 군, 시설운영자 등

나. 대비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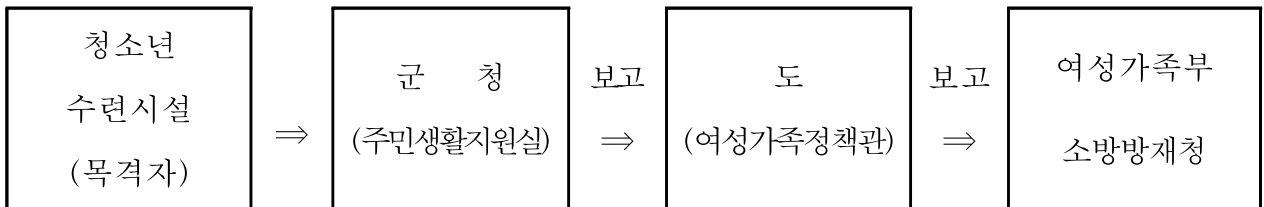
- 시설별 및 재난상황별 대피계획 수립
- 안전관련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운영
 - 응급의료기관 후송체계 갖추도록 조치
 - 비상사태 대비훈련 및 재난대비 장비 점검·정비

다. 대응대책

○ 업무처리 흐름도



○ 신고 및 보고체계도



○ 신고접수 및 초동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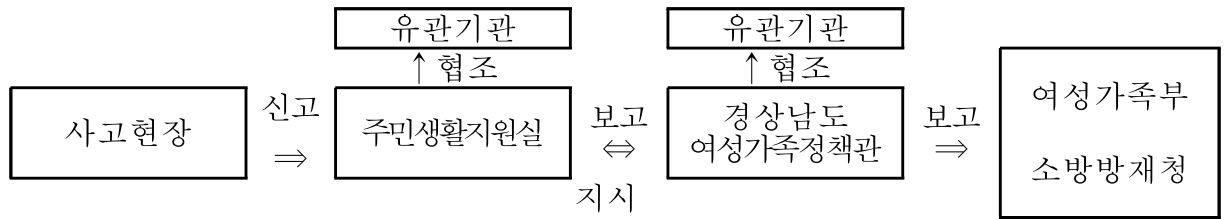
- 신고접수

- 유기시설의 임원 및 직원
- 응급환자 발생시 129응급환자정보센터 구급차 출동 요청
- 인근지역 및 군, 유관기관에 상황전파, 사고수습 지원 요청

- 초동조치

- 긴급복구 피해발생시 민방위대 긴급소집 요청
- 구난장비 동원(구급차, 소방차, 크레인, 굴삭기, 덤프트럭 등)
- 인명구조 및 응급복구 등 초동대처
- 의료기관 진료태세 확립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 현장 환자 처치 후송을 위한 기동의료반 사전 편성운영
- 구급차 장비, 약품 구비 신속출동 대처
- 응급실 당직근무 지정 및 상시 근무체계 확립

- 상황전파



○ 현장출동 및 도착

- 출동 중 조치사항

- 민방위대 및 각종 인력출동 소집
- 구난장비 동원
- 유관기관 협조지원 요청

- 선착대 지휘보고

- 사고지역 판단보고
- 환자 응급조치소 설치, 사망자 및 부상자 처리결과 보고
- 인근지역 피해예상 주민 긴급대피 결과 보고

- 지휘차량 현장도착

- 사고지역 통제제한 등 경계구역 설정
-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조치
- 긴급구조 통제소 설치(현장지휘소)
- 사고지역에 대한 긴급구조 실시
- 사망자 처리

라. 복구대책

○ 사고 조기수습 대책 강구

- 수련시설, 재난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합동조사반을 구성 사고 원인, 피해상황, 책임소재 등 과학적 피해조사
- 피해자(대표)와 보상협약(중재)
-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신속·정확한 사고수습

○ 피해시설 복구 및 정비대책 수립

- 피해시설 복구에 필요한 예산 확보(보험금 청구, 국고지원 등)
- 필요한 인력 및 물자 동원 등 비상체제 확립

1. 현 황

- 자전거도로 현황
 - 위 치 : 의령군 의령읍, 가례면, 낙서면, 부림면 일원
 - 개설현황 : L=32,55km(국토종주 연장포함)
 - 주요시설 : 파고라, 자전거 거처대, 조정데크, 공기주입기 등

2. 추진방침

- 자전거 도로에 대한 안전점검 및 순찰 강화로 안전사고 미연방지
-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완벽한 대책 수립

3. 안전관리대책

가. 예방대책

- 점검시기 : 정기(반기 1회), 수시 실시
- 점 검 자 : 군, 시설관리자

나. 단계별 점검실시

- ① 1단계 : 순찰책임자 지정(주 1회이상)
 - 자전거이용에 따른 개선사항 및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순찰
 -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캠페인
 - 교통안전 및 보행자에게 불편 해소를 위해 기초질서 준수 계도
- ② 2단계 : 일상점검(분기 1회)
 - 재난발생 위험이 높아 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
 - 사고발생 우려구간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③ 3단계 : 정기점검(년 1회)
 - 각종 노후시설 및 구조물에 대하여 개선사업 추진
 - 사고 위험구간에 대한 안전시설 점검 및 보완

④ 4단계 :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 노후시설 및 위험노선 안전진단 실시
- 불량 위험교량에 대한 전문가 판정시 중점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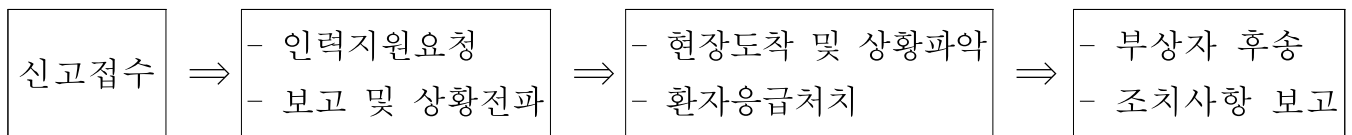
○ 재난대비 관련기관 비상연락 체계 구축

■ 시설물 담당 비상연락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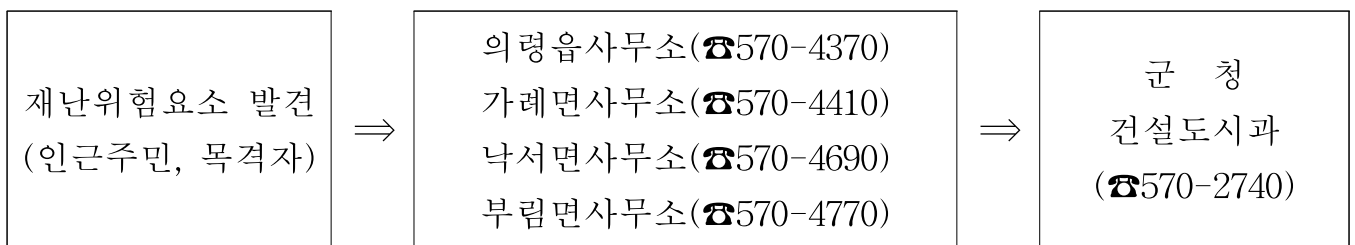
구 분	직 위	성 명	연 락 처
안전관리과	과 장	오성섭	055-570-2029
	지역개발담당	전중훈	055-570-2281
	주 무 관	조영정	055-570-2282
의 령 읍	읍 장	이대복	055-570-4200
	개발담당	허석건	055-570-4371
	주 무 관	박광원	055-570-4372
가 례 면	면 장	허칠규	055-570-4210
	산업담당	양민용	055-570-4411
	주 무 관	강지윤	055-570-4412
낙 서 면	면 장	이광기	055-570-4280
	산업담당	김판곤	055-570-4691
	주 무 관	남택균	055-570-4694
부 립 면	면 장	권중한	055-570-4290
	지역개발담당	허국한	055-570-4771
	주 무 관	박성룡	055-570-4772

다. 대응대책

○ 재난대응처리 흐름도



○ 신고 및 보고체계도



○ 신고접수 및 초동조치

1) 신고접수

- 읍·면 사무소 및 군청 직원

2) 초동조치

- 응급환자 발생시 119 구급차 출동요청
- 구급차 장비·약품 구비 신속출동 대처

3) 상황전파

- 조치사항 보고

라. 복구대책

○ 사고 조기수습 대책 강구

- 재난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사고원인, 피해상황, 책임소재 등 과학적 피해조사
-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신속·정확한 사고수습

○ 피해시설 복구 및 정비대책 수립

- 제시된 항구복구 대책에 의거 신속 복구
- 소요예산확보 및 완벽한 복구 시행
- 재난발생 원인을 감안하여 재발되지 않는 구조로 피해시설 복구

《유원시설 : 벽계관광지》

1. 안전관리대상

- 관광지 현황 : 벽계관광지(지정 : 1994. 12. 19.)
 - 위치 : 의령군 궁류면 벽계리 일원
 - 조성규모 : 287,000m²
 - 주요시설 : 야영장(90동), 방갈로(12동), 물미끄럼틀, 간이풀장, 매점 등
 - 운영관리 : 봉황청년회 위탁운영(1년단위 계약)

2. 추진방침

- 관광지 안전지도점검 체계확립
-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관리체계 확립

3. 안전관리대책

가. 예방대책

- 안전교육 실시
 - 시설 관리자 교육실시 (연 1회)
-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 점검시기 : 정기(반기 1회), 수시 실시
 - 점검자 : 군, 시설관리자

나. 대비대책

- 재난상황별 대피계획 수립
 - ① Action I : 비상 대응시스템 가동계획
 - 위험요인 등에 대한 상황판단회의 실시
 - 단계별 비상근무체제 및 장비·물자 보유상태 확인
 - 인적·물적 자원 긴급동원체계 확인
 - 대피방송실시 : 앰프, 차량으로 홍보방송 실시

② Action II :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 실행계획

- 침수지역 등 상습취약지역에 대한 주민대피
-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출입통제
- 야영객 대피유도 계획

지구명	대피장소	수용인원	안내요원 (전화번호)	비고
벽계지구	예동마을회관	50명	박영배 (570-4958, 010-9632-1822)	집중호우
	궁류면사무소	100명		

③ Action III : 재산피해 저감대책 실행계획

- 시설 담당자 현장 배치 및 점검 : 봉황청년회 사무국장 이충희
(☎) 010-3178-7721

○ 재난대비 관련기관 비상연락 체계 구축

■ 위탁관리자 및 관광시설물 담당 비상연락망

구 분	직 위	성 명	연 락 처
봉황청년회	회 장	전 병 모	010-7164-9191
	부 회 장	이 동 현	010-2436-5879
	사무국장	이 충 희	010-3178-7721
궁 류 면	면 장	전 용 원	055-570-4310
	총무담당	강 창 해	055-570-4821
	산업담당	이 점 범	055-570-4831
의병문화관광과	과 장	허 광 영	055-570-2024
	문화예술담당	오 미 선	055-570-2401
	관광체육시설담당	전 호 수	055-570-2421
	주무관	정 원 식	055-570-2443
	주무관	김 판 석	055-570-2432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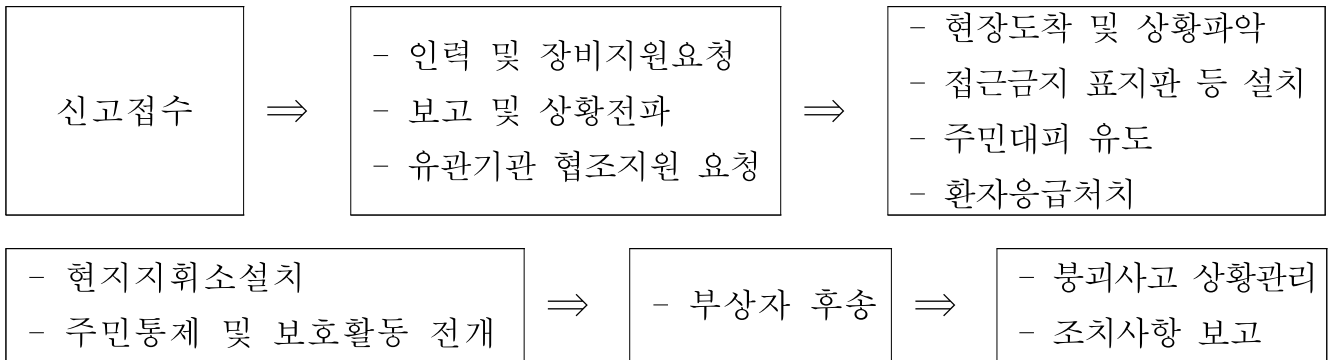
기 관 명	직 위	연 락 처
의령소방서	구조구급담당	570 - 9262
의령경찰서	경비교통과장	572 - 7000
육군 제5870부대 제15중대	중대장	572 - 2285
KT 함안지사	Mass고객팀장	572 - 1111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사업과장	753 - 7238
한전 의령지사	배전과장	570 - 3111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남지역본부	기술팀장	570 - 8400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지역본부	점검과장	282 - 0019

■ 풍수해 감시인 비상연락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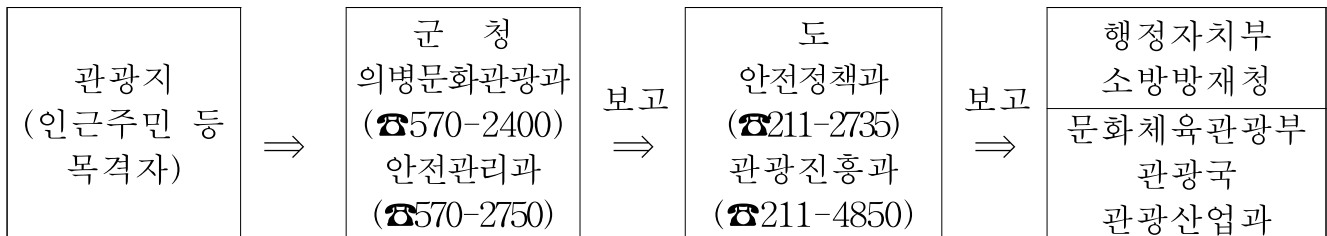
성 명	주소	전화번호
박 영 배	공류면 운계로 1길 42-4	010-4923-7891

다. 대응대책

○ 재난대응처리 흐름도



○ 신고 및 보고체계도



○ 신고접수 및 초동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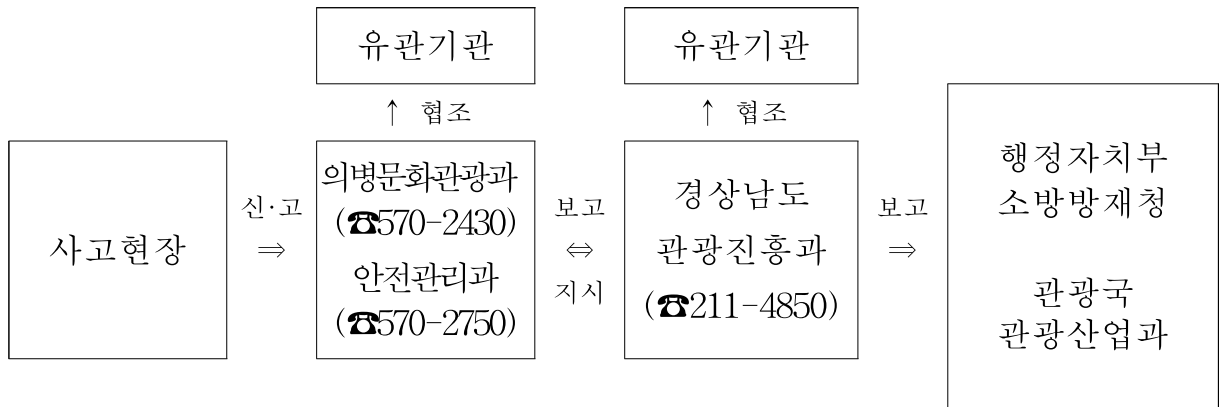
1) 신고접수

- 유기시설의 임원 및 직원
- 응급환자 발생시 119 구급차 출동요청
- 인근지역 및 군, 유관기관에 상황전파 사고수습 지원요청

2) 초동조치

- 긴급복구 피해발생시 민방위대 긴급소집 요청
 - 직장대, 기술지원대의 사고수습활동전개
- 구난장비 동원
 - 구급차, 소방차, 크레인, 굴삭기, 덤프트럭, 고공사다리
- 인명구조 및 응급복구 등 초동대처
- 의료기관 진료태세확립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 현장 환자처치 후송을 위한 기동의료반 사전 편성운영
- 구급차 장비·약품 구비 신속출동 대처
- 응급실 당직근무 지정 및 상시 근무체계 확립

3) 상황전파



○ 현장출동 및 도착

1) 출동중 조치사항

- 민방위대 및 각종 인력 출동 소집
- 구난장비 동원
- 유관기관 협조지원 요청

2) 선착대 지휘보고

- 사고지역 판단보고
- 환자 응급조치소 설치 사망자 및 부상자 처리결과 보고
- 인근지역 피해예상주민 긴급대피결과보고

3) 지휘차량 현장도착

- 사고지역 통제제한 등 경계구역 설정
-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응급의료기관 우선)후송 조치
- 긴급구조 통제소 설치(현장지휘소)

라. 복구대책

○ 사고 조기수습 대책 강구

- 관광지시설, 재난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사고원인, 피해상황, 책임소재 등 과학적 피해조사
- 피해자(대표)와 보상 협의(중재)
- 유관기관(군·경찰·병원 등)과의 적극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신속·정확한 사고 수습

○ 피해시설 복구 및 정비대책 수립

- 피해시설복구에 필요한 예산확보(보험금청구, 국고지원)
- 필요한 인력 및 물자 동원 등 비상체제 확립

《공공체육시설 안전대책》

1. 시설현황

구분	읍면	읍면													
		합계	의령	가례	칠곡	대의	화정	용덕	정곡	지정	낙서	부림	봉수	공류	유곡
공공체육시설	육상경기장	2	1									1			
	축 구 장	10	2	1		1	1	1	1	1		1	1		
	야 구 장	1	1												
	테니스장	6	2			1			1			2			
	간이운동장	3								1	1			1	
	생활체육관	1	1												
	수 영 장	1	1												
	국 궁 장	2		1								1			
신고체육시설	체육도장	3	2									1			
	골프연습장	4	3					1							
	체력단련장	1	1												
	당 구 장	9	5									4			
	무도학원	1	1												
등록	골 프 장	1	1												

2. 추진방침

- 체육시설 안전지도점검 체계확립
-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관리체계 확립
- 사업자 및 종사원의 안전의식 고취

3. 안전관리대책

가. 예방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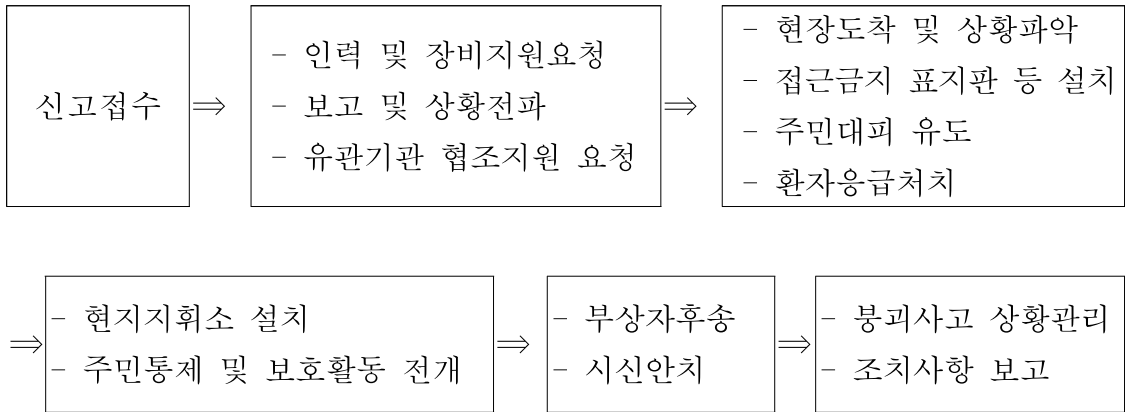
- 안전교육 실시
 - 시설 운영자(책임자) 교육 실시(연 1회)
 - 종사자 교육(연중)
-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 점검시기 : 정기(반기 1회), 수시 실시
 - 점 검 자 : 도, 군, 시설운영자

나. 대비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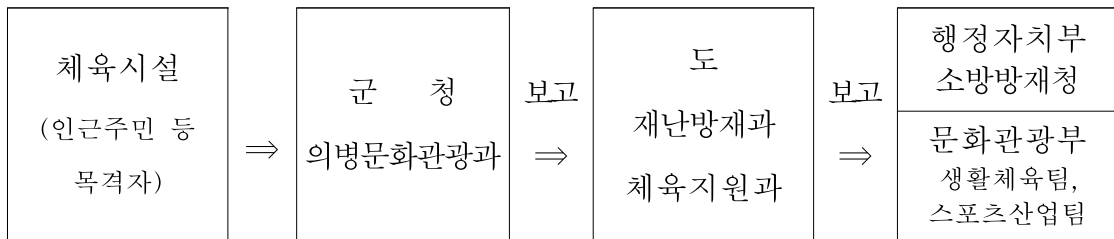
- 시설별 재난상황별 대피계획 수립
- 재난대비 관련기관 비상연락 체계 구축·운영

다. 대응대책

○ 업무처리 흐름도



○ 신고 및 보고체계도



○ 신고접수 및 초동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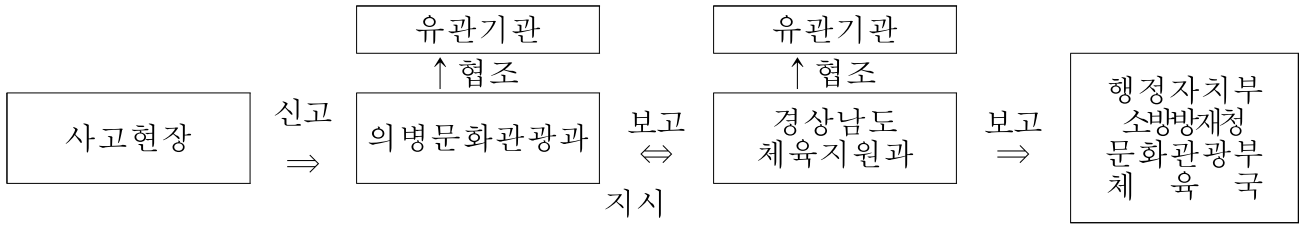
1) 신고접수

- 유기시설의 임원 및 직원
- 응급환자 발생시 119 구급차 출동요청
- 인근지역 및 군, 유관기관에 상황전파 사고수습 지원 요청

2) 초동조치

- 긴급복구 피해발생시 민방위대 긴급소집 요청
직장대, 기술지원대의 사고수습활동 전개
- 구난장비 동원
구급차, 소방차, 크레인, 굴삭기, 덤프트럭, 고공사다리
- 인명구조 및 응급복구 등 초동대처
- 의료기관 진료태세확립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 현장 환자 처치 후송을 위한 기동의료반 사전 편성운영
- 구급차 장비·약품 구비 신속출동 대처
- 응급실 당직근무 지정 및 상시 근무체계 확립

3) 상황전파



○ 현장출동 및 도착

1) 출동중 조치사항

- 민방위대 및 각종 인력 출동 소집
- 구난장비 동원
- 유관기관 협조지원 요청

2) 선착대 지휘보고

- 사고지역 판단보고
- 환자 응급조치소설치 사망자 및 부상자 처리결과 보고
- 인근지역 피해예상주민 긴급대피 결과보고

3) 지휘차량 현장도착

- 사고지역 통제제한 등 경계구역 설정
-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응급의료기관 우선) 후송조치
- 긴급구조 통제소 설치(현장지휘소)
- 사고지역에 대한 긴급구조 실시
- 사망자 처리

라. 복구대책

○ 사고 조기수습 대책 강구

- 체육시설, 재난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사고원인, 피해상황, 책임소재 등 과학적 피해조사
- 피해자(대표)와 보상 협의(중재)
- 유관기관(군·경찰·병원 등)과의 적극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신속·정확한 사고 수습

○ 피해시설 복구 및 정비대책 수립

- 피해시설 복구에 필요한 예산 확보(보험금청구, 국고지원 등)
- 필요한 인력 및 물자 동원 등 비상체제 확립

《문화시설 · 공연장 안전대책》

I. 계획의 의의

1. 안전관리의 필요성 및 전망

- 가. 주 5일 근무제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문화향유 욕구충족을 바라는 공연·축제 등 행사장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각 지역마다 열리는 다양한 축제와 행사에도 지역주민들의 관심 속에 많은 관람객이 찾고 있어, 대규모 인파가 동시에 밀집함에 따른 사고 발생시 많은 인명 피해 우려
- 나. 문화 관련시설이 다양화, 첨단화, 고속화 되어가는 반면, 사업주 및 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및 안전관리 의식 결여, 이용자의 안전의식 미흡
- 다. 공연·축제 등 행사장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자치단체, 행사주체, 유관기관, 관람객 등의 안전관리 및 행동매뉴얼이 없는 등 공연·축제 등 행사장의 종합적인 안전관리체제 미흡
- 라. “공연·축제 등 행사장 안전매뉴얼” 수립(2006. 7.) 및 공연법 개정(2006. 9.) 등으로 공연·축제 등 행사장 사고발생 방지 및 관람객 안전 확보 대책 강화

2. 기본방침

- 가 예방 위주의 재난관리 계획 추진
 - 문화 관련시설, 공연·축제 등 행사장 등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 개선
 - 안전관리 체계 확립,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 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교육 강화
- 나 재난발생시 대처능력 제고
 - 인명구조 우선의 응급조치 및 신속한 보고체계 유지
 -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및 신속한 수습·복구태세 확립
- 다. 재난관리 책임소재 명확화 및 자율 재난관리 체제 정착
 -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지정하여 재난관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
 -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평시의 지도·감독권을 행사하여 시설물 관리 주체가 자율적으로 재난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Ⅱ. 재난안전관리대책

1. 예방대책

가. 다중문화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1) 공연장에서의 관람객의 안전사고 예방 강화

가) 100석 이상 공연장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록 의무(공연법 제9조)

나) 공연장 운영자 및 공연장외의 장소에서의 공연(3천명이상 관람예상)을 하려는 자는 재해대처계획(안전관리 인력확보 계획 포함)을 수립, 관할 군수에게 신고, 군수는 관할소방서장에게 통보(공연법 제11조 ※개정 2006. 9. 27.)

다) 일정면적 이상의 공연장 건물(연면적 3,000㎡ 이상)에 대한 화재보험의 의무적 가입(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법률 제5조)

2) 무대시설의 체계적·안정적 관리 지속

가) 전문안전진단 기관이 공연장 무대시설에 대해 설계검토, 정기 안전진단, 수시검사를 실시(공연법 제12조)

나) 무대시설안전진단센터의 운영 활성화

(1) 무대시설 안전관련 정보교환 및 기술자문 강화

(2) 무대시설 안전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 기술교육 강화

(3) 공연장을 찾아가는 상설무대 기술자문단 운영 활성화

3) 복합영화상영관 비상대비 안전관리 지속 추진

가) 본 영화 상영 전 화재, 테러 등 비상시 대피요령 및 피난안내도 수록한 영화 상영

나) 상영관 입구에 상영관 도면, 대피로, 비상구 등을 표시한 안내판 설치

다) 각 층·출입구별로 피난 유도원 배치 등

2. 대비대책

가. 문화 관련시설 안전관리자, 종사자, 공연행사 주최자 및 시설이용자에 대한 정기적 교육 실시

- 1) 사고예방, 사고사례 및 사고처리 요령 등 교육
- 2) 비상 상황 발생에 대처하는 실전 대처 훈련 실시 등

나. 시설물의 이용방법, 유의사항 및 비상시 행동 요령 등 각 시설물 이용 안전수칙 제정 및 교육

다. 안전점검 및 재난발생시 처리요령을 위한 매뉴얼 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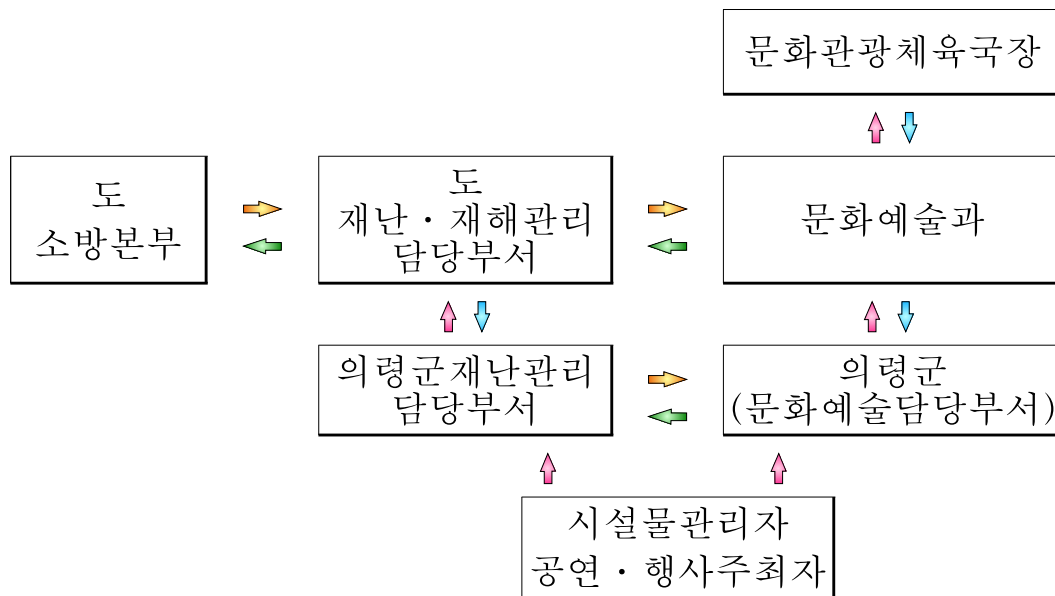
- 1) 안전 관리자를 위한 분야별 안전점검 매뉴얼 제작·배포
- 2) 안전관리 표준지침 마련 및 교육

라. 각종 방재물자·장비 확보

- 1) 재해 및 재난사고 대비 각종 안전장비 및 자재 사전확보

3. 대응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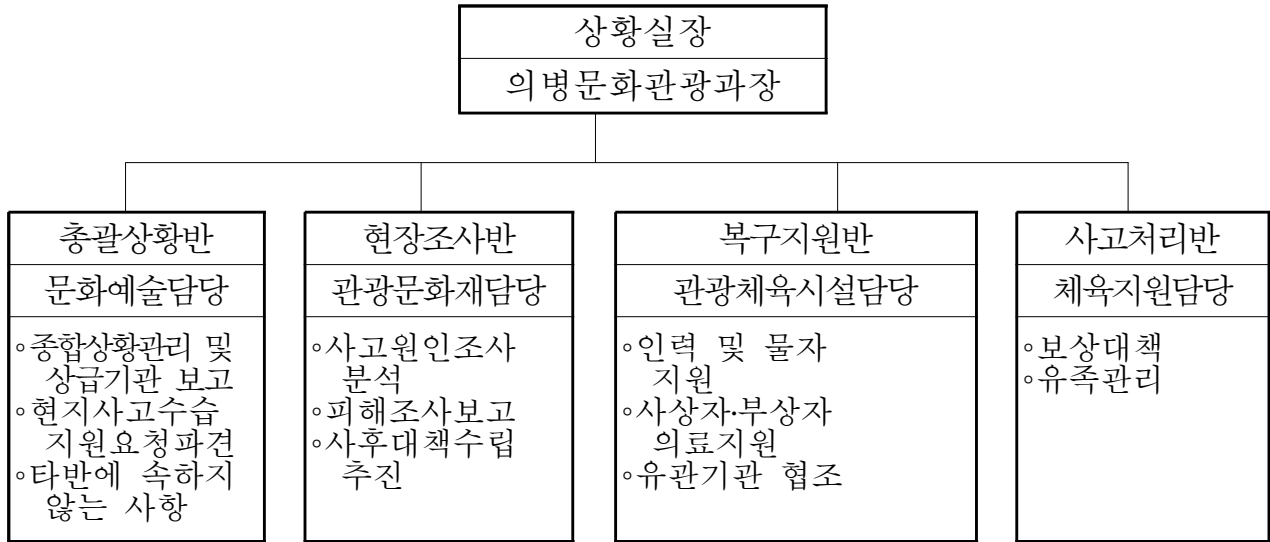
가. 신속·정확한 응급대응을 위한 보고체계 구축



○ 상황전파 (유관기관, 의료기관, 119구조대 등)

나. 유관기관(군·경찰·병원 등)과의 적극적 협력체제 가동

다. 문화예술과 재난 상황실 구성·운영



4. 복구대책

가. 사고 조기수습 대책 강구

- 1) 문화시설, 재난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사고원인, 피해상황, 책임소재 등 과학적 피해조사
- 2) 피해자(대표)와 보상 협의(중재)
- 3) 유관기관(군·경찰·병원 등)과의 적극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신속·정확한 사고 수습

나. 피해시설 복구 및 정비대책 수립

- 1) 피해시설 복구에 필요한 예산 확보(보험금청구, 국고지원 등)
- 2) 필요한 인력 및 물자 동원 등 비상체제 확립

다. 피해시설(지역)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위문활동 전개

- 1) 문화예술계, 체육계, 종교계 등 주관으로 봉사대 구성, 봉사활동
- 2) 사랑의 문화봉사단,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을 통해 피해 지역 및 피해 복구참여자 위문 활동

라. 전국적인 모금 캠페인 참여

- 1) 방송사 및 신문사 주관, 전국적 모금 캠페인 동참 협조
- 2) 도내 문화예술인 등 참여 협조 등

1. 현 황

□ 산악사고 추세분석('10 ~ '13)

○ 산악사고 구조건수

- '10 7,718 → '11 7,825 → '12 8,602 → '13 10,882

※ 여가시간 확대와 함께 산행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10 ~ '13년도 산악사고 발생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여성, 노약자 등도 안전하게 등산할 수 있는 안전대책 요구

2. 산악지역 안전관리 실태

○ 산악 안전사고 대응역량 미흡

- 산악 안전사고 발생우려 지역이 광범위한 데 비해 전문구조대원과 안전관리요원이 부족

- 안내/위치/위험경고 표지판 설치 부족과 관리부실로 등산객에 대한 안전정보 제공 미흡

○ 대부분의 산악사고 취약지역이 원거리 비도시지역에 산재되어 있어, 유관 기관·단체 간 신속한 대응활동 공조에 한계

○ 개인안전장구 미착용, 기상여건·등반기술과 체력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등반 등 산악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안전의식 미성숙

3. 세부계획

① 산악사고 예방 홍보 강화 (지자체, 소방관서)

○ 「산악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 적극 홍보

- 소방관서 홈페이지, 대중매체, 지역소식지 등 활용

- 보도안 작성 배포, 인터뷰 실시, 관련 동영상 제공 등

○ 산악사고 예방 캠페인 실시

- 시 기 : 봄(4·5월), 가을(9·10월)

- 장 소 : 주요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등

- 방 법 : 의용소방대, 민간산악구조대, 동호회, 유관기관

② 안전시설 보강 및 관리철저

- 산악 지역내 위치표지판/위험경고 표지판 설치 및 정비
 - 위험한 암벽, 암릉, 빙벽 등에 위험경고 표지판 설치
 - 등산로상 일정간격 지점·분기점에 위치 표지판 설치
 - 이동통신 통화가능 여부 및 통화가능 지점 표기
 - 유관기관·단체간 위치 표지판 설치 정보 공유
- 위험지역(절벽, 급경사로 등)에 난간·철책 등 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
- 간이구조구급함 설치
 - 대상지역 : 등산로 상 사고다발 지점 및 대피소
 - 비치물품 : 발광연막탄, 호루라기, 랜턴, 기초 구급약품, 응급처치 기자재 (붕대, 부목 등), 응급처치 책자 등
- 안전표지판, 안전시설, 간이구조구급함 관리 철저
 - 관리주체별 담당 책임자 지정과 수시 안전관리

③ 등산목 안전지킴이 활동 전개 (소방인력, 산림인력 전진배치)

- 기 간
 - 상반기 : 5. ~ 6. 기간 중 토·일요일, 공휴일
 - 하반기 : 9. ~ 10. 기간 중 토·일요일, 공휴일
- 근무시간 : 09:00 ~ 일몰시까지
 - ※ 등산객 수 등 현장상황을 고려, 시간은 탄력적 운영
- 배치장소 : 등산객이 많은 주요등산로 입구 중 선택
- 배치규모 : 등산객 수, 위험정도 등을 고려 자체실정에 맞게 운영
 - 119 구조대는 시도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구조헬기 응원
- 활동내용(소방관서 협조)
 - ▶ 구급대
 - 상비의약품 제공·희망자 혈압체크 및 응급처치와 이송
 - 신체이상 징후자 등산자제 요청과 산악사고 방지 홍보활동
 - ▶ 구조대
 - 사고다발 등산로 구간 유동순찰 및 요구자 발생시 구조활동
 - 산악사고 방지 및 산불예방 홍보

○ 홍보현수막 비치

- 근무 시 구조구급대원 배치지점에 설치
- 문안, 규격 및 디자인 등은 현지 실정에 맞게 제작

④ 위험지역 중점관리 (지자체, 소방관서)

○ 산악위험지역 등에 대한 합동안전점검 실시

- 시 기 : 연2회(5월, 9월)
- 주 관 : 지방자치단체 및 소방관서 합동 주관
- 협 조 : 소방관서, 민간 산악안전단체 등
- 점검과 조치
 - 안전표지판 및 안전시설 노후화 상태, 안전성 평가
 - 우기 전 보수·정비 가능한 시설은 즉시 조치
 - 즉시 조치 불가 시설은 등산객 통제 및 안내간판 설치 등 적극 관리

○ 취약대상 관리카드 작성 및 정비(소방관서)

- 대 상 : 주요 등산로 및 기타 산악사고 다발지역
- 관리카드 주요내용
 - 등산로 및 사고취약지역 현황, 긴급대피 가능 장소 및 대피로 현황
 - 위치표지판 설치 및 이동통신 불통지역, 헬기 이착륙 가능지점 현황
 - ※ 이동통신 불통지역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거쳐 이동통신 3사에 중계기 설치 요청(행정과 정보통신담당 부서와 협의 하에 실시)
 - 간이구조구급함 설치 현황과 기타 긴급구조 활동에 필요한 사항

⑤ 기상특보 발령 시 안전조치 강화 (지자체)

- 특보 발령 시 등산객에게 특보상황 및 대피정보 신속제공
- 폭우 등 악천후 및 기상특보 발령 시 입산통제 실시
- 위험지역에 대한 예찰활동 및 위험요소 사전제거
 - ※ 군수·구청장/소방본부장·서장은 대피명령권, 위험구역 설정권, 강제대피 조치권 적극행사(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 ~ 제42조)

⑥ 유관기관 · 단체 간 협력체제 강화

- 유관기관 · 단체 대상 응급처치교육 실시
 - 시 기 : 연 2회(5월, 9월)
 - 주 관 : 소방관서
 - 대 상 : 지자체 직원, 민간구조대원 등
 - 내 용 : 심폐소생술 등 기초 응급처치법 등
- 유관기관 · 단체 합동 산악구조훈련 실시
 - 시 기 : 연 2회(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자체적 결정)
 - 주 관 : 소방관서
 - 대 상 : 공단, 경찰, 민간구조대 등
 - 내 용 : 산악사고 인명구조요령, 긴급구조 합동전개 등
- 유관 기관 · 단체 간 공조체제 구축
 - 산악사고 관련정보 공유와 비상연락망 가동
- 민간산악구조대 활용 강화
 - 산악사고 다발지역 민간구조대 창설 유도 · 지원
 - 우수 자원 봉사자 확보 및 산악구조기법 숙달훈련 지원
 - 상황발생시 응원요청 등 긴급구조 공조체제 가동

【붙임1】

의령군 주요 등산로 현황

순번	산이름	위 치	구 간	연 장	재난대비시설	비고
계	7개소					
1	자 굴 산	가례면	새가례 ~ 정상	6.8km	달분재 대피소	
			개승마을 ~ 정상	2.0km		
			상촌마을 ~ 정상	5.0km		
			쇠목재 ~ 정상	1.7km		
			순환도로 ~ 정상	2.1km		
		칠곡면	내조마을 ~ 정상	3.5km		
			상산골 ~ 정상	3.2km		
대의면	자굴티재 ~ 정상	2.1km				
2	한 우 산	궁류면	벽계마을 ~ 정상	5.1km	임도시설	
			저수지 ~ 정상	6.3km		
			찰비계곡 ~ 정상	1.9km		
			벽계야영장 ~ 정상	8.9km		
		가례면	갑을마을 ~ 정상	10.1km		
		대의면	곡소마을 ~ 정상	2.5km		
3	남 산	의령읍	구름다리 ~ 정상	1.9km	임도시설	
			의병박물관 ~ 정상	2.3km		
			훈련장 ~ 정상	1.7km		
			구룡마을 ~ 정상	2.0km		
			만천마을 ~ 정상	1.7km		
			홍의수련원 ~ 정상	1.3km		
4	벽 화 산	의령읍	척곡마을 ~ 정상	3.5km	임도시설	
			수암마을 ~ 정상	2.4km		
5	미 타 산	부림면	감암마을 ~ 정상	7.0km	정상 대피소	
			국사봉 ~ 정상	6.0km		
6	국 사 봉	봉수면	서암마을 ~ 정상	2.0km	정상 대피소	
			죽전마을 ~ 정상	1.2km		
7	옥 녀 봉	유곡면	판곡마을 ~ 정상	2.1km	임도시설	
			대교가든 ~ 정상	1.3km		

1. 추진방침

- 가.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
- 나. 안전운항을 위하여 지속적인 예방점검 실시
- 다. 휴가철 등 성수기 현장 지도·점검 강화
- 라.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한 사전대비 철저

2. 예방대책

가. 현황

계		래 프 팅		수상레저장		비 고
업체수	대수	업체수	보트수	업체수	레저기구수	
1	17			1	17	

나. 안전관리 교육 및 검사

1)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실무교육

가) 담당공무원교육

- (1) 기 간 : 매년 1/4분기 중
- (2) 주 관 : 소방방재청
- (3) 내 용 : 수상레저안전법령 및 안전관리지침 해설, 선박구조·설비와 안전검사·점검 요령 등

나) 수상레저사업 사업자·종사자 교육

- (1) 기 간 : 4월중
- (2) 주 관 : 의령군수
- (3) 내 용
 - 수상레저안전법령, 안전관리, 운항규칙,
 - 인명구조장비 사용법 등

2) 정기 안전검사 실시

- 가) 대 상 : 신고 된 모든 동력수상레저기구 (년:1회)
- 나) 주 관 : 의령군수

※ 안전검사 대행기관 :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경남지부/선박검사기술협회

다. 수상레저사업 안전점검

1) 행락철 대비 수상레저사업장 및 레저기구 안전점검

가) 기 간 : 성수기전(4월)

나) 주 관 : 도 및 군 합동점검

다) 점검내용 : 선착장 안전시설 정비실태, 보트 및 시설물의 결함여부, 구조장비 확보 및 관리실태, 등록기준 준수 여부 등

2) 행락철(성수기) 수상레저사업 안전점검

가) 기 간 : 성수기(5~10월)

나) 주 관 : 도 및 군 합동점검

다) 점검내용 : 정원초과 운항, 사업자 준수사항, 안전수칙준수 여부 등

3. 대비대책

가. 수상레저사업 안전관리 대책 및 운영

1) 안전관리 근무체계 강화

가) 성수기 현장근무체계 구축

(1) 기 간 : 5월 ~ 10월 (6개월간)

(2) 근무체계 : 이용객이 많은 주요 수상레저장은 매일 상주근무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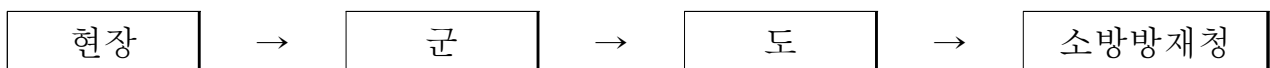
(3) 기타 수상레저장은 이용객이 많은 공휴일과 연휴기간에 상주근무 실시

(4) 근무요령 : 안전운항의무 준수여부 및 사고발생시 신속보고·안전조치 등

2) 수상레저사업 안전관리 상황체계 구축

가) 119구조대, 경찰청, 행정기관, 업체, 유관기관 등의 유기적인 비상 연락체계 구축

나) 보고체계



다) 보고내용

(1) 사고발생 유무 및 특기사항

(2) 사고발생 일시, 장소, 원인, 수상레저기구의 현황, 인적·물적 피해내용, 긴급구조 등 수습내용, 향후 조치 전망 등

라) 사고발생기록 관리유지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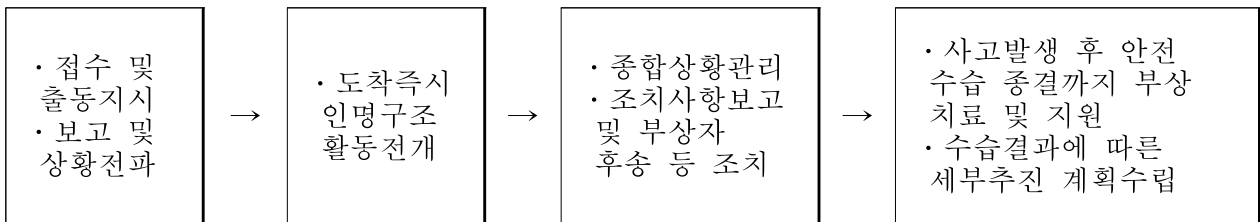
(1) 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유사사고 방지대책에 반영

나. 수상레저사업 사고유형별 대응 및 수습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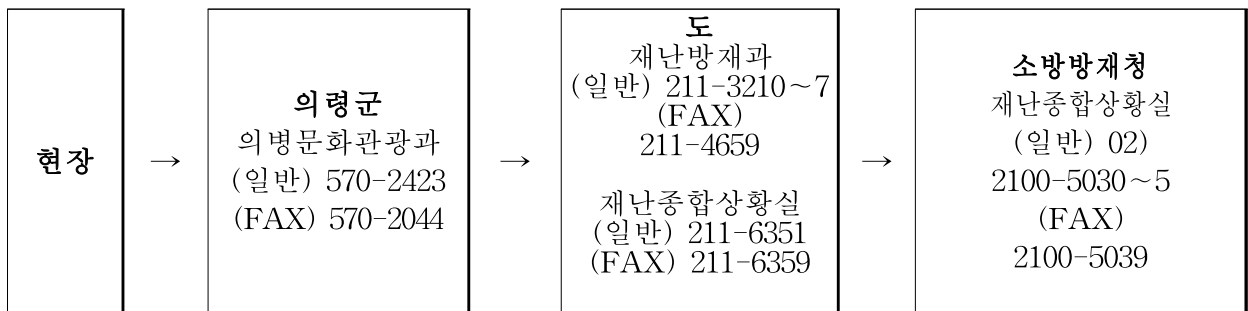
- 1) 지역특성에 맞게 유형별 수습체계 구축
 - 가) 화재, 충돌, 침몰, 표류, 유류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사고 등
 - 나) 승선객 안전대피 및 구조계획 등
 - (1) 자체 비상구조선 활용
 - (2) 군부대, 경찰, 119구조대, 및 민간구조대 등과 연계체계 구축
 - 다) 비상통신장비 및 초동진화장비 확보
- 2) 업체간, 유관기관 지원협조체계 구축
 - 가) 119구조대, 경찰서, 보건소, 병·의원 등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구축

4. 대응대책

가. 처리흐름도



나. 보고체계도(내수면)



다. 신고접수 및 초동조치

- 1) 신고접수
 - 119 및 유관기관 인명구조 지원 요청
- 2) 초동조치 (긴급구조체계)
 - 사고현장 → 119구조헬기, 비상구조선 등으로 구조 활동
- 3) 상황전파
 - 가) 사고대책본부 운영

- 나) 사고원인 및 피해상황 파악
- 다) 구조 활동에 관한 관계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 라) 인력장비동원 및 각종동향 파악

라. 현장출동 조치사항

- 1) 출동 중 조치사항
 - 무선통신망으로 신속한 사고현장 상황 파악 관리 및 대처준비
- 2) 선착대 지휘보고
 - 가) 신속한 활동전개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 나) 사고발생 상황 신속판단 및 보고
- 3) 지휘차량 현장도착
 - 가) 재난상황 종합 판단 하에 현장지휘소 설치
 - 나) 유관기관 동원 및 활동현황 파악

5. 복구대책

가. 사상자 처리대책

- 1) 부상자 치료대책
 - 가) 사고규모 등 상황에 따라 가동 의료진 현장파견 조치
 - 나) 보건소, 보건지소 등 비상대기조 편성·운영
 - 다) 필요시 응급의료소 설치, 응급인력 제공 및 구급차 등 장비확보
 - 라) 부상자 긴급후송을 위한 119구급차량 등 수송체계 강구

나. 사망자 처리대책

- 1) 사고규모 및 필요시 임시 안치소 설치
- 2) 병원·장례식장 등 안치소 운구 및 장례절차·보상 등 협의

다. 시설피해대책

- 1) 사고 레저기구 및 관련시설의 피해상황 파악 및 종합보고
- 2) 사고 레저기구의 인양, 예인처리 등 사고수습을 위한 장비·지원 인원 확보

라. 유류누출 등 수질오염 피해대책

- 1) 피해선박의 유류누출여부 등 신속한 상황파악
- 2) 환경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오일웬스 설치, 흡착포·유처리제 살포 등 조치
- 3) 유류누출 선박의 오염원인 차단 및 방재대책 등

I. 목적 및 추진방침

1. 목 적

- 가. 문화재는 대체 불가능하고 소멸되기 쉬우므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인적, 물적인 사전 예방 조치가 마련되어야 함
- 나. 태풍, 폭설 등 자연재난과 화재 등 불의의 재난으로부터 소중한 문화재와 그 주변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속한 대응 및 조기수습을 위한 복구 지원체계 확립으로 추가피해의 극소화

2. 재해환경 및 문제점

- 가. 지구 기후변화에 따른 호우, 강풍, 해일 등 기상이변 현상 빈발로 인해 노후 문화재의 재해 위험성 증대
- 나.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문화재 재해예방 참여활동 부족
- 다.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재해대책에서 탈피한 근원적 대책 마련 시급

3. 추진방침

- 가. 문화재청, 도 문화예술과, 유관기관 재난관련조직 협조 체계 재정비
- 나. 재해 중 가장 큰 피해를 주는 풍수해 및 화재예방 대책 마련
- 다. 재난위험 문화재 및 취약지구 선정 중점관리
- 라. 문화재 지킴이 운동 등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 마. 문화재 관리자 및 소유자의 정기점검을 통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

II. 재난관리활동 추진계획

- 풍수해와 같은 대부분의 재난은 인간의 기술과 능력으로 예방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재해는 사전예방이 절대적으로 중요
- 재난 관리 대상 시설
 - 총 지정 문화재 : 63건(65건 중 무형문화재 2건 제외)
 - 국가지정문화재와 주변지역 시설물 : 8건
 - 보물 3건, 천연기념물 5건
 - 등록문화재와 주변지역 시설물 : 2건
 - 도지정문화재와 주변지역 시설물 : 29건
 - 유형문화재 13건, 기념물 14건, 민속문화재 2건
 - 문화재자료와 주변지역 시설물 : 24건

1. 재난 예방 및 완화 대책

가. 풍수해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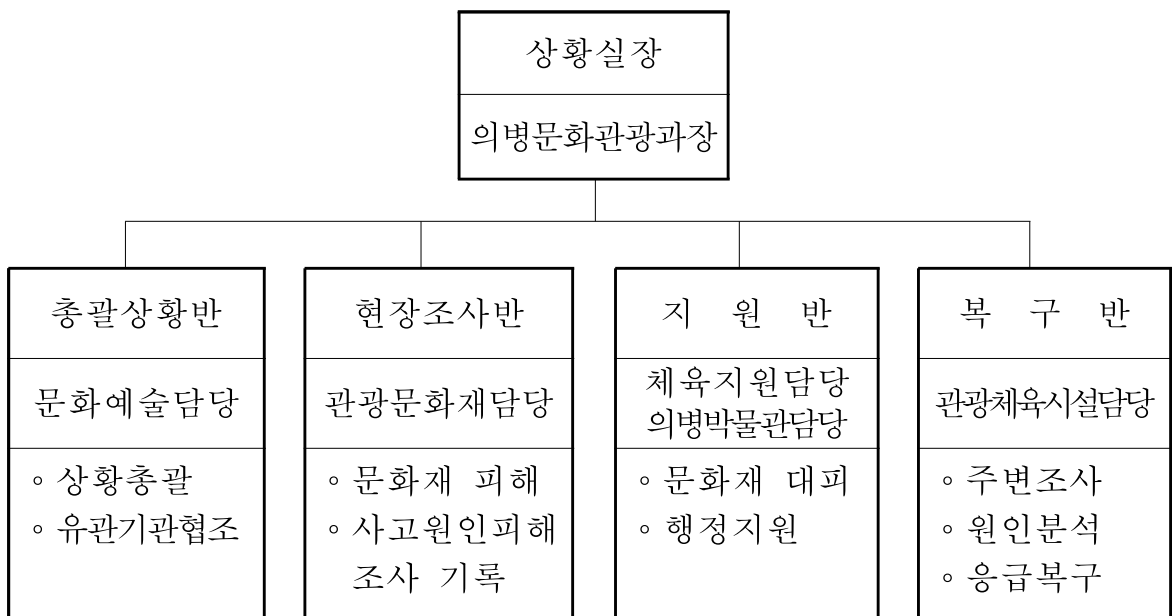
- 점검반 구성 및 점검실시
 - 관련부서 공무원과 유관기관 협조로 점검반 구성
 - 해빙기, 우수기, 동절기 등 연 3회 이상 점검
- 점검사항
 - 문화재 및 주변시설물 등 각종 문화재 보호시설의 배수시설, 담장, 석축, 축대, 산비탈면, 절개지 등에 대한 균열, 붕괴, 파손, 토사유실 우려부분 위험요소 점검
 - 목조건축물 지붕 누수 여부 점검 및 기와 고르기 정비
 - 시설물의 지반침하로 인한 균열, 이완상태 발생여부 점검
 - 유물전시관, 전수회관 등 주변시설의 취약부분 점검

나. 화재 및 충해 예방대책

- 점검사항
 - 건조물 전기누전, 가스누설 점검 및 주변 전기선 정리
 - 소화전, 소화기 등 방화장비 작동상태 점검
 - 건조물 문화재의 소유자 및 관리자의 화기 취급 숙지여부 확인
 - 공사현장 흡연금지 및 인화물질 제거 정비를 위한 교육실시
 - 문화재 주변 무속 행위에 따른 화기물 감시 강화
- 조치사항
 - 주요목조문화재 및 사찰 등에 대한 자체 진화대 및 의용소방대 비상체계 구축
 - 주요목조문화재 방충, 방부 처리 및 방연제 도포
 - 소화시설 점검 및 노후 소화기 교체
 - 문화재 소유, 관리자에 대한 계도
 - 소화기 비치, 사용요령,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교육
 - 관계기관, 관계자와의 비상연락망 숙지
 - 문화재 원형보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2. 재난 대비 조직 정비

가. 의병문화관광과 재난상황실 구성



나. 필요사항

- 문화재담당 공무원의 기술직, 학예직 확보로 전문성 강화 필요
- 문화재담당 공무원에 대한 기본적인 보수 교육 요망

3. 군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

가. 군민들의 참여유도 및 인식의 전환

- 문화재지킴이 모임, 문화재행정 모니터 및 명예관리인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로 정보공유
- 문화재 주변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체계 및 지킴이 유도
- 군민들에게 문화재 보존의 중요성 인식 마인드 조성

나. 홍보활동 강화

- 문화재 보호에 대한 각종 매체 활용 홍보 강화
- 중요 문화재에 대한 예방홍보 안내판 설치
- 각종 방송 및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군민 홍보활동 강화

4. 중점관리 대상 선정 관리

가. 선정대상 시설

- 문화재 전체점검 결과 재해우려가 있는 문화재를 선정 연중 중점관리
- 오래된 문화재 및 비나 눈이 많이 오는 지역 소재 문화재
- 주요목조문화재는 전체 중점관리 대상 선정

나. 관리방법

- 중점관리대상 문화재에 대한 관리책임자 지정, 수시로 점검활동
 - 소유자(관리자), 관계공무원, 지역주민 등
-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 분석을 통한 사안별 비슷한 피해 방지
 - 근본적 대비책 강구로 재해대비 예방활동 강화
- 문화재가 위치한 읍·면과 정기적인 현황 파악 및 보고 체계 유지

1. 목적

- 가.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인프라와 국가 정보화수준에 비해 매우 취약한 정보 보호 체계 강화
- 나.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각종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국가기반 보안인프라를 확충하여 예방 및 대응체계 확립
- 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예방을 위해 불법 유출 및 오·남용에 대한 개인정보 보안 강화

2. 추진대책

- 가. 중앙에서 추진 중인 국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보호서비스 지원사업 적극 홍보
 - 정보보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이버방역센터
 - 개인·중소기업 등 PC 해킹·바이러스 진단/퇴치 서비스 제공
 - 대국민 정보보호 118포탈 홈페이지 개발·운영
 - 해킹·바이러스, 개인정보침해 피해에 대한 신고 및 서비스상담
- 나. 사이버공격 예방 및 대응력 향상을 위한 보안관제 강화
 - 중앙 및 도의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시스템 연계관제 실시
 - 해킹·바이러스 유포 등 사이버 공격인지 시 피해실태 즉시 파악, 전산망을 분리하는 등 초동조치 철저
 - 보안 권고문, 보안프로그램 등을 적극 활용 해킹차단, 보안패치 및 백신프로그램갱신
- 다. 네트워크, PC 등 행정 정보통신기기 보안 인프라 확충
 - 좀비 PC 탐지 및 제거 시스템 구축
 - 네트워크 보안장비 구축
 - 위협관리시스템 센서 1식 및 네트워크 접근제어솔루션 2식 등
 - PC 보안패치관리시스템(PMS),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운영
 - 서버보안 및 침입차단시스템 운영

라.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강화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홈페이지에 I-PIN보급 운영
 - 보안서버, DB암호화 등 기술적 조치 강화
 - 개인정보보호 통합 DRM 솔루션 구축

3. 국가사이버위협 경보 발령에 따른 단계별 대응조치

가. 사이버위협 경보 『경계단계』에 준한 대응조치

-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및 도 사이버침해대응센터와 연계한 정보통신상황실 운영
- 피해예상 및 피해상황 추이에 따라 즉각적인 시스템 복구 실시 및 피해 확산 차단 조치
- 서비스거부 공격(DDOS) 발생 시 차단규칙 재설정 및 주요자료 백업 실시
- 공격 IP, 포트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시스템 취약점 점검 강화
-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네트워크 단절 검토

나. 사이버위협 경보 『심각단계』에 준한 대응조치

-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및 도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연계한 비상대응체계 가동
- 합동조사 및 피해복구 업무수행
- 경보발령 공격대상 서비스 포트 차단
- 기관 내 PC 사용 최소화 권고
-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네트워크 단절

다. 정보시스템 파손, 동작불능 대비 예비시스템 확보

- 재난으로 인한 정보통신시스템 파손대비 예비 시스템 확보
- 사이버위협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 및 파손 등 오동작 기기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예비시스템 확보

1. 식품품위생업소 관리·감독 강화

■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안전관리

- 상습·고의적으로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을 특별관리업소로 지정 관리
-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제 운영
 - 위생등급을 자율·일반·중점관리 업체로 구분 관리
 - 중점관리업체는 매년 1회 이상 집중 지도·점검
- ※ 자율관리업체는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입·검사 2년간 면제

■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이물 관리

- 이물 혼입관련 소비자 불만신고사항 신속 조사·처리 및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시정 및 예방조치를 통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 이물 보고 및 조사대상
 - 금속성 이물, 유리조각 등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이나 크기의 이물
 - 파리·바퀴벌레 등 위생곤충, 곰팡이, 각종 벌레 및 곤충, 생선가시, 동물의 뱃조각·이빨, 이썩시개, 돌맹이 등
- 이물혼입 원인조사
 - 소비단계 조사 ⇒ 유통단계 조사 ⇒ 제조단계 조사
-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설치 연중 운영 및 수시 확인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1399)와 통합 운영
 - 이물 보고, 원인조사 방법 등 세부내용은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매뉴얼을 참조

*이물 : 식품의 제조·가공·조리과정에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제조·가공조리, 유통 및 각 단계에서 혼입 또는 발생되어 섭취할 경우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

■ 식품접객업소 기초위생 안전관리

○ 음식점의 불판 세척제 안전관리

- 공업용 세척제 등 허용금지 세척제 사용 여부
- 세척제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매뉴얼 개발 보급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지속적 지도·계몽·홍보 실시

○ 횃집 등 수족관 안전관리

- 수족관수에 허용되지 않은 약품 사용 여부
- 수족관 차광막 설치, 여과조 청소, 정수장치 설치 권장 등

○ 음식점 남은음식 재사용 방지

- 남은 음식 재사용·조리 여부
- 손님에게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다른 손님에게 제공하는 행위

■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식품위생교육

○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위생교육

- 식품위생법 제41조, 시행령 제27조, 시행규칙 제51~54조
- 교육기관 : 한국식품산업협회,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등 4개 단체
- 교육시간
 - 신규영업자 4~8시간(운반·판매업 4,接客업 6, 제조업 8)
 - 기존영업자 2~3시간(매년 1회)

○ 교육기관별 위생교육 대상자 관리 강화 및 교육내용 내실

■ 위생 사각지역(전통시장 등) 안전관리

○ 위생 사각지역인 전통시장에 대해 단속위주의 행정보다 지도·계몽 교육 등 실질적 지원위주의 위생관리를 강화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판매식품의 안전성 확보

○ 식중독예방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비 지원 사업실시

- 지원대상 : 10개소(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 대상사업 : 노후된 주방(개방형) 및 화장실, 탈색되고 훼손된 바닥, 기타 영업장 내·외 비위생적인 시설개선 등
- 사업비 : 20,000천원

2. 유통·판매식품 등 안전관리

■ 식품유통·판매업소 등의 안전관리

- 유통식품(수입식품 포함)에 대한 수시 점검 및 수거검사로 부정·불량식품 유통 차단
 - 위해식품 유통·판매행위 추적조사 등 철저한 사후관리
 - 유통과정 중 부패·변질될 우려가 많은 식품 집중 관리
- 식품,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허위·과대광고 행위 및 이를 제조한 업소 지도·점검 강화
- 주요 점검내용
 - 무신고 및 무표시 제품의 유통·판매행위
 - 유통기한(제조일자) 위·변조 판매행위
 - 수입식품의 표시사항을 신고내용과 다르게 표시·판매행위
 -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판매행위
 - 부패·변질식품 판매행위
 - 냉장·냉동제품, 신선편의식품 등의 적정 보관·운반·진열·판매여부
 - 불법 수입식품 등 취급·판매행위
 - 질병치료 효능 허위·과대광고 식품 위해성분 함유여부 수거검사
 - 표백제, 색소 등 위해물질 처리 및 판매행위
- 지도·점검결과 조치
 - 무신고·무표시, 인체 위해물질 첨가, 유통기한 변조제품 등은 유통경로 추적 조사 행위자 적발 후 형사고발
 - 인체 위해발생 우려, 유통기한 또는 함량 허위 표시하는 등 소비자 기만 행위업소 원료 구입·제조공정 등 정밀조사 및 위반시 강력한 행정 제재 조치

■ 식품 등의 수거·검사

- 국민 다소비식품 중 집중 감시 및 수거·검사 확대
 - 유통점유율 및 최근 3년간 검사결과 부적합 비율이 높은 식품 검사
 - 대형할인매장, 전통시장 유통식품 연중 수시 수거

- 지역특산물, 전통식품, 농수산물 계절적 특성 고려 수거
- 온/오프라인 판매식품 집중관리로 유통식품 안전관리 강화
 - 모니터링요원 활용 허위·과대광고 등 인터넷 불법판매 행위 예방
 - 유관기관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 및 반복·상습적 위반업소 추적관리

3. 식품사고 사전예방 및 신속한 사후 대응

■ 식중독 상시 예방체계 강화

- 식중독 상시 예방체계 구축 및 식품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 조치
 - 도, 보건환경연구원, 의령교육지원청, 학교급식소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운영
 - 식중독 예보지수 문자메세지 무료 전송
-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생업소 관리 강화
 -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1399」 연중 운영
 - 위생업소에 대한 분기별 지도·점검 강화
- 식중독 사고 예방 홍보·교육 확대 지원

■ 어린이 식품위해환경 개선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 부정·불량식품 관리 강화
 -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을 통해 학교주변 200m 이내 부정·불량 식품 퇴출 유도
 -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사후관리 강화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우수판매업소 지정·관리
 -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정서 저해식품 등의 판매 예방
- 어린이 먹을거리 영양교육·홍보 강화
 - 지역언론매체, 홍보물 등을 활용한 식품안전·위생·영양관련
 - 초등학생, 교사, 학부모 및 주변 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

<성폭력 예방>

1. 목적

- 가. 지역사회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예방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하여 폭력예방의 인식을 넓히고 사회분위기 형성
- 나. 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통하여 성범죄 방지를 위한 인식 제고

2. 추진대책

- 가. 성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실시
 - 교육기관 종사자 및 학부모 교육
 - 학교나 가정에서 직면하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방안과 사례위주의 폭력예방교육
 - 유아기관, 초·중·고등학교 성폭력예방교육
 - 스스로 성폭력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적 체험교육을 통해 올바른 성정체성을 확립
- 나. 성폭력 예방홍보활동
 - 캠페인 및 홍보물 배부
 - 성폭력의 심각성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실시
 - 폭력근절을 위한 서명운동 및 홍보물품 배부

<가정폭력 예방>

1. 목적

- 가.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형성을 위하여 예방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하여 인식변화를 추구

- 나. 가족관계향상과 역량강화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행복과 안전을 이루기 위한 사회적 노력의 필요성 강조

2. 추진대책

- 가.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실시
 - 남편교육, 부부교육, 자녀교육 등
 - 가정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화목한 가정을 위한 서로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 교육
 - 아동·청소년 대상 폭력예방교육
 - 지역사회 차원의 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역할과 방법교육

- 나. 가정폭력 예방홍보활동
 - 캠페인 및 홍보물 배부
 - 가정폭력의 심각성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실시
 - 폭력근절을 위한 서명운동 및 홍보물품 배부

<학교폭력 예방>

1. 목적

- 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범죄행위에 대한 인식 제고하기 위함

2. 추진대책

가.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실시

- 교육기관 종사자 및 학부모 교육
 - 학생을 하나의 성장 행위로 보고 온정주의적 시각과 학교폭력 은폐에 대한 학교의 미흡한 대응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예방 및 대처 방안 교육
-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예방교육
 - 청소년에 대한 인성 및 사회성 함양 교육의 부재와 인터넷·영상매체의 부정적 영향으로 학교폭력 발생 빈도와 강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협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학교생활과 또래관계 형성을 위하여 예방교육 프로그램 실시
- 학교폭력 피해자(목격자)의 신고를 돕기 위한 찾아가는 거리상담과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실시

나. 학교폭력 예방홍보활동

- 캠페인 및 홍보물 배부
 - 학교폭력 예방 홍보물 배부 및 캠페인 실시
- 청소년 1388 상담전화 운영

제14절 축제장 안전

1. 현 황

○ 2016년 지역축제 개최 현황

개최기간	축제명	장소	주최	비고
4월중	제44회 의병제전	의령읍 일원	의병문화관광과	
4월중	의령 전국민속소싸움대회	전통농경문화테마파크	(사)한국민속소싸움협회	
4월중	제16회 토요일 수박축제	의령천 둔치 (공단교 하류지역)	농축산유통과 (토요일수박축제위원회)	
5월중	2016 전국의병마라톤대회	의령읍~화정면일원	의병문화관광과	
5월중	제17회 한우산 철쭉제	한우산 정상	의병문화관광과	
5월중	한가위 의령민속소싸움대회	전통농경문화테마파크	(사)한국민속소싸움협회	
9월중	한가위 의령민속소싸움대회	전통농경문화테마파크	(사)한국민속소싸움협회	
10월중	제19회 의령한지축제	부림면(신반시장)	의병문화관광과	

2. 추진방침

- 한발 앞선 선제적 점검을 통한 지역축제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제로화
- 분야간 협업 점검에 따른 지역축제 개최 안정적 성공 기여
-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완벽한 대책 수립

3. 추진체계

가. 안전관리계획 수립(축제개최 30일 전)

- 작 성 자 : 지역축제 담당자
- 의견수렴 : 경찰서, 소방서, 전기, 가스 등 지역축제 안전관리 관련 유관기관

나. 안전관리계획 제출·심의요청(축제개최 21일전)

- 축제담당부서는 재난관리부서(안전관리과)에 심의요청

- 지역축제를 민간기관·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경우 : 지역축제 담당부서로 제출
- 민간기관·단체에서 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공연법, 보조금 조건 등을 검토 후 필요시 심의요청

다. 사전검토요청(축제개최 14일 전)

- 재난관리부서 : 심의 전,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 등에게 검토요청
- 검토요청대상 : 경찰서, 소방서, 전기, 통신, 가스, 민간전문가 등

라.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심의상정(축제개최 10일 전)

-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심의상정 : 대면심의 원칙
-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설명 후 심의·토론

마. 심의결과통보(축제개최 5일 전)

- 지역안전관리위원, 지역축제담당부서, 행사개최 등 관계기관에 통보
- 안전관리계획에 보완사항 통보

바. 지역축제장 합동 지도·점검(축제개최 1~2일 전)

- 축제행사장에 대한 합동지도점검계획 수립
- 합동지도점검 시 축제 행사장의 안전관리 미흡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조치 후 축제추진

사. 현장상황실 운영(축제기간 중)

- 안전요원, 진행요원, 구조요원, 구급요원 등으로 구성
- 축제 종료 시까지 출입통제 등 질서유지 및 상황관리
-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경찰 및 소방관서에 즉시 협조요청
- 사고발생 시를 대비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팀과 연계체계 유지

4. 안전관리추진체계

가. 지역축제시작 전

- 안전관리계획의 준수 : 기타 관련법에 의한 인·허가 사항 성실히 행
- 축제 전 안전관리요원 사전교육 : 근무요령, 비상구위치, 긴급상황발생 시 안전조치 요령, 부상자 발생시 응급조치방법 등
- 갑작스러운 기상악화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대책점검
- 야외 임시 무대설치 시 일반인 출입 통제 및 설치종사자 안전교육실시
- 긴급상황 발생대비 행동요령 및 안내방송문안 마련

나. 지역축제진행 중

- 지역축제 행사장 내 종합안내소 운영 (물품보관, 미아보호 등)
-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지속실시 : 안전관리 취약지역 집중배치
- 차량 출입구 교통안내요원배치 : 긴급상황발생대비 '비상차량동선' 확보
- 종합상황실 : 행사마무리시간까지 상황유지
- 긴급상황(기상악화 등)발생시 관계기관과 상황판단회의 개최
: 축제진행여부 결정 및 후속대책마련

다. 지역축제진행 종료 시

- 지역축제 행사가 종료되면 안전관리요원을 재배치 관람자의 안전귀가조치
- 임시시설과 안전저해물질(못, 쇠파이프 등) 철거
- 관계전문가는 안전관리문제점 분석후, 다음연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

라. 지역축제사고발생 대응

1) 사고현장 상황관리 ■ 인명구선구조실시

-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인명 구조·구급
-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의 구조요청 시 즉시 출동 인명구조

- 사상자 발생 시 : 중증도 분류에 따라 환자 이송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속하게 이송조치 후 관계행정기관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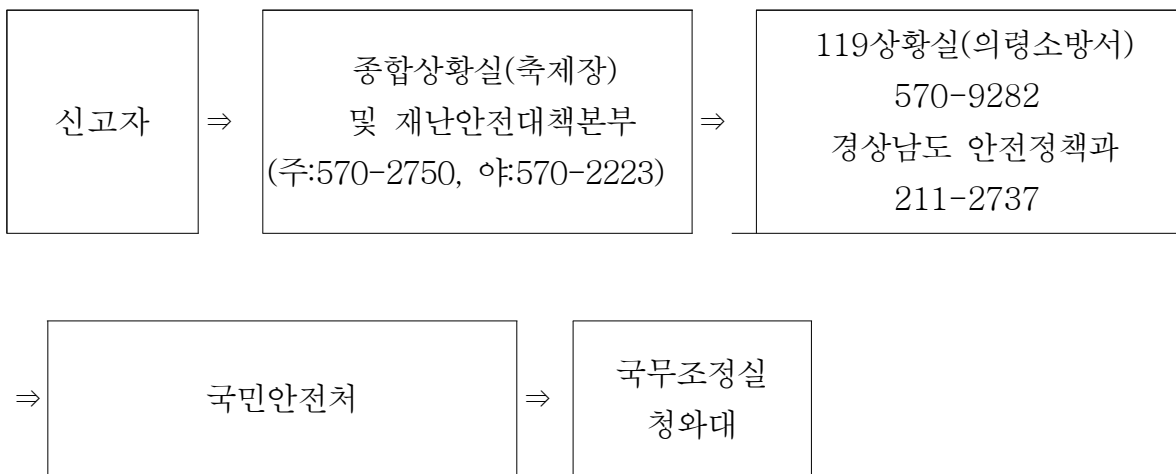
■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안내

- 사고발생 즉시 관객이 동요하지 않도록 안내방송실시, 피난유도
- 사전수립계획에 의거 안전관리요원 재배치
- 추가 사고방지를 위하여 관계기관(경찰, 소방서) 협조요청 안전대처
- 피해규모 등 주변상황판단 후, 신속하게 119와 유관기관 통보
- 사고 발생 즉시 축제진행 중지, 현장질서유지를 위한 통제선 설치

■ 2차 재난방지

- 사고발생 즉시 축제진행 중지, 2차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안전점검실시
- 사고 현장 통제선 설치 : 현장질서유지를 위한 필요조치
- 행사장 주변 취약시설 점검 후, 위험요인 제거 및 안전조치
- 사고발생 즉시 관객이 동요하지 않도록 안내방송실시, 피난유도

■ 상황보고 및 전파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 사고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 단체장은 사고 실태를 파악하고 수습을 주도
 - 부단체장 등 간부 비상소집과 각 실과별 역할을 수행
 - 현장에서는 긴급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 지휘
 - 병원 또는 의료기관 지원요청, 현장 응급진료소 설치·운영
 - 사고현장 통제선 설치·운영
 - 인력·장비 등 동원명령(민간구조대와 전문인력, 자원봉사자 등의 지휘통제)

2) 사고발생 수습·복구

- 사고현장조사 등 : 재난관련기관과 협의, 조사반편성 공정조사 실시
- 피해조사 및 현장복구
 - 주민생활과 밀접한 교통, 통신, 전기, 가스시설 우선복구
 - 화재, 가스폭발 등 2차 피해발생요인 사전제거
 - 피해조사 완료 후 항구 복구대책 추진
- 사상자 수습
 - 의료기관수용, 신원파악, 유족과 부상자 관리
 - 응급 구호용품 지급, 급식과 방역조치
 -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사상자 수용 병원별로 담당자 지정·관리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 대형재난 발생 시 수습복구는 1차적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책임으로 추진
 - 재난발생, 진행, 수습, 상황관리와 지휘통제 등 재난상황 지속관리
 - 본부상황실과 현장간 긴밀한 연락체제 유지,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복구 지원
- 보상 등 마무리

5. 상황관리 매뉴얼

가. 대응·수습절차

단 계	국민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남도, 의령군
상황보고 및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부처 유관기관 상황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부처 보고
초동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판단회의 개최 ■ 상황관리관 파견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운영·검토 ■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설치·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남도, 의령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판단회의 -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 인력·장비 등 동원 - 현장 CP 가동 - 사상자 중증도 분류 및 이송 - 사상자 관리 - 자원봉사자 관리 - 피해지역 인근 주민긴급대피조치 ■ 소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구조통제단 설치·운영 - 구급차, 소방인력을 배치 - 인명구조 및 사상자 이송 - 인근소방서 응원요청 - 긴급구조활동 현장지휘 ■ 경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현장 출입통제선 설치 - 관람객대피유도 및 교통정리 - 돌출행동 발생 억제 및 관리

단 계	국민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남도, 의령군
수습 및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시 중앙사고수습본부설치 ■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 긴급지원 검토·조치 ■ 사고조사단 파견 ■ 특별재난지역 선포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남도, 의령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장 안전점검 - 사상자 장례문제, 치료대책협의 - 사고가족 피해수습협의 - 사고수습 응원요청 - 사고응원요청 - 사고원인조사 - 긴급구조활동 등 홍보 ■ 경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발생원인과 책임자 규명 등
재난 심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심리 상담활동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심리 상담활동 전개

나.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기 관 명	직 위	연 락 처
의령소방서	현장통제단장	570 - 9262
의령경찰서	경비교통과장	572 - 7000
육군 제5870부대 제15중대	중대장	572 - 2285
KT 함안지사	Mass고객팀장	572 - 1111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사업과장	753 - 7238
한전 의령지사	배전과장	570 - 3111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남지역본부	기술팀장	570 - 8400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지역본부	점검과장	282 - 0019

「참고」

《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 》

2016. 1월기준

번호	관리번호	시설명	관리주체	시설물 유형	등급
1	D487200001	의령천 공단교 (의령읍 동동리)	건설도시과(도로담당)	교량	B
2	D487200003	의령천 가례교 (가례면 가례리)	건설도시과(도로담당)	교량	B
3	D487200010	신반천 새마교 (부림면 단원리)	건설도시과(도로담당)	교량	C
4	D487200018	신반천 모두교 (봉수면 서암리)	건설도시과(도로담당)	교량	C
5	D487200020	유곡천 의동교 (공류면 압곡리)	건설도시과(도로담당)	교량	C
6	D487200033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공공업무시설	A
7	D487200038	의령군청	재무과(재산관리담당)	공공업무시설	B
8	D487200039	의령읍사무소	재무과(재산관리담당)	공공업무시설	B
9	D487200043	의령시장	경제교통과(상공담당)	판매시설	B
10	D487200044	의령버스터미널	경제교통과(교통담당)	운수시설	A
11	D487200045	의령군민문화회관	시설관리사업소(종합사회복지관담당)	공연장	A
12	D487200046	소망의집	주민생활지원실(사회복지담당)	기타(건축물)	A
13	D487200047	헤림학원	주민생활지원실(여성아동담당)	기타(건축물)	A
14	D487200061	의령공설운동장	시설관리사업소(시설담당)	운동시설	B
15	D487200071	신반시장	경제교통과(상공담당)	판매시설	A
16	D487200075	명주교	건설도시과(도로담당)	교량	A
17	D487200078	의령군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사업소(시설담당)	수련시설	A
18	D487200083	자굴산청소년수련원	주민생활지원실(여성아동청소년담당)	수련시설	A
19	D487200085	대천교	건설도시과(도로담당)	교량	B
20	D487200087	서암교	건설도시과(도로담당)	교량	A
21	D487200099	(주)남강레저	의병문화관광과(체육지원담당)	수상레저시설	A
22	D487200101	의령군종합사회복지관	시설관리사업소(종합사회복지관담당)	공공업무시설	A
23	D487200102	대신아파트	안전관리과(건축행정담당)	아파트	B

번호	관리번호	시설명	관리주체	시설물 유형	등급
24	D487200103	남산아파트	안전관리과(건축행정담당)	아파트	B
25	D487200104	삼영파크	안전관리과(건축행정담당)	아파트	B
26	D487200107	의령교회	의병문화관광과(문화예술담당)	종교시설	A
27	D487200108	의령성당	의병문화관광과(문화예술담당)	종교시설	A
28	D487200109	일봉실버랜드	주민생활지원실(노인복지담당)	기타(건축물)	A
29	D487200113	의령국민체육센터	시설관리사업소(국민체육센터담당)	공공업무시설	B
30	D487200114	의령요양원	주민생활지원실(노인복지담당)	기타(건축물)	A
31	D487200115	새삶의집	주민생활지원실(통합조사관리담당)	기타(건축물)	A
32	D487200116	스카이호텔	민원봉사과(위생담당)	숙박시설	A
33	D487200117	아비송호텔	민원봉사과(위생담당)	숙박시설	A
34	D487200118	하얏트호텔	민원봉사과(위생담당)	숙박시설	A
35	D487200121	의령병원(의료법인 백암의료재단)	보건소	의료시설	A
36	D487200122	의령구름다리	시설관리사업소(국민체육센터담당)	교량	B
37	D487200125	홍의청소년수련원	주민생활지원실(여성아동청소년담당)	수련시설	A
38	D487200126	가미교	건설도시과(도로담당)	교량	A
39	D487200127	운곡교	건설도시과(도로담당)	교량	B
40	D487200128	정동교	건설도시과(도로담당)	교량	B
41	D487200129	중촌교	건설도시과(도로담당)	교량	A
42	D487200130	전통농경문화테마파크 (소싸움장)	농업기술센터 (농축산유통과 유통지원담당)	관람장	A
43	D487200131	농경문화홍보전시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유통과 유통지원담당)	관람장	B
44	D487200136	궁소교	건설도시과(도로담당)	교량	B
45	D487200140	(구)정암교	건설도시과(도로담당)	교량	B
46	D487200141	의령군 보건소	보건소	공공업무시설	A
47	D487200142	노인복지관	주민생활지원실(노인복지담당)	공공업무시설	A
48	D487200145	유곡천다목적캠핑장	의병문화관광과(관광문화재담당)	유원시설	A
49	D487200146	벽계야영장	의병문화관광과(관광문화재담당)	유원시설	A

번호	관리번호	시설명	관리주체	시설물 유형	등급
50	D487200147	의병박물관	의병문화관광과(의병박물관담당)	전시장	A
51	D487200148	의병교재가설공사장	건설도시과(도로담당)	대형토목공사장	A
52	D487200150	일봉효누리요양원	주민생활지원실(노인복지담당)	노유자시설	A
53	D487200151	강변여과수개발 사업공사장	환경수도과(상수도담당)	대형토목공사장	A
54	D487200152	운암사	의병문화관광과(관광문화재담당)	종교시설	B
55	D487200153	유학사	의병문화관광과(관광문화재담당)	종교시설	B
56	D487200154	의령볼링센터	의병문화관광과(체육지원담당)	운동시설	A
57	D487200155	홍의정(궁도장)	의병문화관광과	운동시설	A
58	D487200156	친환경골프장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운동시설	A
59	D487200157	개승교	건설도시과	교량	A
60	D487200158	상촌교	건설도시과	교량	A
61	D487200159	요도교	건설도시과	교량	B
62	D487200160	양성교	건설도시과	교량	A
63	D487200161	큰들교	건설도시과	교량	A
64	D487200162	가막교	건설도시과	교량	A
65	D487200163	금동교	건설도시과	교량	A
66	D487200164	상동교	건설도시과	교량	B
67	D487200165	가미2교	건설도시과	교량	A
68	D487200166	교암교	건설도시과	교량	A
69	D487200167	와요교	건설도시과	교량	A
70	D487200168	이목교	건설도시과	교량	A
71	D487200169	죽전교	건설도시과	교량	A
72	D487200170	소상교	건설도시과	교량	B
73	D487200171	가현교	건설도시과	교량	A
74	D487200172	두곡교	건설도시과	교량	A
75	D487200173	직금교	건설도시과	교량	B
76	D487200174	음지교	건설도시과	교량	B
77	D487200175	신기교	건설도시과	교량	A

번호	관리번호	시설명	관리주체	시설물 유형	등급
78	D487200176	평촌교(군도)	건설도시과	교량	A
79	D487200177	임천교	건설도시과	교량	B
80	D487200178	봉황교	건설도시과	교량	B
81	D487200179	평촌교(농도)	건설도시과	교량	B
82	D487200180	평촌2교	건설도시과	교량	A
83	D487200181	우봉교	건설도시과	교량	A
84	D487200182	계현교	건설도시과	교량	A
85	D487200183	마현교	건설도시과	교량	A
86	D487200184	운계1교	건설도시과	교량	A
87	D487200185	운계2교	건설도시과	교량	A
88	D487200186	신촌2교	건설도시과	교량	B
89	D487200187	당동교	건설도시과	교량	A
90	D487200188	덕천교	건설도시과	교량	A
91	D487200189	판곡교	건설도시과	교량	B
92	D487200190	신송산교	건설도시과	교량	B
93	D487200191	엄현교	건설도시과	교량	A
94	D487200194	의령군립노인전문병원	보건소	의료시설	A
95	D487200195	의령사랑병원	보건소	의료시설	A
96	D487200197	의령사랑요양병원	보건소	의료시설	A

《 시설물 관리시설 현황 》

2016. 1월기준

번호	시설물명	시설물종류	종별	주소
1	대곡 1교	도로교량	2종	의령군 부림면 대곡리
2	백야교	도로교량	2종	의령군 의령읍 무전리
3	상포교	도로교량	2종	의령군 낙서면 아근리
4	세간교	도로교량	2종	의령군 유곡면 세간리
5	정동교	도로교량	2종	의령군 궁류면 벽계리
6	대산제	제방·배수문	2종	의령군 의령읍 대산리
7	대산제배수문	제방·배수문	2종	의령군 의령읍 대산리
8	만천제	제방·배수문	2종	의령군 의령읍 만천리
9	만천제1배수문	제방·배수문	2종	의령군 의령읍 만천리
10	백곡제	제방·배수문	2종	의령군 정곡면 가현리
11	상정제	제방·배수문	2종	의령군 화정면 상정리
12	성당1제	제방·배수문	2종	의령군 지정면 성당리
13	성당2제	제방·배수문	2종	의령군 지정면 성당리
14	적곡제	제방·배수문	2종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15	적곡제배수문	제방·배수문	2종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16	화양제	제방·배수문	2종	의령군 화정면 화양리
17	부림상수도	지방상수도	2종	의령군 봉수면 산21-1번지
18	서동상수도	지방상수도	2종	의령군 의령읍 서동리
19	의령부림하수처리장	하수처리장	2종	의령군 부림면 대한로 1872-25, 일원
20	의령지방상수도	지방상수도	2종	의령군 가례면 가례로 455
21	의령하수종말처리시설	하수처리장	2종	의령군 의령읍 의합대로 44-54
22	화정정수장	지방상수도	2종	의령군 화정면 석천리

1. 목 적

-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공공일자리사업의 참여자의 현장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 사업장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자가 신속히 조치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사고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2. 예방대책

가. 사업담당자 및 참여자 교육강화

- 사업담당자 : 단위사업 담당자를 사업시작 전 교육 및 필요시 수시
- 사업참여자 : 사업시작 전(8시간 이상), 월 1회(2시간 이상) 이상, 작업 시작 전·후 및 필요시 수시

나. 지역일자리 안전관리협의회 구성·운영 : 안전사고 발생 제로화 추진

- 구 성 : 의령군, 지방노동고용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운영기간 : 2016. 3월~12월
- 운영방법 : 원칙적으로 월1회 협의회 개최, 중대사고(사망 등) 발생 시 수시
- 주요임무 :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및 개선방안 수립·협의 등

다. 안전 책임자 지정·운영

- 당해 사업장 및 현장을 총괄 감독하는 자를 안전책임자(사업담당 부서장)로 지정하여 사업장 내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감독하도록 임무 부여
- 사업장별 사업담당공무원을 안전관리담당자로 반드시 지정

라. 사업장 안전관리 철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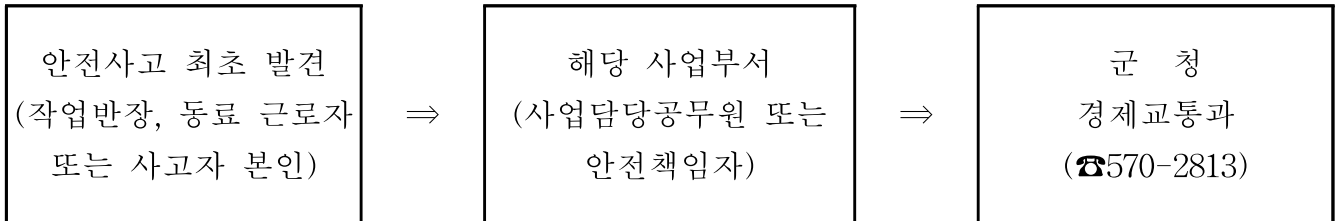
- 안전보건점검 : 주관(사업담당공무원 또는 안전책임자)
 - 일일 안전점검표에 따라 점검 및 작성관리
 - 작업투입 전 근로자에게 작업지시 및 현장 안전보건 조치내용 설명
 - 작업투입 전 및 작업중 작업복·보호구 착용지도
 - 취급 장비 및 설비에 대한 이상 유무 확인
 - 작업장 순회점검·지도

3. 대응대책

가. 비상 시 보고 연락체계 및 후송방안 확보

- 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를 유지하고 인근병원 연락처 및 응급상황 발생 시 긴급 후송할 수 있는 후송수단 확보

◆ 신고 및 보고체계도



나. 사고 현장 초동조치

- 현장 초동조치사항 : 주관(사업담당공무원 또는 안전책임자)
 - 응급환자 발생시 119 구급차 출동 요청
 - 군청 및 유관기관에 상황전파, 사고수습 지원 요청
 - 인명구조 및 응급복구 등 초동대처
 - 구급차 장비, 약품 구비 신속출동 대처

다. 현장출동 및 도착

- 출동 등 조치사항 : 주관(군청 경제교통과)
 - 유관기관 협조지원 요청
 - 사고지역 통제제한 등 경계구역 설정
 -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조치

4. 복구대책

- 사고 수습 대책 강구
 - 지방노동고용관서 산재예방 담당자, 사업담당공무원 등으로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사고원인, 피해상황 등 조사
 -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신속·정확한 사고수습



Ⅲ. 재난대응 업무별 상호협력계획

- 제1절 재난상황관리
- 제2절 긴급 생활안정 지원
- 제3절 재난현장 환경정비
- 제4절 긴급 통신 지원
- 제5절 시설피해의 응급복구
- 제6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 제7절 재난수습 홍보
- 제8절 재난관리자원 지원
- 제9절 교통대책
- 제10절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 제11절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 제12절 사회질서유지
- 제13절 재난지역 수색, 구조·구급
- 제14절 재난대응업무별 훈련계획
- 제15절 재난대응계획 결의서

제1절 재난상황관리

1. 목적

- 재난상황 관리 및 재난발생 후 상황 종료시까지 13개 협업부서 지원 및 재난책임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재난상황 총괄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2. 책임 및 지원기관

대응업무 부서/기관	긴급생활 안정지원	재난현장 환경정비	긴급통신 지원	응급 복구	에너지 공급과해 시설복구	재난수습 홍보	재난관리 자원지원	교통대책	의료 및 방역서비 스 지원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사회질서 유지	수색, 구조구급
기획감사실				△							△	
행정과					△	△		◎		◎		
경제교통과			△		△	△						
주민생활지원실			◎									◎
환경수도과							◎		◎			
산림녹지과												
안전관리과				◎							◎	△
건설도시과				△								
의령군 농업기술센터		△										
의령군 보건소	△	◎	△				△		△			
의령소방서	◎		△					△		△		
농어촌공사 의령지사												
의령경찰서	△			△	◎	◎						
육군제5870부대5대대	△	△	△	△	△	△	△	△	△	△		
KT함안지사				△				△		△		
한국전력 의령지사				△				△		△		
의령교육지원청			△					△		△		

- ◎ 책임기관 : 관련 대응업무가 기관의 주요 임무인 기관
- △ 지원기관 : 대응자원 및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

3. 기관별 담당자 및 연락처

소속기관	직급(직위)	성명	연락처		비고
			전화번호	이메일	
의령군 안전관리과	주무관	전주리	570-2752	jully@korea.kr	
의령군 주민생활지원실	주무관	남쾌우	570-2452	j33111@korea.kr	
의령군 보건소	주무관	김미경	570-4043	kmk1217@korea.kr	
의령군 경제교통과	주무관	이정은	570-2832	qoogirl@korea.kr	
대한적십자사 의령군협의회	회장	김귀덕	573-0901		
의령소방서	지방소방사	김영규	570-9263	kykkyk09@korea.kr	
의령경찰서	경위	김행곤	570-0257		
육군제5870부대5대대	작전과장(대위)	고환준	585-1107		
KT함안지사	차장	박태중	582-0060	youngjo.park@kt.com	
한전 의령지사	전력공급팀원	박재환	570-3232		

4. 관련 대응업무

- 재난상황 관리 및 제반조치 사항 지시
- 재난발생시 응급복구지원 및 총괄조정 등 재난총괄
- 안전점검팀 구성 및 사고현장 안전점검
- 긴급 구조활동 및 상황완료시까지 사고현장 예찰, 관리 등

제2절 긴급 생활안정 지원

1. 목 적

- 재난 발생 시 이재민과 임시 대피자에 대한 긴급 생활안정 지원 활동을 신속·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 대응계획을 수립한다.

2. 책임 및 지원기관

- 책임기관 : 의령군 주민생활지원실
- 지원기관 : 대한적십자사 의령군협의회, 의령소방서, 육군 제5870부대5대대, 의령군 보건소, 경제교통과

3. 기관별 담당자 및 연락처

소속기관	직급(직위)	성명	연락처		비고
			전화번호	이메일	
주민생활지원실	주무관	남채우	570-2452	j33111@korea.kr	
대한적십자사 의령군협의회	회장	김귀덕	573-0901		
의령소방서	지방소방사	김영규	570-9263	kykkyk09@korea.kr	
육군제5870부대 5대대	작전과장(대위)	고환준	585-1107		
의령군 보건소	주무관	김미경	570-4043	kmk1217@korea.kr	
의령군 경제교통과	주무관	이정은	570-2832	qoogirl@korea.kr	

4. 관련 대응업무

- 피해주민 응급구호 대책 수립
- 재난발생시 이재민 및 임시대피자에 대한 수용·구호 활동
- 응급구호를 위한 조직체계 가동 운영
- 이재민 수용시설 운영 및 안전관리

제3절 재난현장 환경 정비

1. 목 적

- 재난으로 인한 2차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재난현장의 환경오염 물질 수거·처리 지원 활동을 신속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 대응 계획을 수립한다.

2. 책임 및 지원기관

- 책임기관 : 의령군 환경수도과
- 지원기관 : 육군제5870부대5대대

3. 기관별 담당자 및 연락처

소속기관	직급(직위)	성명	연락처		비고
			전화번호	이메일	
환경수도과	주무관	김병섭	570-2572	kapjin@korea.kr	
육군제5870부대 5대대	작전과장(대위)	고환준	585-1107		

4. 관련 대응업무

- 홍수·태풍으로 인한 쓰레기를 수거 및 처리
- 쓰레기를 수거하고 제거하는 과정을 조정
- 사고로 인한 각종 기름·화학물질·유해가스 등 유해물질의 수거 및 처리 (환경오염)
- 각종 쓰레기로 인한 전염병 등 2차 피해를 예방
- 일상적인 업데이트를 포함한 일반 대중에게 쓰레기처리 지시사항을 알리는 커뮤니케이션 수행
 - 예) 쓰레기 분리, 수거일자, 버리는 장소
- 쓰레기 제거 과정과 관련된 일반 대중 건강 문제를 평가하고 해결
 - 예) 모기/파리 침입, 전염성 있는 쓰레기
- 쓰레기 제거과정에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
- 특정 쓰레기에 대한 최종매립지를 포함하여 잠재적인 쓰레기 집하와 임시 저장소를 사전에 파악
- 특정 쓰레기에 대한 최종매립지를 포함하여 잠재적인 쓰레기 집하와 임시 저장소를 사전에 파악

제4절 긴급 통신지원

1. 목 적

- 재난발생시 통신시설 침수·파손 등 통신두절에 대비하고 긴급 통신지원 복구 지원 활동을 신속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 대응계획을 수립한다.

2. 책임 및 지원기관

- 가. 주책임기관 : 의령군 행정과
- 나. 지원기관 : KT함안지사

3. 기관별 담당자 및 연락처

소속기관	직급(직위)	성명	연락처		비고
			전화번호	이메일	
의령군 행정과	주무관	임상근	570-2226	gills@korea.kr	
KT함안지사	차장	박태중	582-0060	youngjo.park@kt.com	
한전 의령지사	전력공급팀원	박재환	570-3232		

4. 관련 대응업무

- 지역 내 주요시설 및 주요자산 파악과 보호 활동 수행
- 긴급통신 지원을 위한 통신 공동활용자원 파악
- 전력시설 파괴로 인한 통신시설 공급대책 마련
- 통신 공급업체에서의 각종 사고 및 전송·배송 상의 사고로 인한 공급 중단 관련 기능 회복 업무 수행
- 복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 있는 계약자를 파악
- 중요 통신서비스의 수리/회복의 우선순위 설정

제5절 시설피해의 응급복구

1. 목 적

- 재난발생에 따른 신속 원활한 응급복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합동 대응계획을 수립한다.

2. 책임 및 지원기관

- 책임기관 : 의령군 안전관리과
- 지원기관 : 육군제5870부대5대대, 의령경찰서, 의령군 건설도시과, 의령군 전문건설업협회, 의령군 건설기계협의회

3. 기관별 담당자 및 연락처

소속기관	직급(직위)	성명	연락처		비고
			전화번호	이메일	
의령군 안전관리과	복구지원주무	김대윤	570-2762	krivida@korea.kr	
육군제5870부대 5대대	작전과장(대위)	고환준	585-1107		
의령경찰서	경위	김행근	570-0257		
의령군 건설도시과	주무관	박소정	570-2713	elfaro@korea.kr	
한전 의령지사	전력공급팀원	박재환	570-3232		
KT함안지사	차장	박태종	582-0060	youngjo.park@kt.com	
의령군전문건설업협회	회장	이정섭	573-2696		
의령군건설기계협의회	회장	전현수	573-9090		

4. 관련 대응업무

-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 인력, 자재 등의 관리 및 지원
- 인명구조 장비 투입을 위한 출동로를 확보하기 위한 도로복구 및 잔해물 처리
- 고립지역 주민 대피를 위한 임시 다리 가설

제6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1. 목 적

- 가스, 전기, 유류 등 지역내 주요시설에너지 공급 시설을 보호하고 복구하는 활동을 신속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 대응계획을 수립한다.

2. 책임 및 지원기관

- 주책임기관 : 의령군 경제교통과
- 지원기관 : 의령소방서, 육군제5870부대5대대, 한전 의령지사, KT함안지사, 가스안전공사

3. 기관별 담당자 및 연락처

소속기관	직급(직위)	성명	연락처		비고
			전화번호	이메일	
의령군 경제교통과	주무관	임지현	570-2823	beautyfox99@korea.kr	
육군제5870부대 5대대	작전과장(대위)	고환준	585-1107		
한전 의령지사	전력공급팀원	박재환	570-3232		
가스안전공사 경남지역본부	검사2부 과장	장동섭	212-1766		

4. 관련 대응업무

- 지역 내 주요시설 및 주요자산 파악과 보호 활동 수행
- 재난으로 인한 전기시설 복구와 에너지 안정 공급
- 에너지(전기, 가스, 유류 등) 긴급 복구를 위한 비상동원체제 시행
- 가스, 전기, 유류 공급시설의 각종 사고 및 가스, 유류 등 원료 공급 및 전송·배송 상의 사고로 인한 공급 중단 관련 기능 회복 업무 수행

제7절 재난 수습 홍보

1. 목 적

- 재난 수습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지역 언론매체와 합동 대응계획을 수립한다.

2. 책임 및 지원기관

- 주책임기관 : 의령군 기획감사실
- 지원기관 : 의령군 행정과, 지역 언론매체

3. 기관별 담당자 및 연락처

소속기관	직급(직위)	성명	연락처		비고
			전화번호	이메일	
의령군 기획감사실	주무관	김용도	570-2412	yongdo@korea.kr	
의령군 행정과	주무관	이은영	570-2133	eun2580@korea.kr	

4. 관련 대응업무

- 재난현장 취재지원을 위한 프레스센터 설치·운영
- 재난상황별 군민행동요령 홍보 및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
- 각종 보도자료 작성 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 대 언론 상황전파 및 군민행동요령 홍보

제8절 재난관리자원 지원

1. 목 적

- 피해 발생 시 피해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피해 보상 및 상황 종료 시까지 물자 안정공급 관리 등에 관한 활동을 신속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 대응계획을 수립한다.

2. 책임 및 지원기관

- 책임기관 : 의령군 주민생활지원실
- 지원기관 : 대한적십자사 의령군협의회, 의령소방서, 육군제5870부대5대대, 의령군 보건소

3. 기관별 담당자 및 연락처

소속기관	직급(직위)	성명	연락처		비고
			전화번호	이메일	
주민생활지원실	주무관	남채우	570-2452	j33111@korea.kr	
대한적십자사 의령군협의회	회장	김귀덕	573-0901		
의령소방서	지방소방사	김영규	570-9263	kykkyk09@korea.kr	
육군제5870부대 5대대	작전과장(대위)	고환준	585-1107		
의령군 보건소	주무관	김미경	570-4043	kmk1217@korea.kr	

4. 관련 대응업무

- 재난으로 인한 구호물자 확보 비축
 - 생필품 등 구호물자 확보비축 및 공급대책 수립 추진
 - 구호 물자 확보·관리
- 재난 구호물자 안정 공급 조치
- 재난 지원물품의 신속한 접수 및 효율적인 분배 등

제9절 교통대책

1. 목 적

- 가스, 전기, 유류, 교통수송, 음용수, 통신, 금융 등 지역내 주요시설을 보호하고 복구하는 활동을 신속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 대응계획을 수립한다.

2. 책임 및 지원기관

- 주책임기관 : 의령군 경제교통과
- 지원기관 : 의령소방서, 육군제5870부대5대대, 한전 의령지사, KT함안지사, 가스안전공사

3. 기관별 담당자 및 연락처

소속기관	직급(직위)	성명	연락처		비고
			전화번호	이메일	
의령군 경제교통과	주무관	이정은	570-2832	qoogirl@korea.kr	
의령소방서	지방소방사	김영규	570-9263	kykkyk09@korea.kr	
육군제5870부대 5대대	작전과장(대위)	고환준	585-1107		
한전 의령지사	전력공급팀원	박재환	570-3232		
KT함안지사	팀장	박영조	572-1111	youngjo.park@kt.com	

4. 관련 대응업무

- 지역 내 주요시설 및 주요자산 파악과 보호 활동 수행
- 가스, 전기, 유류, 통신 등 공급업체에서의 각종 사고 및 가스, 유류 등 원료 공급 및 전송·배송 상의 사고로 인한 공급 중단 관련 기능 회복 업무 수행

제10절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1. 목 적

가. 재난 발생 시 피해지역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을 신속히 수행하고자 한다.

2. 책임 및 지원기관

가. 책임기관 : 의령군 보건소

나. 지원기관 : 육군제5870부대5대대, 의령군 농업기술센터

3. 기관별 담당자 및 연락처

소속기관	직급(직위)	성명	연락처		비고
			전화번호	이메일	
의령군 보건소	주무관	김미경	570-4043	kmk1217@korea.kr	
육군제5870부대 5대대	작전과장(대위)	고환준	585-1107		
의령군 농업기술센터	축산진흥주무관	최승룡	570-4142	choisr@korea.kr	

○ 책임기관 : 의령군 보건소

○ 지원기관 : 육군제5870부대5대대, 의령군 농업기술센터

4. 감염병 발생 신속대응을 위한 감시체계 운영

① 질병정보모니터망 운영

- 운영기간 : 연 중

- 대 상 : 93개소

- 모니터 주요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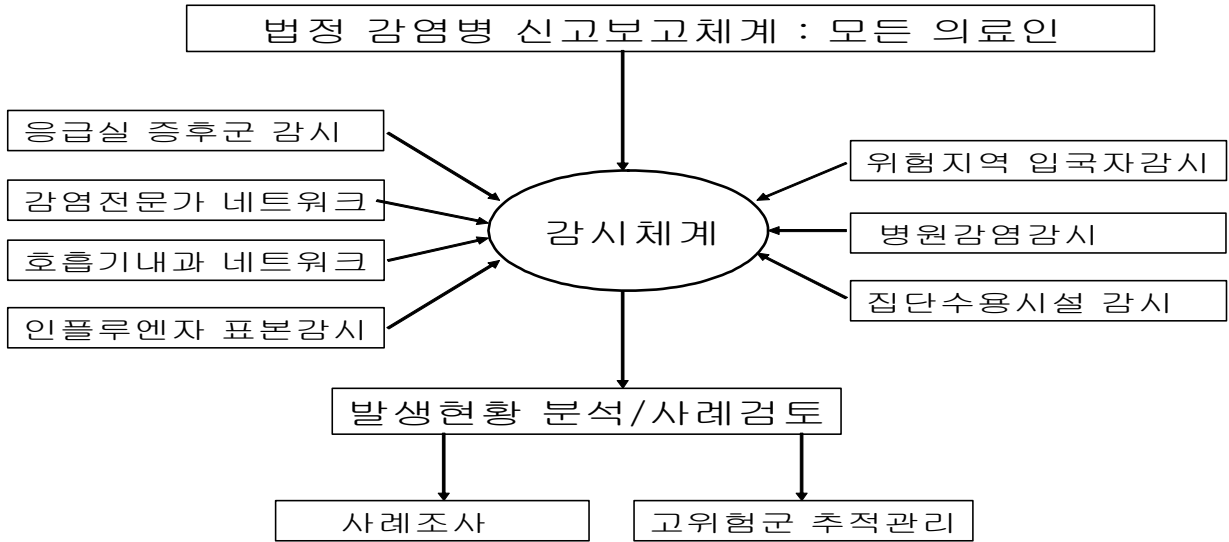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주민계몽

⇒ 감염병(의사) 환자발견, 검체채취(병·의원) 및 진단시 인적사항과 유행 상태 파악 보고

⇒ 기타 감염성질환의 유행상태를 판단하여 전화통보

② 법정감염병 신고 보고체계

- 제1군 ~ 제4군 : 즉시신고, 전수감시
- 제5군, 지정감염병, 인플루엔자 : 7일이내 신고, 표본감시



5. 감염병 발생 예방위한 방역활동

① 방역물자 비축

- 대상물자 : 살균제, 살충제 등
- 비축기준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사업지침에 따라 준비
- 평 시 : 소독약품의 비축량을 상시 유도하고, 소독약품 등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관리
- 재 난 : 부족 시 인접 자치단체 및 중앙에 방역물자 응급 지원요청

② 방역기동반 운영

- 보건소 상시 운영반 : 1개반 5명
- 지원반 : 13개 읍·면 방역기동반 활용

③ 장비보유현황 : 5종 35대

계	방역차량	연막소독기 (차량용)	분무소독기 (휴대용)	초미립자살포기 (차량용)	연막연무겸용 소독기(휴대용)
56	1	1	13	1	40

6. 관련 대응업무

가.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현장응급의료소>

보건소장 유영권
010-6275-6556
055-570-4000

의료지원반(A조, 3명)
전호자 010-3587-4751, 570-4041
김미경 010-4362-2738, 570-4043
김말숙 010-3453-2040, 570-4042

의료지원반(B조, 3명)
최용길 010-5580-5339, 570-4011
임한나 010-2310-6200, 570-4014
여환현 010-4112-4206, 570-4007

분류반(A조) 의령병원 (6명)	분류반(B조) 보건소 (6명)	응급처치반(A조) 보건소 (10명)	응급처치반(B조) 보건소 (10명)	이송반(A조) 사랑병원 (5명)	이송반(B조) 의령병원 (5명)	지역재난 의료지원반(A조) 보건소(6명)	지역재난 의료지원반(B조) 보건소(6명)	영안소(A조) 사랑병원 (2명)	영안소(B조) 사랑병원 (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장 : 박진희 010-6733-2807 · 의사2: 박현록 010-2512-6418 · 간호사2: 구진애 010-5880-9698 · 기타 : 최원준 010-2943-32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장 : 장정구 010-4772-3153 · 의사2: 강성민 010-3178-7792 · 간호사2: 김남희 010-6636-3172 · 기타 : 변연이 010-3577-54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장 : 성미자 010-3067-3203 · 의사2: 우경남 010-9966-1961 · 간호사4: 여유성 010-9661-1385 · 기타3: 조영애 010-3875-24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장 : 이수남 010-3532-2244 · 의사2: 김영환 010-9231-3786 · 간호사4: 노규순 010-4906-0326 · 기타3 : 우성희 010-9981-28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장 : 전호자 010-3587-4751 · 의사1: 전승규 010-2534-6663 · 간호사1 : 반혜영 010-7284-2406 · 행정요원1 : 장세환 010-9898-7372 · 기타1: 이봉열 010-5537-31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장 : 허희자 010-8540-5622 · 의사1: 박현록 010-2512-6418 · 간호사1 : 하영혜 010-9565-2965 · 행정요원1 : 정현우 010-9313-3568 · 기타1: 홍진호 010-2799-91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장 : 김영은 010-3859-9233 · 의사1: 김범수 010-2999-6016 · 간호사1 김미경 010-4362-2738 · 행정요원3: 진원권 011-835-9577 · 기타1: 박상영 010-5032-3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장 : 윤성욱 010-9654-9025 · 의사1: 정동우 010-3232-8227 · 간호사1: 신해주 010-8323-4203 · 행정요원3: 주성자 010-2284-6378 · 기타1: 이경은 010-2880-94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장 : 장미애 010-3067-3203 · 행정요원1 : 박민희 0109971-09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장 : 조미경 010-9258-0177 · 행정요원1 : 구숙희 010-3329-1171

※ 현장응급의료소 총인원(65명), 소장 1명, A조 32명,B조 32명

▶붙임 1◀ 상황보고서 (서식)

상 황 보 고 서

수신 : 경상남도 보건행정과장 발신 : 의령군(의령보건소)	보고일자 : ○○. ○. ○. 보 고 자 : 보건소장
<p>○ 발생경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시간: ○○년 ○ 월 ○ 일 - 발생장소 : 의령읍 내 ○○의료기관 등 - 최초 발견자(신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 명 : ○○○ (○○세, 남/여) 	
<p>○ 상황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업 지역 :○○병원, ○○한의원(2개소) - 휴업 규모 : - 휴업 원인 : - 휴업 진행 정도 : 	
<p>○ 조치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업 활동감시 강화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부 대응사항 · 신고 및 보고기관 	

※ 초동 보고서 양식으로 사용

▶붙임 2◀ 상황보고·통보서(서식)

상황 보고·통보서

수신 : 경상남도 보건행정과장 참조 : 보건의료정책팀장 발신 : 의령군 보건소장 보고일자 : ○○. ○. ○.																					
○ 발생경위 - 발생시간 : ○○년 ○ 월 ○ 일 - 발생장소 : 의령읍 ○○의료기관 등 - 최초 발견자(신고자) · 성 명 : ○○○ (○○세, 남/여) - 상황 개요 · 휴업 지역 : · 휴업 규모 : · 휴업 원인 : · 휴업 진행 정도 : ○ 조치 내용 - 휴업 활동감시 강화 조치 · 복지부 대응사항 · 신고 및 보고기관 ○ 위기 진행 사항 - 추가 가담 규모 - 휴업 진행 정도 ○ 지원 요청 사항 - 관할 유관기관의 지원 정도	전파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height: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style="width: 50%; height: 20px;"></td><td style="width: 50%; height: 20px;"></td></tr> <tr><td style="width: 50%; height: 20px;"></td><td style="width: 50%; height: 20px;"></td></tr> <tr><td style="width: 50%; height: 20px;"></td><td style="width: 50%; height: 20px;"></td></tr> <tr><td style="width: 50%; height: 20px;"></td><td style="width: 50%; height: 20px;"></td></tr> <tr><td style="width: 50%; height: 20px;"></td><td style="width: 50%; height: 20px;"></td></tr> <tr><td style="width: 50%; height: 20px;"></td><td style="width: 50%; height: 20px;"></td></tr> <tr><td style="width: 50%; height: 20px;"></td><td style="width: 50%; height: 20px;"></td></tr> <tr><td style="width: 50%; height: 20px;"></td><td style="width: 50%; height: 20px;"></td></tr> <tr><td style="width: 50%; height: 20px;"></td><td style="width: 50%; height: 20px;"></td></tr> <tr><td style="width: 50%; height: 20px;"></td><td style="width: 50%; height: 20px;"></td></tr> </table>																				

※ 유관기관 등 보고용 양식으로 사용

▶붙임 3◀ 보건소 및 안전관리담당 현황

군	주소	연락처	팩스	담당/ 주무관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 8길 16	570-4000	570-4018	보건소장
"	"	570-4010	570-4018	보건행정담당
"	"	570-4041	570-4018	응급의료담당
"	"	570-4044	570-4018	재난의료담당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570-2030	570-2050	안전관리과장
"	"	570-2751	570-2050	안전관리담당
"	"	570-2752	570-2050	담당자

▶붙임 3-1◀ 읍·면 담당자 현황

읍·면	담당	연락처	팩스	비고
의령읍	개발담당	570-4371	570-4209	
가례면	산업담당	570-4411	570-4219	
칠곡면	산업담당	570-4451	570-4229	
대의면	산업담당	570-4491	570-4239	
화정면	산업담당	570-4531	570-4249	
용덕면	산업담당	570-4571	570-4259	
정곡면	산업담당	570-4611	570-4269	
지정면	산업담당	570-4651	570-4279	
낙서면	산업담당	570-4691	570-4289	
부림면	지역개발담당	570-4751	570-4299	
봉수면	산업담당	570-4791	570-4309	
궁류면	산업담당	570-4831	570-4319	
유곡면	산업담당	570-4871	570-4329	

▶붙임 4◀ 의료기관 현황

(2016. 4월, 단위 : 개소, 개)

기관종별	계		시 부		군 부	
	기관수	병상수	기관수	병상수	기관수	병상수
총계	28	895			28	895
종합병원						
병원	4	738			4	738
요양병원						
의원	10	29			10	29
치과의원	5				5	
한의원	7				7	
부속병의원						
노인전문병원						
정신병원						

▶붙임 5◀ 의료기관별 의사 현황

(2016. 4월, 단위 : 명)

구 분	계	의 사	치과의사	한의사
계	62	41	8	13
종합병원	17	16		1
의원	24	12	5	7
보건소	21	13	3	5

▶붙임 6◀ 의료기관별 활동 인력 현황

(2016. 4월, 단위 : 명)

구 분	계	종합병원	병 원	의 원	약국	보건기관
합 계	235		86	63		75
의 사	43		17	12		14
치 과 의 사	7		0	4		3
한 의 사	13		0	7		6
간 호 사	67		43	0		24
간 호 조 무 사	61		15	30		16
임 상 병 리 사	5		3	0		2
방 사 선 사	6		2	2		2
물 리 치 료 사	11		1	8		2
작 업 치 료 사	0		0	0		0
치 과 기 공 사	0		0	0		0
치 과 위 생 사	6		0	0		6
의 무 기 록 사	0		0	0		0
약 사	16		5	0	11	0

▶붙임 7◀ 공공보건의료기관 현황

(2016. 4 현재)

설립형태	근거법령	소관부처	의료기관
국 립	해당없음		
특수법인			
공공 보건기관			

▶붙임 8◀ 의약품관리 유관단체 현황

단체명	소재지	연락처	
		전화	FAX
해당없음			

▶붙임 9◀ 의약품 관련 현황

○ 의약품판매업소 현황

(2016. 4 현재)

구분	계	약국	약업사	한약업사	매약상	의료기기 판매업소	도매상
의령군	22	10	1	3	0	8	0

(2016. 4 현재)

구분	계	일반도매	마약류도매	한약도매
해당없음				

○ 의령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현황

(2016. 4 현재)

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21	1	10	10

▶붙임 10◀ 혈액관리 유관단체 현황

단체명	소재지	연락처			
		전화	FAX	직통연락	email
해당없음					

▶붙임 11◀ 혈액원 담당자(총무팀장) 현황(15개)

(2016. 4월 현재)

혈액원	총무팀장	전화번호	비 고
서울서부혈액원	최석환	02-6711-0111	
서울남부혈액원	이명석	02-570-0610	
서울동부혈액원	김동석	02-952-0310	
부산혈액원	정연조	051-810-9001	
대구·경북혈액원	이형대	053-605-5611	
인천혈액원	이연희	032-810-1351	
울산혈액원	정노식	052-245-2982	
경기혈액원	손일수	031-220-8510	
강원혈액원	장남운	033-269-1060	
충북혈액원	박광수	043-230-8720	
대전·세종·충남혈액원	윤여정	042-630-0550	
전북혈액원	정현수	063-270-5803	
광주·전남혈액원	송준열	062-600-0602	
경남혈액원	공인배	055-262-5161	
제주혈액원	좌동선(대리)	064-720-7871	
혈장분획센터	차정수(기획팀)	043-879-1211	

▶붙임 12◀ 적십자혈액원 채혈반 편성표 및 현황

구 분	고정채혈반	이동채혈반
의사	1명	1명
간호사	2명	2명
임상병리사	1명	1명
운전기사	0명	1명
헌혈의집		
헌혈차량		

▶붙임13◀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및 민간요법

- 응급환자 발생 시 의령군청, 119 응급의료센터로 즉시 연락조치 할 수 있도록 홍보
- 상황관리 및 보고체계를 가동하여 신속대응반 파견, 의료지원반 즉시 구성, 필요시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및 보건의료기관과의 연계체계를 가동하는 등 보건의료기능의 지속성 보장을 위해 각종 비상조치 시행
- 필요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원 요청
- 병원서비스 중단일 경우 비상진료대책반을 구성 진료실태 파악 및 대책강구
- 파업불참 병원 및 약국 등과 연계하여 진료체계 및 의약품 공급체계를 유지
-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 야간진료 기능 등을 부여 비상진료체계 가동
- 유형별 위기상황을 고려 공중보건의 배치를 재조정하는 등 보건의료체계의 마비상황 방지
- 전국 약국의 연대업무 거부 등에 의한 의약품 공급 장애가 발생할 경우 약국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고, 약사회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 위기상황에 능동적 대처
- 혈액수급 부족으로 인한 혈액공급 장애의 위기가 발생할 경우 단체헌혈을 통하여 위기에 대처하고 헌혈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 위기상황에 대한 응급대처 방안 등 홍보강화로 군민불안 해소

▶붙임 14◀ 응급시 일시 사용할 인력·장비·물자

보건의료

- 의료인력 현황(보건소 근무인력)

계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간호사	조무사	의료 기사
28	7	2	2	6	5	6

의약품

- 보건소 현장진료에 사용하는 약품으로 대체
- 지역 의약품판매업소 의약품 조달
- 응급 시 의약품 도소매업소의 협조

혈액

- 경남혈액원 지원 요청
- 임시 채혈반 편성 운영
- 의령병원 등 유관기관 협조

제1절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1. 목 적

- 재난 발생 시 재난현장에 투입되는 민간기관 및 단체의 자원봉사자와 일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조직 구성 및 시설, 장비·물자 등에 대해 기관간의 상호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봉사 활동이 실행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합동 대응계획을 수립한다.

2. 책임 및 지원기관

- 책임기관 : 의령군 주민생활지원실
- 지원기관 : 의령군자원봉사협의회

3. 기관별 담당자 및 연락처

소속기관	직급(직위)	성명	연락처		비고
			전화번호	이메일	
의령군 주민생활지원실	주무관	최성숙	570-2462	nadia021@korea.kr	
의령군자원봉사협의회	회장	김선옥	573-3232		

4. 관련 대응업무

- 자원봉사 인력을 등록 및 배치
- 자원봉사 인력의 보험 관리를 수행
- 신규투입 인력의 교육훈련
- 지역별 자원봉사 단체 및 개인의 특성별 현황파악
- 자원봉사 인력의 숙식, 휴식 등을 위한 시설 지정 관리

제2절 사회질서유지계획

1. 목 적

- 재난현장에서의 현장통제, 교통통제, 치안 등의 활동을 신속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 대응계획을 수립한다.

2. 책임 및 지원기관

- 주책임기관 : 의령경찰서
- 지원기관 : 육군제5870부대5대대, 법무부범죄예방위원 마산지역협의회 의령지구, 전국모범운전자회 의령군지회, 해병전우회 의령군지회, 의령군 행정과·경제교통과

3. 기관별 담당자 및 연락처

소속기관	직급(직위)	성명	연락처		비고
			전화번호	이메일	
의령경찰서	정보경비계장	신용군	570-0257		
육군제5870부대 5대대	작전과장(대위)	고환준	585-1107		
법무부범죄예방위원 마산지역협의회의회령지구	회장	김정수	573-2933		
전국모범운전자회 의령군지회	회장	오태동	572-2323		
해병전우회의령군지회	회장	이원희	573-3043		
의령군 행정과	주무관	김대성	570-2203	tlsqks@korea.kr	
의령군 경제교통과	주무관	이정은	570-2832	qoogirl@korea.kr	

4. 관련 대응업무

- 피해지역 주민들의 소요사태 방지 및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기관들을 지정하고 기관들간의 업무를 조정
- 피해지역의 교통관리 및 교통통제 활동을 수행
- 피해지역의 교통상황 파악 및 전파
- 수용시설에 대한 치안 담당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기관들을 지정하고 기관들간의 업무를 조정

제3절 재난지역 수색, 구조·구급

1. 목 적

- 재난으로 인해 위험에 처한 항공기, 선박, 사람 등을 수색하여 인명을 구조하고 구급하는 등 일련의 활동을 신속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 대응계획을 수립한다.

2. 책임 및 지원기관

- 책임기관 : 의령소방서
- 지원기관 : 의령경찰서, 육군제5870부대5대대, 의령군보건소

3. 기관별 담당자 및 연락처

기관명	직급(직위)	담당자	연락처		비고
			전화번호	이메일	
의령소방서	지방소방사	김영규	570-9263	kykkyk09@korea.kr	
의령경찰서	경위	김행곤	570-0257		
육군제5870부대 5대대	작전과장(대위)	고환준	585-1107		
의령군보건소	주무관	김미경	570-4043	kmk1217@korea.kr	

4. 관련 대응업무

- 재난현장 지휘체계를 가동·참여(2. 재난현장지휘·대응체계 참조)
- 건물 등의 붕괴 및 각종 조난 등 사고 발생 시에 수색과 구조업무 수행
- 병원에 도착하기 전의 응급처치, 사상자 분류 및 환자이송
- 사망자 및 실종자의 신원 파악
- 수색, 구조·구급업무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 관련 보유 자원의 지원
- 수색, 구조·구급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문제에 대한 자문 등 지원

「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행계획

□ 훈련목적

「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로 재난(지진·태풍)에 대한 사전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긴급구조 관련기관간의 대처 능력과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코자 함.

□ 훈련개요

-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3조(재난대비훈련)
- 기 간 : 2016. 5. 16.(월) ~ 5. 20.(금), 전국 동시실시
- 주 관 : 의 령 군 (중앙: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국민안전처)
- 참여기관 : 재난관련책임기관(공공·유관기관) 및 단체
- 훈련내용 : 재난관리기구 가동·점검 및 재난대비 종합대응 훈련
- 훈련유형 : 토론훈련 및 현장훈련

□ 훈련유형 및 중점내용

- 훈련유형 : 토론훈련 및 현장훈련
- 훈련방법 : 재난상황에서의 임무와 역할을 발표·토의하여 기능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문제점을 도출·개선 및 협력체계와 역할분담 확인
- 중점내용
 - 지진 재난대응 체계 구축
 - 지진발생 주민대피 훈련
 - 인명구조, 응급복구 대응훈련
 - 지진 발생에 따른 복구 및 안전대피 훈련

- 지역기반체계 위기대응
 - 지진 발생에 따른 복합재난 대응 훈련
 - 재난발생시 재난책임관련기관 상호협력 체계 구축
- 군민홍보 강화
 - 지역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

□ 훈련일정

○ 2일차[5. 17.] : 지진발생에 따른 토론 및 현장훈련

- 일 시 : 2016. 5. 17.(화) 10:00~16:00 * 현장훈련 : 14:00~15:30
- 장 소 : 의령군 의령읍 남산초등학교
- 방 법 : 토론 및 현장훈련
- 내 용 : 대규모 강진으로 건물 일부 붕괴 및 화재 발생 등 복합재난 발생 시 군민들의 대처능력 강화 훈련

○ 3일차[5. 18.] : 국민체감형 훈련

- 일 시 : 2016. 5. 18.(수) 14:00~16:00
- 장 소 : 의령읍 일원
- 내 용
 - 소소심(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익히기 캠페인 전개
 - 안전문화 실천운동 : 안전점검의 날 운영, 안전교육체험 등

○ 4일차[5. 19.] : 태풍 내습에 따른 토론 훈련

- 일 시 : 2016. 5. 19.(목) 14:00~16:00
- 장 소 : 의령군 재난종합상황실
- 내 용 : 태풍 내습에 의한 재난피해 대비 훈련
- 방 법 : 통합시나리오에 의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훈련

제5절 재난대응계획 결의서

본 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작성된 경상남도 의령군의 지역 재난대응계획이며, 의령군 관할구역 내에서 재난발생시 본 계획에서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기관·단체	대표자명	일 자	서 명
의령군청	오영호	2016. 4.	오영호
의령교육지원청	이학래	2016. 4.	이학래
의령경찰서	김성중	2016. 4.	김성중
의령소방서	오경탁	2016. 4.	오경탁
육군제5870부대5대대	김근한	2016. 4.	김근한
한국농촌공사의령지사	정철호	2016. 4.	정철호
KT함안지사	김종곤	2016. 4.	김종곤
한국전력공사 의령지사	진상현	2016. 4.	진상현

○○○

IV. 재정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국비	지방비		
			소계	도비	군비
합 계	29,241	6,952	22,289	2,112	20,177
자연재난 소계	5,782	3,054	2,728	486	2,242
풍수해	2,947	2,331	616	612	4,193
설해	49	0	49	0	49
가뭄	2,127	1,700	427	128	299
지진	0	0	0	0	0
황사	0	0	0	0	0
폭염	3	0	3	0	3
산사태	3,603	1,354	2,249	358	1,891
녹조	0	0	0	0	0
사회재난 소계	20,571	3,597	16,974	1,196	15,778
산불	1,846	282	1,564	127	1,437
도로	3,647	300	3,347	500	2,847
폭발·위험물·대형화재	94	0	94	0	94
건축물 등 시설물	156	0	156	4	152
유독물·수질오염	101	0	101	0	101
건설사업장	0	0	0	0	0
에너지(전기·가스)	132	76	56	9	47
식용수(식수·농업용수)	4,076	2,142	1,934	0	1,934

구 분	계	국비	지방비		
			소계	도비	군비
보건의료서비스	683	200	483	100	383
통신전산망	781	0	781	0	781
교통수송대책	3,416	50	3,366	280	3,086
환경대책	3,991	0	3,991	0	3,991
감염병	521	57	464	79	385
전염병(가축)	1,127	490	637	97	540
안전관리 소계	2,888	301	2,587	430	2,157
보행자	1,105	0	1,105	0	1,105
승강기시설	2	0	2	0	2
어린이 놀이시설	0	0	0	0	0
여름철 물놀이	33	3	30	1	29
사회복지시설	4	0	4	0	4
자전거 이용	62	0	62	0	62
문화체육시설	0	0	0	0	0
등산사고	287	68	219	20	199
수상레저	0	0	0	0	0
문화재	1,146	175	971	391	580
사이버	83	0	83	0	83
식품안전	124	52	72	15	57
4대악(가정·학교·성폭력)	12	3	9	3	6
축제장 안전대책	0	0	0	0	0
자살예방	30	0	30	0	30

○○○

V. 행정사항 및 부록

1. 행정사항

- 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본 계획에 따라 소관 안전관리업무를 추진하여야 하며, 상호 긴밀히 협조한다.
- 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계획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본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다. 관련기관 및 부서에서는 본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하고 유관기관 간 상호 긴밀한 협조 지원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 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본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적기에 확보하고, 소요시설·장비·물자 등을 확충한다.
- 마. 계획추진에 필요한 시설, 장비, 물자는 기관별 사고수습대책을 참고하여 이를 조속히 동원(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바. 재난사고 발생시 보고계통과 지정된 서식에 따라 보고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본 계획에 따라 등재된 각종 편성표 및 비상연락망 등 기재사항이 변동되었을 경우, 즉시 의령군 안전관리과 (전화 055-570-2750, 팩스 2050)로 통보하여 정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분야별 관리부서 현황

【자연재난관리】

재 난 유 형	관련부서 (담당)	업무담당			담 당 자 전화번호
		과장	담당	주무관	
1. 풍수해	안전관리과 (복구지원담당)	오성섭	김형규	김대윤	570-2762
2. 설해	안전관리과 (복구지원담당)	오성섭	김형규	김대윤	570-2762
3. 가뭄	안전관리과 (복구지원담당)	오성섭	김형규	김대윤	570-2762
4. 지진	안전관리과 (복구지원담당)	오성섭	김형규	김수연	570-2763
5. 황사	안전관리과 (복구지원담당)	오성섭	김형규	김수연	570-2763
6. 폭염	안전관리과 (복구지원담당)	오성섭	김형규	김수연	570-2763
7. 산사태	산림녹지과 (공원녹지담당)	임헌중	이택순	강은미	570-2643
8. 녹조	환경수도과 (환경지도담당)	강현배	장동재	신동환	570-2564

【사회재난관리】

재 난 유 형	관련부서 (담당)	업무담당			담 당 자 전화번호
		과장	담당	주무관	
1. 산불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임헌중	이원호	윤성훈	570-2662
2. 도로	건설도시과 (도로담당)	남기주	박석종	김삼수	570-2712
3. 폭발·위험물·대형화재	의령소방서 (현장대응단)	강병곤	조웅제	김영규	570-9263
4. 건축물 등 시설물	안전관리과 (건축행정담당)	오성섭	어수필	이상봉	570-2273

재 난 유 형	관련부서	업무담당			담당자 전화번호
		과장	담당	주무관	
5. 유독물·수질오염	환경수도과 (환경지도담당)	강현배	장동재	신동환	570-2564
6. 건설사업장	건설도시과 (건설행정담당)	남기주	허만필	이현정	570-2702
7. 에너지	경제교통과 (상공담당)	김철수	강상철	임지현	570-2823
8. 식용수	환경수도과 (상수도담당)	강현배	조만안	윤진오	570-2583
9. 보건의료서비스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유영권	최용길	이수남	570-4012
10. 통신전산망	행정과 (정보통신담당)	강병홍	하정민	임상근	570-2225
11. 교통수송	경제교통과 (교통담당)	김철수	조영언	이정은	570-2832
12. 환경	환경수도과 (환경시설담당)	강현배	이원권	강동국	570-2573
13. 감염병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유영권	전호자	김미경	570-4043
14. 전염병(가축)	농축산유통과 (가축위생담당)	강경규	전창시	박귀연	570-4152

【안전관리】

재 난 유 형	관련부서	업무담당			담 당 자 전화번호
		과장	담당	주무관	
1. 보행자	건설도시과 (도로담당)	남기주	박석중	김삼수	570-2712
2. 승강기시설	경제교통과 (상공담당)	김철수	강상철	임지현	570-2823
3.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과 (안전관리담당)	오성섭	윤재환	정아람	570-2755
4.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과 (안전관리담당)	오성섭	윤재환	정아람	570-2755
5. 사회복지시설	주민생활지원실 (여성아동담당)	이성영	신점임	김수현	570-2524
6. 자전거 이용	안전관리과 (지역개발담당)	오성섭	전종훈	조영정	570-2282
7. 문화체육시설	의병문화관광과 (관광체육시설담당)	허광영	전호수	김판석	570-2432
8. 등산사고	산림녹지과 (공원녹지담당)	임현중	차지영	강은미	570-2643
9. 수상레저	의병문화관광과 (체육지원담당)	허광영	이창수	제광모	570-2423
10. 문화재	의병문화관광과 (관광문화재담당)	허광영	정호영	정원식	570-2444
11. 사이버	행정과 (정보통신담당)	강병홍	하정민	임상근	570-2225
12. 식품안전	민원봉사과 (위생담당)	하승식	최미리	김진곤	570-2193
13. 4대악	주민생활지원실 (여성아동담당)	이성영	신점임	김명규	570-2523
14. 축제장 안전	의병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허광영	오미선	백서하	570-2404
15. 대규모사업장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담당)	김철수	전재열	최복인	570-2812

제2장

지역안전지수 취약분야 피해저감 목표 총괄표

분류 기준	분야	피해유형	주관실과	협조부서											
사회 재난	화재,폭발	화재	안전관리과	소방서											
		<table border="1"> <tr> <td>피해 현황</td> <td>인명</td> <td>3명</td> </tr> <tr> <td></td> <td>재산</td> <td>414,948천원</td> </tr> </table> <p>※ 3년 평균('12~'14년)</p>	피해 현황	인명	3명		재산	414,948천원	<table border="1"> <tr> <td rowspan="2">목표</td> <td>인명</td> <td>2명</td> </tr> <tr> <td>재산</td> <td>373,453천원</td> </tr> </table>	목표	인명	2명	재산	373,453천원	
피해 현황	인명	3명													
	재산	414,948천원													
목표	인명	2명													
	재산	373,453천원													
	감염병	감염병	보건소												
		<table border="1"> <tr> <td>피해 현황</td> <td>인명</td> <td>0</td> </tr> <tr> <td></td> <td>재산</td> <td>-</td> </tr> </table> <p>※ 3년 평균('12~'14년)</p>	피해 현황	인명	0		재산	-	<table border="1"> <tr> <td rowspan="2">목표</td> <td>인명</td> <td>0</td> </tr> <tr> <td>재산</td> <td>-</td> </tr> </table>	목표	인명	0	재산	-	
피해 현황	인명	0													
	재산	-													
목표	인명	0													
	재산	-													
안전 관리	교통안전	도로교통사고	경제교통과	의령경찰서											
		<table border="1"> <tr> <td>피해 현황</td> <td>인명</td> <td>129명</td> </tr> <tr> <td></td> <td>재산</td> <td>9,571천원</td> </tr> </table> <p>※ 3년 평균('12~'14년)</p>	피해 현황	인명	129명		재산	9,571천원	<table border="1"> <tr> <td rowspan="2">목표</td> <td>인명</td> <td>102명</td> </tr> <tr> <td>재산</td> <td>9,400,천원</td> </tr> </table>	목표	인명	102명	재산	9,400,천원	
피해 현황	인명	129명													
	재산	9,571천원													
목표	인명	102명													
	재산	9,400,천원													
	범죄안전	자살예방	보건소	의령경찰서											
		<table border="1"> <tr> <td>피해 현황</td> <td>인명</td> <td>11명</td> </tr> <tr> <td></td> <td>재산</td> <td>-</td> </tr> </table> <p>※ 3년 평균('12~'14년)</p>	피해 현황	인명	11명		재산	-	<table border="1"> <tr> <td rowspan="2">목표</td> <td>인명</td> <td>9명</td> </tr> <tr> <td>재산</td> <td>-</td> </tr> </table>	목표	인명	9명	재산	-	
피해 현황	인명	11명													
	재산	-													
목표	인명	9명													
	재산	-													

제3장

부록 : 재난대비 자원·시설현황

1. 인력현황

가. 공무원, 예비군, 민방위대원 현황

(단위:명)

구분	계	공무원	경 찰 공무원	소방공무원					지 역 예비군	민방위 대 원
				소계	본서	구조대	의령	부립		
인원	3,382	566	128	72	23	11	22	16	874	1,742

나. 전문기술인력 현황(해당분야 교수,기술사,연구사,건축사 등 전문기술인)

계	토목	건축	환경	전기	가스	통신	화공	방사능	삭제도	유기장	기타
4	2		1			1					

※ 기타 : 기계, 국토개발, 안전관리, 광업자원, 선박, 고압가스

다. 전문기능인력 현황(기능분야 종사자 및 기능 기술자격소지자)

계	전기공	기계공	통신공	착암공	절단공	용접공	철근공	중기 운전	중기 정비	배관공	승강기 관리원	기타
725	35	102	36			32		296	19	3		202

※ 기타 : 유·무선사, 철도보선공, 화학공, 전자공

라. 특수봉사단체 기타

구분	계	특수단체및 개인					봉사단체및 개인						
		의 용 소방대	산 약 구조대	수 중 구조대	아미추어 무 선 봉사대	기 타	적십자 봉사대	새마을 부녀회	해 병 전우회	모 운 자 범 전 회	여 단 성 체 협 의 회	기 타	
단체	54	26					12	13	1	1	1		
인원	1,205	658					170	252	38	24	63		

※ 봉사단체(기타) : 새마을지도자 600명,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232명, 자유총연맹 300명

2. 장비현황

가. 복구장비

1) 중장비

구 분	계	크레인	굴삭기	블도저	덤프	로우더	견인차	청소차	기타
계	125		71		10			6	38
행정	21		1		1			6	13
유관기관	1		1						
민 간	103		69		9				25

2) 산불진화장비

구 분	계	진화차량 (대)	동력펌프 (대)	안전모 (개)	무전기 (대)	동력톱 (개)	등짐펌프 (개)	헬기수조 (개)	불칼 퀴 (개)	휴대용발전기	임차헬기	기 타 (점)
계	3,229	16	18	280	162	23	950	3	801	1	1	1,000
행정	3,194	16	18	250	136	18	950	3	801	1	1	1,000
유관기관	35			30		5						

나. 기타장비

구분	용접기	컴프레샤	양수기	발전차	천공기	착암기	절단기	화학차	전기복구차량	가스복구차량	통신복구차량	제독차	기타
계	3	2	185		2		1		3		1		
행정	3	2	183				1						
유관기관			2		2				3		1		

다. 수방장비

1) 수난구조 장비

구명보트 (척)	구명복 (벌)	잠수장비 (셋트)	구명환 (개)	로프(m)	무전기 (점)	구급차 (대)
12	140	7	56	270	150	2

2) 수방자재

합 계	튼백	PP 포대	로프	삽	톱	천막	말목	메	비닐 100m	안전 헬스	기계톱
22,556	6,315	13,830	106	304	125	46	93	37	40	120	20
	신호봉	점멸등	곡괭이	도끼	낫	대빗 자루	망치	야광 조끼	제설 용삽	재난 안전선	장화
	147	107	79	60	223	128	53	183	191	260	99

3) 침수방지용 장비

양수기 (대)	수중펌프 (개)	호스 (km)	비상발전기 (대)	기타
73	6	17	18	

4) 수질오염 방제물자·장비

보유기관별	오일헬스 (m)	유흡착포 (박스)	유처리제 (ℓ)	유흡착물 (롤)	유흡착분	연락처
계	360	24	460	3	20	
의령군	360	24	460	3	20	570-2560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						570-6060

5) 방역물자

살충제	살균제	우물소독약	예방주사약	비축장소
180ℓ	80ℓ	60ℓ	50명분	1개소

6) 구호물자

응급구호세트	재가·취사 구호세트	쌀 (10kg)	라면 (40개/박스)	양말 (켄레)	생수 (12묶음)	비축장소
417세트	275세트	0	0	190	0	1개소

7) 의료시설

합 계						병 원					
개소	의사	간호사 (조무사)	구급차	병상수	영안실	개소	의사	간호사 (조무사)	구급차	병상수	영안실
14	18	52	2	119	-	1	3	14	1	88	-

의 원						보 건 소					
개소	의사	간호사 (조무사)	구급차	입원실	영안실	개소	의사	간호사 (조무사)	구급차	입원실	영안실
12	12	28		31	-	1	3	10	1	-	-

8) 수용시설

합 계		학교시설		관공서		마을회관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27	8,817	14	6,845	4	540	9	1,432

9) 의료시설 현황

(단위: 개소, 명)

구 분	병 원 명 (대 표 자)	병상수	영안실 수능 용력	응급차 유수 보대	전화번호
계	15개소	894		5	
병원	- 백암의료재단의령병원(김영희)	88		1	573-4100
	- 의령군립노인전문병원(유정건)	129		1	
	- 의령그린병원(마순철)	280		1	
	- 의령사랑병원(구제길)	189		1	
	- 의령사랑요양병원(구제길)	179		1	
	소 계	865		5	
의원	- 덕영내과(김현수)	4			574-0071
	- 복음의원(황현일)				573-9977
	- 신반의원(김수환)				574-0020
	- 의령정형외과(하홍주)				573-7582
	- 제일의원(이태균)				572-2996
	- 하나의원(유종식)				573-9482
	- 현대의원(김광현)				573-1451
	- 신부림의원(문두만)				574-1707
	- 우리의원(김석만)				573-0750
	소 계	29			

「참고」

《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 》

2016. 1월기준

번호	관리번호	시설명	관리주체	시설물 유형	등급
1	D487200001	의령천공단교 (의령읍 동동리)	건설도시과(도로담당)	교량	B
2	D487200003	의령천가례교 (가례면 가례리)	건설도시과(도로담당)	교량	B
3	D487200010	신반천새마교 (부림면 단원리)	건설도시과(도로담당)	교량	C
4	D487200018	신반천모두교 (봉수면 서암리)	건설도시과(도로담당)	교량	C
5	D487200020	유곡천의동교 (공류면 압곡리)	건설도시과(도로담당)	교량	C
6	D487200033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공공업무시설	A
7	D487200038	의령군청	재무과(재산관리담당)	공공업무시설	B
8	D487200039	의령읍사무소	재무과(재산관리담당)	공공업무시설	B
9	D487200043	의령시장	경제교통과(상공담당)	판매시설	B
10	D487200044	의령버스터미널	경제교통과(교통담당)	운수시설	A
11	D487200045	의령군민문화회관	시설관리사업소(종합사회복지관담당)	공연장	A
12	D487200046	소망의집	주민생활지원실(사회복지담당)	기타(건축물)	A
13	D487200047	헤림학원	주민생활지원실(여성아동담당)	기타(건축물)	A
14	D487200061	의령공설운동장	시설관리사업소(시설담당)	운동시설	B
15	D487200071	신반시장	경제교통과(상공담당)	판매시설	A
16	D487200075	명주교	건설도시과(도로담당)	교량	A
17	D487200078	의령군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사업소(시설담당)	수련시설	A
18	D487200083	자굴산청소년수련원	주민생활지원실(여성아동청소년담당)	수련시설	A
19	D487200085	대천교	건설도시과(도로담당)	교량	B
20	D487200087	서암교	건설도시과(도로담당)	교량	A
21	D487200099	(주)남강레저	의병문화관광과(체육지원담당)	수상레저시설	A
22	D487200101	의령군종합사회복지관	시설관리사업소(종합사회복지관담당)	공공업무시설	A

번호	관리번호	시설명	관리주체	시설물 유형	등급
23	D487200102	대신아파트	안전관리과(건축행정담당)	아파트	B
24	D487200103	남산아파트	안전관리과(건축행정담당)	아파트	B
25	D487200104	삼영파크	안전관리과(건축행정담당)	아파트	B
26	D487200107	의령교회	의병문화관광과(문화예술담당)	종교시설	A
27	D487200108	의령성당	의병문화관광과(문화예술담당)	종교시설	A
28	D487200109	일봉실버랜드	주민생활지원실(노인복지담당)	기타(건축물)	A
29	D487200113	의령국민체육센터	시설관리사업소(국민체육센터담당)	공공업무시설	B
30	D487200114	의령요양원	주민생활지원실(노인복지담당)	기타(건축물)	A
31	D487200115	새삶의집	주민생활지원실(통합조사관리담당)	기타(건축물)	A
32	D487200116	스카이모텔	민원봉사과(위생담당)	숙박시설	A
33	D487200117	아비송모텔	민원봉사과(위생담당)	숙박시설	A
34	D487200118	하얏트모텔	민원봉사과(위생담당)	숙박시설	A
35	D487200121	의령병원(의료법인 벽암의료재단)	보건소	의료시설	A
36	D487200122	의령구름다리	시설관리사업소(국민체육센터담당)	교량	B
37	D487200125	홍의청소년수련원	주민생활지원실(여성아동청소년담당)	수련시설	A
38	D487200126	가미교	건설도시과(도로담당)	교량	A
39	D487200127	운곡교	건설도시과(도로담당)	교량	B
40	D487200128	정동교	건설도시과(도로담당)	교량	B
41	D487200129	중촌교	건설도시과(도로담당)	교량	A
42	D487200130	전통농경문화테마파크 (소싸움장)	농업기술센터 (농축산유통과 유통지원담당)	관람장	A
43	D487200131	농경문화홍보전시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유통과 유통지원담당)	관람장	B
44	D487200136	궁소교	건설도시과(도로담당)	교량	B

번호	관리번호	시설명	관리주체	시설물 유형	등급
45	D487200140	(구)정암교	건설도시과(도로담당)	교량	B
46	D487200141	의령군 보건소	보건소	공공업무시설	A
47	D487200142	노인복지관	주민생활지원실(노인복지담당)	공공업무시설	A
48	D487200145	유곡천다목적캠핑장	의병문화관광과(관광문화재담당)	유원시설	A
49	D487200146	벽계야영장	의병문화관광과(관광문화재담당)	유원시설	A
50	D487200147	의병박물관	의병문화관광과(의병박물관담당)	전시장	A
51	D487200148	의병교재가설공사장	건설도시과(도로담당)	대형토목공사장	A
52	D487200150	일봉효누리요양원	주민생활지원실(노인복지담당)	노유자시설	A
53	D487200151	강변여과수개발 사업공사장	환경수도과(상수도담당)	대형토목공사장	A
54	D487200152	운암사	의병문화관광과(관광문화재담당)	종교시설	B
55	D487200153	유학사	의병문화관광과(관광문화재담당)	종교시설	B
56	D487200154	의령볼링센터	의병문화관광과(체육지원담당)	운동시설	A
57	D487200155	흥의정(궁도장)	의병문화관광과	운동시설	A
58	D487200156	친환경골프장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운동시설	A
59	D487200157	개승교	건설도시과	교량	A
60	D487200158	상촌교	건설도시과	교량	A
61	D487200159	요도교	건설도시과	교량	B
62	D487200160	양성교	건설도시과	교량	A
63	D487200161	큰들교	건설도시과	교량	A
64	D487200162	가막교	건설도시과	교량	A
65	D487200163	금동교	건설도시과	교량	A
66	D487200164	상동교	건설도시과	교량	B
67	D487200165	가미2교	건설도시과	교량	A
68	D487200166	교암교	건설도시과	교량	A

번호	관리번호	시설명	관리주체	시설물 유형	등급
69	D487200167	와요교	건설도시과	교량	A
70	D487200168	이목교	건설도시과	교량	A
71	D487200169	죽전교	건설도시과	교량	A
72	D487200170	소상교	건설도시과	교량	B
73	D487200171	가현교	건설도시과	교량	A
74	D487200172	두곡교	건설도시과	교량	A
75	D487200173	직금교	건설도시과	교량	B
76	D487200174	음지교	건설도시과	교량	B
77	D487200175	신기교	건설도시과	교량	A
78	D487200176	평촌교(군도)	건설도시과	교량	A
79	D487200177	임천교	건설도시과	교량	B
80	D487200178	봉황교	건설도시과	교량	B
81	D487200179	평촌교(농도)	건설도시과	교량	B
82	D487200180	평촌2교	건설도시과	교량	A
83	D487200181	우봉교	건설도시과	교량	A
84	D487200182	계현교	건설도시과	교량	A
85	D487200183	마현교	건설도시과	교량	A
86	D487200184	운계1교	건설도시과	교량	A
87	D487200185	운계2교	건설도시과	교량	A
88	D487200186	신촌2교	건설도시과	교량	B
89	D487200187	당동교	건설도시과	교량	A
90	D487200188	덕천교	건설도시과	교량	A
91	D487200189	판곡교	건설도시과	교량	B
92	D487200190	신송산교	건설도시과	교량	B
93	D487200191	엄현교	건설도시과	교량	A
94	D487200194	의령군립노인전문병원	보건소	의료시설	A
95	D487200195	의령사랑병원	보건소	의료시설	A
96	D487200197	의령사랑요양병원	보건소	의료시설	A

《 시설물 관리시설 현황 》

2016. 1월기준

번호	시설물명	시설물종류	종별	주소
1	대곡 1교	도로교량	2종	의령군 부림면 대곡리
2	백야교	도로교량	2종	의령군 의령읍 무전리
3	상포교	도로교량	2종	의령군 낙서면 아근리
4	세간교	도로교량	2종	의령군 유곡면 세간리
5	정동교	도로교량	2종	의령군 공류면 벽계리
6	대산제	제방·배수문	2종	의령군 공류면 벽계리
7	대산제배수문	제방·배수문	2종	의령군 의령읍 대산리
8	만천제	제방·배수문	2종	의령군 의령읍 만천리
9	만천제1배수문	제방·배수문	2종	의령군 의령읍 만천리
10	백곡제	제방·배수문	2종	의령군 정곡면 가현리
11	상정제	제방·배수문	2종	의령군 화정면 상정리
12	성당1제	제방·배수문	2종	의령군 지정면 성당리
13	성당2제	제방·배수문	2종	의령군 지정면 성당리
14	적곡제	제방·배수문	2종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15	적곡제배수문	제방·배수문	2종	의령군 정곡면 적곡리
16	화양제	제방·배수문	2종	의령군 화정면 화양리
17	부림상수도	지방상수도	2종	의령군 봉수면 산21-1번지
18	서동상수도	지방상수도	2종	의령군 의령읍 서동리
19	의령부림하수처리장	하수처리장	2종	의령군 부림면 대한로 1872-25 일원
20	의령지방상수도	지방상수도	2종	의령군 가례면 가례로 455
21	의령하수종말처리시설	하수처리장	2종	의령군 의령읍 의합대로 44-54
22	화정정수장	지방상수도	2종	의령군 화정면 석천리

《 수용시설 지정 및 관리현황 》

○ 읍·면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수용시설현황		관리책임자 비상연락망	
	시설명	수용인원	성명	전화
계	27개소	8,817명	27명	
의령읍	대산회관	22	허승오	573-9878
의령읍	정암회관	40	박용희	570-4372
의령읍	의령군종합사회복지관	960	이광두	570-2851
가례면	의령여자중·고등학교	860	김영률	573-2482
칠곡면	칠곡초등학교	425	김종호	572-3816
대의면	대의초등학교	390	정선희	572-9015
화정면	화정초등학교	330	이은화	572-4068
용덕면	신사회관	40	지병균	574-3937
용덕면	용덕초등학교	80	박숙희	573-4005
정곡면	정곡중학교	400	박계택	572-5044
정곡면	정곡초등학교	550	설광수	572-4556
지정면	성당회관	30	박기원	570-4654
지정면	성산회관	20	손계현	570-4654
지정면	지정중학교	530	강강원	572-0198
지정면	지정초등학교	670	정중기	572-5411
낙서면	낙서초등학교	280	박계기	572-7007
부림면	신반정보고등학교	1,080	이석수	574-6414
부림면	신반중학교	410	노대섭	574-6432
부림면	부림면사무소	220	권중한	570-4290
부림면	동부사회복지관	230	하종성	570-4731
봉수면	봉수면사무소	70	박상래	570-4300
봉수면	서득마을회관	30	한봉길	574-6747
봉수면	죽전회관	60	강기택	572-3048
궁류면	궁류면사무소	180	전용원	570-4310
궁류면	궁류초등학교	390	정진이	572-8023
유곡면	유곡면사무소	70	김시범	570-4320
유곡면	유곡초등학교	450	임의순	573-8630

○ 상세현황

번호	시설위치	시설구분	시설명	시설면적(m ²)	수용능력(명)	대표자	연락처
계			27개소		8,817		
1	의령읍 남강로 3길 28	마을회관	대산회관	73	22	허승오	
2	의령읍 남강로7길7	마을회관	정암회관	132	40	박용희	
3	의령읍 의병로8길 44	관공서	의령군종합사회복지관	6,928	960	남성택	
4	가례면 의병로 67	학교	의령여자중·고등학교	5,705	860	김영률	
5	칠곡면 칠곡로 59	학교	칠곡초등학교	1,404	425	김중호	
6	대의면 대의로 31-6	학교	대의초등학교	1,319	390	정선희	
7	화정면 화정로 314	학교	화정초등학교	1,111	330	이은화	
8	용덕면 용덕1길 111	마을회관	신사회관	145	40	지병균	
9	용덕면 용암로 39	학교	용덕초등학교	1,342	80	박숙희	
10	정곡면 의합대로 1061-6	학교	정곡중학교	1,325	400	박계택	
11	정곡면 법정로 937-6	학교	정곡초등학교	1,979	550	설광수	
12	지정면 강변로7길 10-10	마을회관	성당회관	99	30	박기원	
13	지정면 기강로5길6	마을회관	성산회관	66	20	손계현	
14	지정면 마산로 81-14	학교	지정중학교	1,028	530	강강원	

번호	시설위치	시설구분	시설명	시설면적(m ²)	수용능력(명)	대표자	연락처
15	지정면 함의로 4길5	학교	지정초등학교	1,487	670	정중기	
16	낙서면 낙동강로 773-6	학교	낙서초등학교	950	280	박계기	
17	부림면 한지28길8	학교	신반정보고등학교	3,695	1,080	이석수	
18	부림면 한지28길 18-12	학교	신반중학교	2,756	410	노대섭	
19	부림면 대한로 1761	관공서	부림면사무소	754	220	권중환	
20	부림면 신번로 181	관공서	동부사회복지관	786	230	하중성	
21	봉수면 대한로 1188	관공서	봉수면사무소	235	70	박상래	
22	봉수면 대한로 1623-6	마을회관	서득마을회관	99	30	한봉길	
23	봉수면 대한로 1223	마을회관	죽전회관	202	60	강기택	
24	궁류면 궁류로 124	관공서	궁류면사무소	495	180	전용원	
25	궁류면 궁류로 5길14	학교	궁류초등학교	1,312	390	정진이	
26	유곡면 마장로 10	관공서	유곡면사무소	248	70	김시범	
27	유곡면 마장로 22-6	학교	유곡초등학교	1,494	450	임의순	

《 지진대비 대피시설 현황 》

구 분	시 설 명	시 설 위 치	대피면적 (㎡)	대피능력 (명)
계	28개소		263,924	20,992
의령읍	의령공설운동장	의령읍 구룡로 245-4	4,516	361
	의령군종합사회복지관	의령읍 의병로8길 44	8,250	660
	의령고등학교 운동장	의령읍 백산로3길 4	22,318	1,785
	의령중학교 운동장	의령읍 충익로4길 11	16,025	1,282
	남산초등학교 운동장	의령읍 남산로 37	12,504	1,000
	의령초등학교 운동장	의령읍 의병로19길 20	11,320	906
가례면	가례초등학교 운동장	가례면 가례로 128	6,000	450
	의령여자중·고등학교 운동장	가례면 의병로 67	9,054	750
	대천보조경기장	가례면 홍의로6길 13-55	7,140	550
칠곡면	칠곡초등학교 운동장	칠곡면 칠곡로 59	2,000	160
대의면	대의초등학교 운동장	대의면 대의로 31-6	1,319	400
화정면	화정초등학교 운동장	화정면 화정로 314	9,096	700
용덕면	용덕초등학교 운동장	용덕면 용암로 39	10,284	800
	용덕공설운동장	용덕면 덕암로 6길18	9,232	700
정곡면	정곡초등학교 운동장	정곡면 법정로 937-6	14,000	1,120
	정곡중학교 운동장	정곡면 의합대로 1061-6	10,894	817
	정곡공설운동장	정곡면 법정로 851-8	17,595	1,407
지정면	지정공설운동장	지정면 기강로 7-11	8,910	600
낙서면	낙서초등학교 운동장	낙서면 낙동강로 773-6	4,000	320
	낙서공설운동장	낙서면 낙서로 509-5	6,000	480
부림면	부림공설운동장	부림면 미타로 45-26	11,455	800
	신반중학교 운동장	부림면 한지28길18-12	18,306	1,500
	신반정보고등학교 운동장	부림면 한지28길 8	2,400	160
	부림초등학교 운동장	부림면 대한로 1721	8,831	650
봉수면	봉수초등학교 운동장	봉수면 한지9길 6	12,932	1,034
궁류면	궁류초등학교 운동장	궁류면 궁류로5길 14	2,500	200
	궁류공설운동장	궁류면 청정로 1209-32	10,000	800
유곡면	유곡공설운동장	유곡면 청정로 2078-6	7,043	600

2016년 의령군 안전관리계획

발행일	2016년 8월
발행처	의령군 안전관리과
전 화	055-570-2752
팩 스	055-570-2050
주 소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인 쇄	미술문화사 055-573-3276
